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5호 2022. 3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논문

- 강승우 ▮ GIS를 활용한 하가점하층문화 대전자 묘지 무덤 조성순서와
묘지 존속기간에 관한 시론적 고찰 7
- 최진열 ▮ 후한시대(後漢時代) 내군(內郡) 군병(郡兵)의 존재와 운용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도위관(都尉官) 폐지의 실상 63
- 정동훈 ▮ 3년 1행인가, 1년 3행인가
－ 고려-명 관계에서 사행 빈도 문제 133
- 강병희 ▮ 고구려 1탑 3금당 사찰 배치와 과거칠불신앙 175
- 박인호 ▮ 『성경통지』에 나타난 청의 동북 지역에 대한 인식 219
- 최성운 ▮ 극동러시아 당국의 1870·1871년
조선인 강제 재이주정책과 체제선전소문 257
- 김승배 ▮ 이탈리아의 패전, 냉전, 평화조약과 관념
－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 319
- 오승희 ▮ ‘대만인 전(前) 일본군’ 전후보상 문제
－ 아이덴티티, 특별입법, 네트워크 연대 357

자료소개

- 이승일 ▮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현황과 특징 399

서평

- 임상선 ▮ 선구적인 발해사 연구와 인식
－ 송기호, 2020,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19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Articles

- Kang Seungwoo ■ A Preliminary Study on the Order and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Dadianzi Cemetery in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Using GIS 7
- Choi Jinyeoul ■ The Military Forces of Interior Commanderies(neijun) and Commanding Commanderies Troops in Later Han Dynasty: the Abolition of Interior Commandary Commadant in the Period of Emperor Guangwu's Reign and It's Paradox 63
- Jung Donghun ■ Once in a Three Years or Three Times in a Year: The Frequency of Envoy Missions in Goryeo-Ming Relations 133
- Kang Byunghee ■ Architectural Pattern(一塔三金堂) of Goguryeo Temple and the Faithe of Seven Buddhas of the Past(過去七佛) 175
- Park Inho ■ The Chinese Qing Dynasty People's Perception of Manchuria in the *Seonggyeongtongji* 219
- Choi Sungwoon ■ The Russian Authority's Mass Deportation Policy and the Propaganda of Political System for Koreans in 1870 and 1871 257
- Kim Soongbae ■ Italy's Defeat, Cold War, Peace Treaty and Ideas: Implications of ROK-Japan Relations 319
- Oh Seunghee ■ Postwar Compensation of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Identity, Special Legislation, and a Solidarity Network 357

Introduction to Docu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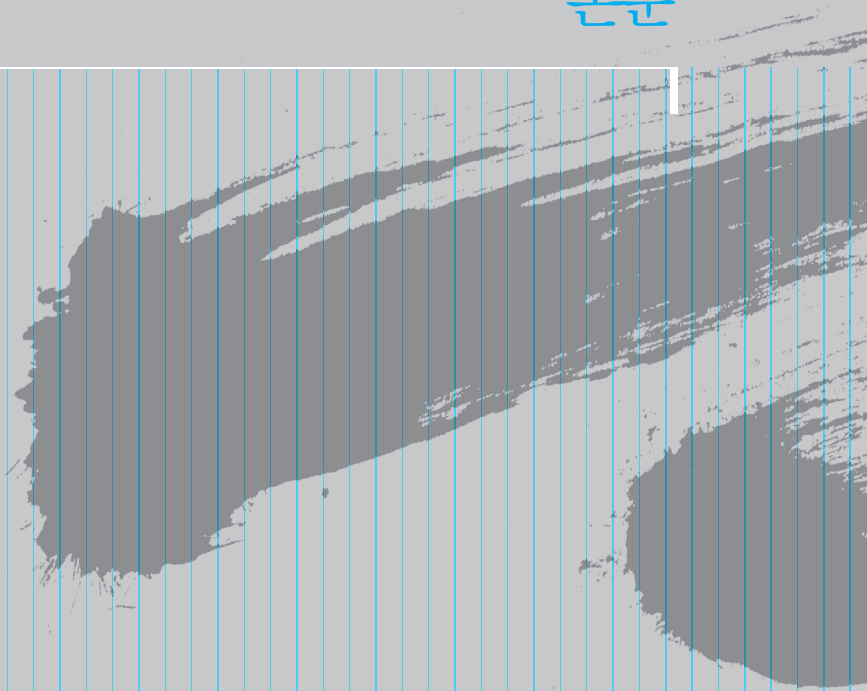
- Lee Seungil ■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Civil Judgments in Korea 399

Book Review

- Lim Sangsun ■ Pioneering Research and Recognition of the History of Balhae: Kiho Song, 2020, Studies on the Historiography of Balha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419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GIS를 활용한 하가점하층문화 대전자 묘지 무덤 조성순서와 묘지 존속기간에 관한 시론적 고찰

강승우 |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 I. 머리말
- II. 무덤 상대편년 기준: 력(曆) 형식 분류
- III. 력 형식별 선후관계 분석을 통한 묘지 조성순서 분석
- IV. 대전자 묘지 존속기간 추정
- V. 시기별 무덤 분포도를 활용한 연구방법의 예
- VI. 맺음말



I. 머리말

대전자(大甸子)유적은 하가점하층(夏家店下層)문화 중후기에 속하는 유적이다. 내몽골자치구 적봉시(赤峰市) 오향기(敖漢旗) 동남부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요령성(遼寧省) 북표현(北票縣)과 55km 떨어져 있다. 1974년 처음 발견된 후 1983년까지 3단계에 걸쳐 7만㎡가 발굴되었다. 유적은 거주유적과 거주유적 동북쪽에 위치한 묘지유적 2개 구역으로 나뉜다. 총 7만㎡ 중 거주유적이 6만㎡, 묘지는 약 1만㎡이며 무덤 806기를 발굴했다.

하가점하층문화는 중국 동북지역 서요하(西遼河) 유역에서 번성한 초기 청동기시대 문화이다. 연대는 소하연(小河沿)문화보다 늦고 하가점상층(夏家店上層)문화와 위영자(魏營子)문화보다는 이른데, 대체로 2000~1400 BCE로 보고 있다.¹ 이 시기는 하대(夏代)로 추정되는 황하유역의 이리두(二里頭)문화 및 상대(商代) 초기와 맞물린다.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은 주로 내몽골자치구 적봉, 통료(通遼), 요령성 조양(朝陽), 부신(阜新), 호로도(葫蘆島), 금주(錦州) 등지에 분포한다. 지금까지 고고학 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적은 5,000곳 이상이지만, 정식으로 시굴 또는 발굴된 사례는 53곳에 불과하며² 이 중 무덤유적은 9곳뿐이다.

발굴된 무덤은 내몽골자치구 적봉시 오향기 대전자유적에서 806기,³ 오향

* 투고: 2022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2월 12일, 게재 확정: 2022년 2월 16일

1 박진호, 2020, 「중국 내 하가점하층문화 연구 동향과 문제점-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 356쪽.

2 國家文物局 主編, 2003, 『中國文物地圖集』, 「內蒙古自治區分冊(上·下冊)」, 西安地圖出版社; 國家文物局 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上·下冊)」, 西安地圖出版社; 박진호, 2020, 위의 글, 『한국학연구』 59, 348~351쪽; 오대양, 2017, 「고대산문화의 묘제와 장속특징에 대한 검토-하가점하층문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학』 66, 163~164쪽.

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

기 범장자유적에서 88기,⁴ 통료시 소동구유적에서 7기,⁵ 요령성 부신시 대해유적에서 62기,⁶ 부신시 계력화유적에서 6기,⁷ 표시(北漂市) 풍하⁸·객좌현(略左縣) 토성자⁹·부신시 평정산¹⁰·조양시(朝陽市) 나과지¹¹ 유적에서 각각 1기씩이다(그림 1, 표 1).¹² 대전자 묘지와 범장자 묘지는 전체가 발굴되었다.

고고학적으로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자료들은 피장자의 신분과 계급, 당시 사회 구조와 관습 및 사상, 주변지역과의 교류 네트워크 등 많은 사실을 알려주

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40~41쪽(발굴보고서 본문에는 804기로 되어 있고, 부록 「5-2. 묘장등기총표」 1과 2에는 발굴보고서 40~41쪽 무덤 분포도에 그려진 M2, M54, M55, M669, M767, M768, M786, M789 등 총 8기가 누락되어 나머지 798기에 관한 데이터만 수록되어 있다).

- 4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1984, 「敖漢旗範仗子古墓群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1984-1, 22~25쪽.
- 5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13, 「通遼市奈曼旗小東溝遺址發掘簡報」, 『草原文物』 2013-2, 24~35쪽.
- 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12, 「遼寧阜新縣代海遺址發掘簡報」, 『考古』 2012-11, 7~22쪽.
- 7 司偉偉 외, 2014, 「遼寧阜新縣界力花青銅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 2014-6, 3~18쪽.
- 8 遼寧省文物幹部培訓班, 1976, 「遼寧北票縣豐下遺址1972年春發掘簡報」, 『考古』 1976-3, 197~210쪽.
- 9 崔貴華 외, 2018, 「遼寧略左土城子遺址2014~2015年發掘簡報」, 『文物』 2018-4, 4~19쪽.
- 1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系, 1992, 「遼寧阜新平頂山石城遺址發掘報告」, 『考古』 1992-5, 399~417쪽.
- 11 華玉冰 외, 2002, 「朝陽羅鍋地夏家店下層文化遺址的分期及相關問題」, 『邊疆考古研究』 2002-1, 123~138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3, 「朝陽小羅鍋地夏家店下層文化遺址發掘報告」, 『遼寧省道路建設考古報告集』, 95~163쪽.
- 12 이 외에도 남포자애(南泡子崖), 연대산(硯臺山) 유적 등에서 하가점하층문화 시기 무덤이 보고되었으나 아직 관련 세부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郝維彬, 1996, 「內蒙古庫倫旗南泡子崖夏家店下層文化遺址調查簡報」, 『北方文物』 47, 11~14쪽; 赤峰市博物館, 2009, 「硯台山遺址(B2 區)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2009-2,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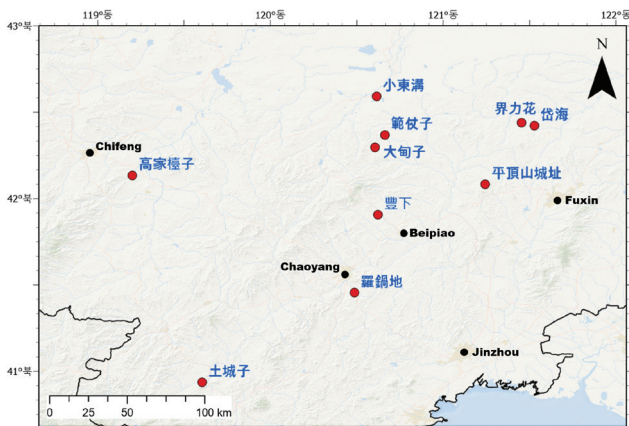


그림 1 발굴 보고된 하가점하층문화 무덤유적 분포도

〈표 1〉 발굴 보고된 하가점하층문화 무덤유적별 무덤 수

No.	유적	무덤 수(기)
1	대전자(大甸子)	806
2	범장자(範仗子)	88
3	대해(岱海)	62
4	소동구(小東溝)	7
5	계력화(界力花)	6
6	풍하(豐下)	1
7	토성자(土城子)	1
8	평정산(平頂山)	1
9	나과지(羅鍋地)	1

므로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된다. 대전자 묘지는 하가점하층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 중 한 곳으로, 무덤이 가장 많고 보존 상황이 좋으며 발굴 보고서를 통해 문화 내용과 특징이 상세히 알려져 있다. 풍부한 발굴 데이터는 하가점하층문화의 모체와 장속 및 하가점하층문화 중후기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¹³

그러나 대전자 묘지는 무덤 간 침범과 상하 중첩이 거의 없어서 층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층위분석으로 무덤과 유물의 연대를 결정하기 어렵다. 무덤에서

13 劉觀民, 1992, 「內蒙古赤峰市大甸子墓地述要」, 『考古』 1992-4, 304~309쪽; 劉國祥, 1999, 「大甸子玉器試探」, 『考古』 1999-11, 3~5쪽; 郭大順, 2003, 「大甸子墓地初析」, 『古代文明』, 97~113쪽; 李延祥·賈海新·朱延平, 2003, 「大甸子墓地出土銅器初步研究」, 『文物』 2003-7, 78~84쪽; 羅運兵, 2009, 「大甸子遺址中豬的飼養與儀式使用」, 『邊疆考古研究』, 288~300쪽; 黃曉雷·金熙茗, 2015, 「大甸子墓地隨葬骨器分析」, 『遼寧省博物館館刊』, 89~93쪽; 黃可佳, 2015, 「試析以大甸子墓地玉器爲代表的夏家店下層文化玉器」, 『草原文物』 2015-2, 61~71쪽; 오대양, 2017, 앞의 글, 149~177쪽; 王蕓, 2019, 「內蒙古敖漢旗大甸子墓地出土彩繪陶器紋飾試析」, 『四川文物』 2019-6, 44~48쪽.

출토된 유물조합과 출토 맥락은 당시 사회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지만 유물들의 선후를 결정할 편년기준이 없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 변화 양상을 해석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대전자 묘지에서 발굴된 풍부한 유물들도 당시 대전자 사회의 시간적 변동을 입체적으로 재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덤과 출토 유물의 시기 결정에 근거가 될 상대적 편년기준을 마련하는 데 보완적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GIS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경관고고학에 기초한 GIS 분석기법이 고고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데, 선사시대 무덤 유적에도 GIS를 활용한 연구 방법론이 응용되고 있다.¹⁴ 대전자 묘지는 전체가 발굴되었고, 상세한 발굴보고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또 무덤 간 침범과 파괴가 거의 없고 묘역을 세분할 수 있어서 GIS 분석법을 활용하면 무덤 공간 배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출토 유물들의 상호 관계 등을 가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발굴보고서에서 1, 2기로 폭넓게 분류한 력(曆) 형식을 초기·중기·후기로 세분하여 력 출토 무덤을 초기·중기·후기로 구분했다. 다음으로 GIS를 이용하여 시기별 무덤의 공간분포도를 구해 묘지 면적이 사용된 방식을 살펴보았다. 또 대전자유적 발굴 데이터와 취락고고학 연구성과를 결합하여 묘지 존속기간을 추정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무덤 분포도를 이용하여 대전자 사회의 인구 구성과 사회복합도, 주변 문화권과의 상호 작용권을 파악하는데 기초가 될 몇 가지 유물 데이터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시 사회상을 해석하는 데 GI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예가 될 것이다.

14 Ladislav Šmejda & Jan Turek, 2004, *Spatial Analysis of Funerary Areas*, University of West Bohemia(Department of Archaeology), pp. 1~159.

II. 무덤 상대편년 기준: 력(曆) 형식 분류

대전자 묘지는 약 1만㎡ 안에 무덤 806기가 분포한다. 무덤 간격이 대부분 1m 이하로, 평균 12㎡당 1기꼴로 배열되어 밀집도가 높다. 묘광 방향은 대체로 서 북쪽으로 일치하며, 중횡으로 간격이 비교적 균일하여 정연한 분포를 보인다. 무덤이 위아래로 중첩되거나 서로 침범하는 사례가 없어 퇴적층위를 통해 부장 유물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발굴보고서에서는 묘지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출토되고 출토 수량이 가장 많은 토기의 형식 변화를 무덤 연대 파악의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력(曆)과 관(罐) 중에서 력의 형식 변화가 무덤 분기와 묘역 세분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각 형식 력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시기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력의 경우 기물의 형태적 특징 외에도 제작방식 변화가 중요한 편년 기준이 되었다. 이하 발굴보고서에서 분류한 력 형식과 제작법상 특징을 요약했다.

력은 436기 무덤에서 539개¹⁵가 출토되었으며, 묘지 내 전체 출토 토기의 약 1/3이다. 이 중 478개는 벽감에서, 61개는 전토(填土)에서 발견되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력을 형태와 제작방법에 따라 크게 A, B, C의 세 가지 형으로 분류했다. 다시 A형은 여덟 가지 아형(亞形), B형은 다섯 가지 아형으로 세분할 수 있고, C형은 아형의 구분 없이 두 가지 식으로만 구분된다. <표 2>에서 보듯이 A형력이 력 전체의 70%가 넘고, 그중 약 90%는 벽감에서 발견되었다.

15 ① 발굴보고서 본문에는 력 출토량이 540개로 되어 있으나 부록 「5-2. 묘장등기총표」 2에는 539개만 등재되어 있다. 발굴보고서 본문과 부록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글에서는 무덤과 유물에 관한 사항은 일람표인 부록 「5-2. 묘장등기총표」 1, 2에 기재된 대로 기술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앞의 책, 1996, 362~409쪽). ② 력이 출토된 436기 무덤 중 31기 무덤에서 출토된 력들은 훼손이 심해 세부 형식을 나눌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405기 무덤만 시기를 구분했다.

〈표 2〉 A, B, C형력 출토 수량과 출토 비율

형식	벽감	전토	계	비율(%)
A형	355	37	392	72.7
B형	88	12	100	18.6
C형	35	12	47	8.7
계	478	61	539	100.0

(수량은 발굴보고서 부록 5-2 데이터를 합산한 것이다.)

1. A형력

A형력은 392개¹⁶로, 출토된 력의 70%가 넘는다. 견(肩)과 고복(鼓腹)이 없는 장통력(長筒甗)이며 3단으로 붙여 만들었다. 상단은 외반 구연이고, 중단은 직통형 복강(腹腔)이며, 하단은 통형 공족(空足) 3개를 이어 붙인 공족 부위이다. 각 공족 아랫부분은 실심(實心) 또는 반공심(半空心) 족첨(足尖)이다. 외견상 준형기(尊形器) 아래에 공족 3개를 붙인 형태이므로 준식력(尊式甗) 또는 준형력(尊形甗)이라고도 한다. 형태에 따라 AI에서 AⅧ까지 8개 아형으로 분류되었다(표 3). AI·AⅡ·AⅢ은 폭과 높이 비율이 대부분 약 3:5이며, AⅣ·AⅤ·AⅥ는 폭과 높이 비율이 대부분 약 1:2로 AI·AⅡ·AⅢ보다 가늘고 길다.¹⁷

식을 나눌 수 없는 AⅦ과 AⅧ을 제외하고 AI부터 AⅥ까지 6개 아형은 동일한 원칙에 따라 3개 식(式)으로 분류되었다.¹⁸ 1식과 2식은 제작법이 같지만 공족 깊이에 차이가 있다. 1식이 공족이 더 깊고 외견상 세 공족의 연결 부위인 당(檔: 력의 가랑이)이 더 높다. 3식은 제작방식이 간략해지면서 그에 따른 형태 변

16 발굴보고서 69쪽에는 390건, 199쪽에는 388건으로 되어 있고, 부록 「5-2. 묘장 등기총표」 2에 기재된 것은 392건이다.

1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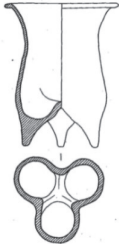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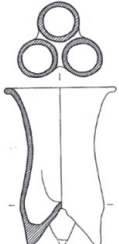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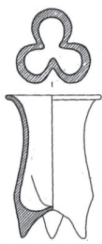
1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71, 206쪽.

화가 나타난다. 각 식은 외관상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낸다.

- ① 1식: 력 내부를 들여다보았을 때 공족 3개가 모두 뚜렷한 원동(圓洞)을 이뤄 공족 사이가 분명한 경우
- ② 2식: 력 내부를 들여다보았을 때 공족 3개가 모두 원갱(圓坑)을 이루며, 공족 사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③ 3식: 약간 오목한 접시 3개를 옆옆이 이어 붙인 듯한 클로버 모양 흠반죽 조각을 통형 복강 하단에 붙여 바닥을 만들고 그 아래에 실심족첨(實心足尖)을 달았다. 공족 사이는 원 3개가 아니라 반원 3개를 이어붙인 듯한 형태를 나타낸다. 복강 하단에 붙인 흠반죽 조각의 오목한 정도가 공족의 깊이가 되므로 공족 깊이는 약간 파인 정도(淺坑)로 알다.

A형력은 늦은 식일수록 제작방식이 간편해지면서 공족 깊이가 점점 얇아지고, 당면에서 공족이 서로 가까워져 당의 나뉘미 불분명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표 3). <표 4>는 A형력 형식 분류도이다.¹⁹

<표 3> A형력 1, 2, 3식(축척 부동)

		
AI형 1식(M854:1)	AV형 2식(M615:2)	AI형 3식(M706:6)

출처: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74~77쪽.

1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208~209쪽.

〈표 4〉 대전자 묘지 출토 A형력 형식 분류도(축척 부동)

AI형 1식 M854:1	AI형 2식 M792:1	AI형 3식 M706:6	AII형 1식 M905:7	AII형 2식 M922:2	AII형 3식 M881:2
AIII형 1식 M1109:3	AIII형 2식 M749:1	AIII형 3식 M603:2	AIV형 1식 M738:1	AIV형 2식 M839:3	AIV형 3식 M383:1
AV형 1식 M502:2	AV형 2식 M615:2	AV형 3식 M508:1	AVI형 1식 M325:2	AVI형 2식 M512:4	AVI형 3식 M759:6
AVII형 M932:2	AVIII형 M472:2				

출처: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74~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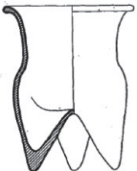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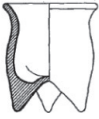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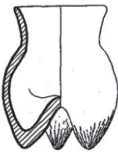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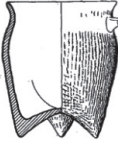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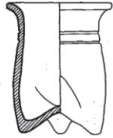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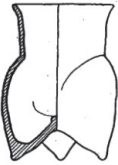
2. B형력

B형력은 96기 무덤에서 100개가 출토되었으며 전체 출토된 력의 약 19%이다. 북Ⅳ, 북Ⅴ, 북Ⅵ 중a 묘역에서 많이 출토되었고, 남구에서는 중a에 인접한 남a와 중b에 인접한 남f에서 출토 비율이 높다. 남구에서는 B형력이 주를 이루며 A형력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C형력과 동반 출토되었으나 A형력과는 동반 출토되지 않았다.

B형력은 고복력(鼓腹甗)으로, 통형력인 A형력과 형태상 구분된다. 기물은 3단을 붙여 만들었다. 상단 구경부는 짧은 직령(直領)이거나 장경에 입이 벌어졌다. 중단은 견부로 바닥이 없는 원형 발(鉢)을 뒤집어놓은 모양이며, 위로는 영(頚)이나 경(頸)을 붙이고 아래에는 공족을 붙였다. 무실심족첨(無實心足尖)으로 기벽이 약간 두껍다. 구경(口頸)과 견복(肩腹)의 차이에 따라 5개 아형으로 분류되었다(표 5).

BI은 공족 깊이에 따라 1식과 2식으로 나뉜다. A형력처럼 1식은 력 내부에 당(檔)의 나뉘미 뚜렷하다. 2식은 력 내부에 당의 나뉘미 뚜렷하지 않으며 공족이 넓고 얇다. BII는 공족 제작방법에 따라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BIIa는 공족이 짧고 굵으며 가지런하다. BIIb는 공족이 길고 굵으며, 기벽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삼족이 한 방향으로 비틀렸다. 삼족이 한 방향으로 비틀린 형태는 AVII

〈표 5〉 B형력 형식 분류도(축척 부동)

					
BI형 1식 M303:1	BI형 2식 M759:5	BII형 M444:3	BIII형 M51:3	BIV형 M16:1	BV형 M463:2

출처: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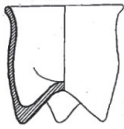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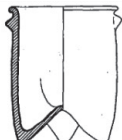
공족의 특징이기도 하다. BⅢ은 유견(溜肩)에 복부가 없고(無腹), 공족이 깊다.

BⅣ는 통 하단을 세 부분으로 나눠 각각 공족을 만들고 삼족을 합쳐서 당 밑에 붙였으므로 겉 표면에 이음매인 능선 세 줄이 보인다. 공족만 달린 공족 부위를 따로 만들어 붙이지 않아 견복과 공족 사이에 접합한 흔적이 없다. 이러한 공족 제작방식은 거주유적에서 비교적 늦은 퇴적층에서 보인다. BV도 공족 부위를 따로 만들어 붙이지 않고 견(肩)을 셋으로 분할해 각각 공족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견과 공족 사이에 접합한 흔적이 없다.

3. C형력

C형력은 42기 무덤에서 47개가 출토되었다. C형력은 형태상 복이 거의 없는 직통복력이며, 상·하 2단으로 구성된다. 상단은 짧은 통복(筒腹)이며 영(領)과 경(頸)이 없고, 하단은 공족이다. 대다수는 통복 구연부 아래에 돌출된 돌기(瘤紐)가 있거나 고리 모양의 귀(環形耳)가 달려 있다. 족첨이 없다. 제작법에 따라 1식과 2식으로 구분되었다. 1식은 공족 3개로 이루어진 부위를 따로 만들어 짧은 통복 아래에 붙였다. 이와 달리 2식은 원통형 통복 하단부를 세로로 삼분해 각각 안쪽으로 말아 넣어 공족 3개를 만들어서 력 가랑이 부분에 이음매가 보인다. 표면에 능선 세 줄이 보이며 BⅣ형 공족과 형태가 비슷하다(표 6).

〈표 6〉 C형력 형식 분류도(축적 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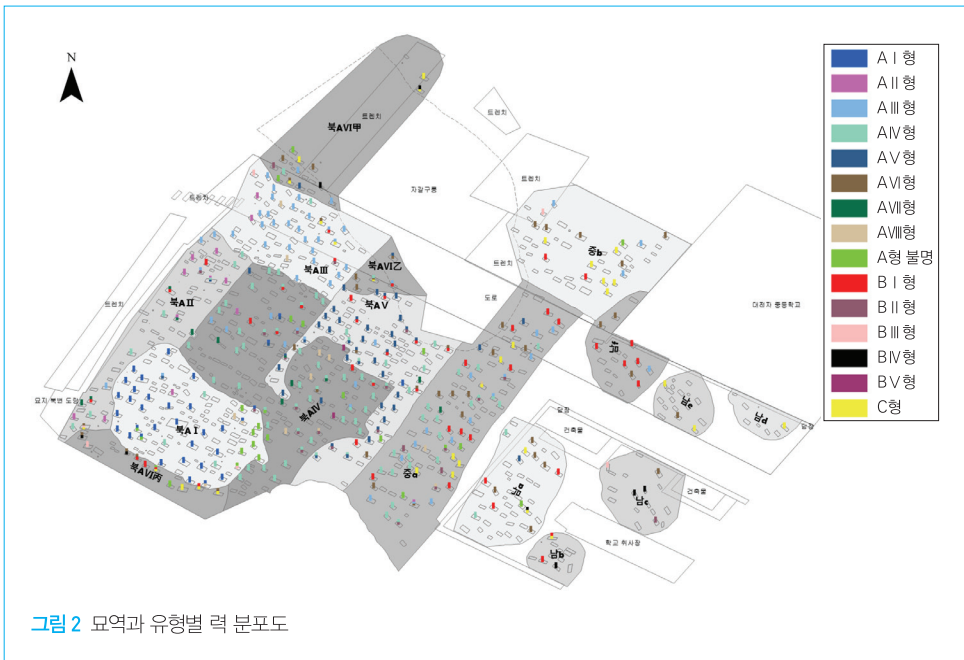
	
C형 1식 M1017:2	C형 2식 M31:3

출처: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80쪽.

4. 력 형식에 따른 묘역 구분

발굴보고서에서는 묘지를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폭 4m가량의 공백지대 두 군데를 자연경계로 하여 북쪽 공백지대 이북을 북구, 공백지대 사이를 중구, 남쪽 공백지대 이남을 남구 등 3개 대구역으로 구분했다(그림 2). 무덤은 총 806기 중 북구에 547기, 중구에 143기, 남구에 116기가 분포한다. 북구가 면적이 가장 넓지만 동북부가 자갈구릉(砂石崗)이어서 무덤은 자갈구릉 서쪽에 밀집되어 있다. 무덤이 없는 자갈구릉은 묘지의 자연 경계를 형성한다. 반면 남구는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덤 밀집도가 낮다.

북구, 중구, 남구는 집중 출토된 력의 형식에 따라 다시 소구역들로 구분했다. 북구는 A형력 6개 아형이 각각 집중 출토된 구역을 구분하여 북AI, 북AII, 북AIII, 북AIV, 북AV, 북AVI 등 6개 소구역으로 나누었다.²⁰ 중구는 중a와 중b



2개, 남구는 남a, 남b, 남c, 남d, 남e, 남f 등 6개 소구역으로 구분하여 묘지 전체를 14개 소구역으로 세분했다. <그림 2>는 유형별 력 분포도이다.

Ⅲ. 력 형식별 선후관계 분석을 통한 묘지 조성순서 분석

력 형식 변화를 무덤 연대 분석의 기준으로 정했으므로 각 아형의 선후와 각 식의 선후는 개개 무덤과 묘지 조성연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다만 력 부장 무덤이 묘지 전체 무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므로 력이 부장되지 않은 무덤도 포괄하는 묘역 간 선후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력 형식의 선후관계를 분석하고, 보완적으로 력과 관의 조합 특징에 따른 묘역별 선후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 력 형식별 선후관계 분석

대전자 묘지에서는 식을 분류하지 않은 AVⅦ과 AVⅧ을 제외하면 A형력 아형들이 한 무덤에서 2개 이상 출토된 경우 1식과 1식, 2식과 2식, 3식과 3식, 1식과 2식, 2식과 3식은 함께 출토되어도 1식과 3식은 함께 출토되지 않았다. 동일 아형의 다른 식이 동반 출토된 사례는 4건이다(표 7).²¹ 이는 A형력에서 1식 → 2식 → 3식으로 3개 식이 단절 없이 연이어 출현했고, 연속된 두 식이 공존 시기를 거쳤음을 나타낸다.

식의 동반관계는 서로 다른 A형력 아형들이 함께 출토된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난다(표 8). 서로 다른 아형의 1식과 2식이 함께 출토된 무덤은 8기이며,

20 북AI, 북AⅡ, 북AⅢ, 북AⅣ, 북AⅤ, 북AⅥ는 각각 북I, 북Ⅱ, 북Ⅲ, 북Ⅳ, 북Ⅴ, 북Ⅵ으로도 표기했다.

2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372~402쪽.

〈표 7〉 동반 출토된 서로 같은 A0형력

무덤번호	1식과 2식 동반 출토			무덤번호	2식과 3식 동반 출토		
726	A I 1	A I 2	A I 2	706	A I 2	A I 3	
1103	AVI1a	AVI2		398	AV2a	AV3	

2식과 3식이 함께 출토된 무덤은 3기이다.²² 이 무덤들은 북Ⅲ을 제외한 북구와 중a에서만 나타나고, 대부분 AV형이 다른 아형과 동반 출토된 경우이며 B형력과 C형력은 부장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표 8〉 동반 출토된 서로 다른 A0형력

무덤번호	1식과 2식 동반 출토			무덤번호	2식과 3식 동반 출토		
342	AⅢ1a		AI'2b				
824		AV1a	AⅢ2				
499		AV1b	AI'2b				
452	AV1a	AV2a		516	AV2a	AVI3	
905	AⅡ1	AV2a	AI'1b				
715	A I 1	AV2b		603	AV2b	AⅢ3	
732	A I 1	AV2b		513	AV2b	AV3	
1145	AVI1a	AV2b					

동반 출토된 력들은 같은 시기에 공존했음을 나타낸다. 〈표 9〉에서 동반 출토된 여섯 가지 아형의 1식이 거의 동시에 존재했고, 모든 아형의 식 변화가 동보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한눈에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A형력의 여섯 가지 아형이 시간상 계승적 변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형력의 형과 식만으로는 분기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2식이 1식과 공존하고 3식과도 공존하여 언뜻 1, 2,

2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368~405쪽.

〈표 9〉 A 아형력의 선후관계

무덤번호	묘역	동반 출토 A형력					A 아형력들의 선후관계
824	북1		AⅢ2		AV1a		AⅢ2, AV1 동시기
499	북5			AV2b	AV1b		AV2, AV1 동시기
452	북5			AV1a	AV2a		AV1, AV2 동시기
905	북2	AⅡ1		AV1b	AV2a		AV1, AV2, AⅡ1 동시기
371	중a	AⅡ1	AⅢ1a			AVI1a	AⅡ1, AⅢ1, AVI 동시기
342	중a		AⅢ1a	AV2b			AⅢ1, AV2 동시기
1145	북6				AV2b	AVI1a	AV2, AVI 동시기
715	북4	AⅠ1			AV2b		AV2, AⅠ1 동시기
732	북4	AⅠ1			AV2b		AV2, AⅠ1 동시기
516	북5				AV2a	AVI3	AV2, AVI3 동시기
513	북5				AV2b	AVI3	AV2, AVI3 동시기
603	북5				AV2b	AⅢ3	AV2, AⅢ3 동시기

3식이 모두 공존한 듯 보이는데 1, 2, 3식 또는 1, 3식이 동반 출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 아형의 식 출현에 미세한 시차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하가점하층문화 준형력은 초기에는 폭과 높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동형력에서 후기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상하로 길어지는 장통력으로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²³ 그러나 공족 깊이와 제작기법 차이를 기준으로 력 형식의 선후관계를 구분한 결과 대전자 묘지에서는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A형력 여섯 가지 아형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 동보적으로 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23 李經漢, 1980,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和類型」,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63~170쪽; 王立新·卜箕大, 1998, 「하가점하층문화에 관한 몇 가지 문제」, 『博物館紀要』 13, 24~48쪽; 馬晟, 2019, 「燕山南北地區夏至早商時期陶甬譜系新探」, 吉林大學, Doctoral dissertation, 7~22, 52쪽.

데, 이 현상은 기존 하가점하층문화 력 형식 변천²⁴과 일치하지 않는다.

발굴보고서에서는 력이 동반 출토된 모든 무덤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제작방식으로 제작된 A형력 3식, BV, C2가 포함된 경우만 2기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1기로 분류했다.²⁵ A형력 3식은 총 34개로, 1식(175개)과 2식(114개)에 비해 출토수량이 미미하다. BV와 C2도 각각 9개와 15개로 수가 적다.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력이 1기로 분류되어 무덤 시기 구분에 변별력이 없게 되었다. 더욱이 력 출토 무덤은 묘지 전체 무덤의 절반 남짓이므로 력이 출토되지 않은 무덤은 조영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력 형식을 기본으로 한 편년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토기조합 변화, 특정 토기의 출현과 공간분포 변화 및 출토방식 등을 분석,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이에 앞서 이 글에서는 우선 초보적으로나마 발굴보고서에서 1기로 폭넓게 분류된 력의 시기를 좀 더 세분해보고자 한다. 먼저 발굴보고서 시기 구분 기준으로 늦게 등장한 제작법으로 제작된 A형 3식, BV, C2는 후기로 분류한다. 나머지 력들은 동반 출토 양상을 교차 비교하여 선후관계를 좀 더 조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초기와 중기로 구분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이은 식이 동반 출토된 경우 늦은 식에 맞춰 시기를 분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력이 출토된 무덤들의 조영 시기를 초·중·후기 3개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력의 상대적 선후관계를 좀 더 세밀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AVⅧ 중 AVⅧa는 준형기(절복분) 바닥에 통형 공족 3개를 붙인 기종인 가(罍)와 유사한데, 가는 A형력 초기 형태로 간주된다. 또한 다른 A형 3식과 동반 출토되지 않았으므로 발굴보고서에서는 AVⅧ이 AI~AVI형 1식 및

24 하가점하층문화 준형력은 초기에는 폭과 높이 차이가 크지 않다가 후기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상하로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李經漢, 1980, 앞의 글, 文物出版社, 163~170쪽; 王立新·卜筭大, 1998, 위의 글, 24~48쪽; 馬晟, 2019, 위의 글, 7~22, 52쪽).

2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207쪽.

2식과 공존했다고 보았다.²⁶ AⅦ과 AⅧ은 대다수가 중기 단계 토기들과 동반 출토되고 일부가 초기, 후기 단계 토기들과 출토되므로 묘지 조성 초기 후반에 등장하여 중기에 많이 쓰이고 후기까지 연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Ⅶ·AⅧ을 중기 단계로 분류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AI~AⅦ형 1식은 초기, AI~AⅦ형 2식과 AⅦ·AⅧ은 중기, AI~AⅦ형 3식은 후기로 분류했다.

B형력 중 BI1은 A형력 1식과 2식, BⅡa와 함께 출토되었으나 A형력 3식 및 C2와는 함께 출토되지 않았다. 반면 BI2는 M702에서 C2와, M759에서는 AⅢ3과 함께 출토되었다. 따라서 BI형 1식은 중기, 2식은 후기에 속한다. BⅡ는 A형 1, 2, 3식과 모두 출토되어 초기부터 후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중기 단계로 분류했다. BⅢ은 출토량이 많지 않지만 C1과 함께 출토된 경우가 있으므로 중기로 분류했다. BⅣ는 통복에서 공족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통복 하단부를 셋으로 분할한 다음 안쪽으로 접어서 공족 3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간소화된 제작법은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난 방식이므로 BⅣ가 늦은 시기에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BⅣ는 모두 C형력 출토가 많은 북Ⅵ과 남a, 남b, 남c에서만 출토되었다. 남a M16과 북Ⅵ M1141에서는 C2와, 북Ⅵ M859에서는 AⅢ3과 함께 출토되어 후기로 분류했다. BⅤ는 소량 발견되었으며, 공족 제작방법이 BⅣ와 동일하여 후기로 볼 수 있다.²⁷

C형력은 2개 형식으로 나뉜다. 북Ⅵ·중b·남구에서는 1·2식이 모두 출토되었으나 북Ⅲ·북Ⅴ·중a에서는 1식만 소수 출토되고 2식은 출토되지 않았다. C1은 초기·중기 력과 출토되었으나 중기 력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기로 분류했다. C2는 공족 제작방식에서 BⅣ와 같은 맥락에 속하며 후기에 해당한다. C2와 동반 출토된 력으로는 공족 제작방법이 동일한 BⅣ, BI2가 있다. C2가 출토된 무덤 중 가장 시기가 이른 무덤은 C2와 AⅢ2가 함께 출토된

2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206쪽.

2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396쪽. (발굴보고서 본문 206쪽에는 북Ⅵ M769에서도 C2와 AⅢ3이 동반 출토되었다고 했으나 부록 「5-2. 묘장등기총표」 2에는 AⅢ1a로 기재되어 있어 묘장등기총표를 따른다.)

M512로 추정된다. M512에서 C2와 AVI2가 함께 출토된 것은 A형력 3식과 A형력 2식이 동반 출토된 것과 같은 현상이다. A형력 3식과 2식이 동반 출토된 무덤은 A형력 출토 무덤 392기 중 3기뿐으로, 제작법이 대체되는 과정에서 신규 제작법이 공존한 짧은 과도기를 나타낸다.²⁸

제작시기가 다른 력이 출토된 합장묘 M205에서도 력 형식 간에 시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M205는 30~35세 여성을 매장한 다음 묘광을 덮은 전토에 아동을 매장한 무덤이다. 벽감에서 AⅢ형 1a식이 발견되었고, 전토에 매장된 아동 유해 옆에서 C2가 발견되었다. 먼저 부장된 AⅢ1a는 초기 력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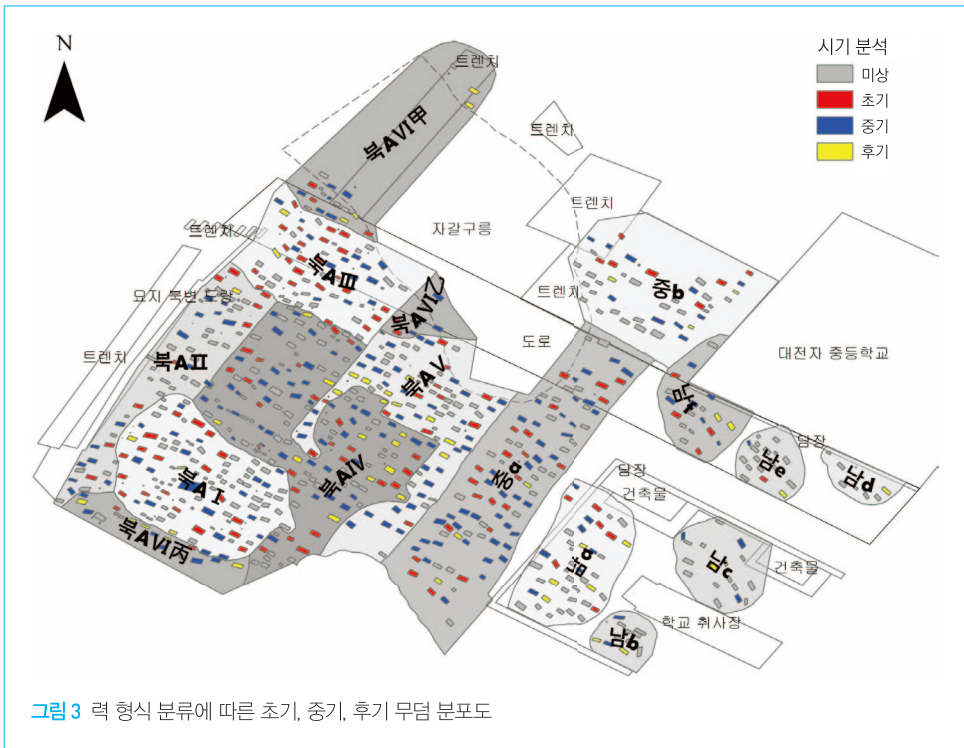


그림 3 력 형식 분류에 따른 초기, 중기, 후기 무덤 분포도

2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206~207쪽.

나중에 아이와 함께 매장된 C2는 대전자 묘지 후기를 대표하는 력 형식이다. 두 력의 부장 시간 차는 M205 아동의 연령을 넘지 않는다.²⁹

요약하면 AI~AV형 1식은 초기, AI~AV형 2식, AVⅦ, AVⅧ, BI1, BIⅡ, BⅢ, C1은 중기, AI~AV형 3식, BI2, BIⅣ, BIⅤ, C2는 후기에 해당한다. 대전자 묘지에서 발견된 토기들은 대부분 소성 온도가 낮아 실용기로는 부적합한데, 부장 직전에 명기(明器)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³⁰ 따라서 시기가 구분된 력 형식은 해당 력들이 부장된 무덤의 조영 시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발굴보고서에 1, 2기로 구분한 무덤들을 초·중·후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 무덤 분포도를 그려보았다(그림 3).³¹

2. 묘역 조성시기의 선후관계

무덤 분포도를 보면 묘지는 특정 묘역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시기가 거의 같은 A형력 아형들이 각기 다른 집중 분포구역을 형성한다는 데서 이미 예상된 결과이다. 초기 무덤이 거의 묘지 전역에 분포하므로 묘지 내에서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점은 여러 곳이다. 초기 무덤은 북I, 북Ⅲ, 북Ⅳ, 북Ⅴ, 중a에 분포하며, 북Ⅱ에서는 북I 및 북Ⅲ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한다. 후기 무덤은 주로 북Ⅳ 남부, 북Ⅳ와 북Ⅴ 경계지대, 북Ⅵ갑과 북Ⅵ병, 남구에 분포한다. 이로 보아 북구는 초기부터 묘지를 사용했으며, 일부 면적을 제외하면 후기에 이르기 전에 묘역을 거의 대부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구와 중b에 초·중기 무덤이 많지 않은 것은 초·중기로 분류된 A형력이 부장된 무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표 10).

2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207~208쪽.

3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67쪽.

31 발굴보고서에서는 1기와 2기로 구분했으나 이 글에서는 초·중·후기 3기로 구분했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208~209쪽).

〈표 10〉 묘역별 A, B, C형 력 출토 현황

구분	북 I	북 II	북 III	북 IV	북 V	북 VI	중 a	중 b	남 a	남 b	남 c	남 d	남 e	남 f	계
A형력 수	65	28	39	86	61	28	55	9	10	0	1	0	1	7	390
B형력 수	3	4	4	17	14	13	18	5	7	3	4	1	0	7	100
C형력 수			2		1	15	9	10	4	2		1	2	1	47
력 총 수량	68	32	45	103	76	56	82	24	21	5	5	2	3	15	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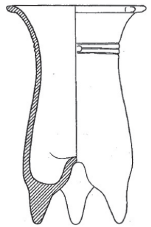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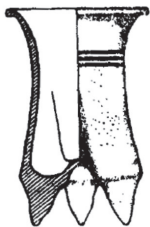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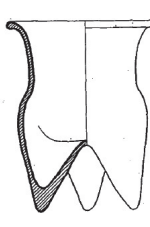
남구에서 A형력은 중a와 접한 남a 및 중b와 접한 남f에서 소수 출토되었고 중구에서 멀리 떨어진 묘역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출토 양상은 남구가 집중 조성된 시기에는 A형력 부장이 종료되었음을 시사하거나 남구에서 력 부장 방식이 북구 및 중구와 달랐음을 나타낸다.

무덤 분포도에 나타난 추세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대전자 묘지와 시기가 비슷한 범장자 묘지의 유물 출토 양상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³² 범장자 묘지는 묘제와 부장품에 따라 A, B, C 구역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B, C 구역이 묘제와 출토 유물에서 대전자 묘지와 비슷하다. 시기는 C구역이 B구역보다 조금 늦다. 범장자 B구역의 토기군은 A형력과 B형력, 관, 호, 정으로 구성되며 기본 토기조합은 력·관·호 또는 력·관 조합이다. M25에서 출토된 A형력은 공족 제작방식을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외견상 가랑이가 높고 목 부위에 현문 3줄이 있는 특징과 전체적인 기형이 대전자 M433에서 출토된 AIV1b와 공통점이 있다. B형력은 대전자 M303에서 출토된 BI1과 비슷하다(표 11).

범장자 C구역 M79에서 출토된 B형력은 대전자 M6 출토 BI2 및 M759 출토 BI2와 유사하다. 또 범장자 M79에서 출토된 가권족관은 가권족이 나팔형으로 외반한 형태로, 대전자 가권족관II2와 기형이 유사하다(표 12). 범장자 M79 토기조합은 B11, AVI3, 가권족관II2, 장통관II로 구성된 대전자 M759의 토기조합과 거의 같다. 범장자 C구역 토기군에서는 호가 사라지고, B구역에서는 소

32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1984, 앞의 글, 22~25쪽.

〈표 11〉 대전자 및 범장자 묘지 출토 력 비교(축척 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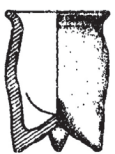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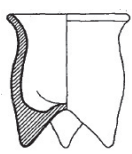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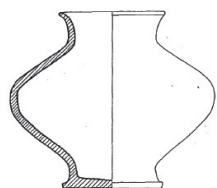
			
대전자 AIV1b식 (M433:1)	범장자 A형력(M25:1)	대전자 BI1식 (M303:1)	범장자 B형력(M25:6)

출처: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76, 80쪽;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1984, 24쪽.

량 출토된 가권족관이 대량으로 출토되어 력과 가권족관이 기본 토기조합을 이룬다. 또 직구통형(直口筒形) 력인 C형력이 나타난다. B구역에서 권족관도 출토된 것으로 보아 권족관과 가권족관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경쟁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전자 묘지에서 권족관과 가권족관은 동반 출토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전자 묘지의 BI1 출현과 력·관·호 토기조합은 범장자 B구역 시기에 해당하며, C형력 출현과 가권족관 집중 출토, 호 소멸은 범장자 C구역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호의 출토방식은 력·관·호 토기조합이 약 70%이며, 무덤 3기를 제외하면 정과 동반 출토되지 않았다.³³ 북구에서 호가

〈표 12〉 대전자 묘지 출토 력(축척 부동)

				
범장자 B형력 (M79:2)	대전자 BI2식 력 (M759:5)	대전자 BI2식 력 (M6:1)	범장자 가권족관 (M79:1)	대전자 가권족관 (M502:3)

출처: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80, 87쪽, 도판25;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1984, 25쪽.

〈표 13〉 구역별 가권족관 출토수량과 출토무덤 수

구분	출토수량	출토무덤 수	묘역별 무덤 수	묘역 내 출토비율
북구	80	68	542	12,5%
중구	19	19	143	13,3%
남구	63	58	113	51,3%
계	162	145	798 ³⁴	

가권족관과 동반 출토된 수는 정이 가권족관과 동반 출토된 수보다 훨씬 적다. 남구에서는 가권족관과 정, 가권족관과 발 조합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f 묘역 1257 무덤에서 유일하게 가권족관과 호 1개가 동반 출토되었다.

가권족관은 남구에서 출토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남구의 절반 가까이 출토되었다(표 13).

북구에서 북I은 출토가 없고 북Ⅲ에서 23개, 북Ⅵ에서 33개가 출토되어 편 중된 분포를 보인다(표 14). 중구는 중b에서 13개가 출토되어 중구 전체 출토량

〈표 14〉 묘역별 C형력 출토수량

형식	북I	북Ⅱ	북Ⅲ	북Ⅳ	북Ⅴ	북Ⅵ	중a	중b	남a	남b	남d	남e	남f	계
C							1							1
C I			2		1	9	8	5	3	1		1		30
CⅡ						6		3	1	1	1	1	1	14
C(잔)								2						2
계(묘역)			2		1	15	9	10	4	2	1	2	1	47
계(구역)	18						19		10					47

33 대전자 묘지에서 호와 정이 동반 출토된 무덤은 M463, M726, M751 등 3기이다.

34 발굴보고서 부록 「5-2. 묘장등기총표」에서 누락되어 정보를 알 수 없는 8기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의 2/3가 넘는다. 남구는 남a에서 20개, 남d에서 3개, 나머지 묘역에서는 8~11개로 고르게 출토되었다. 남구와 북Ⅵ은 C형력과 가권족관이 동반 출토되는 비율이 높다. 북구에서 C형력은 북Ⅵ에서 C1과 C2를 합해 15개가 출토된 것 외에는 C1이 북Ⅲ에서 2개, 북Ⅴ에서 1개 출토되었을 뿐이다. 중a에서는 C1만 출토되었고 중b에서는 C1과 C2가 모두 출토되었다.

B형력과 평저관 또는 가권족관의 동반 출토방식도 선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표 15). BI, BⅡ, BV는 평저관과 동반 출토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BⅢ과 BⅣ는 가권족관과 동반 출토량이 많아 BⅢ과 BⅣ가 늦은 형식임을 알려준다. B형력은 북Ⅳ, 북Ⅴ, 북Ⅵ, 중a, 중a와 인접한 남a, 중b와 인접한 남f에 집중되어 있고, 늦은 시기 B형력은 북Ⅵ과 남구에 분포한다.

북구에서는 B형력이 넓게 확산하지 못하고 늦은 시기 형식은 C형력과 마찬가지로 북Ⅵ과 중b, 남구에 주로 분포한다. 이러한 현상이 A, B, C형력의 출현 시기 차에 기인한다면 북Ⅵ을 제외한 북구와 중a에서는 A형력끼리 동반하다가

〈표 15〉 묘역별 B형력 출토수량

형식	북Ⅰ	북Ⅱ	북Ⅲ	북Ⅳ	북Ⅴ	북Ⅵ	중a	중b	남a	남b	남c	남d	남e	남f	계
BI1		3	2	8	9	3	11	3	1	2				5	47
BI2						2			3			1		1	7
BⅡa	1		1	4	4	1	3		1		1			1	17
BⅡb		1		3	1		4		1						10
BⅢ	2		1			2		2			1				8
BⅣ						2									2
BⅣa						2			1	1	1				5
BⅣb						1					1				2
BⅤ				2											2
계(묘역)	3	4	4	17	14	13	18	5	7	3	4	1	0	7	100
계(구역)	55					23		22						100	

B형력과 동반하는 수가 증가했으나 C형력이 출현할 무렵에는 무덤 조영이 거의 종료되면서 A형력 부장도 함께 종료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후 북I 서쪽 빈 공간에 북Ⅶ병, 중a의 연장선상에 있는 남a, 중b와 이어진 남f로 묘역이 확대되면서 남구 묘역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후기로 갈수록 토기 제작방식이 간략화된 것은 보편적인 경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작방식 간소화는 관에서도 볼 수 있다. BⅦ형과 BV형, C2 력이 몸통에서 다리를 제작한 것처럼 가권족관도 권족을 따로 만들어 붙이지 않고 몸통에서 권족을 만들었다. 북구와 중구에서 많이 부장된 A형력은 식이 변화할수록 제작방식이 점점 더 간편화되는 쪽으로 변화했는데, 3식이 되면서 부장 수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제작방식 간편화가 대량생산 또는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간편한 방식으로 소량만 만든 것은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대로 집중 출토 양상을 보이는 가권족관의 경우는 대량생산에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종합하면 부장토기 조합에서 A형력과 호의 소멸, 가권족관 집중 출토, C2 출토 등을 볼 때 남구는 범장자 C구역과 시기가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북Ⅶ과 중b에서도 호가 부장토기 조합에서 사라져 각각 1개, 5개밖에 출토되지 않았다. C형력 출토 양상을 볼 때 북Ⅶ과 중b는 남구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구간이 있으며, C2 출토는 북구에서 가장 독자성이 두드러지는 북I과 북Ⅶ병의 선명한 경계를 이룬다.

IV. 대전자 묘지 존속기간 추정

학계에서는 대전자 묘지 연대에 관해 대체로 발굴보고서를 따르고 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M454와 M759에서 장구에 사용된 목재를 채취해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하고 수료교정을 거쳐 교정값 1685~1463 BCE(M454)와 1735~1517 BCE(M759)를 얻었다.³⁵ 이 값을 근거로 묘지 연대를 기원전 16세기경으로 추

정했다. 또 두 측정값이 겹치는 시기값(1685~1517 BCE)을 토대로 묘지가 100~150년 유지된 것으로 보았다.³⁶ 그러나 방사성탄소연대 범위는 오차범위이며 존속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존기간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³⁷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이 두 무덤이 각각 기원전 17~15세기, 18~16세기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음을 알려주므로 기원전 18~15세기에 묘지가 존재했고 이 시기는 하가점하층문화 중·후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로완 플래드(Rowan Flad)는 라스 요안슨(Lars Jørgensen)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대전자 묘지 존속기간을 추정했다.³⁸

$$\text{인구수} = (\text{무덤 수} \times \text{평균수명}) / \text{묘지 사용기간}$$

플래드가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① 무덤 수는 발굴보고서 무덤 분포도에 기재된 806기로 보았다.
- ② 발굴보고서에서 연령이 파악된 인골들로부터 구한 평균수명을 27.4세로 계산했다.
- ③ 인구수 계산에는 대전자 거주유적이 최대한 이용되었을 때 집자리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활용했다. 대전자 거주유적과 크기가 비슷한 다른 하가점하층문화 거주유적에서는 전형적으로 평균면적이 4㎡인 집자리 300기가 발견된다³⁹는 셀라크의 견해에 따라 집자리로 사용된 총면적을

3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208쪽.

3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208~209쪽.

37 Sheridan Bowman 저, 이선복 역, 2014,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사회평론, 93~96쪽.

38 Rowan Flad, 2001, "Ritual or Structure? Analysis of Burial Elaboration at Dadianzi, Inner Mongolia,"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 3, pp. 33~35; 李經漢, 1980, 앞의 글, 163~170쪽.

39 Gideon Shelach, 1996, "The Emergence of Complex Society in Northeast China from the Fourth to the First Millennia B.C.: a Perspective from the

1,200㎡로 계산했다. 나롤(Naroll)은 여러 문화권에서 개인 1인이 점유하는 면적이 평균 10㎡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롤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1,200㎡에 거주한 인구는 120명이 된다.

- ④ 요안슨의 계산식 [인구수=(무덤 수×평균수명)/ 묘지 사용기간]에서 [묘지 사용기간=(무덤 수×평균수명)/ 인구수]이다. ① ② ③에서 구한 값을 대입하면 묘지 사용기간은 184년이다. 즉, 대전자 거주유적이 최대한 점유되었을 때 인구는 120명이고, 묘지 사용기간은 184년이 되는데, 플래드는 이 값이 절댓값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대전자 거주유적이 최대한 점유되었을 때 인구는 100~150명이고, 묘지는 200년 정도 사용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은 대전자 묘지의 상·하한 연대에 근삿값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개개 무덤의 상대편년에는 의미가 없다. 플래드의 방법에서는 1인당 점유 면적 10㎡가 집자리 평균 크기인 4㎡의 두 배도 넘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인구가 120명이므로 거주유적이 최대한 점유되었을 때 집자리 300기 중 180기는 사용되지 않았거나 한 사람이 2.5기를 사용했다는 말이 된다. 집자리를 1명씩 사용했다고 해도 거주인구는 300명이다. 가족단위로 사용했다면 집자리 1기당 3~4명이 거주했다고 가정할 때 900~1,200명이다. 논리적 오류가 있는 추산법이다.

Ⅲ장 1절에서 대전자 묘지에서 출토된 력이 형식에 따른 제작시기 차이가 크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력이 부장된 초·중·후기 무덤의 조영 시기 차이가 크지 않다는 뜻이며, 묘지가 비교적 단기간에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절반가량의 무덤에는 력이 부장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력 부장 무덤을 조영한 기간이 짧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무덤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무덤 간에 서로 침범하는 경우가

Chifeng Area of Inner Mongoli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p. 72~78.

없는 것으로 보아 묘지가 사용된 동안 무덤 봉분이나 비석 등 어떠한 형태로든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이 유지,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묘지가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면 초기에 조영된 무덤 표식이 사라지고 기존 무덤을 파괴하고 새로 무덤을 만드는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로완 플래드의 계산식에 따르면 대전자 묘지 존속기간, 즉 묘지 사용기간은 묘지에 바로 접해 있는 거주유적의 인구수와 관련 있다. 거주 인구가 많을수록 무덤을 만드는 빈도가 잦아 묘지가 빠르게 채워진다. 발굴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사망자 평균연령은 27.5세, 사망자 수는 820명이며 이 값은 각각 평균수명과 무덤 수에 해당한다.⁴⁰ 여기서 사망자는 빠짐없이 모두 묘지에 매장되었다고 가정한다. 인구수는 거주유적 발굴 자료를 통해 추정한다. 셀라크는 대전자 거주유적과 규모가 비슷한 다른 하가점하층문화 거주유적들의 경우 평균 4㎡ 크기 집자리가 300기 정도 발견되므로 대전자 거주유적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자 거주유적은 남북 약 350m, 동서 약 200m인 타원형으로 총면적이 약 6만㎡이며, 대형 유적에 속한다. 그중 유일하게 제I지점에서 약 100㎡를 발굴하여 5㎡ 규모의 소형 집자리 5기를 발견했다(그림 2).⁴¹ 100㎡ 안에 20㎡당 집자리 1기가 있는 셈이므로 총 거주유적 6만㎡에는 집자리 3,000기가 있게 된다. 이 값은 발굴 면적과 발견된 집자리 수를 너무 작은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것이므로 오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른 예로 풍하유적에서는 650㎡에서 집자리 18기가 발견되어 평균 36㎡당 집자리 1기가 있었다. 유적 면적이 10만㎡인 지가영자에서는 유적 1/3을 발굴하여 집자리 216기를 발견했으므로 유적 내에 존재한 집자리를 648기로 보면 154㎡당 집자리 1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⁴²

40 연령이 파악된 인골로부터 얻은 사망자 평균연령은 약 27.5세이다.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무덤은 피장자 다수가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실제 사망자 평균 연령은 이보다 낮을 것이다. 무덤 총 806기 중 2인 합장묘가 14기이므로 총 사망자 수는 820명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339~361쪽).

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7~17쪽.

42 귀다순·장성더,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상)』, 동북아역사재단, 572~573쪽.

대전자 거주유적 6만㎡에 36㎡당 집자리 1기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총 집자리 수는 1,667기가 되며, 154㎡당 집자리 1기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390기가 된다. 따라서 셀라크가 제시한 집자리 300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집자리를 300기, 집자리 1기당 부부 중심으로 구성된 평균 가족 수(거주인원)를 3~4명⁴³이라고 하면 대전자 거주유적에는 900~1,200명이 동시 거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인구수를 계산식에 대입하면 대전자 묘지는 19~25년 존속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묘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시점과 폐기된 시점에는 인구가 더 적었을 것이다. 력이 출토된 무덤 중 초기 무덤이 134기, 중기 무덤이 214기, 후기 무덤이 56기로, 중기에 인구가 가장 많았고 후기에는 인구가 급감함을 알 수 있다. 묘지는 거주유적보다 나중에 조성되었을 것이므로 존속기간도 거주유적보다 짧을 것이다. 따라서 대전자 묘지와 거주유적은 30년 정도 존속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 수치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망자가 모두 대전자 묘지에 묻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묘지에 매장되지 않은 사망자가 존재했다면 대전자 묘지 조성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며,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전자유적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적봉시 홍산구(紅山區) 소재 이도정자(二道井子) 유적의 예를 볼 때 오랜 기간 사용된 거주유적에서는 집자리 간 중복 현상이 잦고 집자리 바닥에 진흙을 여러 층 바른 흔적이 발견된다.⁴⁴ 대전자유적에서 발굴된 집자리 5기는 중복현상이 거의 없고, 모두 바닥에 진흙을 한 층 씩씩에 바르지 않았다.⁴⁵ 이는 이 집자리가 폐기될 때까지 짧은 기간 사용된 후 재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가점하층문화는 분포 면이 광활하여

43 대전자 거주유적에서 발견된 집자리 평균면적 5㎡와 셀라크가 제시한 집자리 평균면적 4㎡를 평으로 환산하면 각각 1.5평과 1.2평이다. 고대인의 체격을 감안해도 4명 이상이 거주하기에는 협소하다.

44 曹建恩, 2010, 「內蒙古赤峰市二道井子遺址的發掘」, 『考古』 2010-8, 15~19쪽.

4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7~11쪽.

앞선 신석기시대 문화 퇴적이 없는 곳에 만들어진 유적이 전체 유적의 92%이다.⁴⁶ 대전자 묘지가 생토(生土) 위에 조성된 것도 대전자유적이 신석기인들은 정주한 적 없는 지역에 하가점하층문화인들이 처음 건설한 촌락임을 알려준다.

대전자 묘지에서는 병기에 의해 훼손된 인골이나 집단 매장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또 대부분 무덤에서 특정 조합의 토기군과 유물들이 발견되고 무덤 배열이 질서정연한 점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에 800기가 넘는 무덤을 수용한 대규모 묘지가 조성된 것은 이에 상당하는 인구가 묘지 주변에 거주했음을 알려준다. 그 배경으로 같은 문화전통에 속한 여러 인구집단이 이동하여 인근 지역에 크고 작은 촌락을 형성하고 다른 문화전통에 속한 소규모 인구집단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공동묘지를 조성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같은 시기에 묘역을 나누어 동일한 제작법으로 모양만 조금씩 다른 력을 만들어 부장한 현상에 대해 족속(族屬)에 따라 력 형태가 달랐다고 보았다.⁴⁷ 그렇다면 A형력 아형들의 1식 출현시기가 같은 것은 대전자유적이 건설될 시점부터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인원이 함께 거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가점하층문화 시기는 그전 어느 시기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중심취락이 형성되고 사회복합도가 증가한 시기이다. 일정 규모에 도달한 촌락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인구밀도가 높은 취락에서는 인구압박과 이에 따른 자원압박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회구성원의 일부는 경쟁이 덜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이주하게 된다.⁴⁸

대전자 거주유적을 둘러싼 토축 성벽과 돌을 깬 도로 유구를 고려하면 많은

46 國家文物局 主編, 2003, 『中國文物地圖集: 內蒙古自治區分冊(上·下冊)』, 西安地圖出版社; 國家文物局 主編, 2009,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上·下冊)』, 西安地圖出版社.

4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214쪽.

48 Christian E. Peterson et al., 2009, "Lower Xiajiadian Period Demography and Sociopolitical Organization,"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Vol. 9, p. 34.

인력 동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전자유적은 재지민들이 건설한 자생적인 촌락보다는 인구압력에 대응한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건설된 대규모 촌락일 가능성이 있다. 입지를 볼 때 대전자유적은 하가점하층문화 중심지역 중 한 곳인 교래하 동쪽에 위치하며 대릉하 지류인 망우하를 통해 대릉하 유역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하가점하층문화가 노로아호산맥 이동으로 확산하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V. 시기별 무덤 분포도를 활용한 연구방법의 예

앞에서 살펴본 시기별 무덤 분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치화한 대전자 묘지 발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기별 묘지 등급, 인골 유형, 주변 문화와의 교류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대전자 묘지 등급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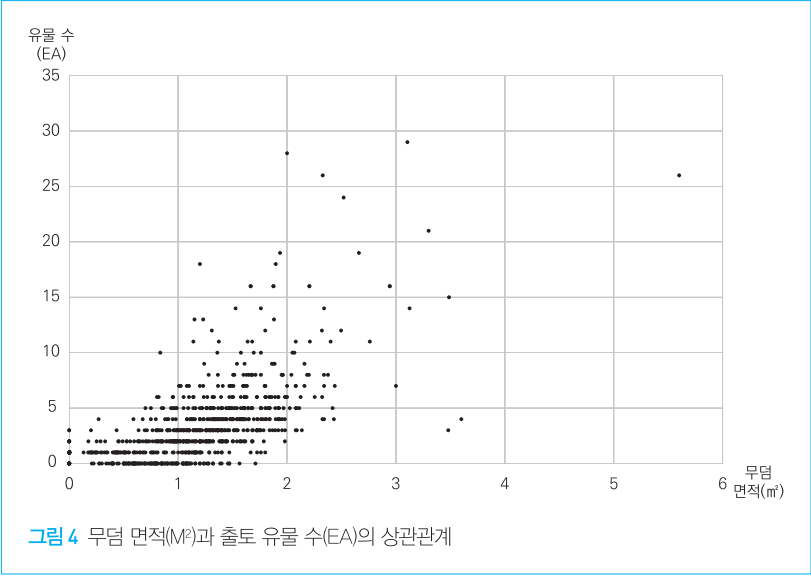
대전자 묘지에서 무덤 묘광의 크기와 출토 유물 수의 상관성을 토대로 무덤 등급을 나누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⁴⁹ 무덤 크기와 출토 유물 수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그림 4).⁵⁰ 무덤 규모가 클수록 출토 유물도 많아 무덤 등급이 구분되며, 무덤 등급 차이는 피장자의 정치적·사회경제적 지위 차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

출토 유물이 10개 이상인 무덤은 총 41기로 전체 무덤의 상위 5%에 해당한다. 평균면적이 2.1㎡로, 전체 평균면적 1.14㎡보다 훨씬 크며 3㎡가 넘는 무덤

49 Rowan Flad, 2001, 앞의 글, pp. 33~35; 彭鵬, 2011, 「墓葬等級分析中一種量化方法的思考-以大甸子墓地為例」, 『邊疆考古研究』 2011-1, 54~72쪽.

5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338~409쪽.

도 발견되었다(표 16). 채회토기 총 424개 중 117개, 규·화·작 총 24개 중 22개, 금속기 총 32개 중 17개가 이 무덤들에서 출토되어 위세품이 소수 무덤에서 집중된 현상을 보인다.



〈표 16〉 출토 유물이 10개 이상인 무덤 목록

무덤 번호	토광 면적(m²)	구역	연령	성별 추정	장구 유형	유물 총계	주요 출토 유물			
							鬲· 盃·爵	채회 토기	斧·鉞· 紡輪	청동기
371	3.1	중a	40대	남성	목관	29				납지팡이 머리(1개)
454	2.0	북Ⅳ	미상	여성 (추정)	목관	28		2	방추차	청동반지(4개)
726	5.6	북Ⅰ	50대	남성	목관	26	2	9	부	
612	2.3	북Ⅵ	40대	남성	목관	26	2	6		
905	2.5	북Ⅱ	50대	남성	목관	24	2	10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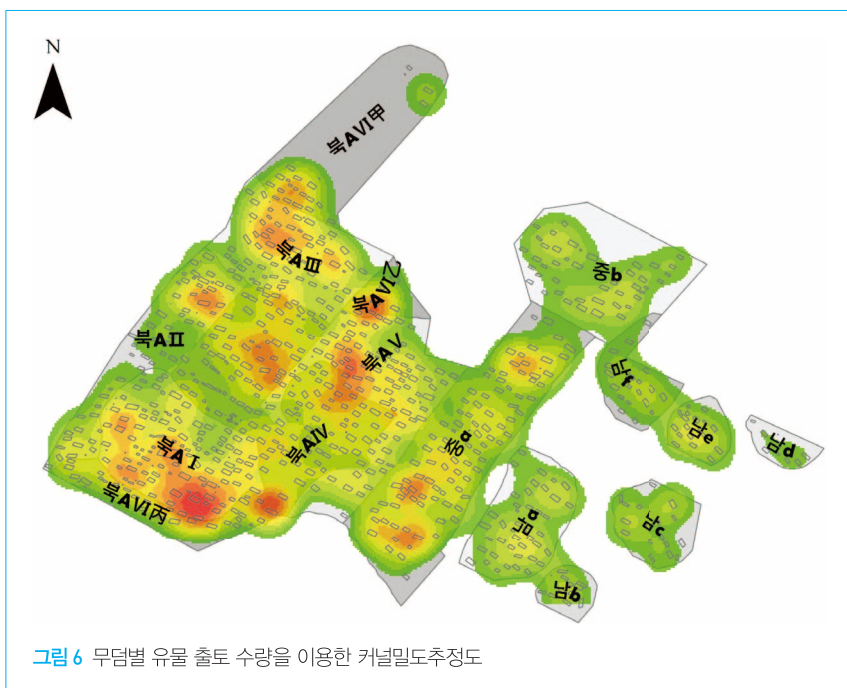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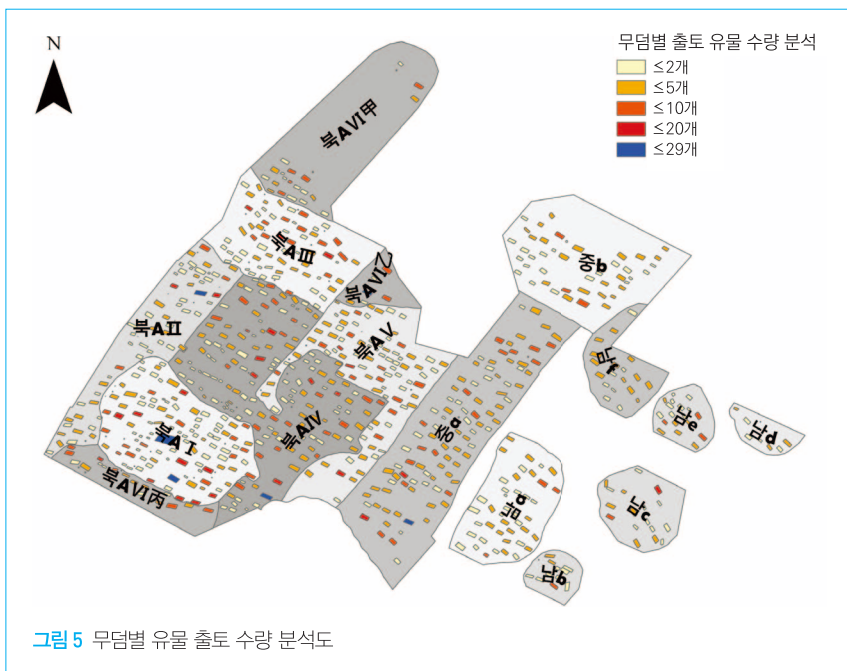
무덤 번호	토광 면적(㎡)	구역	연령	성별 추정	장구 유형	유물 총계	주요 출토 유물			
							鬻· 盃· 爵	채회 토기	쥬·鉞· 紡輪	청동기
672	3.3	북 I	30대	미상	목관	21	2	5	부	청동반지(1개)
648	1.9	북 I	20대	남성	목관	19		2	부	
453	2.7	북Ⅳ	20대	여성	목관	19		2		청동귀고리(1개)
810	1.2	북Ⅳ	성인	여성	토광	18		2	방추차	
388	1.9	중a	40대	남성	목관	18		5	부	
43	1.7	남C	60대	남성	목관	16		2		청동지팡이 머리 (1개)
853	2.9	북 I	20대	남성	목관	16	1	6	월	
666	2.2	북 I	20대	남성	목관	16	2	3	부	
715	1.9	북Ⅳ	30대	남성	목관	16		6	부	청동지팡이 머리, 끝(각 1개)
677	3.5	북 I	50대	여성	목관	15	2	6		청동반지(2개)
931	3.1	북Ⅱ	40대	여성 (추정)	목관	14	2	5		
470	1.5	북Ⅳ	30대	남성	목관	14		2		
507	1.8	북Ⅴ	30대	남성	목관	14			부	청동반지(2개)
419	2.3	북Ⅴ	50대	미상	목관	14		7		
706	1.9	북 I	30대	남성	목관	13	2	5	부	
1153	1.2	북Ⅲ	10대	여성	토광	13			방추차	
516	1.2	북Ⅴ	20대	남성	목관	13		2	부	금제귀고리(1개)
818	2.3	북 I	20대	여성	토광	12	2	4		
867	2.5	북Ⅱ	20대	여성	목관	12	1	3	방추차	
1147	1.8	북Ⅲ	40대	남성	목관	12		3		
683	1.3	북Ⅳ	20대	남성	생토 이층대	12		1	부	청동지팡이 머리 (1개)
782	1.4	북 I	미상	남성 (추정)	토광	11			부	청동반지(1개)

무덤 번호	토광 면적(m ²)	구역	연령	성별 추정	장구 유형	유물 총계	주요 출토 유물			
							鬲· 盃·爵	채회 토기	斧·鉞· 紡輪	청동기
645	2.1	북 I	20대	남성	목관	11		2	월	
659	2.2	북 I	20대	남성	목관	11		2	월	
1115	1.6	북Ⅲ	20대	남성	목관	11		2	부	
732	2.8	북Ⅳ	40대	남성	목관	11		2	부	
713	2.4	북Ⅳ	50대	남성	목관	11	2	1		
790	1.1	북Ⅵ	10대	남성 (추정)	토광	11			부	
317	1.7	중a	10대	여성	목관	11		3	방추차	

무덤별로 출토된 유물 수를 지도로 표현하면 <그림 5>, <그림 6>과 같다. 북 I의 밀집도가 높고, 북Ⅱ~북Ⅵ·중a구는 평균 이상, 중b, 남a~남f는 밀집도가 낮다. 북구와 중a에서는 출토 유물이 밀집된 구역이 나타나는데, 피장자가 각 묘역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수치화하여 총 806기 무덤의 유물 출토 양상을 묘역별·시기별로 표현할 수 있다(표 17, 그림 7). 시기별 출토 유물 평균수량과 무덤 평균면적은 묘지 전체 평균을 보면 시기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묘역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북구는 전반적으로 초기에 출토 유물이 많다가 중기에 최대 수량에 도달한 후 후기에 조금씩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예외적으로 북Ⅴ는 출토 유물이 초기에는 적고 중·후기로 갈수록 많아진다. 중구는 초기에는 수량이 많다가 중·후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남구는 무덤 수가 적어 유물 수 변화 추이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중·후기에 출토 유물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북I은 후기로 갈수록 출토 유물 수나 무덤 평균면적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수치가 크다. 대전자 사회에서 비교적 지위가 높은 족속의 묘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Ⅴ는 초기에는 낮은 지위에 있다가 후기로 갈수록 지위가 높아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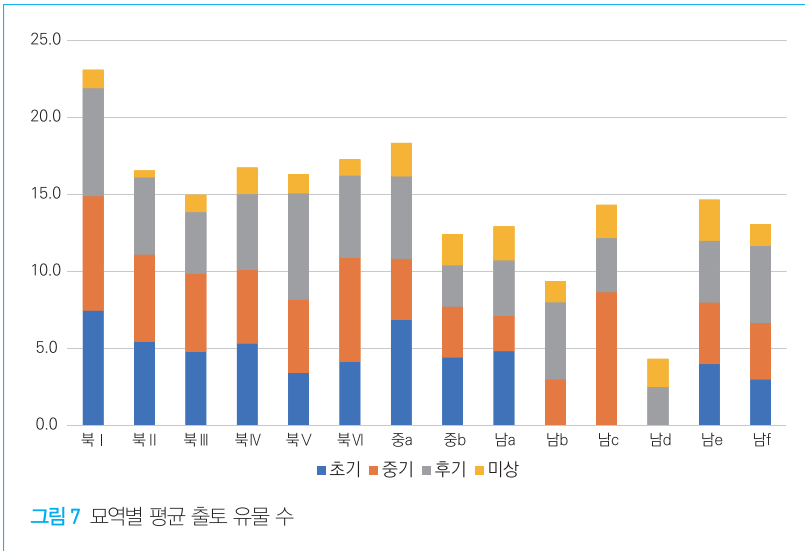


알 수 있다. 남구의 족속들은 초기에는 세력이 작고 지위가 낮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세력이 커지고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시기 미상인 무덤도 절반에 가깝다. 이들 무덤은 평균면적이 1㎡ 안팎이거나 그 이하가 대부분이며, 크기로 보아 아동 무덤으로 추정된다. 아동 무덤은 부장품이 적어 무덤 연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표 17〉을 그래프로 옮기면 〈그림 7〉과 같다.

〈표 17〉 시기별·묘역별 출토 유물 수와 무덤 면적의 상관관계

구분	무덤 수					평균 출토 유물 수(개)					무덤 평균면적(㎡)				
	초기	중기	후기	미상	총계	초기	중기	후기	미상	총계	초기	중기	후기	미상	총계
북Ⅰ	19	21	3	70	113	7.5	7.4	7.0	1.2	3.6	2.2	1.8	1.6	0.7	1.1
북Ⅱ	9	15	1	40	65	5.4	5.7	5.0	0.5	2.4	1.7	1.6	1.8	0.6	1.0
북Ⅲ	23	14	2	34	73	4.8	5.1	4.0	1.1	3.1	1.2	1.4	1.0	0.7	1.0
북Ⅳ	24	44	12	73	153	5.3	4.8	4.9	1.7	3.4	1.4	1.4	1.5	0.8	1.1
북Ⅴ	12	34	9	39	94	3.4	4.8	6.9	1.3	3.3	1.3	1.4	1.5	0.8	1.2
북Ⅵ	7	16	9	17	49	4.1	6.8	5.3	1.1	4.1	1.3	1.4	1.4	0.6	1.1
중a	22	41	3	32	98	6.9	4.0	5.3	2.2	4.1	1.6	1.4	1.2	1.0	1.3
중b	7	10	3	25	45	4.4	3.3	2.7	2.0	2.7	1.7	1.3	1.0	1.2	1.3
남a	6	7	5	24	42	4.8	2.3	3.6	2.2	2.8	1.6	1.3	1.4	1.2	1.3
남b	0	2	2	8	12	—	3.0	5.0	1.4	2.3	—	1.3	1.2	0.8	1.0
남c	0	3	2	12	17	—	8.7	3.5	2.2	3.5	—	1.7	1.0	1.0	1.1
남d	0	0	2	6	8	—	—	2.5	1.8	2.0	—	—	0.6	0.9	0.9
남e	1	1	1	15	18	4.0	4.0	4.0	2.7	2.9	1.3	0.8	1.1	1.0	1.0
남f	4	6	2	7	19	3.0	3.7	5.0	1.4	2.8	1.2	1.1	1.6	1.1	1.2
총계	134	214	56	402	806	5.4	5.0	5.0	1.5	3.3	1.5	1.4	1.4	0.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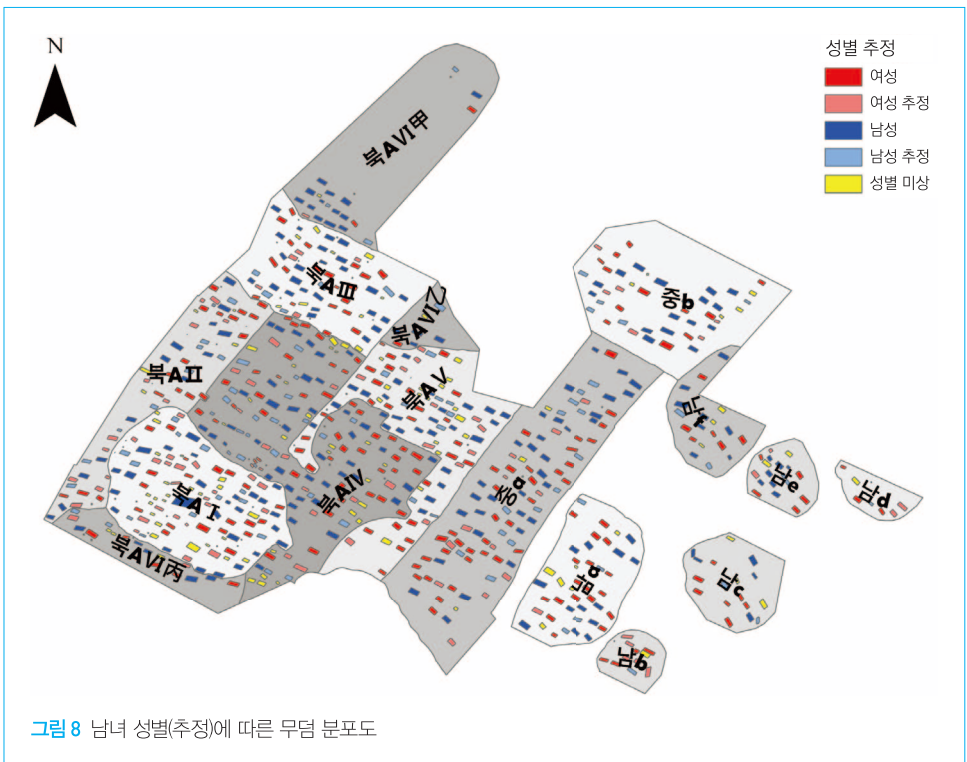


〈표 18〉에서는 남녀 성별 차이에 따른 출토 유물 수와 무덤 면적 크기 차이를 살펴보았다. 인골 분석을 통해 피장자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무덤, 인골 분석으로는 성별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피장자의 얼굴 방향과 부·월 혹은 방추차 부장으로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무덤, 성별 구분이 불가능한 무덤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그림 8).

〈표 18〉 피장자 성별에 따른 출토 유물 수와 무덤 면적

구분	성별	무덤 수	평균 출토 유물 수	무덤 평균면적(m ²)
인골 분석으로 성별 추정	남	234	4.92	1.48
	여	226	3.64	1.36
얼굴 방향·부장품으로 성별 추정	남(추정)	96	2.59	1.04
	여(추정)	98	2.58	1.09
성별 구분 불가	미상	152	1.31	0.40
합계	합계	806	3.01	1.14

성별에 따른 유물 수는 남성이 4.92개, 여성이 3.64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무덤 면적도 남성 무덤이 여성 무덤보다 조금 더 큰데, 남녀 체격에 따른 차이도 있을 것이다. 피장자의 성별이 추정된 무덤들은 피장자의 성별이 확정된 무덤보다 면적이 작고 출토 유물 수도 적다. 이런 무덤들은 미성년인 청소년과 아동 무덤으로 추정되며, 성인에 비해 인골 강도가 약해 빨리 부식된 것으로 보인다. 피장자 성별이 미상인 무덤은 인골 분석과 부장 유물로도 성별을 판별할 수 없는 무덤이다. 출토 유물 수가 적고 무덤도 매우 작아 대부분 아동 무덤으로 보인다. 피장자에 따른 무덤 등급은 성인 남성 무덤이 가장 높고, 성인 여성 무덤이 그다음이며, 아동 무덤의 등급이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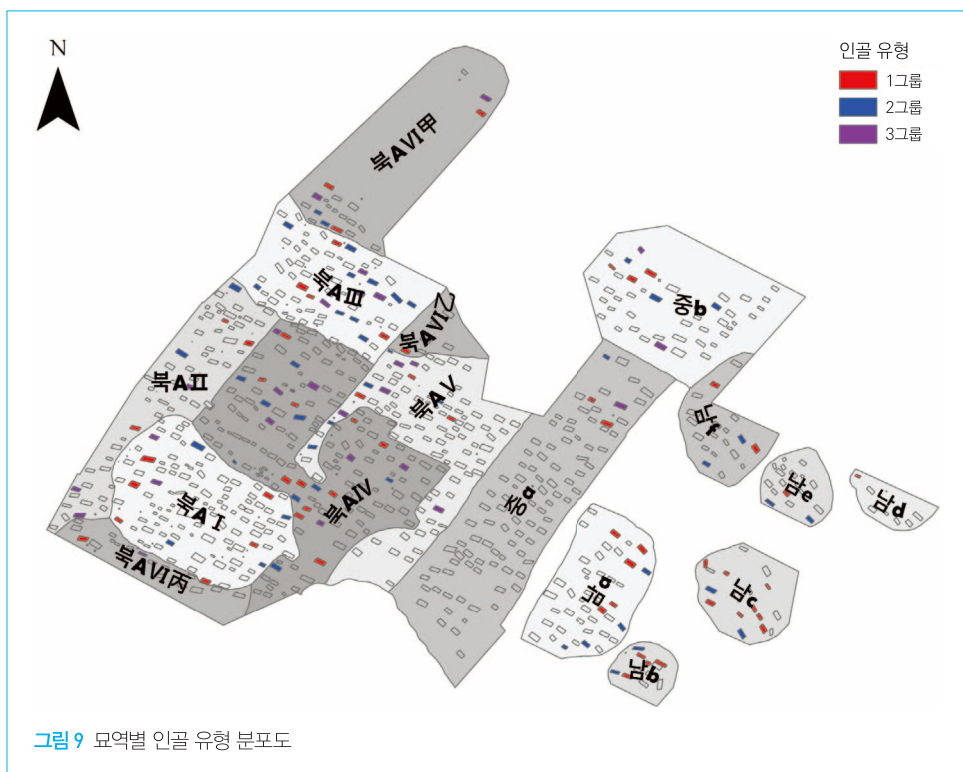


2. 인골 유형 분석

대전자 묘지에서 발견된 머리뼈는 총 161개로는 동북아시아 고대 종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실측 가능한 것은 모두 134개로 남성 머리뼈가 66개, 여성 머리뼈는 68개이다. 형질 분석결과 머리뼈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그룹은 중장두형(中長頭型)으로, 머리뼈가 높은 형과 머리뼈가 좁은 형이 있다. 안면 높이와 이마 너비가 평균에 속하며, 얼굴 형태는 상대적으로 좁고 길다. 코와 눈언저리 형태, 얼굴 편평도도 평균에 해당한다. 2그룹은 원두형(圓頭形)으로 머리뼈가 높은 형과 중간인 형이 있다. 얼굴이 높고 넓으며 안면이 편평하고, 코가 낮고 넓은 편이다. 눈언저리는 약간 낮고 턱이 편평하다. 3그룹은 머리가 짧고 높다. 기형적인 머리뼈 형태로 후두부가 편평한 편두(扁頭)가 발견된다. 머리뼈가 매우 둥근 형태가 많고 높은 머리뼈와 중간 정도 넓은 머리뼈가 함께 발견된다. 안면이 넓고 편평한 편이며 코가 매우 높고 눈언저리 높이는 평균이다.⁵¹

세 그룹의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면 대전자 묘지 피장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유형에는 1그룹이, 2유형에는 2·3그룹이 해당한다. 머리 형태는 1그룹은 좁고 길며, 2·3그룹은 상대적으로 넓다. 이마 형태는 1그룹은 중간 정도가 가장 많고, 2·3그룹은 좁은 이마가 많다. 코의 형태는 1그룹은 중간이 가장 많고, 2·3그룹은 넓은 코가 많은 편이다. 눈언저리 형태는 양 눈 사이 폭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 종류는 세 그룹이 모두 평균적인 눈언저리가 많다. 눈언저리가 낮은 형태와 높은 형태도 있는데, 높은 형태는 1그룹에서만 발견된다. 두 번째 종류는 눈언저리가 높은 경우가 좀 더 많은데, 1·3그룹에서 나타나고 2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턱은 세 그룹 모두 편평한 턱이 주를 이룬다. 치아 각도는 돌출형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세 그룹의 분포도는

5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 編著, 1998, 앞의 책, 224~322쪽; 朱泓, 1998, 「중국 동북 지구의 고대 종족」, 『博物館紀要』(13), 5~23쪽.



〈그림 9〉와 같다.

각 구역별 인골 형태에 따른 분포 양상은 〈표 19〉에 정리했다. 묘지 중심에 위치한 중a와 그 주변인 북v 남부, 남a 북부에서는 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인골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북구와 중구에서는 1·2·3그룹 모두 발견되지만, 남구에서는 1·2그룹만 발견되었다. 남구에 후기 무덤이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묘지 후기로 갈수록 편두 현상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인골 형태를 무덤 조성 시기와 매치하면 〈표 20〉으로 정리된다.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인골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초기에는 1유형과 2유형이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다가 중기부터 2유형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두 유형이 초기부터 각 구역에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묘지가 조성되기

〈표 19〉 묘역별 인골 유형 분포

구역	1유형	2유형		합계
	1그룹	2그룹	3그룹	
북Ⅰ	6	4	2	12
북Ⅱ	3	2	3	8
북Ⅲ	4	10	4	18
북Ⅳ	11	9	8	28
북Ⅴ	3	5	5	13
북Ⅵ	5	2	3	10
중a	2	1	1	4
중b	3	3	2	8
남a	5	4	0	9
남b	4	2	0	6
남c	8	2	0	10
남d	1	0	0	1
남e	1	2	0	3
남f	2	2	0	4
합계	58	48	28	134

〈표 20〉 시기별 인골 유형 분포 비율

시기	1유형		2유형				합계
	1그룹		2그룹		3그룹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초기	17	52%	9	27%	7	21%	33
중기	14	33%	16	37%	13	30%	43
후기	4	31%	5	38%	4	31%	13
미상	23	51%	18	40%	4	9%	45
합계	58	43%	48	36%	28	21%	134

시작한 때부터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가점하층 문화 사회가 대전자유적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갈래가 다른 사람들이 공존한 사회임을 의미한다. 대전자 묘지에서 묘제가 달라도 측신직지장과 성별에 따른 얼굴 방향 규칙이 엄격히 준수된 점은 족속 차이를 뛰어넘는 동일한 정체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주변 문화와의 교류관계 분석

대전자 묘지에서는 중원지역 이리두문화와 요동지역 고대산문화, 북방계 초원 문화의 장례 풍습과 이들 문화 특징이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그림 10). 이리두문화 요소로는 꺾(鬲), 화(盃), 작(爵) 형태의 토기와 고형칠목



기(觚形漆木器)가 있다. 규, 화, 작은 모두 13기 무덤에서 출토되었는데 하가점 하층문화 력·관과 3~4개 토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어서 다른 무덤에 비해 토기 부장품이 많은 편이다. 고형칠목기는 6개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규(또는 화) 및 작과 함께 출토되었다. 고대산문화 요소 토기들도 발견되어 발굴보고서에서는 이를 을(乙)형 토기로 분류했다.⁵² 총 11기 무덤에서 을형 토기 12개가 출토되었으며 기형으로는 발, 관, 호가 있다. 태토의 색상, 제작법과 형태 등이 신민(新民) 고대산문화 토기와 유사하다. 고대산문화 토기는 대부분 무덤에서 1개씩 출토되며 력 등 하가점하층문화 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외에 소형 청동 장식

5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앞의 책, 67쪽.

품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24기 무덤에서 귀고리 17점, 반지 9점, 지팡이 또는 나무자루 머리 4점, 납으로 만든 방패(倣貝) 1점이 출토되었다. 또 금귀고리를 부장한 무덤도 1기(M516) 있다. 소형 청동제·금제 장신구를 부장한 무덤은 극히 일부이며, 북방 초원 지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금속기가 출토된 무덤은 피장자 연령이 낮은 일부 무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장품이 풍부한 편으로 금속기가 위세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외부 문화 요소들이 발견된 무덤들도 기본적으로 대전자 묘지의 기본 묘제를 따르고 하가점하층문화 유물들이 부장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교류한 주변 문화 요소가 하가점하층문화에 흡수, 융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 화, 작은 이리두문화의 기형과 유사하나 태토가 얇고 태질이 고우며 북방 특징인 비점문(鏤點紋)이 장식되어 있어서 이리두문화권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하가점하층문화 지역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⁵³ 따라서 직접적인 인적 왕래보다는 간접적인 문화교류의 산물로 보인다. 특히 북I묘역에서 규, 화, 작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 묘역 피장자들이 이리두문화권과 연결된 집단으로서 교류를 주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고대산문화 토기는 소량만 발견되었고 대전자유적과 고대산문화권의 거리가 가까워 대전자유적에서 직접 생산했다기보다는 현지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 대해유적, 평정산유적 무덤에서도 고대산문화 특징이 있는 토기가 발견되었고, 고대산문화 유적들에서도 하가점하층문화 요소가 많이 발견된 것을 보면 두 문화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인적 교류도 활발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타 문화 요소들이 있는 토기가 출토된 무덤들의 시기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이리두문화 요소가 있는 토기는 주로 북구에서 발견되었으며, 초기 무덤에서 6점, 중기 무덤에서 7점, 후기 무덤에서 1점이 발견되어 이리두문화와의

5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위의 책, 66~67쪽; 杜金鵬, 1995, 「試論夏家店下層文化中的二里頭文化因素」, 『華夏考古』 1995-3, 57~62쪽; 권다순·장성덕, 2008, 앞의 책, 549쪽.

〈표 21〉 타 문화 요소 부장품이 출토된 무덤

구분	출토 유물	시기	묘역	출토 무덤 번호	구분	출토 유물	시기	묘역	출토 무덤 번호
이리두문화 요소	규·화·작	초기	북 I	666, 672, 828	북방계 초원문화 요소	청동기	초기	북 I	672, 782
			북Ⅱ	867				북Ⅳ	453, 454, 463
			북Ⅳ	472				중a	371
			중a	1215				중b	1265
		중기	북 I	677, 726, 853			중기	북 I	677, 756
			북Ⅱ	905, 931				북Ⅳ	683, 715, 813
			북Ⅵ	612				북 V	507
		후기	북 I	706				중b	1032
			북Ⅳ	713				남c	43
		미상	북Ⅳ	713			후기	북Ⅳ	830
고대산문화 요소	乙형 토기	초기	중a	1204				북Ⅵ	512
			남a	3				중b	1254
		중기	중a	312, 326			미상	북 I	675, 788
			중b	1010				북Ⅳ	523, 725
		후기	북Ⅳ	459				남a	11, 15
			북 V	603		금제 장신구	후기	북 V	516
		미상	북 V	609					
			중a	377					
			남a	10					

관계는 초기부터 중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산문화 요소가 있는 토기는 초기 무덤에서 2점, 중기 무덤에서 3점, 후기 무덤에서 2점이 발견되어 소량이지만 초기부터 후기까지 나타난다. 북방 초원문화 요소가 있는 유물도 초기 무덤에서 7점, 중기 무덤에서 8점, 후기 무덤에서 3점 발견되었다. 북방 초원문화 요소도 대전자 묘지 초기부터 후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난다. 요서 지역 신석기 말기 문화인 소하연 문화를 계승한 하가점하층문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리두문화, 고대산문화, 북방 초원문화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인구 유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대전자 묘지 주변에 위치한 다른 하가점하층문화 유적에서도 보인다. 대해유적 묘지에서는 하가점하층문화 요소 외에도 고대산문화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다.⁵⁴ 고대산문화 요소는 기물 형식과 조합, 기물 진열 방식에서 나타난다. 발, 호, 관은 모두 협사홍갈도이며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빚었다. 대부분 민무늬이고 표면에 홍의도(紅衣陶)를 한 층 발랐으며, 구연부는 첨순(尖唇)이다. 호(壺, M30:2)는 신민(新民) 공주둔(公主屯) 후산(後山)유적 출토 호(M2:1)와 비슷하므로 고대산문화 초기에 속한다. 하가점하층문화 요소 중 력(M47:3)은 대전자 AIV2b(M839:3)와 비슷하고, 또 다른 력(M57:4)은 대전자 BI1(M303:1), 범장자 B형력(M25:6), 이도정자 력(F28:6)과 비슷하다. 또 환형 청동 귀고리(環形筒耳環, M20:3)는 대전자 청동 귀고리(M516:2)와 비슷하다. 대전자 묘지, 범장자 묘지, 이도정자유적은 연대가 비슷하며 하가점하층문화 중후기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하가점하층문화 중후기와 고대산문화 초기가 공존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토성자(土城子)와 나과지(羅鍋地) 무덤유적에서는 대타두문화 요소가 발견되었다.⁵⁵ 토성자유적 M2에서 출토된 절견관(折肩罐)과 염구발(斂口鉢)은 대타두문화의 전형적인 토기 유형이다. 하가점하층문화는 초기 이후 계속 분화되어 동·서 지역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소릉하 유역과 요서주랑 지역은 대타두 문화와 더 밀접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⁵⁶ 하가점하층문화 무덤유적에서 출토된 유구를 보았을 때 문화 분포권 동쪽은 고대산문화와, 남쪽은 대타두문화와 일정한 교류 활동이 있었고 장속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문화요소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고대산문화와 대타두문화 등 재지 문화의 영향력 변화에 따라 하가점하층문화의 분포 범위도 지속적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5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15, 앞의 글, 8~15쪽.

55 崔貴華 외, 2018, 앞의 글, 18쪽; 華玉冰 외, 2002, 앞의 글, 134~135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3, 앞의 글, 160~162쪽.

56 華玉冰, 2002, 위의 글, 135쪽.

VI. 맺음말

대전자 묘지는 기원전 16세기경 하가점하층문화인들이 남긴 대규모 무덤군이다. 대전자유적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졌고, 거주유적과 묘지에서 출토된 유물 데이터는 상세한 발굴보고서로 정리되었다. 특히 대전자 묘지의 수많은 발굴 데이터는 당시 사회상과 하가점하층문화의 문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풍부한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고고학에서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데는 유물 연대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대전자 묘지는 무덤 간 파괴와 중첩이 없어서 층위분석으로는 무덤과 유물 연대를 결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묘지 조성기간과 각 무덤이 조성된 순서를 파악하려면 무덤과 출토 유물의 연대 결정에 근거가 될 편년 기준이 필요한데, 발굴보고서에서는 묘지 전역에서 고루 출토되고 유형별 형태 차이가 크며 식(式) 분화가 뚜렷한 력을 상대편년의 기준 유물로 선택했다.

출토된 력은 통복력, 고복력, 직구통복력 등 형태에 따라 A, B, C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 형태 차이에 따라 A형력은 여덟 가지 아형, B형력은 다섯 가지 아형으로 분류했다. 력 다리 제작법에 따라 A 아형력은 1, 2식과 3식으로, C형력은 1식과 2식으로 구분했다. B형력은 5개 아형 중 BⅡ형만 1식과 2식으로 구분했다. 분류된 력 형식 출현 시기의 선후를 구분하여 순서대로 나열함으로써 무덤 상대편년의 척도로 삼았다. 력 형식의 연대는 그 력이 출토된 무덤의 연대가 된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이 방식으로 무덤 조성시기를 1기와 2기로 구분했는데, 이 글에서는 이 분류법의 변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력 다리 제작법을 기준으로 력 시기를 초·중·후기 3시기로 구분했다.

묘지는 지형적 자연경계에 따라 북구, 중구, 남구 등 3개의 대구역으로 구분된다. 북구는 A형력 아형들이 각각 집중 분포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6개 소구역으로 구분되었다. 중구는 2개, 남구는 6개 소구역으로 구분되었다.

초·중·후기 역이 출토된 무덤을 각각 초·중·후기로 구분하고, GIS를 이용하여 시기별 무덤의 공간분포도를 그려 무덤이 어떤 순서로 조성되었는지 묘지

가 사용된 방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묘지 전역에 초기 력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묘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무덤이 조성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북구에서 력 출토 양상은 초기 력이 많고 중기 력이 더 증가하다가 후기 력은 점차 감소한다. 중구에서는 초기 력이 많고 중·후기로 갈수록 력 출토량이 감소한다. 력 부장률이 낮은 남구에서는 중·후기에 유물 출토량이 증가한다. 이로 보아 북구와 중구는 묘지 초기부터 무덤이 조성되었고, 남구는 묘지 후기에 본격적으로 무덤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자 묘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단시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무덤 간에 파괴나 중복현상이 거의 없고 무덤 배치가 질서정연한데, 이는 묘지가 오랜 기간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또한 출토된 초·중·후기 력의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묘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초·중기 무덤이 많고 후기 무덤이 적은 것은 대전자 거주유적 초기부터 인구가 많다가 후기에 들어서 인구가 급감했음을 말해준다. 초기에 제작법이 같고 모양만 다른 력들이 부장된 현상은 력 부장 장소에 있는 여러 족속이 모여든 결과로 생각되는데, 여러 계통의 족속들이 대전자로 이주하여 함께 대규모 촌락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에는 인구밀도가 높아 인구압을 피해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이주민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압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이주를 유발하는 강도도 강해지므로 이주민들이 정착한 촌락도 빠르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중 북I 묘역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무덤 면적이 넓고 다른 묘역에 비해 출토된 유물이 많아서 지위가 높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족속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북V 묘역은 후기로 갈수록 무덤 면적이 커지고 유물 출토량이 많아지므로 후기로 갈수록 북V 묘역 족속의 지위가 점차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남구의 족속들은 초기에는 세력이 작고 지위도 낮다가 후기로 갈수록 세력이 커지고 지위도 높아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묘지에서 출토된 머리뼈 형태를 분석한 결과 대전자유적 거주민들은 세 그룹으로 구분되며, 적어도 중장두형(中長頭型)과 원두형(圓頭形) 두 유형이 공존

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무덤에서부터 나타나고 전체 묘역에서 퍼져 있으므로 대전자유적이 조성되기 전 시기부터 하가점하층문화인은 최소 두 유형 이상의 족속이 모여 형성된 공동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묘지에는 하가점하층문화 외에 이리두문화, 고대산문화, 북방계 초원문화 특징을 가진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리두문화 요소로는 규, 화, 작 같은 토기와 고형칠기, 고대산문화 요소로는 발, 관, 호 등의 토기, 북방계 초원문화 요소로는 소형 청동 장식품들이 출토되었다. 무덤이 조영된 시기로 판단하면 이리두문화 요소는 대전자 묘지 초기에서 중기까지, 고대산문화와 북방계 초원문화 요소는 초기에서 후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대전자유적은 하가점하층문화 중후기에 조성된 묘지이며, 계통이 다른 여러 족속으로 구성된 하가점하층문화 사람들이 대전자로 이주해 와서 만든 유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성되어 집중적으로 사용된 후 폐기되었다. 인근 하가점하층문화 촌락뿐만 아니라 고대산문화 등 외부 문화와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발굴보고서에 수록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로 향후 부장품의 조합 관계, 채회토기의 문양 조합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대전자 묘지와 하가점하층문화의 묘제와 장속, 더 나아가 하가점하층문화 중후기의 사회상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다양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귀다순·장성더,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상)』, 동북아역사재단.
- 북기대, 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 Sheridan Bowman 지, 이선복 역, 2014,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사회평론.
- 추연식, 1997,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 학연문화사.
- 國家文物局 主編, 2003, 『中國文物地圖集』, 「內蒙古自治區分冊(上·下冊)」, 西安地圖出版社.
- _____, 2009,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上·下冊)」, 西安地圖出版社.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扎魯特旗人民政府 編著, 2010, 『科爾沁文明-南寶力皋吐墓地』,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 編著, 1998, 『大南溝-後紅山文化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6,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加藤英二, 2002, 『中國文化の考古地理學的研究』, 一誠社.
- Conolly, James & Lake, Mark, 2006,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of Press.
- Renfrew, Colin & Bahn, Paul, 2012,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6th edition, Thames & Hudson.
- Shelach, Gideon, 2009, *Prehistoric Societies on the Northern Frontiers of China*, Equinox Publishing Ltd.
- Šmejda, Ladislav & Turek, Jan, 2004, *Spatial Analysis of Funerary Areas*, University of West Bohemia(Department of Archaeology).

논문

- 김종일, 2006, 「정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 가능성」, 『한국고고학보』 58.
- 박진호, 2020, 「중국 내 하가점하층문화 연구 동향과 문제점-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9.
- 복기대, 2006, 「존(尊)의 기원과 계승성에 관한 시론」, 『선사와고대』 25.
- 오대양, 2017, 「고대산문화의 묘제와 장속특징에 대한 검토-하가점하층문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東洋學』 66.
- , 2019a, 「기원전 14~11세기 요서지역 토착문화와 중원문화의 상관성 검토-묘제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3.
- , 2019b, 「비파형동검 등장 이전 청동기문화의 변동-요서지역 위영자문화를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83.
- 郭大順, 2003, 「大甸子墓地初析」, 『古代文明』 2003-1.
- 羅運兵, 2009, 「大甸子遺址中豬的飼養與儀式使用」, 『邊疆考古研究』.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13, 「通遼市奈曼旗小東溝遺址發掘簡報」, 『草原文物』 2013-2.
-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1984, 「敖漢旗範仗子古墓群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1984-1.
- 杜金鵬, 1995, 「試論夏家店下層文化中的二里頭文化因素」, 『華夏考古』 1995-3.
- 滕銘予, 2007, 「GIS在西拉木倫河以南地區環境考古研究中的初步應用」 『草原文物』 2007-1.
- 馬晟, 2019, 「燕山南北地區夏至早商時期陶甬譜系新探」, 吉林大學, Doctoral dissertation.
- 司偉偉 외, 2014, 「遼寧阜新縣界力花青銅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 2014-6.
- 王立新·卜箕大, 1998, 「하가점하층문화에 관한 몇 가지 문제」, 『博物館紀要』 13.
- 王薊, 2019, 「內蒙古敖漢旗大甸子墓地出土彩繪陶器紋飾試析」, 『四川文物』 2019-6.
- 遼寧省文物幹部培訓班, 1976, 「遼寧北票縣豐下遺址1972年春發掘簡報」, 『考古』 1976-3.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3, 「朝陽小羅鍋地夏家店下層文化遺址發掘報告」,

- 『遼寧省道路建設考古報告集』。
- _____, 2012, 「遼寧阜新縣代海遺址發掘簡報」, 『考古』 2012-1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系, 1992, 「遼寧阜新平頂山石城遺址發掘報告」, 『考古』 1992-5.
- 劉觀民, 1992, 「內蒙古赤峰市大甸子墓地述要」, 『考古』 1992-4.
- _____, 1996, 「中國青銅時代早期彩繪紋飾試析」, 『考古』 1996-8.
- 劉國祥, 1999, 「大甸子玉器試探」, 『考古』 1999-11.
- 李經漢, 1980, 「試論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和類型」,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 李恭篤·高美璿, 1984, 「夏家店下層文化若干問題研究」, 『遼寧大學學報』 69.
- 李延祥·賈海新·朱延平, 2003, 「大甸子墓地出土銅器初步研究」, 『文物』 2003-7.
- 赤峰市博物館, 2009, 「硯台山遺址(B2區)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2009-2.
- 曹建恩, 2010, 「內蒙古赤峰市二道井子遺址的發掘」, 『考古』 2010-8.
- 朱泓, 1998, 「중국 동북 지구의 고대 종족」, 『박물관기요』 1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 陳暢, 2019, 「大南溝墓地的社會組織與性別考古學研究」, 『北方文物』 2019-4.
- 崔貴華 외, 2018, 「遼寧喀左土城子遺址2014~2015年發掘簡報」, 『文物』 2018-4.
- 彭鵬, 2011, 「墓葬等級分析中一種量化方法的思考-以大甸子墓地為例」, 『邊疆考古研究』 2011-1.
- 郝維彬, 1996, 「內蒙古庫倫旗南泡子崖夏家店下層文化遺址調查簡報」, 『北方文物』 47.
- 華玉冰 외, 2002, 「朝陽羅鍋地夏家店下層文化遺址的分期及相關問題」, 『邊疆考古研究』 2002-1.
- 黃可佳, 2015, 「試析以大甸子墓地玉器為代表的夏家店下層文化玉器」, 『草原文物』 2015-2.
- 黃曉雷·金熙茗, 2015, 「大甸子墓地隨葬骨器分析」, 『遼寧省博物館館刊』 2015-1.
- Flad, Rowan, 2001, "Ritual or Structure Analysis of Burial Elaboration at Dadianzi, Inner Mongolia,"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3).
- Peterson, Christian E. et al., 2009, "Lower Xiajiadian Period Demography and Sociopolitical Organization," *The SAA Archaeological Record*, Vol. 9.

Shelach, Gideon, 1996, "The Emergence of Complex Society in Northeast China from the Fourth to the First Millennia B.C.: a Perspective from the Chifeng Area of Inner Mongoli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GIS를 활용한 하가점하층문화 대전자 묘지 무덤 구성순서와 묘지 존속기간에 관한 시론적 고찰

강승우

대전자 묘지는 하가점하층문화 중후기를 대표하는 유적이며, 그 연대는 기원전 16세기로 보고 있다. 무덤 보존 상태가 좋고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대규모 무덤군으로, 출토 유물이 많아 하가점하층문화의 묘제와 장속뿐 아니라 당시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시간에 따른 사회변화를 연구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를 알려주는 유물이 필요하다. 무덤 연구에서 부장유물의 연대와 무덤 연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대전자 묘지 무덤 분기에 관해 발굴보고서에서는 대전자 묘지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력의 형식분류와 동반 출토 조합을 토대로 력이 출토된 무덤을 1기 무덤과 2기 무덤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 방식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무덤이 전기 무덤으로 분류되어 시기 구분의 변별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력 제작법과 형식분류를 기본적인 분류 기준으로 하되, 1기로 분류된 력들을 제작방식이 같은 다른 형식의 력들과 교차 비교하여 1기 력들을 초기 력과 중기 력으로 세분했다. 따라서 1기로 분류된 무덤들도 출토된 력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초기와 중기 무덤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시기가 구분된 무덤 데이터들로 시기별 무덤 분포도를 그려 묘지가 공간적으로 사용된 방식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무덤 분포도에 대전자 묘지 발굴 데이터를 대입하여 세 가지 분석을 시도했다. 첫 번째는 무덤 부장품 총수를 분석 데이터로 하여 유물 밀도에 따라 무덤 등급을 나누었다. 이 분석법은 대전자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사회경제적 위계화가 진행된 정도와 사회복합도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묘지에서 발굴된 사람 머리뼈를 데이터로 하여 인골분석을 시행했을 때 대전자 유적 거주민은 적어도 두 유형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족속 차이에도 처음부터 공동체를 이루고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집단으로 존속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하가점하층문화인들이 대전자유적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여러 족속이 혼재한 인구집단이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이리두문화, 고대산문화, 북방초원문화 색채를 띠는 유물들을 데이터로 하여 대전자유적 거주민들이 주변 문화권과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한 시기와 교류 주체 세력 집단을 추론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하가점하층문화와 상호작용권을 형성한 문화와 상호작용권의 공간적 범위를 추론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전자 묘지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폐기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산출했다. 발굴보고서에서는 대전자 묘지가 100~150년 사용되었다고 보았고, 200년간 사용되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형식이 다른 력이 거의 시차 없이 부장된 점, 806기나 되는 무덤이 서로 중복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조밀한 간격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점, 대전자 거주유적 집자리에는 오랜 기간 사용된 이도정자유적 집자리처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개보수한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주유적과 묘지는 짧은 시간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작방식은 같지만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력이 동시기에 만들어진 점을 보면 대전자유적은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다양한 족속의 하가점하층문화인들이 모여 단기간에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사용한 후 폐기한 유적으로 생각된다.

거주유적은 면적이 6만㎡에 달하고 토축성벽으로 보호된 대형 유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취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거주유적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900~1,200명이 모여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장자 수와 거주인구 규모로 추산하면 모지는 약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하가점하층문화, 대전자 묘지, 력, 이리두문화, 고대산문화, 사회상, 지리정보시스템(GIS)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the Order and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Dadianzi Cemetery in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Using GIS

Kang Seaungwoo

Dadianzi cemetery is a large-scale cemetery site that corresponds to the middle and late period of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It is well preserved and has been fully excavated. It is a very important site for studying the tomb system and funeral customs of the Lower Xiajiadian culture, as well as the social aspects of that time. In this study, I tried to analyze the order and period of cemetery formation through the manufacturing method and type classification of the Li found most often in the Dadianzi cemetery, and to study the social aspect at that time.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emetery were form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unlike what is known that they were built over 100 to 150 years. Because different types of Li appear with a short time gap, and 806 tombs are arranged in an orderly manner at

short intervals without overlapping or destroying each other, as well as there are no traces of long-term residence and renovation such as the houses in the Erdaojingzi site.

In addition, although only a part of the residential site have been excavated, it is highly probable that a large number of people lived there at the time because the area reached 60,000 square meters and was protected by building an earthen fortress wall. Considering the full size of the site, it is likely that about 900~1200 people lived there at the time,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cemetery was us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about 30 years.

Three types of skulls were found in the cemetery, and relics containing cultural elements from Eritou, Gaotaishan, and the Northern grasslands were also found. Also, considering that various styles of Li were made at the same time, Dadianzi cemetery is thought to be a ruin that was created by people from various tribes of Lower Xiajiadian cultur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disappeared.

Keywords: Lower Xiajiadian culture, Dadianzi cemetery, Li, Eritou culture, Gaotaishan culture, social aspects, GIS

후한시대(後漢時代) 내군(內郡) 군병(郡兵)의 존재와 운용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도위관(都尉官) 폐지의
실상

최진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내군(內郡)과 외군(外郡): 도위관(都尉官) 폐지의 지역적 범위
- III. 내군(內郡) 군병(郡兵)의 존재
- IV. 평상시 내군의 군병 관리 체계
- V. 유사시 군병(郡兵)의 동원과 지휘
- VI. 맺음말



I. 머리말

신(新) 말기의 혼란 와중에 즉위하여 군웅들을 토벌하고 중국을 재통일한 광무제(光武帝)는 건무(建武) 6년(30) 군국(郡國)의 도위관(都尉官)을 없앴다.¹ 이 조치의 원문인 “初罷郡國都尉官(초파군국도위관)”은 모든 도위를 없앴다고 오인할 수 있지만, 단서 조항이 있었다. 『속한서』 「백관지」에 따르면, 건무 6년 제군(諸郡)의 도위를 없애고 그 직무를 태수(太守)에 병합하였지만 변군(邊郡)에 도위와 속국도위(屬國都尉)를 여전히 임명하였다.² 또 군(郡)에 설치하는 승(丞)은 변군에서 장사(長史)라고 불렸다.³ 따라서 건무 6년의 도위관 폐지는 변군에서 예외였고 내군의 도위만 폐지되었다고 이해된다. 광무제는 다음 해인 건무 7년(31) 경거(輕車)·기사(騎士)·재관(材官)·누선사(樓船士)·군가리(軍假吏)를 파하여 민오(民伍)로 복귀시키도록 명령하였다.⁴ 이 조치를 민심 수렴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⁵ 전년의 조치와 함께 내군의 군병을 없앴다고 보는 것이 일

* 투고: 2022년 1월 13일, 심사 완료: 2022년 2월 11일, 게재 확정: 2022년 2월 16일

- 1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建武六年條, 51쪽. “是歲, 初罷郡國都尉官.” 이하 정사류는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따른다.
- 2 『續漢書』 志第二十八 「百官志」 5 州郡條, 3621쪽. “中興建武六年, 省諸郡都尉, 并職太守, 無都試之役. 省關都尉, 唯邊郡往往置都尉及屬國都尉, 稍有分縣, 治民比郡.”
- 3 『續漢書』 志第二十八 「百官志」 5 州郡條, 3621쪽. “凡州所監都爲京都, 置尹一人, 二千石, 丞一人. 每郡置太守一人, 二千石, 丞一人. 郡當邊戍者, 丞爲長史. 王國之相亦如之.”
- 4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建武七年三月丁酉條, 51쪽. “三月丁酉, 詔曰: ‘今國有眾軍, 竝多精勇, 宜且罷輕車·騎士·材官·樓船士及軍假吏, 令還復民伍.’”
- 5 鎌田重雄, 1962, 「郡都尉」, 『秦漢政治制度の研究』,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311~312쪽. 그러나 중국학계에서는 光武帝의 정책 기초를 軍權의 중앙집권화, 군대의 소수정예화와 기구의 간소화로 파악한다(中國軍事史編寫組 編, 1987, 『中國軍事史』 3(兵制), 北京: 解放軍出版社).

반적인 해석이다.⁶

이러한 다수설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도위 폐지가 군병 폐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⁷ 엄경망(嚴耕望)은 전한시대(前漢時代) 태수와 도위의 반목이 심하여 여민휴식(與民休息)과 아울러 도위가 태수와 권력을 다투는 것을 막아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석하였다.⁸ 대정수(大庭脩)는 건무 7년에 폐지된 재관과 기사 등은 특수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군사로 해석하여 일반민이 징집되는 정졸(正卒)로 구성된 군병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고민(高敏)은 도위 폐지와 경거·기사·재관·누선사·군가리를 백성으로 돌려보낸 조치가 군국병(郡國兵)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군국병이 징병과 의무병제가 아닌 소모(召募)와 이형도(弛刑徒)의 모병제와 직업병제로 바뀌었다고 지적하였다.⁹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내군과 외군을 구분하지 않고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에 내군의 도위와 군병 폐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내군의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변신일랑(渡邊信一郎)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의 군(郡) 배열 순서의 규칙성에 주목하여 내군과 외

6 鎌田重雄, 1962, 위의 글, 304~328쪽; 濱口重國, 1966, 「光武帝の軍備縮小と其の影響」,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市川任三, 1968, 「前漢邊郡都尉考」, 『立正大學教養部紀』 2, 1~13쪽; 小林聰, 1991, 「後漢の軍事組織に關する一考察~郡國常備兵縮小後の代替兵力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9; 重近啓樹, 1999, 「兵制の研究-地方常備軍制を中心に-」, 『秦漢稅役體系の研究』, 東京: 汲古書院(原載「秦漢の兵制について-地方軍を中心として-」, 『人文論集: 靜岡大學人文社會科學部社會學科・言語文化學科研究報告』, 36, 1985, 31~70쪽); 楊鴻年, 2005, 『漢魏制度叢稿』,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339~349쪽; 野口優, 2012, 「前漢邊郡都尉府の職掌と邊郡統治制度」, 『東洋史研究』 71-1, 1~35쪽.

7 大庭脩, 1952, 「材官攷-漢代の兵制の一斑について-」, 『龍谷史壇』 36, 76~87쪽; 嚴耕望, 1961,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上編卷上 秦漢地方行政制度,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97쪽; 高敏, 1999, 「東漢·魏·晉時期“州郡兵”制度的歷史演變」,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19~26쪽.

8 嚴耕望, 1961, 위의 책, 151~153쪽.

9 高敏, 1999, 앞의 글, 19~26쪽.

군을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한의 경우 유주(幽州)의 탁군(涿郡)-태원(太原)-하동(河東)-삼보(三輔)-남양(南陽)-남군(南郡)-강하(江夏)-여강(廬江)-단양(丹陽)-오군(吳郡)을 잇는 선 안쪽의 군을 내군으로 분류하였다.¹⁰ 그러나 이는 내군과 변군의 수졸(戍卒) 파견과 군량·군수물자, 병참의 운송 또는 이동을 전제로 한¹¹ 자의적인 분류였다. 장복위(張亞偉)는 내군이 48군, 변군(외군)이 35군이라고 보았다.¹² 그는 내군과 외군을 나누는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열거한 군 명칭을 보면 국경선에 있는 군을 변군, 그렇지 않은 군을 내군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후한서(後漢書)』를 통독하면서 내군으로 추정되는 황하(黃河) 중하류 평원지역 군의 군사들이 여러 지역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징발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광무제의 도위 폐지 현상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분석을 위해 먼저 내군과 외군을 구별해야 하였다. 필자는 위소의 주에 보이는 내군과 외군 개념 및 외군에만 설치한 도위·장사의 직책에 주목하여 이 두 관직을 역임한 사람과 해당 군명을 검색하면 내군과 외군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병 동원 기사를 검토하여 내군에 해당하는 군병의 존재 유무, 지역 분포 등을 분석하면 내군에 군병이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후한시대 내군 도위 폐지의 실상을 검토하고 후한시대 지방군(郡兵)의 운영 상황을 규명한 논문이다.

필자는 후한시대의 내군 도위 폐지와 후한시대 지방군인 군병의 실태를 밝

10 渡邊信一郎, 2010b, 「漢代の財政と帝國編成」,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167~170쪽 및 172쪽의 圖3 後漢帝國圖(後漢の內郡と邊郡).

11 鷹取祐司, 1997, 「漢代戍卒の徵發と就役地への移動」, 『古代文化』 49-10, 600~611쪽; 高村武幸, 2008, 「前漢西北邊境と關東の戍卒-居延漢簡にみえる兵士出身地の検討を通じて-」, 『漢代の地方官吏と地域社會』, 汲古書院; 渡邊信一郎, 2010a, 「漢代國家の社會的勞動編成」,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原載「漢代國家の社會的勞動編成」, 『銀州秦漢時代史の基本問題』, 汲古書院, 2001); 渡邊信一郎, 2010b, 위의 글, 173쪽.

12 張亞偉, 2018.5, 「東漢初期軍制改革研究-以都尉體系的變化爲中心-」, 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13~14쪽.

히려고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외군(변군)에 설치된 도위·장사 임명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료를 검토하여 후한시대 내군과 외군의 범위를 밝히려고 한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형주·농서·관중 등지의 반란 평정 사례를 분석하여 내군에서 징발한 군병의 존재를 밝히고 구체적인 군명과 그 군이 속한 주(자사부)를 검토하여 내군 군병의 분포 범위를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내군 군병 또는 군졸을 관리한 각종 군리(郡吏)를 비문과 죽간 등 금석문 자료를 분석하여 밝히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군병이 동원된 사례를 분석하여 내군과 외군(변군) 군병의 지휘 주체를 분석하여 후한시대 군병의 관리와 지휘 양상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 글은 후한 광무제의 도위 폐지에도 불구하고 내군, 즉 황하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후한의 내지에 여전히 군병이 존재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또 군병의 관리와 지휘 주체를 밝힘으로써 후한시대 지방군의 운용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가치를 지닌다.

Ⅱ. 내군(內郡)과 외군(外郡): 도위관(都尉官) 폐지의 지역적 범위

광무제는 건무 6년 제군 도위를 없앴 후에도 변군에 여전히 도위와 속국도위를 두었다.¹³ 변군에서 군승(郡丞)을 장사라고 개칭하였다.¹⁴ 위소(韋昭)에 따르면, 한대(漢代) 중국을 내군(內郡), 이민족이 사는 변경을 외군(外郡)이라고 구별하였다. 전한 성제(成帝) 때 내군에서 방정(方正), 북변 22군에서 용맹사(勇猛士)를 천거하라고 명령하였다.¹⁵ 여기에서 외군은 북변 22군과 동일한 단어로

13 『續漢書』志第二十八「百官志」5 州郡條, 3621쪽.

14 『續漢書』志第二十八「百官志」5 州郡條, 3621쪽.

15 『漢書』卷8「宣帝紀」本始元年條 注引韋昭曰, 241쪽. “韋昭曰: ‘中國爲內郡, 緣邊有夷狄障塞者爲外郡. 成帝(侍)[時], 內郡舉方正, 北邊二十二郡舉勇猛士.’”

사용되었고, 내군은 문(文), 외군은 무(武)에 능통한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여 “내군=문”, “외군=무”라는 이분법의 등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한시대에 해당하며, 후한시대에도 적용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내군과 외군을 구별하기 위해 외군에만 설치된 군도위(郡都尉)와 장사 임명표를 조사한 것이다.

<표 1> 후한시대 도위·장사 임명표

都尉·長史 명칭	이름	시기	해당 郡國	비고
漢陽都尉 ¹⁶	文𪗇	永建 4년	漢陽(天水)郡	원문에는 桂陽太守이지만 校勘記에 漢陽都尉 ¹⁷
九江都尉 ¹⁸	滕撫	永熹元年(145)	九江郡	
太山都尉 琅邪都尉 ¹⁹		永壽元年(155)	太山郡 琅邪郡	內郡 이지만 도적 때문에 설치 ²⁰ 琅邪都尉는 延熹 5년(162), ²¹ 太山都尉는 延熹 8년(165) ²² 없앴.
九眞都尉 ²³	兒式	永壽 3년(157)	九眞郡	
弘農都尉 ²⁴	魯炳	永元 15년(103)	弘農郡	다른 예에서 建武 7년에도 弘農都尉 존재 ²⁵
遼東都尉 ²⁶	龐奮	建康元年(144) 전후	遼東郡	
交趾都尉	胡貢	시대 미상 ²⁷	交趾郡	
幽州·并州의 모든 郡			幽州·并州	“乃更選幽·并刺史，自營郡太守都尉以下”에서 ²⁸ 幽州·并州에 모두 都尉 설치했음을 알 수 있음.
安定都尉 ²⁹	傅燮	黃巾 봉기 진압 후	安定郡	
九眞都尉 ³⁰	魏朗		九眞郡	
太山都尉	孔宙 ³¹		太山郡	
定襄都尉 ³²	陰承	建武 15년(39)	定襄郡	
陽安都尉 ³³		初平 3년(192)	汝南郡	

都尉·長史 명칭	이름	시기	해당 郡國	비고
魏郡東部都尉 魏郡西部都尉		建安 17년(212)	魏郡	曹操가 근거지인 鄴 주변 魏郡을 넓힌 후 東部都尉와 西部都尉 설치 ³⁴
上黨都尉			上黨郡	『續漢書』 「郡國志」에 따르면, 上黨郡 長子縣에 上黨都尉治所 존재 ³⁵
京兆虎牙都尉 扶風都尉 ³⁶		永初 4년(110)		
隴西長史 ³⁷		建初 2년(77)	隴西郡	
下邳長史 ³⁸			下邳國	규정상 王國에는 長史 설치 ³⁹
漢陽長史 ⁴⁰	蓋勳		漢陽郡	
遼東長史 ⁴¹	王烈		遼東郡	
隴西長史 ⁴²	田颯		隴西郡	
金城長史 ⁴³	上官鴻		金城郡	
西河長史 ⁴⁴			西河郡	
西河長史 ⁴⁵	馬襄	永平 2년(59)	西河郡	
朔方長史 代郡長史 ⁴⁶		永和 5년(140)	朔方郡 代郡	
常山長史 ⁴⁷	劉洪	熹平 3년(174)	常山國	규정상 王國에는 長史 설치 ⁴⁸
常山長史 ⁴⁹	顏汜	元初 4년(117)	常山國	
敦煌長史 ⁵⁰	武班		敦煌郡	
行長史事 ⁵¹	擅	永興元年(153)	魯國	姓 누락. 魯國 卞縣의 守縣長으로 長史 대행
常山長史 ⁵²	沐乘	延熹 7년(164)	常山國	
雁門長史 ⁵³	鮮于晏	延熹 8년(165) 이전	鴈門郡	
魯國長史 ⁵⁴	李謙	建寧 2년(169) 이후	魯國	
常山長史 ⁵⁵	申屠熊	光和 6년(183)	常山國	
武威長史 ⁵⁶	曹敏		武威郡	
金城長史 ⁵⁷	曹述		金城郡	

- 16 『後漢書』卷6「順帝紀」永建四年條, 256쪽. “夏五月壬辰, 詔曰: ‘海內頗有災異, 朝廷修政, 太官減膳, 珍玩不御, 而桂陽太守文贄, 不惟竭忠, 宣暢本朝, 而遠獻大珠, 以求幸媚, 今封以還之.’”
- 17 『後漢書』卷6「順帝紀」永建四年條 校勘記, 283쪽. “桂陽太守文贄 按: 集解引惠棟說, 謂袁宏紀作‘漢陽都尉.’”
- 18 『後漢書』卷6「孝質帝紀」永熹元年三月條, 277쪽. “三月, 九江賊馬勉稱‘黃帝’. 九江都尉滕撫討馬勉·范容·周生·大破斬之.”; 『後漢書』卷38「滕撫傳」, 1279쪽. “朝廷博求將帥, 三公舉撫有文武才, 拜爲九江都尉, 與中郎將趙序助馮緄合州郡兵數萬人共討之.”
- 19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壽元年七月條, 301쪽. “秋七月, 初置太山·琅邪都尉官.”
- 20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壽元年七月條 章懷太子注, 301쪽. “漢官儀曰: ‘秦郡有尉一人, 典兵禁, 捕盜賊, 景帝更名都尉, 建武(七)[六]年省, 唯邊郡往往置都尉及屬國都尉.’ 今二郡寇賊不息, 故置.”
- 21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五年八月己卯條, 311쪽. “己卯, 罷琅邪都尉官.”
- 22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八年五月壬申條, 314쪽. “五月壬申, 罷太山都尉官.”
- 23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壽三年四月條, 302쪽. “夏四月, 九真蠻夷叛, 太守兒式討之, 戰歿; 遣九真都尉魏朗擊破之, 復屯據日南.”
- 24 『後漢書』卷25「魯恭傳」, 878쪽. “[永元]十五年, 從巡狩南陽, 除子撫爲郎中, 賜駙馬從駕, 時弟丕亦爲侍中, 兄弟父子竝列朝廷, 後坐事策免.”; 『後漢書』卷25「魯恭傳」注引續漢書, 878쪽. “續漢書曰‘坐族弟弘農都尉炳事免官’也.”
- 25 『續漢書』志第十五「五行志」3 注引古今注, 3305쪽. “古今注曰: ‘光武建武四年, 東郡以北傷水, 七年六月戊辰, 雒水盛, 溢至津城門, 帝自行水, 弘農都尉治[折][析]爲水所漂殺, 民溺, 傷稼, 壞廬舍.’”
- 26 『後漢書』卷38「馮緄傳」, 1280쪽. “父煥, 安帝時爲幽州刺史, 疾忌姦惡, 數致其罪, 時玄菟太守姚光亦失人和, 建光元年, 怨者乃詐作璽書譴責煥·光, 賜以歐刀, 又下遼東都尉龐奮使速行刑, 奮即斬光收煥.”
- 27 『後漢書』卷44「胡廣傳」, 1504쪽. “胡廣字伯始, 南郡華容人也. 六世祖剛, 清高有志節. 平帝時, 大司徒馬宮辟之. 值王莽居攝, 剛解其衣冠, 縣府門而去, 遂亡命交趾, 隱於屠肆之間. 後莽敗, 乃歸鄉里. 父貢, 交趾都尉.”
- 28 『後漢書』卷51「陳龜傳」, 1693쪽. “帝覺悟, 乃更選幽·并刺史, 自營郡太守都尉以下, 多所革易, 下詔‘爲陳將軍除并·涼一年租賦, 以賜吏民’. 龜既到職, 州郡重足震慄, 鮮卑不敢近塞, 省息經用, 歲以億計.”
- 29 『後漢書』卷58「傳燮傳」, 1874쪽. “及破張角, 燮功多當封, 忠訴譖之, 靈帝猶

- 識變言, 得不加罪, 竟亦不封, 以爲安定都尉. 以疾免.”
- 30 『後漢書』卷67「黨錮·魏朗傳」, 2201쪽. “會九眞賊起, 乃共薦朗爲九眞都尉.”
- 31 『後漢書』卷70「孔融傳」, 2261쪽. “父宙, 太山都尉.”
- 32 『續漢書』志第十「天文志」上, 3222쪽. “[建武十五年]十一月, 定襄都尉陰承反, 太守隨誅之.”
- 33 『續漢書』志第二十「郡國志」2 豫州·汝南郡·陽安縣條 細注, 3424쪽. “魏氏春秋曰: ‘初平三年, 分二縣置陽安都尉.’”
- 34 『續漢書』志第二十「郡國志」2 冀州·魏郡條 細注, 3431쪽. “魏志曰: ‘建安十七年, 割河內之蕩陰·朝歌·林慮, 東郡之衛國·頓丘·東武陽·發干, 鉅鹿之麼陶·曲(陽)[周]·南和·(廣平之)廣平·任(城), 趙國之襄國·邯鄲·易陽, 以益魏郡. 十八年, 分置東西都尉.’”
- 35 『續漢書』志第二十三「郡國志」5 并州·上黨郡·長子縣條 細注, 3522쪽. “上黨記曰: ‘關城, 都尉所治. 令狐徵君隱城東山中, 去郡六十里, 卽壺關三老令狐茂上書訟戾太子者也, 茂卽葬其山.’”
- 36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四年二月乙丑條, 215쪽. “乙丑, 初置長安·雍二營都尉官.”;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 2887쪽. “明年春, 滇零遣人寇襄中, 燔燒郵亭, 大掠百姓. 於是漢中太守鄭勤移屯襄中, 軍營久出無功, 有廢農桑, 乃詔任尙將吏兵還屯長安, 罷遣南陽·潁川·汝南吏士, 置京兆虎牙都尉於長安, 扶風都尉於雍, 如西京三輔都尉故事.”
- 37 『後漢書』卷24「馬援傳附子防傳」, 856쪽. “十二月, 羌又敗耿恭司馬及隴西長史於和羅谷, 死者數百人.”
- 38 『後漢書』卷44「張禹傳」, 1497~1498쪽. “三年, 遷下邳相. 徐縣北界有蒲陽坡, 傍多良田, 而堙廢莫修. 禹爲開水門, 通引灌溉, 遂成孰田數百頃. 勸率吏民, 假與種糧, 親自勉勞, 遂大收穀實. 鄰郡貧者歸之千餘戶, 室廬相屬, 其下成市. 後歲至墾千餘頃, 民用溫給. 功曹史戴閏, 故太尉掾也, 權動郡內, 有小譴, 禹令自致徐獄, 然後正其法. 自長史以下, 莫不震肅.”
- 39 『續漢書』志第二十八「百官志」5 王國條, 3627쪽. “皇子封王, 其郡爲國, 每置傳一人, 相一人, 皆二千石. 本注曰: 傳主導王以善, 禮如師, 不臣也. 相如太守, 有長史, 如郡丞.”
- 40 『後漢書』卷58「蓋勳傳」, 1879쪽. “初舉孝廉, 爲漢陽長史.”
- 41 『後漢書』卷81「獨行·王烈傳」, 2697쪽. “察孝廉, 三府竝辟, 皆不就. 遭黃巾·董卓之亂, 乃避地遼東, 夷人尊奉之. 太守公孫度接以昆弟之禮, 訪酬政事. 欲以爲長史, 烈乃爲商賈自穢, 得免.”
- 42 『後漢書』卷87「西羌傳」, 2879쪽. “於是守塞諸羌皆復相率爲寇. 遣謁者張鴻領諸郡兵擊之, 戰於允吾·唐谷, 軍敗, 鴻及隴西長史田颯皆沒.”
- 43 『後漢書』卷87「西羌傳」, 2885쪽. “後金城長史上官鴻上開置歸義·建威屯田

〈표 1〉에서 도위가 설치된 군은 한양(漢陽)[천수(天水)]군(郡), 구강군(九江郡), 태산군(太山郡), 낭야군(琅邪郡), 구진군(九眞郡), 홍농군(弘農郡), 요동군

二十七部, 侯霸復上置東西邯屯田五部, 增留·逢二部, 帝皆從之.”

- 44 『後漢書』卷89「南匈奴列傳」, 2945쪽. “於是復詔單于徙居西河美稷, 因使中郎將段郴及副校尉王郁留西河擁護之, 爲設官府·從事·掾史. 令西河長史歲將騎二千, 弛刑五百人, 助中郎將衛護單于, 冬屯夏罷. 自後以爲常, 及悉復緣邊八郡.”
- 45 『後漢書』卷89「南匈奴列傳」, 2945쪽. “醢僮尸逐侯鞬單于適, 永平二年立. 五年冬, 北匈奴六七千騎入于五原塞, 遂寇雲中至原陽, 南單于擊却之, 西河長史馬襄赴救, 虜乃引去.”
- 46 『後漢書』卷89「南匈奴列傳」, 2960쪽. “[永和]五年夏, 南匈奴左部句龍王吾斯·車紐等背畔, 率三千餘騎寇西河, 因復招誘右賢王, 合七八千騎圍美稷, 殺朔方·代郡長史.”
- 47 『續漢書』志第二「律曆志」中, 3040쪽. “到熹平三年, 二十九年之中, 先曆食者十六事. 常山長史劉洪上作七曜術.”
- 48 『續漢書』志第二十八「百官志」5 王國條, 3627쪽. “皇子封王, 其郡爲國, 每置傳一人, 相一人, 皆二千石. 本注曰: 傳主導王以善, 禮如師, 不臣也. 相如太守. 有長史, 如郡丞.”
- 49 「祀三公山碑」, 『漢碑集釋』(高文,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1997), 33쪽. “長史魯國顏汜, 五官掾閭祐·戶曹史紀受·將作掾王籊, 元氏令茅匡.”
- 50 「武斑碑」, 『漢碑集釋』, 建[和]元年, 大歲在丁亥, 二[月]辛巳朔, 廿三日癸卯, 長史同□□□□□□□□敦煌長史武君諱斑, 字宣[張].
- 51 「乙瑛碑」, 『漢碑集釋』, 167~168쪽. “永興元年六月甲辰朔, 十八日辛酉, 魯相平, 行長史事卞守長擅, 叩頭謝罪, 敢言之.”
- 52 「封龍山頌」, 『漢碑集釋』, 243쪽. “延熹七年, 歲貞執徐, 月紀豕韋, 常山相汝南富波𡇗(曰+翁), 長史甘陵廣川沐乘.”
- 53 「鮮于璜碑」, 『漢碑集釋』, 286~287쪽. “君三[子], 大子諱寬, 字顏公, 舉有道, 辟大尉府掾. 中子諱黼, 字景公, 郡五官掾, 功曹, 守令. 幽州別駕. 小子諱晏, 字魯公, 舉孝廉, 謁者, 雁門長史, 九原令.”//
- 54 「史晨後碑」, 『漢碑集釋』, 338쪽. “時長史廬江舒李謙謙讓, …”
- 55 「白石神君碑」, 『漢碑集釋』, 459쪽. “長史潁川申屠熊.”
- 56 「曹全碑」, 『漢碑集釋』, 472쪽. “君高祖父敏, 舉孝廉, 武威長史, 巴郡胸忍令, 張掖居延都尉.”
- 57 「曹全碑」, 『漢碑集釋』, 472쪽. “曾祖父述, 孝廉, 謁者, 金城長史.”

(遼東郡), 교지군(交趾郡), 안정군(安定郡), 구진군(九眞郡), 정양군(定襄郡), 여남군(汝南郡), 위군(魏郡), 상당군(上黨郡), 경조호야도위(京兆虎牙都尉)와 부풍도위(扶風都尉),⁵⁸ 장사가 설치된 군국(郡國)은 농서군(隴西郡), 하비국(下邳國), 한양군(漢陽郡), 요동군, 금성군(金城郡), 서하군(西河郡), 삭방군(朔方郡), 대군(代郡), 상산국(常山國)이다. 일단 여기에 열거된 군국을 외군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내군에 설치된 도위가 있다. 주로 도적이나 반란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하였다. 예컨대 태산군과 낭야군은 내군이지만 2군에 도적이 자주 출몰하였기 때문에 영수원년(永壽元年, 155) 도위를 설치하였다.⁵⁹ 그 전해인 영흥(永興) 2년(154) 태산·낭야의 도적 공손거(公孫舉) 등이 반란을 일으켜 장리(長吏)를 살해하였다.⁶⁰ 영수원년(155) 태산·낭야 도적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조(租)·부(賦)·복경(復更)·산(筭)을 3년 동안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⁶¹ 이 조치에서 태산·낭야 도적의 피해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공손거 등 도적을 토벌하기 위해 태산군과 낭야군에 도위를 설치한 조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산적 공손거 등이 영수 2년(156)에 청(靑)·연(兗)·서(徐) 3주(州)를 침입하자 중랑장(中郎將) 단경(段熲)이 파견되어 격파하였다.⁶² 이후

58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四年二月乙丑條, 215쪽. “乙丑, 初置長安·雍二營都尉官.”; 長安·雍 2營都尉 설치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 2887쪽. “明年春, 滇零遣人寇襲中, 燔燒郵亭, 大掠百姓, 於是漢中太守鄭勤移屯襄中, 軍營久出無功, 有廢農桑, 乃詔任尙將吏兵還屯長安, 罷遣南陽·潁川·汝南吏士, 置京兆虎牙都尉於長安, 扶風都尉於雍, 如西京三輔都尉故事.”

59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壽元年七月條 章懷太子注, 301쪽. “漢官儀曰: ‘秦郡有尉一人, 典兵禁, 捕盜賊, 景帝更名都尉, 建武(七)[六]年省, 唯邊郡往往置都尉及屬國都尉.’ 今二郡寇賊不息, 故置.”

60 『後漢書』卷7「孝桓帝紀」永興二年十一月甲辰條, 300쪽. “太山·琅邪賊公孫舉等反叛, 殺長吏.”

61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壽元年六月條, 301쪽. “詔太山·琅邪遇賊者, 勿收租·賦, 復更·筭三年.”

62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壽二年七月條, 302쪽. “太山賊公孫舉等寇靑·兗·徐三州, 遣中郎將段熲討, 破斬之.”

태산·낭야의 도적 노병(勞丙)이 연희(延熹) 3년(160)에 반란을 일으켜 백성들을 노략질하자 조정에서 어사중승(御史中丞) 조모(趙某)를 보내 주군(州郡)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토벌하게 하였다.⁶³ 태산적(太山賊) 숙손무기(叔孫無忌)가 같은 해에 도위 후장(侯章)을 살해하자 십이월에 중랑장 종자(宗資)를 보내 토벌하게 하였다.⁶⁴ 이후 태산·낭야에서 도적들의 반란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도적을 토벌하여 치안이 안정되자 낭야도위는 연희 5년(162),⁶⁵ 태산도위는 연희 8년(165)⁶⁶ 각각 다시 없었다.

다음으로 삼보(三輔)의 예이다. 이 지역에 영초(永初) 4년(110) 장안(長安)·옹(雍) 2영(營) 도위(都尉)를 설치하였다.⁶⁷ 강(羌)의 반란을 평정하지 못하자 한 중태수(漢中太守) 정근(鄭勤)을 포중(褒中)으로 옮겨 주둔하게 하고, 임상(任尙)에게 장안(長安)에 주둔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경조호아도위를 장안에, 부풍도위를 옹에 설치했는데, 전한의 삼보도위에 해당하였다.⁶⁸ 광창종(零昌種)이 익주(益州)를 침입하자 조정에서 중랑장 윤취(尹就)를 보내 익부(益部) 제군(諸郡)의 둔병(屯兵)을 징발하여 공격하게 하였다. 또 둔기교위(屯騎校尉) 반웅(班雄)에게 삼보에 주둔하게 하고 우부풍(右扶風)·안정군(安定郡)·북지군(北地

63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三年九月條, 307쪽. “九月, 太山·琅邪賊勞丙等復叛, 寇掠百姓, 遣御史中丞趙某持節督州郡討之.”

64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三年條, 307쪽. “[十一月]太山賊叔孫無忌攻殺都尉侯章, 十二月, 遣中郎將宗資討破之.”

65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五年八月己卯條, 311쪽. “己卯, 罷琅邪都尉官.”

66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八年五月壬申條, 314쪽. “五月壬申, 罷太山都尉官.”

67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四年二月乙丑條, 215쪽. “乙丑, 初置長安·雍二營都尉官.”

68 『後漢書』卷87「西羌傳」, 2887쪽. “明年春, 滇零遣人寇褒中, 燔燒郵亭, 大掠百姓. 於是漢中太守鄭勤移屯褒中, 軍營久出無功, 有廢農桑, 乃詔任尙將吏兵還屯長安, 罷遣南陽·潁川·汝南吏士, 置京兆虎牙都尉於長安, 扶風都尉於雍, 如西京三輔都尉故事.”

郡)·경조호아도위·우부풍도위(右扶風都尉)의 군사 8,000여 인과 강호(羌胡) 7,000여 인을 합하여 영창(零昌)을 공격하였다.⁶⁹ 태산·낭야 2군 도위와 달리 경조호아도위·우부풍도위는 강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없앨 수 없었다.

이 밖에 <표 1>에서 두 번 등장한 홍농도위(弘農都尉)가 있었던 홍농군(弘農郡)은 수도 낙양(洛陽)의 서쪽에 있었던 군이다. 따라서 외군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 건무 19년(43) 설치된 함곡관도위(函谷關都尉)가 주목된다.⁷⁰ 아마도 홍농군은 낙양을 지키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위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이 밖에 여남군(汝南郡)에 설치된 양안도위(陽安都尉)는 명칭상 군도위가 아니라 후한 말 조조(曹操)가 실시한 둔전(屯田)을 관리하는 전농도위(典農都尉)였을 것이다. 또 조조가 근거지인 업(鄴) 주변 위군(魏郡)의 관할구역을 넓힌 후 동부도위(東部都尉)와 서부도위(西部都尉)를 설치하였다.⁷¹ 본래 부도위(部都尉)는 이민족이 거주하던 지역에 설치했는데, 이 동부도위와 서부도위는 위문제(魏文帝) 황초(黃初) 2년(221)에 각각 양평군(陽平郡)과 광평군(廣平郡)으로 개칭되었다.⁷² 따라서 이 두 도위는 사실상 태수의 역할을 맡았다. 요컨대 <표 1>의 도위가 설치된 16군 가운데 태산·낭야·경조윤(京兆尹)·우부풍(右扶風)·홍농·여남·위(魏) 7군은 내군이었다. 후한 말의 예인 여남·위 2군을 제외하면 5군이며, 이 가운데

69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 2889쪽. “而零昌種眾復分寇益州, 遣中郎將尹就將南陽兵, 因發益部諸郡屯兵擊零昌黨呂叔都等. 至秋, 蜀人陳省·羅橫應募, 刺殺叔都, 皆封侯賜錢. 又使屯騎校尉班雄屯三輔, 遣左馮翊司馬鈞行征西將軍, 督右扶風仲光·安定太守杜恢·北地太守盛包·京兆虎牙都尉耿溥·右扶風都尉皇甫旗等, 合八千餘人, 又龐參將羌胡兵七千餘人, 與鈞分道竝北擊零昌.”

70 『後漢書』卷1下「光武帝紀」建武十九年條, 72쪽. “是歲, 復置函谷關都尉.”

71 『續漢書』志第二十「郡國志」2 冀州·魏郡條 細注, 3431쪽. “魏志曰: ‘建安十七年, 割河內之蕩陰·朝歌·林慮, 東郡之衛國·頓丘·東武陽·發干, 鉅鹿之麼陶·曲(陽)[周]·南和·(廣平之)廣平·任(城), 趙國之襄國·邯鄲·易陽, 以益魏郡. 十八年, 分置東西都尉.’”

72 『三國志』卷2「魏書」2「文帝紀」黃初二年正月壬午條, 77쪽. “以魏郡東部爲陽平郡, 西部爲廣平郡.”

데 태산·낭야 2군의 도위는 임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없었지만, 경조윤·우부풍·흥농 3군의 도위는 계속 존재하였다.

그런데 구강군(九江郡)에 도위가 설치되었지만, 임시적인 설치였고 내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⁷³ <표 1>에서 등무(滕撫)가 구강도위(九江都尉)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한서』 권6 「효질제기」 영희원년삼월조에서 영희원년(永熹元年, 145) 구강적(九江賊) 마면(馬勉)이 황제(黃帝)를 자칭하자 구강도위 등무가 마면 등을 토벌했다고 기록하였다.⁷⁴ 그런데 『후한서』 권38 「등무전(滕撫傳)」에 따르면 등무는 구강도위에 임명되기 전에 탁령(潁令)으로 7년 동안 근무하였다.⁷⁵ 순제(順帝) 말기에 양주(揚州)와 서주(徐州) 도적이 해마다 끊이지 않았고 건강원년(建康元年, 144) 구강군 사람인 범용(范容)과 주생(周生)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조정에서 이를 평정할 장수를 구하자 삼공(三公)이 등무를 추천하자 등무를 구강도위에 임명하였다.⁷⁶ 탁령은 질(秩)이 천석(千石)이었고⁷⁷ 구강도위는 비이천석(比二千石)이었다. 천석의 현령(縣令)을 이천석의 태수로 임명하는 것은 몇 개의 질급(秩級)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임명이었으므

73 嚴耕望, 1961, 앞의 책, 154쪽; 鎌田重雄, 1962, 앞의 글, 312쪽.

74 『後漢書』卷6「孝質帝紀」永熹元年三月條, 277쪽. “三月, 九江賊馬勉稱‘黃帝’, 九江都尉滕撫討馬勉·范容·周生·大破斬之.”

75 『後漢書』卷38「滕撫傳」, 1279쪽. “滕撫字叔輔, 北海劇人也. 初仕州郡, 稍遷爲潁令, 有文武才用, 太守以其能, 委任郡職, 兼領六縣. 風政修明, 流愛于人, 在事七年, 道不拾遺.”

76 『後漢書』卷38「滕撫傳」, 1279~1280쪽. “順帝末, 揚·徐盜賊羣起, 磐牙連歲. 建康元年, 九江范容·周生等相聚反亂, 屯據歷陽, 爲江淮巨患, 遣御史中丞馮緄將兵督揚州刺史尹耀·九江太守鄧顯討之. 耀·顯軍敗, 爲賊所殺. 又陰陵人徐鳳·馬勉等復寇郡縣, 殺略吏人. 鳳衣絳衣, 帶黑綬, 稱‘無上將軍’, 勉皮冠黃衣, 帶玉印, 稱‘黃帝’, 築營於當塗山中. 乃建年號, 置百官, 遣別帥黃虎攻沒合肥. 明年, 廣陵賊張嬰等復聚眾數千人反, 據廣陵. 朝廷博求將帥, 三公舉撫有文武才, 拜爲九江都尉, 與中郎將趙序助馮緄合州郡兵數萬人共討之.”

77 『續漢書』「郡國志」에서 縣令의 秩級을 千石이라고 보았다(『續漢書』志第二十八「百官志」5 州郡條, 3621쪽. “屬官, 每縣·邑·道, 大者置令一人, 千石; 其次置長, 四百石; 小者置長, 三百石; 侯國之相, 秩次亦如之.”).

로, 한 단계 승진인 비이천석의 도위로 임명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순제 말부터 구강군이 포함된 양주에 도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태산·낭야 2군의 사례처럼 도적을 평정하려면 임시로 구강도위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후한서』 본기에 기록되어야 했지만, 태산·낭야 2군 도위처럼 구강도위를 임시로 설치했다가 없었다는 기록은 없다. 또 등무가 반란을 평정한 후 중랑장에 임명되고 “독양서이주사(督揚徐二州事)”를 맡았다.⁷⁸ “독양서이주사”는 위진남북조시대(魏晉南北朝時代)의 도독제군사(都督諸軍事)처럼 등무가 중랑장의 직책으로 서주(徐州)와 양주(揚州)의 군사를 임시로 지휘했음을 시사한다. 또 중랑장도 도위처럼 광록훈이 관리하는 비이천석의 무장이었다. 등무의 활동 과정을 보면 구강도위가 임시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독양서이주사”가 임시적으로 주어진 권한이었다. 따라서 구강군은 변군(외군)으로 봐야 한다. <표 1>에 도위가 임명된 군 명단에 없지만, 단양군(丹陽郡)도 도위가 설치된 군으로 추정된다. 군사마(郡司馬)로 재직했던 손견(孫堅)은 희평원년(熹平元年, 172) 정용(精勇) 1,000여 인을 소모(召募)하여 회계(會稽) 요적(妖賊) 허창(許昌)을 토벌하여 자사(刺史) 장민(臧旻)에게 잘 보여 현승(縣丞)으로 승진하였다.⁷⁹ 『후한서』 「영제기(靈帝紀)」에는 희평원년 양주자사 장민과 단양태수(丹陽太守) 진인(陳寅)이 허생(許生, 『삼국지(三國志)』 「손파로전(孫破虜傳)」의 허창)을 격파하였고,⁸⁰ 2년 후인 희평 3년(174) 허생을 회계군(會稽郡)에서 죽였다.⁸¹ 이 기록에

78 『後漢書』卷38「滕撫傳」, 1279쪽, “下邳人謝安應募, 率其宗親設伏擊鳳, 斬之, 封安爲平鄉侯, 邑三千戶, 拜撫中郎將, 督揚徐二州事。”

79 『三國志』卷46「吳書」1「孫破虜傳」, 1093쪽, “由是顯聞, 府召署假尉, 會稽妖賊許昌起於句章, 自稱陽明皇帝, 與其子詔扇動諸縣, 眾以萬數, 堅以郡司馬募召精勇, 得千餘人, 與州郡合討破之, 是歲, 熹平元年也, 刺史臧旻列上功狀, 詔書除堅鹽漬丞, 數歲徙盱眙丞, 又徙下邳丞。”

80 『後漢書』卷8「孝靈帝紀」熹平元年十一月條, 334쪽, “十一月, 會稽人許生自稱‘越王’, 寇郡縣, 遣楊州刺史臧旻·丹陽太守陳寅討破之。”

81 『後漢書』卷8「孝靈帝紀」熹平三年十月癸丑條, 336쪽, “十一月, 楊州刺史臧旻率丹陽太守陳寅, 大破許生於會稽, 斬之。”

서 양주자사와 단양태수가 군대를 이끌고 토벌전에 나섰으므로 군사마 손견은 단양태수 진인의 부하였음이 분명하다. 군사마는 변군태수의 속리 가운데 하나였으므로⁸² 손견은 단양군의 사마였다. 따라서 단양군도 변군(외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장군과 단양군을 포함한 양주 전체는 변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장사가 설치된 12개 군국 가운데 하비장사(下邳長史)와 상산장사(常山長史), 노국장사[魯國長史, 행장사사(行長史事)]는 세 지역이 군이 아닌 왕국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8군과 다르다. 『속한서』 「백관지」에 따르면, 왕국(王國)에 군승에 해당하는 장사를 설치하였다.⁸³ 따라서 하비국(下邳國)과 상산군(常山國), 노국(魯國)은 외군이 아니라 내군국이다.

위에서 도위와 장사가 설치된 군국 가운데 예외적인 군국을 살펴보았다. 이 군국은 후한 중기 이후 강의 침입 및 반란, 내지인 낙야·태산 일대 도적의 평정을 위해 일시적 또는 일상적으로 설치하였다. 이 9군을 제외한 한양(천수)·구강·구진·요동·교지·안정·정양·상당·농서·금성·서하·삭방·대 13군이 외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도위가 설치되어 변군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군은 익주군(益州郡)·금성·요동·견위(犍爲)·광한(廣漢)·촉군(蜀郡)·회계·농서 8군, 속국도위가 설치된 장액(張掖)·서하·오원(五原)·북지(北地)·금성·상군(上郡)·천수·안정·안정·요동·주천(酒泉)·광한·촉군·견위 14군이 있다.⁸⁴ 이와 <표 1>의 도위·장사 설치 지역이 겹치는 지역이 외군임은 분명하다.

82 『續漢志』 志第二十八「百官志」5에 邊郡太守의 屬吏로 司馬가 나열되었다(『續漢志』 志第二十八「百官志」5 亭里條注引漢官儀, 3624쪽, “(過)邊郡太守各將萬騎, 行障塞烽火追虜. 置長史一人, 丞一人, 治兵民, 當兵行長領, 置部尉·千人·司馬·候·農都尉, 皆不治民, 不給衛士.”).

83 『續漢書』 志第二十八「百官志」5 王國條, 3627쪽, “皇子封王, 其郡爲國, 每置傅一人, 相一人, 皆二千石. 本注曰: 傅主導王以善, 禮如師, 不臣也. 相如太守, 有長史, 如郡丞.”

84 嚴耕望, 1961, 앞의 책, 155~171쪽 및 167~171쪽의 兩漢邊郡諸都尉表; 張亞偉, 2020, 「試論漢代都尉體系的調整」, 『秦漢研究』, 195~196쪽과 表4 後漢部都尉設置表 및 表5 兩漢屬國都尉設置表.

13군 가운데 구진·교지·상당·구강 4군⁸⁵을 제외한 9군은 북쪽과 서북쪽 국경선에 위치한 군이었다. 따라서 국경선을 맞댄 변경의 군은 모두 외군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양주(涼州)에 속한 군들 모두 외군으로 봐야 한다. 또 교지 자사부(交趾刺史部)에 속하는 교지·구진 2군 이외에 교지의 다른 군들도 외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구강군의 수춘현(壽春縣) 또는 역양현(歷陽縣)에 양주 자사(揚州刺史)의 치소(治所)가 있었고⁸⁶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군이었다. 이런 구강군에 도위가 설치되었으므로 구강군이 외군, 즉 변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강군의 남쪽에 위치한 단양군도 외군이었다. 따라서 단양군의 남쪽에 위치한 양주(揚州)의 나머지 군도 외군이었다고 간주해도 대과 없을 것이다.⁸⁷ 양주(涼州)·교지(交趾)·양주(揚州) 3주 이외에 유주(幽州)와 병주(并州) 전체도 외군에 속했을 것이다. 『후한서』 「진구전(陳龜傳)」에 “이에 다시 유주와 병주 자사를 뽑았으며, 영·군태수·도위 이하 대부분 바꾸었다(乃更選幽·并刺史, 自營郡太守都尉以下, 多所革易)”⁸⁸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영은 오원군(五原郡) 만백현(曼柏縣)에 주둔한 도요장군(度遼將軍)⁸⁹의 군영을 가리키며, 『후한서』에서 도요영(度遼營)의 용례가 발견된다.⁹⁰ 따라서 도요영과 군태

85 并州의 上黨郡은 并州의 동남부에 위치한 郡으로 국경에 접하지 않은 郡이었다.

86 『續漢書』 志第二十二 「郡國志」 4 揚州·九江郡條, 3486쪽.

87 渡邊信一郎은 揚州에서 吳郡과 會稽郡만 外郡이라고 간주하였으나[渡邊信一郎, 2010b, 앞의 글, 172쪽의 圖3 後漢帝國圖(後漢의 內郡と邊郡)], 九江郡에 都尉가 존재했으므로 渡邊信一郎의 內郡과 外郡 구분은 오류가 있다.

88 『後漢書』 卷51 「陳龜傳」, 1693쪽. “帝覺悟, 乃更選幽·并刺史, 自營郡太守都尉以下, 多所革易, 下詔‘爲陳將軍除并·涼一年租賦, 以賜吏民’. 龜既到職, 州郡重足震慄, 鮮卑不敢近塞, 省息經用, 歲以億計.”

89 『後漢書』 卷2 「顯宗紀」 永平八年條, 110쪽. “初置度遼將軍, 屯五原曼柏.”

90 『後漢書』 「孝安帝紀」 延光三年九月乙巳條에 延光 3년(124) 郡國 中都官의 죄수를 감형하여 敦煌·隴西·度遼營에 보내라는 詔書를 내렸다(『後漢書』 卷5 「孝安帝紀」 延光三年九月乙巳條, 240쪽. “乙巳, 詔郡國中都官死辜繫囚減罪一等, (詔)[詔]敦煌·隴西及度遼營; 其右趾以下及亡命者贖, 各有差.”). 또 『後漢書』 「南匈奴傳」에 北匈奴와 南匈奴의 交通을 방지하기 위해 度遼營을 설치했다고 기록하였다(『後漢書』 卷89 「南匈奴傳」, 2949쪽. “八年, 遣越騎司馬鄭眾北

수, 도위가 병렬로 나열된 것은 유주와 병주의 모든 군이 외군이었다고 해석된다. 공교롭게 <표 1>에서 밝혔듯이, 『속한서』 「군국지」에 상당군(上黨郡) 장자현(長子縣)에 상당도위(上黨都尉)의 치소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⁹¹ 상당군은 병주에서 가장 남쪽에 있었고, 상당군의 서북쪽에 태원군이 있었으므로 도위가 설치된 상당군뿐만 아니라 병주자사의 치소가 있었던 태원군도 외군(邊郡)이었을 것이다.⁹² 또 익주도 외군에 속했을 것이다. 익주에 건위속국(健爲屬國)·촉군속국(蜀郡屬國)·광한속국(廣漢屬國)이 있었는데,⁹³ 속국(屬國)은 이민족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속국도위(屬國都尉)가 임명되었다. 건위·촉군·광한 3군은 익주에서 인구가 많은 군이었는데도 일부를 나누어 속국도위를 설치했으므로 변군이자 외군으로 볼 수 있다. 또 한중(漢中)·파(巴)·건위 등을 제외한 군들은 국경선에 있었으므로 변군이었다. 즉, 익주의 제군(諸郡)도 외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서술한 6개의 자사부[양주(涼州)·교지·양주(揚州)·유주·병주·익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표 1>에서 도위와 장사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내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사예(司隸)·예주(豫州)·연주(兗州)·기주(冀州)·청주(靑州)·서주(徐州)는 황하 중하류에 위치하여 이른바 중원(中原)이라 불렸으므로 내군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주(荊州)는 내군과 외군

使報命，而南部須卜骨都侯等知漢與北虜交使，懷嫌怨欲畔，密因北使，令遣兵迎之。鄭眾出塞，疑有異，伺候果得須卜使人，乃上言宜更置大將，以防二虜交通。由是始置度遼營，以中郎將吳棠行度遼將軍事，副校尉來苗·左校尉閭章·右校尉張國將黎陽虎牙營士屯五原曼柏。”。

91 『續漢書』 志第二十三 「郡國志」 5 并州·上黨郡·長子縣條 細注, 3522쪽. “上黨記曰: ‘關城, 都尉所治. 令狐徵君隱城東山中, 去郡六十里, 卽壺關三老令狐茂上書訟戾太子者也, 茂卽葬其山.’”

92 渡邊信一郎은 太原郡과 上黨郡이 內郡이라고 보았으나[渡邊信一郎, 2010a, 앞의 글, 172쪽의 圖3 後漢帝國圖(後漢の內郡と邊郡)], 上黨郡에 都尉가 설치되었으므로 그의 內郡과 外郡 구분이 자의적이고 고증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93 『續漢書』 志第二十三 「郡國志」 5 益州條, 3514~3516쪽.

을 구별할 자료가 없다. 형주의 군 가운데 남양군(南陽郡)은 인구가 가장 많은 군이자 광무제 및 건국공신들의 고향이었으므로 내군에 속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군이 내군과 외군 가운데 어느 쪽인지 현재의 자료로 단언하기 어렵다. 호남성(湖南省) 장사시(長沙市)에서 발견된 한간(漢簡)의 법률문서에서 장사군(長沙郡)의 도위가 언급되지 않아서 장사군에 도위가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적된다.⁹⁴ 이 간독은 재판과 관련된 법률문서였고 태수도 재판과 관련된 업무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⁹⁵ 장사군이 도위가 설치되지 않은 내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장사 동패루(東牌樓) 7호(號) 고정(古井)에서 발견된 후한 영제(靈帝) 시기(168~189)의 장사동패루동한간독(長沙東牌樓東漢簡牘)도 장사군 임상현(臨湘縣)의 우정(郵亭) 문서이고 우정에서 전송하는 공문과 사신(私信)이다.⁹⁶ 임상현과 관련된 간독에서도 도위와 현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⁹⁷ 일단 장사군의 도위 설치 여부는 유보한다. 남군과 강하군도 내군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⁹⁸ 남군에 건무 22년(46) 무계만(武谿蠻),⁹⁹ 건무 23년(47) 남군만(南郡蠻),¹⁰⁰ 화제(和帝) 영원(永元) 13년(101) 무만(巫蠻),¹⁰¹ 연희(延熹) 5년

94 姚遠, 2016, 「東漢內郡縣法官吏復原研究-以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爲核心-」, 『華東政法大學學報』 2016-4, 57쪽; 崔京, 2020.6, 「五一廣場東漢簡牘所見官吏研究」, 鄭州大學碩士學位論文, 10~11쪽.

95 姚遠, 2016, 위의 글, 56쪽.

96 王素, 2005, 「長沙東牌樓東漢簡牘選釋」, 『文物』 2005-12, 69원쪽.

97 『長沙東牌樓東漢簡牘』의 編者들은 例督盜賊을 臨湘縣尉로 추측하지만[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中國文物研究所 編, 2006, 「光和六年監臨湘李永·例督盜賊殷何上言李建與精張諍田自相和從書」, 『長沙東牌樓東漢簡牘』, 北京: 文物出版社, 74쪽, 주) 2] 縣尉라는 직함을 ‘例督盜賊’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은 없다.

98 高敏, 1999, 앞의 글, 22~23쪽; 渡邊信一郎, 2010b, 앞의 글, 167~170쪽 및 172쪽의 圖3 後漢帝國圖(後漢の內郡と邊郡).

99 『續漢書』 志第十六 「五行志」 4 地震條, 3327쪽. “世祖建武二十二年九月, 郡國四十二地震, 南陽尤甚, 地裂壓殺人, 其後武谿蠻夷反, 爲寇害, 至南郡, 發荊州諸郡兵, 遣武威將軍劉尚擊之, 爲夷所圍, 復發兵赴之, 尚遂爲所沒.”

100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建武二十三年正月條, 75쪽. “是二十三年春正月,

(162) 무릉만(武陵蠻)¹⁰² 등이 침입했던 예를 보면 이민족이 사는 지역인 ‘내경’¹⁰³에 해당하므로 외군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판단을 유보한다.¹⁰⁴ 요진대 내군에 해당하는 자사부 관할 아래의 군은 사예교위(司隸校尉)에 7군, 예주(豫州)에 6개 군국(郡國), 기주(冀州)에 9개 군국, 연주(兗州)에 8개 군국, 서주(徐州)에 5개 군국, 청주(靑州)에 6개 군국이 있었다.¹⁰⁵ 여기에 최소 형주의 남양군을 내군에 포함하면 내군의 군국은 최소 42군

南郡蠻叛，遣武威將軍劉尚討破之，徙其種人於江夏。”

101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三年十二月條, 189쪽, “辛卯, 巫蠻叛, 寇南郡.”

102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五年條, 311쪽, “冬十月, 武陵蠻叛, 寇江陵, 南郡太守李肅坐奔北弃市; 辛丑, 以太常馮緄爲車騎將軍, 討之. 假公卿以下奉, 又換王侯租以助軍糧, 出濯龍中藏錢還之. 十一月, 馮緄大破叛蠻於武陵.” 『後漢書』「馮緄傳」에 따르면 이때武陵蠻뿐만 아니라 零陵蠻도 南郡을 공격하였다(『後漢書』卷38「馮緄傳」, 1281쪽, “時長沙蠻寇益陽, 屯聚積久, 至延熹五年, 眾轉盛, 而零陵蠻賊復反應之, 合二萬餘人, 攻燒城郭, 殺傷長吏. 又武陵蠻夷悉反, 寇掠江陵間, 荊州刺史劉度·南郡太守李肅竝奔走, 荊南皆沒. 於是拜緄爲車騎將軍, 將兵十餘萬討之.”).

103 ‘內境’의 개념은 李成珪, 2005, 「中華帝國的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歷史學報』186, 96~101쪽 참조.

104 章帝는 建初 3년(78)에 鉅鹿王 恭을 江陵王으로 徙封하고 南郡을 封國으로 삼았다. 그러나 元和 2년(85)三公이 江陵이 京師의 正南에 위치했기 때문에 封國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상주하여 劉恭을 六安王으로 徙封하고 廬江郡을 封國으로 삼았다(『後漢書』卷50「孝明八王·彭城靖王恭傳」, 1670쪽, “彭城靖王恭, 永平九年賜號靈壽王. 十五年, 封爲鉅鹿王. 建初三年, 徙封江陵王, 改南郡爲國. 元和二年, 三公上言江陵在京師正南, 不可以封, 乃徙爲六安王, 以廬江郡爲國.”). 이 기록에서 洛陽의 正南이라는 이유로 南郡이 江陵王國에서 다시 郡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正南’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으나, 洛陽 방어를 위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면 南郡은 內郡으로 볼 수 있으나 境內에 각종 蠻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반란 토벌을 위한 군사적 수요 때문에 都尉를 설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諸侯王國이 모두 內郡에 속하는 지역에 들어섰다는 사실도 南郡이 外郡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南郡을 內郡으로 파악하는 것을 보류한다.

105 『續漢書』「郡國志」에 後漢時代 각 州部の 郡國 숫자가 표기되었다(『續漢書』志第二十八「百官志」5 州郡條, 3619쪽, “豫州部郡國六, 冀州部九, 兗州部八, 徐州部五, 靑州部六, 荊州部七, 揚州部六, 益州部十二, 涼州部十二, 并州部

이었다. 이 가운데 흉농군에만 도위를 설치했으므로 건무 6년(30) 도위가 폐지된 내군은 최소 41개 군국이었다고 추정된다.¹⁰⁶

Ⅲ. 내군(內郡) 군병(郡兵)의 존재

고민은 후한시대 군병이 존재한 사례를 나열하였다. 이에 따르면 광무제 건무 8년 외효(隗囂) 공격을 위한 제군 갑졸(甲卒) 동원,¹⁰⁷ 건무 9년 상곡(上谷)·어양(漁陽) 등 군병의 노방(盧芳) 일당 공격,¹⁰⁸ 건무 14년(38) 이후 중산태수(中山太守) 마성(馬成)의 군사 지휘,¹⁰⁹ 건무 17년(41) 북변 제군 군병의 존재,¹¹⁰ 건무

九, 幽州部十一, 交州部七, 凡九十八.”). 본문에서 이 기록을 따랐다.

106 張亞偉는 內郡이 48郡, 邊郡(外郡)이 35郡이라고 보았다(張亞偉, 2018.5, 앞의 글, 13~14쪽). 內郡과 外郡을 나누는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가 열거한 郡名을 보면 국경선에 있는 郡은 邊郡, 그렇지 않은 郡은 內郡으로 파악하였다.

107 『後漢書』卷18「吳漢傳」, 681쪽. “會隗囂畔, 夏, 復遣漢西屯長安. 八年, 從車駕上隴, 遂圍隗囂於西城. 帝勅漢曰: ‘諸郡甲卒但坐費糧食, 若有逃亡, 則沮敗眾心, 宜悉罷之.’ 漢等貪并力攻囂, 遂不能遣, 糧食日少, 吏士疲役, 逃亡者多, 及公孫述救至, 漢遂退敗.”

108 『後漢書』卷20「王霸傳」, 737쪽. “九年, 霸與吳漢及橫野大將軍王常·建義大將軍朱祐·破茲將軍侯進等五萬餘人, 擊盧芳將賈覽·閔堪於高柳. 匈奴遣騎助芳, 漢車遇雨, 戰不利. 吳漢還洛陽, 令朱祐屯常山, 王常屯涿郡, 侯進屯漁陽. 璽書拜霸上谷太守, 領屯兵如故, 捕擊胡虜, 無拘郡界. 明年, 霸復與吳漢等四將軍六萬人出高柳擊賈覽, 詔霸與漁陽太守陳訢將兵爲諸軍鋒.”

109 『後漢書』卷22「馬成傳」, 779쪽. “十四年, 屯常山·中山以備北邊, 并領建義大將軍朱祐營. 又代驃騎大將軍杜茂繕治障塞, 自西河至渭橋, 河上至安邑, 太原至井陘, 中山至鄴, 皆築保壁, 起烽燧, 十里一候. 在事五六年, 帝以成勤勞, 徵還京師. 邊人多上書求請者, 復遣成還屯. 及南單于保塞, 北方無事, 拜爲中山太守, 上將軍印綬, 領屯兵如故. 二十四年, 南擊武谿蠻賊, 無功, 上太守印綬.”

110 『後漢書』卷20「祭遵傳附彤傳」, 744쪽. “當是時, 匈奴·鮮卑及赤山烏桓連和彊盛, 數入塞殺略吏人. 朝廷以爲憂, 益增緣邊兵, 郡有數千人, 又遣諸將分屯障塞. 帝以彤爲能, 建武十七年, 拜遼東太守.”

18년(42) 촉군수장(蜀郡守將) 사흠(史歆) 토벌에 광한·파·촉 3군병 징발,¹¹¹ 건무 16~17년(40~41) 마원(馬援)이 제군병(諸郡兵)을 동원한 이광(李廣) 격파,¹¹² 장제(章帝) 건초원년(建初元年, 76) 무릉군병(武陵郡兵)의 반만(叛蠻) 토벌,¹¹³ 건초 5년(80) 형주와 예주 제군병의 무릉누중반만(武陵婁中叛蠻) 토벌,¹¹⁴ 화제 영원(永元) 12년(100) 군병의 일남상림만이(日南象林蠻夷) 격파,¹¹⁵ 안제(安帝) 원초(元初) 3년(116) 주군병(州郡兵)의 창오(蒼梧)·울림(鬱林)·합포(合浦) 만이(蠻夷) 토벌,¹¹⁶ 요서군병(遼西郡兵)과 오환(烏桓)의 선비(鮮卑) 격퇴,¹¹⁷ 순제(順帝) 건강원년(144) 주군(州郡)의 남군(南郡)·강하(江夏) 도적 토평(討平)¹¹⁸과 주군병의 양주(揚州)·서주 도적 격파,¹¹⁹ 환제 연희 3년(160) 태산·낭야적 도적

111 『後漢書』卷18「吳漢傳」, 683쪽. “十八年, 蜀郡守將史歆反於成都, 自稱大司馬, 攻太守張穆, 穆踰城走廣都, 歆遂移檄郡縣, 而宕渠楊偉·胸臆徐容等, 起兵各數千人以應之. 帝以歆昔爲岑彭護軍, 曉習兵事, 故遣漢率劉尚及太中大夫臧宮將萬餘人討之. 漢入武都, 乃發廣漢·巴·蜀三郡兵圍成都, 百餘日城破, 誅歆等. 漢乃乘桴沿江下巴郡, 楊偉·徐容等惶恐解散, 漢誅其渠帥二百餘人, 徙其黨與數百家於南郡·長沙而還.”

112 『後漢書』卷24「馬援傳」, 838쪽. “十七年, 遂共聚會徒黨, 攻沒皖城, 殺皖侯劉閔, 自稱「南岳大師」. 遣謁者張宗將兵數千人討之, 復爲廣所敗. 於是使援發諸郡兵, 合萬餘人, 擊破廣等, 斬之.”

113 『後漢書』卷3「肅宗孝章帝紀」建初元年十月條, 134쪽. “冬十月, 武陵郡兵討叛蠻, 破降之.”

114 『後漢書』卷3「肅宗孝章帝紀」建初五年三月條, 140쪽. “荊·豫諸郡兵討破武陵婁中叛蠻.”

115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二年四月條, 187쪽. “夏四月, 日南象林蠻夷反, 郡兵討破之.”

116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三年春正月甲戌條, 225쪽. “蒼梧·鬱林·合浦蠻夷反叛, 二月, 遣侍御史任逵督州郡兵討之.”

117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四年四月己巳條, 228쪽. “己巳, 鮮卑寇遼西, 遼西郡兵與烏桓擊破之.”

118 『後漢書』卷6「孝順帝紀」建康元年三月庚子條, 274쪽. “南郡·江夏盜賊寇掠城邑, 州郡討平之.”

119 『後漢書』卷6「孝順帝紀」建康元年八月條, 274쪽. “八月, 楊·徐盜賊范容·周生等寇掠城邑, 遣御史中丞馮赦督州郡兵討之.”

격파,¹²⁰ 연희 5년(162) 장사·영릉(零陵) 적 공격¹²¹과 한양·농서·금성 등 제군 병의 조오강(鳥吾羌) 공격,¹²² 같은 해 군병의 태산적 격파¹²³ 등의 예에서 후한 시대 전국의 여러 주군(諸州郡)에 주군병이 있었음이 증명된다.¹²⁴ 그러나 고민이 후한시대 군병 동원의 모든 사례를 망라한 것은 아니었다.

고민이 나열한 사료에 보이는 군명을 분석하면, 상곡(上谷)·어양(漁陽), 광한·파·촉, 일남, 교지와 양주(揚州)(의 주군병), 무릉군, 요서군 등 최소 8군은 외군이다. 반면 중산군, 태산군, 주군병이 동원된 서주와 예주는 내군에 속한다. 본고에서 남군(南郡)·강하(江夏)은 내군과 외군으로 구별하지 않았지만, 전자는 내군, 후자는 외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건을 제시한다.

고민이 열거하지 않은 주군병 동원의 사례를 살펴보자. 건무 11년(35) 파촉(巴蜀)의 군웅인 공손술(公孫述)을 공격하기 위해 남양·무릉(武陵)·남군의 병을 징발하고 계양(桂陽)·영릉(零陵)·장사 위수도졸(委輸棹卒)을 동원하였다.¹²⁵ 이때는 건무 6년(30) 도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다. 이때 형주의 남양·무릉·남군 가운데 최소한 남양군은 내군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후한서』 「남만전(南蠻傳)」에 따르면 건무 18년(42)

120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三年九月條, 307쪽. “九月, 太山·琅邪賊勞丙等復叛, 寇掠百姓, 遣御史中丞趙某持節督州郡討之.”

121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五年五月條, 310쪽. “長沙·零陵賊起, 攻桂陽·蒼梧·南海·交趾, 遣御史中丞盛脩督州郡討之, 不克.”

122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五年七月己未條, 310쪽. “鳥吾羌寇漢陽·隴西·金城, 諸郡兵討破之.”

123 『後漢書』卷63「李固傳」, 2080쪽. “上奏南陽太守高賜等臧穢. 賜等懼罪, 遂共重賂大將軍梁冀, 冀爲千里移檄, 而固持之愈急. 冀遂令徙固爲太山太守. 時太山盜賊屯聚歷年, 郡兵常千人, 追討不能制. 固到, 悉罷遣歸農, 但選留任戰者百餘人, 以恩信招誘之. 未滿歲, 賊皆弭散.”

124 高敏, 1999, 앞의 글, 20~23쪽.

125 『後漢書』卷17「岑彭傳」, 661쪽. “十一年春, 彭與吳漢及誅虜將軍劉隆·輔威將軍臧宮·驍騎將軍劉歆, 發南陽·武陵·南郡兵, 又發桂陽·零陵·長沙委輸棹卒, 凡六萬餘人, 騎五千匹, 皆會荊門.”

징이(徵貳)·징칙(徵則) 자매의 반란 때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과 누선장군(樓船將軍) 단지(段志)가 장사·계양·영릉·창오 군병 1만여 인을 동원하여 반란을 평정하였다.¹²⁶ 4군에 평균 2,500여 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건무 23년(47) 정부상단정(精夫單單程) 등이 군현을 공격하자 조정에서 무위장군(武衛將軍) 유상(劉尙)에게 남군·장사·무릉병 만여 인을 징발하여 토벌하게 하였다.¹²⁷ 여기에서 남군·장사·무릉 3군에 평균 3,000여 인 이상의 군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광무제 시기의 예를 종합하면 형주에 속하는 남양·무릉·남군·장사·계양·영릉·창오 등 제군에 평균 2,500~3,300여 인의 군병이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남양군은 내군임이 분명하고 남군은 내군일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할 근거는 없다. 반면 나머지 무릉·장사·계양·영릉·창오 5군은 변군으로 볼 수 있다. 즉, 최소한 내군인 남양군에도 도위 폐지 이후 군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무 11년(35)에 동원된 남양·무릉·남군의 군병들은 장강 상류에 아직 남아 있던 공손술 세력을 격파하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건무 18년(42)과 건무 23년(47)은 이미 중국 전체가 후한이 통일한 상태이므로 내군에 군사들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형주에서 내군은 남양군만이 확실하고 남군 이하 나머지 군의 내군과 외군 구별을 보류하였으므로, 일단 내군인 남양군을 포함한 형주에 군병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군의 주군병 동원 사례를 살펴보자.

① 건무 26년(50) 이전 평원태수(平原太守) 조희(趙熹)가 “제군(諸郡)”과 함

126 『後漢書』卷86「南蠻傳」, 2836~2837쪽. “至十六年, 交阯女子徵側及其妹徵貳反, 攻郡, 徵側者, 甞泠縣雒將之女也. 嫁爲朱載人詩索妻, 甚雄勇. 交阯太守蘇定以法繩之, 側忿, 故反. 於是九眞·日南·合浦蠻里皆應之, 凡略六十五城, 自立爲王. 交阯刺史及諸太守僅得自守. 光武乃詔長沙·合浦·交阯具車船, 修道橋, 通障谿, 儲糧穀. 十八年, 遣伏波將軍馬援·樓船將軍段志, 發長沙·桂陽·零陵·蒼梧兵萬餘人討之. 明年夏四月, 援破交阯, 斬徵側·徵貳等, 餘皆降散, 進擊九眞賊都陽等, 破降之. 徙其渠帥三百餘口於零陵. 於是領表悉平.”

127 『後漢書』卷86「南蠻傳」, 2831~2832쪽. “建武二十三年, 精夫單單程等據其險隘, 大寇郡縣. 遣武威將軍劉尙發南郡·長沙·武陵兵萬餘人, 乘船泝沅水入武谿擊之.”

계 평원군의 도적을 체포하였다.¹²⁸ 원문에는 “제군”이라고 표기했지만, 평원군 주변 군에서 차출한 군인이었음은 분명하다. 평원군은 청주(靑州)에 속한 내군이었는데, ‘군병’이란 단어는 없어도 광무제 말기에 내군인 평원군과 그 주변 “제군”에 군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장제 건초(建初) 3년(78) 누중만(濃中蠻)이 반란을 일으키자 건초 4년(79) 형주 7군과 여남·영천(潁川)의 이형도(弛刑徒)·리사(吏士) 5,000여 인을 보내 영양(零陽)을 구하도록 하였다.¹²⁹ 이 기사에서 죄수인 이형도를 제외하면 리사가 군의 하급장교와 군인들, 즉 군병이었을 것이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주 7군 가운데 남양군은 내군이었고 여남·영천 2군도 내군에 속하였다. 9군에서 5,000여 인을 동원했으므로 평균 555인을 동원하였다. 즉, 1군당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최소 555인이 있었다.

③ 안제 영초원년(永初元年, 107) 선령강(先零羌)의 별종(別種)인 진령(滇零)과 종강(種羌)이 반란을 일으키자 외척인 거기장군(車騎將軍) 등즐(鄧鷟)과 정서교위(征西校尉) 임상(任尙)이 낙양의 5영(五營)과 삼하(三河)·삼보·여남·남양·영천·태원·상당 병 5만 인을 거느리고 한양(漢陽)에 주둔하였다.¹³⁰ 여기에서 태원·상당 2군은 외군에 속하고 삼하·삼보·여남·남양·영천 9군은 내군에 속하였다. 삼하·남양·영천 5군은 낙양을 속현으로 거느린 하남윤의 접경 지역이었다. 여남군은 하남윤과 경계선을 함께하지 않지만 남양군과 함께 후한 시대 인구가 가장 많은 군이었고 낙양과 가까운 군이었다. 따라서 낙양과 그 주

128 『後漢書』卷26「趙憲傳」, 914쪽. “其年, 遷憲平原太守. 時平原多盜賊, 憲與諸郡討捕, 斬其渠帥, 餘黨當坐者數千人. 憲上言‘惡惡止其身, 可一切徙京師近郡’. 帝從之, 乃悉移置潁川·陳留.”

129 『後漢書』卷86「南蠻傳」, 2832쪽. “三年冬, 濃中蠻覃兒健等復反, 攻燒零陽·作唐·孱陵界中. 明年春, 發荊州七郡及汝南·潁川(施)[弛]刑徒吏士五千餘人, 拒守零陽, 募充中五里蠻精夫不叛者四千人, 擊澧中賊.”

130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 2886쪽. “先零別種滇零與鍾羌諸種大爲寇掠, 斷隴道. 時羌歸附既久, 無復器甲, 或持竹竿木枝以代戈矛, 或負板案以爲楯, 或執銅鏡以象兵, 郡縣畏懦不能制. 冬, 遣車騎將軍鄧鷟, 征西校尉任尙副, 將五營及三河·三輔·汝南·南陽·潁川·太原·上黨兵合五萬人, 屯漢陽.”

변의 중심 지역인 6군에 군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안제 영초 3년(109) 해적 장백로(張伯路) 등 30여 인이 장군(將軍)을 자칭하며 해안가의 9군을 노략질하고 이천석·영장(令長)을 죽였다. 처음에 시어사(侍御史) 방웅(龐雄)을 보내 격파하게 하니 장백로 등이 항복하겠다고 한 후에 다시 염차성(厭次城)을 함락하고 고당현(高唐縣)을 공격하였다. 이에 어사중승(御史中丞) 왕종(王宗)을 보내 유주·기주 제군병을 동원하였다.¹³¹ 여기에서 외군으로 구성된 변방의 유주뿐만 아니라 내군에 속하는 기주의 제군병을 동원한 사실이 주목된다.

⑤ 순제 양가(陽嘉) 5년(136)부터 한안원년(漢安元年, 142)까지 서강(西羌)과 동강(東羌)이 합쳐 농서군과 관중(關中)을 공격하였다. 이때 무위태수(武威太守) 조충(趙沖)에게 하서(河西) 4군의 병사를 거느리고 대처하게 하였다. 제종(諸種) 8,000~9,000기(騎)가 무위군(武威郡)을 공격하였다. 이때 다시 안정군을 우부풍, 북지군(北地郡)을 좌풍익에 옮겼다. 또 행거기장군(行車騎將軍) 집금오(執金吾) 장교(張喬)가 좌우우림(左右羽林)·오교사(五校士), 하내·남양·여남 병 1만 5,000을 거느리고 삼보에 주둔하게 하였다.¹³² 여기에서 동원된 하

131 『後漢書』卷38「法雄傳」, 1277쪽. “永初三年, 海賊張伯路等三千餘人, 冠赤幘, 服絳衣, 自稱‘將軍’, 寇濱海九郡, 殺二千石令長. 初, 遣侍御史龐雄督州郡兵擊之, 伯路等乞降, 尋復屯聚. 明年, 伯路復與平原劉文河等三百餘人稱‘使者’, 攻厭次城, 殺長吏, 轉入高唐, 燒官寺, 出繫囚, 渠帥皆稱‘將軍’, 共朝謁伯路. 伯路冠五梁冠, 佩印綬, 黨眾浸盛. 乃遣御史中丞王宗持節發幽·冀諸郡兵, 合數萬人, 乃徵雄爲青州刺史, 與王宗并力討之. 連戰破賊, 斬首溺死者數百人, 餘皆奔走, 收器械財物甚眾. 會赦詔到, 賊猶以軍甲未解, 不敢歸降. 於是王宗召刺史太守共議, 皆以爲當遂擊之. 雄曰: ‘不然. 兵, 凶器; 戰, 危事. 勇不可恃, 勝不可必. 賊若乘船浮海, 深入遠島, 攻之未易也. 及有赦令, 可且罷兵, 以慰誘其心, 執必解散, 然後圖之, 可不戰而定也.’ 宗善其言, 卽罷兵. 賊聞大喜, 乃還所略人. 而東萊郡兵獨未解甲, 賊復驚恐, 遁走遼東, 止海島上. 五年春, 乏食, 復抄東萊間, 雄率郡兵擊破之, 賊逃還遼東, 遼東人李久等共斬平之, 於是州界清靜.”

132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 2896쪽. “於是東西羌遂大合, 羣唐種三千餘騎寇隴西, 又燒園陵, 掠關中, 殺傷長吏, 郤陽令任顗追擊, 戰死. 遣中郎將龐淩募勇士千五百人頓美陽, 爲涼州援. 武威太守趙沖追擊羣唐羌, 斬首

내·남양·여남 3군병은 내군의 군사였고 한 군에 평균 5,000명의 군사가 있었음이 증명된다.

⑥ 환제(桓帝) 연희 7년(164) 형주병(荊州兵) 주개(朱蓋) 등이 반란을 일으켜 계양적(桂陽賊) 호란(胡蘭) 등 3,000여 인과 함께 계양군(桂陽郡)을 공격하였다. 조정에서 탁상(度尙)을 중랑장에 임명하여 유(幽)·기(冀)·여양(黎陽)·오환(烏桓) 보기(步騎) 2만 6,000인을 거느리고 영릉태수(零陵太守) 진구(陳球)를 구원하게 하고 장사태수(長沙太守) 항서(抗徐) 등에게 군병을 거느리고 참전하게 하였다.¹³³ 이 예에서 형주 남부에 위치한 계양·영릉 2군의 반란에 북변의 유주·기주·도요장군영(여양), 이민족인 오환 등을 동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주의 군병이 징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①~⑥에서 내군의 군사들이 같은 내군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외군에 해당하는 형주, 관중, 농서·관릉[양주(涼州) 남부] 등지의 반란 평정에 동원되었다. ①에서 평원군과 인근 군에서 파견된 군사들이 평원군의 도적을 평정하였다. “제군”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지만, 평원군이 속한 청주 또는 기주에 속하는 군으로 추정되며,¹³⁴ 모두 내군에 속한다. ②에서 여남·영천 2군,

四百餘級，得馬牛羊驢萬八千餘頭，羌二千餘人降。詔沖督河西四郡兵爲節度。罕種羌千餘寇北地，北地太守賈福與趙沖擊之，不利。秋，諸種八九千騎寇武威，涼郡震恐，於是復徙安定居扶風，北地居馮翊，遣行車騎將軍執金吾張喬將左右羽林·五校士及河內·南陽·汝南兵萬五千屯三輔。”

133 『後漢書』卷38『度尙傳』, 1286쪽, “尙出兵三年，羣寇悉定。七年，封右鄉侯，遷桂陽太守。明年，徵還京師。時荊州兵朱蓋等，征伐役久，財賞不贍，忿恚，復作亂，與桂陽賊胡蘭等三千餘人復攻桂陽，焚燒郡縣，太守任胤奔城走，賊眾遂至數萬。轉攻零陵，太守陳球固守拒之。於是尙爲中郎將，將幽·冀·黎陽·烏桓步騎二萬六千人救球，又與長沙太守抗徐等發諸郡兵，并執討擊，大破之，斬蘭等首三千五百級，餘賊走蒼梧。”

134 平原郡은 靑州의 북쪽에 위치하며 平原郡의 북쪽에 冀州의 河間國과 勃海郡, 서쪽에 安平國과 淸河國이 있었다[譚其驤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第二冊(秦·西漢·東漢時期), 北京: 地圖出版社, 47~48쪽]. 趙憲가 평정한 平原郡의 盜賊이 활동한 지역을 알 수 없지만, 만약 平原郡과 위에서 언급한 冀州의 郡國과의 交界地에서 활동했다면, 冀州의 郡兵들도 도적 토벌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에서 삼하(하남·하동·하내)·삼보(경조윤·우부풍·좌풍익)·여남·남양·영천 9군, ④과 ⑥에서 기주, ⑤에서 하내·남양·여남 3군의 군사들이 동원되었다. 이 밖에 ③의 예에서 외군인 태원·상당 2군의 군병도 동원되었다. 즉, 삼하(하남·하동·하내)·삼보(경조윤·우부풍·좌풍익)·여남·남양·영천 9군과 기주는 내군에 속한다. 기주에 9개 군국이 있었으므로, 최대 내군 19개 군국에 군병이 존재하였다. 외군인 태원·상당 2군을 포함하면 21개 군국에서 군병의 존재가 확인된다. 원초 5년(118) 흉노(匈奴)의 봉후(逢侯)가 100여 기를 거느리고 망명하자 영천군으로 옮겨던 예¹³⁵에서 이 내군의 군사들이 반드시 한인(漢人) 보병이 아니라 이민족도 있었을 것이다. 최대 19개 군국 가운데 경조윤(長安)과 우부풍에 도위(경조호아도위·우부풍도위)가 설치되었을 뿐 나머지 17개 내군의 군국에 도위가 없었다.

고민과 필자가 발굴한 군병 사료를 종합하면, 도위를 폐지한 광무제 시기부터 내군에도 군병을 징발한 사례가 나오며 3대 황제인 장제부터 후한 말인 환제 시기까지 내군과 외군 모두 군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특정 기간이 아니라 사실상 후한 전체 시기에 군병이 존재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¹³⁶ 외군(변군)과 내군으로 군병의 존재를 구분하면, 외군은 최소 14군(상곡·어양·광한·파·축·일남·무릉·요서·장사·계양·영릉·창오·태원·상당)과 교지·양주(揚州)·유주 3주에서 군병이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반면 내군은 최소 12군[중산·태산·평원·삼하(하남·하동·하내)·삼보(경조윤·좌부풍·우부풍)·여남·남양·영천]과 사예교위부(경기)와 기주·서주·예주 3주의 군병이 확인된다. 양자를 합산하면, 모두 최소 26군과 6주에서 군병이 있었다.

135 『後漢書』卷89「南匈奴傳」, 2958쪽. “四年, 逢侯爲鮮卑所破, 部眾分散, 皆歸北虜. 五年春, 逢侯將百餘騎亡還, 詣朔方塞降, 鄧遵奏徙逢侯於潁川郡.”

136 靈帝 시기에 발생한 黃巾賊의 난을 진압할 때 郡兵을 동원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黃巾 餘賊과 黑山賊, 涼州 일대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또는 董卓을 토벌하기 위해 지방관들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 郡兵도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문에서 靈帝 시기의 사례를 나열하지 않았지만, 郡兵은 사실상 後漢의 전 시기에 발견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외군(변군)에서 군병이 보이는 현상은 제도상 당연한 일이므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군에도 발견되는 군병의 사례는 광무제의 도위 폐지가 군병 자체를 없앴다는 통설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필자가 내군으로 규정한 지역 가운데 청주만이 군병이 있었다는 기사가 없을 뿐 구체적으로 12군과 청주를 제외한 5주(기주·서주·예주·연주·청주) 및 사예(경기)에서 군병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삼하(하남·하동·하내) 3군과 남양·영천 2군은 수도 낙양을 둘러싼 지역이었다. 여남군은 영천군의 남쪽에 위치했는데 낙양 주변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1장에서 홍농도위의 존재를 확인했는데, 홍농군은 낙양의 서쪽에 있던 군이었다. 이처럼 낙양 주변의 7군에 군병이 있었던 것은 낙양을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였을 것이다. 또 ②에서 여남·영천 2군이 형주에 파견되었고, 건무 11년(35) 파촉의 공손술을 공격하기 위해 남양 군병이 동원된¹³⁷ 사례를 보면, 낙양 주변 7군은 가까운 지역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머지 4군과 사예교위, 예주, 기주, 서주는 대체로 ‘중원’이라 불리는 황하 중류를 중심으로 하류와 상류까지 분포하였다. 즉, 내군 중의 중심 내군에 군병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5개의 사례는 각지의 반란 때문에 반란 토벌을 위해 각 군의 병사들을 차출하여 알려졌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내군에도 후한시대 대부분 기간 동안에 군병이 존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평산시 내군의 군병 관리 체계

Ⅲ장에서 구체적으로 최소 12군과 내군을 관리하는 사예와 4주에 후한 거의 전

137 『後漢書』卷17「岑彭傳」, 661쪽. “十一年春, 彭與吳漢及誅虜將軍劉隆·輔威將軍臧宮·驍騎將軍劉歆, 發南陽·武陵·南郡兵, 又發桂陽·零陵·長沙委輸棹卒, 凡六萬餘人, 騎五千匹, 皆會荊門.”

시기에 내군이 존재했음을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군의 군대를 관할하는 도위가 없어진 상황에서 누가 내군의 군병을 지휘했는지의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속한서』 「백관지」에서 건무 6년(30) 제군 도위를 없애고 그 직무를 태수에 병합했다는 구절¹³⁸이 주목된다. 이는 도위를 없애도 태수가 군사를 담당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래 군태수가 병권을 장악하였고 동호부(銅虎符)를 소지하였으며 군장(郡將)이라 불렸다. 반면 도위는 부장(副將)이라 불렸고 태수의 부좌(副佐)였다.¹³⁹ 따라서 엄경망의 지적처럼 내군에서 도위가 지휘한 군병을 태수가 관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⁰ 위에서 살펴본 예에서 도위가 폐지된 내군에서도 군병의 존재가 확인되는 이상 태수가 도위 대신 군병을 관리했다는 견해가 사실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파군(巴郡)에 병조연(兵曹掾)과 우병조사(右兵曹史), 둔황군(敦煌郡)에 병조서좌(兵曹書佐), 어양군(漁陽郡)에 병마연(兵馬掾), 요동군에 병조연과 병마연, 동해군에 감군연(監軍掾), 축군에 군공졸사(軍功卒史)가 있었다.¹⁴¹ 이 관명은 변군의 군대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군리(郡吏)였다. 이 밖에 군병을 지휘했던 군리의 존재가 비문 등에 보인다. 또 북해상(北海相)을 지낸 경군(景君, 이름 미상)의 고리(故吏) 명단에 “문하독도적극등송(門下督盜賊劇騰頌)”¹⁴²이 보인다.中间的 “극(劇)”은 북해국(北海國)의 속현(屬縣)인 극현(劇

138 『續漢書』 志第二十八 「百官志」 5 州郡條, 3621쪽. “中興建武六年, 省諸郡都尉, 并職太守, 無都試之役. 省關都尉, 唯邊郡往往置都尉及屬國都尉, 稍有分縣, 治民比郡.”

139 嚴耕望, 1961, 앞의 책, 93~95쪽; 鎌田重雄, 1962, 앞의 글, 306~307쪽.

140 嚴耕望은 前漢時代 太守와 都尉의 반목이 심하여 與民休息과 아울러 都尉의 太守 爭權을 막아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嚴耕望, 1961, 위의 책, 151~153쪽). 高敏은 都尉 폐지와 輕車·騎士·材官·樓船士·軍假吏의 民伍 환원이 郡國兵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郡國兵이 징병과 의무병제가 아닌 召募와 弛刑徒의 모병제와 직업병제로 바뀌었다고 주장하였다(嚴耕望, 1961, 위의 책, 151~153쪽).

141 嚴耕望, 1961, 위의 책, 135쪽.

142 「景君碑」, 『漢碑集釋』, 63쪽. “故門下督盜賊劇騰頌字叔遠.”

縣)이므로 극현 출신인 문하독도적(門下督盜賊)에 재직 중인 등송(騰頌)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문하독도적은 도적을 막는 북해상의 속리(屬吏) 명칭이다. 따라서 적어도 북해국에 도적을 막는 치안을 담당하는 연사(掾史)가 존재했으며, 이 직책 담당자들은 최소한 치안 유지를 맡은 포졸(捕卒)을 지휘했을 것이다. 북해국은 청주에 속하며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군에 속하므로 내군에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와 병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병졸들이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정예군인인지 알 수 없으나 군국에 속한 군졸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이다. 또 같은 비에 기리(騎吏)의 직함이 보인다.¹⁴³ 『속한서』 「여복지(輿服志)」에 따르면 기리는 삼공부터 2,000석에 4인, 1,000석 이하 300석과 현장에 2인이 배속되어 호위를 맡았다.¹⁴⁴ 다른 기록에 따르면 삼공과 열후의 수레에 기리 4인이 검을 차고 계극(檠戟)을 들고 앞열에 서서 호위를 맡았다.¹⁴⁵ 또 태상(太常)에 15인,¹⁴⁶ 광록훈(光祿勳)에 6인,¹⁴⁷ 태복(太僕)에 6인,¹⁴⁸ 정위(廷尉)에 26인,¹⁴⁹ 대홍려(大鴻臚)에 6인,¹⁵⁰ 종정(宗正)에 6인,¹⁵¹ 소부(少府)에

143 「景君碑」, 『漢碑集釋』, 63쪽. “故騎吏劇?麟字敬石.”

144 『續漢書』 志第二十九 「輿服志」上 導從卒條, 3652쪽. “古者軍出, 師旅皆從: 秦省其卒, 取其師旅之名焉. 公以下至二千石, 騎吏四人, 千石以下至三百石, 縣長二人, 皆帶劍, 持檠戟爲前列, 撻弓韉九韉.”

145 『後漢書』 卷54 「楊震傳附孫賜傳」 注引續漢志, 1785쪽. “續漢志‘三公·列侯車, 倚鹿, 伏熊, 黑輦, 朱班輪, 鹿文飛輅, 九游降龍. 騎吏四人, 皆帶劍持檠戟爲前列, 三百石長導從, 置門下五吏, 賊曹·功曹皆帶劍車道, 主簿·主記兩車爲從’也.”

146 『續漢書』 志第二十五 「百官志」 2 太常條 注引漢官, 3571쪽. “漢官曰: ‘員吏八十五人, 其十二人四科, 十五人佐, 五人假佐, 十三人百石, 十五人騎吏, 九人學事, 十六人守學事.’”

147 『續漢書』 志第二十五 「百官志」 2 光祿勳條 注引漢官, 3574쪽. “漢官曰: ‘員吏四十四人, 其十人四科, 三人百石, 一人斗食, 二人佐, 六人騎吏, 八人學事, 十三人守學事, 一人官醫, 衛士八十一人.’”

148 『續漢書』 志第二十五 「百官志」 2 太僕條 注引漢官, 3581쪽. “漢官曰: ‘員吏七十人, 其七人四科, 一人二百石, 文學八人百石, 六人斗食, 七人佐, 六人騎吏, 三人假佐, 三十一人學事, 一人官醫.’”

149 『續漢書』 志第二十五 「百官志」 2 廷尉條 注引漢官, 3582쪽. “漢官曰: ‘員吏

6인¹⁵²이 각각 배속되었다. 삼공, 열후, 구경뿐만 아니라 군에도 기리가 존재하였다. 여남군의 주부(主簿)가 고획(高獲)을 영접하기 위해 기리를 보냈던 사례¹⁵³에서 여남군에도 기리가 있었으며 주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급관리였고 태수 호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호송 업무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례를 정리하면 내군에도 도적을 잡고 치안유지를 맡은 문하독도적과 태수 등을 호위하는 기리 등 무리(武吏)의 존재가 확인된다. 즉, 건무 6년(30) 도위 폐지와 다음 해 도시(都試) 중지로 군에서 치안을 맡은 병졸과 이를 관리하는 무리까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비록 변군에 해당되지만 장사군에도 군병 또는 현병(縣兵)을 관리하는 리(吏)가 확인된다. 『장사동패루동한간독(長沙東牌樓東漢簡牘)』의 「중평오년후 임상수령신숙상언형남빈우군구문서(中平五年後臨湘守令臣肅上言荊南頻遇軍寇文書)」의 “소릉연도상유영수(昭陵連道尙有營守)”¹⁵⁴라는 구절에서 장사군의 속현 소릉(昭陵)·연도(連道) 2현(縣)에 군대가 주둔했음이 밝혀졌다. 이 문서에

百四十人, 其十一人四科, 十六人二百石廷(史)[吏], 文學十六人百石, 十三人獄史, 二十七人佐, 二十六人騎吏, 三十人假佐, 一人官醫.”

150 『續漢書』 志第二十五「百官志」2 大鴻臚條 注引漢官, 3584쪽. “漢官曰: ‘員吏五十五人, 其六人四科, 二人二百石, 文學六人百石, 一人斗食, 十四人佐, 六人騎吏, 十五人學事, 五人官醫.’”

151 『續漢書』 志第二十六「百官志」3 宗正條 注引漢官, 3589쪽. “漢官曰: ‘員吏四十一人, 其六人四科, 一人二百石, 四人百石, 三人佐, 六人騎吏, 二人法家, 十八人學事, 一人官醫.’”

152 『續漢書』 志第二十六「百官志」3 少府條 注引漢官, 3592쪽. “漢官曰: ‘員吏三十四人, 其一人四科, 一人二百石, 五人百石, 四人斗(石)[食], 三人佐, 六人騎吏, 十三人學事, 一人官醫. 少者小也, 小故稱少府. 王者以租稅爲公用, 山澤陂池之稅以供王之私用. 古皆作小府.’”

153 『後漢書』 卷82上「方術·高獲傳」, 2711쪽. “高獲字敬公, 汝南新息人也. … 後太守鮑昱請獲, 既至門, 令主簿就迎, 主簿(曰)但使騎吏迎之, 獲聞之, 即去.”

154 「中平五年後臨湘守令臣肅上言荊南頻遇軍寇文書」, 『長沙東牌樓東漢簡牘』, 77쪽. “昭陵連道尙有營守, 小類緊急, 見職吏各便歸家, 召喚不可復致, ?(巾+夾; 箆)弩委矢.”

기년(紀年)이 없지만 중평(中平) 5년(188) 이후로 추정된다.¹⁵⁵ 따라서 소릉·연도 2현에 군대를 배치하고 관리한 주체는 장사군이었을 것이며, 태수 또는 도위가 이를 관리했을 것이다. 또 “見職吏各便歸家, 召喚不可復致, ?(帙; 篋)弩委矢”¹⁵⁶라는 구절은 “소릉·연도 2현에 주둔하는 군사들은 돌발 상황을 만나 현역 이원(吏員)이 각각 집에 가서 다시 소환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弩)를 수장하여 시(矢)가 방기되었다”고 이해된다.¹⁵⁷ 이는 병졸들을 관리하는 현직리(見職吏), 즉 무리(武吏)들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같은 간독 가운데 희평 5년(176) 기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간독이 있다.¹⁵⁸ 또 기(紀)가 기리가 되기를 뜻하는 편지도 있다.¹⁵⁹ 이 밖에 포도사(捕盜史)¹⁶⁰와 좌적조연(左賊曹掾),¹⁶¹ 우적조(右賊曹)¹⁶²는 명칭상 도적을 막는 장사군 또는 임상현의 속리였을 것이다. 주병사(主兵史)¹⁶³ 역시 장사군 또는 임상현의 병졸을 관리하는 연사였을 것이다.¹⁶⁴ 즉, 후한 장사군 또는 임상현에서 도적을 막거나

155 王素, 2005, 앞의 글, 72왼쪽~72오른쪽; 王素, 2006, 『長沙東牌樓東漢簡牘概述』, 『長沙東牌樓東漢簡牘』, 70쪽 주3.

156 「中平五年後臨湘守令臣肅上言荊南頻遇軍寇文書」, 『長沙東牌樓東漢簡牘』, 77쪽, “昭陵連道尚有營守, 小頻緊急, 見職吏各便歸家, 召喚不可復致, ?(帙; 篋)弩委矢.”

157 王素, 2005, 앞의 글, 71오른쪽.

158 「熹平五年騎史中風文書」, 『長沙東牌樓東漢簡牘』, 76쪽, “熹平五年二月癸巳朔六日戊戌□騎吏…□□□所. 今月五月初, 卒爲耶風所中, 頭身□□…”

159 「紀書信」, 『長沙東牌樓東漢簡牘』, 92쪽, “紀伯: 屬求悉祿, 吉自尙小, 既加功, 云衆白爲得, 既亦求爲騎吏, 意.”

160 「某日刑案事目」, 『長沙東牌樓東漢簡牘』, 106쪽, “津史唐存·捕盜史黃數·牛者趙周索取錢糧□.”

161 「某曹掾李堅等名簿」, 『長沙東牌樓東漢簡牘』, 110쪽, “左賊曹掾張顯”

162 「右賊曹簽牌」, 『長沙東牌樓東漢簡牘』, 113쪽, “右賊曹”

163 「主兵史陳惕與左右坐事文書」, 『長沙東牌樓東漢簡牘』, 120쪽, “主兵史陳惕”

164 『長沙東牌樓東漢簡牘』의 掾史의 직함 앞에 “臨湘”, 즉 臨湘縣 출신임을 표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본문의 여러 掾史는 특정 郡縣名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長沙郡 소속인지 臨湘縣 소속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에서 양자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표기하였다.

병졸을 관리하는 연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이 병졸을 지휘했을 것이다. 따라서 변군(외군)으로 추정되는 장사군 또는 임상현에 병졸이 존재했음은 분명하다.

또 군도위는 없어졌지만, 현위(縣尉)는 폐지되지 않았다. 현위는 여전히 현의 치안을 관장하고 일부 군사들을 지휘했기 때문에 군도위 폐지를 군병 폐지와 동일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후한서』 열전에 고위직에 임명된 인물이 많아서 하급관리인 현위가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례는 거의 없다. 후세 기록이지만, 『금릉범찰지(金陵梵剎志)』에 후한 말에 매릉위(秣陵尉) 장자문(蔣子文, 장흥(蔣欽)이라고도 표기)이 도적을 쫓다 죽었고 손권(孫權)이 장후(蔣侯)로 추봉(追封)했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⁶⁵ 매릉현(秣陵縣)은 단양군의 속현이며, 손권이 수도로 정한 건업(建業)의 옛 지명이다. 이 기록에서 현위가 현의 치안을 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위 이외의 치안을 담당한 각종 현리(縣吏)가 있었다. 예컨대 「이맹초신사비(李孟初神祠碑)」에 남양군 완현(宛縣)의 현령 속리에 권농적포연(勸農賊捕掾) 이룡(李龍)¹⁶⁶의 이름이 보인다. 그는 다른 곳에서 적포연(賊捕掾)¹⁶⁷의 직함으로 표기되었다. 『속한서』 「백관지」 5 현향조에 “본주(本注)에서 말하였다: 제조(諸曹)는 대략 군원(郡員)이 같은데, 오관(五官)은 정연(廷掾)이었고, 향(鄉) 5부(五部)를 감독한다. 봄과 여름에 권농연(勸農掾)이 되고, 가을과 겨울에 제도연(制度掾)이 된다”¹⁶⁸라는 기록이 있는데, 권농적포연도 춘하에 권농연, 추동에 적포연으로 활동했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춘하에 농사를 권과(勸課)하

165 『金陵梵剎志』[明 葛寅亮編, (民國)濮大凡總校, 民國二十五年金山江天寺印本] 卷3 鍾山靈谷寺·文·遊鍾山記略 3條, 29-b쪽. “鍾山, 一名金陵山, 漢末, 秣陵尉蔣子文逐盜死山下. 大帝封蔣侯. 大帝祖諱鍾, 又更名蔣山.”

166 「李孟初神祠碑」, 『漢碑集釋』, 175쪽. “永興二年六月己亥朔, 十月□宛令(下關)部勸農賊捕掾李龍, 南部游徼(下關).”

167 「李孟初神祠碑」, 『漢碑集釋』, 176쪽. “□□□□時賊捕掾李龍昇高, ….”

168 『續漢書』 志第二十八「百官志」 5 縣鄉條, 3623쪽. “本注曰: 諸曹略如郡員, 五官爲廷掾, 監鄉五部, 春夏爲勸農掾, 秋冬爲制度掾.”

고 추동에 민간에 개장(蓋藏)이 있어서 도둑이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¹⁶⁹ 이 해석을 존중하면 남양군 완현에서 권농언이 도적을 체포하는 적포연을 겸했음을 알 수 있다. 「장경비(張景碑)」에도 연희 2년(159) 남양군 완현에 추고적조연(追鼓賊曹掾) 석량(石梁)이 보이는데,¹⁷⁰ 적조(賊曹)는 도적을 담당하므로¹⁷¹ 추고적조연도 완현의 치안을 담당하는 현리(縣吏)였음을 알 수 있다. 환제 연희 5년(162) 세워진 「창힐묘비(蒼頡廟碑)」에 좌풍익 아현(衙縣)에 문하유요(門下游徼)와 문하적조(門下賊曹)¹⁷²의 관명이 보이는데, 명칭을 보면 도적을 막는 속리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창힐묘비」를 만드는 데 기부한 아현 관리 명단에 騎吏蓮勻任參(기리연작임참), 騎吏高陵□肆(기리고릉□사), 騎吏臨晉□珠(기리임진□주), □吏高陵張順(□리고릉장순)¹⁷³가 주목된다. 4인 가운데 앞의 3인은 명확히 기리임을 밝혔고 장순(張順)의 직함 “□吏(□리)”도 기리일 가능성이 있다. 즉, 아현에 최소 3인 이상의 기리가 존재하였다. 남양군 완현과 좌풍익 아현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위가 아닌 현령·현장 아래에도 도적을 막고 치안을 담당한 속리와 영장을 호위하는 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군과 마찬가지로 내군의 현에도 최소한 치안을 담당하는 속리들이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군의 군과 현에도 치안을 담당하는 속리와 아마도 그들이 지휘하는 군졸, 기리 등이 있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예 ①~⑤에서 최소 10군, 최대 18군의 내군에 군병이 존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군에 도위가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현에서는 현위가, 군 전체에서

169 「李孟初神祠碑」, 『漢碑集釋』, 177쪽, 주)7.

170 「張景碑」, 『漢碑集釋』, 228쪽. “延熹二年, 八月十七日甲申起□八月十九日丙戌, 宛令右丞愔告追鼓賊曹掾石梁寫移, □遣景作治五駕瓦屋二間, 周欄楯拾尺, 于匠務令功堅.”

171 『後漢書』卷20「銚期傳」注引漢官儀, 731쪽. “賊曹, 主盜賊之事.”

172 「蒼頡廟碑」, 『漢碑集釋』, 235쪽. “衙門下功曹裴篤伯安三百, 衙門下游徼許愔功上三百, 衙門下賊曹白余子□三百.”

173 「蒼頡廟碑」, 『漢碑集釋』, 236쪽. “騎吏蓮勻任參六百, 騎吏高陵□肆六百, 騎吏臨晉□珠六百, □吏高陵張順六百.”

는 태수가 군병을 관리했을 것이다. 평상시가 아닌 특별한 경우 군병을 누가 어떻게 지휘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V. 유사시 군병(郡兵)의 동원과 지휘

후한시대 군병의 동원은 주로 주변국의 침입이나 ‘내경(內境)’의 이민족(蠻, 羌)의 반란과 도적의 봉기에 대처하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유형별로 정리해보자.

〈표 2〉는 중국 주변국 또는 이민족이 후한의 영토를 침입한 전쟁 사례 또는 반란 평정 기사만 모았으며, 해외(塞外)의 북흉노(北匈奴)·선비(鮮卑) 등을 공격하기 위해 해외로 출정한 사례와 서역(西域) 관련 기사는 제외하였다.

〈표 2〉에서 양가원년(陽嘉元年, 132) 회계군 일대의 개별 현에 해적의 방어를 지시한 사례는 현 단위 군대 동원의 드문 예이다. 이를 제외하면 군 24회, 여러 군 6회, 주군 6회, 주 14회, 여러 주 2회, 속국 2회, 호흉노중랑장(護匈奴中郎將) 1회, 도요장군 1회, 호환교위(烏桓校尉) 1회, 호강교위(護羌校尉) 22회, 조정의 개입 70회이며, 모두 150회이다. 이 가운데 속국, 호흉노중랑장, 도요장군, 호환교위, 호강교위는 이민족을 관장하는 기구이므로 해당 이민족의 반란 평정에 동원된 것은 당연하다. 이 밖에 반란이나 침입이 한 군이나 주를 넘는 경우 여러 행정구역에서 차출된 군사들이 작전에 참여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여러 군, 주군, 여러 주(州)는 13회이다.

군태수 등 군 단위에서 반란을 평정한 지역은 무릉군이 6회로 가장 많고, 농서군이 3회, 장액군과 요동군이 2회, 일남·무도·단양·구진·현도·북지·남양·계양·하남윤·평원·좌풍익·우부풍 12군이 1회이다. 그런데 주군이 동원된 예에서도 무릉군이 3회인 것을 보면, 무릉만을 무릉태수가 진압하지 못하면 주군 또는 중앙군과 주군의 연합군이 동원되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내군인 평원·좌풍익·우부풍 3군의 태수가 군대를 지휘했는데, 평원군에만 도위가 설

〈표 2〉 건무 6년~영제 시기 외침·반란과 주군병 동원

유형	연도	사건 지역	軍 統帥	兵種	비고
縣	陽嘉元年(132)	會稽郡		縣兵(屯兵)	해적 曾旌이 會稽郡의 3縣과 會稽東部都尉를 공격하자 緣海의 縣에 방어를 지시 ¹⁷⁴
郡	建武 11년(35)	隴西郡	隴西太守 馬援	郡兵	先零羌 격파 ¹⁷⁵
	建武 13년(37)	氏道縣(隴西郡)	隴西太守 馬援	4千餘人	武都 參狼羌 격파 ¹⁷⁶
	建初元年(76)	武陵郡		郡兵	武陵郡兵의 叛蠻 토벌 ¹⁷⁷
	章和 2년(88)	張掖郡, 寫谷	張掖太守 鄧訓	秦·胡·羌兵 4千人	秦·胡·羌兵 4千人 징발, 羌 공격 ¹⁷⁸
	章和 2년(88)	張掖郡	長史任尙	湟中 6千人	湟中 6千人 징발, 羌 공격 ¹⁷⁹
	永元 5년(93)	武陵郡		武陵郡兵	武陵郡兵의 叛蠻 토벌 ¹⁸⁰
	永元 6년(94)	武陵郡		郡兵	武陵郡 樓中蠻 토벌 ¹⁸¹
	永元 12년(100)	日南郡		郡兵	日南象林 蠻夷 토벌 ¹⁸²
	元興元年(105)	遼東郡	遼東太守 耿夔		高句麗 침입 격퇴 ¹⁸³
	永初元年(107)	鴈門郡	鴈門太守 鮮于璜		烏桓 토벌 ¹⁸⁴
	元初 2년(115)	武都郡	武都太守 虞詡		羌 격파 ¹⁸⁵
	建光元年(121)	遼東郡	遼東太守 蔡諷 등		高句麗의 공격 ¹⁸⁶
	永和 2년(137)	敦煌郡	敦煌太守 裴岑	郡兵 3千人	匈奴 呼衍王 등 격파 ¹⁸⁷
	永熹元年(145)	丹陽郡	丹陽太守 江漢	郡兵	丹陽賊 陸宮 등이 성 포위 ¹⁸⁸
	永興元年(153)	武陵郡	武陵太守 應奉		武陵蠻 평정(투항) ¹⁸⁹
	永壽 3년(157)	九眞郡	太守 兒式 九眞都尉 魏朗	郡兵	九眞 蠻夷 반란 ¹⁹⁰
	延熹 6년(163)	武陵郡	太守 陳奉	郡兵	武陵蠻 반란 ¹⁹¹
	延熹 6년(163)	隴西郡	隴西太守 孫羌	郡兵	滇那羌 토벌 ¹⁹²
	永康元年(167)	玄菟郡	玄菟太守 公孫域		夫餘王 夫台的 공격 격퇴 ¹⁹³
	熹平 3년(174)	北地郡, 并州	北地太守 夏育	郡兵	鮮卑의 北地郡·并州 침입 ¹⁹⁴

유형	연도	사건 지역	軍 統帥	兵種	비고
郡	中平元年(184)	南陽郡	南陽太守 秦頡	郡兵	(黃巾賊) 張曼成 공격 ¹⁹⁵
	中平 3년(186)	武陵郡		郡兵	武陵蠻 반란 ¹⁹⁶
	中平 4년(187)	河南 滎陽縣	河南尹 何苗	?	滎陽賊 격파 ¹⁹⁷
	中平 4년(187)	桂陽郡	長沙太守 孫堅	郡兵	零陵郡 사람 觀鵠이 平天將軍 자칭, 桂陽郡 공격, 長沙太守 孫堅이 격파 ¹⁹⁸
여러 郡	光武帝 시기(建武 26년 이전)	平原郡 일대(?)	平原太守 趙憲 등	諸郡	平原郡 盜賊 체포 ¹⁹⁹
	建初 2년(77)	永昌·越巂·益州 3郡		永昌·越巂·益州 3郡 民·夷	永昌·越巂·益州 3郡 民·夷의 哀牢 토벌 ²⁰⁰
	元初 2년(115)	丁奚城	右扶風 仲光, 安定太守 杜恢, 京兆虎牙都尉 耿溥, 左馮翊 司馬鈞		先零羌과 싸워 대패 ²⁰¹
	元初 4년(117)	遼西郡		郡兵	鮮卑의 遼西郡 침입 ²⁰²
	建光元年(121)	遼東·玄菟 2郡		廣陽·漁陽·右北平·涿郡 屬國 3千餘騎	高句麗 공격에 대응 ²⁰³
	延熹 5년(162)	漢陽·隴西·金城 3郡		諸郡兵	烏吾羌 토벌 ²⁰⁴
州郡	元初 2년(115)	武陵郡		州郡	武陵澧中蠻 반란 ²⁰⁵
	元初 3년(116)	武陵郡(?)		州郡	武陵蠻 토벌 ²⁰⁶
	元初 3년(116)	武陵郡(?)		州郡	武陵蠻 다시 반란 ²⁰⁷
	建光元年(121)	玄菟郡		州郡, 夫餘軍	高句麗·馬韓·濊貊의 공격 방어 ²⁰⁸
	建康元年(144)	南郡·江夏 2郡		州郡	南郡·江夏 盜賊의 城邑 약탈 ²⁰⁹
	建寧 2년(169)	江夏郡		州郡	江夏蠻 반란 ²¹⁰
州	元初元年(114)	狄道(隴西郡)	涼州刺史 皮陽		先零羌의 후한군 격파 ²¹¹
	建光元年(121)	遼東·玄菟 2郡	幽州刺史 馮煥, 玄菟太守 姚光, 遼東太守蔡邕 等		高句麗 공격 ²¹²

유형	연도	사건 지역	軍 統帥	兵種	비고
州	建康元年(144)	歷陽	楊州刺史 尹耀 九江太守 鄧顯		揚州刺史와 九江太守가 도적 范容 등을 토벌하다 패해 죽음 ²¹³
	建和 2년(148)	廣漢屬國	益州刺史	板楯蠻 ²¹⁴	白馬羌의 廣漢屬國 공격 ²¹⁵
	延熹 3년(160)	長沙郡(?)	荊州刺史 度尚		長沙蠻 토벌 ²¹⁶
	延熹 4년(161)	犍爲屬國	益州刺史 山昱		犍爲屬國 夷 반란 ²¹⁷
	熹平元年 (172)~熹平 3년 (174)	會稽郡	揚州刺史 臧旻 丹陽太守 陳夤		會稽 許生の 반란, ²¹⁸ 평 정 ²¹⁹
	熹平 5년(176)	益州郡	益州太守 李順		益州郡 夷 반란 ²²⁰
	光和元年(178)	交趾·南海 2郡	交趾刺史 朱雋	家兵과 召募 등 5천인	交趾賊 梁龍 등과 南海太 守 孔芝 반란 평정 ²²¹
	光和 4년(181)	交趾·合浦 2郡	交趾刺史 朱雋		交趾·合浦 烏滸蠻 토벌 ²²²
	中平元年(184)	交趾·合浦	交趾刺史 賈琮		交趾 屯兵의 반란 ²²³
	中平 3년(186)	荊州(?)	荊州刺史 王敏		趙慈 토벌 ²²⁴
여러 州	中平 4년(187)	金城郡(?), 漢 陽郡, 三輔	涼州刺史 耿鄙		金城賊 韓遂 토벌, 耿鄙 대패, 扶風 馬鏡과 漢陽 王 國의 반란, 三輔 공격 ²²⁵
	中平 5년(188)	益州	益州刺史 郗儉, 巴郡太守 趙部 (전사), 益州從事 賈龍(토벌)		益州黃巾 馬相 평정 ²²⁶
	建初 4년(79)	零陽郡		荊州 7郡과 汝南·潁川의 弛刑徒·吏士 5千餘人	淩中蠻 반란 토벌 ²²⁷
	建初 5년(80)	武陵郡(?)		荊·豫諸郡兵	武陵淩中蠻 토벌 ²²⁸
屬國	永和 2년(137)	武都塞上, 廣漢 屬國	廣漢屬國都尉		白馬羌 ²²⁹
	永壽元年(155)	美稷	安定屬國都尉 張 奐		南匈奴 반란 ²³⁰

유형	연도	사건 지역	軍 統帥	兵種	비고
護匈奴中郎將	延熹 9년(166)	北邊	護匈奴中郎將 張奐	幽·并·凉 3州와 度遼·烏桓 2營	鮮卑·南匈奴·烏桓 토벌 ²³¹
度遼將軍	陽嘉 5년(133)	美稷 등	度遼將軍 馬續, 中郎將 梁竝, 烏桓校尉 王元, 中郎將 陳龜(五原太守에서 승진)	邊兵, 烏桓·鮮卑·羌胡 2萬餘人	南匈奴 평정 ²³²
烏桓校尉	永建元年(126)	塞外	烏桓校尉 耿种, 代郡太守 李超(전사)	烏桓·諸郡卒	鮮卑가 살해하자 烏桓과 諸郡의 후를 거느리고 鮮卑 大破 ²³³
護羌校尉	章和元年(87)		護羌校尉 傅育		燒當羌 토벌 ²³⁴
	章和元年(87)	金城郡	護羌校尉 劉盱		燒當羌의 침입 ²³⁵
	永元 5년(93)	武陵郡	護羌校尉 貫友		燒當羌 토벌 ²³⁶
	永元 13년(101)		護羌校尉 周鮪, 金城太守侯霸	諸郡兵·屬國 湟中月氏 諸胡·隴西牢姐羌 등 3萬人 ²³⁷	燒當羌 격파 ²³⁸
	永初 7년(113)		護羌校尉 侯霸, 騎都尉 馬賢		先零羌 격파 ²³⁹
	永寧元年(120)	張掖·金城 2郡	護羌校尉 馬賢	萬人	上郡沈氏種羌과 전투 ²⁴⁰
	建光元年(121)	湟中, 金城 諸縣, 令居	護羌校尉 馬賢	武威·張掖郡兵	先零羌과 전투 ²⁴¹
	延光元年(122)	湟中	護羌校尉 馬賢		先零羌 평정 ²⁴²
	永和 2년(137)	隴右 일대	護羌校尉 馬賢		白馬羌 격파 ²⁴³
	永和 3년(138)		護羌校尉 馬賢		燒當種那離 등 격파 ²⁴⁴
	永和 4년(139)		護羌校尉 馬賢	湟中義從兵, 羌胡萬餘騎	燒當種那離 등 격파 ²⁴⁵
	建康元年(144)	領護羌校尉			
	建康元年(144)	鶻陰河 등	領護羌校尉 衛瑤(衛瑤), 護羌校尉 趙冲(전사) ²⁴⁶ , 領護羌校尉 張貢, 左馮翊 梁竝 ²⁴⁷		叛羌 토벌 ²⁴⁸

유형	연도	사건 지역	軍 統帥	兵種	비고
護羌校尉	延熹 2년(159)	隴右, 羅亭	護羌校尉 段熲		燒當 等 8種 羌 반란 ²⁴⁹
	延熹 3년(160)	張掖郡, 積石	護羌校尉 段熲		燒何羌 반란 ²⁵⁰
	延熹 3년(160)	允街(金城郡)	護羌校尉 段熲		勒姐羌 반란 ²⁵¹
	延熹 7년(164)		護羌校尉 段熲		當煎羌 격파 ²⁵²
	延熹 8년(165)		護羌校尉 段熲		罕姐羌 격파 ²⁵³
	永康元年(167)	武威郡	護羌校尉 段熲		當煎羌의武威 침입 ²⁵⁴
	建寧元年(168)		使護羌校尉 段熲	兵 1萬餘人 ²⁵⁵	先零羌 토벌 ²⁵⁶
	建寧元年(168)	逢義山	使護羌校尉 段熲		先零羌 토벌 ²⁵⁷
	中平元年(184)		護羌校尉 儆微, 金城太守 陳懿		湟中義從胡 北宮伯玉과 先零羌의 반란, 金城 邊 章과 韓遂의 반란 ²⁵⁸
朝廷 개입	建武 8년(32)	潁川郡	太中大夫 張宗		潁川 盜賊 평정 ²⁵⁹
	建武 8년과 建武 16년 사이	靑州, 冀州	謁者 張宗	諸郡兵	徐州·冀州 도적 평정 ²⁶⁰
	建武 15년(39)	北邊(鴈門·代郡·上谷 3郡?)	大司馬 吳漢, 揚武將軍 馬成 과 捕虜將軍 馬武		匈奴 공격 ²⁶¹
	建武 16년(40)	琅邪·北海	謁者 張宗	二郡兵	琅邪·北海 盜賊 격파, 靑州와 徐州 평정 ²⁶²
	建武 17년(41)	皖城(廬江郡)	謁者 張宗, 虎賁中郎將 馬援	1萬餘人(張宗의 數千人 과 諸郡兵)	李廣 반란 ²⁶³
	建武 17년(41)	皖城	虎賁中郎將 馬援, 驃騎將軍 段志		李廣 반란 ²⁶⁴
	建武 18년(42)	交趾刺史部	伏波將軍 馬援, 樓船將軍 段志	長沙·桂陽·零陵·蒼梧兵 萬餘人	徵貳·徵則 자매의 반란 ²⁶⁵
	建武 19년(43)	原武縣(河南尹)	太中大夫 臧宮		妖巫 單臣과 傅鎮의 반란 ²⁶⁶
	建武 19년(43)	益州郡	武威將軍 劉尚		西南夷의 益州郡 침입, 越嶲太守 任貴의 모반 ²⁶⁷

유형	연도	사건 지역	軍 統帥	兵種	비고
朝廷 개입	建武 23년(47)	南郡	武威將軍 劉尙	南郡・長沙・武陵兵 萬餘人	南郡蠻 반란 ²⁶⁸
	建武 24년(48)	臨沅(武陵郡)	謁者 李嵩, 中山太守 馬成, 伏波將軍 馬援		武陵蠻의 臨沅 침입 ²⁶⁹
	中元 2년(57)	隴西郡	中郎將 竇固, 捕虜將軍 馬武 等 2將軍		燒當羌의 隴西郡 침입 ²⁷⁰
	永平元年(58)	金城郡, 洛都谷, 東・西郡	捕虜將軍 馬武, 中郎將 王豐, 監軍使者 竇固, 右輔都尉 陳訢	烏桓・黎陽營・三輔募士・涼州諸郡羌胡兵・弛刑 4만 ²⁷¹	燒當羌 격파 ²⁷²
	建初 3년(78)	臨洮縣(隴西郡)	行車騎將軍 馬防		馬防의 燒當羌 격파 ²⁷³
	建初 4년(79)	零陽郡		荊州 7郡과 汝南・潁川의 弛刑徒・吏士 5千餘人	淩中蠻의 반란 ²⁷⁴
	永元 8년(96)		行度遼將軍 龐參, 越騎校尉 馮柱		南匈奴의 반란 ²⁷⁵
	永元 9년(97)	隴西郡	行征西將軍 劉尙, 越騎校尉 趙世 等		燒當羌의 침입 ²⁷⁶
	永元 14년(102)	南郡	使者	荊州兵	巫蠻 토벌 ²⁷⁷
	永初元年(107)		車騎將軍 鄧騭, 征西校尉 任尙		先零羌 반란 ²⁷⁸
	永初元年(107)	漢陽郡	車騎將軍 鄧騭, 征西校尉 任尙	洛陽의 五營, 三河・三輔, 汝南・南陽, 潁川・太原・上黨兵 5萬人	滇零과 種羌의 반란 ²⁷⁹
	永初 2년(108)	敦煌郡(河西四郡)	西域副校尉 梁慁		회군 도중 敦煌의羌 반란 평정 ²⁸⁰

유형	연도	사건 지역	軍 統帥	兵種	비고
朝廷 개입	永初 3년(109)	雁門郡	行車騎將軍 何熙, 中郎將 龐雄, 遼 東太守 耿夔, 行 度遼將軍 梁慄	羽林五校營 士, 緣邊 10郡 兵 2萬餘人, 鮮卑種眾	南匈奴와 烏桓大人 반란 토벌 ²⁸¹
	永初 3년(109)	臨洮縣(隴西郡)	騎都尉 任仁		先零羌 토벌 ²⁸²
	永初 3년(109)	厭次城, 高唐縣 (平原郡)	侍御史 龐雄 御史中丞 王宗 青州刺史 法雄	幽州·冀州 諸 郡兵	해적 張伯路 등 30여 인 의 반란 ²⁸³
	永初 4년(110)	厭次縣(平原郡)	御史中丞 王宗, 青州刺史 法雄		御史中丞 王宗이 青州刺 史 法雄 이끌고 海賊 張 伯路와 勃海·平原劇賊 劉文河·周文光 등 토벌 ²⁸⁴
	永初 5년(111)		侍御史 唐喜	諸郡兵	羌 토벌 ²⁸⁵
	永初 7년(113)	安定郡	騎都尉 馬賢, 護 羌校尉 侯霸		零昌別部牢羌 격파 ²⁸⁶
	永初 7년(113)	上黨郡 羊頭山	侍御史 任尙		眾羌 격파 ²⁸⁷
	元初元年(114)	枹罕, 狄道(隴 西郡)	騎都尉 馬賢, 護 羌校尉 侯霸, 涼 州刺史 皮楊	湟中吏人, 降 羌胡	羌과 전쟁 ²⁸⁸
	元初 2년(115)	益州, 漢陽郡 일대	中郎將 尹就 巴郡太守 王堂 ²⁸⁹	益部諸郡屯 兵, 右扶風· 安定郡·北地 郡·京兆虎牙 都尉·右扶風 都尉의 군사 8 千餘人, 羌胡 7千餘人 ²⁹⁰	先零羌의 益州 침입 ²⁹¹
	元初 2년(115)	丁奚城	中郎將 任尙	羽林·緹騎· 五營子弟 三 千五百人	杜季貢 격파 ²⁹²
	元初 3년(116)	靈州(北地郡)	度遼將軍 鄧遵	南匈奴 1萬騎	零昌 격파 ²⁹³
	元初 3년(116)	丁奚城	中郎將 任尙		先零羌 격파 ²⁹⁴
	元初 3년(116)	蒼梧·鬱林·合 浦 3郡	侍御史 任連	州郡兵	蒼梧·鬱林·合浦 蠻夷의 반란 ²⁹⁵

유형	연도	사건 지역	軍 統帥	兵種	비고
朝廷 개입	永建元年(126)	臨洮(隴西郡)		7千餘人	隴西鍾羌 토벌 ²⁹⁶
	陽嘉 3년(134)	隴西·漢陽	謁者 馬賢, 護羌校尉 馬續		鍾羌 良封 토벌 ²⁹⁷
	陽嘉 4년(135)		謁者 馬賢	隴西吏士, 羌胡兵	鍾羌 良封, 且昌 토벌 ²⁹⁸
	陽嘉 5년(136)	馬邑(鴈門郡)	中郎將 張耽	幽州烏桓·諸郡營兵	南匈奴와의 전쟁 ²⁹⁹
	永和 5년(140)	金城·漢陽 2郡	征西將軍 馬賢	左右羽林·五校士·諸州郡兵 10萬人	且凍羌과 傅難種羌 반란 ³⁰⁰
	永和 5년(140)	美陽(주둔), 武威·北地 2郡	中郎將 龐淩, 武威太守 趙冲, 北地太守 賈福	勇士 千五百人	東西羌과 전쟁 ³⁰¹
	永和 5년(140)		行車騎將軍 執金吾 張喬	左右羽林·五校士, 河內·南陽·汝南 兵 1萬5千	三輔에 주둔 ³⁰²
	永和 6년(141)	三輔	執金吾張喬(行車騎將軍事)		三輔에 주둔 ³⁰³
	建康元年(144)	歷陽(九江郡)	御史中丞 馮赦(馮緄), 揚州刺史 尹耀, 九江太守 鄧顯 ³⁰⁴	州郡兵	九江 范容·周生 토벌 패배 ³⁰⁵
	永熹元年(145)	廣陵郡, 當塗山·合肥(九江郡)	御史中丞 馮緄, 中郎將 趙序, 九江都尉 滕撫	州郡兵 數萬人	廣陵賊 張嬰, 九江賊 馬勉 등 격파 ³⁰⁶
	永熹元年(145)	尋陽(廬江郡), 盱眙(下邳國)	九江都尉 滕撫, 司馬 王章		廬江郡의 盜賊 격파 ³⁰⁷
	永熹元年(145)	廣陵郡	中郎將 滕撫		廣陵賊 張嬰 격파 ³⁰⁸
	永熹元年(145)		中郎將 滕撫		歷陽賊 華孟이 ‘黑帝’ 자칭, 滕撫 등이 華孟 공격, 대파하고 참함 ³⁰⁹
	永壽 2년(156)	青·兗·徐 3州	中郎將 段熲		太山賊 公孫舉 등의 침입 ³¹⁰

유형	연도	사건 지역	軍 統帥	兵種	비고
朝廷 개입	延熹元年(158)	北境 9郡	北中郎將 張奐		南匈奴 諸部·烏桓·鮮卑의 침입 ³¹¹
	延熹 3년(160)	太山·琅邪 2郡	御史中丞 趙某	州郡	太山·琅邪賊 勞丙의 반란 ³¹²
	延熹 3년(160)	太山郡	中郎將 宗資, 別部司馬 抗徐 ³¹³		太山賊 叔孫無忌의 都尉侯章 살해 ³¹⁴
	延熹 3년(160)	江陵(南郡)	車騎將軍 馮緄		武陵蠻의 江陵 공격 ³¹⁵
	延熹 4년(161)	并州·凉州 2州	中郎將 皇甫規		先零沈氏羌과 諸種羌의 침입 ³¹⁶
	延熹 5년(162)	桂陽·蒼梧·南海·交趾 4郡	御史中丞 盛脩	州郡	長沙·零陵賊 반란, 토벌 실패 ³¹⁷
			謁者 馬睦, 荊州刺史 劉度		토벌 실패 ³¹⁸
			謁者 馬睦, 荊州刺史 度尙		대파, 평정 ³¹⁹
	延熹 5년(162)	荊南(長沙郡, 武陵郡)	車騎將軍 馮緄	10餘萬	長沙蠻·武陵蠻의 반란, 十一月에 馮緄이 武陵蠻을 武陵에서 격파 ³²⁰
	延熹 7년(164)	零陵·桂陽 2郡	中郎將 度尙, 零陵太守 陳球, 長沙太守 抗徐	幽·冀·黎陽·烏桓 步騎 2萬6千人, 諸郡兵	荊州兵 朱蓋 등과 桂陽賊 胡蘭 등의 반란 평정 ³²¹
	延熹 8년(165)	桂陽·零陵	零陵太守 陳球, 中郎將 度尙, 長沙太守 抗徐 等	幽·冀·黎陽·烏桓 步騎 2萬6千人, 長沙郡兵	桂陽 胡蘭·朱蓋의 반란 ³²²
	永康元年(167)	三輔	中郎將 張奐		先零羌의 三輔 침입 ³²³
	建寧元年(168)	涇陽(安定郡)	破羌將軍 段熲		先零羌 격파 ³²⁴
	建寧 2년(169)	射虎塞 밖 골짜기	破羌將軍 段熲		先零羌 대파 ³²⁵
	中平元年(184)	廣宗(鉅鹿郡)), 潁川	北中郎將 盧植, 左中郎將 皇甫嵩, 右中郎將 朱雋		황건적 공격 ³²⁶

유형	연도	사건 지역	軍 統帥	兵種	비고
朝廷 개입	中平 2년(185)	三輔	左車騎將軍 皇甫嵩		北宮伯玉 등의 三輔 침입 ³²⁷
	中平 2년(185)	美陽(右扶風), 榆中(金城郡)	車騎將軍 張溫, 中郎將 董卓, 盪寇將軍 周慎		張溫이 北宮伯玉 격파 등 ³²⁸
	中平 5년(188)	漁陽郡(?)	中郎將 孟益, 騎都尉 公孫瓚		中郎將 孟益이 騎都尉 公孫瓚을 거느리고 漁陽賊 張純 등을 토벌 ³²⁹
	中平 5년(188)	陳倉(右扶風)	右將軍 皇甫嵩		涼州賊 王國의 陳倉 포위 ³³⁰
	中平 5년(188)	巴郡	上軍別部司馬 趙瑾		巴郡 板楯蠻 반란 ³³¹
	中平 5년(188)	葛陂(汝南郡)	下軍校尉 鮑鴻		葛陂黃巾 토벌 ³³²
	中平 6년(189)	陳倉(右扶風)	左將軍 皇甫嵩		左將軍 皇甫嵩이 陳倉에서 王國 대파 ³³³

- 174 『後漢書』卷6「孝順帝紀」陽嘉元年二月條, 259쪽. “二月, 海賊曾旌等寇會稽, 殺句章·鄞·鄮三縣長, 攻會稽東部都尉, 詔緣海縣各屯兵戍.”
- 175 『後漢書』卷1下「光武帝紀」建武十一年十月條, 58쪽. “馬成平武都, 因隴西太守馬援擊破先零羌, 徙致天水·隴西·扶風.”
- 176 『後漢書』卷24「馬援傳」, 836쪽. “十三年, 武都參狼羌與塞外諸種爲寇, 殺長吏, 援將四千餘人擊之, 至氐道縣, 羌在山上, 援軍據便地, 奪其水草, 不與戰, 羌遂窮困, 豪帥數十萬戶亡出塞, 諸種萬餘人悉降, 於是隴右清靜.”
- 177 『後漢書』卷3「肅宗孝章帝紀」建初元年十月條, 134쪽. “冬十月, 武陵郡兵討叛蠻, 破降之.”
- 178 『後漢書』卷16「鄧禹傳附訓傳」, 610쪽. “訓因發湟中秦·胡·羌兵四千人, 出塞掩擊迷唐於寫谷, 斬首虜六百餘人, 得馬牛羊萬餘頭.”
- 179 『後漢書』卷16「鄧禹傳附訓傳」, 610~611쪽. “其春, 復欲歸故地就田業, 訓乃發湟中六千人, 令長史任尙將之, 縫革爲船, 置於箬上以度河, 掩擊迷唐廬落大豪, 多所斬獲. 復追逐奔北, 會尙等夜爲羌所攻, 於是義從羌胡并力破之, 斬首前後一千八百餘級, 獲生口二千人, 馬牛羊三萬餘頭, 一種殆盡.”
- 180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五年條, 177쪽. “是歲, 武陵郡兵破叛蠻, 降之.”

- 181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六年七月條, 180쪽. “武陵淩中蠻叛, 郡兵討平之.”
- 182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二年四月條, 187쪽. “夏四月, 日南象林蠻夷反, 郡兵討破之.”
- 183 『後漢書』卷85「東夷·高句驪傳」, 2814쪽. “和帝元興元年春, 復入遼東, 寇略六縣, 太守耿夔擊破之, 斬其渠帥.”
- 184 「鮮于璜碑」, 『漢碑集釋』(高文,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1997), 285쪽. “永初元年, 拜鴈門太守. 折節清行, 恭儉束修, 政崇無爲. 聲教禁化, 猷風之中. 時依郡烏桓, 狂狡畔戾. 君執以威權, 征其後伏.”
- 185 『後漢書』卷58「虞詡傳」, 1869쪽. “既到郡, 兵不滿三千, 而羌眾萬餘, 攻圍赤亭數十日. 詡乃令軍中, 使疆弩勿發, 而潛發小弩. 羌以爲矢力弱, 不能至, 并兵急攻. 詡於是使二十疆弩共射一人, 發無不中, 羌大震. 退. 詡因出城奮擊, 多所傷殺. 明日悉陳其兵眾, 令從東郭門出, 北郭門入, 貿易衣服, 回轉數周. 羌不知其數, 更相恐動. 詡計賊當退, 乃潛遣五百餘人於淺水設伏, 候其走路. 虜果大奔, 因掩擊, 大破之, 斬獲甚眾, 賊由是敗散, 南入益州. 詡乃占相地勢, 築營壁百八十所, 招還流亡, 假賑貧人, 郡遂以安.”
- 186 『後漢書』卷85「東夷·高句驪傳」, 2815쪽. “復與遼東鮮卑八千餘人攻遼隊, 殺略吏人. 蔡諷等追擊於新昌, 戰歿, 功曹耿耗·兵曹掾龍端·兵馬掾公孫輔以身扞諷, 俱沒於陳, 死者百餘人.”
- 187 「裴岑紀功碑」, 『漢碑集釋』, 59쪽. “惟漢永和二年八月, 敦煌太守雲中裴岑將郡兵三千人, 誅呼衍王等, 斬馘部眾, 克敵全師.”
- 188 『後漢書』卷6「孝質帝紀」永熹元年四月庚辰條, 278쪽. “丹陽賊陸宮等圍城, 燒亭寺, 丹陽太守江漢擊破之.”
- 189 『後漢書』卷48「應奉傳」, 1608쪽. “先是, 武陵蠻詹山等四千餘人反叛, 執縣令, 屯結連年. 詔下公卿議, 四府舉奉才堪將帥. 永興元年, 拜武陵太守. 到官慰納, 山等皆悉降散.”
- 190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壽三年四月條, 302쪽. “夏四月, 九真蠻夷叛, 太守兒式討之, 戰歿. 遣九真都尉魏朗擊破之. 復屯據日南.”
- 191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六年七月甲申條, 312쪽. “武陵蠻復叛, 太守陳奉與戰, 大破降之.”
- 192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六年七月甲申條, 312쪽. “隴西太守孫羌討滇那羌, 破之.”
- 193 『後漢書』卷85「東夷·夫餘傳」, 2812쪽. “永康元年, 王夫台將二萬餘人寇玄菟, 玄菟太守公孫域擊破之, 斬首千餘級.”
- 194 『後漢書』卷8「孝靈帝紀」熹平三年十二月條, 336쪽. “十二月, 鮮卑寇北地, 北地太守夏育追擊破之.”

- 195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元年六月條, 349쪽. “六月, 南陽太守秦頡擊張曼成, 斬之.”
- 196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三年十月條, 353쪽. “冬十月, 武陵蠻叛, 寇郡界, 郡兵討破之.”
- 197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四年三月條, 354쪽. “三月, 河南尹何苗討滎陽賊, 破之, 拜苗爲車騎將軍.”
- 198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四年九月丁酉條, 354쪽. “冬十月, 零陵人觀鵠自稱‘平天將軍’, 寇桂陽, 長沙太守孫堅擊斬之.”
- 199 『後漢書』卷26「趙憲傳」, 914쪽.
- 200 『後漢書』卷3「肅宗孝章帝紀」建初二年三月甲辰條, 135쪽. “永昌·越嶲·益州三郡民·夷討哀牢, 破平之.”
- 201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二年十月乙未條, 224쪽. “乙未, 右扶風仲光·安定太守杜恢·京兆虎牙都尉耿溥與先零羌戰於丁奚城, 光等大敗, 竝沒. 左馮翊司馬鈞下獄, 自殺.”
- 202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四年四月己巳條, 228쪽. “己巳, 鮮卑寇遼西, 遼西郡兵與烏桓擊破之.”
- 203 『後漢書』卷85「東夷·高句驪傳」, 2815쪽. “於是發廣陽·漁陽·右北平·涿郡屬國三千餘騎同救之, 而獮人已去.”
- 204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五年七月己未條, 310쪽. “烏吾羌寇漢陽·隴西·金城, 諸郡兵討破之.”
- 205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二年十二月庚申條, 224쪽. “十二月, 武陵澧中蠻叛, 州郡擊破之.”
- 206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三年五月條, 225쪽. “五月, 武陵蠻復叛, 州郡討破之.”
- 207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三年七月條, 226쪽. “秋七月, 武陵蠻復叛, 州郡討平之.”
- 208 『後漢書』卷85「東夷·高句驪傳」, 2815쪽. “秋, 宮遂率馬韓·濊貊數千騎圍玄菟. 夫餘王遣子尉仇台將二萬餘人, 與州郡并力討破之, 斬首五百餘級.”
- 209 『後漢書』卷6「孝順帝紀」建康元年三月庚子條, 274쪽. “南郡·江夏盜賊寇掠城邑, 州郡討平之.”
- 210 『後漢書』卷8「孝靈帝紀」建寧二年九月條, 330쪽. “九月, 江夏蠻叛, 州郡討平之.”
- 211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元年九月乙丑條, 225쪽. “先零羌敗涼州刺史皮陽於狄道.”
- 212 『後漢書』卷5「孝安帝紀」建光元年正月條, 232쪽. “建光元年春正月, 幽州刺

- 史馮煥率二郡太守討高句驪·穢貊，不克。”；『後漢書』卷85「東夷·高句驪傳」，2814~2815쪽. “建光元年春，幽州刺史馮煥·玄菟太守姚光·遼東太守蔡諷等將兵出塞擊之，捕斬穢貊渠帥，獲兵馬財物。宮乃遣嗣子遂成將二千餘人逆光等，遣使許降；光等信之，遂成因據險隄以遮大軍，而潛遣三千人攻玄菟·遼東，焚城郭，殺傷二千餘人。”
- 213 『後漢書』卷6「孝沖帝紀」建康元年九月己未條，275쪽. “楊州刺史尹耀·九江太守鄧顯討賊范容等於歷陽，軍敗，耀·顯爲賊所歿。”
- 214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8~2899쪽. “桓帝建和二年，白馬羌千餘人寇廣漢屬國，殺長吏，益州刺史率板楯蠻討破之。”
- 215 『後漢書』卷7「孝桓帝紀」建和二年正月甲子條，292쪽. “白馬羌寇廣漢屬國，殺長吏，益州刺史率板楯蠻討破之。”
- 216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三年十二月條，307쪽. “荊州刺史度尚討長沙蠻，平之。”
- 217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四年六月條，308쪽. “犍爲屬國夷寇鈔百姓，益州刺史山昱擊破之。”
- 218 『後漢書』卷8「孝靈帝紀」熹平元年十一月條，334쪽. “十一月，會稽人許生自稱‘越王’，寇郡縣，遣楊州刺史臧旻·丹陽太守陳寅討破之。”
- 219 『後漢書』卷8「孝靈帝紀」熹平三年十月癸丑條，336쪽. “十一月，楊州刺史臧旻率丹陽太守陳寅，大破許生於會稽，斬之。”
- 220 『後漢書』卷8「孝靈帝紀」熹平五年四月癸亥條，337쪽. “益州郡夷叛，太守李顯討平之。”
- 221 『後漢書』卷71「朱儁傳」，2308~2309쪽. “會交阯部羣賊竝起，牧守輒弱不能禁。又交阯賊梁龍等萬餘人，與南海太守孔芝反叛，攻破郡縣。光和元年，卽拜儁交阯刺史，令過本郡簡募家兵及所調，合五千人，分從兩道而入。旣到州界，按甲不前，先遣使詣郡，觀賊虛實，宣揚威德，以震動其心；旣而與七郡兵俱進逼之，遂斬梁龍，降者數萬人，旬月盡定。”
- 222 『後漢書』卷8「孝靈帝紀」光和四年二月條，345쪽. “交阯刺史朱儁討交阯·合浦烏滸蠻，破之。”
- 223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元年六月條，349쪽. “交阯屯兵執刺史及合浦太守來達，自稱‘柱天將軍’，遣交阯刺史賈琮討平之。”
- 224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三年六月條，353쪽. “六月，荊州刺史王敏討趙慈，斬之。”
- 225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四年四月條，354쪽. “夏四月，涼州刺史耿鄙討金城賊韓遂，鄙兵大敗，遂寇漢陽，漢陽太守傅嬰戰沒。扶風人馬騰·漢陽人王國竝叛，寇三輔。”
- 226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五年六月丙寅條，356쪽. “益州黃巾馬相攻殺刺

史郗儉，自稱天子，又寇巴郡，殺郡守趙部，益州從事賈龍擊相，斬之。”

- 227 『後漢書』卷86「南蠻傳」，2832年。“三年冬，淩中蠻覃兒健等復反，攻燒零陽·作唐·房陵界中。明年春，發荊州七郡及汝南·潁川(施)弛[刑]徒吏士五千餘人，拒守零陽，募充中五里蠻精夫不叛者四千人，擊淩中賊。”
- 228 『後漢書』卷3「肅宗孝章帝紀」建初五年三月條，140年。“荊·豫諸郡兵討破武陵淩中叛蠻。”
- 229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4年。“永和元年，馬續遷度遼將軍，復以馬賢代爲校尉。初，武都塞上白馬羌攻破屯官，反叛連年。二年春，廣漢屬國都尉擊破之，斬首六百餘級。”
- 230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壽元年七月條，302年。“南匈奴左[輿]臺[者]·且渠伯德等叛，寇美稷，安定屬國都尉張奐討除之。”
- 231 『後漢書』卷65「張奐傳」，2139~2140年。“九年春，徵拜大司農。鮮卑聞奐去，其夏，遂招結南匈奴·烏桓數道入塞，或五六千騎，或三四千騎，寇掠緣遼九郡，殺略百姓。秋，鮮卑復率八九千騎入塞，誘引東羌與共盟。於是上郡沈氏·安定先零諸種共寇武威·張掖，緣邊大被其毒。朝廷以爲憂，復拜奐爲護匈奴中郎將，以九卿秩督幽·并·涼三州及度遼·烏桓二營，兼察刺史·二千石能否，賞賜甚厚。匈奴·烏桓聞奐至，因相率還降，凡二十萬口。奐但誅其首惡，餘皆慰納之，唯鮮卑出塞去。”
- 232 『後漢書』卷89「南匈奴傳」，2960年。“五年夏，南匈奴左部句龍王吾斯·車紐等背畔，率三千餘騎寇西河，因復招誘右賢王，合七八千騎圍美稷，殺朔方·代郡長史。馬續與中郎將梁竝·烏桓校尉王元發緣邊兵及烏桓·鮮卑·羌胡合二萬餘人，掩擊破之。吾斯等遂更屯聚，攻沒城邑。天子遣使責讓單于，開以恩義，令相招降。單于本不豫謀，乃脫帽避帳，詣竝謝罪。竝以病徵，五原太守陳龜代爲中郎將。龜以單于本不能制下，逼迫之，單于及其弟左賢王皆自殺。”
- 233 『後漢書』卷6「順帝紀」永建元年條，724年。“八月，鮮卑寇代郡，代郡太守李超戰歿。”；『後漢書』卷19「耿弇傳附曄傳」，724年。“曄字季遇，順帝初，爲烏桓校尉。時鮮卑寇緣邊，殺代郡太守。曄率烏桓及諸郡卒出塞討擊，大破之。鮮卑震怖，數萬人詣遼東降。自後頻出輒克獲，威振北方。遷度遼將軍。”
- 234 『後漢書』卷3「肅宗孝章帝紀」章和元年三月條，156年。“章和元年春三月，護羌校尉傅育追擊叛羌，戰歿。”
- 235 『後漢書』卷3「肅宗孝章帝紀」章和元年七月條，157年。“燒當羌寇金城，護羌校尉劉盱討之，斬其渠帥。”
- 236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五年條，177年。“護羌校尉賁友討燒當羌，羌乃遁去。”
- 237 『後漢書』卷87「西羌·滇良傳」，2884~2885年。“初，累姐種附漢，迷唐怨之，遂擊殺其酋豪，由是與諸種爲讎。黨援益疎。其秋，迷唐復將兵向塞，周鮪與金城太守侯霸，及諸郡兵·屬國湟中月氏諸胡·隴西牢姐羌，合三萬人，出塞至允

川，與迷唐戰，周鮪還營自守，唯侯霸兵陷陳，斬首四百餘級，羌眾折傷，種人瓦解，降者六千餘口，分徙漢陽·安定·隴西。迷唐遂弱，其種眾不滿千人，遠踰賜支河首，依發羌居。”

- 238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三年八月條，188쪽. “護羌校尉周鮪擊燒當羌，破之.”
- 239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七年秋條，220쪽. “秋，護羌校尉侯霸·騎都尉馬賢破先零羌.”
- 240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2쪽. “永寧元年春，上郡沈氏種羌五千餘人復寇張掖。其夏，馬賢將萬人擊之，初戰失利，死者數百人，明日復戰，破之，斬首千八百級，獲生口千餘人，馬牛羊以萬數，餘虜悉降。時當煎種大豪飢[五]等，以賢兵在張掖，乃乘虛寇金城，賢還軍追之出塞，斬首數千級而還。燒當·燒何種聞賢軍還，率三千餘人復寇張掖，殺長吏。初，飢五同種大豪盧忽·忍良等千餘戶別留允街，而首施兩端.”
- 241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2쪽. “建光元年春，馬賢率兵召盧忽斬之，因放兵擊其種人，首虜二千餘人，掠馬牛羊十萬頭，忍良等皆亡出塞。璽書封賢安亭侯，食邑千戶。忍良等以麻奴兄弟本燒當世嫡，而賢撫恤不至，常有怨心。秋，遂相結共脅將諸種步騎三千人寇湟中，攻金城諸縣。賢將先零種赴擊之，戰於牧苑，兵敗，死者四百餘人。麻奴等又敗武威·張掖郡兵於令居，因脅將先零·沈氏諸種四千餘戶，緣山西走，寇武威。賢追到鸞鳥，招引之，諸種降者數千，麻奴南還湟中.”
- 242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2쪽. “延光元年春，賢追到湟中，麻奴出塞度河，賢復追擊戰破之，種眾散遁，詣涼州刺史宗漢降。麻奴等孤弱飢困，其年冬，將種眾三千餘戶詣漢陽太守耿种降。安帝假金印紫綬，賜金銀綵綰各有差。是歲，虔人種羌與上郡胡反，攻穀羅城，度遼將軍耿种將諸郡兵及烏桓騎赴擊破之.”
- 243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4쪽. “二年春，廣漢屬國都尉擊破之，斬首六百餘級，馬賢又擊斬其渠帥飢指累祖等三百級，於是隴右復平.”
- 244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4~2895쪽. “明年冬，燒當種那離等三千餘騎寇金城塞，馬賢將兵赴擊，斬首四百餘級，獲馬千四百匹。那離等復西招羌胡，殺傷吏民.”
- 245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5쪽. “四年，馬賢將湟中義從兵及羌胡萬餘騎掩擊那離等，斬之，獲首虜千二百餘級，得馬騾羊十萬餘頭.”
- 246 『後漢書』卷6「孝冲帝紀」建康元年十一月己酉條，276쪽. “護羌校尉趙冲追擊叛羌於鷁陰河，戰歿.”
- 247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7쪽. “建康元年春，護羌從事馬玄遂爲諸羌所誘，將羌眾亡出塞，領護羌校尉衛瑤追擊玄等，斬首八百餘級，得牛馬羊二十餘萬頭。趙冲復追叛羌到建威鷁陰河，軍度[未]竟，所將降胡六百餘人

叛走，冲將數百人追之，遇羌伏兵，與戰歿，冲雖身死，而前後多所斬獲，羌由是衰耗，永嘉元年，封冲子愷義陽亭侯，以漢陽太守張貢代爲校尉，左馮翊梁竝稍以恩信招誘之，於是離滿·狐奴等五萬餘戶詣竝降，隴右復平。”

- 248 『後漢書』卷6「孝順帝紀」建康元年三月庚子條，274卒，“領護羌校尉衛琚追討叛羌，破之。”
- 249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二年十二月己巳條，306卒，“燒當等八種羌叛，寇隴右，護羌校尉段熲追擊於羅亭，破之。”
- 250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三年閏月條，306卒，“閏月，燒何羌叛，寇張掖，護羌校尉段熲追擊於積石，大破之。”
- 251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三年十一月條，307卒，“勒姐羌圍允街，段熲擊破之。”
- 252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七年條，313卒，“護羌校尉段熲擊當煎羌，破之。”
- 253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八年二月己酉條，314卒，“護羌校尉段熲擊罕姐羌，破之。”
- 254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康元年正月條，318卒，“當煎羌寇武威，護羌校尉段熲追擊於鸛鳥，大破之，西羌悉平。”
- 255 『後漢書』卷65「段熲傳」，2149卒，“建寧元年春，熲將兵萬餘人，齎十五日糧，從彭陽直指高平，與先零諸種戰於逢義山，虜兵盛，熲眾恐，熲乃令軍中張鐵利刃，長矛三重，挾以强弩，列輕騎爲左右翼，淚怒兵將曰：‘今去家數千里，進則事成，走必盡死，努力共功名！’因大呼，眾皆應騰赴，熲馳騎於傍，突而擊之，虜眾大潰，斬首八千餘級，獲牛馬羊二十八萬頭。”
- 256 『後漢書』卷8「孝靈帝紀」建寧元年正月條，328卒，“使護羌校尉段熲討先零羌。”
- 257 『後漢書』卷8「孝靈帝紀」建寧元年二月庚午條，328卒，“段熲大破先零羌於逢義山。”
- 258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元年十月條，350卒，“湟中義從胡北宮伯玉與先零羌叛，以金城人邊章·韓遂爲軍帥，攻殺護羌校尉何徽·金城太守陳懿。”
- 259 『後漢書』卷38「張宗傳」，1276卒，“八年，潁川桑中盜賊羣起，宗將兵擊定之。”
- 260 『後漢書』卷38「張宗傳」，1276卒，“後青·冀盜賊屯聚山澤，宗以謁者督諸郡兵討平之。”
- 261 『後漢書』卷18「吳漢傳」，683卒，“十五年，復率揚武將軍馬成·捕虜將軍馬武北擊匈奴，徙鴈門·代郡·上谷吏人六萬餘口，置唐庸·常〔山〕關以東。”
- 262 『後漢書』卷38「張宗傳」，1276卒，“十六年，琅邪·北海盜賊復起，宗督二郡兵討之，乃設方略，明購賞，皆悉破散，於是沛·楚·東海·臨淮羣賊懼其威武，相捕斬者數千人，青·徐震慄。”

- 263 『後漢書』卷24「馬援傳」, 838쪽. “十七年, 遂共聚會徒黨, 攻沒皖城, 殺皖侯劉閔, 自稱‘南岳大師’. 遣謁者張宗將兵數千人討之, 復爲廣所敗. 於是使援發諸郡兵, 合萬餘人, 擊破廣等, 斬之.”
- 264 『後漢書』卷1下「光武帝紀」建武十七年條, 68쪽. “秋七月, 妖巫李廣等羣起據皖城, 遣虎賁中郎將馬援·驃騎將軍段志討之. 九月, 破皖城, 斬李廣等.”
- 265 『後漢書』卷86「南蠻傳」, 2836~2837쪽. “至十六年, 交趾女子徵側及其妹徵貳反, 攻郡. 徵側者, 諡洽縣雒將之女也. 嫁爲朱載人詩索妻, 甚雄勇. 交趾太守蘇定以法繩之, 側忿, 故反. 於是九眞·日南·合浦蠻里皆應之, 凡略六十五城, 自立爲王. 交趾刺史及諸太守僅得自守. 光武乃詔長沙·合浦·交趾具車船, 修道橋, 通障谿, 儲糧穀. 十八年, 遣伏波將軍馬援·樓船將軍段志, 發長沙·桂陽·零陵·蒼梧兵萬餘人討之. 明年夏四月, 援破交趾, 斬徵側·徵貳等, 餘皆降散. 進擊九眞賊都陽等, 破降之. 徙其渠帥三百餘口於零陵. 於是領表悉平.”
- 266 『後漢書』卷1下「光武帝紀」建武十九年正月庚子條, 70쪽. “妖巫單臣·傅鎮等反, 據原武, 遣太中大夫臧宮圍之. 夏四月, 拔原武, 斬臣·鎮等.”
- 267 『後漢書』卷1下「光武帝紀」建武十九年條, 71쪽. “西南夷寇益州郡, 遣武威將軍劉尚討之. 越嵩太守任貴謀叛, 十二月, 劉尚襲貴, 誅之.”
- 268 『後漢書』卷1下「光武帝紀」建武二十三年正月條, 75쪽. “是二十三年春正月, 南郡蠻叛, 遣武威將軍劉尚討破之, 徙其種人於江夏.”; 『後漢書』卷86「南蠻傳」, 2831~2832쪽. “建武二十三年, 精夫相單程等據其險隘, 大寇郡縣, 遣武威將軍劉尚發南郡·長沙·武陵兵萬餘人, 乘船泝沅水入武谿擊之.”
- 269 『後漢書』卷1下「光武帝紀」建武二十四年七月條, 76쪽. “秋七月, 武陵蠻寇臨沅, 遣謁者李嵩·中山太守馬成討蠻, 不克, 於是伏波將軍馬援率四將軍討之.”
- 270 『後漢書』卷2「顯宗孝明帝紀」中元二年十一月條, 97쪽. “冬十一月, 遣中郎將竇固監捕虜將軍馬武等二將軍討燒當羌.”
- 271 『後漢書』卷22「馬武傳」, 786쪽. “顯宗初, 西羌寇隴右, 覆軍殺將, 朝廷患之, 復拜武捕虜將軍, 以中郎將王豐副, 與監軍使者竇固·右輔都尉陳訢, 將烏桓·黎陽營·三輔募士·涼州諸郡羌胡兵及弛刑, 合四萬人擊之. 到金城浩亶, 與羌戰, 斬首六百級. 又戰於洛都谷, 爲羌所敗, 死者千餘人. 羌乃率眾引出塞, 武復追擊到東·西邯, 大破之, 斬首四千六百級, 獲生口千六百人, 餘皆降散.”
- 272 『後漢書』卷2「顯宗孝明帝紀」永平元年七月條, 99쪽. “秋七月, 捕虜將軍馬武等與燒當羌戰, 大破之.”
- 273 『後漢書』卷3「肅宗孝章帝紀」建初三年四月己巳條, 136쪽. “行車騎將軍馬防破燒當羌於臨洮.”
- 274 『後漢書』卷86「南蠻傳」, 2832쪽. “三年冬, 淩中蠻覃兒健等復反, 攻燒零陽·作唐·屏陵界中. 明年春, 發荊州七郡及汝南·潁川(施)弛[弛]刑徒吏士五千餘人, 拒守零陽, 募充中五里蠻精夫不叛者四千人, 擊澧中賊.”

- 275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八年條, 181쪽. “[五月?]南匈奴右溫禺犢王叛, 爲寇. 秋七月, 行度遼將軍龐參·越騎校尉馮柱追討之, 斬右溫禺犢王.”
- 276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九年閏月條, 184쪽. “燒當羌寇隴西, 殺長吏, 遣行征西將軍劉尚·越騎校尉趙世等討破之.”
- 277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四年四月條, 190쪽. “夏四月, 遣使者督荊州兵討巫蠻, 破降之.”
- 278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元年六月條, 207쪽. “先零種羌叛, 斷隴道, 大爲寇掠, 遣車騎將軍鄧騭·征西校尉任尙討之. 丁卯, 赦除諸羌相連結謀叛逆者罪.”
- 279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 2886쪽. “先零別種滇零與鍾羌諸種大爲寇掠, 斷隴道, 時羌歸附既久, 無復器甲, 或持竹竿木枝以代戈矛, 或負板案以爲楯, 或執銅鏡以象兵, 郡縣畏懦不能制. 冬, 遣車騎將軍鄧騭, 征西校尉任尙副, 將五營及三河·三輔·汝南·南陽·潁川·太原·上黨兵合五萬人, 屯漢陽.”
- 280 『後漢書』卷47「梁慄傳」, 1592쪽. “二年春, 還至敦煌. 會眾羌反叛, 朝廷大發兵西擊之, 逆詔慄留爲諸軍援. 慄至張掖日勒, 羌諸種萬餘人攻亭候, 殺略吏人, 慄進兵擊, 大破之, 乘勝追至昭武, 虜遂散走, 其能脫者十二三. 及至姑臧, 羌大豪三百餘人詣慄降, 竝尉警遣還故地, 河西四郡復安.”
- 281 『後漢書』卷47「梁慄傳」, 1592쪽. “三年冬, 南單于與烏桓大人俱反, 以大司農何熙行車騎將軍事, 中郎將龐雄爲副, 將羽林五校營士, 及發緣邊十郡兵二萬餘人, 又遼東太守耿种率將鮮卑種眾共擊之, 詔慄行度遼將軍事.”
- 282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三年正月庚子條, 212쪽. “遣騎都尉任仁討先零羌, 不利, 羌遂破沒臨洮.”
- 283 『後漢書』卷38「法雄傳」, 1277쪽. “永初三年, 海賊張伯路等三千餘人, 冠赤幘, 服絳衣, 自稱‘將軍’, 寇濱海九郡, 殺二千石令長. 初, 遣侍御史龐雄督州郡兵擊之, 伯路等乞降, 尋復屯聚. 明年, 伯路復與平原劉文河等三百餘人稱‘使者’, 攻厭次城, 殺長吏, 轉入高唐, 燒官寺, 出繫囚, 渠帥皆稱‘將軍’, 共朝謁伯路. 伯路冠五梁冠, 佩印綬, 黨眾浸盛. 乃遣御史中丞王宗持節發幽·冀諸郡兵, 合數萬人, 乃徵雄爲青州刺史, 與王宗并力討之. 連戰破賊, 斬首溺死者數百人, 餘皆奔走, 收器械財物甚眾. 會赦詔到, 賊猶以軍甲未解, 不敢歸降. 於是王宗召刺史太守共議, 皆以爲當遂擊之. 雄曰: ‘不然. 兵, 凶器; 戰, 危事. 勇不可恃, 勝不可必. 賊若乘船浮海, 深入遠島, 攻之未易也. 及有赦令, 可且罷兵, 以慰誘其心, 執必解散, 然後圖之, 可不戰而定也.’ 宗善其言, 卽罷兵. 賊聞大喜, 乃還所略人. 而東萊郡兵獨未解甲, 賊復驚恐, 遁走遼東, 止海島上. 五年春, 乏食, 復抄東萊閒, 雄率郡兵擊破之, 賊逃還遼東, 遼東人李久等共斬平之, 於是州界清靜.”
- 284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四年正月辛卯條, 214쪽. “海賊張伯路復與勃

- 海·平原劇賊劉文河·周文光等攻厭次，殺縣令，遣御史中丞王宗督青州刺史法雄討破之。”
- 285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87쪽. “侍御史唐喜領諸郡兵討破之，斬王信等六百餘級，沒入妻子五百餘人，收金(錢)[銀]綵帛一億已上.”
- 286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87쪽. “七年夏，騎都尉馬賢與侯霸掩擊零昌別部牢羌於安定，首虜千人，得驢騾駱駝馬牛羊二萬餘頭，以畀得者.”
- 287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88쪽. “復以任尙爲侍御史，擊眾羌於上黨羊頭山，破之，誘殺降者二百餘人，乃罷孟津屯.”
- 288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89쪽. “侯霸·馬賢將湟中吏人及降羌胡於枹罕擊之，斬首二百餘級. 涼州刺史皮楊擊羌於狄道，大敗，死者八百餘人，楊坐徵免.”
- 289 『後漢書』卷31「王堂傳」，1105쪽. “王堂字敬伯，廣漢郡人也. 初舉光祿茂才，遷穀城令，治有名迹. 永初中，西羌寇巴郡，爲民患，詔書遣中郎將尹就攻討，連年不剋. 三府舉堂治劇，拜巴郡太守. 堂馳兵赴賊，斬虜千餘級，巴·庸清靜，吏民生爲立祠.”
- 290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89쪽. “而零昌種眾復分寇益州，遣中郎將尹就將南陽兵，因發益部諸郡屯兵擊零昌黨呂叔都等. 至秋，蜀人陳省·羅橫應募，刺殺叔都，皆封侯賜錢. 又使屯騎校尉班雄屯三輔，遣左馮翊司馬鈞行征西將軍，督右扶風仲光·安定太守杜恢·北地太守盛包·京兆虎牙都尉耿溥·右扶風都尉皇甫旗等，合八千餘人，又龐參將羌胡兵七千餘人，與鈞分道竝北擊零昌.”
- 291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二年三月癸亥條，222쪽. “先零羌寇益州，遣中郎將尹就討之.”
- 292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89~2890쪽. “後遣任尙爲中郎將，將羽林·緄騎·五營子弟三千五百人，代班雄屯三輔. 尙臨行，懷令虞詡說尙曰：‘使君頻奉國命討逐寇賊，三州屯兵二十餘萬人，棄農桑，疲苦徭役，而未有功效，勞費日滋，若此出不克，誠爲使君危之.’尙曰：‘憂惶久矣，不知所如.’詡曰：‘兵法弱不攻強，走不逐飛，自然之執也. 今虜皆馬騎，日行數百，來如風雨，去如絕弦，以步追之，執不相及，所以曠而無功也. 爲使君計者，莫如罷諸郡兵，各令出錢數千，二十人共市一馬，如此，可捨甲冑，馳輕兵，以萬騎之眾，逐數千之虜，追尾掩截，其道自窮. 使人利事，大功立矣.’尙大喜，即上言用其計. 乃遣輕騎鈔擊杜季貢於丁奚城，斬首四百餘級，獲牛馬羊數千頭.”
- 293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0쪽. “明年夏，度遼將軍鄧遵率南單于及左鹿蠡王須沈萬騎，擊零昌於靈州，斬首八百餘級，封須沈爲破虜侯，金印紫綬，賜金帛各有差.”
- 294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0쪽. “任尙又遣假司馬募陷陳土，

擊零昌於北地，殺其妻子，得牛馬羊二萬頭，燒其廬落，斬首七百餘級，得僭號文書及所沒諸將印綬。”

- 295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三年春正月甲戌條，225쪽. “蒼梧·鬱林·合浦蠻夷反叛，二月，遣侍御史任逵督州郡兵討之。”
- 296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3쪽. “順帝永建元年，隴西鍾羌反，校尉馬賢將七千餘人擊之，戰於臨洮，斬首千餘級，皆率種人降，進封賢都鄉侯，自是涼州無事。”
- 297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4쪽. “三年，鍾羌良封等復寇隴西·漢陽，詔拜前校尉馬賢爲謁者，鎮撫諸種，馬續遣兵擊良封，斬首數百級。”
- 298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4쪽. “四年，馬賢亦發隴西吏士及羌胡兵擊殺良封，斬首千八百級，獲馬牛羊五萬餘頭，良封親屬竝詣(實)[賢]降，賢復進擊鍾羌且昌，且昌等率諸種十餘萬詣涼州刺史降。”
- 299 『後漢書』卷89「南匈奴傳」，2961~2962쪽. “秋，句龍吾斯等立句龍王車紐爲單于，東引烏桓，西收羌戎及諸胡等數萬人，攻破京兆虎牙營，殺上郡都尉及軍司馬，遂寇掠并·涼·幽·冀四州，乃徙西河治離石，上郡治夏陽，朔方治五原，冬，遣中郎將張耽將幽州烏桓諸郡營兵，擊畔虜車紐等，戰於馬邑，斬首三千級，獲生口及兵器牛羊甚眾，車紐等將諸豪帥骨都侯乞降，而吾斯猶率其部曲與烏桓寇鈔。”
- 300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5쪽. “五年夏，且凍·傳難種羌等遂反叛，攻金城，與西塞及湟中雜種羌胡大寇三輔，殺害長吏，機·秉竝坐徵，於是發京師近郡及諸州兵討之，拜馬賢爲征西將軍，以騎都尉耿叔副，將左右羽林·五校士及諸州郡兵十萬人屯漢陽，又於扶風·漢陽·隴道作塢壁三百所，置屯兵，以保聚百姓。”
- 301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6쪽. “於是東西羌遂大合，鞏唐種三千餘騎寇隴西，又燒園陵，掠關中，殺傷長吏，郃陽令任頽追擊，戰死，遣中郎將龐參募勇士千五百人頓美陽，爲涼州援，武威太守趙冲追擊鞏唐羌，斬首四百餘級，得馬牛羊驢萬八千餘頭，羌二千餘人降，詔冲督河西四郡兵爲節度，罕種羌千餘寇北地，北地太守賈福與趙冲擊之，不利。”
- 302 『後漢書』卷87「西羌·東號子麻奴傳」，2896쪽. “於是復徙安定居扶風，北地居馮翊，遣行車騎將軍執金吾張喬將左右羽林·五校士及河內·南陽·汝南兵萬五千屯三輔。”
- 303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十一月庚子條，271쪽. “十一月庚子，以執金吾張喬行車騎將軍事，將兵屯三輔。”
- 304 『後漢書』卷38「滕撫傳」，1279~1280쪽. “順帝末，揚·徐盜賊羣起，磐牙連歲，建康元年，九江范容·周生等相聚反亂，屯據歷陽，爲江淮巨患，遣御史中丞馮緄將兵督揚州刺史尹耀·九江太守鄧顯討之，耀·顯軍敗，爲賊所殺。”
- 305 『後漢書』卷6「孝順帝紀」建康元年八月條，274쪽. “八月，楊·徐盜賊范容·周

生等寇掠城邑，遣御史中丞馮赦督州郡兵討之。”

- 306 『後漢書』卷6「孝質帝紀」永熹元年三月條，277쪽. “三月，九江賊馬勉稱‘黃帝’，九江都尉滕撫討馬勉·范容·周生·大破斬之.”；『後漢書』卷38「滕撫傳」，1279~1280쪽. “明年，廣陵賊張嬰等復聚眾數千人反，據廣陵，朝廷博求將帥，三公舉撫有文武才，拜爲九江都尉，與中郎將趙序助馮緄合州郡兵數萬人共討之。又廣開賞募，錢·邑各有差，梁太后慮羣賊屯結，諸將不能制，又議遣太尉李固，未及行，會撫等進擊，大破之，斬馬勉·范容·周生等千五百級，徐鳳遂將餘眾攻燒東城縣，下邳人謝安應募，率其宗親設伏擊鳳，斬之，封安爲平鄉侯，邑三千戶。”
- 307 『後漢書』卷6「孝質帝紀」永熹元年七月條，279쪽. “廬江盜賊攻尋陽，又攻盱台，滕撫遣司馬王章擊破之。”
- 308 『後漢書』卷6「孝質帝紀」永熹元年十一月丙午條，279쪽. “丙午，中郎將滕撫擊廣陵賊張嬰，破之。”
- 309 『後漢書』卷6「孝質帝紀」永熹元年十一月丁未條，279쪽. “歷陽賊華孟自稱‘黑帝’，攻殺九江太守楊岑，滕撫率諸將擊孟等，大破斬之。”
- 310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壽二年七月條，302쪽. “太山賊公孫舉等寇青·兗·徐三州，遣中郎將段熲討，破斬之。”
- 311 『後漢書』卷89「南匈奴傳」，2963쪽. “延熹元年，南單于諸部竝畔，遂與烏桓·鮮卑寇緣邊九郡，以張奐爲北中郎將討之，單于諸部悉降，奐以單于不能統理國事，乃拘之，上立左谷蠡王。”
- 312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三年九月條，307쪽. “九月，太山·琅邪賊勞丙等復叛，寇掠百姓，遣御史中丞趙某持節督州郡討之。”
- 313 『後漢書』卷38「度尙傳」，1286쪽. “後爲中郎將宗資別部司馬，擊太山賊公孫舉等，破平之，斬首三千餘級，封烏程東鄉侯五百戶。”
- 314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三年條，307쪽. “[十一月]太山賊叔孫無忌攻殺都尉侯章，十二月，遣中郎將宗資討破之。”
- 315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三年十二月條，307쪽. “武陵蠻寇江陵，車騎將軍馮緄討，皆降散。”
- 316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四年條，309쪽. “先零沈氏羌與諸種羌寇并凉二州，十一月，中郎將皇甫規擊破之。”
- 317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五年五月條，310쪽. “長沙·零陵賊起，攻桂陽·蒼梧·南海·交趾，遣御史中丞盛脩督州郡討之，不克。”
- 318 『後漢書』卷38「度尙傳」，1285쪽. “又遣謁者馬睦，督荊州刺史劉度擊之，軍敗，睦·度奔走。”
- 319 『後漢書』卷38「度尙傳」，1285쪽. “桓帝詔公卿舉任代劉度者，尙書朱穆舉尙，自右校令擢爲荊州刺史。尙躬率部曲，與同勞逸，廣募雜種諸蠻夷，明設購賞，

進擊，大破之，降者數萬人。桂陽宿賊渠帥卜陽·潘鴻等畏尙威烈，徙入山谷，尙窮追數百里，遂入南海，破其三屯，多獲珍寶。而陽·鴻等黨眾猶盛，尙欲擊之，而士卒驕富，莫有鬬志。尙計緩之則不戰，逼之必逃亡，乃宣言卜陽·潘鴻作賊十年，習於攻守，今兵寡少，未易可進，當須諸郡所發悉至，爾乃并力攻之。申令軍中，恣聽射獵，兵士喜悅，大小皆相與從禽。尙乃密使所親客潛焚其營，珍積皆盡。獵者來還，莫不泣涕。尙人人慰勞，深自咎責，因曰：‘卜陽等財寶足富數世，諸卿但不并力耳。所亡少少，何足介意！’眾聞咸憤踊，尙勅令秣馬蓐食，明旦，徑赴賊屯。陽·鴻等自以深固，不復設備，吏士乘銳，遂大破平之。”

- 320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五年條，311年。“冬十月，武陵蠻叛，寇江陵，南郡太守李肅坐奔北弃市；辛丑，以太常馮緄爲車騎將軍，討之。”；『後漢書』卷38「馮緄傳」，1281年。“時長沙蠻寇益陽，屯聚積久，至延熹五年，眾轉盛，而零陵蠻賊復反應之，合二萬餘人，攻燒城郭，殺傷長吏。又武陵蠻夷悉反，寇掠江陵間，荊州刺史劉度·南郡太守李肅竝奔走，荊南皆沒，於是拜緄爲車騎將軍，將兵十餘萬討之。”
- 321 『後漢書』卷38「度尙傳」，1286年。“尙出兵三年，羣寇悉定。七年，封右鄉侯，遷桂陽太守。明年，徵還京師。時荊州兵朱蓋等，征伐役久，財賞不贍，忿恚，復作亂，與桂陽賊胡蘭等三千餘人復攻桂陽，焚燒郡縣，太守任胤奔城走，賊眾遂至數萬。轉攻零陵，太守陳球固守拒之。於是以尙爲中郎將，將幽·冀·黎陽·烏桓步騎二萬六千人救球，又與長沙太守抗徐等發諸郡兵，并執討擊，大破之，斬蘭等首三千五百級，餘賊走蒼梧。”
- 322 『後漢書』卷7「孝桓帝紀」延熹八年六月條，315年。“桂陽胡蘭·朱蓋等復反，攻沒郡縣，轉寇零陵，零陵太守陳球拒之；遣中郎將度尙·長沙太守抗徐等擊蘭·蓋，大破斬之。蒼梧太守張紘爲賊所執，又桂陽太守任胤背敵畏懼，皆奔市。”；『後漢書』卷38「度尙傳」，1286年。“尙出兵三年，羣寇悉定。七年，封右鄉侯，遷桂陽太守。明年，徵還京師。時荊州兵朱蓋等，征伐役久，財賞不贍，忿恚，復作亂，與桂陽賊胡蘭等三千餘人復攻桂陽，焚燒郡縣，太守任胤奔城走，賊眾遂至數萬。轉攻零陵，太守陳球固守拒之。於是以尙爲中郎將，將幽·冀·黎陽·烏桓步騎二萬六千人救球，又與長沙太守抗徐等發諸郡兵，并執討擊，大破之，斬蘭等首三千五百級，餘賊走蒼梧。”
- 323 『後漢書』卷7「孝桓帝紀」永康元年正月條，318年。“永康元年春正月，先零羌寇三輔，中郎將張奐破平之。”
- 324 『後漢書』卷8「孝靈帝紀」建寧元年七月條，329年。“秋七月，破羌將軍段熲復破先零羌於涇陽。”
- 325 『後漢書』卷8「孝靈帝紀」建寧二年七月條，330年。“秋七月，破羌將軍段熲大破先零羌於豺虎塞外谷，東羌悉平。”
- 326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元年三月條，348年。“遣北中郎將盧植討張角，左中郎將皇甫嵩·右中郎將朱儁討潁川黃巾。”
- 327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二年三月條，351年。“北宮伯玉等寇三輔，遣左

치되지 않았다.

또 주자사가 군대를 지휘한 예는 익주 4회, 교지 3회, 형주·양주(揚州)·양주(涼州) 2회, 유주 1회 등 모두 14회였다. 이 때문에 자사가 후한시대 군사통수권을 지녔다는 학설이 등장하였다.³³⁴ 그러나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가 군병·주병(州兵) 등을 거느리고 출정한 예가 70회이다. 이 가운데 2주 이상 걸친 경우도 있지만 1주나 군 단위에서 벌어진 전쟁에도 조정의 관리가 전쟁을 지휘하였다. 따라서 주자사가 군대를 수행한 예는 적었고, 예외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조정에서 문무 관리를 지휘자로 파견한 70회의 예를 주나 군별로 살펴보면 8주[청주, 기주, 교지, 익주, 연주, 서주, 양주(涼州), 병주], 38개 군국에 달한다. 흉노·선비·오환을 막는 북변뿐만 아니라 서부 변경인 파촉(익주), 만·월(越)의 거주지인 교지와 형주 제군, 장강 하류 등 다양한 지역에 퍼져 있었다. 따라서 후한의 조정은 1군이나 이민족을 관장하는 무관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무장을 파견하거나 1군 또는 2군 단위의 반란에도 주자사 대신 황제 측근의 알자(謁者)·어사중승·시어사 등을 파견하였다. 이 또한 위에서 주장한 것

車騎將軍皇甫嵩討之，不克。”

328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二年十一月條, 352쪽. “十一月, 張溫破北宮伯玉於美陽, 因遣盪寇將軍周慎追擊之, 圍榆中; 又遣中郎將董卓討先零羌. 慎·卓並不克.”

329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五年九月條, 356쪽. “遣中郎將孟益率騎都尉公孫瓚討漁陽賊張純等.”

330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五年十一月條, 357쪽. “十一月, 涼州賊王國圍陳倉, 右將軍皇甫嵩救之.”

331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五年十月條, 357쪽. “巴郡板楯蠻叛, 遣上軍別部司馬趙瑾討平之.”

332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五年十月條, 357쪽. “遣下軍校尉鮑鴻討葛陂黃巾.”

333 『後漢書』卷8「孝靈帝紀」中平六年二月條, 357쪽. “六年春二月, 左將軍皇甫嵩大破王國於陳倉.”

334 嚴耕望, 1961, 앞의 책, 288~289쪽.

처럼 주 단위의 군사(軍事) 문제에 자사보다 중앙에서 파견한 사자(使者)·무장(武將)에게 지휘를 맡겼음을 입증하는 통계이다.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는 중랑장 19회, 알자 8회, 거기장군·시어사·어사중승 5회, 기도위(騎都尉) 4회, 포로장군(捕虜將軍)·행거기장군(行車騎將軍) 3회, 태중대부(太中大夫)·호분중랑장(虎賁中郎將)·복파장군(伏波將軍)·무위장군(武威將軍)·행도요장군(行度遼將軍)·월기교위(越騎校尉)·정서교위(征西校尉)·청주자사(靑州刺史)·호강교위(護羌校尉)·구강도위(九江都尉)·북중랑장(北中郎將)·형주자사(荊州刺史)·영릉태수(零陵太守)·장사태수(長沙太守)·파강장군(破羌將軍) 2회, 대사마(大司馬)·양무장군(揚武將軍)·표기장군(驃騎將軍)·누선장군(樓船將軍)·중산태수(中山太守)·감군사자(監軍使者)·우보도위(右輔都尉)·서역부교위(西域副校尉)·좌중랑장(左中郎將)·우중랑장(右中郎將)·좌거기장군(左車騎將軍)·탕구장군(盪寇將軍)·우장군(右將軍)·상군별부사마(上軍別部司馬)·하군교위(下軍校尉)·좌장군(左將軍) 1회이고 구체적인 직책을 알 수 없는 사자(使者)가 1회이다(중복 포함). 이 가운데 각종 장군(거기장군·포로장군·행거기장군·복파장군·무위장군·행도요장군·파강장군·양무장군·표기장군·누선장군·좌거기장군)이 24회, 광록훈 속관[알자·기도위·태중대부(太中大夫)·호분중랑장(虎賁中郎將)·북중랑장(北中郎將)·좌중랑장(左中郎將)·우중랑장(右中郎將)]이 20회, 소부 속관(어사중승, 시어사) 10회, 태수(영릉태수·장사태수·중산태수) 5회, 친위부대 장령(월기교위·상군별부사마·하군교위) 4회, 자사(청주자사·형주자사) 4회였다. 태수(5회)와 자사(4회)는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의 지휘를 받았다. 각종 장군이 총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흉노·선비·강 등 북방의 강력한 유목민 군대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황제의 측근인 광록훈과 소부 속관이 25회인 것은 대부분 반란 진압과 군대 통솔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낼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만약 소부 속관인 어사중승과 시어사를 감찰관으로 분류하고 자사 역시 군국과 현을 감시하는 감찰관이라고 하면 중앙과 지방의 감찰관 파견이 24회가 된다. 즉, 후한 황제들은 황제 측근인 광록훈 속리만큼이나 감찰관을 파견하여 전장의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후한시대 반란이나 외적의 침입이 발생하면 관할구역인 군·속국(도위)·호홍노중랑장·도요장군·오환교위·호강교위가 처리하였다(모두 49회). 그렇지 못할 경우 주(14회), 여러 주병이나 군병이 동원되었다(모두 14회). 이때 조정에서 무장이나 황제의 측근을 보내 주군병을 지휘한 예가 70회였다. 1군 또는 여러 군에 걸친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여러 군을 감찰하는 자사보다 조정에서 무장과 황제의 측근을 보낸 것은 중앙정부가 군사 지휘권을 통제·행사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VI. 맺음말

본문의 고증에 따르면, 내군에 해당하는 자사부 관할 아래의 군은 사예교위에 7군, 예주에 6개 군국, 기주에 9개 군국, 연주에 8개 군국, 서주에 5개 군국, 청주에 6개 군국이었다. 여기에 최소 형주의 남양군이 내군에 포함되었다고 간주하면 내군의 군국은 모두 42군이었다. 이 가운데 홍농군에만 도위를 설치했으므로 건무 6년(30) 도위가 폐지된 내군은 최소 41개 군국이었다고 추정된다.³³⁵ 광무제의 도위 폐지 조치 이후에도 내군에 여전히 도위가 설치된 지역은 홍농·경조윤·우부풍 3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도위 및 재관·기사의 폐지, 도시(都試)의 폐지³³⁶를 군병 폐지의 근거로 제시한다. 도시는 입추 또는 팔월에 태수·도위·영(令)·장(長)·상(相)·승(丞)·위(尉)가 재관·기사 등의 무예 능력을 평가한 행정행위였다.³³⁷ 이는 재관과 기사 등의 무예 능력을 평가하

335 張亞偉는 內郡이 48郡, 邊郡(外郡)이 35郡이라고 보았다(張亞偉, 2018.5, 앞의 글, 13~14쪽). 內郡과 外郡을 나누는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가 열거한 郡名을 보면 국경선에 있는 郡은 邊郡, 그렇지 않은 郡은 內郡으로 파악하였다.

336 『續漢書』志第二十八「百官志」5 州郡條, 3621쪽, “中興建武六年, 省諸郡都尉, 并職太守, 無都試之役.”

337 『後漢書』卷15「李通傳」章懷太子注, 574쪽, “漢法以立秋日 都試 騎士, 謂課殿最也. 翟義誅王莽, 以九月 都試日勒車騎材官士是也.”; 『續漢書』志第

고 고과 점수를 매긴 것에 불과할 뿐, 도시 폐지는 군병과 현병을 없앴다는 증거는 아니다. 도시를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군사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회를 없앴을 뿐, 군병과 현병을 없앴거나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본문에서 검토한 군병 동원 사례에 따르면, 광무제 시기부터 환제 연희 7년(164)까지 사실상 후한 전 시기에 최소 12개 내군(중산·태산·평원·삼하(하남·하동·하내)·삼보(경조윤·우부풍·좌풍익)·여남·남양·영천)과 내군이 속하는 5주(기주·서주·예주·연주·청주) 및 사예교위부(낙양과 주변의 경기 지역 7군)에서 군병이 존재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도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내군의 군병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후한시대의 경군비(景君碑)에 문하독도적과 기리가 내군의 군국에 존재했음은 물론 휘하의 병졸, 즉 군병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 『장사동패루동한간독』의 「중평오년후임상수령신속상언형남빈우군구문서」에서 장사군의 속현 소릉·연도 2현에 군대가 주둔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기리, 포도사, 좌적조연, 우적조, 주병사 등은 도적을 막거나 군사를 지휘하던 군리(장사군) 또는 현리(임상현)로 추정된다. 현 단위에서 남양군 완현의 권농적포연 또는 적포연(「이맹초신사비」), 남양군 완현에 추고적조연(「장경비」), 좌풍익 아현에 문하유요와 문하적조, 기리(「창힐묘비」) 등 도적을 막거나 치안을 담당한 연사(권농적포연, 적포연, 추고적조연, 문하유요, 문하적조)과 무관임이 분명한 무리(기리)가 존재했다. 요컨대 내군의 군과 현에도 치안을 담당하는 속리들이 지휘하는 군졸, 기리 등이 있었다.

후한시대 반란의 평정 또는 외적의 침입에 대처했던 사례를 정리한 결과 반란이나 외적의 침입이 발생하면 관할구역인 군태수·속국(도위)·호홍노중랑장·도요장군·오환교위·호강교위가 처리하였다(모두 49회). 그렇지 못할 경우 주(14회), 여러 주병이나 군병이 동원되었다(모두 14회). 이때 조정에서 무장이

二十八「百官志」5 亭里條 注引漢官儀，3624쪽. “漢官儀曰：‘民年二十三爲正，一歲以爲衛士，一歲爲材官騎士，習射御騎馳戰陣。八月，太守·都尉·令·長·相·丞·尉會都試，課殿最。’”

나 황제의 측근을 보내 주군병을 지휘한 예가 70회였다. 1군 또는 여러 군에 걸친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자사보다 조정에서 무장과 황제의 측근을 보낸 것은 중앙정부가 군사 지휘권을 통제·행사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황제의 측근인 광록훈과 소부 속관이 25회인 것은 대부분 반란 진압과 군대 통솔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낼 필요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만약 소부 속관인 어사 중승과 시어사를 감찰관으로 분류하고 자사 역시 군국과 현을 감시하는 감찰관이라고 하면 중앙과 지방의 감찰관 파견이 24회가 된다. 즉, 후한 황제들은 황제 측근인 광록훈 속리만큼이나 감찰관을 파견하여 전장의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사의 군대 통솔을 지방행정의 측면에서 이해했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사례를 종합하면, 자사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반란 토벌의 책임을 맡은 감찰관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광무제가 건무 6년(30) 군국 도위관을 폐지한 조치는 내지의 군도위를 없앤 것일 뿐, 군병까지 없앤 것은 아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군사제도와 관련지어 군도위 폐지 여부에 천착했지만, 광무제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와 군·국·현을 대거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군도위 폐지도 이러한 관제 및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³³⁸ 또 IV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한시대 군에 도적을 체포하는 등 치안을 유지하는 군리(郡吏)가 설치되었다. 이는 특히 내군에 군병이 없었고 군현의 치안은 지방 호족의 사병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일부 학설이 오류임을 입증한다. 비록 후한의 건국공신이 호족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후한은 지방의 치안을 지방 호족들에게 맡겼다고 단언할 수 없다.

338 이 문제에 분석하기 위해 「後漢 光武帝의 官制 개편과 그 배경(未刊)」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료

- 『漢書』(班固 撰, 顔師古 注, 1962, 北京: 中華書局).
- 『後漢書』(范曄 撰, 李賢 等注, 1965, 北京: 中華書局).
- 『三國志』(陳壽 撰, 裴松之 注, 1959, 北京: 中華書局).
- 『金陵梵刹志』(明 葛寅亮 編, 1936, (民國)濮大凡總校, 民國二十五年金山江天寺印本).
- 『漢碑集釋』(高文, 1997,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 『長沙東牌樓東漢簡牘』(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中國文物研究所 編, 2006, 北京: 文物出版社).

단행본

- 高敏, 1999,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 譚其驤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第二冊(秦·西漢·東漢時期), 北京: 地圖出版社.
- 楊鴻年, 2005, 『漢魏制度叢稿』,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 嚴耕望, 1961,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上編卷上 秦漢地方行政制度,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 中國軍事史編寫組 編, 1987, 『中國軍事史』 3(兵制), 北京: 解放軍出版社.
- 鎌田重雄, 1962, 『秦漢政治制度の研究』,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 渡邊信一郎, 2010,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 濱口重國, 1966,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重近啓樹, 1999, 『秦漢稅役體系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논문

- 李成珪, 2005, 「中華帝國의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歷史學報』 186.

- 高敏, 1999, 「東漢·魏·晉時期“州郡兵”制度的歷史演變」,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 王素, 2005, 「長沙東牌樓東漢簡牘選釋」, 『文物』 2005-12.
- , 2006, 「長沙東牌樓東漢簡牘概述」, 『長沙東牌樓東漢簡牘』, 北京: 文物出版社.
- 姚遠, 2016, 「東漢內郡縣法官法吏復原研究-以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爲核心-」, 『華東政法大學學報』 2016-4.
- 張亞偉, 2018.5, 「東漢初期軍制改革研究-以都尉體系的變化爲中心-」, 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崔京, 2020.6, 「五一廣場東漢簡牘所見官吏研究」, 鄭州大學碩士學位論文.
- 鎌田重雄, 1962, 「郡都尉」, 『秦漢政治制度の研究』,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 高村武幸, 2008, 「前漢西北邊境と關東の戍卒-居延漢簡にみえる兵士出身地の検討を通じて-」, 『漢代の地方官吏と地域社會』, 汲古書院.
- 大庭脩, 1952, 「材官攷-漢代の兵制の一斑について-」, 『龍谷史壇』 36.
- 渡邊信一郎, 2010a, 「漢代國家の社會的勞動編成」,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原載「漢代國家の社會的勞動編成」, 『銀州秦漢時代史の基本問題』, 汲古書院, 2001)
- , 2010b, 「漢代の財政と帝國編成」,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 濱口重國, 1966, 「光武帝的軍備縮小と其の影響」,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小林聰, 1991, 「後漢の軍事組織に關する一考察-郡國常備兵縮小後の代替兵力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9.
- 市川任三, 1968, 「前漢邊郡都尉考」, 『立正大學教養部紀』 2.
- 野口優, 2012, 「前漢邊郡都尉府の職掌と邊郡統治制度」, 『東洋史研究』 71-1.
- 鷹取祐司, 1997, 「漢代戍卒の徵發と就役地への移動」, 『古代文化』 49-10.
- 重近啓樹, 1999, 「兵制の研究-地方常備軍制を中心に-」, 『秦漢稅役體系の研究』, 東京: 汲古書院(原載「秦漢の兵制について-地方軍を中心として-」, 『人文論集: 靜岡大學人文社會科學部社會學科・言語文化學科研究報告』 36, 1985).

후한시대(後漢時代) 내군(內郡) 군병(郡兵)의 존재와 운용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도위관(都尉官) 폐지의 실상－

최진열

이 글에서는 광무제(光武帝) 건무 6년(30) 도위 폐지 이후 내군(內郡)에 군병(郡兵)이 없었다는 통설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내군의 군병이 각지의 반란 평정에 동원되었다는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한시대 지방군인 군병의 실태를 밝혔다.

먼저 변군(외군)에 도위와 장사(군승 대신 설치)를 설치했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도위가 설치되지 않은 내군과 도위가 설치된 외군(변군)의 지리적 범위를 규명하였다. 내군에 해당하는 자사부 관할 아래의 군은 사예교위에 7군, 예주에 6개 군국, 기주에 9개 군국, 연주에 8개 군국, 서주에 5개 군국, 청주에 6개 군국이었다. 여기에 최소 형주의 남양군이 내군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내군의 군국은 모두 42군이었다. 이 가운데 흉농군에만 도위를 설치했으므로 건무 6년(30) 도위가 폐지된 내군은 최소 41개 군국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강의 반란 때문에 내군인 경조윤·우부풍 2군에 도위를 설치하여 강(羌)의 반란과 침입에 대비하게 하였다. 즉, 내군에도 3군에 도위가 설치되었지만, 이는 군사상의 목적이었고 내군의 도위 폐지는 대체로 잘 지켜졌다. 일부 학자들은 도위(都尉) 및 재관·기사의 폐지, 도시의 폐지를 군병 폐지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도시는 입

추 또는 팔월에 태수·도위·령·장·상·승·위이가 재관·기사 등의 무예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인사고과였으므로 군병과 현병을 없애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도시를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군사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회를 없앴을 뿐, 군병과 현병을 없애거나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후한 중기 이후의 반란 토벌 사례를 분석하면 최대 내군 18개 군국에 군병이 존재하였다. 이는 도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내군의 군병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문하독도적과 기리, 포도사, 좌적조연, 우적조, 주병사, 권농적포연(또는 적포연), 추고적조연, 문하유요와 문하적조 등은 치안을 유지하는 군리·현리였거나 군사들을 지휘하는 무관이었으므로 이들이 지휘하는 군병 또는 현병을 지휘했음은 분명하다.

후한시대 반란의 평정 또는 외적의 침입에 대처했던 사례를 정리한 결과 반란이나 외적의 침입이 발생하면 관할구역인 군·속국(도위)·호흥노중랑장·도요장군·오환교위·호강교위가 처리하였다(모두 49회), 그렇지 못할 경우 주(14회), 여러 주병이나 군병이 동원되었다(모두 14회), 그러나 조정에서 무장이거나 황제의 측근을 보내 주군병을 지휘한 예가 70회였다. 1군 또는 여러 군에 걸친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자사보다 조정에서 무장과 황제의 측근을 보낸 것은 중앙정부가 군사 지휘권을 통제·행사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황제의 측근인 광록훈과 소부 속관 파견이 25회인 것은 대부분 반란 진압과 군대 통솔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낼 필요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만약 소부 속관인 어사중승과 시어사를 감찰관으로 분류하고 자사 역시 군국과 현을 감시하는 감찰관이라고 하면 중앙과 지방의 감찰관 파견이 24회가 된다. 즉, 후한 황제들은 황제 측근인 광록훈 속리만큼이나 감찰관을 파견하여 전장의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사의 군대 통솔을 지방행정의 측면에서 이해했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사례를 종합하면, 자사는 황제(皇帝)의 명령을 받고 반란 토벌의 책임을 맡은 감찰관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후한, 광무제, 군도위 폐지, 내군, 변군(외군), 내군의 군병

ABSTRACT

The Military Forces of Interior Commanderies(neijun) and Commanding Commanderies Troops in Later Han Dynasty: the Abolition of Interior Commandary Commadant in the Period of Emperor Guangwu's Reign and It's Paradox

Choi Jinyeoul

I proved that there *were still* military forces of interior commanderies after the abolition of interior commandary commadant in the period of Emperor Guangwu's reign. It was commonly accepted that the abolition of interior commandary commadant meant the dissolution of interior commanderies's troops. I attested that there *were still* military forces of interior commanderies enumerating facts in illustration of commandeering interior commanderies's troops to suppress many uprisings in many regions. I also analyzed the command of lalac troops called junbing.

I made a classification between military forces of interior commanderies and that of frontier commanderies based on historical examples of

appointing commandary commadants and commandary governor's aide(changshi). The interior commandaries were in the provinces such as national capital region called Sili, Yuzhou, Jizhou, Yanzhou, Xuzhou, Qingzhou, forty one commanderies in all. There were eighteen interior commanderies' troops commandeered by the government of Later Han Dynasty, which was the proof of their existence after the abolition of interior commandary commadant in the reign of the founder of Later Han Dynasty. There were also security and military officers commanding commandary or prefecture troops called wenxiadudaozei, mounted official, budaozhi, left zeicaoyuan, right zeicao, zhubingshi, quannongzeibuyuan, zeibuyuan, zuiguzeibuyuan, menxiayoujiao, menxia zeicao, which proved the existence of military forces in commandary or prefecture.

The chief commanders directing army to suppress the insurgent troops were forty nin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generals, or seventy royal inspectors appointed by the emperor. The latter was dispatched because they were believable confidants and the emperor wanted to control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military soldiers. I insisted that cishi, i.e., the provincial inspector in Later Han Dynasty was not local governor but the inspector or agent of central government appointed by the emperor. And it is not true that cishi acted as local provincial governor not provincial governor by commanding local troops and directing commandary or prefecture officials.

Keywords: Later Han Dynasty, Emperor Guangwu, the abolition of commandary commadant, interior commandery, frontier commandery, interior commanderies's troops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년 1행인가, 1년 3행인가

— 고려-명 관계에서 사행 빈도 문제

정동훈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 I. 문제의 소재
- II. 문헌 검토
- III. 홍무 연간 고려·조선-명 관계에서의 공기(貢期) 문제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문제의 소재

조선-명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명제가 고정관념처럼 굳게 자리 잡고 있다. 하나는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조선-명 관계가 한중관계 사상 가장 전형적인 조공관계였다는 것, 다른 하나는 공식적으로 보았을 때 조선-명 관계가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다는 것이다.¹ 필자는 지금까지 전자의 설명 방식이 가진 오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를 해왔으며,² 후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본 바 있다.³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명제를 정면에서 반박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사행 빈도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가장 전형적이고 안정적인 양국관계를 묘사하는 데에는 조선에서 명에 파견하는 조공 사절의 횟수를 세는 방법이 가장 널리 동원되었으며, 그러한 평가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곤 하였다. 위의 명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더욱 굳건하게 확인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

* 투고: 2022년 1월 11일, 심사 완료: 2022년 2월 10일, 게재 확정: 2022년 2월 16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4708)

- 1 전자는 全海宗, 후자는 Fairbank의 평가에 기댄 바가 크다. 全海宗, 1970, 「韓中朝貢關係 概觀」, 『韓中關係史』, 一潮閣, 50~51쪽; John K. Fairbank, 1968, "A Preliminary Framework,"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 11.
- 2 정동훈, 2019a, 「명과 주변국의 外交關係 수립 절차의 재구성-이른바 '明秩序' 논의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明清史研究』 51; 정동훈, 2019b, 「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 『역사와 현실』 113 참조.
- 3 鄭東勳, 2013, 「明代 前期 外國 使節의 身分證明 方式과 國家間 體系」, 『明清史研究』 40, 2013.

1) 양국 관계가 ‘특수한’ 책봉·조공관계의 모델로 흔히 운위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1년3사(使)’라는 빈번한 사행단의 파견이었다. 태종(인용자: 태조의 오타일 것) 시기는 3년에 한 번 파견하는 3년1사가 원칙이었다. 많은 사절을 파견하려 했던 조선은 1년에 3차례의 사행단 파견을 원했지만 홍무제는 조공 횟수를 외교적 발미로 삼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공 횟수가 정식으로 1년3사로 전환된 것은 정종(定宗) 시기인 1400년(정종2, 건문2)으로, 당시 명에서 ‘정난의 변’이 발생하자 건문제가 조선을 회유할 목적으로 1년3사를 승낙해 준 것이다. 이후 명과의 정기적 사행은 1년에 정조사(正朝使)와 성절사(聖節使)를 파견하고, 황태자가 있을 경우 천추사(千秋使)를 파견하는 1년3사로 정착되었다.

2) 명의 의사에 반하여 1년3사를 관철시킨 조선의 사례는 당시 명 질서의 대외관계에서 대단히 특수한 사례였다. 당시 유구(琉球)는 2년1공(貢), 안남과 섬라(暹羅)는 3년1공, 일본은 10년1공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조선의 1년3공이 특수하면서도 밀접한 성격을 띤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조선의 1년3사를 명조가 수용하고 묵인한 것은 명 역시 조선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⁴

위의 서술을 요약하면, 1) 조선은 명에 홍무(洪武) 연간(1368~1398)에는 3년 1사를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 건문(建文) 연간(1399~1402)에 1년 3사로 전환되었다. 2) 조선의 1년 3사는 다른 외국에 비해 훨씬 우대받은 조치였다는 것이다.

본론에서 상세히 논증하겠지만, 위와 같은 서술은 만력(萬曆)『대명회전(大明會典)』(이하 『만력회전(萬曆會典)』) 조공(朝貢) 조(條)의 단편적인 언급을 종합한 후 성급하게 내린 결론에 지나지 않는다. 즉 『대명회전』 편찬 무렵 명 측 당국자의 통찰 결과와 평가에 후대의 연구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속아서 생긴 오류

4 조영현, 2018, 「15세기 한중관계: 예제적-일원적 책봉·조공의 확립」,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37~38쪽.

라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명회전』과 같은 정서류(政書類)의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실제 개별 사실들을 ‘다른 방식으로 추상화’해서 종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앞선 논문에서 위의 1) 명제 가운데 일부를 바로잡은 바 있다. 즉 3년 1공은 1년 3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행위로 양자는 병행되었으며, 그리고 사실 3년 1공이 아니라 4년 1공이었다는 것이다.⁵ 이 글에서는 나머지 일부도 교정하고자 한다.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조선에서 명에 보내는 1년 3사는 양국 관계 초기부터 말까지, 고려 말 우왕 대와 조선 건국 초의 아주 일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바꿔 말하면 홍무제가 간헐적으로 3년 1사를 요구한 일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1년 3사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본론의 논의가 길어질 것이므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홍무 연간 고려·조선의 공기

기간	공기(貢期)	비고
공민왕 18(1369)~21(1372)	1년 3행	공민왕 21년 시월, 3년 1행 지시
공민왕 22(1373)~우왕 9(1383)	3년 1행	
우왕 10(1384)~태조 1(1392)	1년 3행	
태조 2(1393)	3년 1행	태조 2년 칠월, 일시적 3년 1행 지시
태조 3(1394)~태조 6(1397)	1년 3행	
태조 7(1398)	3년 1행	태조 6년 시월, 마지막 1년 1행 지시
정종 원년(1399)~17세기 초	1년 3행	

5 정동훈, 2022a, 「3년 1공인가, 4년 1공인가-고려-명 관계에서 歲貢 문제와 『명태조실록』의 조작-」, 『韓國史學報』 86.

II. 문헌 검토

1. ‘조공(朝貢)’과 ‘공기(貢期)’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오해

‘원래’ 조공이란 조근(朝覲)과 공방물(貢方物)을 결합한 개념으로, 서주(西周) 시대 봉건제도의 한 구성 요소였다고 한다. 즉 천자(天子)는 왕기(王畿)를 직할하고 나머지 영역은 동성(同姓)의 자제(子弟)나 친척, 이성(異姓)의 공신(功臣)을 제후(諸侯)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는데, 제후가 천자를 정기적으로 찾아뵈면서 지역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는 행위가 조공(朝貢)이었다. 『주례(周禮)』나 『상서(尚書)』 〈우공(禹貢)〉과 같은 경전에 따르면 주나라는 천하를 왕기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五服] 내지 아홉 개[九服]의 동심원으로 나누고, 안쪽 원부터 바깥쪽 원까지 일정한 시간마다 천자를 찾아와 공물을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예컨대 『상서』 〈우공〉에서는 천하를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 등 다섯 개의 동심원으로 나누고, 다시 그 각각을 둘에서 다섯까지 나누어 총 14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가장 안쪽의 전복(甸服)은 100리마다 부(賦)로써 총(總)·질(鎡)·갈(秭)·속(粟)·미(米)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⁶ 『주례』 〈대행인(大行人)〉은 방기(邦畿) 바깥에 후복(侯服)·전복(甸服)·남복(男服)·채복(采服)·위복(衛服)·요복(要服)은 각각 1~6년마다 한 번씩 알현하면서 특정한 공물을 바치도록,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번국(蕃國)은 한 세대마다 한 번씩 조현하도록 규정하였다.⁷ 이러한 주나라 이래의 조공 제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관계 전반에 적용되어 주변국의 군주들 역시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의무가 주어졌다고 한다.⁸

6 『尚書』 夏書 禹貢.

7 『周禮』 秋官司寇 下 大行人, 이상의 해석에 관해서는 『文獻通考』 권260, 封建 1, 〈上古至周封建之制〉 및 권261, 封建 2, 〈周封建之制〉 참조.

8 ‘전통적’ 朝貢의 개념에 대해서는 권선흥, 2004,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및 방향숙, 2005, 「古代 동아시아 冊封朝貢體制의 원형

그런데 우리가 ‘조공’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전통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사실 명 태조 홍무제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남경(南京)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일대의 지방 세력으로서 기호지세(騎虎之勢)를 타고 북경까지 장악해버린 명 정부는 아직 어떻게 천하를 경영할지, 적어도 대외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관한 뚜렷한 밑그림을 가지지 못하였다. 명 측이 내놓은 조치는, 적어도 후대에 구성된 전형적인 ‘조공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척 서툴고, 다소 우왕좌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던 중에 이미 한 세기 이상 몽골제국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던 고려가 제기한 질문, 그러면서 동시에 넉넉히 제시한 모범답안은 신생 제국의 당국자들에게 매우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고려의 제안에 응답해가면서 각종 제도와 관행들을 만들어나갔다.⁹ 그들이 행한 가장 결정적인 기여는, 이렇게 구성해낸 제도와 관행을 각종 정전을 뒤져 고대 이래의 것으로 분식(粉飾)한 것이었다.¹⁰

조공의 간격, 즉 공기(貢期)와 관련된 홍무제의 언설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주변국에 조공을 띄엄띄엄 하라는 황제의 명령은 홍무 5년(1372)에 처음 내려졌다. 정확히는 고려에서 너무 자주 사신을 파견해오는 데 불편함을 느낀 황제가 줄이라고 한 것이 그 시초였다. 그러나 이를 다른 주변국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명 측에서 창조, 혹은 개발해낸 논리가 바로 공기를 제정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홍무 5년(1372) 시월, 황제가 중서성(中書省)에 내린 명령이다.

A. 무릇 옛날에 제후는 천자에게 있어 매년 한 번 소빙(小聘)하고 3년에 한 번 대빙(大聘)하며, 구주(九州) 바깥의 번방(蕃邦)과 원국(遠國)은 오직 한 세대에 한 번만 조현할 뿐이었고, 그 바치는 것도 또한 너무 사치스러운 물건은 없었

과 변용」, 방항숙 외,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참조.

9 정동훈, 2019b, 앞의 글.

10 정동훈, 2019a, 앞의 글.

다. 지금 고려는 중국과 가까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경전과 역사를 알려 문물과 예악이 대략 중국과 비슷하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 마땅히 3년에 한 번 빙(聘)하는 예를 따르게 하거나, 또는 해마다 한 번 내방하게 하라. 혹 매년 한 번 오더라도 바치는 방물(方物)은 다만 생산되는 포 10필이면 족할 것이며, 너무 많지 않게 하도록 하라. 중서성(中書省)은 짐의 뜻으로 그들을 깨우쳐주어라. 점성(占城)·안남(安南)·서양쇄리(西洋瑣里)·조와(爪哇)·발니(渤尼)·삼불제(三佛齊)·섬라국(暹羅斛)·진랍(眞臘) 등의 새로 귀부한 먼 나라들로서 무릇 내조한 자들에게 또한 짐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라.¹¹

그는 외국들에 ‘3년 1공’과 같이 공기를 설정하면서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첫째, 공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꾸며냈다. 둘째, 이 조치는 고전(古典) 속의 이상적인 천하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러니까 천하를 마치 자신이 북극성처럼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제후들이 수많은 별자리와 같이 벌여 선 형태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때때로 방문하여 선물을 건네는 행위를 경전 속의 ‘조공’과 같은 것으로 분식함으로써 자신이 중국의 전통을 재현해낸 것처럼 묘사하였던 것이다.

위의 첫 언설을 시작으로 명은 주변국과 새로 관계를 맺으면서, 간혹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3년에 한 번이니 10년에 한 번이니 하는 식으로 공기를 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개개의 사실을 종합하여, 명대 중·후기에 편찬된 각종 정서(政書)에는 명이 자신을 둘러싼 외국(外國)·외夷(外夷)마다 각각

11 『明太祖實錄』 권76, 홍무 5년 10월 甲午. “夫古者, 諸侯之於天子, 比年一小聘, 三年一大聘, 若九州之外, 蕃邦遠國, 則惟世見而已, 其所貢獻, 亦無過侈之物. 今高麗去中國稍近, 人知經史, 文物禮樂, 略似中國, 非他邦之比. 宜令遵三年一聘之禮. 或比年一來, 所貢方物, 止以所產之布十四足矣, 毋令過多. 中書其以朕意諭之. 占城·安南·西洋瑣里·爪哇·渤尼·三佛齊·暹羅斛·眞臘等國, 新附遠邦, 凡來朝者, 亦明告以朕意.”

조공의 간격을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¹² 자주 조공을 할수록 그들과 명의 관계는 긴밀한 것으로, 그들은 명에 대해 공순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명의 교화에 익숙하여 명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¹³

건국 초기의 명은 각종 관제(官制)와 예제(禮制) 등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정비해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당(唐)·송(宋)의 제도나 몽골제국의 전례 등 가운데서 이것저것을 뽑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특정 제도를 어느 정도 정리한 시점에서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것을 『주례』와 같은 중국 고전에서 제시한 이념형과 결부시키려는 언설을 구사하였다. 그러한 관념, 혹은 지향의 연장선상에서 현실의 대외관계 역시 주나라 때의 그것을 복원해내는 방식으로 조직하고 싶어 했던, 혹은 그러한 모양을 취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인식은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공기 역시 마찬가지로, 명이 공기를 설정한 것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주나라 때의 봉건제의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식의 논리가 동원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기가 짧을수록 중국과 가깝다”는 선험적 관념을 낳는 거대한 배경 지식, 혹은 오해로 이어지고 굳어졌다.¹⁴

2. 3년 1행에서 1년 3행으로의 전환은 사실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보자. 과연 홍무(洪武) 연간(1368~1398)의 3년 1행이 건문(建文) 연간(1399~1402)에 1년 3행으로 전환되었는가.

필자가 판단하기에 위와 같은 서술은 조선-명 관계의 외교 관행을 정리하

12 예컨대 『萬曆會典』 권108, 禮部 66, 主客清吏司, 〈朝貢通例〉

13 John K. Fairbank, 앞의 글, 1968, pp. 2~3; 권선흥, 2004, 앞의 책, 76~77쪽 등.

14 이상에 대해서는 정동훈, 2019b, 앞의 글, 360~365쪽 참조.

여 서술한 가장 권위있는 자료인 『대명회전』의 설명을 그대로 따른 데서 비롯된 오류인 것 같다. 우선 정덕(正德) 4년(1509)에 편찬된 『대명회전』(이하 『정덕회전(正德會典)』)의 다음과 같은 기술을 보자.¹⁵

B-1) (洪武) 五年, 命三歲或一歲遣使朝貢, …

B-2) 永樂以來, 每歲聖節·正旦·皇太子千秋節, 皆遣使奉表朝賀貢方物.

B-3) 其餘慶·慰·謝恩等項, 皆無常期.

다음으로 만력 15년(1587)에 편찬된 『만력회전』에서 공기에 관한 언급만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¹⁶

C-1) (洪武) 五年, 以高麗貢使煩數, 諭令三歲或歲一來.

C-2) (영락제가 태종에게 誥命과 印章을 사여한 사안 서술) 自後, 每歲聖節·正旦【嘉靖十年, 外夷朝正旦者, 俱改冬至】·皇太子千秋節, 皆遣使, 奉表朝賀貢方物.

C-3) 其餘慶·慰·謝恩, 無常期.

C-4) 其歲時朝貢, 視諸國最爲恭愼.

두 서술을 비교해보자. 우선 B-1)과 C-1)은 같은 내용으로, 앞서 살펴본 홍무 5년에 3년, 혹은 1년에 한 번 사신을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전한다. 2)는 “성절(聖節)·정단(正旦)·천추절(千秋節)”에 대한 내용으로 B)에서는 그 시점을 “영락 이래”로 C)에서는 영락제가 태종에게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사여한 태종 3년(1403),¹⁷ 즉 영락 원년 이후의 어느 때로 표현하고 있다

15 『正德會典』 권97, 禮部 56, 朝貢 2, 朝鮮國.

16 『萬曆會典』 권105, 禮部 63, 朝貢 1, 朝鮮國.

17 『太宗實錄』 권5, 3년 4월 甲寅.

는 점에서 약간 다르지만, 역시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좋다. 다만 C)에서는 세주(細註)로 가정(嘉靖) 10년(1531)에 정단을 동지(冬至)로 수정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3)은 “정해진 기간이 없는[無常期]”,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비정기사절’로 분류하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C-4)는 B)에는 없는 서술인데, 『만력회전』 편찬 무렵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조선의 세시조공(歲時朝貢)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공신(恭愼)하다”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구절은 앞서 서론에서 제기한, 공식적 차원에서 명대의 대외관계 중 조선이 가장 안정적인 모델이었다는 통념을 낳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른바 공기, 혹은 조공 횟수가 제시되고 있는 점 역시 현대의 연구와 맥이 닿아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위 구절을 그대로 해석하여 홍무 5년에 3년 1행으로 정해졌던 것이, 건문 연간(1399~1402) 이후 1년 3행으로 변화, 혹은 확정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아주 이른 시기의 연구부터 이러한 해석이 시작되었는데,¹⁸ 그것이 확대된 데에는 박원호의 연구가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홍무 5년 이래 명 측의 3년 1행 요구를 언급한 후 “태조 6년(1397) 이래의 ‘3년 1사’가 정종 2년부터 ‘1년 3사’로 다시 회복”되었다고 서술하였다¹⁹라고 서술하였다.²⁰ 후술하겠지만 위 서술은 엄밀하게 말해서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이 이를 인용하여 반복,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점점 심화되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
- 18 申奭鎬, 1959, 「朝鮮王朝 開國 當時의 對明關係」, 『國史上的 諸問題』 1, 國史編纂委員會, 121~125쪽; 李鉉淙, 1981, 「對明關係」, 國史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9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國史편찬위원회, 316~318쪽.
- 19 朴元燾, 1995, 「명과의 관계」, 國史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2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295쪽; 朴元燾,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93쪽에 재수록.
- 20 한편 朴元燾, 2002, 위의 책, 294쪽에서는 중종 26년(1531) 이후 冬至使가 추가되어 1년 4사였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종 26년(1531) 이후 기존의 賀正使가 賀冬至使로 대체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具都暎, 2013, 「조선 전기 對明 陸路使行의 형태와 실상」, 『震檀學報』 117 및 구병진, 2014, 「조선의 청 황제 성절 축하와 건릉 칠순 ‘진하 외교」, 『한국문화』 68, 218~220쪽 참조.

D-1) 朝明關係의 제도적 정상화는 一年三使 관행의 회복과 誥命人臣問題의 해결로써 이루어졌다. 명太祖는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三年一使, 즉 3년에 한 번씩만 사신을 파견할 것과 聖節과 千秋節의 表箋을 면제할 것을 제의하였다. … 이후 명太祖는 신흥 조선에 대해서도 三年一貢을 요구하였다. … 定宗 2년(1400)에 조선은 성절사와 하정사를 같은 해에 거듭 파견함으로써 조선의 오랜 소망이었던 1년3使 문제가 해결되었다.²¹

D-2) 조공의 기간은 일정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자국과의 친소여부, 자국문화의 수용정도 또는 지리적 원근 등에 따라 정한 것이었다. 명청 양대의 조공기간에 대한 규정은 일부 변동도 있었지만, 대체로 일치하였다. 중국과 가장 친밀하였던 조선은 1년 1(또는 3-4)공, 다음으로 유구는 2년 1공, 안남과 태국은 각각 2년 1공과 3년 1공, 소록은 5년 1공, 라오스와 미얀마는 10년 1공이었고, 서양국가들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부정기로 정하였다.

*주석) 조선이 건국되면서 1년 3공을 요구하였으나, 명은 3년 1공을 고수하며 조선사절의 입국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정종(定宗) 2년(1400)에 하정사(賀正使)·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의 3사(使)로 파견하는 1년 3공이 허락되었고, 후일 중종(中宗) 26년(1531)부터 동지사(冬至使)가 추가되어 1년 4공이 되었다.²²

D-3)太祖代에는 3년에 한 번 파견하는 3년 1使가 원칙이었다. 많은 사절을 파견하려 했던 조선은 1년 3使를 원했지만 洪武帝는 조공횟수를 외교적 빌미로 삼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조공횟수가 정식으로 1년 3사로 전환된 것은 定宗代부터였다. 당시 明의 藩王이 반란을 일으키자 皇帝였던 建文帝가 조선을 회유할 목적으로 1년 3사를 승낙해 준 것이다.²³

21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Ⅱ, 아르케, 575~576쪽.

22 권선홍, 2004, 앞의 책, 76쪽.

실제로 홍무 연간의 양국관계를 훑어보면, 홍무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려 사절의 입경을 금지하는 조치를 반복해서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려 측에서는 곳곳이 1년 세 차례씩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는 상당 기간 동안 관철되었다. 애초에 고려-명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 3사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정종 2년(1400)이라는 특정 시점에 3년 1공이 1년 3사로 ‘변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위 『대명회전』에 기술된 구절의 해석을 두고서,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며 오해가 오해를 낳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존 연구는 정기적 사신 왕래가 영락 이후 B-1); C-1)에서 B-2); C-2)로 전환되었으며(3년 1공 → 1년 3공) 비정기적 사신 왕래, 즉 B-3); C-3)은 계속 이어졌다는 식으로 해석해왔다.

그렇다면 실제로 홍무 연간 고려·조선-명 관계에서 1년 3사의 관행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을까. 장을 바꾸어 상세하게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Ⅲ. 홍무 연간 고려·조선-명 관계에서의 공기(貢期) 문제

Ⅲ장에서는 홍무 연간에 고려·조선에서 1년 3행, 즉 정기적 사절인 하천추절사(賀千秋節使), 하성절사(賀聖節使), 하정사(賀正使)를 파견한 현황과 그를 둘러싼 양국 관계의 줄다리를 연대순으로 살펴보겠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이 30년 동안 고려·조선에서 명에 파견한 정기적 사절단의 목록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23 具都嘆, 2013, 앞의 글, 63쪽.

〈표 2〉 홍무 연간 고려·조선의 정기적 사신 목록

	하천추절사*	하성절사**	하정사***
홍무 1(1368, 공민왕 17)	—	—	—
홍무 2(1369, 공민왕 18)	8.6. [†] 金甲雨	8.6. 成准得	8.6. 張子溫
홍무 3(1370, 공민왕 19)	侯長壽	8.18. 尹控	9.16. 權鈞
홍무 4(1371, 공민왕 20)	7.25. 洪仲元	7.25. 姜仲祥	(7.25. 鄭思道) ^{††} 11.26. 韓邦彥
홍무 5(1372, 공민왕 21)	7.26. 林完	7.26. 金湑	
홍무 6(1373, 공민왕 22)	(7.5. 周英贊)	(6.21. 金庾)	(6.21. 鄭元庇) (10.17. 周英贊) (11.28. 張子溫) 7년 2.28. 鄭元庇
홍무 7(1374, 공민왕 23)	—	—	—
홍무 8(1375, 우왕 1)	—	—	(12. 金寶生) 8년 1. 金寶生
홍무 9(1376, 우왕 2)	—	—	—
홍무 10(1377, 우왕 3)	—	—	—
홍무 11(1378, 우왕 4)	—	—	10. 沈德符
홍무 12(1379, 우왕 5)	—	—	—
홍무 13(1380, 우왕 6)	—	—	—
홍무 14(1381, 우왕 7)	—	—	(10. 金庾)
홍무 15(1382, 우왕 8)	—	—	(11. 鄭夢周)
홍무 16(1383, 우왕 9)	8. 李子庸	8. 金庾	11. 洪尙載
홍무 17(1384, 우왕 10)	7. 李天禩	7. 鄭夢周	윤10. 趙琳
홍무 18(1385, 우왕 11)	—	—	10. 沈德符
홍무 19(1386, 우왕 12)	6. 柳和	6. 安翊	9. 金湊
홍무 20(1387, 우왕 13)	윤6. 尹就	윤6. 侯長壽	10. 李玖
홍무 21(1388, 우왕 14)	—	—	10. 李穡
홍무 22(1389, 공양왕 1)	6. 皇甫琳	6. 安宗源	10. 裴克廉
홍무 23(1390, 공양왕 2)	6.15. 韓尙質	6.15. 鄭道傳	9.29. 金南得

	하천추절사*	하성절사**	하정사***
홍무 24(1391, 공양왕 3)	6.21. 金立堅	6.21. 趙浚	9.22. 王奭
홍무 25(1392, 공양왕 4, 태조 1)	(6.17. 趙仁瓊)	6.17. 慶儀	11.8. 盧嵩
홍무 26(1393, 태조 2)	(9.1. 朴永忠)	(6.17. 金立堅)	(10.13. 慶儀)
홍무 27(1394, 태조 3)	9.4. 鄭南晉	6.19. 趙琳	10.9. 閔霽
홍무 28(1395, 태조 4)	8.28. 張子忠	6.13. 金立堅	10.10. 柳珣
홍무 29(1396, 태조 5)	8.25. 金積善	6.14. 趙胖	10.3. 安翊
홍무 30(1397, 태조 6)	8.14. 柳灝	6.10. 鄭允輔	(9.15. 趙胖)
홍무 31(1398, 태조 7)	—	—	—

* 하천추절사: 懿文太子 朱標(홍무제의 장남, 1355~1392)의 생일은 구월 5일

建文帝(의문태자의 장남, 1377~1402)의 생일은 십일월 5일

** 하성절사: 洪武帝(1328~1398)의 생일은 구월 18일

*** 하정사: 고려에서 연말에 파견된 賀正使는 이듬해 正卯의 하정사임.

† 8.6. 등: 숫자는 『고려사』에 기재된 파견 월일을 뜻함.

‡ (7.25. 鄭思道) 등: 괄호로 표시한 것은 사행에 실패한 경우를 뜻함.

1. 공민왕 18년(1369), 1년 3행의 시작

홍무 2년(1369, 공민왕 18) 사월, 명 건국을 알리는 사절단이 개경을 방문했다.²⁴ 고려는 12일 만에 건국을 축하하기 위한 사신단을 파견하였다.²⁵ 그리고 그로부터 석 달 후 세 그룹의 사절단을 한꺼번에 임명하였다. 각각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하성절사,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하천추절사, 이듬해 정단을 축하하는 하정사 등이었다.²⁶ 그리고 하성절사와 하천추절사는 그해 구월 15일, 황제의 생일 사흘 전에, 하정사(賀正使)는 십이월 13일에 각각 남경에 도착하였다.²⁷

24 『高麗史』 권41, 공민왕 18년 4월 壬辰.

25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5월 甲辰.

26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8월 戊辰.

27 『명태조실록』 권45, 홍무 2년 9월 丙午; 권47, 홍무 2년 12월 甲戌.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첫해에 곧바로 1년에 세 번의 정기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다.

물론 명의 건국 통보 직후 고려가 명 측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는 별도로 상세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²⁸ 또한 굳이 1년에 여러 차례 사절을 파견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고려는 왜 관계를 개시하자마자 명에 세 그룹의 사절단을 파견했을까? 필자가 생각하는 정답 역시 단순하다. 고려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명의 첫 번째 사신이 개경에 도착하기 한 달 전에도 공민왕은 몽골제국 황제 토곤 테무르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하였다.²⁹ 바로 전년인 공민왕 17년(1368)에도 황태자 아우시리다라의 생일과 이듬해인 지정(至正) 29년(1369)의 정단을 축하하는 사절을³⁰ 매년 두 차례, 즉 하정사와 하성절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일은 이미 원종 대인 1260년대에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후 한 세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었다.³¹ 특별히 언급할 만한 점은 하성절사와 하정사 외에 하천추절사가 추가된 시점이다. 이전에도 황태자 생일 축하 사절을 파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고정된 것은 공민왕 대 이후, 더 정확히는 기황후(奇皇后)의 아들인 아우시리다라가 황태자가 된 이후

28 이 문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명미, 2014, 「恭愍王代 후반 親明정책의 한 배경」, 『사학연구』 113, 86쪽 참조.

29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3월 甲寅. 그러나 이미 전년 가을에 大都가 함락되었고, 당시 토곤 테무르는 上都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의 사행은 황제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30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10월 癸酉; 11월 甲子.

31 鄭東勳, 2016, 「高麗時代 外交文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48~349쪽의 <표 3-2-1> 원종대 賀正使 및 賀聖節使 파견 일시; 401쪽의 <표 3-4-1> 충선왕~충정왕대 賀正使 파견 일시; 402쪽의 <표 3-4-2> 충렬왕~충정왕대 賀聖節使 파견 일시; 433~434쪽의 <표 3-5-1> 공민왕대 정례적 사신 파견 일시 등을 참조.

부터였다.³²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에서 중원 왕조에 매년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것은 고려-거란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현종 13년(1022) 이후 고려는 매년 거란에 하성절사, 하정사, 그리고 거란에서 고려국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을 파견한 데 대한 사은사 등 세 차례씩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 관행은 고려-금 관계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었다.³³ 이러한 정기적 사신 파견은 한중관계 사상 고려-거란 관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것은 이후 900년 가까이 그대로 지속되었다.³⁴

요컨대 고려는 그 직전까지 원과 상대했던 그대로, 명에 하성절사, 하친추절사, 하정사 세 사신단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홍무 5년까지는 명에서도 여기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2. 공민왕 21년(1372), 첫 번째 ‘3년 1행’ 지시

초기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년 세 차례씩 정기 사절을 파견하던 관행에 처음 제동이 걸린 것은 공민왕 21년(1372, 홍무 5)의 일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매우 상세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³⁵ 이 글에서는 논지 전개의 흐름을 위해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도록 하겠다.

홍무제의 입에서 ‘3년에 한 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시점은 공민왕 21년 시월 23일었다. 황제가 고려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시점이었다. 공민왕

32 鄭東勳, 2016, 위의 글, 432~433쪽.

33 정동훈, 2018a, 「고려-거란 관계에서 세 충위의 소통 구조」, 『역사와 현실』 107, 41~43쪽.

34 鄭東勳, 2018b, 「고려-거란·금 관계에서 ‘朝貢’의 의미」, 『震檀學報』 131, 64~70쪽.

35 丘凡眞·鄭東勳, 2021a,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사행 빈도 문제-‘3년 1행’과 『명태조실록』의 기록 조작-」, 『東洋史學研究』 157, 197~203쪽 참조.

20년(1371, 홍무 4)에는 한 차례, 명목 기준으로 두 팀밖에 오지 않았던 고려 사신이,³⁶ 공민왕 21년에는 시월까지 무려 여덟 팀이나 남경을 방문하였다. 더구나 사신단의 규모도 문제였다. 황제는 고려 사신단이 200~300명이나 된다고 언급하였는데,³⁷ 실제 사신단의 조난 기록을 추적해보면 적어도 100명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⁸ 마침 요동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던 황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자주 남경을 드나드는 행위가 명의 군사 행동을 염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다.³⁹ 황제의 발언을 직접 들어 보자.

가-1) 그[공민왕: 역자]로 하여금 3년에 한 번 내빙(來聘)하는 예에 따르게 하라.
혹 (그가) 바란다면 한 세대에 한 번 조현해도 좋다고 하라.⁴⁰

가-2) 현재 고려는 중국으로부터 조금 가깝고, 사람들도경전과 역사를 알며, 문물과 예악도 중국과 대략 비슷하니 다른 나라에 견줄 바가 아니다. 마땅히 3년에 한 번 내빙하는 예에 따르게 하거나, 또는 해마다 한 번 내빙하게 하라.⁴¹

36 『명태조실록』 권68, 홍무 4년 9월 甲寅. 같은 해 칠월에 고려에서는 賀正使·賀聖節使·賀千秋節使를 동시에 파견하였으나, 하정사 鄭思道는 喬桐島에서 배가 난파되어 남경에 이르지 못하였다. 『고려사』 권43, 공민왕 20년 7월 乙亥; 11월 乙亥.

37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7월 壬子. “這二三百人送盤纏, 來往取信.”

38 『명태조실록』 권75, 홍무 5년 8월 癸卯;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11월 壬寅.

39 홍무 5년 당시 황제가 고려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쌓아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丘凡眞·鄭東勳, 2021b, 「홍무 5년(1372) 명 태조의 고려에 대한 의심과 ‘힐난 성지」, 『明清史研究』 55 참조.

40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7월 壬子. “敎他依著三年一聘之禮, 或欲每世一見亦可.”

41 『명태조실록』 권76, 홍무 5년 시월 甲午(21일). “今高麗去中國稍近, 人知經史, 文物禮樂, 略似中國, 非他邦之比. 宜令遵三年一聘之禮, 或比年一來.”

가-1)은 『고려사』 공민왕 세가(世家)에 인용된 황제의 선유성지(宣諭聖旨)로, 이 발언이 홍무 5년(1372) 시월 23일에 있었다고 하였다. 가-2)는 『명태조실록(明太祖實錄)』 홍무 5년 시월 21일 자 기사에 수록된 황제의 발언이다. 이들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상 같은 발언임은 분명하다. 다만 핵심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가-1)에서는 ‘3년에 한 번’을 기본으로 하되, 고려가 원한다면 ‘한 세대에 한 번 조현[每世一見]’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2)는 ‘3년에 한 번’이 기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또는 ‘해마다 한 번 내빙(來聘)[比年一來]’해도 좋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한다. 기존 연구에서 상세히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2)의 “비년일래(比年一來)”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다. 실제로는 고려가 파견한 적이 없는 ‘홍무 7년(1374) 하정사’와 ‘홍무 8년(1375) 하정사’를 조작해서 끼워넣으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황제의 발언을 취지와 어긋나게 고쳐 기록한 것이다.⁴²

문제는 가-2) 『명태조실록』의 조작된 기사가 훗날 편찬된 『대명회전』에 그대로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정덕회전』[B-1]과 『만력회전』[C-1] 모두 홍무 5년 지시의 핵심을 “3년 혹은 1년[三歲或一歲]”으로 요약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가-2)의 조작된 기사에 근거했던 데다가, 그래야만 앞으로 살펴볼 홍무 연간 고려의 정기 사행이 때로는 3년에 한 번, 때로는 1년에 세 번으로 들쭉날쭉한 현상을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홍무 5년에 황제가 고려의 공기에 대해 내린 명령은 3년에 한 번으로 명확했으며, 이와 관련된 『대명회전』의 언급은 조작된 기록에 근거한 오류이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이라면 그 한 번은 정확히 언제가 되어야 할 것인가. 위의 발언 가)가 있기 두 달여 전인 홍무 5년 팔월 4일, 황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생일은 부모께서 고생하신 날이다. 짐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매년 이날이 되면 슬픔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 축

42 丘凡眞·鄭東勳, 2021a, 앞의 글, 214~216쪽.

하 의례를 폐지하라고 하였다.⁴³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으니, 황태자의 생일이야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생일 전날에도 의례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재차 확인하였고, 이때 축하 사절로 와 있었던 고려 사절단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여 앞으로는 축하 사절을 보내지 말라고 알렸다.⁴⁴

이 사실은 이듬해인 공민왕 22년(1373) 칠월에 사신 강인유(姜仁裕) 일행이 귀환하면서 가지고 온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인용된 성지에 좀 더 자세히 실려 있다.

나) 지금 천하의 각 아문에서 무릇 나의 생일 및 정조·동지를 만나면 모두 표문을 올려오고 있으니 예가 매우 번잡하다. 동지는 옛날에는 축하하는 예가 없었으니 금후로는 표문을 올릴 필요가 없다. 역대의 제왕은 생일을 차리지 않았는데 다만 당 현종(玄宗) 때부터 시작되었다. 금후로 나의 생일에는 표문을 올리지 말고, 동궁(東宮)의 생일에도 또한 전문(箋文)을 올리지 말라. 오직 정조는 한 해의 시작이니 각처에서 올린 표문을 모아서 올리도록 하라.⁴⁵

위 성지는 고려에 대해서가 아니라 천하의 각 아문에 내린 명령이었을 것인데, ‘3년 1행’ 문제와 관련이 있어 예부에서 고려 측에도 전달한 것이다. 즉 3년에 한 번씩 정조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오라는 뜻이었다.

43 『명태조실록』 권75, 홍무 5년 8월 庚辰. “生辰, 父母劬勞之日. 朕皇考·皇妣蚤逝, 每於是日, 不勝悲悼.”

44 『명태조실록』 권76, 홍무 5년 9월 壬戌.

45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7월 壬子. “如今, 天下各衙門, 凡遇我生日及正朝·冬至, 都進將表文來, 好生禮煩. 冬至, 古無賀禮, 今後不必進表. 歷代帝王, 不曾做生日, 只起自唐玄宗. 今後我生日, 不要進表, 東宮生日, 亦不要進箋. 唯正朝, 乃一歲之首, 各處所進表文, 類進將來.”

3. 공민왕 22년(1373)~우왕 19년(1383), 고려의 3년 1행

홍무제의 첫 번째 ‘3년 1행’ 지시를 받고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역시 선행 연구에서 상세히 밝혔으므로,⁴⁶ 이 글의 취지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겠다.

우선 공민왕 22년(1373) 칠월 13일에 위의 가-1)과 나), 즉 3년 1행 지시가 전달되자, 고려는 이미 임명을 마쳤던 3사⁴⁷ 가운데 하성절사와 하천주절사 파견을 중지하고 칠월 25일, 홍무 7년의 정단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이하 ‘홍무 7년 하정사’)로 정원비(鄭元庇)만 파견하기로 했다. 3년 1행 지시를 어기는 것일 수 있었으나, 홍무제의 거친 분노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파견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를 비롯해서 이후 두 차례 더 시도했던 하정사 파견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사행로 문제 때문이었다.⁴⁸ 최종적으로는 이듬해인 공민왕 23년(1374) 2월에 다시 정원비를 해로로 파견하였고,⁴⁹ 이때의 사행은 성공하였으나, 남경에 도착한 것은 그해 오월 7일이었다.⁵⁰ 새해 축하 사절이 넉 달 이상 지각한 셈이었으나 황제는 굳이 문제를 삼지 않고 그들을 곧바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월 18일에 귀환하면서 황제의 수조(手詔)와 중서성의 자문을 가지고 왔다. 수조 가운데 공기와 관련된 언급은 뚜렷하게 하지 않았지만, 두 해 전에 내린 3년 1행 명령을 철회할 뜻이 없음은 분명했다. 이어지는 중서성의 자문은 더 명확하게 고려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자문에서는 앞서 발령한, 3년에 한 번만 오라는 성지를 재차 인용한 후, “(이에 대해서는) 이

46 丘凡眞·鄭東勳, 2021a, 앞의 글, 204~214쪽.

47 『고려사』 세가에는 공민왕 22년 유월 21일에 하성절사와 하정사, 칠월 5일에 하천주절사를 파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吏文』 권2, 〈請通朝貢道路咨〉에 따르면 3사의 파견 결정은 모두 유월 20일이었다고 한다.

48 홍무 6년 하반기부터 홍무 7년 초까지의 ‘홍무 7년 하정사’ 파견과 사행로 문제에 얽힌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구범진·정동훈, 2021c,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사행로 문제-요동 경유 사행로의 개통 과정-」, 『한국문화』 96 참조.

49 여기까지의 경과는 『吏文』 권2, 〈請通朝貢道路咨〉 참조.

50 『명태조실록』 권89, 홍무 7년 5월 壬申.

미 고려에 전한 바 있었는데, … 성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금후 마땅히 삼가 받든 성지의 뜻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조공하십시오”라고 하였다.⁵¹ 정확하게 이 명령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공민왕 23년에는 3사 모두 파견하지 않았다. 그해 구월에 공민왕이 시해되고, 십일월에 귀환하던 명 사신이 살해당하는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해 연말에 파견했어야 할 하정사는 차정되지도, 출발하지도 못했다.

그 이듬해인 우왕 원년(1375, 홍무 8) 십이월에는 김보생(金寶生)을 하정사로 삼아 파견하였다.⁵² 앞서 ‘홍무 7년 하정사’ 파견이 황제의 지시를 어긴 것이었다고 보면, 공민왕 21년 연말에 성사시킨 ‘홍무 6년 하정사’를 기점으로 삼아 3년 만인 ‘홍무 9년 하정사’를 파견할 차례라고 고려 조정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교동도(喬桐島)에서 조난당했다. 곧바로 우왕 2년(1376, 홍무 9) 정월에 김보생을 재차 파견하였는데,⁵³ 그의 귀국 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남경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 전후에 파견되었던 고려 사절단들과 마찬가지로 한동안 억류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 이후 고려와 북원(北元)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고려와 명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고려는 3년 1행만큼은 유지하고 있었다. 고려의 사신 파견이 일단 재개된 것은 우왕 4년(1378, 홍무 11)의 일로, 전년 십이월에 황제가 그동안 억류해두었던 고려 사신단의 일부를 방환한 데 대한

51 『고려사』 권44, 공민왕 23년 6월 壬子. “已經行移本國, … 似有未喻旨意, … 今後, 合宜欽依聖旨事意, 三年一貢.”

이 부분은 고려에서 ‘홍무 7년 하정사’ 파견을 강행하면서, 황제의 발언 가운데 “如今連三年, 依舊累來.” 부분을 “從今連三年, 依舊累來.”로 고쳐 인용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제는 그때까지 3년 동안 여러 번 온 사실을 환기하며 곧바로 3년 1행을 지시한 것인데, 고려는 ‘如今’을 ‘從今’으로 고치면서, 황제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오독’하였던 것이다(丘凡眞·鄭東勳, 2021a, 앞의 글, 206~207쪽). 중서성의 자문은 고려에서 한 글자를 고쳐 인용한 것을 두고,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52 『고려사』 권133, 우왕 원년 11월.

53 『고려사』 권133, 우왕 2년 정월.

사는사가 그들이었다. 그리고 그다음이 그해 시월 파견된 하정사 심덕부(沈德符)였다.⁵⁴ ‘홍무 12년 하정사’였으니, ‘홍무 9년 하정사’ 김보생 이후 정확히 3년 만이었다.

그리고 그다음 3년 주기에 맞추어, 우왕 7년(1381, 홍무 14) 시월에는 김유(金庠)가 하정사로 파견되었다.⁵⁵ 이 무렵 양국 사이의 최대 현안은 세공(歲貢) 문제였다. 홍무제는 외교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고려에 매년 막대한 양의 금과 은, 포와 말 등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고려는 이를 이행하느라 무진 애를 먹고 있었다. 성심껏 마련해서 보낸 공물을 명 측은 요구한 수량에 맞지 않는다 하여 거듭 퇴짜를 놓고 있었다.⁵⁶ ‘홍무 15년 하정사’ 김유(金庠) 역시 요동에서 막혀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⁵⁷

그러나 서서히 물꼬가 트인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혹은 성공하지 못한 ‘홍무 15년 하정사’를 대체하겠다는 뜻이었을까? 고려는 우왕 8년(1382, 홍무 15) 십일월, 전년에 이어 연달아 하정사를 파견하였다. 그 임무를 맡은 것은 정몽주(鄭夢周)였다.⁵⁸ 정몽주가 요동에 이르자 그 책임자들은 이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였고,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했다.

라) 경들[요동도지휘사 반경(潘敬)과 엽왕(葉旺): 역자]이 고려의 <하정표(賀正表)>를 봉해서 보내온 것을 보니 설달 중순에야 그 사신들이 비로소 요동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찌 기한에 맞추어 경사에 도착할 수 있었겠는가. ... 이제 그들을 깨우쳐 하례의 기한을 지났으니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며 그 죄를 분명하게 해주도록 하라.⁵⁹

54 『고려사』 권133, 우왕 3년 12월; 4년 3월; 4년 10월.

55 『고려사』 권134, 우왕 7년 10월.

56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동훈, 2022b, 「말 100필인가, 1,000필인가-고려-명 관계에서 세공 문제-」, 『한국중세사연구』 68 참조.

57 『고려사』 권134, 우왕 7년 12월.

58 『고려사』 권134, 우왕 8년 11월.

즉 하정사 정몽주 일행을 가로막은 이유가 3년에 한 번이라는 횡수를 넘겨서가 아니라, 정월 초하루 이전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⁰

마침 우왕 6년(1380, 홍무 13) 황제는 자신의 생일잔치를 다시 열기 시작했다.⁶¹ 그해 칠월에 성절 하례를 부활해달라는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외관(外官)들은 이듬해부터 하표(賀表)를 올리도록 하였다.⁶² 적어도 “나의 생일에 표문을 올리지 말라”는 명령[나]은 철회된 것이었다. 게다가 고려에서 주기를 어겨가며 ‘홍무 16년 하정사’를 파견했으나, 적어도 공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러자 이듬해인 우왕 9년(1383, 홍무 16) 고려는 10년 동안 중단했던 하성절사와 하천추절사를 오랜만에 다시 파견하였다. 하성절사는 김유, 하천추절사는 이자용(李子庸)이었다.⁶³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못했다. 이들 역시 문제는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이었다. 『명태조실록』에 따르면 이들이 남경에 도착한 것은 그해 시월 18일이었다. 황제는 이 점을 짚어, “이제 다시 경하한다고 왔는데 또 시간을 맞추어 오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신을 보낸 것으로 말하자면 그 추장(酋長)과 신하들의 잘못이 아니며 사자가 고의로 업신여기는 바람에 기한을 넘겨서 온 것이다”라고 하였다.⁶⁴ 결국 사신 김유와 이자용은 억류되고, 사신단 가운데 통사(通事)만 그해 11월에 귀국하였다. 황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홍무 5년(1372)에 발

59 『명태조실록』 권151, 홍무 16년 정월 戊午, “卿等封至高麗賀正表, 知臘月中旬, 其使始至遼東, 安能及期到京. … 今當諭之曰, 賀禮過期, 朝廷不納, 以明其罪.”

60 한편 『고려사』에는 고려가 명에서 요구하던 歲貢을 다 채우지 못했음을 질책하는 황제의 勅諭를 싣고 있다. 『고려사』 권135, 우왕 9년 정월.

61 『명태조실록』 권133, 홍무 13년 9월 乙巳, “天壽聖節, 上御奉天殿受朝賀, 宴群臣于謹身殿, 自是以爲常.”

62 『명태조실록』 권132, 홍무 13년 7월 壬子.

63 『고려사』 권135, 우왕 9년 8월.

64 『명태조실록』 권157, 홍무 16년 10월 戊子, “今復以慶禮來進, 又非其時而至, 豈非侮之甚歟. 雖然, 以發使之事論之, 非其酋長與其臣之過, 乃使者故爲侮慢, 過期而至.”; 『고려사』 권114, 金庾.

령한, 3년에 한 번만 오라는 명령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다만 그들이 가져온 자문에 인용된 성지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이제 다시 경하한다고 왔으니, 정성스럽기는 정성스럽다”라고 하였다.⁶⁵ 개선의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이다.

우왕 9년 십일월에는 빼먹지 않고 이듬해인 홍무 17년(1384) 정단을 축하하기 위한 사신(‘홍무 17년 하정사’)도 파견하였다. 이번 임무를 맡은 것은 홍상재(洪尙載)였다.⁶⁶ 그러나 그 역시 기한을 맞추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황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마) 나중에 사람을 보내더니, 황태자 생일에도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9월 18일 내 생일에도 날짜를 맞추지 못하였다. 홍상재(洪尙載)는 새해 표문을 올리러 왔는데 또 정월에 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내쳐서 운남(雲南)으로 가게 하였다.⁶⁷

결국 우왕 9년에 파견한 3사는 모두 기한을 맞추지 못하였고, 모두 황제의 처벌을 받았다. 이들이 귀환한 것은 2년 후인 홍무 18년(1385) 사월이었다.⁶⁸

요컨대 홍무 5년에 ‘3년 1행’ 지시가 이듬해 7월에 전해진 이후, 고려 조정은 해명을 위한 ‘홍무 7년 하정사’ 파견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무효’화되었다고 파악한 고려 측에서는 유효로 칠 수 있는 ‘홍무 6년 하정사’를 기점으로 따져서 홍무 9년·12년·15년 하정사를 각각 파견하였다. 관계 초기부터 유지했던 1년 3행 대신, 일시적으로 3년 1행이 행해졌던 것이다.

65 『고려사』 권135, 우왕 9년 11월. “今又以慶禮來，誠則誠矣.”

66 『고려사』 권135, 우왕 9년 11월.

67 『고려사』 권135, 우왕 11년 12월. “後頭凡百不至誠的上頭，不交恁來往來，後頭差將人呵，皇太子生日也趕不上，九月十八日我的生日也趕不上，洪尙載進年表來呵，又正月裏來的上頭，不得無罪，貶的雲南去了來.”

68 『고려사』 권135, 우왕 11년 4월.

4. 우왕 10년(1384)~공양왕 4년(1392) 1년 3행 복구

황제가 3년 1행이라는 공기에 대해 전보다 훨씬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자, 고려는 우왕 10년(1384, 홍무 17)에도 3사를 모두 파견하였다. 칠월에 하천추절사 이천사(李天禪)와 하성절사 정몽주, 윤시월에 하성절사 조림(趙琳) 등이었다.⁶⁹ 이 무렵은 오랜 시간을 끌어오던 양국 간의 세공 문제가 타결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 덕분인지 사신단은 모두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귀국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왕 10년 3사의 사행 성공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고려의 3년 1행은 일단 유야무야되었다. 이때 홍무제는 정몽주가 과거 홍무 5년에 사신으로 왔던 것을 기억하고, 그와의 만남을 반가워했다고 한다.⁷⁰ 사실은 2년 전에도 하정사로 파견된 바 있었으나, 그때는 남경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11년 만의 재회였던 셈이다.

이후로 고려 말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해에 3사를 모두 파견했던 것으로 보인다.⁷¹ 예외가 되는 것이 홍무 21년(1388)인데, 이해는 다 알 듯이 명의 철령위(鐵嶺衛) 설치 통보-고려의 요동 정벌 추진-위화도 회군-우왕 폐위와 창왕 즉위 등이 숨가쁘게 전개되던 해였다. 이런 복잡한 와중에 3사 파견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우왕 8년까지는 ‘3년 1행’을 준수했던 고려는 우왕 6년 명의 성절 하례 재개를 계기로 우왕 9년부터는 3사 파견을 재개하였다. 재개 직후에는 기한을 맞추지 못한 탓에 사신이 구류되며, 1년 3행이 공식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황제가 공기 자체를 어겼다고 하여 탓하지는 않았다. 우왕 10년에 재차 시도한 3사가 모두 임무를 완수하면서, 양국 관계 초기 이래의 1년 3행이 온전

69 『고려사』 권135, 우왕 10년 7월; 윤10월.

70 『고려사』 권117, 鄭夢周.

71 홍무 18년의 하천추절사는 파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고려사』의 기록 누락인 것으로 보인다.

히 복구되었다.

5. 태조 2년(1393), 일시적 3년 1행 지시

공양왕 4년(1392, 홍무 25) 유월 17일, 고려 조정은 하성절사 경의(慶儀)와 하천추절사 조인경(趙仁瓊)을 함께 파견하였다.⁷² 그러나 이때는 명의 황태자 주표(朱標)가 그해 사월에 이미 홍서한 뒤였다.⁷³ 평양까지 갔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조인경은 충도에 돌아왔다.⁷⁴ 유월 27일에는 공양왕의 고명(誥命)을 요청하는 사신으로 김주(金湊)를 파견했으나, 그는 숙주(肅州)에 도착했을 때 공양왕이 퇴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충도에 돌아왔다.⁷⁵ 따라서 하성절사 경의가 고려 조정에서 보낸 마지막 사신이었다. 그는 이성계(李成桂)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 조반(趙胖)과 함께 홍무제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한다.⁷⁶ 건국과 함께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을 태조는 그해 십일월에는 하정사(賀正使) 노송(盧嵩)을 파견하였다.⁷⁷ 조선에서 보낸 첫 번째 정기 사절이었다.

이듬해인 태조 2년(1393, 홍무 26)에는 유월에 하성절사를 파견하였다.⁷⁸ 그러나 홍무제는 그해 칠월, 요동에 “조선국의 조공 사절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사신단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⁷⁹ 그해 9월에 파견한, 훗날 건문제(建文帝)가 될 황태손의 첫 번째 생일 축하 사절과 시월에 파견한 하정사 역시

72 『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6월 丁卯.

73 『명태조실록』 권217, 홍무 25년 4월 丙子.

74 『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6월 己卯.

75 『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6월 丁丑.

76 『명태조실록』 권221, 홍무 25년 9월 戊戌.

77 『太祖實錄』 권2, 원년 11월 乙酉.

78 『태조실록』 권3, 2년 6월 辛卯; 戊戌.

79 『명태조실록』 권229, 홍무 26년 7월 辛亥; 『태조실록』 권4, 2년 7월 辛未; 8월 乙亥.

마찬가지였다.⁸⁰ 조선 조정으로서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단 조선 측에서는 하성절사의 통행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돌아가는 명 사신 편에 표문을 부쳐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⁸¹

구월이 되자 상황이 조금 분명해졌다. 그달 2일에 귀환한 사신 남재(南在)는 황제가 “너희 나라 사신 행차가 왕래하는 데 길이 멀고 비용이 많이 드니, 지금부터는 3년마다 한 번 조회하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보고했다.⁸² 곧바로 이전과 같이 조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보낸 표문에는 그 정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드러난다.

바) 이번에 배신 남재가 선유성지를 받들어 전하였는데, 그 대략에, “너는 돌아가서 그[태조: 역자]에게 3년 1공하라고 말해주어라. 너희의 지성을 보아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불러 오겠다.”라고 하시었습니다. … 세시(歲時)에 드물게 가는 것은 신의 마음에 다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조공 닙기를 평소와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⁸³

즉 황제가 3년 1행을 지시하며, “너희가 지성스럽게 나오면 다시 부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표문을 지닌 사신 역시 요동에서 길이 막혀 통과하지 못하였고,⁸⁴ 황제는 조선인이 오면 국경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라고 재차 요동에 명령을 내렸다.⁸⁵

80 『태조실록』 권4, 9월 癸卯·辛未; 10월 乙酉; 12월 戊寅.

81 『태조실록』 권4, 2년 8월 乙亥.

82 『태조실록』 권4, 2년 9월 甲辰. “奏聞使南在回自京師曰, ‘帝厚待之, 且命曰, ‘爾國使臣行李往來, 道遠費煩, 自今三年一朝.’”

83 『태조실록』 권4, 2년 9월 癸亥. “今者, 陪臣南在傳奉宣諭聖旨, 節該, ‘爾回去對他說三年一貢, 看爾至誠, 我使人叫爾來.’ 欽此. … 但歲時之疎也, 在臣心而缺焉, 願修貢之如常.”

84 『태조실록』 권4, 2년 10월 己亥.

85 『명태조실록』 권230, 홍무 26년 11월 戊午.

이때는 홍무제가 조선 건국을 승인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였다. 당시 홍무제는 이른바 생혼(生昏)·모만(侮慢) 사건, 즉 자신이 품었던 사소한 불만을 트집 잡아 신흥 왕조를 길들이기하고 있었다. 이때의 3년 1행 지시 역시 완전한 국교 단절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 조선 측을 문책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⁶

이번 3년 1행 지시의 유효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이듬해인 태조 3년(1394, 홍무 27), 홍무제는 전년에 파견했던 최연(崔淵)과 황영기(黃永奇)를 연달아 다시 보내면서 조선에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말 1만 필을 내놓을 것, 조선에서 잡아간 자국민을 국왕의 장남, 혹은 차남이 직접 데리고 올 것 등이었다.⁸⁷ 과거 우왕 5년(1379, 홍무 12)에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막대한 양의 세공을 집정 대신의 절반이 가져올 것과, 고려에서 잡아간 요동의 인구를 모두 돌려보낼 것 등을 제시했던 때와⁸⁸ 거의 같은 수법, 같은 요구 조건이었다. 15년 전에는 그 조건을 완수하는 데 훨씬 오래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조선 조정은 유월 7일 정안군(靖安君) 이방원(李芳遠)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저간의 사정을 해명하였다.⁸⁹ 그리고 유월 16일에 500필을 시작으로⁹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을 요동으로 보냈다. 곧이어 유월 19일에는 하성절사를 파견하였다.⁹¹ 이때의 사신 조림은 이방원과 함께 남경에서 황제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였다. 황제는 이방원에게 앞으로는 <진하표(進賀表)>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방원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고 한다. “소방(小邦)이 이소사대(以小事大)하는 예의에 반드시 표문을 올림으로써 작은 성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정단과 성절은 화이(華夷)가 함께 모이는 날이니, 표문을 올려 진하하지 않을 수

86 朴元燾, 2002, 앞의 책, 292쪽.

87 『태조실록』 권5, 3년 4월 癸酉·甲午.

88 『고려사』 권134, 우왕 5년 3월.

89 『태조실록』 권5, 3년 6월 乙亥.

90 『태조실록』 권5, 3년 6월 甲申.

91 『태조실록』 권5, 3년 6월 丁亥.

없음은 다른 날과 비교하기 어려워 감히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⁹² 황제는 표문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방원은 특별히 정단과 성절을 꼽으면서 꼭 표문을 올려야겠다고 답하였다. 정단과 성절, 그리고 천추절에 진하 사신 파견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홍무제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나, 그 뒤로 조선은 그침 없이 1년에 세 번씩 표문을 써서 진하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황제도 이를 굳이 막지 않았다. 태조 3년(1394, 홍무 17)의 하천추사 정남진(鄭南晉)을 시작으로 태조 6년(1397, 홍무 30)의 하성절사 정윤보(鄭允輔)까지는 큰 문제없이 임무를 완수하였다.

요컨대 태조 2년 하반기부터 3년 상반기까지 한동안 명에서 요동을 통하는 교통로를 차단한 일은 있었으나, 그것이 조선 측에서 정해진 공기를 어겼기 때문은 아니었다. 홍무제는 입버릇처럼 “3년에 한 번”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를 어겼다 하여 통행을 막은 것은 아니었다. ‘3년 1행’ 지시는 황제가 조선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랄까, 혹은 조선에 내리는 징계 같은 것이었다. 이 지시는 약 1년간 실효를 발휘했으나, 여전히 조선의 대명 정기 사행은 기본적으로 1년 3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6. 태조 6년(1397), 마지막 3년 1행 지시

태조 6년(1397, 홍무 30) 팔월에는 하천추절사 유호(柳灝)를, 구월에는 하정사 조반(趙胖)을 파견하였다.⁹³ 그러나 그해 시월 26일, 황제는 예부에 조선국의 조공을 3년에 한 번만 보내오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보내온 계

92 『명태조실록』 권234, 홍무 27년 9월 乙卯, “某奏云, ‘小邦以小事大之禮, 必因進表得達微誠. 況正旦·聖節, 華夷會同, 莫不奉表進賀, 難比其餘, 不敢不進.’”

93 『태조실록』 권12, 6년 8월 癸巳; 9월 甲子.

본(啓本)에 문제가 있다 하여 그 사신을 구류하였다.⁹⁴ 이 소식은 그해 연말, 하천추사의 일원이었던 최호(崔浩)가 가지고 온 예부상서(禮部尙書) 명의의 서신을 통해 서울에 전달되었다.

사) 앞서 조선에서 진하한 표전문(表箋文)에 기롱하고 모욕하는 글자를 썼기에 무릇 조공할 때에 다시는 표전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계본(啓本)에 글자를 쓴 것이 또한 타당하지 못합니다. … 지금 이후로 조공은 3년마다 한 번씩 오고 또한 주본·계본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⁹⁵

이른바 표전문 사건의 불똥이 공기 문제로 튔 것이었다.⁹⁶ 태조는 곧바로 예부상서에게 회신을 보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며, 조공은 이전과 같이 1년에 세 차례씩 보내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⁹⁷

그러나 조선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인 태조 7년(1398, 홍무 31) 이월, 앞서 파견되었던 하정사 조반이 등주(登州)에서 저지되어 빈손으로 귀환하였다.⁹⁸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된 가운데, 평소 유월 중순에는 파견하던 하정사를 그해에는 보내지 않았다. 보냈다면 어차피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해 윤오월 10일, 명의 건국 황제가 붕어했다.⁹⁹

비슷한 시기, 조선의 태조도 고난을 겪고 있었다. 팔월 말에 제1차 왕자의

94 『명태조실록』 권255, 홍무 30년 10월 甲辰.

95 『태조실록』 권12, 6년 12월 丙寅, “前者爲本國進賀表箋文內, 用字譏侮, 以此, 凡遇朝貢, 不許再用表箋. 今次將來啓本內, 用字又不停當. … 今後朝貢, 每三年來一次, 亦不必用奏啓本.”

96 조선 건국 초 명과의 관계에서 表箋文 사건에 대해서는 朴元燾, 2002, 「明初 文字獄과 朝鮮表箋문제」, 앞의 책 참조.

97 『태조실록』 권12, 6년 12월 丙午.

98 『태조실록』 권13, 7년 2월 辛巳.

99 『명태조실록』 권257, 홍무 31년 윤5월 乙酉.

난이 발생하고,¹⁰⁰ 구월 5일에 태조는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이다. 조선 조정은 곧바로 명에 이 사실을 알리는 사신을 파견했다. 홍무제와 가장 말이 잘 통했던 설장수(設長壽)가 그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¹⁰¹ 그러나 설장수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요동도사에서는 그 사행이 “3년 1병의 기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막아섰다. 이에 조선 정부는 그의 임무를 진향사(進香使), 즉 홍무제의 조문 사절로 바꾸어 재차 남경으로 파견했다.¹⁰² 이후 조선은 건문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절을 파견하였고, 그들은 황제가 정종의 즉위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¹⁰³ 양국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되어가는 분위기였다.

이 과정에서 홍무제가 조선에 대해 마지막에 남겼던, ‘3년 1행’ 지시는 슬그머니 잊혀져버렸다. 정확히는 명과 조선 양쪽 모두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정종 원년(1399, 건문 1), 조선에서 하성절사와 하정사를 파견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전임 황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3년 1행’ 지시를 준수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명 측이 상중(喪中)이었던 까닭에 보내지 않은 것인지,¹⁰⁴ 그도 아니면 『정종실록』의 기록 누락인지는 알 수 없다.¹⁰⁵

100 『태조실록』 권14, 7년 8월 己巳.

101 『태조실록』 권15, 7년 9월 丁丑(5일) 條에는 태조가 전위한 사실에 이어 곧바로 설장수를 명에 사신으로 파견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壬寅(30일)에 “遣判三司事使長壽于京師.”라고 하여 그의 파견 기록이 다시 등장한다. 아마도 실제 파견된 날짜는 10월 30일이었을 것이며, 그가 가지고 간 奏本에 9월 5일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던 탓에 9월 5일 條에 해당 기사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102 『定宗實錄』 권1, 원년 정월 庚寅.

103 『태조실록』 권15, 7년 12월 庚午; 『정종실록』 권1, 원년 6월 庚寅·丙寅.

104 그러나 永樂帝가 봉어한 뒤인 영락 24년(1424, 세종 6), 洪熙帝가 봉어한 뒤인 洪熙 원년(1425, 세종 7), 宣德帝가 봉어한 뒤인 선덕 10년(1435, 세종 17) 등에는 모두 하정사를 파견하였다. 『세종실록』 권25, 6년 10월 戊午; 권29, 7년 9월 辛酉; 권69, 17년 9월 己丑.

105 원래대로라면 태조 7년(1398) 연말에는 4년 주기의 貢馬 50필을 명 측에 보냈어야 한다. 그러나 그해에는 태조의 전위, 홍무제의 봉어 등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듬해인 정종 원년에라도 보냈어야 할 것인데, 이 역시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실행된 것은 정종 2년 11월의 일이었다(『정종실록』 권6, 2년

그러나 이듬해인 정종 2년(1400, 건문 2)에는 하성절사와 하정사를 보냈다. 그해 팔월 1일에 파견된 이지(李至), 구월 19일에 파견된 우인렬(禹仁烈)이 그들이었다.¹⁰⁶ 하천추절사가 없었던 것은 명 건문 조정에서 황태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문 연간(1399~1402)의 『명실록』 기록이 충실하지 않아 이들이 남경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이듬해인 태종 원년(1401, 건문 3) 2월 6일과 3월 6일에 “경사(京師)에서” 귀환하였다.¹⁰⁷ 모두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것이다.

요컨대 태조 6년(1397)에 황제가 내린 마지막 ‘3년 1행’ 지시는 그의 붕어와 함께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명 측에서 ‘3년 1행’을 환기하면서 이를 철회하고 조선의 ‘1년 3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은 없었다. 새로 보위에 오른 건문제와 정종은 이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존 상태를 회복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3년 1행에서 1년 3행으로 바뀌었다”는 서술은 태조 6년에서 정종 2년 사이에 발생한 아주 단편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7. 태종 원년(1401) 이후, 1년 3행의 안정적 실행

이후의 상황을 몇 해만 더 살펴보자. 태종 원년(1401, 건문 3)에는 팔월과 구월에 하성절사와 하정사를 파견했다.¹⁰⁸ 그리고 이들은 각각 이듬해 정월 6일과 삼월 4일에 귀환하였다.¹⁰⁹ 태종 2년(1402, 건문 4)에는 상황이 약간 꼬였다. 그해 팔

11월 癸酉. 이에 대해서는 정동훈, 2022a, 앞의 글, 15쪽 참조). 이를 고려하면 정종 원년에는 실제로 하성절사와 하정사를 파견하지 않은 것 같다.

106 『정종실록』 권5, 2년 8월 癸巳; 9월 庚辰.

107 『태종실록』 권1, 원년 2월 乙未; 3월 乙丑.

108 『태종실록』 권2, 원년 8월 戊辰; 9월 甲寅.

109 『태종실록』 권3, 2년 정월 己丑; 3월 己丑.

월 2일에 하성절사 유용생(柳龍生)을 파견했다.¹¹⁰ 그러나 이때는 이미 연왕(燕王)의 군대가 남경을 함락함과 동시에 건문제는 자결하고, 영락제(永樂帝)가 등극한 후였다. 각각 그해 유월 9일과 17일의 일이었다.¹¹¹ 하성절사 유용생은 이미 봉어한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러 출발했던 것인데, 그 이후 이 사절단의 행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영락제의 즉위 소식이 서울에 전해진 것이 그해 구월 28일이었으니,¹¹² 아마도 요동을 경유하던 무렵에는 그 소식을 듣고 서울로 귀환했을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시월 15일에는 영락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절 하륜(河崙)과 하정사 조박(趙璞)이 함께 출발하였다. 이들은 십일월 26일에 남경에 도착하였고, 새로 등극한 황제는 이들을 무척 반갑게 맞이하였다고 한다.¹¹³

영락제의 생일은 사월 17일이었다. 이에 태종 3년(1403, 영락 1)에는 정월 26일에 하성절사 이귀령(李貴齡)을 파견했고, 그 역시 황제의 환대를 받으며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였다.¹¹⁴ 영락제의 황태자 주고치(朱高熾), 즉 훗날 홍희제(洪熙帝)의 생일은 칠월 23일이었다. 그는 태종 4년(1404, 영락 2) 사월 4일에 황태자에 책봉되었고, 그 사실은 같은 해 6월 10일에 서울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¹¹⁵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해도 칠월 23일에 맞추어 도착하기란 불가능했다. 이에 영락제의 황태자 생일 축하 사절은 이듬해인 태종 5년(1405, 영락 3)에 처음 파견되었다. 그해 사월 26일에 파견된 윤목(尹穆)이 그였다. 그는 칠월 5일에 남경에서 황제를 알현하고 구월에 귀환하였다.¹¹⁶ 영락제는 자신의 생일

110 『태종실록』 권4, 2년 8월 癸丑.

111 『명태종실록』 권9下, 건문 4년 6월 辛酉·乙巳.

112 『태종실록』 권4, 2년 9월 戊申.

113 『태종실록』 권4, 2년 10월 乙丑; 권9, 3년 4월 甲寅; 『명태종실록』 권14, 홍무 35년 11월 乙巳.

114 『태종실록』 권5, 3년 정월 甲辰; 6월 甲子; 『명태종실록』 권19, 영락 원년 4월 壬戌.

115 『명태조실록』 권30, 영락 2년 4월 甲戌; 『태종실록』 권7, 4년 6월 己巳.

116 『명태종실록』에는 칠월 16일에 윤목이 箋文을 올렸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나(권44, 영락 3년 7월 己酉), 그의 귀환 보고에 따르면 칠월 5일 아침 조회 때 황제를 알현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태종실록』 권8, 4년 9월 戊戌.

때와 마찬가지로 황태자의 생일에도 조선의 사신이 왜 왔느냐고 굳이 따져 묻지 않았다.

이후로 200여 년 동안 조선과 명 사이에서 공기가 문제가 된 일은 없었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홍무 연간 고려·조선에서 파견한 정기적 사절과 그를 둘러싼 양국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우선 Ⅲ장의 내용을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재 통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명제들을 수정해보도록 하겠다.

1. 고려는 명과 관계를 튼 이후 곧바로 1년에 세 차례, 하정사, 하성절사, 하천추절사를 파견하였다. 과거 한 세기 동안 고려가 몽골에 대해 하던 관행, 그에 앞서 고려가 거란·금에 대해 하던 관행을 그대로 명에도 적용한 것이었다.

2. 공민왕 21년(1372, 홍무 5), 황제는 고려에 처음으로 3년에 한 번씩만 사신을 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그 근거를 『주례(周禮)』에서 찾은 언설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고려에서 너무 자주, 너무 큰 규모의 사신단을 파견하여 명 국내 사정을 염탐하는 것을 꺼린 데서 나온 조치였다.

3. 고려는 ‘홍무 6년 하정사’를 기점으로 치고, 홍무 9년, 12년, 15년 정단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냈다. 일시적이거나 황제의 ‘3년 1행’ 지시를 준수한 것이다. 이 시기는 안 그래도 공민왕 시해, 명사 살해 사건 등으로 양국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와중이었다.

4. 우왕 9년(1383), 고려는 1년 3사 파견을 재개하였다. 비록 그들은 명에 억류되기는 했지만, 그 이유는 공기(貢期)를 어겨서가 아니라 도착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였다. 이후 우왕 10년의 3사가 성공함으로써 1년 3행은 공식적으로 복원되었다. 이후 태조 원년(1392, 홍무 25)까지는 1년 3행이 큰 문제없이 지속되었다.

5. 태조 2년(1393, 홍무 26), 홍무제는 조선에 ‘3년 1행’하라는 지시를 내렸

다. 이는 말하자면 조선 길들이기 차원에서 나온 압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된 사신은 아무도 없었다. 이 조치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슬그머니 철회되었다.

6. 태조 6년(1397, 홍무 30), 표전문(表箋文) 사건이 한창이던 와중에 홍무제는 다시 ‘3년 1행’ 지시를 내렸다. 실제로 두 차례 사신단이 공기가 아닌 때에 왔으며 입국을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듬해 윤오월 황제가 붕어하면서 이 명령은 자연히 무효가 되었다. 정종 2년(1400, 건문 2), 조선은 하정사와 하성절사 파견을 재개했다.

7. 태종 대 이후 명 말까지 1년 3행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이상의 경과를 홍무제의 발언, 지시를 중심으로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황제는 홍무 5년, 26년, 30년에 각각 고려에 ‘3년 1행’을 지시하였다. 첫 번째 때는 고려의 염탐 행위에 대한 의심, 두 번째 때는 이른바 생흔(生罅)·모만(侮慢) 사건, 세 번째 때는 표전문 사건이 각각 그 이유였다. 즉 황제는 고려 측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사신 파견 횟수를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 조치가 유효했던 기간은 첫 번째 때는 약 10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년 미만이다. 그 나머지 약 20년 동안 고려·조선의 대명 정기 사행은 1년 3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증을 인정한다면, 1장에서 정리한 통설 가운데 첫 번째, 홍무 연간에는 3년 1행을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 건문 연간에 1년 3행으로 전환되었다는 서술은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대체하자면 다음과 같은 서술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홍무제는 간혹 3년에 한 번만 사신을 보내라고 하며 고려·조선을 압박했으나, 양국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던 한동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 1년 3사는 유지되었다.

이와 별개로 홍무제가 요구했던 ‘3년 1공’은 고려에 요구했던 막대한 양의 세공(歲貢)을 삭감하는 대신 3년에 한 번, 말 50필을 바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우연한 이유로 4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고, 그 관행 역시 17세기

초까지 유지되었다.¹¹⁷ 즉 3년 1공(실제로는 4년 1공)과 1년 3사는 서로 대체되는 관계에 있지 않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행위로서 약 2세기 반 동안 거의 중단 없이 병행되었다.

그렇다면 틀린 통설을 통해 정립된 더 큰 통설, 즉 고려·조선은 명에 가장 빈번하게 조공을 하는, 가장 공순하고 이상적인 조공국이었다는 설명은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이는 조선의 사례를 다른 외국의 조공 사례와 비교해보아야 비로소 풀릴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를 다음 과제로 삼고자 한다.

117 고려-명 관계에서 이른바 세공 문제 및 세공의 간격에 관해서는 정동훈, 2022a, 앞의 글 참조.

참고문헌

사료

『고려사』,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명태조실록』, 『명태종실록』, 『이문』, 『尙書』, 『周禮』, 『文獻通考』,
『正德會典』, 『萬曆會典』

단행본

권선홍, 2004,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 II, 아르케.
朴元燾, 2002,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全海宗, 1970, 『韓中關係史』, 一潮閣.

Fairbank, John K., 1968,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논문

具都暎, 2013, 「조선 전기 對明 陸路使行的 형태와 실상」, 『震檀學報』 117.
구범진, 2014, 「조선의 청 황제 성절 축하와 건륭 칠순 ‘진하 외교」, 『한국문화』 68.
丘凡眞·鄭東勳, 2021a,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사행 빈도 문제-‘3년 1행’과 『명태조 실록』의 기록 조작-」, 『東洋史學研究』 157.
_____, 2021b, 「홍무 5년(1372) 명 태조의 고려에 대한 의심과 ‘힐난 성지」, 『明清史研究』 55.
_____, 2021c, 「초기 고려-명 관계에서 사행로 문제-요동 경유 사행로의 개통 과정-」, 『한국문화』 96.
방향숙, 2005, 「古代 동아시아 冊封朝貢體制의 원형과 변용」, 방향숙 외, 『한중 외교 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申奭鎬, 1959, 「朝鮮王朝 開國 當時의 對明關係」, 『國史上의 諸問題』 1, 國史編纂

委員會.

이명미, 2014, 「恭愍王代 후반 親明정책의 한 배경」, 『사학연구』 113.

李鉉淙, 1981, 「對明關係」,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9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鄭東勳, 2013, 「明代 前期 外國 使節의 身分證明 方式과 國家間 體系」, 『明清史研究』 40, 2013.

_____, 2016, 「高麗時代 外交文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8a, 「고려-거란 관계에서 세 층위의 소통 구조」, 『역사와 현실』 107.

_____, 2018b, 「고려-거란·금 관계에서 ‘朝貢’의 의미」, 『震檀學報』 131.

_____, 2019a, 「명과 주변국의 外交關係 수립 절차의 재구성-이른바 ‘明秩序’ 논의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明清史研究』 51.

_____, 2019b, 「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 『역사와 현실』 113.

_____, 2022a, 「3년 1공인가, 4년 1공인가-고려-명 관계에서 歲貢 문제와 『명태조실록』의 조작-」, 『韓國史學報』 86.

_____, 2022b, 「말 100필인가, 1,000필인가-고려-명 관계에서 세공 문제-」, 『한국중세사연구』 68.

조영헌, 2018, 「15세기 한중관계: 예제적-일원적 책봉·조공의 확립」,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3년 1행인가, 1년 3행인가

— 고려-명 관계에서 사행 빈도 문제 —

정동훈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명에 대한 조선의 조공과 관련하여, 홍무 연간에는 3년 1공이 행해지다가 건문 연간 이후 1년 3사로 전환되었다고 이해해왔다. 그리고 다른 외국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1년에 세 차례씩 사신을 파견한 사실은 조선과 명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많이 제시되었다. 이 글은 고려-명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줄곧 1년 3사가 원칙이었으며, 홍무제의 명령에 따라 아주 일시적인 예외가 있었을 뿐임을 증명하였다.

고려는 명과 관계를 맺은 이후 곧바로 1년에 세 차례, 하정사, 하성절사, 하천추절사를 파견하였다. 과거 한 세기 동안 고려가 몽골에 대해 하던 관행, 그에 앞서 고려가 거란·금에 대해 하던 관행을 그대로 명에도 적용한 것이었다. 1372년, 황제는 고려에 처음으로 3년에 한 번씩만 사신을 보내라는 명을 내렸다. 고려에서 너무 자주, 너무 큰 규모의 사신단을 파견하여 명 국내 사정을 엿따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다. 이 조치는 1383년까지 대략 10년 정도 유지되었다.

1384년에 공식적으로 복원된 1년 3행은 이후 1392년까지 큰 문제없이 지

속되었다. 황제는 1393년에도 3년 1행을 지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신흥 왕조 조선을 길들이기 위한 외교적 압박이었을 뿐이었다. 실제 이 조치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슬그머니 철회되었다. 1397년에도 마지막으로 3년 1행 조치가 행해졌지만, 이는 황제의 죽음과 함께 자연히 무효가 되었다. 요컨대 황제는 고려 측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사신 파견 횟수를 줄이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후 1400년부터 양국 관계가 단절되는 17세기 초까지 1년 3행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주제어: 3년 1행, 1년 3행, 사행 빈도, 조공, 고려-명 관계

Once in a Three Years or Three Times in a Year: The Frequency of Envoy Missions in Goryeo-Ming Relations

Jung Donghun

Researchers have recognized Joseon as a model tribute country to the Ming Dynasty. Compared to other foreign countries' tribute intervals, the fact that envoy missions were dispatched three times a year was presented as evidence of clos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Ming Dynasties. Regarding the frequency of tributes, it has been understood that in *Hongwu* era(1368-98), Goryeo court dispatched one envoy mission every three years, but converted to three times a year after *Jianwen* era(1399-1402). However, this paper proves that in the Goryeo-Ming relations, it was a principle to dispatch three times a year from the beginning, and that there were only very temporary exceptions according to the *Hongwu* Emperor's order.

Immediately after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Ming in 1369, Goryeo set the number of regular envoy missions to the Ming capital

city of Nanjing to ‘three times a year’: to celebrate the birthdays of the Ming emperor and the crown prince as well as for the lunar New Year’s Day. The practice of Goryeo in the relations with the Mongol Empire for the past century and the with the Khitan and Jin Dynasties before that were applied to the Ming Dynasty. In 1372, the emperor ordered Goryeo to send envoy missions only once every three years for the first time. This was because Goryeo was reluctant to spy on the domestic situation of the Ming Dynasty by dispatching envoy missions too often and too large. This was because the emperor suspected that Goryeo sent missions too often and too large to spy on the domestic situation of his country. This measure was maintained for about 10 years until 1383.

The dispatch of envoy missions three times a year was officially restored in 1384, and continued without major problems until 1392. In 1393, the emperor ordered to reduce the frequency of envoy missions, but this was only a diplomatic pressure due to dissatisfaction with diplomacy with Joseon. In fact, this measure was withdrawn less than a year ago. In 1397, the last banning the irregular missions was taken, but it was naturally invalid with the death of the emperor. Since then, from 1400 to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whe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nded, three envoy missions per year continued stably.

Keywords: triennial mission, three missions in a year, frequency of envoy missions, tribute, Goryeo-Ming relations

고구려 1탑 3금당 사찰 배치와 과거칠불신앙

강병희 | 동아시아미술사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 II. 고구려 1탑 3금당 사찰
- III. 4세기 이전의 과거칠불신앙
- IV. 초기 고구려 사찰과 과거칠불신앙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고구려의 1탑 3금당 사찰들은 대체적으로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관련 기록, 일제강점기와 북한 학계에 의해 조사 보고된 관련 유구들에 대한 기술과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사찰 터의 고고학적 층위 발굴이 없었다는 점, 건축학적으로 사찰 설계와 건립에 사용된 표준 척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¹ 발굴과 수집에 의해 알려진 고구려 수막새 기와 자료 전체에 대해 양식적 분류를 시도하고² 이에 의거해 5세기 4/4기 이후로 보기도 한다.³

한편, 미술사에서는 일정 시기에 분포하는 유물들은 반드시 발생, 성숙, 퇴화의 과정을 보여주며 이를 근거로 시대 편년을 하고 있다. 미술사 범주에 속하는 건축도 마찬가지이다. 동일 범주의 건축에서 구조체의 규모, 위치, 상호 간의 거리 등, 건축 배치의 세부적 변화 과정은 이들 건축의 시기적 발전을 설명해준다.⁴

* 투고: 2022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2월 11일, 재심사 완료: 2022년 2월 28일, 게재 확정: 2022년 3월 2일

** 이 글은 2021년 10월 1일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에서 열렸던 “갱위강국” 1500주년 국제학술회의-웅진도성의 사찰 대통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평양에 건립된 초기 사찰과 백제 사찰」 내용 중에서 새롭게 제기한 과거칠불신앙과 고구려 사찰 부분을 독립된 주제로 삼아 살펴본 것이다.

- 1 이강근, 2005, 「高句麗 八角形建築址에 대한 연구」, 『先史와 古代』 23, 7~11쪽.
- 2 주흥규, 2014, 「고구려 기와의 분류와 특징에 관한 일고찰」, 『先史와 古代』 41, 73~102쪽.
- 3 주흥규, 2019,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변천 양상」, 『동북아역사논총』 64, 307쪽; 주흥규, 2019, 「기와로 본 평양지역 고구려 사원유적의 조영시기 검토」, 『高句麗 渤海研究』 65집, 107~129쪽.
- 4 김성우, 1996, 「高句麗寺址를 중심으로 考察한 5世紀前後 佛寺計劃의 變化」, 『建築歷史研究』 5권 1호, 9~10쪽.

따라서 미술사에서 유물의 양식은 역사에서의 기록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면 중국 5~6세기 사찰 터 5곳의 경우, 조성 시기가 늦어질수록 탑과 불전과의 거리와 중문에서 탑까지의 거리, 혹은 탑과 불전과의 거리와 탑 1변의 거리 비례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⁵ 이를 통해 각 유적의 시기적 선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고구려 1탑 3금당의 사례들을 보면 문자왕 7년(498)에 조성된 청암리사지(즉, 금강사지)가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쳐 모색된 완성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따라서 이들은 대체로 5세기에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고구려 1탑 3금당 사찰들은 동·서 금당 중앙에 고층 목탑으로 추정되는 팔각 탑 터가 있으며 모두 평양지역에 남아 있다. 이들은 동아시아 불교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불교가 중국 대륙에 전래되고 곧이어 관련 건축이 조성되었지만 5세기 중반까지는 기록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불교가 발생지와 전래길인 인도와 서역의 끊임없는 영향 속에서 발전하였듯이 고구려 불교와 관련 건축도 중간 정착지인 중국의 흐름과 무관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 학계는 중국 남북조 사찰과 탑에 관한 고찰을 다수 진행하였다.⁷ 현재 보고된 중국의 불교건축 유구는 태화(太和) 3년(479)에 조성된

5 김성우, 2014, 「중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5세기 고구려 사지의 역사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권 6호, 160쪽; 홍매선·김성우, 2014, 「5~6세기 중국 1탑1금당 불교사찰 배치계획의 변화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권 7호, 130쪽.

6 김성우, 1996, 앞의 글, 10~15쪽.

7 양은경, 2009, 「中國佛教寺刹의 검토를 통해 본 百濟 泗泚期 佛教寺刹의 諸問題」, 『百濟研究』 5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 2009, 『한·중·일 고대사지 비교연구(1)-목탑지편』,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 2010,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2)-금당지편』,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 2012,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3)-강당지·송방지·부속건물지·문지·회랑지편』, 문화재청·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현숙, 2010, 「梁武帝와 同泰寺」, 『불교학보』 54, 153~186쪽; 소현숙, 2013, 「皇權과 佛教儀禮:北魏 行像과 梁의 無遮大會」, 『중국고중세사연구』 29; (재)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편, 2014, 『백제역사유적지구연구총서』 2-사찰; 賀雲翱 저, 서운

북위 사원불사(思遠佛寺)가 가장 이르며 그 배치도 중축선을 중심으로 방형 탑, 금당이 차례로 놓인 1탑 1금당의 모습이다.⁸ 이는 4세기 말부터 건립되는 고구려 불교건축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초기 불교건축 발전의 불연속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현재 학계는 이에 대해 아직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존 시각에 무언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관련 기록에 의하면 중국은 불교가 전래된 1~3세기까지 불탑 중심의 사찰이 조성된다. 배치도 기존의 전통 예제 건축처럼 방형 회랑 내부 중앙에 불탑을 두었으며 2세기 말기 기록에는 불탑이 전통 중층 목조건축 위에 인도식 상륜을 올린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교건축이 전통적인 사묘(祠廟)처럼 인식되고 불탑은 중국적 전통 건축에 인도식 상륜이 가미된 중국적으로 변용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교 건축에 대한 관념, 배치, 형태 면에서 인도, 간다라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고구려 불교건축의 배치와 평면에 보이는 특수성도 고구려적 전통성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불교와 불교건축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까지 팔각탑은 5세기 전반 양주(涼州)지역에서 조성된 북량(北凉) 소탑(小塔)과 연결하여 해석하거나⁹ 고구려 청암리사지의 건축 배치를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에 기술된 하늘의 별 자리를 지상의 개념으로 치환한 인문학적 도식과 비교한 연구가¹⁰ 있다. 이는

경 역, 2011, 「六朝 都城의 佛教寺院과 塔 研究」, 『호서고고학』 24, 30~57쪽.

8 현승욱, 2013, 「중국초기 불교 사원 배치에 관한 연구-후한부터 남북조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34~36쪽; 김성우, 2014, 앞의 글, 160쪽의 표 2; 홍매선·김성우, 2014, 앞의 글, 125~128쪽.

9 강병희, 2010, 「고대 중국 건축의 8각 요소 검토-고구려 8각 불탑의 조망을 위하여」, 『한국사상사학』 36집, 6~27쪽.

10 美田美代治 저, 신영훈 역, 1962a, 「조선 상대건축과 가람배치에 미친 천문사상의 영향」, 동이문화연구원·동산문화사 편, 『한국상대건축의 연구』, 133~141쪽(원래

이러한 천문 개념이 중국 고대 궁전건축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향의 학술적 접근은 각각 한계가 있어 모두가 수궁하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자는 불교가 전래된 4세기 말에서 5세기 말 이전에 시작되었을 고구려 사지를 421년을 시작으로 426년, 428년, 429년의 조성 명문이 있는 중국 북서부지역의 북량 소탑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지역적·시기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

후자의 경우도 관련 저술의 내용을 명확한 하나의 도식으로 수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이를 다시 사찰 배치와 연관시키려면 어느 정도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논증에 한계가 있다.¹¹ 무엇보다 팔각탑과 3금당 배치가 중국 어디에서도, 어느 시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관련 연구의 진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문제점이다.

결국 고구려 사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며 필자는 이것이 고구려의 경우, 5세기 고구려 불교에 반영된 4세기 말, 즉 불교가 공인된 372년을 전후한 중국의 초기 불교와 신앙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주목되는 예가 5세기 전반에 조성된 북량 소탑이다. 조성 시기를 감안해볼 때 이들에게는 4세기 이전의 불교 신앙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작은 봉헌 소탑이지만 탑 전체에 명문과 조상(彫像)이 새겨져 있어 불탑 조성에 반영된 사상적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40년 12월에 쓰고 1942년 4월 일본 건축학회논문집 21에 실림); 美田美代治 저, 신영훈 역, 1962b, 「조신 상대건축과 가람배치에 미친 천문사상의 영향에 관한 補遺」, 동이문화연구원·동산문화사 편, 『한국상대건축의 연구』, 146~149쪽 (1941년 12월 일본 『건축학회 논문집』 23호에 실림); 李興範, 2001, 「高句麗時代 淸岩里廢寺式伽藍の型式と思想基盤」, 『한국불교학』 28, 한국불교학회, 427~454쪽; 강병희, 2010, 위의 글, 6~27쪽.

11 한나라 사상과 역학은 천문 개념이 융합되어 있어 역학을 배경으로 조성되는 건축에 천문적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틀로 도면화하기에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을 고구려의 5세기 사찰들과 조성 시기, 팔각탑의 등장, 역사적 배경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들이 조성되는 중국 북서부 지역과 요동을 포함한 고구려 북부지역은 한무제가 정복전쟁 후, 무위·장액·주천·돈황의 하서사군과 낙랑·임둔·진번·현도의 한사군을 두어 지배했던 곳으로 한나라 문화가 이식되어 깊은 영향을 미친 곳이다.

여기에 서진 말기에 이르러 정권이 극도로 혼란해지자 지배층을 포함한 많은 한족(漢族)이 일찍부터 중원세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데 하서지역의 경우, 한족 출신의 장궤(張軌)가 건국한 전량(前凉, 301~376)이 이들을 받아들여 4세기에 융성하였다. 이후 전량은 371년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에 의해 복속되어 수도인 장안으로 많은 인원이 사민(徙民)되었고 중국화된 덕치 군주를 지향한 전진의 정치, 문화, 불교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¹² 고구려는 이러한 전진의 부견을 통해 372년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해지고 이어 1탑 3금당과 팔각탑 터가 있는 사찰들이 조성된다.

전진 이후 북서부 하서지역에는 북량(397년 혹은 401~439년)이 건국되었고

12 湯用彤, 2006, 『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 上冊, 北京: 崑崙出版社, 344~345쪽
과 殷光明, 2000, 『北凉石塔研究』, 財團法人 覺風佛教藝術文化基金會, 9쪽
에는 전량이 373년에 양주에서 『수능엄경』, 『수뢰경』, 『금광수경』, 『여환삼매경』
등을 역경하는 등 대대로 불교를 깊게 믿었으며 전량 멸망 후, 많은 양주출신 승려
가 전진의 수도 장안에서 이루어진 역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朴漢濟, 1985, 「前秦苻堅政權의 性格: 胡漢體制와 統一體制의 구축과정과 관련하여」, 『東亞文化』 23, 서울대동아문화연구소, 3~58쪽; 지배선, 2008, 「전진
(前秦) 부견(苻堅)에 대하여-358년까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4, 401~
432쪽; 지배선, 2009, 「전진(前秦) 부견(苻堅)에 대하여-A.D.358~365를 중심
으로」, 『동방학지』 145, 315~382쪽; 강문호, 1997, 「전진(前秦) 부견(苻堅)의 정
치와 제권(帝權)」, 『中國學報』 37권 1호, 135~195쪽 등에서는 부견이 어려서부
터 유교를 익혔고 天王 자리에 올라 5호16국 중 최대 영토를 가진 국가로 서쪽으로
서역, 동으로 고구려와 접하여 교류하였으며 불교와 함께 유교적 덕치 군주로서 명
당, 종묘 등의 의례 건축을 세웠다고 한다. 정복한 지역에는 자국의 백성을, 수도에
는 정복민인 여러 이민족을 徙民하는 민족 융합책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그들이 조성한 북량 소탑에는 팔각 기단부에 팔천신과 문왕팔괘, 이층 원형단에 발원문과 『증일아함경』 제42 「結禁品」, 상단 원형 복발에는 8개 감실 속에 과거칠불과 미륵보살이 새겨져 있다. 이는 기존의 신앙과 함께 북량 시기에 번역된 『열반경』, 『대방등다라니경』 등의 밀교다라니 경전 내용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일부 조각에서는 서역풍의 인물표현도 보인다.¹³

북량이 통치한 하서지역은 서역 문물이 도착하는 요충지로서 일찍부터 중원 문화가 이식되고 발전했으며 하서 주량을 따라 남하하는 북방이민족과 중원에서 옮겨 온 한족이 함께 머물며 문화적·민족적 융합이 일어나는 곳으로 북량 소탑의 양식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 양식에는 4세기 경 중국의 사상적·신앙적 요소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북량 소탑에 장엄된 과거칠불이다. 과거칠불은 인도 아쇼카왕 대의 유물에서도 나타나며 2~4세기의 간다라, 서역에서는 과거칠불, 과거칠불과 미륵보살이 조성된 예가 다수 확인된다. 중국에도 관련 경전이 후한 시대부터 전래되어 번역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신앙이 4세기 이전에 있었을 것이다. 다만 현재 학계에서는 중국의 경우, 5세기 이후부터 관련 유물이 확인되므로 당연히 연구 범위를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

이 글은 이러한 4세기 이전에 있었을 과거칠불에 대한 연구 공백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기록과 유물을 재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관련 기록과 유물이 서진(西晉), 동진(東晉) 시대에 확인되며 5호16국시대의 삼연(三燕) 지방에서 출토된 유물에서도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와 관련 국가들 간의 공식, 비공식적 교류 기록을 통해 볼 때¹⁴ 요동, 국내성, 평양지역에도 적

13 강병희, 2014, 「백제와 고구려 사찰의 비교」, (재)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편, 『백제역사유적지구연구총서』 2-사찰, 71~74쪽; 강병희, 2010, 앞의 글, 32~35쪽.

14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296~345쪽; 이성제, 2012, 「4세기말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68, 35~66쪽.

어도 4세기 말에는 과거칠불신앙이 전래되었을 것이며 평양지역에 조성된 5세기 고구려의 1탑 3금당 사찰 조성 배경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과거칠불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고구려 1탑 3금당의 자료와 논문들을 재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4세기 말까지의 과거칠불신앙을 간다라와 서역의 전래 양상, 중국에서의 신앙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양상에 비추어 5세기 고구려 1탑 3금당, 팔각불탑과의 연관성을 정리해보았다.

II. 고구려 1탑 3금당 사찰

고구려 1탑 3금당 사찰들의 창건 시기에 관해 최근 이의가 제기되고 있지만¹⁵ 청암리사지가 금강사지이며 498년에 창건되었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한편, 동일 양식의 건축에서 구조체의 규모, 위치, 상호 간의 거리 등, 건축 배치의 세부적 변화 과정은 이들 건축의 시기적 발전 과정을 설명해준다.¹⁶

따라서 발굴 과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확인된 배치도를 통해 시기적 선후를 추정해볼 수 있다는 건축 미술사적 방법론에 입각해보면 청암리 사지는 완성적 배치 모습과 비례 수치를 보이고 있어 1탑 3금당 형식의 발생기 유적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비해 나머지 예들은 청암리 사지에 이르는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는 1탑 3금당 사찰들이 불교가 공인되는 4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5세기 말에 정형화되었다는 기존의 학설과도 부합한다.

학계 주요 학설들을 반영하여 관련 유적지의 조성 시기, 배치, 주요 사향을 보기 쉽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의 내용에서 조성 시기에 논란이 있는 절터는 토성리사지(그림 1)와 상오리사지(그림 2)이다. 유구가 북한에 있고 발굴

15 각주 1), 3) 참조.

16 각주 4) 참조.

〈표 1〉 5세기 평양지역 고구려사지

고구려사지	조성 시기	확인된 가람배치	비고
토성리사지	4세기 후반 설(남일룡, 1987년 발굴보고서) 정릉사지 이후와 청암리 사지 이전 설(김성우)	1탑 3금당 品자형 팔각탑지	393년 평양에 9사 건립 394년 이 지역 장악 후 성을 쌓음
상오리사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설(김성우) 5세기 후반(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 I, II)	팔각탑과 동·서 금당만 확인 2금당 사지로도 봄(김성우)	
정릉사지	427년 평양 전도 무렵에서 5세기 중반(리인동)	팔각탑과 동·서 금당 구역과 중금당지 사이에 회랑이 있음	두 시기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봄(허철준) 1탑 3금당 형식의 중간 단계로, 처음에 조성된 회랑은 사찰이 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봄(리인동)
청암리사지	문자왕 7년(498)	1탑 3금당과 북쪽 서남면 일부(小泉顯夫 보고서 도면) 북금당과 좌, 우 건물터, 강당지(米田美代治 보고서 도면)	출토 수막새 양식이 장군총보다 늦고 평양성보다 빠름
원오리사지	고구려	조사자가 1탑 3금당으로 추정(小泉顯夫)	고려시대 건물지 등으로 훼손이 심함

을 담당한 북한학자들이 토성리사지의 조성 시기를 출토 기와를 중심으로 394~498년으로 넓게 추정하고 있고¹⁷ 상오리사지는 4세기 말,¹⁸ 혹은 5세기

17 남일룡, 1987,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4기, 8~13쪽; 김정기, 1991, 「고구려 정릉사지 및 토성리사지 발굴보고 개요와 고찰」, 『불교미술』 10호, 동국대학교 박물관, 3~31쪽.

18 김성우, 1996, 「고구려사지를 중심으로 고찰한 5세기 전후 불사계획의 변화」, 『건축역사연구』 9호에서는 고구려 사지의 탑의 확대 경향이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토성리사지, 청암리사지 순으로 변화하며 이는 탑과 동서금당 사이의 거리, 북금당의 크기 확대 순서와도 일치하고 동·서 금당의 규모 축소 및 장·단반 비례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김성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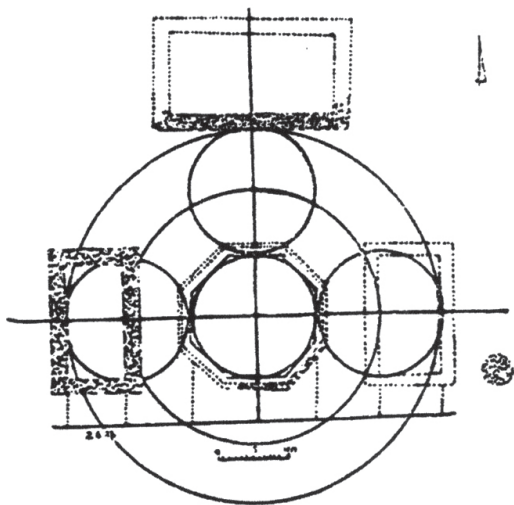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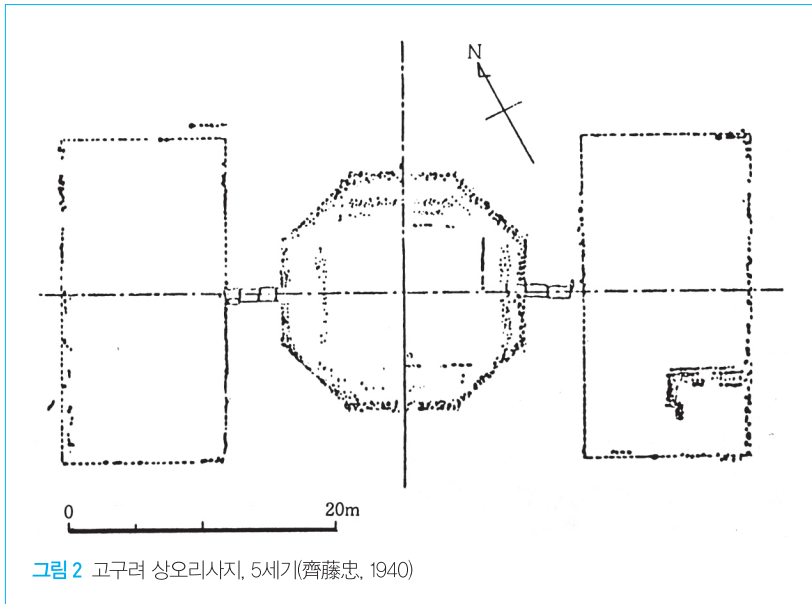
그림 1 고구려 토성리사지, 394~498년(남일룡, 1987)

말¹⁹로 논란이 있으며 원오리사지는 유구의 파괴가 심해 팔각탑과 1탑 3금당의 존재만 확인된 실정이다.

5세기에 발생하여 발전한 평양지역 1탑 3금당식 고구려사찰(표 1)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금당은 측면의 금당들보다 규모가 크고, 탑과의 거리가 멀며, 기단 구성도 높이가 불탑과 동일하고 물받이 폭이 넓은 등, 건물의 격이 높다. 둘째, 동·서 금당은 탑과의 거리가 중금당보다 가깝고 대청(정릉사지는 대청이 아님)이며 탑과 동·서 보도로 연결된다. 이는 동·서 금당과 탑이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회랑으로 분리된 공간에 동·서

「중국사례와 비교를 통해 본 고구려 사지의 역사적 의미」,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제30권 제6호(통권 308호), 대한건축학회, 158쪽에서 상오리사지, 정릉사지(427), 토성리사지, 청암리사지(498) 순으로 조성되었음을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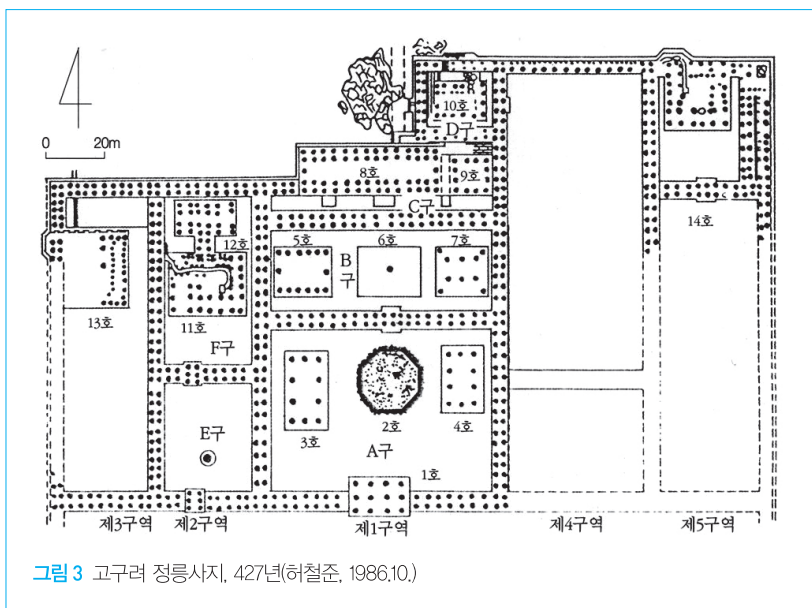
1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 앞의 책, 20~21쪽.



금당과 탑이 놓인 정릉사지의 배치(그림 3)와도 개념상 일치한다.

정릉사지(그림 3)에 대해²⁰ 북학학자 허철준은 정릉사지 회랑 터들의 축이 잘 맞지 않는 등 통일적인 건축 공간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이 지나치게 많고 회랑으로 둘러막혀 동선도 확보되지 않으며, 채광과 통풍도 제한적이어서 동시에 건축된 가람 터가 아님을 지적한다. 또한 중심부에서는 문화층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터 남쪽에서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된다는 점, 단위자 분석을 통해

- 20 김일성종합대학 편,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09~216쪽; 한인호, 1981, 「정릉사 건축의 평면 구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1-2기, 29~33쪽; 김동현, 1983, 「고구려의 정릉사지」, 『전통문화』, 48~54쪽; 허철준, 1986, 「정릉사의 평면 복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고찰」, 『역사과학』 1986-4기, 14~18쪽; 김정기, 1991, 앞의 글, 3~25쪽; 리인동, 2002, 3기, 「정릉사중심건축군총평면고찰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24호; 리인동, 2002, 1호, 「1탑 3금당식절건축형식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22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 2009, 앞의 책, 26~27쪽.



두 가지 척도의 자가 사용되었다는 점, 동서 회랑이 서로 평행이 아니라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점, 제작 시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기와가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건축 터 자리와 출토 유물들이 있음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정릉사지가 두 단계를 거쳐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¹

이를 근거로 그는 5세기 초 정릉사지(그림 3)의 A구역은 원래 동명왕릉에 제사를 지내는 기본 부분, B구역의 좌, 우 건물은 제사를 돕는 보조 부분, 10지역은 휴식 부분으로 구성되어 기능상 회랑으로 엄격하게 구분된 것으로 보았다. 이후 5세기 중엽에 초기 건축이 확대되어 사찰로 완성되면서 제사와 함께 불교 행사를 겸하는 건축물이 되었고 이 시기 제사기능은 8건축으로 확대 승격되고 1탑 3금당의 불교 건축이 새로 생김으로써 A구역 뒤쪽 회랑과 B구역 앞, 뒤 회

21 허철준, 1986, 앞의 글, 14~18쪽; 김일성종합대학 편, 1976, 앞의 책, 272쪽과 그림 144.

량이 기능상 필요 없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²

허철준의 이론은 정릉사지의 동·서 금당이 다른 예들과는 달리 크기도 다르고 탑과 대응되어 대칭으로 있지도 않아 이를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층위 발굴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아 추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 리인동은 허철준의 이론을 바탕으로 비대칭적인 정릉사의 1탑 3금당식 배치가 1탑 3금당 배치형식의 중기 단계 모습이며 회랑은 정릉사의 절 모습이 갖추어지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것으로 사찰이 조성된 후에는 없어졌을 것으로 보았다.²³

이러한 2인의 북한학자의 주장은 고구려 1탑 3금당 사찰의 시작과 발달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 요인으로 정릉사지의 층위 발굴 내용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이유이다.

한편, 정릉사지 A구역의 과도기적 요소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학설은 상오리사지의 2금당설이다. 상오리사지는 전체 절터에서 탑과 2금당이 있는 영역만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김성우는 원래 2금당일 가능성에 대해 1980년대 논문에서부터 제기한다. 중국의 불교건축은 3세기까지는 사묘(祠廟)형식을 따르지만 4세기부터는 궁궐건축의 영향을 받는데 삼국시대 위(魏)나라 문제(재위 227~233) 때 대전인 태극전 좌, 우에 동당(東堂)과 서당을 짓게 되었고 이후 육조시대까지 널리 통용되었으며 수, 당대에 이르러 없어지는데 이 양식이 4세기 전후하여 불교건축에 영향을 주어 2금당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⁴

상오리사지를 1탑 3금당 형식으로 추정하면 타 사찰 터에 비해 동·서 금당이 좁고 길며 탑과의 거리도 짧아서 중금당이 있다면 불균형적인 형태의 공간이

22 허철준, 1986, 위의 글, 14~18쪽.

23 리인동, 2002, 3기, 앞의 글; 리인동, 2002, 1호, 앞의 글, 25~28쪽;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 2009, 앞의 책, 26~27쪽.

24 김성우, 1988, 「三金堂 形式의 起源」,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5호(4권1호), 173~176쪽.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²⁵ 이어 2금당의 사례로 『위서』 권 114 석노지의 북위(386~535) 태조가 398년 평성에 사찰을 세우면서 “오층탑, 2개의 불전인 기사굴산전(耆闍崛山殿)과 수미산전(須彌山殿), 강당, 선당, 사문좌(沙門座)를 두었다”²⁶는 2 불전 기록을 주목하였다.²⁷

이러한 김성우, 허철준, 리인동 등의 고찰은 고구려 1탑 3금당의 기원과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건축사적 견해로 이를 4세기 이전 중국 초기 사찰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²⁸ 중국은 후한시대 불교가 전래된 후, 3세기까지 초기 사묘형에서 탑 중심의 방형 사찰로 변화하였으며 이후 1탑 1금당, 1탑 2금당이 기록에 보이다가 5세기 말에 1탑 1금당의 사찰 터가 확인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사찰에 1탑, 1금당, 강당, 기타 시설이 완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잠시 불전의 수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고구려에 영향을 미쳐 3금당이 출현하게 되었고 5세기 말에 정형화된 1탑 3금당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주목되는 불교신앙이 중국 전통 신앙과 융합했던 불교 전래 초기의 과거칠불신앙이며 과거칠불 관련 경전에 함께 등장하는 도솔천(天)에 머물고 있는 미륵보살의 존재이다. 이들은 5세기 초에 조성된 북량 소탑 복발부에 함께 장엄되었고 북위의 경주(涇州) 자사(刺史) 해강생(奚康生)이 509년, 510년에 조영한 농동(隴東)지구의 경양(慶陽) 북석굴사 165굴과 경천(涇川) 남석굴사 1굴 4벽에 봉안되었다.²⁹

특이한 점은 북석굴사의 경우, 정면(동벽)에는 과거겁 3불과 보살상이, 측면

25 김성우, 1996, 앞의 글, 12~14쪽.

26 “始作五級佛圖 耆闍崛山及須彌山殿 加以繡飾 別構講堂 禪堂 及沙門座 …”

27 김성우, 1988, 앞의 글, 177쪽.

28 강병희, 2012, 「중국 고대 불탑의 기원과 발전」, 『東洋美術史學』 창간호(1집), 1~37쪽; 현승욱, 2013, 앞의 글, 34~36쪽.

29 董華鋒 寧宇, 2010, 1기, 「南, 北石窟寺七佛造像空間布局之淵源」, 『敦煌學輯刊』, 103~109쪽.

인 남, 북벽에는 각각 현겁의 2불과 보살상이, 입구로 분리된 서벽 양 면에는 의좌에 앉은 미륵상이 모셔져 있어 석굴 내부가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된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⁰ 이것을 지상 위 사찰로 생각한다면 3금당과 중문이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4세기 이전의 과거칠불신앙, 이와 함께 나타나는 미륵보살에 대한 기원과 내용, 중국에 전래된 시기와 변용, 사찰건축과 불탑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III장에서 다루어 보았다.

III. 4세기 이전의 과거칠불신앙

1. 과거칠불과 미륵보살

과거칠불 신앙은 인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부파불교 이후 『아함경』 등의 대다수 초기 불교 경전에서 자주 설하여진다.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끊임없이 많은 현교와 잡밀경전이 번역되었으며 각 경전마다 칠불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현교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잡밀 경전들에서의 호칭은 거의 동일하다.

과거칠불 서술이 들어 있는 5세기 초까지의 경전 번역 상황을 보면 현교경전으로는 역자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후한(25~220) 25~220년 번역의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과 전위(前魏, 220~265) 240~254년 번역의 『칠불부모성자경(七佛父母姓字經)』,³¹ 서진(265~317) 축법호(竺法護)가 300년 혹은 291년에 번역한 『현겁경』 권6 제20 「천불명호품」, 동진(317~420) 397년 계빈삼장(闕

30 于向東, 2007, 「南北石窟寺的造像思想初探」, 『蘭州大學學報 社會科學版』 35卷 2期, 47~49쪽.

31 이역본으로 『장아함경』 권1이 있다.

賓三藏) 구담승가제파(瞿曇僧伽提婆)와 전진(351~394) 담마난제(曇摩難提)가 365년에 번역한 『증일아함경』 권44와 권45, 후진(後秦, 384~417)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축불념(竺佛念)이 413년에 번역한 『장아함경』 권1, 후진 399~413년에 불야다라(弗若多羅)가 번역한 『십송률』 권50, 후진 402~412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선비요법경(禪秘要法經)』 권중(中) 등이 있다.

잡밀 경전으로는 동진(317~420) 317~322년에 백시리밀다라(帛尸梨密多羅)가 번역한 『불설대관장경(佛說大灌頂經)』 권8, 동진 381~395년에 담무란(曇無蘭)이 번역한 『불설마니라단경(佛說摩尼羅剎經)』, 동진(317~420) 시기에 번역되어 실역된 『칠불팔보살소설대타라니신주경(七佛八菩薩所說大陀羅尼神呪經)』, 북량(397 혹은 401~439) 401~411년에 법중(法衆)이 번역한 『대방등다라니경(大方等陀羅尼經)』 등이 한역되어 전파되었다.³²

이러한 과거칠불에 대한 초기 경전의 내용과 개념은 불교 유물에서도 나타난다. 가장 오래된 예는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왕조의 3대 왕인 아육왕의 석주에 남겨진 “천애희견왕이 관정받은 지 14년 후에 구나함모니탑을 넓혀 세웠고 관정 20년 후에 친히 다시 와서 공양하였다(天愛喜見見灌頂十四年後, 拘那含牟尼塔再度增建, 灌頂二十年之後, 親來供養)”라는 기록이다.³³ 구나함모니불은 현겁의 두 번째 부처님으로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관이 이미 있었음을 알려준다.

최초의 조상(彫像)은 기원전 3세기³⁴ 조성으로 전하는 산치 대탑 복문에 횡렬로 조각된 칠탑과 성수(聖樹)로 무불상시대에 칠불을 대신하여 표현된 것이

32 彭建兵, 2009, 「盛唐以前敦煌石窟中的雜密七佛」, 『黔西南民族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9-2기, 29쪽; 殷光明, 2000, 앞의 책, 164~169쪽;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 내의 통합대장경의 해당 경전 원본, 번역본 서지해제.

33 占狔, 2014, 「宋代七佛塔研究-以浙江地區爲中心」, 浙江大學碩士專業學位論文, 77쪽의 각주 4) 참조.

34 서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탑의 조각에 대해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로 편년하고 있으며 동·서·남·북 4문의 조각은 조성 시기가 각각 다르다.

다. 이 외에 실크로드에서 2~4세기 칠불상이 발견되었는데 보살이 없는 칠불상으로 특이한 점은 전면의 4불 사이에 3불을 두고 있는 독특한 배치법이다.³⁵ 이어 쿠차 키질석굴에서도 4~6세기 유례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 중 4세기 석굴인 47굴은 주실 남, 북벽 기단 위에 같은 크기의 칠불 소조상이 잔존하며 미륵보살은 확인되지 않았다. 77굴은 주실에 소조 칠불입상이 있고 입상 사이 굴벽에 협시보살이 그려져 있으나 많이 훼손된 상태이며 미륵보살은 발견되지 않았다. 38굴은 후면 좌, 우측 회랑 벽 1단에 7기의 사리탑과 칠불이 모셔진 칠불탑 벽화가 확인되는데 동벽 문 상단의 원형 공간에는 도솔천궁에 있는 미륵보살이 그려져 있다. 이 같은 형식은 5세기 114굴과 6세기 80굴, 97굴에도 계승되어 나타난다.³⁶

7불과 미륵보살이 병렬된 조상 예는 더 많으며 2~3세기부터 나타난다. 간다라 탁티 바히(Takht-i-Bahi) 사원지³⁷에서 출토되어 파키스탄 페샤와르 박물관에 소장된 높이 27cm의 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병렬되었는데 여덟 번째 보살은 왼손에 정병을 들고 서 있다. 탁티 바히 XIV 지역에서 발견된 또 다른 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병렬되었으며 모두 높은 육계와 붉게 칠해진 발로 설법인을 하고 있다. 가장 오른쪽에는 왼손에 정병을 든 보살이 있다 (그림 4).³⁸

35 賴鵬舉, 2002, 『絲路佛教的圖像與禪法』 제35항, 法源寺·覺風佛教藝術文化基金會; 魏文斌, 1997, 「七佛, 七佛窟與七佛信仰」, 『絲綢之路』 36쪽; 宁宇, 2010, 1기, 앞의 글, 100쪽; 占翀, 2014, 앞의 글, 77~81쪽.

36 魏文斌, 1997, 위의 글, 36쪽; 宁宇, 2010, 1기, 위의 글, 100~103쪽; 李崇峰, 2014, 『佛教考古-從印度到中國』 I, 상해고적출판사, 239쪽과 도 23.

37 Fidaullah Sehrai, 1986(reprint at Lahore), *A Guide to Takht-i-Bahi*, Peshawar, Pakistan, pp. 58~59에 의하면 Takht-i-Bahi 사원지는 기원후 7세기까지 이어지지만 탑원, 승원지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에 속하며 주탑과 강당은 기원후 3~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康炳喜, 1996, 「韓國의 多角多層石塔」,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2쪽에 의하면 이곳에서 1세기로 추정되는 명문도 출토되었다고 한다.

38 Kurt A. Behrendt, 2004, *The Buddhist architecture of Gandhara*, BRILL,



그림 4 간다라 페사와르 탁티 바히 XIV 지역의 과거칠불과 미륵보살상, 1~3세기, 파키스탄
(Kurt A. Behrendt, 2004, Fig. 51)

일본 교토 개인소장인 2~3세기 조상비(造像碑)에는 설법인 불좌상 하단 장방형 감실 내의 두 공양인 사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7불 1보살상이 서 있으며, 또 다른 일본 개인 소장 유구는 높이 16cm 폭 57cm로 가운데 기둥을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구씩 병치된 7불 1보살상이 있다.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 소장인 높이 29.5cm 폭 58cm 유물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불과 왼손에 정병을 든 1보살이 병렬되어 있다. 유럽 개인 소장인 바하우르(Bajaur) 출토로 추정되는 유물은 3존상만 남아 있기도 하다.³⁹⁾

Leiden·Boston, Fig. 51; 이주형, 2003, 『간다라미술』, 사계절, 159~160쪽에도 탁티 바히 사원지 중심 구역 서남쪽에 스투코로 조성된 거대한 과거칠불상이 병렬되어 서 있었던 잔해가 소개되어 있다.

39) 宁宇, 2010, 1기, 앞의 글, 100~101쪽; 賀世哲, 1992, 4기, 「關於十六國北朝時期的三世佛與三佛造像諸問題(一)」, 『敦煌研究』, 3쪽.

한편, 과거칠불과 미륵보살상의 조합은 서역과 중국지역의 경우, 5세기부터 6세기까지 북량 소탑, 맥적산석굴 127굴, 병령사석굴 169굴, 돈항석굴, 경양 북석굴사(慶陽北石窟寺), 경천 남석굴사(涇川南石窟寺) 등에서 유행이 이어지며 다수 조성되지만 1~4세기까지는 뚜렷한 유례가 발견되지 않는다.⁴⁰

다만 4세기 이전으로 추정되는 누란(樓蘭) 고성(古城) 불탑에서 멀지 않은 LA. II 유지(遺址)에서 채집된 6개의 아치형 공간에 두광과 신평이 있는 선정인 자세의 6불이 새겨진 목제 유물, LB. II 유지에서 출토된 교각미륵과 왼쪽에 입불 옷자락 하부만 남겨진 목조 잔편(殘片)이 있어 관련 예로 주목된다. 두 유물은 양식적으로도 간다라와 중국 북서부 지역의 양식적 영향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누란이 중국 초기 불교 전파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중국 하서(河西) 지역 불교미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병렬형 칠불과 미륵보살의 조합 양식은 적어도 4세기경에는 간다라에서 서역을 거쳐 중국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¹

경전의 한역 상황도 25~220년에 한역된 『수십선계경(受十善戒經)』, 240~254년에 한역된 『칠불부모성자경』, 『장아함경』 권 1(『칠불부모성자경』의 이역본)과 365년에 한역된 『증일아함경』 권44와 권45, 서진 303년 축법호에 의해 한역된 『불설미륵하생경』⁴² 등에는 모두 과거칠불과 미래불 미륵이 언급되고 있다. 『장아함경』은 각 과거칠불이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이를 따랐던 신도들이 도솔천에 올라 있음을 설하고 있으며, 『불설미륵하생경』에서도 과거칠불과 동일하게 미륵이 도솔천에 머물다 내려와 부처가 되고 3회 설법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3~5세기 간다라, 서역, 중국에서의 칠불입상이나 좌상, 동일 공간

40 占翀, 2014, 앞의 글, 77~95쪽.

41 陳曉露, 2006, 4기, 「從八面體佛塔看犍陀羅藝術之東傳」, 『西域研究』, 70~72쪽.

42 『증일아함경』에서 따로 발췌한 경임.

안에 나누어져 배치된 과거칠불과 미륵보살, 병렬된 칠불과 미륵보살이 표현된 유물 등이 남겨진 것은 이러한 경전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특히 7불 1보살은 법장부와 관련 있는 개념으로 그들이 소송 부파불교의 과거칠불에 미륵보살을 보완하여 성립, 전파시켰다고 한다. 독일 학자 프란츠 베른하르트(Franz Bernhard)는 불교의 중국 전파에서 간다라어가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였는데 불교의 서역과 중국으로의 1차 전파를 한 집단은 간다라어를 사용한 법장부로 이는 설일체유부보다 앞선 시기라고 하였다.

그 증거로 가장 이른 현존 간다라어 한역은 강승개(康僧鎧)가 조위(曹魏) 가평(嘉平) 4년(252)에 낙양 백마사에서 번역한 『담무덕율부잡갈마(曇無德律部雜羯磨)』이며 이어 담체(曇諦)가 정원(正元) 원년(254)에 낙양에서 『담무덕갈마(曇無德羯磨)』 1권, 불타야사(佛陀耶舍)가 요흥(姚興) 홍시(弘始, 399~415) 연간에 장안에서 『담무덕계본(曇無德戒本)』 1권, 송 원가(元嘉) 8년(431) 양주(揚州) 지원사(祇洹寺)에서 『갈마(羯磨)』를 3역 하였다.

“담무덕”은 법장부의 원본 『사분율(四分律)』을 음역한 명칭으로 앤 헤이먼(Ann Heirman)도 5세기 초 불타야사와 축불념(竺佛念)이 함께 번역한 『사분율』 원본이 간다라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타림분지에서 발견되는 경전의 시기도 2~3세기까지 올라간다고 하였다. 또한 로어 샌더(Lore Sander)는 이에 비해 범문(梵文) 경전 필사는 5세기보다 이르지 않다고 하였다.⁴³

따라서 5세기 이전의 신강지역에는 법장부와 그들의 신앙이 전래되었고 이를 반증하듯 기림석굴에서 칠불과 미륵보살, 『장아함경』 내용의 벽화가 확인되고 있어 유사한 시기에 중국에도 전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분율』이 중국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경위도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43 以上 법장부 관련 다양한 학자의 견해는 李崇峰, 2014, 앞의 책, 199~240쪽 내용이며, 이 중 Franz Bernhard, Ann Heirman, Lore Sander 등의 관련 문헌은 217쪽 각주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불교 건축에서 팔각이 처음 나타나는 곳도 1세기 말 간다라 지역이며 범장부와의 연관성도 엿보인다. 카라완 불사, 바미안석굴 등에서 불상과 탑을 봉안하는 전당형 건축이 먼저 등장하며 이어 2~4세기에 팔각탑이 조성된다. 이들은 마투라지역에서 출토되어 현재 인도 렉나우박물관에 소장된 불탑, 아프가니스탄의 핫다의 방형 전각 내 불탑 기단(그림 5),⁴⁴ 탁실라의 탁티 바히 사원지 대탑 앞 봉헌소탑 기단⁴⁵(그림 6), 달마라지카대탑 사원지 주변의 작은 전방 후팔각(전면은 방형 후면은 팔각형) 건축 내의 불탑(그림 7 중 동글게 표시된 부분)⁴⁶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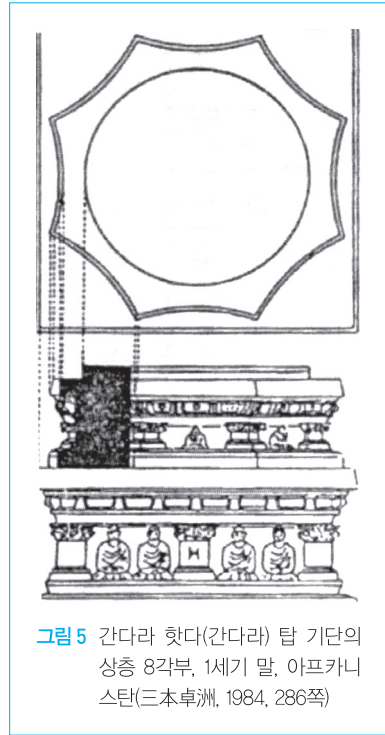


그림 5 간다라 핫다(간다라) 탑 기단의 상층 8각부, 1세기 말, 아프카니스탄(三本卓洲, 1984, 286쪽)

이들은 방형과 8각의 기단 각 면에 마치 감실처럼 코린트식이나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나누어 각 1구의 선정불을 장엄하였다.⁴⁸ 이 중 달마라지카대탑 사원지는 범장부 소속으로 밝혀졌는데 유독 주위 건축군이 대탑을 중심으로 8각 평

44 三本卓洲, 1984, 『インド佛塔の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286쪽.

45 각주 37) 참조.

46 김영애, 2004, 「달마라지카 사원구조와 불상조각」, 『講座 美術史』 23, 67쪽의 도 3. 또한 66~69쪽에 의하면 현재의 달마라지카 대탑은 기원후 1세기 초에 있었던 보수공사 후의 모습이며 탑과 건물지에 보이는 석축법은 기원전 1세기, 기원후 1세기 후반, 2세기 이후, 3~5세기 양식이 보인다고 한다.

47 陳曉露, 2006, 4기, 앞의 글, 65~67쪽; 康炳喜, 1996, 앞의 글, 11~12쪽.

48 특히 탁티 바히(Takht-i-Bahi) 사원지 봉헌 소탑의 8각 기단부에는 8개의 감실이 있어 복랑 소탑처럼 과거칠불과 미륵보살이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6 간다라 페사와르 탁티 바히 사원지 탐원 전면 우측 팔각 봉헌탑 기반부, 1~3세기, 파키스탄(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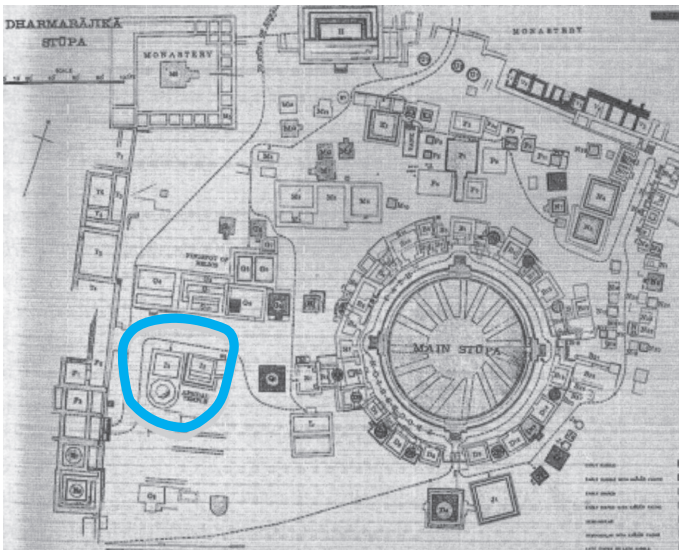


그림 7 달마라지카대탑 사원지 좌측 전방 팔각당 건축 내 8각 불탑, 기원전 1~기원 후 5세기, 파키스탄(김영애, 2004.12, 도 3)

면을 이루며 봉헌탑, 사당, 승방들이 배치되고 있기도 하다.⁴⁹

서역에서도 3~4세기 로프 노르(Lop Nur) 서안 지역인 누란에서 고성(古城) 북각(北角)의 일명 LA, X 지역에서 8각 평면의 탑이 확인된다. 이곳은 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현재 탑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m 정도이다. 방형 탑기단 위에 팔면체 결구가 있고 위로 원형 탑신과 복발이 있어 전형적인 간다라 팔각탑 모습이며 근처에서 칠불과 미륵보살로 확신되는 목판 조각도 발견되고 있어⁵⁰ 2~3세기의 타림분지에서도 이러한 양식이 전래되어 유행했던 상황을 전해준다.⁵¹

결국 2~4세기, 팔각전, 팔각기단 불탑이 간다라 지역에 나타나며 법장부와 연관되어 전래되고 한역된 관련 경전들과 맞물려 과거칠불과 관련된 과거칠불상, 과거칠불과 미륵보살상 등이 유물과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어 간다라에서 시작된 팔각탑, 과거칠불, 과거칠불과 미륵보살도 서역을 거쳐 중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초기 과거칠불신앙과 성격

4세기 이전 인도, 간다라에서 시작되어 서역을 거쳐 중국 북서부에 도착하였던 과거칠불은 칠불상, 칠불과 미륵보살의 병렬형과 동일 공간 내부에 나누어져 봉안되는 양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421년을 상한으로, 5세기 전반에 조성된 북량 소탑에서 그 확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이후 북조 시기에 개착된 운강석굴, 용문석굴, 공현석굴, 경양 북석굴사, 경천 남석굴사, 돈황막고굴, 병령사석굴, 향당산석굴, 맥적산석굴 등에서 대량 출현하며 이후 청대까지 이어진다.⁵²

그렇다면 전래된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의 양상은 어떠했을까?

49 김영애, 2004, 앞의 글, 65~67쪽.

50 각주 26) 참조.

51 陳曉露, 2006, 4기, 앞의 글, 70~72쪽.

52 張君梅, 2016, 「晉東南의 七佛殿與七佛信仰」, 『文物世界』, 52~54쪽.

다행히 이와 관련하여 단편적이지만 몇 가지 관련 사료가 남아 있어 그것들을 통하여 중국에서 신앙된 초기 과거칠불에 대한 상황에 접근해보려 한다. 이 내용은 중국 초기 사원과 고구려 사찰배치를 이해하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당나라 장언원(張彥遠, 815~875년경)이 847년에 쓴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 제5권, 서진의 위협(衛協, 265~316)과 동진의 고개지(顧愷之, 344~406년경)편에는 고개지의 『논화(論畫)』에 언급된 위협(衛協)의 “七佛與大列女”, 혹은 “七佛及夏殷與大列女” 그림이⁵³ 조금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데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이는 위협의 “七佛及夏殷與大列女”라는 그림에 대한 고개지의 저술 속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해당 문장 속 병렬된 그림들의 명칭에서 “與”, “及”으로 연결된 예는 이것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두 그림은 일련의 계획아래 연관성 있게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夏殷與大列女”는 하나라 우왕과 그의 처 도산여(涂山女), 상나라 왕 탕(湯)과 그의 왕비 신씨(嫔氏)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다면 옛 조상이며 성현인 이들이 칠불과 연관되어 그려졌다고 볼 수 있어 중국 초기 불교가 전통 제례와 융합하였던 측면을 전해주는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초기 불교에서 전통 사상과 결합된 예는 무덤 안 부장품에서도 나타난다.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 강녕현(江寧縣) 은항오고(殷巷五庫) 손오(孫吳, 229~280)묘에서는 천책(天冊) 연간(254~275)에 조성된 과거칠불이 장식된 혼병(魂瓶)이 출토되었다.⁵⁴ 이처럼 중국에서는 초기 불교가 중국 전통 제례, 장묘 의례와 융합하였던 상황을 전해주는 유물이 다수 확인되며 후대인 북위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양현지(楊銓之)가 547년에 저술한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 권4 성서(城西)의 대각사(大覺寺) 조항에는 “大覺寺 廣平王懷 捨宅也 … 北瞻芒嶺 南眺洛汭 東望宮闕 西顧旗亭 … 懷所居之堂 上置七佛 …”⁵⁵라고

53 장언원 편, 조송식 역, 2009, 『역대명화기』 하, 시공사, 51~53쪽과 82~85쪽.

54 李正曉, 2003, 「中國內地早期佛教造像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9쪽 도 41-3.

하여 자신의 저택을 희사하여 사찰을 지었는데 불교전당이 아닌 자신이 머무르는 전당 상식에 칠불을 모셨음을 알려준다. 한편, 이는 2개의 전당으로 볼 여지도 있다. 회(懷)는 한화(漢化)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낙양으로 천도한 효문제(孝文帝) 탁발굉(拓跋宏, 467~499)의 아들로,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칠불전당의 조성은 5세기 후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칠불은 불당과는 다른 성격의 전각에 모셔질 수도 있어 2 금당 사찰의 등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며 부처, 옛 성현, 조상이 모두 천(天)에 계시므로⁵⁶ 이들이 사찰 안에서 융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양나라 승려 보창(寶唱)이 지은 『비구니전(比丘尼傳)』 4권⁵⁷의 내용은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비구니전』 권1, 6의 동진의 북영안사(北永安寺) 담비(曇備)비구니전에는 그녀가 단양(丹陽) 건강(建康) 사람이며 계행을 중시하여 힘써 닦았는데 4층탑·강당·방우(房宇)를 세우고, 와불과 부처님 일곱 분을 모신 불단(七佛龕堂)을 조성했다⁵⁸고 하여 4세기 말경 건강지역에서 사찰 감실에 칠불을 모신 칠불전이

55 楊街之撰, 林東錫譯註, 2009, 『낙양가람기』, 동서문화사, 436~438쪽.

56 深津行徳, 1997, 「高句麗古墳壁畫を通してみた宗教と思想の研究」, 高句麗研究會編, 『高句麗古墳壁畫』(高句麗研究 4), 422쪽에서는 대승불전에서 범부가 왕래하는 3세계를 모두 “天”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한편, 강병희, 2005, 「조선의 하늘제사[祭天] 건축-대한제국기 원구단(圓丘壇)을 중심으로」,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397~398쪽에 의하면 『주례』, 『예기』, 『춘추』, 『시경』, 『서경』, 『주역』 등의 유교 경전과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도성 밖 야외에서 드리는郊祀, 태산에서의 封이라는 제천의례가 있었으며 주나라의 시조가 상제와의 교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 조상을 配天하였다고 한다.

57 이 책은 1권은 동진(東晉, 357~511) 시기 13명, 2권은 남조 송(宋)나라 시기 23명, 3권은 남조 제(齊)나라 시기 15명, 4권은 남조 양나라 시기 14명 등 진(晉) 승평(升平, 357~361) 연간에서 양(梁) 천감(天監, 502~519) 연간까지 모두 65명의 비구니 전기를 모아 서술한 것이다.

58 “... 到永和十年后, 爲立寺于定陰里名永安今之何后寺是謙虛導物, 未嘗有矜慢之容, 名譽日廣, 遠近投集衆三百人. 年七十三, 泰元二十一年卒. 弟子曇羅, 博覽經律, 機才瞻密, 勅續師任, 更立四層塔, 講堂, 房宇又造臥像及七佛龕.” (http://kabc.dongguk.edu 내 통합대장경 중 『비구니전』 1卷, 6)

조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어 『비구니전』 권1, 10의 동진 신림사(新林寺) 도용(道容)비구니전에는 그 녀가 계율이 맑고 길흉을 잘 점쳐 성인(聖人)으로 알려졌는데 진(晉) 간문제(371~372)가 매양 도교의 사당을 출입할 때마다 괴이한 신(神)을 보자 도용을 맞이하여 7일간 목욕재계하고 팔계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시행한 지 7일 만에 이들이 모두 사라졌다⁵⁹고 하여 당시 사람들이 일상의 현상을 귀신과 연결 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도교 대신 불교의 팔관재계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4세기 말경, 불교가 처했던 현실로 전통 사상과의 융합 상황을 전해준다.

당시 사회가 다양한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이를 과거칠불 신앙과 팔관 재계로 해결하고자 했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경전 중의 하나가 동진 381~395년에 축담무란(竺曇無蘭)이 번역한 『불설마니라단경(佛說摩尼羅檀經)』이며 『마니라단신주경(摩尼羅檀神呪經)』 혹은 『마니라단신주경(摩尼羅檀神呪經)』 1권과 동일하다. 이 경은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으며 내용은 귀신을 물리치는 법을 설한다. 제목에 보이는 마니라단은 원래 보배구슬을 의미한다. 부처님이 세속의 중생들이 많은 병을 앓는 것은 모두 귀신들의 장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병을 앓을 때 이 경을 읽으라고 한다. 이 경은 유위불(有爲佛)과 석가문불(釋迦文佛) 등 일곱 부처님이 설한 것으로 이 경을 독송하면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 병이 치유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거나 도둑·수재·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초기 밀교 경전에서처럼 여기서도 일곱 부처님의 제재(除災)를 설하며, 재앙을 일으키는 귀신들의 이름도 열거된다.⁶⁰

한편, 『비구니전』 권3 제나라 동청원사(東靑園寺) 업수(業首)비구니전에는 원가(元嘉) 2년(425)에 왕경심(王景深)의 어머니 범(范)씨가 왕탄(王坦)의 옛 사당 자리를 업수에게 보시하여 청원사(靑園寺)를 지었는데 원가 15년(437) 업수

59 <http://kabc.dongguk.edu> 내 통합대장경 중 『비구니전』 1卷.

60 <http://kabc.dongguk.edu> 내 통합대장경 중 『佛說摩尼羅檀經』 경문과 해제 참조.

가 다시 절을 넓혀 서쪽에 불전을 창립하고, 다시 절 북쪽을 개척하여 승방을 세워 사찰을 크게 일으켰으며 재(齋)를 엄숙하게 지냈다⁶¹고 한다. 또한 당 허송(許崇)의 『건강실록(建康實錄)』 권12에는 불전을 짓기 전에 청원사에 칠불전이 있었음⁶²을 언급하고 있어 청원사에는 옛 사당 자리에 세워져 재를 지냈던 칠불전과 불전, 즉 2금당이 함께 있었던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칠불신앙은 과거칠불을 믿으며 재회⁶³를 통해 계율을 지키고 참회하면 죽은 자와 산 자의 멸죄, 갖가지 재액과 환난을 막을 수 있으며 죽은 후 도솔천에 올라 그곳에서 미륵을 만나 설법을 듣고 하생하여 불도를 이루게 된다는 내용으로⁶⁴ 망자를 위한 천도의식으로 변용, 습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구니전』 권4 양나라 선림사(禪林寺) 정수(淨秀)비구니전에는 그녀가 청원사(淸園寺) 비구니 업수의 제자로 계율을 잘 지키고 삼업 수행에 정진하며 마나타(摩那埵: 여섯 날 여섯 밤을 참회하는 것)를 행하여 대중을 이끌었으며 이에 청정함으로 용왕과 여러 귀신이 그녀를 수호하였고 수명을 마치자 도솔천에 갔다⁶⁵고 한다.

결국 5세기 북량 소탑과 하서의 여러 석굴에서 과거칠불, 과거칠불과 미륵상이 조성되기 이전인 불교 전래 초기에 과거칠불 신앙과 사상이 중국 북서부를 거쳐 낙양과 건강 등의 내륙 주요 도시로 전래되어 동진(317~412) 시기에는 칠

61 “… 元嘉二年王景深母范氏，以王坦之故祠堂地施首，起立寺舍名曰淸園，齋肅徒衆，甚有風規。潘貴妃歎曰：‘首尼弘振佛法’甚可敬重。以元嘉十五年，爲首更廣寺西創立佛殿，復拓寺北造立僧房，賑給所須，寺業興立，衆二百人，法事不絕 …”(http://kabc.dongguk.edu 내 통합대장경 중 『比丘尼傳』 2卷, 17).

62 “置淸園寺，東北去縣二里 案『塔寺記』駙馬王景琛爲母范氏 宋元嘉二年 以王坦之祠堂地與比丘尼業首爲精舍 十五年潘淑儀施西營地以足之起殿 又有七佛殿二間 泥素精絕 後代希有及者。”(中國 維基文庫 <https://zh.wikisource.org/wiki/建康實錄卷12>, 宋 太祖文皇帝 2年 12月條); 賀雲翱 著, 서윤경 譯, 2011, 앞의 글, 37쪽.

63 앞의 검토로 보아 여기서의 재회는 팔관재계였을 것이다.

64 魏文斌, 1997, 앞의 글, 37쪽; 占翀, 2014, 앞의 글, 100쪽.

65 http://kabc.dongguk.edu 내 통합대장경 중 『비구니전』 4권.

불전이 선정(禪定)과 함께 망자(亡者)의 천도, 천신 신앙, 도술천 상생신앙을 위한 지계와 재회라는 대중을 위한 실천적 신앙 의례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이후 제, 양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초기 고구려 사찰과 과거칠불신앙

고구려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소수림왕 2년(372)이다. 『삼국사기』 권18 고구려 본기 6에는 “소수림왕 2년 하6월(夏六月)에 진왕(秦王) 부견(苻堅)이 사신과 승려 순도(順道)를 파견하고 불상(佛像)과 경문(經文)을 보내니 왕이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보내 사례하고 태학(太學)을 세워 자제(子弟)들을 교육하였다. … 4년에 승려 아도가 왔으며 … 5년 춘2월(春二月)에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두고 다시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를 두었다”고 한다.

한편, 『삼국유사』 제3흥법 3 「순도조려(順道肇麗)」조에는 “고구려 본기에 이르기를 소수림왕 2년 임신은 동진 함안(咸安) 2년으로 효무제가 즉위한 해이다.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며 불상과 불경을 보냈다(당시 부견은 장안에 도읍하였다) 또 4년 갑술에는 아도가 동진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전한다.

이 두 사료를 함께 참조하면 순도는 전진에서, 아도는 동진에서 왔으며 불교가 전래된 직후에 태학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 불교는 4세기 하서 지역에서 중국 전통사상과 새롭게 전래된 불교를 융합하여 발전시켰던 전량의 인적, 물적 자원을 장안에 이식시켰던 전진 불교와 칠불전과 관련 팔관재회 신앙 기록이 보이는 동진의 불교 양상이 함께 전해졌다고 생각된다.

이보다 앞서 있었던 동진의 고승 지순도림(支順道林, 314~366)과 고구려 도인(道人)과의 서신 왕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⁶⁶ 결국 고구려에 초기 전래

66 정선여, 2005, 「高句麗 佛教史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쪽.

된 불교는 하서지역⁶⁷과 동진의 과거칠불신앙, 관련 경전에 함께 등장하는 미륵의 생천(生天)신앙이 함께 전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사찰 조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탑 3금당 절터는 중금당이 기단부 구조에서 좌, 우 금당보다 격이 높고 대체로 동·서 금당의 전면 길이가 긴 편이며 팔각탑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중국 경양 북석굴사 165굴의 배치처럼 중금당에 과거집 3불, 동·서 금당에 현집 각 2불, 팔각탑이나 중문에 미륵이 봉안되었다고 추정해볼 수는 없다. 오히려 옆으로 긴 동·서 금당에 조상신과 하늘, 땅, 산 등의 각종 천신과 영성사직⁶⁸을 나누어 모셨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금당에 석가불, 혹은 과거칠불이나 칠불감을 봉안하였을 것이다.

일찍이 사이토 다다시(齊藤忠)는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고구려전의 “궁실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머무는 곳(궁전) 좌우에 대옥(大屋)을 지어 귀신에게 제(祭)지내고 또 영성사직에 사(祀)했다(好治宮室 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又祀靈星社稷)”는 기록을 근거로 1탑 3금당의 사찰배치가 좌, 우에 귀신과 영성사직을 봉안하여 제사를 지내는 고구려 궁전 건축의 영향을 받았다⁶⁹고 보았는데 바로 이러한 지역 건축적 특성이 1탑 3금당이 출현하게 된 중요한 요인

67 『晉書』「載記」卷122에 의하면 351년 부견의 前秦 정권이 건립되고 符堅은 楊翰을 高昌太守로, 梁熙로 하여금 凉州 刺史, 西羌校尉 등으로 임명하였다. 양희는 符堅의 人德을 선양하여 建元 14년(378) 서역 10여 개 국가에서 조공을 받게 되며 3~4년 후에는 서역의 62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한다.

68 趙宇然, 2010, 「4~5세기 高句麗 國家祭祀와 佛教信仰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71~85쪽에 의하면 『後漢書』祭祀志에 “后稷에 제사 드리면서 이를 가리켜 ‘靈星’이라 일컫는 것은, 후직을 영성제사에 配祭하기 때문이다[『後漢書』志第9, 祭祀下, “言祠后稷而謂之靈星者, 以后稷又配食靈星也”]; 清代 王先謙의 『後漢書集解』에서는 “靈星”은 후직을 대신하는 이름(代名)이기 때문이며, 후직을 영성에 배제하기 때문이 아니다.”; 『史記』封禪書의 漢高祖 8년(기원전 199) 기록에서 ‘靈星祠’가 곧 ‘후직의 사당’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한다. 따라서 영성과 사직은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9 齊藤忠 著, 孫大俊 譯, 1981, 『고대 한국문화와 일본』, 원광대학교출판부, 55~56쪽.

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어 중금당과 동일한 건축적 격식으로 조성된 팔각탑에는 8각의 옥기인 황중(黃琮)으로 제례 드리는 명당건축의 중궁처럼⁷⁰ 천에 제사, 혹은 멀죄의식을 통한 환난제거, 망자(亡者)의 천도, 도술천 상생 등을 위한 팔관제에 의례를 행하였던 곳으로 가정해보면 1탑 3금당과 8각탑에 대한 전체 구성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⁷¹ 이때 팔각탑의 상징성에는 불교적 요소에 중국과 고구려의 민족적·전통적 제천 사상이 함께 반영되었을 것이다.⁷²

이러한 양상을 대변해주는 후대의 유례가 있다. 6세기 말~7세기 전반의 신라 예이지만 『삼국유사』 권 5 감통 7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조의 안홍사 불전 벽화에 53불과 함께 육류성중·제천신·오악신군(六類聖衆·諸天神·五岳神君)이 그려져 있으며 해마다 봄, 가을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 점찰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점찰경(占察經)』에는 “일심으로 과거칠불과 53불을 예경하며”라고 하여⁷³ 과거칠불이 등장한다. 과거칠불과 53불신앙은 지계(持戒)와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시킨다는 점, 망자를 위한 천도를 중시한다는 점, 신앙의 대중화를 도모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먼저 등장한 과거칠불 신앙이 53불신앙에 흡수되어 계승된 것으로 보이며⁷⁴ 안홍사 불전에 부처님과 함께 육류성중, 제천신, 오악신군 등이 함께 그려진 것은 과거칠불 신앙에서부

70 강병희, 2010, 「고대 중국 건축의 8각 요소 검토-고구려 8각 불탑의 조망을 위하여」, 『韓國思想史學』 36, 19~27쪽.

71 1탑 3금당의 彫像 배치를 중금당에 석가불, 팔각탑에 과거칠불과 미륵불, 동·서 금당에 조상, 영성과 사직을 모실 수도 있을 것이다.

72 이 점은 강병희, 2005, 앞의 글, 397~484쪽과 강병희, 2010, 앞의 글, 6~27쪽에서 다루고 있다.

73 김정희, 2021, 「『삼국유사』 소재불화 기록과 신라의 불화」, 『美術史學』 42, 14~16쪽.

74 김민구, 2005, 「楡岾寺 53佛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4쪽에는 과거칠불은 원시불교 단계에서 형성되었고 연등불을 필두로 하는 53불은 수기를 중시하는 대승불교의 흥기와 함께 발전하여 초기에는 별다른 연관이 없었는데 점차 이들을 시간적 순서로 연결하는 전통이 생겨났다고 한다.

터 비롯된 일측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⁷⁵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금당의 문제이다. 김성우는 상오리사지와 정릉사지 탐구역이 2금당임을 주장하며 동아시아 불교건축의 흐름에서 볼 때 고구려의 3금당은 사묘적 성격의 1탑 사찰에서 2금당 사찰이 나타나고 이를 이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2금당으로의 변화에는 삼국시대 위나라에서부터 육조시대까지의 궁전의 정전 건축에 영향을 받았다고⁷⁶ 생각한다.

그리고 2금당의 사례로 『위서』 권114 석노지의 북위(386~535) 태조가 398년에 오층탑, 2개의 불전인 기사굴산전(耆闍崛山殿)과 수미산전(須彌山殿), 강당, 선당, 사문좌(沙門座)를 둔 사찰을 건립하였다⁷⁷는 기록을 주목하였다.⁷⁸ 여기서 전각의 성격상 기사굴산전에는 석가 등의 과거칠불을, 수미산전에는 미륵보살을 모셨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과거칠불신앙과 연결하여 볼 여지도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5 최광식, 1993, 「한국의 고대신앙과 불교」, 『僧伽』 10, 중앙승가대학교, 146쪽에는 이를 토착신앙과의 습합 사례로 들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에서 이미 습합된 양상이 함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광식은 최광식, 1999, 「韓國 古代의 天神觀」, 『사학연구』 58·59, 49~73쪽; 최광식, 2007b, 「한·중·일 고대의 제사제도 비교연구」, 『선사와 고대』 27, 257~276쪽; 최광식, 2007a,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등을 통해 한·중·일 팔각건축을 전통 제례신앙의 측면에서 살펴봄과 불교와 토착 신앙과의 습합적 측면을 조명하고 있어 이후 이와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6 각주 18) 참조.

77 “始作五級佛圖 耆闍崛山及須彌山殿 加以續飾 別構講堂 禪堂 及沙門座 ….”

78 각주 18) 참조.

V. 맺음말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리해볼 수 있었다. 첫째, 고구려 1탑 3금당 사찰들은 5세기 말 청암리사지에서 완성적 형태를 보이며 모두 평양 지역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은 5세기에 시작되고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두 처음부터 8각탑을 중심에 둔 3금당 형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유적에 대한 층위 발굴이 없어 확신할 수 없다.

즉, 토성리사지에서는 4세기 말부터 5세기 말까지의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 4세기 말 창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3금당과 탑의 크기, 건축물 간의 공간이라는 건축적 배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릉사지와 청암리사지의 중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상오리사지와 427년~5세기 중엽에 조성된 정릉사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자는 불탑과 2금당지가 있는 지역만 확인되어 3금당 형식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건축적 배치 양상은 가장 초기적인 모습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1탑 3금당은 중금당이 없는 2금당 형식으로 시작되어 3금당으로 변화한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정릉사지도 동·서 금당과 탑이 회랑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동·서 금당의 크기도 다르고 대칭도 아니어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정에 힘을 더한다.

둘째, 고구려의 8각의 1탑 3금당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는 팔각탑은 5세기 전반에 조성되는 북량(北凉) 소탑(小塔)과 연결하거나 1탑 3금당 건축 배치는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의 인문학적 천문관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탑과 금당의 관계, 각 금당의 용도 등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에 북량 소탑이 5세기 전반에 조성되어 이들에게 보이는 5세기 이전 불교 요소로 과거칠불과 미륵보살을 주목하여 살펴본 결과 특히 과거칠불신앙과 전통신앙의 습합이 서진 시기부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과거칠불은 『아함경』 등의 초기 경전에서부터 언급되고 있으며 미륵보살도 함께 등장한다. 관련 기록과 유물은 기원전 인도에서부터 나타나며

2~4세기에는 간다라, 서역에서 과거칠불상, 과거칠불과 미륵보살이 병렬된 모습으로, 혹은 한 공간 안에 봉안되는 양식으로 발견된다.

넷째, 과거칠불신앙은 중국 북서부 지역에 도달한 후 중국 내 각 중요 도시로 전파되었다. 그 결과 과거칠불에 대한 신앙이 서진 시기부터 시작하여 동진 시기인 4세기 말은 물론 남북조시대까지 이어진다. 기록에 의하면 조상과 부모를 위한 사당을 대신하여 칠불전당이 조성되고 과거칠불을 믿어 계율을 지키고 참회하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죄가 소멸되며, 이 때문에 천신이 돌보아주어 갖가지 재액과 환난을 막을 수 있으며 죽은 후에는 도솔천에 올라 그곳에서 미륵을 만나 설법을 듣고 하생(下生)하여 불도를 이루게 된다고 믿었다. 이는 불교 전래 초기인 후한 말의 사묘적·격의적 성격을 4세기까지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섯째, 고구려에도 일찍부터 과거칠불신앙이 전해졌으며 4세기 말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해지는 계기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수용되면서 고구려의 궁궐 앞에 귀신과 영성사직을 모시는 큰 건물을 두는 건축적 전통과 융합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삼금당과 팔각탑 형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5세기는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멀리 떨어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국력도 강성했던 시기이다. 그렇다면 국내성을 기반으로 열렸던 동맹의 제천의식과 비견될 만한 조상과 제천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제례의 정비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조상을 위한 전통 제례를 위한 신앙으로 변모하였던 과거칠불신앙과 기존의 고구려 사묘 건축이 결합되어 8각의 1탑 3금당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고구려만의 양식 성립은 다른 북방 이민족들이 세력이 강해진 후 중원으로 진출하며 중원적 군현제도, 정치체제, 문화를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한 반도와 중국 동북부 지역을 확보하며 자신들의 전통적 군사, 정치체제, 문화를 지켰던 고구려⁷⁹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고구려는 이런 정체성을

79 여호규, 2019, 「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

기반으로 모든 국가와 병존책을 추구하는 고구려적 천하관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상당기간 유지하였으며⁸⁰ 멸망 후에도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동북아 지역에 계승되어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⁸¹

교」, 『한국고대사연구』 67, 111~118쪽.

80 노태돈, 1999, 앞의 책, 385~388쪽.

81 강병희, 2022, 「遼塔에 계승된 4-6세기 중국 동북지역 불교 미술」, 『인문과학연구』 34집, 243~286쪽.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구려를 포함한 중국 동부지역의 4~6세기 과거칠불신앙의 영향으로 요나라의 불탑, 사리구, 경당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과거칠불이 장엄된다. 또한 요대에 조성된 봉국사 대웅전에는 과거칠불이 봉안되었는데 과거 6불은 개국 이래 요나라 太祖, 太宗, 世宗, 穆宗, 景宗, 후에 추봉된 耶律阿保機의 부친인 德宗(혹은 성종의 모친)으로, 석가모니불은 成宗 자신과 동일시하여 조성하였다고 보고 있어 불교와 전통적 제사의례가 융합된 사례로 생각되며 봉국사 대웅전 내, 각 불상 앞에는 커다란 향로가 배치되어 있어 주목된다.

참고문헌

자료

- 司馬遷, 『史記』.
房玄齡·李延壽, 『晉書』.
魏收, 『魏書』釋老志.
范曄, 『後漢書』.
王先謙, 『後漢書集解』.
金富軾, 『三國史記』高句麗本紀.
장인원 편, 조송식 역, 2008, 『역대명화기』 하, 시공사.
楊銜之 撰, 林東錫 譯註, 2009, 『낙양가람기』, 동서문화사.
寶唱, 『比丘尼傳』 1~4권, <http://kabc.dongguk.edu> 내 통합대장경.
曇無蘭 譯, 『佛說摩尼羅剎經』, <http://kabc.dongguk.edu> 내 통합대장경.
中國 維基文庫, <https://zh.wikisource.org/wiki/建康實錄>.

단행본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 2009, 『한·중·일 고대사지 비교연구(1)-목탑지편』,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 2010,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2)-금당지편』,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편, 2012,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3)-강당지·승방지·부속건물지·문지·회랑지편』, 문화재청·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이주형, 2003, 『간다라미술』, 사계절.
(재)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편, 2014, 『백제역사유적지구연구총서』 2-사찰.
齊藤忠 著, 孫大俊 譯, 1981, 『고대 한국문화와 일본』, 원광대학교출판부.
최광식, 2007,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賴鵬舉, 2002, 『絲路佛教的圖像與禪法』 제35항, 法源寺·覺風佛教藝術文化基金會.
殷光明, 2000, 『北涼石塔研究』, 財團法人 覺風佛教藝術文化基金會.
李崇峰, 2014, 『佛教考古-從印度到中國』 I, 上海古籍出版社.
湯用彤, 2006, 『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 上冊, 北京: 崑崙出版社.

三本卓洲, 1984, 『インド佛塔の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Behrendt, Kurt A., 2004, *The Buddhist architecture of Gandhara*, BRILL, Leiden·Boston(Copyright 2003 by Koninklijke Brill NV, Leiden, The Netherlands).

Sehrai, Fidaullah, 1986(reprint at Lahore), *A Guide to Takht-i-Bahi*, Peshawar, Pakistan.

논문

강문호, 1997, 「전진(前秦) 부견(符堅)의 정치와 제권(帝權)」, 『中國學報』 37권 1호.
康炳喜, 1996, 「韓國의 多角多層石塔」,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_____, 2005, 「조선의 하늘제사[祭天] 건축」,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_____, 2010, 「고대 중국 건축의 8각 요소 검토-고구려 8각 불탑의 조망을 위하여」, 『한국사상사학』 36집.
_____, 2012, 「중국 고대 불탑의 기원과 발전」, 『東洋美術史學』 창간호(1집).
_____, 2022, 「遼塔에 계승된 4-6세기 중국 동북지역 불교 미술」, 『인문과학연구』 34집,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김동현, 1983, 「고구려의 정릉사지」, 『전통문화』.
김민구, 2005, 「楡岾寺 53佛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우, 1988, 「三金堂 形式의 起源」,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5호(4권 1호).
_____, 1996, 「고구려사지를 중심으로 고찰한 5세기 전후 불사계획의 변화」, 『건축역사연구』 5권 1호(통권 9호).
_____, 2014, 「중국사례와 비교를 통해 본 고구려 사지의 역사적 의미」,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제30권 제6호(통권 308호), 대한건축학회.

- 김영애, 2004, 「달마라지카 사원구조와 불상조각」, 『講座 美術史』 23.
- 김일성종합대학 편,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정기, 1991, 「고구려 정릉사지 및 토성리사지 발굴보고 개요와 고찰」, 『불교미술』 10호, 동국대학교 박물관.
- 김정희, 2021, 「『삼국유사』 소재불화 기록과 신라의 불화」, 『美術史學』 42.
- 남일룡, 1987,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7-4기.
- 리인동, 2002, 1호, 「1탑 3금당식절건축형식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22호.
- _____, 2002, 3기, 「정릉사증심건축군충평면고찰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24호.
- 美田美代治 著, 신영훈 역, 1962a, 「조선 상대건축과 가람배치에 미친 천문사상의 영향」, 동이문화연구원·동산문화사 편, 『한국상대건축의 연구』.
- _____, 1962b, 「조선 상대건축과 가람배치에 미친 천문사상의 영향에 관한 補遺」, 동이문화연구원·동산문화사 편, 『한국상대건축의 연구』.
- 朴漢濟, 1985, 「前秦苻堅政權의 性格: 胡漢體制와 統一體制의 구축과정과 관련하여」, 『東亞文化』 23, 서울대동아문화연구소.
- 소현숙, 2010, 「梁武帝와 同泰寺」, 『불교학보』 54.
- _____, 2013, 「皇權과 佛教儀禮: 北魏 行像과 梁의 無遮大會」, 『중국고중세사연구』 29.
- 양은경, 2009, 「中國佛教寺刹의 검토를 통해 본 百濟 泗泚期 佛教寺刹의 諸 問題」, 『百濟研究』 50.
- 여호규, 2012, 「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67.
- 이강근, 2005, 「高句麗 八角形建築址에 대한 연구」, 『先史와 古代』 23.
- 이성제, 2012, 「4세기말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68.
- 李興範, 2001, 「高句麗時代淸岩里廢寺式伽藍의 型式와 思想基盤」, 『한국불교학』 28, 한국불교학회.
- 정선여, 2005, 「高句麗 佛教史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趙宇然, 2010, 「4~5세기 高句麗 國家祭祀와 佛教信仰 研究」,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흥규, 2014, 「고구려 기와의 분류와 특징에 관한 일고찰」, 『先史와 古代』 41.
- , 2019,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변천 양상」, 『동북아역사논총』 64.
- , 2019, 「기와로 본 평양지역 고구려 사원유적의 조영시기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65집.
- 지배선, 2008, 「전진(前秦) 부견(苻堅)에 대하여-358년까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4.
- , 2009, 「전진(前秦) 부견(苻堅)에 대하여-A.D.358~365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45.
- 최광식, 1993, 「한국의 고대신앙과 불교」, 『僧伽』 10, 중앙승가대학교.
- , 1999, 「韓國 古代의 天神觀」, 『사학연구』 58·59.
- , 2007, 「한·중·일 고대의 제사제도 비교연구」, 『선사와 고대』 27.
- 賀雲翱 著, 서운경 역, 2011, 「六朝 都城의 佛教寺院과 塔 研究」, 『호서고고학』 24.
- 한인호, 1981, 「정릉사 건축의 평면 구성에 대하여」, 『역사과학』 1981-2기.
- 허철준, 1986, 「정릉사의 평면 복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고찰」, 『역사과학』 1986-4기.
- 현승욱, 2013, 「중국초기 불교 사원 배치에 관한 연구-후한부터 남북조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 홍매선·김성우, 2014, 「5~6세기 중국 1탑1금당 불교사찰 배치계획의 변화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권 7호.

- 魏文斌, 1997, 「七佛, 七佛窟与七佛信仰」, 『絲綢之路』.
- 張君梅, 2016, 「晉東南의 七佛殿與七佛信仰」, 『文物世界』.
- 宁宇, 2010, 1기, 「南, 北石窟寺七佛造像空間布局之淵源」, 『敦煌學輯刊』.
- 占翀, 2014, 「宋代七佛塔研究-以浙江地區爲中心」, 浙江大學碩士專業學位論文.
- 陳曉露, 2006, 4기, 「从八面体佛塔看犍陀罗藝術之東傳」, 『西域研究』.
- 彭建兵, 2009, 「盛唐以前敦煌石窟中的雜密七佛」, 『黔西南民族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9-2기.
- 賀世哲, 1992, 4기, 「關於十六國北朝时期的三世佛與三佛造像諸問題 (一)」, 『敦煌研究』.

- 深津行徳, 1997, 「高句麗古墳壁畫を通してみた宗教と思想の研究」, 高句麗研究會編, 『高句麗古墳壁畫』(高句麗研究 4).
- 齊藤忠, 1940, 「平壤大同郡林原面上五里高句麗建築址の調査」, 『考古學雜誌』 30卷 1號.

고구려 1탑 3금당 사찰 배치와 과거칠불신앙

강병희

고구려는 5세기 중원의 왕조들이나 북방 유목민 집단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강력한 국가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는 시기를 전후하여 새 수도인 평양지역에 8각탑이 있는 1탑 3금당 형식의 사찰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찰과 배치 형식은 고구려의 새로운 지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불교건축이 5세기 말까지는 기록만 전할 뿐 실재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 사찰 터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동아시아 불교건축의 가장 오래된 유구로 그 가치가 높다.

인도에서 시작되어 간다라, 서역을 거쳐 중국 서북부에 도달한 불교와 불교건축은 당시 도성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래되었으며 3세기까지는 중국 전통 예제건축 형식을 빌린 불탑 중심의 가람이 건립되었다. 이후 3세기 중엽 경 사문의 수계(受戒)가 정식으로 시작되고 동진과 오호16국 시기인 4세기에는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불교건축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것을 입증해줄 유적이 오직 1세기 후에 조성되는 고구려 평양지역 사찰 터들뿐이

다. 그리고 이 같은 앞선 시기의 공백으로 인해 이들 8각탑이 있는 1탑 3금당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양식적 변화 내용과 그 의미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이 글에서는 5세기 전반경에 조성된 기단부에 8각이 보이는 북량의 봉헌 소탑이 고구려 사찰들과 시대적·역사적 배경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에 나타나는 과거칠불과 미륵보살에 대한 기원과 전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칠불, 혹은 과거칠불과 미륵보살이 조합된 신앙과 관련된 기록과 유물이 인도에서는 기원전 3세기, 간다라와 서역에서는 2~4세기에 걸쳐 확인되며, 중국의 경우에도 후한대 관련 경전이 번역되고 양진(兩晉) 시기에 조상과 성현에 대한 전통 제사의식과 융합하여 신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로 보아 이러한 4세기 이전의 격의적 신앙은 고구려에도 일찍 전해졌을 것이다. 다만 불교의 공식적 전래와 수도 이전을 계기로 구체화되었을 국가제례 체계 정비 과정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에는 궁궐 앞에 귀신과 영성사직을 제사하는 사묘 전통이 있다.

과거칠불도 조상과 성현의 제례의식과 결부되어 신앙되었으므로 이 시기에 두 신앙이 만나 8각 불탑이 있는 1탑 3금당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고구려, 평양, 1탑 3금당, 8각탑, 서진, 동진, 5호16국, 북량 소탑, 과거칠불, 미륵보살, 팔관재계, 국가제례

ABSTRACT

Architectural Pattern(一塔三金堂) of Goguryeo Temple and the Faith of Seven Buddhas of the Past(過去七佛)

Kang Byunghee

In the fifth century, Goguryeo became a powerful state by expanding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hinese dynasties and northern nomadic tribes, and actively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st Asia.

By the time when the capital was moved to Pyongyang(平壤), Goguryeo began to construct temples with three image halls(一塔三金堂) and one octagonal pagoda, which represented the new ideology of the country.

Since early Buddhist architecture in China through the end of the fifth century only known from the written records, actual remains of Goguryeo temple sites are valuable evidence of the earliest Buddhist architecture in East Asia.

Buddhism and Buddhist architecture originated in India spread into

northwestern Chinese major cities through Gandhara and central asia. By the third century, Chinese temples with main pagoda began to appear which adapted the traditional ceremonial architectural system.

Chinese priests began to receive the commandments in the mid third century, and Buddhism developed greatly in the fourth century.

It is presumable that Buddhist architecture of this period saw considerable change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Buddhism, however, the only remaining sites reflecting those changes are Goguryeo temple sites in Pyongyang built one century later.

Because of the gap in the preceding period, it has been difficult to suggest the intrinsic contents and meaning of the architectural pattern consist of one octagonal pagoda and three image halls.

This article examines the Seven Buddhas of the Past and Bodhisattva Maitreya appeared in the Goguryeo temples and early fifth century small votive pagodas of the Northern Liang(北凉) with the octagonal pedestal since they share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

Written records and relics related to the faith of the Seven Buddhas of the Past, or the Seven Buddhas of the Past combined with Bodhisattva Maitreya found in India in the third century B.C., and in Gandhara and central asia from the second to the fourth century. In China, it appeared during the Western and Eastern Jin(晉) period as the faith fused with the traditional rituals for ancestors and saints, after relevant scripts were translated in the Later Han.

The early Chinese Buddhism appeared before the fourth century would have been transmitted to Goguryeo from the close diplomatic relation in East Asia at that time.

It would have been regularized during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national ritual system with the official introduction of Buddhism and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Goguryeo had the tradition of sacrificing for ghosts and land gods in front of the palace.

The faith of the Seven Buddhas of the Past practiced in relation with the rituals for the ancestors and saints resulted in the architectural pattern with three image halls and one octagonal pagoda.

According to the religious nature of the faith, the Seven Buddhas of the Past were enshrined in the central hall, the ghosts and land gods enshrined in the eastern and western halls. The octagonal pagoda enshrined with the Bodhisattva Maitreya and heavenly gods was the place for the various rituals.

Keywords: Goguryeo(高句麗), Pyongyang(平壤), Architectural pattern of one pagoda and three Image halls(一塔三金堂), Octagonal pagoda(八角塔), Western Jin(西晉), Eastern Jin(東晉), Five nomadic tribes and Sixteen Kingdoms(五胡十六國), Small pagoda of Northern Liang(北涼 小塔), The Seven Buddhas of the Past(過去七佛), Bodhisattva Maitreya(彌勒菩薩), The eight prohibitions(八關齋戒), National ritual(國家祭禮)

『성경통지』에 나타난 청의 동북 지역에 대한 인식

박인호 |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 I. 머리말
- II. 『성경통지』의 편찬
- III. 편찬 방향의 추이와 체제의 변화
- IV. 『성경통지』의 동북 역사에 대한 인식 변화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후금의 누르하치(奴兒哈赤)는 천명(天命) 10년(1625)에 동경에서 심양(瀋陽)으로 천도하였으며, 홍타이지는 천총 연간에 성지를 조성하고 천총(天聰) 8년(1634)에 성경(盛京)이라고 하였다.¹ 이후 심양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신성한 지역으로 인지되었다. 청 순치(順治) 원년(1644)에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 청은 성경에 장군을 두어 유도(留都)로서 관리하였다. 그런데 청에서 나온 성경에 대한 지리지로 강역부터 인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다룬 『성경통지(盛京通志)』가 있다. 『성경통지』는 강희 23년(1684)에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 계속 수정되었다. 또한 『성경통지』는 중국에서 간행된 이후 곧바로 조선에 도입되어 역대의 역사지리를 연구하는 조선 학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성경통지』는 만주족이 자신들의 발상지인 성경 지역에 대한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책이었다. 그런데 왜곡된 내용이 담긴 『성경통지』는 조선 후기 상고사의 강역을 만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던 조선 학자들에게 매력적일 수도 있는 사서였다. 그러나 이 책의 역사지리 비정이 가지는 문제점 때문에 조선 학자들은 영정조대를 지나면서 학술적인 자료로는 거의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

『성경통지』는 『대청일통지』 성경 부분과 『만주원류고』와 함께 조선 후기의 요동 지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 1697년 사신이 귀국하면서 『성경통지』를 구매했다고 하였으므로² 강희 23년의 『성경통지』가 조선에 수용된 것으

* 투고: 2022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2년 2월 14일, 게재 확정: 2022년 2월 16일

1 丁海斌, 2007, 「清朝陪都盛京의 歷史沿革」, 『清代陪都盛京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1쪽.

2 남구만, 1980, 『약천집』 권28(원저: 1723), 「성경여지도기」, 민족문화사, 2315~2316쪽.

로 생각된다. 그 이후 『성경통지』는 우리나라 상고사의 강역을 요동 일원으로 넓혀 비정하였던 숙종 이후의 조선 학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게다가 오늘날 만주 지역에 관심을 가진 일부 학자들도 『성경통지』를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통지』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성경통지』는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간행될 때마다 주안점이 다르고 내용도 수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수정 과정에서 심양을 둘러싼 동북 지역에 대해 어떠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첨가되었으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성경통지』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일찍이 만주에서 활동하였던 서지학자 우에노 다케오(植野武雄)가 여러 번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수정된 논문을 내면서 『성경통지』 일본의 출판 상황에 대해 정리하였다.³ 그러나 당시 여건상 일본의 존부와 내용의 차이는 거의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현대 중국에서 『성경통지』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는 못하다. 서지학자 찬가(陳加)가 1980년 「성경통지찬수고(盛京通志纂修考)」⁴를 발표하였는데 중국 도서관의 소장 상황을 중심으로 언급한 것으로 『성경통지』에 여러 이본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서지적 차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성경통지』의 편찬 의도를 구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⁵ 대만의 청왕청(鄭永昌)은 기존의 서지적 비교에서 벗어나 『성경통지』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성경의 발전을 정리하려고 하였다.⁶ 이 글은

3 植野武雄, 1932, 「滿洲地理文獻考(5)」, 『書香』 44; 植野武雄, 1935, 「滿洲地方志考」, 『學海』 2; 植野武雄, 1935, 『滿洲地方志考』, 奉天圖書館叢刊 25, 滿鐵奉天圖書館; 植野武雄, 1944, 『滿支典籍攷』, 奉天 大阪屋號書店.

4 陳加, 1980, 「盛京通志纂修考」, 『圖書館學刊』 1980-3期, 50~57쪽.

5 邱富生, 1984, 「遼寧方志述略」, 『中國地方史志論叢』, 中華書局.

6 鄭永昌, 2015[民104], 「百年變遷: 清初《盛京通志》的編纂及其內容探析」, 『故

『성경통지』의 내용을 이용하여 성경의 발전상을 추적한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청조의 대일통 관념을 중심으로 『성경통지』의 편찬 의도를 파악한 것으로 최근의 장이치(張一弛)·리우펑윈(劉鳳雲)의 연구가 있다.⁷ 또한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건륭 13년본 『성경통지』의 편찬과 서지적 특징을 다룬 안다웨이(安大偉)의 연구가 나왔다.⁸ 다만 이 논문들은 『성경통지』의 서지적 내용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성경통지』의 편찬이 조선에 미친 영향이나 역사지리 비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구는 미진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인호가 『성경통지』, 『만주원류고』, 『대청일통지』를 통해 대조선 역사지리인식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책은 만주족의 원류인 여진족의 향방을 보이려는 정치적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북 지역이 만주족의 역사 근거지로 기술되어 고구려를 비롯한 한민족의 역사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⁹ 이에 대해 방경일(方京一)은 박인호의 논문에 대해 중국과 만주족을 혼동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성경통지』의 편찬은 청 고종의 동이(東夷) 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하였다.¹⁰ 그러나 청 건륭제는 만주족 출신이면서도 한족을 아우른 청 제국의 군주였다. 건륭제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청 제국의 구도 속에서 만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의식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겠지만¹¹ 이를 동이로서의 자부심의 발로로 보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건

宮學術季刊』 33-2.

- 7 張一弛·劉鳳雲, 2018, 「清代‘大一統’政治文化的構建」, 『中國人民大學學報』, 第20186期, 159~169쪽.
- 8 安大偉, 2020, 「乾隆十三年本《欽定盛京通志》研究」, 『黑河學院學報』 2020-9期, 161~165쪽.
- 9 박인호, 1998, 「명·청대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대조선 역사지리인식」, 『경북사학』 21, 경북사학회; 박인호, 2003,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
- 10 方京一, 2005, 「『滿洲源流考』에 나타난 淸高宗의 東夷意識」, 『만주연구』 3, 만주학회.
- 11 청 제국 내 지속되었던 만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구미 학계의 신청사 입장은 국내 학계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사 정리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류제는 ‘대일통’의 세계관 속에서¹² 청조에 의한 통합의 관점에서 동북을 보고 있었다.

위의 논문을 검토해 보면 『성경통지』의 이본에 대해 여전히 각 시기 편찬에 따른 변화상을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성경통지』 편찬에서의 변화와 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며 성경 지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성경통지』의 여러 간행본을 확보하여 그 이동을 살펴보고 청조의 동북 지역에 대한 인식¹³이 『성경통지』의 수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성경통지』의 편찬

청나라는 집권 이후 전국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일통지의 편찬을 시도하였으며 강희제 시기에 구체화하였다. 각 성 단위로 지역지를 편찬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으며, 『성경통지』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편찬이 이루어졌다. 성경에 대한 지리지로는 강희 23년에 편찬되어 봉천부에서 간행한 『성경통지』가 최초의 것이다. 이후 『성경통지』는 여러 번 편찬과 간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성경통

기세찬, 2017, 「신청사 연구사 분석을 통한 담론의 함의」, 『군사연구』 144, 육군군사연구소; 김형중, 2016,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동북아역사논총』 53, 동북아역사재단; 윤옥, 2015, 「신청사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세계』 47, 효원사학회; 김선민, 2011, 「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최근 미국의 청대사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사총』 7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윤영인 외, 2010,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12 송인주, 2018, 「『황청지공도』의 ‘대일통’ 세계」, 『한국사학사학보』 38, 한국사학사학회.

13 청조의 동북 지역에 대한 1차 자료와 현대의 집성본에 대한 자료 소개는 다음 논문 참조(안치영·허혜운, 2014, 「중국 동북지역 연구 자료-청대와 민국시기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8, 만주학회). 여기서도 여러 차례 간행된 『성경통지』의 편찬이 가지는 의미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를 검토해보면 강희 23년본, 건륭 원년본, 건륭 13년 수찬본, 건륭 44년 수찬본 등 4종이 가장 중요한 판본이라고 판단된다.¹⁴

1. 강희 23년본 『성경통지』

후금은 천총 8년에 심양을 성경으로 개칭하면서 만주족의 발상지로서의 성격을 더욱 드러내었다.¹⁵ 성경에 대한 지리지로는 강희 23년에 편찬되어 봉천부에서 간행한 『성경통지』 33권 6책이 최초의 것이다. 이 책은 『대청일통지』의 편찬을 앞두고 먼저 성경의 성지(省志)로 통지(通志)를 편찬하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 일은 봉천부 부윤이었던 동병충(董秉忠)이 중심이 되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실제 작업은 휘하의 좌령(佐領), 필첩식(筆帖式) 그리고 각 주현의 지윤(知尹)과 지현(知縣) 등이 진행하였다.¹⁶ 성경에 대한 최초의 칭에서 나온 지방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성경이 청 황실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중시되었으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의 방지를 편찬한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14 이 글을 작성하면서 『성경통지』의 가장 중요한 간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강희 23년본은 일본 교토대 소장본, 건륭 원년본은 대만 文海出版社 영인본, 雷以誠 수정본은 일본 와세다대 소장본, 건륭 13년본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본, 건륭 44년본은 미국 하버드대 소장본, 그리고 중국 사고전서본을 이용하였다. 鄭永昌은 이 외에도 강희 50년 廖騰燿의 보수본을 별도로 내세웠으나 간본의 중요도로 보면 다른 4본에 비해 떨어져 여기서는 鄭永昌의 논지를 받아들일 뿐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4개 본을 간행 시기와 의미를 고려해 편찬 주체를 기준으로 『강희지』, 『웅정지』, 『건륭지』, 『흠정지』로 약칭해 적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이를 따랐다.

15 『흠정지』 권18, 「京城」, 〈盛京城創建〉, “天聰五年建 本遼金瀋州治 元爲瀋陽路總管府治 明爲瀋陽衛 … 太祖天命三年城界瀋 六年城薩爾滸 又城東京 天命十年遷瀋陽 天聰五年因舊城增拓 … 城邑既定 遂創 天地壇壇 營太廟 建宮殿 置內閣六部都察院理藩院等衙門 修學宮 設闕武場 而京闕之規模大備 天聰八年 更名曰盛京.”

16 『강희지』 권수, 「서」, 〈序(錦州府知府 孫成)〉, “今天子釐定一統憲典 分採通志 肯及盛京詔京兆臣 董秉忠 會同帥臣 詳加纂輯 於是檄取二三 守令 司其事委小臣 成 專其責焉.”; 『강희지』, 「纂輯姓氏」.

이파한(伊把漢), 동병충(董秉忠) 등의 강희 23년 간행본¹⁷은 6책으로 목차
는 서(序),¹⁸ 범례(凡例), 찬수성씨(纂修姓氏), 도(圖) 9편¹⁹과 세목 32편으로 구
성되어 있다.²⁰ 세목 32편은 경성(京城), 단묘(壇廟), 산릉(山陵), 궁전(宮殿), 원
유[각장부](苑囿[各庄附]), 건치연혁(建置沿革), 성야[상이부](星野[祥異附]), 강역
[형승부](疆域[形勝附]), 산천(山川), 성지(城池), 관량[변문선함부](關梁[邊門船艦
府]), 역참[포체부](驛站[舖遞附]), 공서(公署), 직관(職官), 학교(學校), 선거(選
舉), 호구(戶口), 전부[과세관장팔기전묘부](田賦[稅課官庄八旗田畝附]), 풍속(風
俗), 사사(祠祀), 물산(物產), 고적[능묘부](古蹟[陵墓附]), 제왕[후비부](帝王[后妃
附]), 명환(名宦), 인물(人物), 효의(孝義), 열녀(列女), 은일(隱逸), 유우(流寓),
방기(方伎), 선석(仙釋), 예문(藝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책은 강희 50년(1711) 요등규(廖騰煒)에 의해 보각되었다.²¹ 보각본
도 6책으로 기본적인 형태는 『강희지』와 같으며 다만 별도로 봉천부윤 요등규
(廖騰煒)의 서문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직관지에서 강희 23년 이후의 역대
관원과 예문지에서 일부 내용에서 증보된 곳이 있다.²²

-
- 17 인쇄본은 중국의 요령성 도서관, 북경 도서관, 일본의 교토대 도서관, 국립공문서
관, 국회도서관, 대만의 고궁박물관, 미국의 하버드대 도서관, 한국의 전북대 도서
관,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 18 서문은 奉天府尹 董秉忠, 元任 邊聲廷, 繼任 張鼎彝, 錦州府知府 孫成이 적었
다. 범례는 17조이다.
- 19 도 9편은 京城圖(盛京城圖), 大正殿圖, 宮殿圖(宮闕圖), 輿地全圖(盛京輿地全
圖), 奉天府形勢圖, 錦州府形勢圖, 烏刺寧古塔形勢圖, 長白山圖, 北鎮圖(醫
巫闔山圖)로 구성되어 있다.
- 20 『강희지』의 「범례」에 따르면(一奉旨修纂志 書部頒以河南通志爲例 謹按盛京爲
發祥重地 非他省可比 今兼採明一統志南京中都興都之例 體有特尊也 其先後
增減分合詳略 亦各有異同 務期得當不敢苟也) 이러한 형태는 賈復漢이 편찬한
『河南通志』와 『明一統志』에서 南京, 中都, 興都의 체재를 따른 것이며, 자료로
는 이전에 간행된 지역 지지와 현지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 21 廖騰煒 보각본은 대만 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 22 鄭永昌, 2015[民104], 「百年變遷: 清初《盛京通志》的編纂及其內容探析」, 『故
宮學術季刊』 33-2, 154쪽.

2. 건륭 원년본 『성경통지』

옹정 12년(1734)에는 봉천부윤(奉天府尹) 여요증(呂耀曾), 부승(府丞) 왕하(王河), 교수 위추(魏樞) 등에 의한 31권, 수권 1권의 초본이 편찬되었는데 출판되지 못하고 현재 북경 도서관에 초본 상태로 소장되어 있다. 원고가 완성된 상태에서 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송균(宋筠)이 봉천부윤으로 도임하면서 다시 간행 사업이 이루어졌다. 원래 찬집에 참여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옹정 12년에 수정본을 바탕으로 수정을 가해 건륭 원년(1736)에 48권, 도 1권(14폭)의 20책으로 간행하였다.²³ 이 책의 간행은 건륭 원년이지만 준비는 이미 옹정제 때 시작하여 편찬까지 완성하였으므로 『옹정성경통지』라고도 한다. 주요 참가자는 왕하(王河)로 옹정제 때부터 수정을 주도하였다.

『옹정지』는 서[왕하](序[王河]), 범례(凡例), 성경통지찬수직명(盛京通志纂修職名), 전통지찬수성씨(前通志纂修姓氏), 전통지속수성씨(前通志續修姓氏), 도(圖), 목록(目錄), 그리고 세목과 내용의 순으로 되어 있다. 『옹정지』의 세목은 48권으로 확장되었으나 수록 내용의 순서와 세목의 명칭은 거의 『강희지』와 같다. 세목은 전모, 경성, 단묘, 산릉, 궁전, 원유[목정부, 건치연혁, 성야[상야부], 강역[형승부], 산천, 성지, 관애[교량선탐부], 역참[포체부], 공서, 직관, 학교, 선거, 호구, 전부[기전세과부], 풍속, 사사, 물산, 고적[능묘부], 제왕[요후비부], 명환[중절부], 인물, 효의, 열녀, 은일, 유우, 방기, 선석, 예문, 잡지로 구성되어 있다. 수권에는 도 14폭이 수록되어 있다.²⁴

23 중국의 요령성 도서관, 북경 도서관, 일본의 국회도서관, 대만의 고궁박물관, 한국의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대만의 文海出版社에서 영인하여 쉽게 볼 수 있다(『欽定盛京通志』 4책, 文海出版社, 1965(民國 54), [중국변경총서 1]), 2004년에는 이를 동북사지에서 영인하였다.

24 도 14편은 京城圖, 大正殿圖, 宮闕圖, 輿地全圖, 奉天將軍所屬形勢圖, 奉天府形勢圖, 錦州府形勢圖, 寧古塔將軍所屬形勢圖, 黑龍江將軍所屬形勢圖, 長白山圖, 醫巫閭山圖, 北鎮廟圖, 千山圖, 萬壽亭圖로 구성되어 있다.

『강희지』와 비교하면 문류로는 전모지와 잡지 2개 류가 추가되었다. 전모지는 『강희지』 예문지에 수록되었던 황제의 어제시문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다. 잡지는 독사자(讀史者)들을 위해 고증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널리 모은 것이다. 내용 가운데 가장 특이한 변화는 만주 팔기(八旗) 관련 자료를 선거, 진수, 직관 등지에서 보충하였다는 점이다.²⁵ 이것은 만주족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지방지 차원에서도 강조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건륭 원년에 간행된 『성경통지』는 후일 함풍 2년(1852) 뇌이함(雷以誠)에 의해 재간행되었다.²⁶ 크게 수정되지는 않았으나 뇌이함의 발문이 추가되고 일부 구절이 수정되었다. 48권 수권 1권으로 간행되었다. 뇌이함 보각본의 수권(首卷)은 서[왕하], 범례, 전통지찬수성씨, 성경통지찬수직명, 전통지속수성씨, 발[뇌이함](跋[雷以誠]), 성경통지보수직명(盛京通志補修職名), 도, 목록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함풍 2년 뇌이함의 발간 경위를 적은 발²⁷과 당시 협력하였던 인물의 명단이 추가되어 있을 뿐 그 외 부분과 본문의 내용은 일부 보각을 제외하

25 『용정지』 권수, 「범례」, “一 各省通志 凡職官不載 微員選舉不登鄉貢 盛京前志於民官之巡司 史典選舉之恩拔歲副例 得備書 以郡縣 無志可載故也 今各書姓氏如舊 而於選舉中 增入教習 卽八旗科貢 可考者 亦增書之 八旗兵制 前志未載 今各考其數 附於鎮守職官之下.”

26 雷以誠 보각본은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2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일본의 와세다대, 국회도서관, 미국의 하버드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2013년 中國方志庫 속에 영인되었다.

27 『용정지』 권수, 「跋(雷以誠)」, “物有成虧 道資補救 盛京通志 始於雍正末年 藏事於乾隆初 攷核精詳 胥臻美備 乃歲月深久 版刊字跡 脫落彌多 若不及時修補 將必等諸無用甚 且委棄塵埃 大有銅駝 荊棘之懼 道光庚戌 余視學來瀋 與署承德令蔚堂典司馬(興泰) 署府學裕三綱司鐸(綱興) 合議此舉 均慨然有同志 奈此地藏書家 迄無善本 靡所遵循幾至中止 裕三乃命其子於京師世家覓見 昔年初印原本 而其人珍如珠寶 不獲出 假因就近 另購一舊本 與所藏初本對核 照鈔票籤明晰 於咸豐元年冬 由驛賚到 余竊喜裕三之力 果而心精也 卽以現存新本與舊本 親加校核 計共籤出約七千數百餘字 又經蔚堂司馬 取出原版 逐加洗刷 偕各官合相重校 總計應行修補 竝全換頁者 共三萬餘字 爰合力捐貲 鳩工付剞兩閱月而事竣 … 崑 咸豐二年 歲次壬子四月初吉奉天府府丞兼學政咸寧雷以誠 跋於雷都試院之蟠榆榭.”

고 거의 동일하다. 이 보각본은 중국에서 일종의 상업 출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상대적으로 중국의 각 기관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

3. 건륭 13년본 『성경통지』

한편 건륭 13년(1748)에는 형부상서 왕유돈(汪由敦) 등이 수찬하였다. 성경은 건륭 8년(1743) 황제가 직접 동북 지역을 순행한 이후 만주족 발상지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조되었다.²⁸ 이에 기존의 지방 관리가 중심이 되어 자료 위주로 편집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앙에서 직접 편찬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형태는 간략함을 위주로 하였으나 오히려 정치성은 더 강조되었다. 특히 조선과 관련된 고대기 국가가 활동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 위주 관점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만주족의 성지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왕유돈의 건륭 13년 간행본은 32권 12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건륭 13년 무영전 간본이 널리 알려져 있다.²⁹ 이 책은 지방지이기는 하나 중앙의 시각에서 성경을 다루었다. 권의 분류는 유사한 성격을 한 권에 묶어 과감하게 통합하여 간략함을 위주로 편찬하였다.³⁰ 서발과 수찬 직명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다.³¹

28 건륭제의 동순이 가져온 전쟁 공포와 이에 따른 조선에서의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박인호, 2021, 「순암 안정복의 북방인식」,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191, 209~214쪽 참조.

29 건륭 13년의 무영전 간본은 중국의 북경 도서관, 요령성 도서관, 대만의 고궁박물관,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30 『건륭지』 권수, 「범례」, “一 前志爲卷四十有八 考遼東志牒於明畢恭者九卷 李輔重修者十二卷 前志大抵因之 而益以近事 稍加擴充 然爲卷太多 則失之冗複 按明柳瑛中都志僅十卷 沈應文順天府志僅六卷 卽興都志徐階奉勅所修者 亦止二十四卷 奉天大志 部帙稱多 然亦不過四十卷 蓋成一書 欲其傳信而垂後 則必簡嚴精核 卷帙自不在多 今薙繁約要 凡三十有二卷云。”

31 건륭 13년본에는 편찬자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흙정지』 권128, 「국조예문」 14, 表에 〈盛京通志表(汪由敦)〉가 수록되어 있으며, 汪由敦이 건륭 13년본

수권에는 범례, 목록, 도 13편³²이 수록되어 있으며, 세목은 성제, [경성, 단묘, 궁전, 산릉], [성토, 건치연혁, 강역형승], 산천, 성지, 관우[진도포체부], 호구, 전부[기전세과부], 직관, [학교, 공서], 선거, 병방, 명환, 인물, [충절, 효의, 문학], [은일, 유우, 방기, 선석], 열녀, [사사, 고적 능묘부], [풍속, 물산, 잡지], 예문으로 분류하였다. 형태로 보면 기존의 세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형별로 결합시켜 20개 항목으로 정리해두었다. 일부 세목은 결합시키되 병방, 인물과 관련된 충절, 효의, 문학은 별도의 항목으로 편집해놓은 것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모아놓으니 성격에서 유사성이 부족한 것도 한 곳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내용 면에서 본다면 전모지를 성제로 바꾸면서 역대 오제와 건릉의 조칙, 기문 등 문장을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또한 간략하게 편집하는 중에도 팔기 관련 자료는 도처에 침입되어 들어갔다.

4. 건륭 44년본 『성경통지』

건륭 43년(1778)에는 아계(阿桂), 유근지(劉謹之) 등이 중심이 되어 수정 작업을 시작하여 이듬해인 건륭 44년(1779)에 수권 1, 본문 130권으로 완성하여 64책의 무영전 간본으로 간행하였다.³³ 이를 바탕으로 건륭 49년(1784)에 130권

을 칙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臣等奉敕纂輯盛京通志恭呈欽定 繕寫告成 臣等謹奉表恭進者 伏以皇猷建極瑤圖 尊天作之區 聖治崇文寶冊 煥帝臨之宅(中略) 乃前朝之舊志雖存 既嫌荒略 昭代之成書具在 復涉煩訛 爰降明綸 重修善本 期體裁之簡當 載筆纂嚴 約部分於整齊 操觚特愼 發凡起例 規撫悉稟乎睿裁 別類分門 撫採盡衷於欽定.”

32 『웅정지』에 비해 萬壽亭圖 1편이 생략되었다. 도 13편은 盛京城圖, 大正殿圖, 宮闕圖, 盛京輿地全圖, 奉天將軍所屬形勢圖, 奉天府形勢圖, 錦州府形勢圖, 寧古塔將軍所屬形勢圖, 黑龍江將軍所屬形勢圖, 長白山圖, 醫巫閭山圖, 北鎮廟圖, 千山圖로 구성되어 있다.

33 『흥정지』 권수. “乾隆四十三年七月十三日奉上諭 舊本盛京通志 敘事簡略 體例亦多未合著 交軍機大臣派員重行 纂輯書成後 交武英殿刊刻 欽次.” 1779년의 무영전 간본은 하버드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17년(민

57책의 사고전서본을 완성하였다. 이후로도 건륭 54년 기윤(紀昀) 등이 일부 수정을 가해 사고전서에 사본으로 넣었다.³⁴ 권수에서 보이듯이 건륭 13년의 왕유돈 편찬본에서 내용이 크게 증보되어 있다. 건륭 황제의 명으로 편찬 사업이 시작되고 완수되었으므로 『흙정성경통지』라고도 하였다.

수권은 주(奏), 범례, 총재찬수교대제신직명(總裁纂修校對諸臣職名), 도,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는 35편으로 확대되었다.³⁵ 130권의 본문 세목은 성제, 윤음, 천장, 경성, 단묘, 궁전, 산릉, 성토, 건치연혁, 강역형승, 산천, 성지, 관우, 진량[선함부], 호구, 전부[기전관장세과부], 직관, 학교, 관서, 선거, 병방, 명환, 인물, 충절, 효의, 문학, 은일, 유우, 방기, 선석, 열녀, 사사, 고적[능묘부], 풍속, 물산, 잡지, 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흙정지』는 37류로 분류하였는데 특히 전모류가 더욱 확대되어 성제, 윤음, 천장으로 분류되었다.³⁶

이 책은 체제를 여러 편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는 이전의 『성경통지』에 비해 만주족과 관련된 각종 문물 기사가 대량으로 첨입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건륭 8년과 건륭 19년(1754)에 이어 건륭 43년에 있었던 건륭제의 연속적인 동순(東巡)³⁷ 이후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국 6) 연인본을 간행하였다(遼海出版社에서 1997년, 鳳凰出版社·上海書店·巴蜀書社에서 中國地方志集成의 省志輯의 일환으로 2009년 재영인).

34 薛虹, 1984, 『中國方志學概論』, 黑龍江人民出版社, 사고전서본은 1983년 대만 상무인서관에서 문연각 사고총서(501-503)로 영인하였다.

35 도 35편은 盛京輿地全圖, 盛京城圖, 興京圖, 奉天將軍所屬形勢圖, 奉天府形勢圖, 錦州府形勢圖, 吉林將軍所屬形勢圖, 奉天將軍所屬形勢圖, 黑龍江將軍所屬形勢圖, 天壇圖, 地壇圖, 太廟圖, 堂子圖, 永陵圖, 福陵圖, 昭陵圖, 大政殿圖, 宮殿圖, 文溯閣圖, 興京顯祐宮圖, 興京地藏寺圖, 景祐宮圖, 長寧寺圖, 實勝寺圖, 都城隍廟圖, 關帝廟圖, 賢王祠圖, 遼河神廟圖, 渾河神廟圖, 長白山圖, 醫巫閭山圖, 北鎮廟圖, 廣寧縣觀音閣圖, 千山圖, 千山廟宇圖, 溫德亨山望祭殿圖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고전서본은 圖, 總裁纂修校對諸臣職名, 奏, 凡例, 目錄의 순으로 변화가 있었다.

36 淸 歷代 皇帝들의 聖訓, 聖諭, 詔勅, 詩文 등은 성제에 수록하였으며, 乾隆의 諭旨, 詔勅은 윤음에, 詩文은 천장에 수록하였다.

37 趙秉忠, 1994, 「論淸帝東巡」, 『社會科學輯刊』 1994-5期, 122쪽.

과 만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문화적 측면에서 집약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편찬 방향의 추이와 체재의 변화

강희 23년본, 건륭 원년본, 건륭 13년본, 건륭 44년본 등 4종의 『성경통지』의 편찬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은 건륭 44년본을 중심으로 강희 23년본, 건륭 원년본, 건륭 13년본에서 이루어진 변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강희지』와 『옹정지』는 항목의 명칭이나 순서도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이 두 책은 자료의 양은 차이가 있으나 편찬 방향이나 편찬 의도는 동일한 데서 출발하였다. 이 두 책은 성경부윤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 문사가 참여하여 편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지방의 방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방에서 편찬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이 다른 지방의 성(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지』는 『하남통지(河南通志)』의 체재를 따르면서도 『대명일통지』에서 남경 등을 특별히 높인 것을 따랐다.³⁸ 『대명일통지』에서 다른 성들은 모두 건치연혁을 먼저 내세웠으나 북경, 남경 등은 경성을 필두로 단묘, 산릉, 원유, 문무공서(文武公署)를 적고 이후 건치연혁을 배치하고 있어 다른 성의 편찬 체재와는 다른데 오히려 이러한 점을 따랐다.³⁹

38 『강희지』 권수, 「범례」, “一奉旨修纂志 書部頒以河南通志爲例 謹按盛京爲發祥重地 非他省可比 今兼採明一統志南京中都興都之例 體有特尊也 其先後增減分合詳略 亦各有異同 務期得當不敢苟也.”

39 『강희지』 권수, 「범례」, “一河南志圖考之 後首建置沿革 今盛京與河南不同 按明一統志 他省皆先建置沿革 唯北京南京中都興都 則首京城 次壇廟 次山陵 次苑囿 次文武公署 而後 建置沿革繼之 體別於他省也 今志倣焉 但宮殿爲建極垂裳之地 明一統志所未及 今增於苑囿之先 文武公署爲臣子 治事之所不必先於建置沿革 今改於後 與職官並列.”

〈표 1〉 『성경통지』의 편찬 체제 변화

약칭	『강희지』	『옹정지』	『건륭지』	『흠정지』
간행	강희 23년(1684)	건륭 원년(1736)	건륭 13년(1748)	건륭 44년(1779)
편찬자	伊把漢, 董秉忠 등	呂耀曾, 王河, 魏樞 등	汪由敦 등	阿桂 등
권	首卷, 32권 / 6책	首卷, 48권 / 10책	首卷, 32권 / 12책	首卷, 130권 / 64책
수권 내용	序, 凡例, 纂修姓氏, 圖	序(王河), 凡例, 纂修職名, 前通志纂修姓氏, 前通志續修姓氏, 圖, 目錄	凡例, 目錄, 圖	奏, 凡例, 總裁纂修校對諸臣職名, 圖, 目錄
서, 발	董秉忠, 邊聲廷, 張鼎彝, 孫成	王河	無	阿桂
지도	9편	14편	13편	35편
문류	세목 32편: 京城, 壇廟, 山陵, 宮殿, 苑囿(各庄附), 建置沿革, 星野(祥異附), 疆域(形勝附), 山川, 城池, 關梁(邊門船艦附), 驛站(鋪遞附), 公署, 職官, 學校, 選舉, 戶口, 田賦(稅課官庄八旗田畝附), 風俗, 祠祀, 物產, 古蹟(陵墓附), 帝王(后妃附), 名宦, 人物, 孝義, 列女, 隱逸, 流寓, 方伎, 仙釋, 藝文	세목 34: 典謨, 京城, 壇廟, 山陵, 宮殿, 苑囿(牧政附), 建置沿革, 星野(祥異附), 疆域(形勝附), 山川, 城池, 關隘(橋梁船艦附), 驛站(鋪遞附), 公署, 職官, 學校, 選舉, 戶口, 田賦(旗田稅課附), 風俗, 祠祀, 物產, 古蹟(陵墓附), 帝王(遼后妃附), 名宦(中節附), 人物, 孝義, 列女, 隱逸, 流寓, 方伎, 仙釋, 藝文, 雜志	항목 20, 세목 35: 聖製, (京城, 壇廟, 宮殿, 山陵), (星土, 建置沿革, 形勝疆域), 山川, 城地, 關鄕(津渡鋪遞附附), 戶口, 田賦(旗田稅課附), 職官, (學校, 公署), 選舉, 兵防, 名宦, 人物, (忠節, 孝義, 文學), (隱逸, 流寓, 方伎, 仙釋), 列女, (祠祀, 古蹟陵墓附), (風俗, 物產, 雜志), 藝文	세목 37: 聖製, 綸音, 天章, 京城, 壇廟, 宮殿, 山陵, 星土, 建置沿革, 疆域形勝, 山川, 城池, 關鄕, 津梁(船艦附), 戶口, 田賦(旗田官莊稅課附), 職官, 學校, 官署, 選舉, 兵防, 名宦, 人物, 忠節, 孝義, 文學, 隱逸, 流寓, 方伎, 仙釋, 列女, 祠祀, 古蹟(陵墓附), 風俗, 物產, 雜志, 藝文
		예문 일부에서 전모와 잡지를 분리함. 원유와 관에 일부 명칭을 변경함.	원유는 병방 아래에 합하고 관에·역참을 관유라 하여 합하고 병방, 충절, 문학을 추가함.	『건륭지』의 세목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윤음과 찬장이 추가됨.

* 밑줄 표시는 추가된 항목을 의미함.

『용정지』도 봉천부 부승 왕하(王河)가 중심이 되어 편찬하여 지방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⁴⁰ 범례도 기존의 18편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이후 변화되는 13개 조항을 덧붙이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예문지 중에 있던 어제를 별도로 『광동지(廣東志)』의 예에 따라 전모지로 내세웠으며, 잡지를 별도 항목으로 내세워 34세목으로 나누었다.⁴¹ 지도의 경우 『강희지』의 9편에 비해 14편으로 확대시켰다.⁴² 팔기와 관련하여 선거 중에 팔기과공이나 팔기병제, 팔기문 등이 이전 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수록되기 시작하였다.⁴³

그런데 강희제의 백두산에 대한 국경조사 명령⁴⁴과 건륭제 초기 이주와 봉금을 통해 만주를 만주족의 근본지로 만들려는 데서 보이듯이⁴⁵ 청은 동북 지역을 만주족의 민족적 원류지로서 항상 주목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진 『건륭지』의 편찬은 중앙 정부가 지방지의 편찬을 직접 관할하면서 목적성이 강해

40 『용정지』 권수, 「序(王河)」, “臣河荷承恩命督學 東土兼署尹篆值盛京通志 尚未告竣 謹率所屬分類纂輯 凡幅員之廣 生齒之繁 文物之盛 制度之詳 莫不備載 竝前志或遺者 亦旁搜博訪 悉爲增入 自夏至冬五閱月 而稿就值奉天府尹 臣宋筠 到任 相與相確論定 而各處覆詢之事 與遠徼之所當詳者 又以次俱到 因復集原纂輯諸臣 細加校讎 益爲增補 又七閱月 再易稿而後成 校閱之餘 見王業之所起 與王化之所成 蕩蕩巍巍 際天蟠地 有非筆墨之所能罄焉 … 豈 乾隆元年 歲次丙辰十月 前署奉天府府尹奉天府府丞 臣王河謹撰.”

41 『용정지』 권수, 「범례」, “一 志書序例 俱照前通志式 惟藝文中御製 謹倣廣東志例 登載卷首爲典謨志 藝文志末 復加雜記一編 以資博考 共分類三十有四 分卷四十有八.”

42 『용정지』 권수, 「범례」, “更攷前志圖九續增一 今增奉天黑龍江形勢圖各一 北鎮廟圖一 千山圖一 旅順海防圖一 共圖十有四.” 여순해방도를 포함하여 14편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대신 만수정도가 들어가 14편을 구성하고 있다. 만수정도를 넣은 것은 지방관의 입장에서 황제의 華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43 『용정지』 권수, 「범례」, “一 八旗行文 有一人 各而前後 書寫不同者一地名而各處冊籍不同者 相承日久 難於畫一 今雖稍加釐正 而音同字 別有冊可稽者 不便盡改 仍各存之 以備參考.”

44 이화자, 2008, 「강희연간 초청간의 사계와 정계 교섭」, 『조청국경문제연구』, 집문당, 129~170쪽.

45 이훈, 2011,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京師 旗人の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 『사총』 7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졌으며 내용이나 항목 구성에서 동북 지역에서의 만주족의 활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경 지역을 둘러싼 역사의 주체, 주민 구성, 영역 등에 대한 만주족 중심의 왜곡은 『건륭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건륭 44년 아계의 『흙정지』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항목의 순서도 『건륭지』와 『흙정지』가 거의 유사해졌다. 『건륭지』에서는 황제의 각종 어제가 운데 봉천에 관련된 것은 시문을 포함하여 상세히 수록되고⁴⁶ 표가 기술되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⁴⁷ 『흙정지』에서도 황제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은 더욱 증가하여 성제, 윤음, 천장 등의 항목이 별도로 만들어졌다.⁴⁸

그런데 『흙정지』가 만들어질 때 건륭제는 『청실록』이 있음에도 누르하치의 초기 사적을 정리한 『만주실록』을 다시 편찬하도록 명하여 건륭 44년에 완성하였다. 또한 만주족의 민족성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건륭 43년에 완성된 『만주원류고』의 편찬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였다.⁴⁹ 『흙정지』, 『만주원류고』, 『만주실록』이 같은 시기에 편찬된 것은 한족에게로 향한 문화적 동화현상에 대한 건륭제의 위기의식이 표출된 것이다.⁵⁰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초기 만주족 성립의 중심지였던 노성(老城), 흥경(興京), 성경(盛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만주족

46 『건륭지』 권수, 「범례」, “一 前志首列典謨爲一門 今易其名曰聖製 仍冠一書之首 所以敬宸藻而尊朝廷也 凡詔諭碑頌詩文 專係奉天者 皆登錄.”

47 『건륭지』 권수, 「범례」, “一 建置沿革 例宜有表 今上考三代次及列朝以來 作建置沿革表 以補前志之缺 而疆域山川 有宜辨析者 竝可訂次焉.”

48 『흙정지』 권수, 「범례」, “一 盛京爲王跡肇基 首隆謨誥 謹稽五朝實錄聖訓詔諭碑記詩文 冠列卷端 我皇上觀揚光烈 四詣陪京 闡澤覃敷 大文彌耀 謹志聖制綸音天章 弁諸志首 以昭作述之隆.”

49 『흙정지』 권수, 「범례」, “一 奉天風俗 淳樸有上古遺風 物產豐饒爲九州上腴 茲博稽前史 謹遵欽定滿洲源流考 詳晰編纂志風俗物產 並旁采異聞爲雜志一卷 以資考鏡.” 건륭 43년(1778)에 완성된 『만주원류고』는 『흙정지』의 편찬관인 아桂가 편찬을 주관하였다.

50 이훈, 2013, 「17-18세기 청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정책과 인식-건륭기 만주족의 위기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4~190쪽.

의 역사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동향이 유물과 유적의 뒷받침 없이 만주족 위주로 설명됨으로써 원래 이 지역의 주된 담당자였던 옛 조선의 초기 국가와의 서술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⁵¹

이상과 같이 『성경통지』는 체재 면에서 보면 지방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하더라도 발상지로서의 성경의 위상 때문에 별도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점이 작용하여 중앙에서 『성경통지』의 편찬에 관여하면서 단순한 지방지에서 차츰 만주족의 선전서와 같은 내용을 갖추어나갔다.

〈표 2〉는 『흙정지』의 편찬 순서에 따라 역으로 『강희지』, 『옹정지』, 『건륭지』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흙정지』를 기본으로 강희 이래 『성경통지』의 기본적인 항목의 설정과 내용이 비록 항목의 독립으로 내용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적 항목은 그대로 이어져 편찬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흙정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황제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륭지』부터 병방이 독립되어 나타난 것은 건륭제 때의 대외적인 정벌로 전 영토의 1/3이 증가한 측면,⁵² 팔기제를 비롯한 만주족의 군사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건륭제의 의도⁵³가 작용한 것이다.

51 이러한 충돌은 후일 근대 동아시아 삼국이 각기 자국의 관점에서 만주를 보게 하였다(박인호, 2020, 「만주를 보는 근대 동아시아 삼국의 시각」, 『한국사학사학보』 42, 한국사학사학회).

52 건륭제가 자신의 큰 열 가지 전공을 자랑하여 세운 〈御製十全記碑文〉(『十全記』, 하버드대본)에는 건륭의 자신감이 잘 표출되어 있다.

53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2009, 「팔기제 구하기」,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449~503쪽.

〈표 2〉 『흙정지』를 통해 본 각 지의 편목

	『강희지』	『옹정지』	『건륭지』	『흙정지』	비고
御製	31 藝文 일부	1~4 典謨	1~4 聖製	1~7 聖製 8~9 綸音 10~17 天章	황제 시문 관련 기사 증대
京城	1 京城	5 京城	5 京城, 壇廟, 宮殿, 山陵	18 京城	
壇廟	2 壇廟	6 壇廟		19 壇廟	
宮殿	4 宮殿	8 宮殿		20 宮殿	
山陵	3 山陵 5 苑囿(各庄附)	7 山陵 9 苑囿(牧政 附)		21 山陵	『건륭지』에서 원 유(목정) 항목은 병방에 합함
星土	7 星野(祥異附)	11 星野(祥異 附)	6 星土, 建置沿 革, 形勝疆域	22 星土	
建置沿革	6 建置沿革	10 建置沿革		23 建置沿革	사고전서 건제 연혁
疆域形勢	8 疆域(形勝附)	12 疆域(形 勝附)		24 疆域形勝	사고전서 강역 형세
山川	9 山川	13~14 山川	7~8 山川	25~28 山川	
池城	10 城池	15 城池	9 城地	29~33 城池	사고전서 지성
關郵	12 驛站(舖遞 附)	17 驛站(舖 遞附)	10 關郵(旱津渡 舖遞)	33 關郵	
津梁	11 關梁(邊門船 艦府)	16 關隘(橋 梁船艦附)		34 津梁(附 船艦)	
戶口	17 戶口	23 戶口	11 戶口	35~36 戶口	
田賦	18 田賦(稅課官 庄八旗田畝附)	24 田賦(旗 田稅課附)	12 田賦 旱 旗 田稅課	37~38 田賦 (附旗田官莊 課稅)	
職官	14 職官	19~20 職官	13~14 職官	39~42 職官	
學校	15 學校	21 學校	15 學校, 公署	43~44 學校	
官署	13 公署	18 公署		45~46 官署	
選舉	16 選舉	22 選舉	16 選舉	47~50 選舉	

	『강희지』	『옹정지』	『건륭지』	『흙정지』	비고
兵防			17 兵防	51~52 兵防	『건륭지』부터 병방 항목 추가
名宦	24 名宦	30~31 名宦 (忠節附)	18 名宦	53~57 名宦	
人物	23 帝王(后妃附)	29 帝王(遼后妃附)			제왕 항목 삭제
	25 人物	32~34 人物	19~21 人物	58~64 歷朝人物 65~81 國朝人物	
忠節			22 忠節, 孝義, 文學	82~88 忠節	충절 문학 등 항목별 구분
孝義	26 孝義	35~36 孝義		87 孝義	
文學				88 文學	
隱逸	28 隱逸	38 隱逸	23 隱逸, 流寓, 方伎, 仙釋	89 隱逸	
流寓	29 流寓	39 流寓		90 流寓	
方伎	30 方伎	40 方伎		91 方伎	
仙釋	31 仙釋	41 仙釋		92 仙釋	
列女	27 列女	37 列女	24 列女	93~96 列女	
祠祀	20 祠祀	26 祠祀	25 祠祀, 古蹟(陵墓附)	97~99 祠祀	
古蹟	22 古蹟(陵墓附)	28 古蹟(陵墓附)		100~104 古蹟	
風俗	19 風俗	25 風俗	26 風俗, 物産, 雜誌	105 風俗	
物産	21 物産	27 物産		106~107 物産	
雜誌		48 雜誌		108 雜誌	『옹정지』부터 잡지 추가
藝文	32 藝文	42~47 藝文	27~32 藝文	109~114 列朝藝文	
				115~130 國朝藝文	

IV. 『성경통지』의 동북 역사에 대한 인식 변화

『강희지』와 『옹정지』의 경우 성경을 중심으로 한 현상적인 상황을 소개하는 지방지의 모습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고적조의 내용도 대체로 발해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역사적 변천을 잘 보여주는 항목은 건치연혁, 강역, 산천조이다. 『강희지』와 『옹정지』에서는 이 부분에서 부현의 연혁, 거리, 소재 산천에 대해 지방지로서 충실하게 지리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건륭지』와 『흙정지』 단계에 이르면 만주족의 원류와 종족의 범위, 역사와 지리적 변화, 만주족의 풍속 등 만주족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추가되면서 만주족의 홍보서와 같은 정치성을 띠게 된다(표 3 참조).

먼저 『강희지』는 청대의 동북 지역 인식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성경 지역에 대해 유도(留都)로서 경사의 형세를 갖추고 있음을 칭송하였다.⁵⁴ 그런데 『강희지』에서 성경은 상주(商周) 때 숙신의 땅이었다가 한(漢) 이후는 고구려, 발해와 다투었음을 밝히고 있다.⁵⁵ 홍경, 봉천부, 금주부 등도 주대(周代)에 숙신의 땅이었다가 진한(秦漢) 이후에 조선, 읍루, 옥저, 진한 등지에 속하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봉황성은 조선의 예(濊), 금주(金州)는 조선의 진한(辰韓), 오라(烏喇)는 숙신, 즉 읍루 등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⁵⁶ 『강희지』의 인식 속에는 요동 일대에 조선의 진한, 읍루, 옥저, 고구려, 발해가 존재하였으며 이때만 하더라도 만주 일원의 역사지리적 원류에 대해 주대(周代) 숙신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적고 있다.

그런데 『옹정지』에서는 『강희지』의 토대 위에 각 군현의 연원을 상주대(商

54 『강희지』 권6, 「建置沿革」, 〈서〉(1a). “禹貢敷土分州 周官體國經野 古今沿革 互殊要因 時規其制焉 遼地自遼金襲渤海五京之制 而形勢分明 省郡縣爲衛所 而邊隅狹國家幅員 不廓獨重 留都以壯 京師之勢 畫州郡以奠民居相中外 而分 鉅鎮聖謨宏遠 允垂拱於萬年矣 作建置沿革志.”

55 『강희지』 권6, 「건치연혁」, 〈성경〉(1b-4a).

56 『강희지』 권6, 「건치연혁」, 〈홍경〉, 〈봉천부〉, 〈금주부〉, 〈영고탑〉(4b-11b).

〈표 3〉 『성경통지』 지리 관련 항목의 내용 변화

	『강희지』	『옹정지』	『건륭지』	『흠정지』
建置沿革	1) 성경 및 부현의 연혁 2) (序文), 盛京, 興京, 奉天府, 奉天府 屬州縣, 錦州府, 錦州府 屬州縣, 城守章京所轄, 寧古塔將軍所轄	시기 변화에 따른 강희 시기의 내용 보충	1) 建置沿革表 추가 2) 건치연혁 영고탑 뒤에 按 추가	1) 건치연혁의 설명에 府縣別 歷代 建置沿革表 추가 (사고전서본에는 歷代建置沿革考) 2) 按 수정하여 臣謹 按 추가
疆域形勢	강역과 형승을 분리하고 강역은 부현의 거리를 정리	강역과 형승을 분리하고 부현의 변동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	주현 단위로 강역과 형승을 같이 언급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형승의 연원 소급	주현 단위로 강역과 형승을 같이 언급하고 일부 자구 수정
山川	부현 소재 산천 정리	부현의 변동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	일부 자구 수정	마지막 부분에 古山川附考 추가

周代) 숙신(肅愼)에서 당우대(唐虞代)의 식신(息愼)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⁵⁷ 다만 이미 『강희지』의 건치연혁 서문에서 성경 역사의 상한을 우공대(禹貢代)까지 올리고 있어 실제 내용 면에서는 『강희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집필하기 시작한 『건륭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발해 이전의 역사성을 찾기 시작하였다. 『건륭지』에는 이전의 『강희지』와 『옹정지』에는 없던 〈건치연혁표〉까지 추가하여 당(唐), 우(虞), 하(夏) 이래의 역사적 변천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건륭지』에서는 『옹정지』의 건치연혁에 대한 설명을 더욱 변화시키면서 고대의 원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건치연혁표〉에서는 각 부현의 역사적 변천을 보려고 하였다. 이는 건치의 연혁을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한 것이다.⁵⁸ 이제 동북 지역에 대한 인식이 연원의 측면

57 『옹정지』 권10, 「건치연혁」, 〈서〉(1a) 및 각 군현 별 건치.

58 『건륭지』 권6, 「건치연혁」, 〈건치연혁표〉(6a). “本朝受天命 造東夏 遂卽瀋陽以營京邑 然自唐虞下訖明代 封山作鎮分州畫野 醫閭碣石渤海之間 固一都會也 今考歷代地輿所屬 其所以因 仍建革者 以爲之表 古今大凡可指次而得云.”

에서 이전의 『강희지』나 『옹정지』의 인식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건륭지』의 만주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의 모습은 『건륭지』, 「건치연혁」의 마지막에 추가된 안설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안설은 성경과 봉천에 대한 청정부의 역사지리 인식을 총정리한 것이다.

지금의 흥경(興京)과 봉천(奉天)은 대체로 옛 영주(營州)와 청주(靑州) 두 주에 해당한다. 한대(漢代)의 요동, 낙랑, 현도 3개 군의 사이 땅이다. 옛 지지에 종종 옛 식신(息愼), 읍루(挹婁), 옥저 등 나라에 속하였다고 하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한(漢) 4군의 지리를 살펴보면 지금 영평 북쪽 경계 바깥에서 금주 경계까지는 요서이며, 지금 의주 북쪽 경계에서 봉천부 경계까지는 요동이다. 현도는 요동의 동북 근처에 있으며, 거의 지금 흑룡강(黑龍江)에 이른다. 낙랑은 요동의 동남에 있으며 지금 고려의 반 정도에 걸쳐 있다. 『한서』에는 부여(扶餘)가 현도 북쪽 천리에 있고 또 읍루가 부여의 동북 천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지금 흥경과 봉천을 식신과 읍루의 옛 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위(魏) 명제(明帝)와 진(晉) 성제(成帝) 때 숙신이 와서 호시(楛矢)를 바쳤다고 하였는데 삼국(三國) 때 요동은 공손탁(公孫度)이 차지하고 진(晉) 때 모요외(慕容廆)가 차지하였는데 숙신이 그 사이를 건너서 거주한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당서』에서 흑수말갈은 본래 숙신이며 지금 흑룡강 땅에 있다고 하였고 『후한서』에도 읍루는 옛 숙신이라고 하였으니 읍루의 옛 땅은 심양(瀋陽)에 있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다. 또 무왕(武王)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는데 조선은 오랑캐 나라의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조가(朝歌)나 조나(朝那)와 같은 유형이다. 무왕이 그곳에 기자를 봉하였는데 영주(營州)의 안에 설치한 것이며 요외(徼外)에 있었던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변방의 무리에게도 다 군장이 있는데 주(周)가 어떻게 강제로 그 땅을 빼앗아 기자를 봉할 수 있었겠는가. 또 무왕이 스승의 예로 기자를 대하였는데 도리어 멀리 변방의 땅에 보냈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흥경과 봉천은 당연히 기자를 봉한 곳에 속하며, 고려(高麗)는 기자의 옛 나라가 아닐 것이다. 또 『한서』에서는 동옥저는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으며, 삼한(三韓)은 산해관의 남쪽에 있으면서 왜와 접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옥저는 응당 지금 고려의 동남쪽에, 삼한은 해도 사이에 있었을 것이며 지금 요동의 경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옛 지지에서 잘못이 이어져 요나라 사람들도 종종 삼한이라고 자칭하였으므로 고찰하는 글을 붙인다.⁵⁹

『건륭지』의 이 안설에서 흥경과 봉천이 식신, 읍루, 옥저, 부여 등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周)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 땅에 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조선은 고려(高麗)와 관련이 없는 일반 명칭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성경 지역이 중국 왕조의 경내였기 때문에 기자를 임명하였으며, 그 후 한군현으로서 한사군을 거친 곳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요(遼)에서 이 지역을 삼한이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성경의 연혁 설명문에서 『강희지』와 『옹정지』에서는 주대(周代) 숙신씨(肅愼氏) 다음에 기자가 조선으로 피하고 주 무왕이 봉하여 조선계(朝鮮界)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지만 『건륭지』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하였다.⁶⁰

이러한 『건륭지』에서의 서술 변화는 흥경과 봉천을 고려(조선)와 분리하여

59 『건륭지』 권6, 「건치연혁」, 〈按〉(27b-28a), “按今之興京奉天 大抵本古營靑二州 及漢時遼東樂浪元菟三郡間地耳 舊志往往以屬于古息愼挹婁沃沮諸國 恐不然也 攷漢四郡地理 自今永平北邊外盡錦州境爲遼西 自今義州北邊外盡奉天府境爲遼東 其元菟則在遼東之東北 幾及今黑龍江地 其樂浪則遼東東南半在今高麗中 而漢書言扶餘在元菟北千里 挹婁又在扶餘東北千里 則安得指今興京奉天爲息愼挹婁故地耶 又攷魏明帝晉成帝時 肅愼氏皆來貢楮矢 而三國時遼東據于公孫度 晉時據于慕容廆 不審肅愼氏 何以得越居其間耶 唐書言黑水靺鞨 本肅愼氏 在今黑龍江地 而後漢書言挹婁卽古肅愼 則挹婁故地 不當在瀋陽明甚 又武王封箕子于朝鮮 朝鮮非夷國 特地名耳 如朝歌朝那之類 武王于此地 封之 固在營州之內設 其不然謂在徼外 則蕃裔自有君長 周亦安得強取其地以爲箕子封 且武王方以師禮事箕子 而顧反遠處之蕃貊之域耶 然則今興京奉天當猶屬箕子所封之境 亦不得謂高麗乃箕子故國也 又漢書云 東沃沮在蓋馬大山之東 三韓在山海關南與倭接 則沃沮應在今高麗東南 而三韓當在海島間 非今遼東域內 舊志誤相乘述 而遼人又往往自稱三韓 故附辨焉.”

60 『강희지』 권6, 「건치연혁」, 〈성경〉(1b) 및 『옹정지』 권10, 「건치연혁」, 〈성경〉(1b). “箕子避地朝鮮 武王卽其地封之 遂爲朝鮮界.”

청 제국의 중국과 연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건릉지』에서는 이 지역을 만주족의 원류지이자 중국 왕조의 경내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강희지』나 『옹정지』에서의 입장보다 훨씬 청의 입장에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각 지역별 연혁을 적은 부분이나 연혁표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적은 부분도 있다.

한편, 이러한 논리의 변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찬되어 나온 것이 『흙정지』이다. 『흙정지』 「건치연혁」의 〈서〉에는 주현제도의 관점에서 성경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신들이 삼가 살펴보건대 『서전』에 의하면 순(舜)이 청주(靑州)의 동북을 영주(營州), 기주(冀州)의 동북을 유주(幽州)로 나누었다. 지지를 살펴보면 영주의 영역은 요동이며, 유주는 요서의 땅도 아울러 가졌다. 요동과 요서에 군을 둔 것은 진(秦)에서 시작하였다. 한무제(漢武帝) 때 낙랑·현도·임둔·진번의 4군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명칭을 바꾸었으나 군현의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당(唐)은 요성(遼城)의 여러 도독부(都督府)로 바꾸었으므로 진한(秦漢)의 건치(建置)가 한번 크게 변하였다. 요·금·원 때는 혹 경(京)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혹 로(路)로 나누기도 하여 그 덜고 더하는 것이 한결같지는 않았으나 주현에 소속하는 제도는 바꾸지 않았다. 명(明)에서는 주현을 고쳐 위소(衛所)라고 하면서 도사(都司)에 소속시켜 두어 요·금·원의 건치가 또 한 번 크게 변하였다. 우리 태조와 태종이 요심(遼瀋)에 기반하여 흥하고 세조(世祖)가 통일하여 사방이 풍요로웠으므로 유도(留都)로 만들어두려고 크게 일으켰으므로 규모가 크고 원대하여 전대의 모습을 뛰어넘었다. 이에 당우(唐虞) 이래의 건치연혁을 5개의 표(表)와 1개의 고(考)로 만들었다. 이에 삼가 지를 쓴다.⁶¹

61 『흙정지』 권23, 「건치연혁」, 〈서〉(1a-1b). “臣等謹按 書傳舜分靑之東北爲營州 冀之東北爲幽州 以地志攷之 營州之域 是爲遼東 而幽州實兼遼西之地 遼東西之置郡 蓋自秦始 漢武帝時 分設樂浪元菟臨屯眞番四郡 厥後屢有因革 然郡縣之制未改也 唐改爲遼城諸都督府 而秦漢之建置一變矣 遼金元之世 或建爲京

『흙정지』에서는 <역대건치연혁표>를 두어 『건륭지』에 있던 건치연혁에 대한 연혁표를 종합한 다음⁶² 당우(唐虞) 이래 명(明)에 이르는 성경 지역 제 군현의 연혁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흙정지』 「건치연혁」의 마지막에는 별도의 신근안을 추가하였다. 이는 『건륭지』의 마지막 안설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백제와 신라는 처음 모두 삼한의 속국이었으며 대방과 낙랑의 끝에 있다. 유송(劉宋) 때 백제가 요서를 차지하였으며, 당(唐) 초에는 신라가 길림을 같이 차지하였다가 바로 발해에 속하였는데, 발해는 동북으로 흑수와 접하고 동남으로 조선과 접하였으며, 5경 15부 62주로 영토가 넓었다. 요(遼)는 상경(上京) 지금 호륜포우이(呼倫布雨爾)에서 일어났으며, 상경과 동경에 나뉘어 속한 군현은 모두 정벌로 얻은 백성들이다. 그런데 성을 세우고 읍을 설치하면서 대체로 그 사람들이 옛날 거주하였던 주와 읍의 이름으로 명칭을 정한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요사』에 기록된 주현은 발해의 옛 명칭을 이어받은 것이지, 실제 그 땅이 아니다. 동북의 지역은 원래 여진부에 속하였는데 금 태조가 병사를 일으켜 요동의 땅을 모두 차지하면서 주와 군을 줄이고 합쳤으며 원명(元明)의 건치도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책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진서(晉書)』에서 숙신은 불함산(不咸山)의 북쪽에 있으며 넓이가 수천 리에 달한다고 하였는데 불함산은 장백산(長白山)이다. 『송막기문(松漠紀聞)』에서 숙신의 옛 성이 발해의 상경 30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발해는 임호이한(臨呼爾罕)[국어(國語)에 보이는 대강(大綱)이다]에 도읍을 두었는데 지금의 호이합하(瑚爾哈河)로 실로 영고탑(寧古塔)의 땅에 있었을 것이다. 요 때 요양부(遼陽府)에 숙신현(肅愼縣)이 있었으며 황룡부(黃龍府)의 황룡현(黃龍縣) 역시 발해의 숙신현 땅이었으므로 승덕(承德)과 철령(鐵嶺)도 옛 숙

或分爲路 損益不同 然所屬州縣之制 亦未改也 明改州縣爲衛所隸於都司 而遼金元之建置又一變矣 我太祖太宗 肇基遼瀋 世祖統一 方輿豐水 詒謀留都作極規模宏遠 超越前代 爰稽唐虞以來建置沿革爲表五考一 謹志建置沿革第九.”

62 『흙정지』 권23, 「건치연혁」, <歷代建置沿革表>(1a-17b), 사고전서에서는 <歷代建置沿革考>로 수정하였다.

신인 것이 명백하다. 읍루, 물길, 말갈의 강역은 숙신과 같다. 발해는 읍루 옛 땅을 정리부(定理府)라 하였는데 정주(定州)와 심주(瀋州) 2개 주를 거느렸다. 그리하여 『요사』, 『금사』, 『원사』에서는 심주를 모두 옛 읍루의 땅이라고 하였다. 또 요와 금에서는 읍루현의 유지가 철령현 남쪽 60리에 있어 명(明) 때는 의로소(懿路所)라고 하였으며 의로하(懿路河)도 있었다. 이곳은 실로 읍루의 변경인데 글자의 음에서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개원(開原) 읍은 처음에는 숙신에 속하였으나 후에는 부여에 속하였다. 개원 이북의 천여 리는 모두 부여의 땅인데 남북조 때 모용씨의 침략을 받아 옥저로 넘어가 보존하게 되었다. 또 백제로 인해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옮겨 가 연(燕)과 가까워졌다. 그 국왕성은 요 때 통주(通州)가 되었으며, 금 때 융주(隆州)가 되었는데 발해의 부여부이다. 삼가 황제가 말씀하신 삼한에서 잘못을 고쳐야 할 것에 대해 읽어보았는데 삼한의 건국에 대한 본말은 여러 역사서의 기록이 서로 다르다. 방위로 추정하건대 대개 지금 봉천부의 동북인 길림 일대는 땅이 조선과 접하고 있는데 삼한(三韓)은 삼한(三汗)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후한서』에서는 돌로 머리를 누른다고 잘못 적고 있는데 부여국전에서 잘못을 수정해놓았다. 범율종(范蔚宗)과 진수(陳壽)의 무리가 방언을 알지 못하고 기이하고 망령된 것을 좋아하여 실로 만세의 준승(準繩)이 되었는데 삼가 청장문(天章門) 내에 전편을 수록해두어 옛 일을 찾아보는 자로 하여금 영원토록 전직을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 기록을 두루 살펴 믿을 만한 것을 택하여 오른 편과 같이 삼가 적어두었다.⁶³

- 63 『흠정지』 권23, 「건치연혁」, 〈안〉(36a-38a). “臣等謹案 興京吉林黑龍江爲古肅愼挹婁勿吉靺鞨渤海之地 盛京之承德鐵嶺 亦肅愼靺鞨邊境 開原又肅愼及夫餘之界 遼陽錦州寧遠廣寧義州等 則古冀幽徼外之域 秦漢時遼東遼西二郡所轄 蓋平複州寧海岫岩鳳凰城 則周之朝鮮 漢之元菟樂浪 隋之高句麗 而岫岩鳳凰城又兼接濊地 此古來沿革之大凡也 百濟新羅始皆三韓屬國 在帶方樂浪之壤 劉宋時百濟跨有遼西 唐初新羅兼有吉林 而旋俱入於渤海 東北際黑水 東南極朝鮮 五京十五府六十二州 所包廣矣 遼興自上京 爲今呼倫布爾地 而所分隸上京東京之郡縣 皆以征伐所得人戶 建城置邑 大抵多卽其人舊居州邑之名之 故遼史所載州縣 仍沿渤海舊名 而實非其故地 其東北之境 原屬女眞部 金太祖起兵 盡有遼地 省竝州郡 元明建置 各不相沿 載於列史者 可考也 晉書

『흙정지』는 성경 지역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옛 조선과 분리하여 독립된 존재로 만들고 이어서 읍루, 물길, 말갈 및 부여 등을 외곽으로 내보낸 다음 동북 지역의 독자적인 성장을 그리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성경 지역의 속신을 기준으로 주위의 여러 지명에 말갈, 부여, 요동군, 요서군, 옛 조선, 한사군, 고구려 등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가 유송 때는 백제가 바다를 건너 요서를 장악하였으며, 당나라 초기는 신라가 길림 일대를 장악한 적도 있으나 바로 발해로 바뀌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특히 읍루, 물길, 말갈 등은 모두 길림(吉林) 일대에 배정하고 있으며 삼한(三韓)에 대해서도 세 명의 한(汗)이 다스리는 곳으로 보아서 조선과의 연결성을 끊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동북 지역을 여진족의 근거지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사서에 보이는 지명의 혼란에 대해서는 뒤에 여러 옛 지역 명칭을 가져오다가 혼란이 생겼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요동 지역에서 명멸하였던 군소국가에 대해 『흙정지』는 금주부의 금현 지역을 상대(商代)의 고죽국으로 적고 있으며,⁶⁴ 부여는 개원(開原)에 국한한 것을 비판하고 흑룡강 경내로 확장하여 비정하였다.⁶⁵ 삼한은 신등근안에서 지금 봉천의 동북쪽 길림 일대의 땅으로 조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고 기술하였

肅愼在不咸山北廣袤數千裏 不咸卽長白山 松漠紀聞稱肅愼古城在渤海上京三十里 渤海都臨呼爾罕【國語大綱也】爲今瑚爾哈河 實寧古塔境 遼時遼陽府有肅愼縣 黃龍府黃龍縣 亦渤海肅愼縣地 則爲承德鐵嶺 卽古肅愼之明證也 挹婁勿吉靺鞨疆域與肅愼相同 渤海以挹婁故地 爲定理府領定藩二州 遼金元史皆言瀋州故挹婁地 又遼金皆有挹婁縣遺址 在鐵嶺縣南六十里 明爲懿路所 懿路河亦在焉 實挹婁之邊境 而字音之訛也 惟開原一邑 始屬肅愼 後屬夫餘 自開原以北千餘里 皆夫餘之境 南北朝爲慕容氏所侵 走保沃沮 又因百濟侵逼 西徙近燕 其國王城在遼爲通州 金爲隆州 卽渤海之扶餘府也 恭讀禦製三韓訂謬云 三韓建國本末 諸史率多抵牾 以方位準之 蓋在今奉天東北吉林一帶 壤接朝鮮 證三韓爲三汗 竝關後漢書以石押頭之謬 禦製夫餘國傳訂訛 斥范蔚宗陳壽之徒 不識方言 好奇妄安 實爲萬世準繩 謹於天章門內 恭錄全篇 俾考古者 永奉爲典則 因歷考史傳 擇其可信者 謹識如右。”

64 『흙정지』 권23, 「건치연혁」, 〈역대건치연혁표〉, [금주부소속주현](29a-29b).

65 『흙정지』 권100, 「고적」1, 〈부여부〉(15a-15b).

는데, 이러한 삼한 인식은 이전에 나온 『웅정지』에서도 비판한 것이었다.⁶⁶ 그리고 옥저국은 해성현 이동에서 장백산 이서에 이르는 것으로 비정하였다.⁶⁷ 읍루국도 봉천부 승덕현, 길림, 영고탑 등으로 넓게 비정하였다.⁶⁸ 『흙정지』에서는 발해에 대해 비록 『요사』의 기록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⁶⁹ 역대의 건치연혁을 정리하면서 봉천부 해성현을 남경 남해부로, 개원현과 길림의 서남경 일대를 상경 용천부로, 수암성과 봉황성 일대는 동경 용원부로, 광녕현과 의주 일대를 중경 현덕부로 비정하고 있어 요동을 중심으로 비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⁷⁰

요컨대 『건륭지』에서는 옛 군소 국가들을 제외하는 방향에서 중국 왕조의 경내임을 강조하였다면 『흙정지』에서는 이들 군소 국가가 흥경, 길림, 흑룡강을 포함하는 청 제국의 경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확대된 영역관 속에서 다루었다.

부현의 범위와 특징을 확정하는 강역형승의 경우 『강희지』에서는 요하의 좌우에 해당하는 봉천과 금주 2군을 중심으로 그 부현의 거리를 적고 있다.⁷¹ 『웅정지』에서는 부현의 변동과 통치 기구의 변화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다.⁷² 그

66 『웅정지』에서는 오히려 삼한의 요동설을 비판하고 있다. 『웅정지』 권28, 「고적」, [辰州](15b). “辰州(中略) 據此則三韓乃在海中 所謂辰州者 以路辰韓得名 非謂蓋州即辰韓也 俗以遼東爲三韓者 誤也.”

67 『흙정지』 권100, 「고적」1, 〈沃沮國〉(10a). “今縣城(海城縣: 인용자)以東 皆其故壤(中略) 大抵 其境壤廣濶 長白山迤西一帶皆是.”

68 『흙정지』 권23, 「건치연혁」, 〈역대건치연혁표〉, [봉천부](24a-39b).

69 『흙정지』 권100, 「고적」1, 〈발해국〉(6b).

70 『흙정지』 권23, 「건치연혁」, 〈봉천부주현역대건치연혁표〉(7a-11b)와 〈역대건치연혁표〉, [봉천부], [봉천부소속주현](22a-28b).

71 『강희지』 권8, 「강역지(형승부)」, 〈서〉(1a). “右帝王畫鄴 圻以固封守腹心 內地疆理必嚴 矧根本之邦 卽係邊防之重者乎 盛京西接畿輔 東南濱海 北控大漠 而遼河左右 奉錦二郡攸分 是大造之險 以界全遼矣 綢繆疆圉 屏翰神京 苞桑之謀 或在形勝之外 蒞斯土者 何可忘歟 作疆域志.”

72 『웅정지』 권12, 「강역(형승부)」, 〈서〉(1a). “盛京西接畿輔 東控朝鮮濱瀛海 以帶龍江俯登萊 而迤朔漠 其大勢然也 司民牧者 兩郡攸分統軍政者三 鎮是賴既星羅而基布 應畫界以分疆念 王業之所基 苞桑培及萬世 知邊防之爲重 屏翰拱於

런데 『건륭지』에서는 성경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의 주위 환경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이를 통해 웅도(雄都)인 성경의 위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⁷³ 주현 단위로 강역과 형승을 같이 언급한 『건륭지』에서는 형승에서 연원을 이전의 지와는 달리 그 이전의 역사 단계까지 소급하여 적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위상에 대한 자부심은 『흙정지』에 이어지고 있다.⁷⁴

「산천」 조항을 보면 『강희지』에서 성경이 제왕의 발상수명지지(發祥受命之地)이며 그 산하가 영구히 지속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내용에서는 각 산의 거리와 위치, 하천의 경로와 연결 하천 등을 주석의 형식으로 적어놓았다.⁷⁵ 이러한 「산천」에 작동하는 논리는 『웅정지』와 『건륭지』에 관철되고 있다.⁷⁶ 그런데

神京矣.”

73 『건륭지』 권6, 「형승강역」, 〈서〉(29a-30a). “周官形方氏 掌制邦國之疆域 而正其封疆 書曰申畫郊圻 易言王公設險 則審壤域計道里驗形勢 固經略之要務也 瀋陽大營洛之規壯 留都之重 其土地博衍 與夫表裏襟帶者 宜備述焉 以冠九域之圖 大一統之志云 … 若夫盛京踞幽薊之首勢 同建瓴滄海朝宗長白拱峙渾河 遶其西南混同 環其東北 重關巨扁 足壯天府引帆 櫓于吳會俯樓 雉于登萊 山河跨百二之雄 表裏有金湯之固 控諸邦而馭六合 誠帝業之根本 留守之雄都矣.”

74 『흙정지』 권24, 「강역형승」, 〈서〉(1a-1b). “臣等謹按 周官掌疆掌固之設 所以正疆域規形勝 聖人宅中圖大 創業垂統 必先申畫郊圻 然後可以肇域 四海縣之詩曰周原膺膺 言相度形勢也 乃疆廼理 言釐定疆域也 我國家締造盛京廣袤五六千里 奄有大東遂恢 九有大一統之規實肇 於是臣等載考輿圖備述 南北東西所至 與夫山河襟帶之勢 謹志疆域形勝第十.”

75 『강희지』 권9, 「산천지」, 〈서〉(1a). “周頌稱懷柔百神及河喬嶽 帝王受命承乾家而隆羣望靈秩協應有自來矣 盛京源鍾長白秀結巫閭滄海南廻混同東注王氣所萃在乎 山川不信然哉 卜瀟卜洛 締造維勤陟卜獻在原貽謀斯遠祖功宗德 將與河山共永於萬年矣 作山川志”

76 『웅정지』 권13, 「산천」, 〈서〉(1a). “從來帝王受命河嶽效靈漆沮豐岐 載登雅頌尙矣 盛京源鍾長白秀結巫閭滄海南廻混同東注王氣所萃在乎 山川不信然歟 廼疆廼理 締造維新卜瀟卜洛貽謀斯遠 祖功宗德億萬斯年 其與河山共永哉.”
『건륭지』 권7, 「산천 상」, 〈서〉(1a). “古者分州建邦 必有名山川 以爲之望 淮南記六水 而遶居其一 書稱十有二山 醫巫閭鎮東北焉 況巖巖長白列伯益之經者 又本朝鍾祥而受命者也 修貢效珍其來斯久詩曰 懷柔百神及河喬嶽 國家隆望秩之儀 罔不受職億萬年功德之遠 其與河山並永哉.”

기술된 내용 면에서 보면 자구 수정에 그치던 기존의 「산천」 서술과는 달리 『흙정지』에서는 청 태조와 태종이 일어난 지역으로서 산천에 주목하였다.⁷⁷ 그리하여 「산천」의 마지막에 별도로 <고산천부고(古山川附考)>를 추가하여 산천의 역사적 변천과 지명 고증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고산천부고>는 옛 전적에서 나오는 요동 산천의 이름을 정리한 것이지만, 지리비정에서 가장 잘못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⁷⁸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마대산은 개평과 해성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비정하였다.⁷⁹ 대방산에 대한 기록에서 한사군의 대방에 대해 그 위치를 봉천부 일대로 보았다.⁸⁰ 당태종이 고구려 안시성을 공격하면서 주필하였던 주필산은 『당서』에 기록된 주필산, 개평 동 110여 리 분수령 여러 산, 해성 서남 10리 거가산 등이 모두 당 태종이 주필한 산이라고 적었다. 발해가 개국한 동모산은 『대명일통지』의 심양위 성동쪽 20리에 있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천주산(天柱山)으로 추측하였다. 『구당

77 『흙정지』 권25, 「산천」, <서>(1a-1b). “臣等謹案 古者帝王建國 必有名山大川 以爲之望 淮南記六水 遼居其一 周官十有二州山鎮 東北曰醫巫閭 金史稱白山黑水 神皋奧壤 實我國家所以發祥受命者也 臣等恭考山川疆域 序列前後 其間如松杏諸山太子河懿路蒲河 皆我太祖太宗 締造經營 燹伐用張之地 謹稽實錄 詳注 事跡於篇 竝附古山川考於後 志山川第十一.”

78 『흙정지』 권28, 「산천」, <古山川附考>(43a-43b). “臣等 竊惟山川 今古異名 如河稱太史莫問 其津蔽號陽防 未詳其地 往往有之 臣等既厘考 奉天錦州吉林黑龍江 諸山川 詳著於篇 因考前代書史 言遼東西山川者多矣 古今世遠 方言易訛 或存諸載籍 名有可稱 按之輿圖 地難指溯傳者 失其眞 詮辨者 更流附防 爰博采前經 詳加訂證 其無考者 竝著於編 以附闕疑之義雲爾.”

79 『흙정지』 권28, 「산천」, <古山川附考>, [蓋馬大山](44b). “按今蓋平縣 卽漢西蓋馬縣地 蓋馬大山應在蓋平海城之間 今以圖志考之 平壤實在朝鮮境內 高麗圖經亦云 平壤城在鴨綠水東 顯德故城在今遼陽州之北 是遼史之以顯德地爲忽汗州 忽汗卽平壤誤也 但以漢書元菟樂浪郡之考之 實今蓋平海城諸縣境內地 且顏師古注稱蓋馬大山 在平壤城之西 則應與故耀州城相近無疑 況平壤故城 亦非卽今朝鮮境內之平壤 姑從舊志存此山 以備參考.”

80 『흙정지』 권28, 「산천」, <古山川附考>, [帶方山](45a). “帶方山 隋書大業初 置遼西郡有帶方山 禿黎山 鷄鳴山 松山 按漢時有帶方縣屬樂浪郡 卽今奉天府界內地.”

서』의 계루부의 동모산이라는 기록을 들고서 계루는 고구려의 부명으로 『신당서』나 『요사』의 기록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였다. 신라산에 대한 안설에서도 신라산은 철령과 개원의 사이에 있으며, 개원은 한나라 때 부여 지경으로 백제의 구국이며, 『통고』에서 말한 신라 서북계가 고구려와 백제의 사이를 지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고 적었다.⁸¹ 열수는 대방과 관련하여 요동 일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⁸²

이상과 같은 『흙정지』의 내용은 『건릉지』 이래 동북 일대를 옛 중국 왕조의 경내로 간주하려는 바탕 위에 이전의 책에 비해 더욱 강하게 삼한과 백제와 신라를 요서와 길림 일대에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존립하였던 옛 고구려가 역사 기술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이는 요동 일원에서의 만주족의 역사를 더욱 확장하려는, 그리고 이를 통해 청의 역사적 공간을 확대하는 건릉제와 『흙정지』 집필자들의 의도가 더욱 충실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청 만주족의 발상지인 성경을 다룬 지리서로 『성경통지』가 편찬되었는데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통해 판각에 이른 것은 강희 23년본, 건륭 원년본, 건륭 13년본, 건륭 44년본 등 4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간행된 『성경통지』가 시대가 바뀔에 따라 내용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통지』는

81 『흙정지』 권28, 「산천」, 〈古山川附考〉, [駐蹕山-新羅山](45b-48a), “俱在今鐵嶺開原之間 … 開原卽漢時夫餘界 百濟之舊國也 通考謂新羅西北界出高麗百濟間者卽指此.”

82 『흙정지』 권28, 「산천」, 〈古山川附考〉, [列水](49b-50a), “山海經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郭璞注朝鮮今樂浪縣 箕子所封 列亦水名 今在帶方 漢書帶方有列口縣.”

성경을 다른 지리서이지만 고대기에 요동 지역을 차지하였던 조선의 위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건륭지』에서 이 지역의 독자성을 표방하려는 모습이 『흙정지』에 들어와 옛 중국 왕조 경내로서의 위상과 여러 군소 국가의 활동 지역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속된 『성경통지』의 편찬을 통해 이 지역을 만주족의 근거지이자 옛 중국 왕조의 역사적 공간으로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이에는 이 지역을 청 제국의 공간으로 확대하려는 청조의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조선과 만주의 상고사에 보이는 지명을 비정하다 보니 『성경통지』에서는 우리나라 상고 시기 지명의 많은 부분이 요동 지역에 비정되었으며, 옥저, 읍루, 삼한, 발해 등도 이 지역에 수렴되었다. 다만 만주족의 근거지로서 성경 지역을 강조하면서 『요사』에서의 비정보다 차츰 길림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일부 조선 학인들은 『성경통지』의 이러한 기사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의 4군현이 모두 요동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⁸³ 또한 조선 학인들은 금주부의 고죽국 기록을 기자 고죽국으로 해석함으로써 이곳을 기자의 유적지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기자의 강역을 금주부에 비정하는 인식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당시 청에서 편찬된 『대청일통지』와 『만주원류고』는 『성경통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다만 『대청일통지』는 처음 강희제 때 편찬되어 건륭 9년(1744) 무영전판으로 간행된 후 지리지의 특성상 이후 수정된 건륭본과 가경수정본에는 신장(新疆)지구나 외국(外國) 관련 조항이 더 첨가되었으나 지명에 해당하는 성경(盛京) 항목이나 조선(朝鮮) 항목에서는 조선과 관련하여 외교적 관계에 대한 기술이 덧붙여지거나 일부 오자를 수정하는 정도의 변동이 있

83 『옹정지』에서도 한의 險瀆縣을 봉천부 승덕현에 비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듯이(『옹정지』 권28, 「고적」, <봉천부>(2a), “但考綱目內釋地一條 險瀆在樂浪浪水之東 浪水又在平壤城東 平壤在今鴨綠江東 則險瀆已入高麗界 不在承德境內也.”) 한사군을 모두 요동에 비정한 것은 아니다.

을 뿐 기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성경통지』는 지방지임에도 중앙의 편찬 의도에 따라 특히 성경과 그 주위 지역에 명멸하였던 국가들의 위치나 민족의 모습을 왜곡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게다가 『흙정지』의 총재관인 아계(阿桂)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만주원류고』의 완성, 그리고 이어진 『흙정지』의 편찬은 『성경통지』에 수록된 요동 일원의 역사지리를 만주족 중심으로 강하게 왜곡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중국 측 지리서가 가지는 위험성을 보고서 조선 후기 역사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통지』가 제기하고 있던 옛 역사지리에 대한 비정에 차츰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조선 학자들은 실증적 측면에서 지명 비정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고증하거나 혈연적 계통보다 국가의 변천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의 변천을 찾아보려고 하였다.⁸⁴

84 민족적 계통성을 바탕으로 두면서 실증적 측면에서 지명 비정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고증하였던 대표적인 연구자는 정약용, 이청, 윤정기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통이나 혈연보다 국가의 변천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의 변천을 찾아보려는 연구자는 안정복, 유득공, 한치윤, 한진서 등이라고 할 수 있다(박인호, 2021, 『실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지리를 어떻게 보았는가』, 동북아역사재단).

참고문헌

자료

- 『大清一統志』, 미국 하버드대 소장본, 대만 商務印書館 영인본.
『盛京通志』, 일본 교토대 소장본, 대만 文海出版社 영인본, 일본 와세다대 소장본,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미국 하버드대 소장본, 중국 사고전서본.
『十全記』.
『藥泉集』.

단행본

- 박인호, 2003,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
——, 2021, 『실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지리를 어떻게 보았는가』, 동북아역사재단.
윤영인 외, 2010,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이화자, 2008, 『조청국경문제연구』, 집문당.

- 薛虹, 1984, 『中國方志學概論』, 黑龍江人民出版社.
丁海斌, 2007, 『清代陪都盛京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植野武雄, 1944, 『滿支典籍攷』, 奉天 大阪屋号書店.

논문

- 기세찬, 2017, 「신청사 연구사 분석을 통한 담론의 함의」, 『군사연구』 144, 육군군사연구소.
김선민, 2011, 「만주제국인가 청 제국인가-최근 미국의 청대사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사총』 7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김형중, 2016,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동북아역사논총』 53, 동북아역사재단.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2009, 「팔기제 구하기」,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박인호, 1998, 「명·청대 중국 지리서에 나타난 대조선 역사지리인식」, 『경북사학』 21, 경북사학회.

_____, 2020, 「만주를 보는 근대 동아시아 삼국의 시각」, 『한국사학사학보』 42, 한국사학사학회.

_____, 2021, 「순암 안정복의 북방인식」,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方京一, 2005, 「『滿洲源流考』에 나타난 淸高宗의 東夷意識」, 『만주연구』 3, 만주학회.

송인주, 2018, 「『황청직공도』의 ‘대일통’ 세계」, 『한국사학사학보』 38, 한국사학사학회.

안치영·허혜윤, 2014, 「중국 동북지역 연구 자료-청대와 민국시기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18, 만주학회.

윤옥, 2015, 「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7, 효원사학회.

이훈, 2011,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京師 旗人의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 『사충』 7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_____, 2013, 「17~18세기 청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정책과 인식-건륭기 만주족의 위기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邱富生, 1984, 「遼寧方志述略」, 『中國地方史志論叢』, 中華書局.

安大偉, 2020, 「乾隆十三年本《欽定盛京通志》研究」, 『黑河學院學報』 2020-9期.

張一弛·劉鳳雲, 2018, 「清代“大一統”政治文化的構建」, 『中國人民大學學報』, 2018-6期.

鄭永昌, 2015[民104], 「百年變遷：清初《盛京通志》的編纂及其內容探析」, 『故宮學術季刊』 33-2.

趙秉忠, 1994, 「論淸帝東巡」, 『社會科學輯刊』 1994-5期.

陳加, 1980, 「盛京通志纂修考」, 『圖書館學刊』 1980-3期.

『성경통지』에 나타난 청의 동북 지역에 대한 인식

박인호

청 만주족의 발상지인 성경을 다룬 지리서로 청나라에서 『성경통지』가 편찬되었다. 이 책은 강희 23년본, 건륭 원년본, 건륭 13년본, 건륭 44년본 등 네 번 편찬되었다. 그런데 각 『성경통지』는 편찬될 때마다 내용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성경통지』는 성경을 다룬 지리서이지만 고대기에 요동 지역을 차지하였던 조선의 위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건륭지』에 보이는 성경의 독자성을 표방하려는 모습이 『흙정지』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는 방식으로 기술된 것을 보면 이 두 책에는 성경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청나라 조정의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조선 학인들은 처음 초기 『성경통지』의 이러한 지리 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주에 고대기의 지명을 비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건륭지』와 『흙정지』의 성경을 만주족의 활동 지역으로 간주하는 역사지리 비정이 가지는 위험성으로 인해 조선 후기 역사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차츰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조선 학자들은 실증적 측면에서 지명 비정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고증하거나 혈연적 계통보다 국가의 변천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의 변천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주제어: 『성경통지』, 『대청일통지』, 『만주원류고』, 만주, 국경 인식

ABSTRACT

The Chinese Qing Dynasty People's Perception of Manchuria in the *Seonggyeongtongji*

Park Inho

The Qing Dynasty was compiled the *Seonggyeongtongji* as a geography of the Seonggyeong, the birthplace of the Manchu people in China. This book was compiled four times, including 23 years of Kang Hee, the first year of Genlung, 13 years of Genlung, and 44 years of Genlung. However, the *Seonggyeongtongji* published at each time had a remarkable change contents in the field of historical geography every time it was compiled.

Because the *Seonggyeongtongji* is a geographical book dealing with the Seonggyeong,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status of Joseon, which occupied the fluctuation area in ancient times. The description of the originality of the Seonggyeong in 13 years of Genlung *Seonggyeongtongji* that is more strengthened by entering the settlement of the Seonggyeong in 44 years of Genlung *Seonggyeongtongji* shows that the political purpose of the Qing

Dynasty adjustment to reestablish the historical status of the Seonggyeong region is strongly working in these two books. However, some Joseon scholars used the geographical irregularities of the early Seonggyeong notice to actively utilize the name of Joseon, which existed in Manchuria in ancient times. However, the mistake of committing the nomination in both books gradually became criticized by scholars studying historical geograph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cholars of Joseon tried to confirm the error of the position irregularity in detail considering the actual location of the geography or wanted to find changes in the history of Korea through the change of the state rather than the lineage of the nation or the blood line.

Keywords: *Seonggyeongtongji*, *Dachengiltongji*, *Manjuwonlewgo*, Manchuria, the border line in mind

극동러시아 당국의 1870·1871년 조선인 강제 재이주정책과 체제선전소문

최성운 | 한국전통의사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1870년 수이푼과 1871년 아무르주로의 조선인 재이주정책
- III. 연해주 조선인에 대한 러시아화 정책: 교육과 러시아정교 및 1870·1871년의
정치적 선전소문
- IV. 수이푼과 아무르주 재이주의 차이점
- V. 맺음말



I. 머리말

1870년에 발생한 수이푼(한국명 秋風)으로의 조선인 재이주¹와 1871년에 발생한 아무르주로의 조선인 재이주는 1870년대 중후반까지도 조선 및 러시아 정부 그리고 조선령과 러시아령의 조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수이푼 재이주정책의 여파로 인해 조선 내로 러시아의 체제선전소문이 유입되면서 러시아를 정치적 이상향으로 여기게 된 함경도 북관지역 조선인들이 지속적으로 연해주로 월경(越境)하여 대규모 인구유실이 함경도 접경지대에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 정부는 세금징수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기존의 월경재발방지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아무르주 재이주의 정책적 실패로 인해 기존의 조선인 재이주정책을 폐지한 뒤 이전과 정반대의 정책적 목표를 지닌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870·1871년의 조선인 재이주정책이 조선과 러시아의 정부 및 조선인 대중에게 미친 파장이 컸음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희소하고,² 재

* 투고: 2022년 1월 16일, 심사 완료: 2022년 2월 14일, 게재 확정: 2022년 2월 16일

- 1 이채문, 1999,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역사와 이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1999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136~137쪽. 이채문은 조-러 국경을 건넌 뒤 러시아령내의 조-러 국경지대의 조선인 마을인 티진헤 등지로 이주해 온 조선인들을 조-러 국경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시 이주시키는 것을 ‘재이주’라고 하며, 이때의 이주가 조선인들이 조선을 떠나 러시아로 월경하는 ‘이주’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서 이것이 “한인의 재이주정책을 통한 러시아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2 이 주제만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그리고 1870·1871년의 조선인 재이주에 대해 다룬 연구는 보리스 박, 2002, 『러시아 제국의 한인들(극동기)』, 청주대학교 출판부;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2004, 『러시아에서의 140년간-재러한인 이주사-』, 시대정신;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

이주의 정책적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활용한 정책적 수단
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이 정책이 러시아화를 목적으
로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체제선전과 실제적인 재이주과정의 결합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 글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핵심적 내용인 재이주정책의 ‘강제성’
에 대해서도, 플로트니코바 마리나만이 학위논문을 통해 아무르주로의 이주에
대해 최초의 강제 이주였다고 언급했을 따름이다.³ 수이푼 재이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강제성을 규명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수이푼 혹은 아
무르주로의 이주과정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서
로 다른 정책적 결과와 상이한 역사적 영향력을 야기한 이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또한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월경한 뒤 조-러 국경지대의 러시아령에 밀집해 거주하
던 조선인들을 수이푼과 아무르주로 강제 재이주시킨 제정러시아의 정책에 대
해 고찰할 것이다. 논증하고자 하는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차례
에 걸친 조선인 재이주는 러시아 당국에서 연해주지역을 러시아화하고 조선인
들 역시 러시아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시행한 최초의 강제 이주 사례이다. 둘
째, 이 재이주정책은 조선인들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절차와 함께 재이주 시
에 주어지는 물질적 특혜를 선전하고 재이주의 강제성에 당의(糖衣)를 입히는
재이주정책선전 및 조선인들을 러시아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체제선전작업이
결합되어 존재했다.

이 글의 전반부는 전자를, 그리고 후반부는 후자를 주로 다룬다. 먼저

사재단: 반병률, 2011, 「러시아원동지역 초기 한인마을 형성과 러시아의 정책에 대
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40, 281~340쪽; 이상근, 1994, 「韓人 露領移住史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플로트니코바 마리나, 2006, 「1863~1910년까
지 연해주로의 한인 이주와 그들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러시아 국립 역사기록보
관소 극동지부 소장 문서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플로트니코바 마리나, 2006, 위의 글, 46쪽과 주 61).

1870년과 1871년에 시행된 러시아정부의 조선인 재이주정책에 대해, 이보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1868~1869년에 걸친 수이푼 지역 푸틸롭카(Путиловка, 六城村)로의 재이주와 1869년에 계획된 한카호(중국어명 興凱湖)로의 재이주계획을 비교하고 고찰하여 그 강제성을 규명한다. 아울러 이 두 번의 재이주계획이 17세기 이래로 러시아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세워진 ‘자신의 의지에 의한 이주’ 원칙에 의해 수립된 데 반해, 1870년과 1871년의 재이주정책이 황제의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강제 이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분석한다.

1870년과 1871년의 재이주가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었음에도 1870년 수이푼으로의 재이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1871년 아무르주로의 재이주에 대해서는 극명한 반발이 제기되었다. 전자의 경우 별다른 반발이 보고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영내와 조선 내의 조선인들에게 연해주 혹은 수이푼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열망까지 불러일으킨 데 반해, 후자는 조선인들을 재이주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조선인들의 극렬한 거부감 속에 유해한 결과만 초래했기에 정책적인 실패라는 평가를 받으며 결국 폐지된 대조적인 상황에 대해 1, 2차 사료 및 후대의 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그 강제성이란 면에서는 동일한 2차에 걸친 재이주정책에서 대조적인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이주 대상의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정책에 존재하는 차이점 및 강제 이주에 대한 정당화를 통해 조선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러시아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선전의 성패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당시 러시아에서 동원할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적 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당시에 러시아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정책소문이 관건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조선인들로부터 강제 이주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서사가 재이주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조선인들에 대한 러시아화를 통해 차르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들기과 접합되는 지점을 분석한 뒤, 재이주 당시에 러시아 정부가 생산하고 유포했던 정치적 목적을 띤 선전소문의 서사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같은 서사를 지닌 선전소문이 수이푼으로의 재이주에서는 강제 이주를 정당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무르주로의 재이주에서는 수이푼보다 오

히려 월등히 많은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실패한 원인에 대해 수이푼으로의 재이주 대상자와 아무르주로의 재이주 대상자가 처한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여 규명할 것이다.

II. 1870년 수이푼과 1871년 아무르주로의 조선인 재이주 정책

1. 전사(前史): 1865~1869년까지의 조선인 재이주정책

시베리아 개척을 위한 농민들의 이주가 지원자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17세기 이래로 러시아 정부에서 식민정책에 대해 견지해온 원칙이었다. 이것은 1648년에 유랑민들을 등록한 뒤 시베리아의 국유지에 국가농민으로 정착시키려 했으나 유랑민들의 도주로 인해 실패하자, 러시아 황제가 “앞으로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경작지에 정착시키지 말라”는 칙령을 내려 이주자들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강제 이주를 금지시킨 것으로부터 유래했다. 이후 시베리아 각 지역 총독들은 막대한 정착지원금·대출금·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하여 새로운 지역을 개척할 농민들을 모집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⁴ 그러나 비록 자유의지에 의한 재이주계획이 식민정책에서 원칙에 해당되었지만,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강제적 이주라는 특별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58년의 아이훈 조약과 1860년에 베이징 조약으로 아무르주와 연해주를 획득한 뒤 러시아에서는 프리아무르(연해주, 아무르주, 자바이칼주)에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러시아의 방어요새를 구축하는 군사적 임무를 최우선시하

4 박상철, 2013, 「러시아 정부와 시베리아 농민이주-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서양사연구』 50, 183쪽.

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러시아 군기지 후방에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러시아 농민들과 카자크인의 공동체를 정착시켜 군량생산을 담당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러시아화’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았다.⁵ 그리고 이것은 1860~1870년대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아무르주와 연해주에서의 농업이민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러시아 당국에는 1861년에 「아무르주와 연해주의 러시아인 및 이민족들의 이주에 관한 법」(이하 ‘1861년 「법」’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100데샤티나의 토지를 비롯하여 인두세 납부 영구면제, 20년간 토지세 면제, 3년간 부역면제라는 특권을 부여하여⁶ 농민들의 이주를 유인하려 했다. 이것은 이주를 자원하여 스스로 이주비용을 대며 이주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1866년에는 1861년 「법」의 혜택에 추가적으로 한 가구당 100루블의 현금 대출, 추수할 때까지 군인 배급량에 준하는 식량 제공 및 정착지 선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까지 제공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연해주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려 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아무르주의 러시아 농민들이 연해주로 이주해 니콜스코예(Никольское)와 라즈돌노예(Раздольное) 등의 마을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들의 이주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주했으나 정착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러시아 당국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⁷

1863년부터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군량생산을 비롯한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민족으로 간주했고, 조-러 국경지대에 밀집해 거주

5 양승조, 2016,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지역 식민정책-유즈노우수리 지역 식민이주 정책을 중심으로」, 『사총』 87, 278~279쪽, 288~289쪽.

6 이병조, 2009, 「러시아 아무르주의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872~1916)-블라고슬로벤노예(Благословенное) 마을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0, 57쪽.

7 Ю. Н. Осипов, 2006, *Крестьяне-старожил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1855-1917 гг.: Монография*, Владивосток: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ство ВГУЭС, С. 45~46; 양승조, 2016, 앞의 글, 293~294쪽, 296~298쪽.

하는 월경조선인의 숫자가 단기간내에 급증하면서 이들이 러시아인들과 교류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성을 보이자 앞으로 이들이 러시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연해주지역에 이주하여 지역 러시아화를 이룰 러시아 농민이 차지할 토지를 선점해 버리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해결책은 조선인들을 조-러 국경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의 러시아계 농민들 혹은 카자크 마을 주변으로 재이주시켜 이들이 러시아화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⁸

1865년부터 조선인 대상 식민정책이 본격적으로 계획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조선인들을 국가농민으로 귀속시켜 재이주시키는 것과 자유농민의 상태에서 재이주시키는 것으로 대별된다. 또한 후자는 자의에 의한 재이주와 강제 재이주로 나뉜다.

조선인들을 재이주시키는 방법 중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은 조선인들을 국가농민으로 귀속시키고 1861년 「법」의 막대한 특혜를 부여하며 재이주시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1861년 「법」의 특혜를 제공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이들이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에 무지하기 때문에 국가농민에 대한 특혜에 따라 부과되는 군정집과 같은 부역 및 납세의 의무를 지우는 데 조선인들이나 러시아 정부 양자 모두에게 무리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조선인들이 러시아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들의 국가농민 귀속을 통한 재이주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 중 하나였다.⁹

국가농민이 아닌 자유로운 농민으로서의 재이주는 이후 자의에 의한 재이주와 강제 재이주라는 두 축 사이를 오갔었다. 자의에 의한 재이주의 대표적인 예

8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한희정 역, 2014, 「99. <총참모본부 겔메르센 대위의 1865년도 포시예트항 출장보고서>」, 『러시아문서 번역집 XXII-러시아국립 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선인, 227~231쪽.

9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2004, 앞의 책, 35쪽;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2010, 앞의 책, 167~170쪽.

로 1868년을 들 수 있고,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1865년과 1869년에도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재이주가 계획되었었다. 그리고 강제 재이주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는 1870·1871년을 비롯하여, 실행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았던 1865년의 수찬(한국명 水淸) 재이주계획¹⁰과 계획에만 머물렀던 1888년의 아무르 강변과 우수리강 지류로의 재이주계획¹¹이 존재한다.

1865년 1/4분기에 카자케비치 연해주 군무지사가 ‘조선인들에게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도록 설득하지만 이것은 설득에만 그쳐야 하며 그들에게 장소선택권을 위임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것은 17세기 이래로 지켜진 시베리아 식민정책의 원칙과 동일했다.¹² 그런데 그는 이와 모순되는 ‘4월 한 달 동안 티진헤(Тизинхе, 한국명 地新墟·地新墟)의 조선인들을 배에 태워 수찬지역으로 재이주시키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티진헤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현지조사 중이던 겔메르센 이등대위가 ‘조선인들을 수찬지역으로 이주시키라’는 카자케비치의 명령이 이전에 자신에게 내려졌던 훈령과 상충하며,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무리인 데다 앞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그가 수찬으로 이주시키라는 “본 지시는 제게 하달된 훈령들과 상충”된다고 지적한 것은 카자케비치가 명령한 수찬 이주가 명령하달 이후 단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그가 받은 훈령들에서는 “최대한 순차적인 이주를 지시”하여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조선인들이 자진해서 정주하게 될” 곳들로 조선인을 이주시킬 것을 요청하여, 수찬 재이주가 식민이주정책의 원칙이었던 ‘자유의지에 의한 이주’가 아니라는

10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한희정 역, 2014, 앞의 글, 230쪽.

11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김선안 역, 2014, 『러시아문서 번역집 XVIII-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선인, 26~36쪽.

12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46~49쪽; 썸비르제바 따찌아나, 1997, 「19세기 후반 조·러간 국교수립과정과 그 성격-러시아의 조선침략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34쪽.

점을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¹³ 결과적으로 수찬지역으로의 재이주는 실행되지 않았다.

카자케비치가 세운 조선인 재이주계획에서 조-러 국경지대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조선과 가까운 지역을 조선인 재이주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수찬으로의 조선인 재이주 명령을 내린 것은 연해주의 개발 외에도 접경지역에서 조선인들이 적대적 세력으로 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월경 조선인들을 내륙지역의 러시아 마을 사이로 정착시켜 이들을 러시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¹⁴ 이를 통해 자유의지에 의한 재이주계획이 식민정책에서 원칙에 해당되었지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강제적 이주라는 특별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868·1869년의 자의에 의한 재이주 혹은 재이주계획의 경우, 러시아 당국에서 기존에 조선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했을 때 받았던 혜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토지와 종자 및 식량만 제공하는 선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재이주에 동의하는 자들에게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867년 12월에 경흥을 떠나 연해주에 도착했던 월경조선인 150가구 중 일부가 러시아 정부에 의해 1868년에 블라디보스토크-라즈돌노예(Раздольное, 한국명 하마탄, 虾蟆塘)-수이푼의 푸틸롭카로 이동하며 각자 원하는 곳에 정착했다. 1869년 4월에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자였던 연해주의 조선인 지도자 최운보(崔運寶)가 이끄는 10가구 혹은 35가구가 최후의 정착지인 수이푼 강 분지유역의 수이푼에 정착하여 푸틸롭카 마을을 개척하게 되었다. 이때는 러시아 정부에서 토지와 종자 및 식량만 제공했을 뿐 이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아서, 조선인들은 거의 인력만 가지고 푸틸롭카 마을의 토대를 닦았던 것으로 전해진다.¹⁵ 수이푼으로 가기를 자원하여

13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한희정 역, 2014, 앞의 글, 227~231쪽.

14 앞에서 언급된 겔메르센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이와 같이 해석했다.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한희정 역, 2014, 앞의 글, 227~230쪽.

정착했던 조선인이 150가구 중 10가구 혹은 35가부로 6.7% 혹은 23.3%에 불과했다. 당시 93.3% 혹은 76.7%라는 압도적인 인원이 수이푼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이주에 따른 별다른 물질적 이득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러 국경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하여 완전히 새롭게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을 조선인들이 원치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1869년도에도 러시아 내륙지역으로의 조선인 이주계획이 세워졌었다. 1868~1869년 겨울에 900여 명의 조선인이 연해주로 월경해 오자, 러시아 정부에서는 조-러 국경 근처에 이들이 정착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다. 이때 몇몇 조선인이 토지와 종자 및 식량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한카호 쪽으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들 외에 다른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기존에 조선인들의 정착예정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던 수이푼강 분지지역에 정착시키기로 결정했다.¹⁵

1868년과 1869년의 조선인 재이주계획에서 재이주 희망 조선인에게 주어지던 이주에 대한 지원수준 정도로는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으로 이주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69년의 푸틸롭가 개척자들이나 1869년의 한카호 이주 지원자가 소규모에 불과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정부에서 1867년부터 조선인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식민계획은 초라한 성과를 내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1868년과 1869년의 조선인 재이주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러시아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자원자를 받아 재이주시키려 했으며, 강제적 재이주를 시행하려 하지는 않았다.

15 반병률, 2011, 앞의 글, 294~296쪽; 반병률, 2009,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 25, 47쪽;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53쪽.

16 보리스 박, 2002, 위의 책, 58~59쪽.

2. 1870년 수이푼으로의 조선인 재이주

1869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1,850명의 조선인이 연해주로 월경했는데, 이 인원은 그때까지 연간 최대 월경인원이었던 1868~1869년의 900여 명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급박한 상황전개와 달라진 정세 속에 러시아 정부는 1868~1869년까지도 지켜졌던 원칙인 ‘자의에 의한 재이주’를 포기하고, 자신이 선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인원에게 대한 강제 재이주를 시행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재이주에 따른 혜택도 기존의 자의에 의한 재이주에 대해 토지와 종자 및 첫 수확을 걷을 때까지 버틸 식량을 제공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수준으로 제공했다. 이것은 당시 대다수 월경조선인들이 고향에서 가까운 조-러 접경지대에 정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¹⁷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주에 따른 물질적 대가를 제공한 것이다.

1869년 하반기에 들어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월경사태로 연해주에 도착한 1,850명의 조선인 중 가축을 소유한 70명은 니콜스코예 마을로, 그리고 600명은 배를 이용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졌다. 이후 갑자기 닥친 한파로 나머지 인원은 티진헤에 남아 있게 되었는데, 동시베리아 총독 코르사코프는 남은 월경조선인들을 우선적으로 다우비헤강 분지의 도로 포장과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독 건설 등의 임금노동에 고용하도록 지시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1870년 이른 봄이 되면 조선인들을 수이푼과 올가만으로 재이주시킬 것을 명령했다.¹⁸ 이때 연해주 군무지사가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수이푼지역과 올가만으로 보내질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00마리의 황소와 1,000푸드의 종자를 구입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자, 동시베리아 총독은 이를

17 이상근, 1994, 앞의 글, 70쪽.

18 В. И. Вагин, 1875, “Корейцы на Амуре”, *Сборник историко-статистических сведений о Сибк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ей странах*, Вып. 2, Т. 1., СПб: Русская скоропечатня, С. 3, С. 7;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59~60쪽, 70~74쪽;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2004, 앞의 책, 37~38쪽.

승인하며 곡식과 가축 매입 및 정착을 위한 기타 필수품 지급 용도로 예산을 할당했다.¹⁹

월경사태 초창기에 세워진 식민계획은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또다시 4,500여 명의 조선인이 연해주로 건너오는 2차 월경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세부적 변동사항이 존재할 뿐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코르사코프는 안치헤(Янчихе, 한국명 延秋·煙秋)에 있던 1869년의 새로운 월경조선인 모두와 티진해를 떠나고 싶어 하는 자원자들을 1870년 이른 봄에 수이푼을 비롯한 레푸 및 다우비헤 등지의 내륙지역으로 재이주시키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월경조선인들에게 좀 다양한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임노동직이 제공되었으며, 연해주로 넘어온 뒤 체류하고 있던 포시에트만 인근의 농촌에서 농경과 관련되어 자리를 잡지 못한 자들 모두가 이때 수이푼으로 보내졌다. 이때 올라만 이 제외된 것은 동시베리아 총독이 우수리지방은 러시아인들이 점유해야만 하며, 특히 조선인들을 해안지역에 재이주시키지 않는 것을 재이주에 대한 하나의 규칙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²⁰

2차 월경사태로 인해 1차 월경사태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막대한 추가적 자원이 소요되면서, 재이주에 대해 지원하는 특혜의 수준이 최초의 계획보다는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황소를 비롯한 가축의 제공 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1870년에 수이푼지역에서 개척된 6개의 조선인 마을에는 먼저 총 말 4필과 황소 2마리의 가축만 제공되었는데,²¹ 새로 개척되는 마을마다 황소나 말 등의 역축이 1마리씩 할당된 셈이었다. 그리고 수이푼지역의 조선인들은 추가로 황소 40마리와 말 13마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²² 이것은 최초로 승인

19 이상근, 1994, 앞의 글, 67~68쪽;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2004, 위의 책, 42쪽.

20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8~9, С. 12.

21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72~76쪽; 반병률, 2011, 앞의 글, 294~295쪽; 이상근, 1994, 앞의 글, 67~68쪽.

22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2004, 앞의 책, 43쪽.

된 100마리의 황소보다는 현격하게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기아로 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월경해 온 빈털터리의 조선인들에게 원활한 개척과 정착을 위해 부의 상징인 황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일대 사건이었다. 반면에 레푸나 다우비헤강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에게는 가축이 지급되지 않아서, 조선인들이 수이푼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했다.

러시아 정부가 월경조선인들에게 가축을 제공하는 사실과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점은 1869년에 별다른 지원 없이 수이푼을 개척했던 최운보를 비롯한 푸틸롭카 마을의 조선인들에게 1870년 봄이 되자 러시아 정부에서 경작을 위한 소 한 쌍과 파종용 종자 구입비를 제공했다²³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역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넓은 면적을 개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1870년에 수이푼을 개간하러 떠나는 재이주자들에게 황소와 말이라는 역축이 제공된 것이다.²⁴ 최운보 일행에게도 1869년 개간 당시에 역축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이지만, 러시아 정부에서 역축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을 개척 첫 해가 아닌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경작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역축을 제공했었다. 여기에는 1870년의 대규모 재이주를 앞두고 러시아 정부에서 선전하는 원거리 이주에 대한 지원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1869년 말에 대규모로 월경한 조선인들을 수이푼으로 재이주시키기 위해 설득하려는 홍보 목적이 일정 정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68년과는 달리 1870년에 진행된 조선인 재이주정책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바긴(В. И. Вагин)의 『아무르의 한인들』에 의하면 1869~1870년 겨울에 연해주로 월경했던 조선인 5,700명을 1870년에 수이푼강을 비롯하여 레푸강과 다우비헤강의 분지로 이주시킨 결과,²⁵ 1870년 말에는 1869년 말의 월경자

23 반병률, 2011, 앞의 글, 294~296쪽;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72쪽, 74~75쪽.

24 보리스 박, 2002, 위의 책, 74쪽;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2004, 앞의 책, 43쪽; 이상근, 1994, 앞의 글, 67~68쪽.

25 보리스 박, 2002, 위의 책, 74~75쪽.

중 1,600여 명의 조선인이 포시에트만 근처에 남게 된다.²⁶ 다른 통계에 의하면 1869~1870년 겨울의 월경조선인 3,750명 중 1,200명이 티진헤에 그리고 300명이 1871년 1월 1일에 여전히 티진헤 인근의 얀치헤에 남아 있었다.²⁷ 전체 월경조선인 중 28% 혹은 40% 정도에 해당되는 1,500~1,600명 정도만 조-러 국경지대에 잔류했던 것이다.

또한 『아무르의 한인들』에는 1869년 겨울에 연해주로 왔지만 아직 포시에트 근처에 남아 있던 1,600여 명의 조선인을 1871년 봄이 되면 다우비헤로 재이주시키는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1871년 가을의 추수까지 자력으로 식량을 마련할 수 있던 자들인데, 1870년 봄에 농사 관련 일을 구한 이들이 포시에트 인근에 남겨진 것으로 볼 때 이곳에서 이미 농사를 지어 1870년 가을에 수확을 건넌 것이다. 그러나 1871년 봄에 남부 우수리지역에 가축역병이 돌자, 이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을까지 포시에트에 조선인들을 머물게 했다. 이때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들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시키려면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야 하지만, 그냥 포시에트에 머물러 살게 한다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²⁸ 이들을 재이주시키지 않고 포시에트만 부근에 정착하게 했다.

이 내용을 통해, 1869년의 월경민 전부를 1870년과 1871년에 걸쳐 내륙지역으로 재이주시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목표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인 식민정책에 정치군사적인 면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러시아 정부 측에 상당한 정책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1868년의 수이푼 재이주와 1869년의 한카호 재이주계획에 비해 1870년에 수이푼으로 더 많은 수의 인원을 성공적으로 이주시킬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

26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12.

27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76쪽의 표.

28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12.

는 재이주자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수준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선전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1869년 말에 러시아령으로 들어온 수천 명의 조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재이주는 이미 러시아 정부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전과는 달리 많은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강제적으로라도 집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급격한 정세의 변동으로 인해 러시아 영내로 이주해 온 조선인들을 조-러 국경지대로부터 멀리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마을 사이에 분산이주시켜 러시아화할 필요성이 급작스레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다. 1870년 1월 9일에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국에서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보낸 서신은 조선인 재이주의 목적에 대해 잘 보여준다.

조선인들이 국경 주변에 정착하게 될 경우 우리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으며 이윽고 있는 조선 정부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위대한 황제 폐하께서는 아마도 지방 당국을 위해 조선인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인 촌락이 국경지대에만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막고 러시아의 마을과 촌락들 사이사이에 형성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조선인 이주자들의 러시아화를 촉진시키고 이들이 이 지역의 주민들과 동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29 “Письмо директора Азиатск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Д Стремоухова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у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Карсакову[외무성 아시아국장 스트레모우호프가 동시베리아 총독 카르사코프에게 보낸 서한]”, 1870. 3. 9, АВП-РИ, ф.СПБ,Главный архив, 1-9, оп.8, д.25, л.15; “Записка управляющего МИД Вестмана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у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Синельникуму[동시베리아 총독 시넬리코프에게 보낸 러시아 외무성 베스트만의 보고서]”, 1871. 8. 12, ГАИО, ф.24, оп.10, д.202, К.2107, л.204~205.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2010,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181쪽과 주 72; 한동훈, 2021, 「19세기 후반 조선과 러시아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1쪽과 주 98에서 재인용(밑줄과 강조는 필자).

1869년의 대규모 월경사태를 겪으면서 단기간 내에 조-러 접경지대에 조선인 6,500여 명이 유입되자, 이것은 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다. 조-러 국경지대에 밀집해 있는 조선인들이 러시아화되지 않고 조선과 지속적 접촉을 가지면서 조선의 간첩활동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또한 1865년 겔메르센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던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들이 연해주의 비옥한 토지를 선점하여 향후에 이주할 수도 있는 러시아계 농민들이 차지할 토지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³⁰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정부에서는 조선인들의 내륙이주 및 가족과 종자의 구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도 대대적으로 조선인의 이주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 이것은 이주자들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시행되는 강제 재이주를 의미하고, 위의 서신을 통해 러시아 외무성 역시 “위대한 황제 폐하께서는 아마도 지방 당국을 위해 조선인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이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들이 정치적으로 위협하다는 정세판단이 내려졌을 때,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내륙지역의 오지로 재이주시키면서 모종의 물질적 특혜를 제공하여 그 반발심을 무마하는 방식은 이후에도 재등장한다. 1888년에 프리아무르 총독의 지시에 의해 연해주 군무지사 직무대행이 작성한 조선인 재이주계획 가안에서는 이와 같은 재이주정책이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임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조선인들의 정치적 불온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회와 자금이 되는 대로 이 조선인 주민들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로 보내야만 하

30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한희정 역, 2014, 앞의 글, 231쪽; 이상근, 1994, 앞의 글, 69~70쪽;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2010, 앞의 책, 180쪽; 와다 하루키 지음, 이서구 옮김, 1989, 『소비에트 극동의 조선인들 1917~1937』, 서대숙 엮음, 『소비에트 한인 백년사』, 도서출판 태암, 41쪽;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64쪽.

며 ... 조선인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주시킬 때 국고에서 그들에게 위에 열거한 온갖 보조금을 제공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주가 강제성을 띠고 있어서입니다. 이것이 이주비용을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³¹

이 외에도 1869년의 월경자로 안치혜에 있던 이들 모두가 수이푼이나 레푸 등의 내륙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재이주정책 내에서의 부수적 이유가 존재했다. 동시베리아 총독은 앞으로 1869년과 유사하게 새로운 월경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미래의 월경자들이 도착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1869년의 월경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조-러 국경지대의 주택과 개간한 농지를 비워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³²

조-러 국경지대의 포시에트 인근 조선인 마을을 재이주정책의 출발지로 삼는다는 계획은 연해주 군무지사 카자케비치가 1865년 1/4분기에 월경조선인인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재이주정책으로 계획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 역시 조-러 국경지대를 조선인들의 거주지역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당시 이미 조선인 마을이 건립되어 있고 조선인 재이주의 출발지 역할을 담당하는 티진헤 인근 지역만을 그 예외로 인정했었다.³³ 이 계획의 구체적인 세부적 시행규칙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만약 티진헤가 조선인들을 내륙으로 송출하는 출발지 역할을 한다면 티진헤의 주택과 농지는 새로 도착할 월경조선인들을 위해 비워져야만 한다. 재이주의 출발지가 1865년의 티진헤 인근 지역에서 1869~1870년에는 안치혜로 바뀌었을 뿐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계승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31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김선안 역, 2014, 앞의 책, 28쪽, 34쪽(밑줄과 강조는 필자).

32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8.

33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46~49쪽.

3. 1871년 아무르주로의 조선인 재이주

1870년의 수이푼지역으로의 재이주정책이 이전과 달리 성공을 거두자, 러시아 정부에서는 수이푼으로의 재이주정책 시행경험을 수이푼지방보다 더 멀리 떨어진 아무르주의 재이주에 적용했다. 1870년 당시 동시베리아 총독이었던 코르사코프는 우수리지역의 점유자는 오직 러시아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³⁴ 이와 같은 발상은 1871년에 새로 부임한 동시베리아 총독 H. И. 시넬니코프에 의해 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871년 4월에 1,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조선인 월경사태가 재발하자, 그는 노동력이 부족한 아무르주로 러시아령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재이주시켜 개발을 꾀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러시아화를 목표로 하여 아무르주 사만리(四萬里, 沙滿里)에 모범마을인 블라고스벤노예(Благословенное)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조선인들이 아무르강 주변의 카자크 주민들에게 동화될 것이 기대되었다.³⁵ 1871년 4월 13일에 동시베리아 총독 시넬니코프가 연해주 군사총독에게 보내는 조선인 이주 관련 명령서에는 아무르주로의 재이주에도 수이푼으로의 재이주와 동일한 정책적 목표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 B.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9.

35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김선안 역, 2014, 「22. <1860-1907년 유즈노우수리 군 조선인 이주상황 도표 설명보고서>」, 『러시아문서 번역집 XVIII-러시아국립 극동 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선인, 108쪽. <1860-1907년 유즈노우수리 군 조선인 이주상황 도표 설명보고서>에서는 시넬니코프(Синельников) 육군대장이 1870년에 동시베리아 총독이었던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Николай Петрович Синельников는 1871년부터 동시베리아 총독으로 부임했었다. 조선인들의 러시아화를 목표로 아무르주 사만리에 모범 마을을 조성한 것은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이 다시 멀리 아무르강까지 재이주하여 건설한 마을 사만리[블라고슬로벤노예]」,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95300002&localCode=cis&menuGbn=special>

조선인들의 수적 우위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주가 일정한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는 별도로 우리 영역으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국경 인근에 정착하거나 대규모로 조밀하게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들 사이에 정착하도록 하라 ...³⁶

1870년 1월에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국에서 언급했던 조선인 재이주에 대해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일정한 규칙”은 이후 1872년 2월에 연해주 행정청에서 언급한 “이주가 일정한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을 가리킨다. 즉, 수이푼과 아무르주 모두에서 조선인들의 재이주 대상지역으로 ‘해안지역을 제외한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러시아인 마을 사이’가 지정되었고, 조선인들은 이러한 지역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이주되어야 했었다.

아무르주로의 재이주정책이 수이푼 재이주정책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두 번째 증거는 이주 자원자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이주가 아니라 러시아 정부에서 이주시킬 것으로 선정한 인원은 강제적으로 이주당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아무르주 블라고스벤노예로의 재이주정책을 계획하면서, 1871년의 이주자 1,000여 명 중 러시아 정부의 도움이나 식량보조가 필요한 인원을 즉각적으로 증기선에 태워 재이주시키라고 명령했는데, 전체 인원 중 대략 절반에 해당되는 500여 명이 강제 이주 대상에 해당되었다.³⁷ 그런데 이때 선정된 인원 중에는 분명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주당한 사람들이 존재했었다. 1872년 2월에 수이푼 관구와 한카 관구에 가족들이 살고 있음에도 이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아무르주로 강제 이주당한 조선인들로부터 그리고 티진헤 마

36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이재훈 역, 2014a, 「54. <1871년 4월 13일 동시베리아 총독 N. P. 시넬니코프(Н. И. Синельников)가 연해주 군사총독에게 보내는 조선인 이주 관련 명령서>(РГИА ДВ. Ф.1. оп. 1. д. 325. лл. 12-12об.)」, 『러시아문서 번역집 XVI - 러시아국립 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선인, 128쪽(밑줄과 강조는 필자).

37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13, С. 15; 반병률, 2011, 앞의 글, 310쪽.

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로부터 가족과 함께 살게 해달라는 청원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³⁸

아무르주로의 재이주정책이 수이푼 재이주정책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세 번째 증거는 강제적 이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반발을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수준의 특혜로 누그러트리려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1870년의 수이푼 재이주보다 한층 더 많은 혜택을 선전하며 조선인들의 아무르주 재이주를 추동했다. 아무르 주지사가 작성한 재이주 계획은 동시베리아 총독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는데, 아무르주를 개척할 조선인들에게는 1861년의 「법」에 따라 100데샤티나라는 광활한 토지를 비롯하여 인두세 납부 영구면제, 20년간 토지세 면제, 3년간 부역면제라는 특권을 부여했다.³⁹ 이 외에도 각 가정마다 농사에 필요한 말 한 필과 암소 한 마리씩을 최소 25루블의 가격으로 빌려주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고, 식량·잡화·의복구입비·주택건축자재·종자도 모두 제공했다.⁴⁰ 1843년 규칙에서 가축이 소 두 마리이며 이 가축을 무료로 공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것은 1843년 규칙의 지원 내용⁴¹ 전체를 그대로 포함한 것에 별도의 추가적인 혜택까지 제공한 전례 없는 수준의 특혜였다.

이 외에도 1869년에 시행한 것과 같이 1871년의 월경민들에게 임노동직을 제공하는 등 재이주정책의 제반사항들이 계승되었다.⁴² 이와 같이 정책에서 드러나는 계승성은 역으로 1871년의 이주에 존재하는 강제성이 1870년의 재이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38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이재훈 역, 2014b, 「56. 〈1872년 2월 8일 연해주 행정청[Приморское областное управление]이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보내는 조선인 이주 현안 관련 보고서〉(РГИА ДВ. Ф.1. оп. 1. д. 325. лл. 16-18.)」, 『러시아문서 번역집 XVI - 러시아국립 극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선인, 131쪽.

39 이병조, 2009, 앞의 글, 57쪽.

40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15.

41 이철, 1990, 『시베리아 개발사』, 민음사, 101쪽.

42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12~13.

4. 조선인 재이주정책의 강제성

1870년과 1871년의 재이주정책은 강제적이었다는 점에서 17세기 이래로 러시아 정부에서 진행해온 시베리아 식민정책 및 자원자들의 ‘자의’에 의한 이주를 원칙으로 삼았던 1868·1869년의 조선인 재이주정책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친 강제 재이주정책 중 수이푼으로의 재이주에 대해서는 별 다른 갈등상황이나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아무르주로의 재이주 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것으로 기록 및 구전되었다.⁴³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보다 조선인들이 아무르주로 이주하는 것을 러시아 정부의 예상보다 더 심하게 거부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1872년 2월 8일에 연해주 행정청에서는 1871년의 아무르주 재이주정책에 대해 평가하면서

조선인들의 우리나라[필자: 러시아]로의 이주 열망을 식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각하[필자: 동시베리아 총독]께서 체르냐예프 대령에게 내리신⁴⁴

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1871년에 수이푼강 분지구역보다 더 멀리 떨어진 아무르주로의 재이주는 조-러 국경지대에 살기를 원하는 조선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앞으로 연해주로의 이주를 포기하리라 예상할 만큼 조선인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안겨주었다.

러시아 정부에서도 아무르주 재이주정책의 입안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43 아무르주로의 재이주과정에 대한 긍정적 묘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르주의 조선인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는 재이주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뒤인 1894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등장한다. Ross King, 2001, “Blagoslovennoe Korean Village on the Amur, 1871-1937”,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2), p. 146.

44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이재훈 역, 2014b, 앞의 글, 130~131쪽(밀줄과 강조는 필자).

심한 반발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훌륭한 수준이었던 수이푼으로의 재이주보다도 더 막대한 수준의 특혜를 통해 이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재이주과정 속에서 경험한 강제성은 아무르주로 이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조차 러시아인 통솔자에게 청원을 제기할 정도였고 1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조선인들 사이에 앙금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후유증을 남겼다.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들이 남긴 기록에는 1870년의 재이주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1871년의 재이주과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드문 편이다. 반면에 조선 정부 측에서 연해주 지방의 월경조선인들과 접촉한 뒤 작성한 기록인 『아국여지도(俄國輿地圖)』(1883~1884)에는 아무르주 사만리 이주에 대해 “지역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도를 그릴 수가 없다. 지난 임신년(壬申年)에 러시아 사람들이 공한지를 주민으로 채우기 위해 이곳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어 이주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아무르주로 강제가 송당하지 않았던 연해주 내에 남아 있던 조선인들조차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들을 머나먼 곳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느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⁴⁵

1875년에 바뀐 또한 조선인들의 초기 이주부터 수이푼으로의 재이주를 거쳐 아무르로의 재이주에 이르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아무르주로의 조선인 재이주에 대해 『아국여지도』와 비슷하게 “쫓아낸다”라고까지 표현하였다.

우리는 조선인들이 국경 근처의 포시에트만 주변에 정착한 사실에 대해 그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들을 러시아 주민들 사이에 이주시킬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남부 우수리 지방에 머무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불편함을 느껴서 그들을 아무르로 쫓아낸다.⁴⁶

45 『俄國輿地圖』 「俄國輿地圖目錄」, “地方絶遠, 不能寫出圖本, 粵在壬申, 俄人爲充空地, 驅入遷徙於此.” 이윤, 2020, 「俄國輿地圖의 地圖와 註記 分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쪽과 주 106)에서 재인용. 원문의 “遷徙”는 “움직여서 옮김”을 뜻하는 “遷徙”의 오키로 판단된다.

아무르주로의 재이주는 단순한 불만 차원을 넘어 이로 인해 조선인들로부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될 정치적 위험성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조선인들에 대한 재이주정책의 목표가 이들을 러시아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심각한 정책적 실패를 의미할 수 있었다. 1872년 2월에 수이푼 관구 및 한가 관구의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아무르주로 강제 이주당한 조선인들로부터 그리고 티진헤 마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로부터 가족과 함께 살게 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었고, 연해주 행정청에서는 이 산가족의 발생이 경제적으로도 불리하며 더 나아가 조선인들이 “러시아 정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될 것”임을 동시베리아 총독에게 진언까지 했던 것이다.⁴⁷

아무르주로의 재이주과정에 대한 후대의 평가 역시 동시대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강제성과 재이주에 대해 조선인이 보인 부정적 태도가 기술되어 있다. 1909년의 『아무르 지방. 데이터. 수치. 관찰(Приамурье. Факты. цифры, на наблюдения)』에는 ‘1만 6,000루블이라는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적 부담이 존재했으며 조선인들 또한 재이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다.⁴⁸ 1935년에 김세용(金世鎔)은 이에 대해 “특(特)히 노관청(露官廳)에서 강제 이주를 시킨 흑룡주(黑龍州) 『사만리』”⁴⁹라고 하여 이것이 강제 이주라는 점

46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22, “То мы не находимъ ничего дурнаго въ томъ, что корейшы селятся около залива Посыета, близъ границы; то признаемъ нужнымъ селить ихъ внутри страны, между русскимъ населениемъ; то, наконецъ, находимъ пребывание ихъ во всемъ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ъ краѣ положительно неудобнымъ, и выселяемъ ихъ на Амуръ”(밀줄과 강조는 필자).

47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이재훈 역, 2014b, 앞의 글, 131쪽.

48 Т. И. Полнер(ред.), 1909, *Приамурье. Факты, цифры, наблюдения*, Москва: Городская тип., С. 152.

49 金世鎔, 1935, 「西伯利亞의 朝鮮人活動」, 김동환, 『自由와 平等』, 三千里社, 263쪽, “특히 露官廳에서 強制移住를 시킨 黑龍州 『사만리』 『돛허』 等地의 移住民의 生活은 가장裕足하였었다.”

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현대로 와서 플로트니코바 마리나는 이 사업에 대해 러시아 당국에서 조선월경민에 대해 취했던 최초의 강제 이주 사례로 평가하며 이주과정에서의 강압성을 지적했고, 토로포프(Торопов)의 견해를 인용하여 총독부의 예산부족과 조선인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재이주정책이 중지된 것으로 기술한다.⁵⁰

5. 아무르주 재이주의 실패로 인한 1875년의 조선인 식민정책 전환

실패한 아무르주 재이주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조선인에 대한 기존의 관리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 조선인들을 아무르주로 재이주시켰던 1871년까지 러시아 정부에서 시베리아의 개발과 조선인들에 대한 러시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온 것과는 달리, 1872년부터 1874년까지는 러시아 정부의 조선인 정책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1875년이 되어서야 조선인들을 조-러 국경지대에 정착시키자는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이 제시된다. 이것은 ‘조선인들이 러시아화되지 않을 것이므로 장차 정치적 위협세력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이들을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러시아화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조-러 국경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의 러시아 마을 사이로 강제적으로 이주시켜 러시아화시킨다’는 기존의 재이주정책에 깔려 있던 관점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한다. 바긴은 1865~1871년간의 조선인 식민정책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조선인들의 러시아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정교의 세례 및 학교교육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러시아화의 길을 걸었던 부랴트족의 전철을 조선인들 역

50 A. A. Торопов, Н. А. Троицкая, 2001, *Корейцы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здательство ДВГУ, pp. 7~8; 플로트니코바 마리나, 2006, 앞의 글, 46쪽의 주 61)과 주 62). Торопов는 플로트니코바 마리나의 석사학위논문 주 62)에서 재인용. 필자는 Торопов의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시 밍을 것으로 예견했던 것이다.⁵¹ 그리고 1875년에 국경지대의 나선동(羅鮮洞, 黑頂子)과 크라스노예 셀로(鹿屯島) 및 나고르나야(臥峰)에 조선인 마을이 건설될 것을 시발로 하여, 이후 1880년까지 조-러-중의 국경지대에 조선인 마을이 여럿 조성된다.⁵²

6. 러시아 영내 조선인에 대한 재이주정책이 조선에 미친 영향

수이푼과 아무르주로의 재이주가 강제적이었음에도 재이주정책과 관련된 소문은 연해주와 조선인 및 조선 내의 조선인들에게 연해주로의 이주를 추동할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 재이주 관련 소문에 대한 사료는 훗날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이제마(李濟馬)의 『동무유고(東武遺稿)』 「진정(陳情)」(1870)과 유진률(兪鎭律)의 「개탄론」(1898), 1875년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와 조선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던 일본 외무성 관리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의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및 흑룡답사대(黑龍踏查隊)의 일원이었던 농업식민조사관장 실리케비치(С. П. Шликевич)가 작성한 러시아 제정의 공식보고서 「연흑룡지방(沿黑龍地方)에 있어서의 농업(農業)과 식민문제(植民問題)」(1911)에 수록된 5개의 기사이다.⁵³ 수이푼 재이주에 대해

51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27~28.

52 반병률, 2011, 앞의 글, 313~323쪽.

53 이제마 저, 이창일 역주, 1999, 『東武遺稿』, 청계, 400쪽; 유진률, 「개탄론」, 『독립신문』, 광무 2년 10월 15일, 2쪽;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 저, 구양근 역, 1998,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 『한일관계사연구』 9, 235쪽, 239~240쪽; 에스. 페. 실리케비치, 1911, 「沿黑龍地方에 있어서의農業과植民問題」, 『콘닷치 총독 主宰 勅令 黑龍踏查隊의 報告書 第5編』, 페트로그라드. 마지막 사료는 일제 강점기에 內山 彼得에 의해 일역되었고, 玄圭煥가 『韓國流移民史 上』에서 이를 국역한 자료를 활용했다(南滿洲鐵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 著, 內山 彼得 譯, 1926, 「露領極東의農業と植民問題」, 『露亞經濟叢書』, 大阪毎日新聞社, 31쪽. 玄圭煥, 『韓國流移民史 上』, 語文閣, 1967, 801쪽에서 재인용). 또한 「見聞雜誌」는 「견문잡지」가 맞는 독음이지만, 이 글에서는 역자

〈표 1〉 재이주 관련 소문에 대한 사료

	재이주지역	사료명과 작성시기	근거
1	수이푼	『東武遺稿』 「陳情」(1870년 하반기)	‘연해주에서 조선인들이 정착해 가축을 키우며 농사짓는다’는 내용
2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1875년 4월 27일자 일지	1870년에 블라디보스토크 항 건설인부 모집소문을 듣고 월경 후 조선으로 되돌아가 소문을 전파하여 1871년에 1,000여 명 월경함.
3		『독립신문』 「개탄론」(1898)	기사년 흥년(1869)으로 월경한 조선인을 러시아 정부에서 군량을 풀어 구휼하고, 소와 말을 사주면서 농사를 시킴.
4	수이푼과 아무르주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 1875년 5월 1일자 일지	1870~1871년부터 러시아가 정체를 선전하는 소문을 듣고 월경한 자가 6,000~7,000명을 넘음.
5	지역불명	「沿黑龍地方에 있어서의 農業과 植民問題」(1911)	언급된 양식·역축(役畜)·현금 보조가 두 지역 모두에 해당되어 특정할 수 없음.

서만 언급한 것은 총 5개의 사료 중 3개이고, 양자 모두 언급한 것은 1개이며, 언급 대상이 불명확한 것 역시 1개이나, 아무르주 재이주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은 없다. 이를 통해 소문으로 널리 유포되며 후대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닌 것은 물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특혜를 제공했던 아무르주가 아니라 수이푼 재이주 관련 소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두 지역으로의 재이주정책 선전소문이 러시아 정부에 의해 동일하게 생산되어 유포되었음을 고려할 때, 양자를 접했던 이주 대상자들 및 이 외의 조선인들이 그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주변에 전파하는 태도가 상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870년과 1871년에 러시아 정부에서 제공한 파격적인 경제적 혜택 중 특히 조선인들의 주목을 끈 것은 소를 비롯한 가축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러시아 정부에서 가축을 제공한다는 소문 자체는 1867년부터 유포되었지만,⁵⁴

인 구양근의 독음 그대로 ‘견문잡기’라 표기한다.

54 承文院 著, 배우성 외 4인 옮김, 2012, 「同治 6년 6월 1일 原奏」, 『國譯 同文集

1870년과 1871년에는 러시아 영내로 넘어온 조선인들에 대해 처음으로 가축이 제공되면서 이후 조선인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은 러시아의 식민정책을 선전하며 조선인들 사이에 유포되었던 소문에서 ‘러시아 정부에서 역축을 제공한다’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며 연해주 내를 비롯하여 조선으로까지 전파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상의 사료 중 『동무유고』 「진정」과 「개탄론」 및 「연흥룡지방에 있어서의 농업과 식민문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⁵⁵

1870년과 1871년의 조선인 이주 및 정착 지원정책은 전형적인 러시아의 시베리아 식민정책에 따라 시행되었고,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파급효과 또한 러시아 정부에서 예견한 그대로 발생했다. 조선인들에게 주어졌던 파격적인 혜택은 1870년의 수이푼과 1871년의 아무르주에서 각 1회씩 실시된 뒤로는 더 이상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이푼으로 조선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을 선전하는 소문은 이후의 러시아 더 나아가 조-러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수이푼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것의 좋은 예가 1871년 4월에 발생한 1,000여 명의 대규모 월경사태이다. ‘친일파 제1호 매국노’라고 평가받는 김인승(金麟昇)이 그 1,000명 중 한 명으로, 그는 1870년에 연해주로 월경했을 때 수이푼으로 이주를 유인하는 소문을 듣고 1871년에 수이푼에 정착한 인물이었다. 김인승은 1870년에 블라디보스토크 군항에서 독 건설공사를 하며 인부를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해주로 넘어가, 당시 수이푼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혜택을 선전하는 소문을 접했던 것

考 犯越史料4』, 동북아역사재단, 397쪽, 515쪽.

- 55 조선인들에 대한 1870·1871년의 러시아 식민정책 및 이를 선전하는 소문에서 러시아 정부가 가축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최성운, 2021b, 「조선말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를 유인하는 소문과 월경에서 드러나는 조선인들의 사회적 연대 연구-1864~1877년까지를 중심으로-」, 『장서각』 45, 406~407쪽. 그리고 『동무유고』 「진정」의 “我人之耕牧恒據沿海” 구절에 대한 교감은 최성운, 2021a, 「『東武遺稿』 「陳情」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통한 난해어구의 교감-“洋醜之漁獵頻泊汊港, 我人之耕牧恒據沿腦”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 34(2), 151~162쪽 참조.

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에 남아 있는 자신의 형수와 조카를 수이푼으로 데려가기 위해 조선으로 되돌아왔고, 이때 주변에 이 소문을 전파하여 1871년 4월에 1,000여 명의 조선인이 월경하는 데 일조하면서 과부가 된 형수 및 조카와 함께 월경해 수이푼에 정착했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1870·1871년부터 유포되기 시작한 수이푼과 아무르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연해주로 월경한 조선인이 1875년까지 6,000~7,000명에 달할 정도로 이 소문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한다.⁵⁶

수이푼지역으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에 대해 가축을 제공하는 정책은 1870년 1회에 한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김인승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월경조선인은 가축을 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1870년에 수이푼, 1871년에 아무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제외하고 1875년까지 월경한 6,000~7,000명의 조선인 역시 가축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1870년에 이 소문을 접하고 주변에 전파한 김인승이 1871년에 자신의 정착지로 수이푼을 선택하게 된 것을 통해, 당시 연해주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에게 러시아의 식민정책을 선전하는 소문이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문은 연해주 내에서만 돌았던 것이 아니라 김인승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조선 내로 도입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당시 포의(布衣) 상태였던 이제마의 『동무유고』 「진정」에 수록된 “서양놈들이 제멋대로 물고기 잡고 사냥(漁獵)하기 위해 항구에 빈번히 들어와 정박하며, 러시아로 월경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며 (연해주의) 해안가를 따라서 정착했다(洋醜之漁獵頻泊汙港, 我人之耕牧恒據沿海)”는 1870년 8월 이후의 하반기에 조선 내에서 유포되고 있던 연해주로의 월경을 유인하는 소문에 대한 기록이다. 이 중 뒷구절인 “我人之耕牧恒據沿海”가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들을 수이푼으로 유인하기 위해 소와 말 등의 역축을 제공한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에 해당

56 최성운, 2021b, 앞의 글, 399~402쪽;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 저, 구양근 역, 1998, 앞의 글, 235쪽, 239쪽.

된다. ‘당장 굶어죽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연해주로 월경했던 1869년의 조선인 6,500여 명은 러시아 정부의 인도주의적인 구호를 통해 살아남았고, 1870년에 러시아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토지와 역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⁵⁷는 소문이 본거지가 함흥인 이제마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소문이 북관지역을 넘어 남관을 포함한 함경도 전역에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미 1867년에 연해주 거주 조선인 중에는 경흥과 경원 및 회령 등의 함경도 북관지대 외에도 남관의 원산 출신 이주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⁵⁸ 이제마가 함흥에서 그 소문을 접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한편, 조선 정부는 1869년의 대규모 월경사태 이후 1870년 하반기에 새로 함경감사(咸鏡監司)와 북병사(北兵使)를 임명하며 이에 대처했다. 함경감사 김수현(金壽鉉, 재직기간: 1870.7~1871.12)과 북병사 김기석(金箕錫, 재직: 1870.8~1874.1)은 월경사태가 발생한 북관(北關)지역 백성들에 대한 구호와 세금감면을 통한 월경민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고,⁵⁹ 청과 협력하여 연해주의 월경민을 쇄환하며,⁶⁰ 러시아에 대응하는 군비증강을 하면서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유교적 가치관을 선양하는 정책을 펼쳤다. 특히 월경민의 쇄환은 청으로부터는 1870년에 38명, 1871년에 511명의 월경조선인을 쇄환받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으나,⁶¹ 정착 가장 많은 월경민이 발생한 연해주에는 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월경민 쇄환 실적은 전무했다.⁶²

57 해당 구절 전체의 교감 및 의미에 대해서는 최성운, 2021a, 앞의 글, 146~163쪽.

58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53쪽.

59 『承政院日記』 고종 7년(1870) 12월 29일(경인).

60 『承政院日記』 고종 7년(1870) 윤10월 4일(병인); 『承政院日記』 고종 7년(1870) 11월 24일(을묘); 『承政院日記』 고종 7년(1870) 11월 28일(기미); 『承政院日記』 고종 8년(1871) 1월 28일(무오); 『承政院日記』 고종 8년(1871) 7월 20일(무신).

61 이흥권, 2017, 「19세기~20세기초 조선의 滿洲 이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쪽, 30쪽.

62 이상의 내용은 최성운, 2021a, 앞의 글, 132~137쪽.

이 외에도 북병사가 첩보원을 연해주로 파견하여 러시아의 군사력과 월경조선인의 현황을 정탐하게 했던 정황이 포착된다. 이제마가 『동무유고』 「진정」을 통해 1870년 하반기에 함경도에 유포되고 있던 러시아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소문의 위험성에 대해 함경감사에게 고지했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조선 정부에서 월경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시했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1871년 4월에 또다시 1,000여 명이 러시아로 이주하는 대규모 월경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두 가지로, 첫째는 이 해 가을에 조선 정부가 두만강변을 따라 30여 개의 새로운 초소를 설치하고 매초소마다 3~5명의 초병을 배치하여 월경시도를 차단한 것이다.⁶³ 둘째는 이제마가 1871년에 연해주로 월경하여 러시아의 군사력과 월경조선인의 현황에 대한 기록인 『동무유고』 「유적」⁶⁴을 남긴 것이다. 이후 이제마가 당시 북병사이던 김기석이 새로 창설된 고종의 친위대인 무위소(武衛所)의 무위도통사(武衛都統使)가 되자 그의 후원을 통해 고종에게 상달(上達)할 수 있었다고 기록한 내용을 통해,⁶⁵ 이제마가 당시 북병사 김기석과의 연관성 속에 연해주로 군사적 정탐을 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II. 연해주 조선인에 대한 러시아화 정책:

교육과 러시아정교 및 1870·1871년의 정치적 선전소문

‘러시아화’라는 정책적 목표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1870년과 1871년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들에 대한 재이주정책은 이들을 조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러시아인들 사이로 분산이주시켜 이들이 러시아에

63 반병률, 2011, 앞의 글, 314쪽.

64 이제마 저, 이창일 역주, 1999, 앞의 책, 188쪽, 215~229쪽.

65 이제마 저, 이창일 역주, 1999, 위의 책, 188쪽.

동화될 수 있도록 러시아화⁶⁶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려는 간접적인 차원의 조치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에서는 보다 직접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월경조선인들을 러시아화하려 했는데, 이때 활용된 것이 바로 소문의 생산과 유포였다. 이미 1865년에 러시아 정부에서는 조-러 국경지역에 밀집해 있는 월경조선인들이 월경한 뒤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 조선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정치적 지지가 장차 러시아 제국에 정치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었다.⁶⁷ 따라서 이를 러시아 제국의 통치이념인 ‘관제국민주의’로 대체하려는 본격적인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정책을 실행했던 것이다.

1. 러시아 제국의 관제국민주의와 러시아화

‘관제국민주의’는 개별 이민족에 대한 러시아화를 통해 자신의 언어와 문화 및 인종적 충성심을 약화시키고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소멸시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민족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⁶⁸ 이를 통하여 주권자인 러시아 황제의 권력 및 그가 통치하는 러시아 제정을 강화하려 했다. 관제국민주의의 성공 여부는 ‘러시아화’에 달린 것으로 여겨졌고, 19세기 전반기부터 러시아화는 러시아 제국 내의 모든 민족이 러시아 황제에 대해 충성함으로써 전제주의에 복종하고, 러시아 황제를 교회의 수장으로 삼는 러시아정교를 신앙하며, 러시아

66 이주 초기부터 1875년까지 진행된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 및 러시아의 식민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했던 바킨은 러시아에서 월경조선인들에 대해 시행한 재이주정책의 목표가 일종의 급속한 ‘러시아화[обрусение]’라는 점을 지적했다.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27.

67 이것은 러시아군 총참모본부에서 조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겔메르센 대위의 출장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한희정 역, 2014, 앞의 글, 229쪽.

68 남정우, 2004, 『러시아정교회선교의 국가-정치적 성격에 관한 역사적 연구』, 『장신논총』 22, 362~363쪽.

국민성을 수용하는 불변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했다.⁶⁹ 그리고 러시아화의 핵심적 수단은 학교교육과 러시아 정교회의 선교였다.⁷⁰

제정러시아 시기에 유럽과 아시아를 망라한 전 영역에서 교육의 목표는 차르가 통치하는 전제주의 러시아 제국에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러시아 제국 내의 이교도 원주민들이 개종하여 정교회 세례를 받는 것은 황제에 대한 충성맹세 및 러시아 사회질서의 수용이라고 해석되었기에, 19세기 후반기의 러시아 황제들은 새로 편입된 제국의 변방에서 러시아정교에 대한 선교 확대와 전제정 강화를 동일시했다. 그리고 러시아정교에서 운영하는 교회학교 역시 정교회 선교의 일환이자 교육을 통한 러시아화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었다.⁷¹

2. 조선인에 대한 러시아화—학교와 러시아정교 선교

1860년 연해주 획득 후 새로 러시아 제국으로 들어온 조선인에 대한 러시아화 역시 학교와 러시아정교 선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⁷² 이와 관련된 활동은 조선인에 대한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수이푼관구 제정을 즈음으로 하는 시기부터 활발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러시아화의 핵심적 도구인 학교는 러시아 제국 동시베리아 고위관료들의 관심하에 티진헤의 관립학교(1868)와 얀치헤의 관립학교

69 방일권, 2015, 「제정러시아 한인 사회와 정교학교 교육」, 『재외한인연구』 36, 111~112쪽.

70 방일권, 2015, 위의 글, 109~112쪽; 양승조, 2021, 「제정 말 러시아의 소수민족 교육정책과 조선인-이주민의 교육 활동: 프리모리예 지역을 중심으로」, 『송실사학』 46, 294쪽.

71 남정우, 2009, 「러시아 제국 시대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연구」, 『선교와 신학』 23, 57쪽; 방일권, 2015, 위의 글, 112쪽.

72 플로트니코바 마리나는 연해주 정부에서 월경조선인들에 대한 러시아화 정책을 시행했다고 서술하며, 그 수단으로 러시아정교의 선교활동과 교회·교구 소속 학교의 설립을 거론한다(플로트니코바 마리나, 2006, 앞의 글, 52쪽).

(1873)가 설립되었고, 1872년에는 러시아정교 선교협회가 지원한 학교가 아무르주 사만리에 설립되었다.⁷³ 아울러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특히 1869년부터 조선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정교 선교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여 1871년에 도착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지을 때 교회 또한 건설에 들어갔으며, 1872년에는 남우수리주 조선인의 62%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⁷⁴

비록 학교교육과 러시아정교의 선교가 러시아화에 전통적인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지만, 1869년과 1871년의 대규모 월경사태와 1870년의 수이푼과 1871년의 아무르주로의 대규모 재이주 당시에 수많은 조선인을 러시아화해야 하는 정책적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강제적 재이주의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조선인들의 반발심을 누그러뜨리면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정착 학교와 선교는 정착 이후에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개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했다.

3. 러시아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정책선전소문

학교와 러시아정교 외에도 조선인들을 러시아화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에서 사용한 수단이 바로 소문을 만들어 퍼트리는 것으로, 소문의 생산과 유포는 시베리아에서 식민정책을 선전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 수단이었다.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식민정책의 성패가 노동력을 담당할 자원자를 모집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정책 선전을 전담한 포고관리를 두었고, 그가 자원한 농민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그들이 져야 할 의무에 대해 외친 내용을 시장을 오가며 들은 농민들을 통해 식민정책이 농민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지도록

73 방일권, 2015, 앞의 글, 118~119쪽; 이병조, 2008, 「러시아 프리아무르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865~1916)」,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9~132쪽.

74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19; 이병조, 2008, 위의 글, 129~132쪽.

선전했던 것이다.⁷⁵ 그리고 조선인들 사이에서 식민정책을 선전하는 소문이 갖는 위력은 1869년 당시의 대규모 월경사태에서 쇄도하는 월경조선인들을 막기 위해 연해주 군무지사가 통역인 한민국에게 조선 땅에 남아 있는 월경조선인들의 친척들에게 편지를 써서 월경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⁷⁶ 그는 수이푼 관구 제정을 즈음한 1867년 무렵부터 조직적으로 실행된 러시아 식민정책에 대한 선전소문 유포의 결과 1867년에는 500명, 그리고 1868~1869년 겨울에는 900명⁷⁷이 월경해 온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1869년 말의 대규모 월경사태를 바라보았고, 소문 유포의 위력을 반대로 활용하여 월경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1864년부터 1869년까지는 조선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했을 때 주어지는 물질적 혜택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던 러시아의 식민정책에 대한 선전소문⁷⁸이 1870·1871년에 들어서는 조선인들에게 그 식민정책의 혜택을 베풀어주는 주체인 러시아 정치체제(政體)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소문으로 대체되었다.⁷⁹ 바로 이 점이 비슷한 시기에 교육과 선교를 통해 월경조선인들의 러시아화를 도모하고 강제 재이주정책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장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러시아정부의 의도와 접합되는 지점이다.

1860년에 러시아가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 후, 러시아와 조선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교 및 서술이 나타나고 이것은 ‘정체(政體)’라는 근대정치학의 개념을 통해 포착되었다. 1867~1869년 사이에 연해주의 조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함경도 경흥부를 방문하기도 했던 프르제발스키는 조선의 정치체제에 대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조리 구속하는 조야한 전제주의”와 ‘정부기관 각

75 박상철, 2013, 앞의 글, 181~184쪽.

76 B.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C. 4;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62쪽과 주 37).

77 보리스 박, 2002, 위의 책, 52쪽, 58쪽.

78 최성운, 2021b, 앞의 글, 390~402쪽.

79 최성운, 2021b, 위의 글, 402~409쪽.

처를 비롯해 조선인들에게 널리 퍼져 극단적 단계에까지 다다른 전제주의⁸⁰ 등으로 묘사했다.

러시아와 조선은 정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전제주의에 속하지만, 그가 조선의 전제주의에 대해 내린 부정적 평가는 1860년대에 알렉산드르 2세가 러시아를 근대화하기 위해 진행한 일련의 개혁을 그 평가기준으로 갖고 있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는 1861년에 농노제를 폐지함으로써 신분제도를 철폐했다. 그리고 근대적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1864년의 사법개혁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는 관료제의 독단을 제어하고 개인권의 불가침성을 보장하여, 개인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체제를 수립했던 것이다.⁸¹ 이와 같이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법 앞에서의 평등이 달성되자 러시아의 사법제도는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이었다가 순식간에 서구문명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법제도 중 하나로 평가⁸²될 정도였고, 러시아인들은 신분제도의 폐지 및 근대적 사법제도에 근거하여 정체상 동일한 전제정이었던 러시아가 조선이나 청과 같은 아시아의 전제주의 국가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했다.

1861년의 농노제 폐지로 인한 신분철폐 및 1864년의 사법 개혁 관련 내용은 조선인들을 연해주로 유인하는 소문 속에서 선전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선 러시아에서 조선인들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소문은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 초창기부터도 퍼져 있었다.⁸³

1864년에 연해주 군무지사는 “러시아 영토로 이주한 모든 한인은 러시아

80 프르제발스키, 2006, 「우수리 지방 여행. 1867~1869 4장 4부 <조선인>」, I. A. 곤차로프 外 2인, 심지은 편역, 『러시아인, 조선을 거닐다』, 한국학술정보(주), 83쪽, 89쪽.

81 오두영, 2008, 「알렉산드르 Ⅱ 세의 사법개혁」, 『인문연구』 55, 541쪽.

82 니콜라이 V. 라자노프스키 지음, 김현택 옮김, 1994, 『러시아의 역사Ⅱ』, 까치, 97쪽.

83 최성운, 2021b, 앞의 글, 390~394쪽.

법의 보호와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여야만 한다”⁸⁴는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 중 “러시아 법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유진롤이 작성한 「개탄론」에서 1864년 이후부터 유포되기 시작한 소문으로 기록된 “극진히 생명지산을 보호 할야 주며 공디를 할급 할야 룡업을 일삼게 하니”라는 구절 중에 보인다.⁸⁵ 또한 이 내용은 나세킨(Н. А. Насекин)의 『아무르 지방의 한인들-남부 우수리 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소묘』(1896)에서도 언급된다. 그는 1869년 하반기에 발생한 러시아로의 월경 이유로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 외에도 ‘자신의 재산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닌 조선에서와는 다르게 러시아에서는 모든 권리를 받게 될 것’에 대한 굳은 신념이 존재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당시 4년째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월경조선인들로부터 전해진 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⁸⁶ 그리고 실제로도 이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존재했었다. 1864년에 연해주로 이주했던 조선인들이 마적의 약탈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러시아 정부는 조선인 마을에 군인 4명을 파견하고 초소를 세워서 조선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1865년 7월에는 연해주로의 월경자의 친척들이 조선 내에서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의 석방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받자 러시아군은 4명의 장교와 5명의 병사를 조선으로 파견하기까지 했다.⁸⁷ 나세킨이 4년 전이라고 시기를 특정한 것을 볼 때 그가 기술한 내용이 1865년에 발생했던 러시아군의 조선 파견사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조선을 떠날 때 청이 아닌 러시아를 목적지로 선택했던 것은 러시아 정부에서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한다고 선전했던 내용

84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55쪽, 58쪽.

85 유진롤, 광무 2년 10월 15일, 앞의 글, 2쪽(밑줄과 강조는 필자).

86 Н. А. Насекин, 1904, “Корейцы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Крат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Журнал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Часть CCCLII* No. 3, С. 6.

87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40~41쪽, 43쪽, 51쪽.

및 실제로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완전한 자유의 향유’는 제도적으로 식민정책 시행과정에서 보장되었었다. 1867년 수이푼 관구의 제정과 함께 조선인 마을에서 조선인 마을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마을 대표인 조선인이 자치적 행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⁸⁸ 그리고 1868년의 수이푼 재이주정책 시행과정에서 이주를 자원하는 조선인들에게 거주지역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으로 실행되고 있었다.

조선인들의 이주 초창기인 1865년부터 러시아 정부에서 개인권 보장 및 자유의 향유에 대해 선전하는 소문이 존재했고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1869년까지는 아직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을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며 러시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물질적 특권과 함께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따름이었다. 개인권의 보장과 완전한 자유의 향유가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하나의 요소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870년부터이다. 이때부터 유포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정체를 선전하는 소문에는 농노제 폐지로 인한 신분 차별 철폐와 함께 사법개혁 관련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개탄론」에 서술되어 있는데, 전자는 “인민을 충하 업시 대접 하고 어진 법률노 다스리니”라는 구절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다음에 인용되는 내용이다.

아라샤 관인들이 그 정상을 불쌍히 녀여 정부에 말 하고 군량을 훔쳐 주린 빅성들을 살리며 우묵을 사 주며 룡업을 식히며 동물을 교육 식히며 인민을 충하 업시 대접 하고 어진 법률노 다스리니 대한에 잇슬 쎄보다 인민이 요순적 풍속을 다시 만는 것긔 혼 지라 이 쇼문을 듯고 대한에 여러 빅호가 아디로 년년히 이사 하니 ...⁸⁹

유진룰의 「개탄론」은 1869년의 대규모 월경사태 이후에 러시아 정부에서

88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2010, 앞의 책, 174~175쪽.

89 유진룰, 광무 2년 10월 15일, 앞의 글, 2쪽(밑줄과 강조는 필자).

월경민을 구호해주고, 재이주를 통한 정착지원정책으로 그들에게 소와 말을 사주면서 농사를 짓게 하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등의 정책을 시행한 것과 함께 러시아의 체제우월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신분제 철폐 및 사법개혁의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정치가 요순시대와 같이 훌륭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당시의 소문을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에서 벌인 각각의 사업과 ‘우월한 체제’와 연관된 내용이 훌륭한 정치를 드러내는 요소들로 나열되고 있는 것이다.

실리케비치의 「연흥릉지방에 있어서의 농업과 식민문제」에도 이와 유사하게 “역축(役畜)”의 제공 등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식민사업에서 주어졌던 여러 특혜가 나열되는데, 당시의 소문에는 개인의 권리가 박탈된 조선을 떠나 러시아에 정착하면 이런 특혜를 제공받은 조선인들의 생활이 자유로워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糧食과 役畜을 비롯하여 현금의 보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수요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노국에서의 생활은 자유롭다고 전파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노국의 당초의 효과를 가져와 한국을 탈출하는데 국법은 사형으로 처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인은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왔다. ... 그러나 이러한 참사로 권리의 박탈(失權) 및 기아 때문에 절망한 한인의 이주를 억지할 수 없었다.⁹⁰

90 에스. 페. 실리케비치, 1911, 앞의 글. 玄圭煥, 1967, 앞의 책, 801쪽에서 재인용(밑줄과 강조는 필자). 번역물의 “失權”은 일본어의 “失權通知”라는 용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forfeiture(몰수)”나 “forejudger(박탈)”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여 “권리의 박탈”로 바꿨다. 이와 같은 번역은 개인권에 대한 사법적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1864년의 러시아 사법개혁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1885년에 조선을 방문했던 러시아인 다데슈칼리안이 “조선의 관습법에 근거하고 있는 다른 계급에 대한 한 계급의 지배, 노비 제도, 백성들의 공민권 상실, 권력의 중앙 집권화 등은 농민들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 이 나라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세습적 신분 제도”라고 하며 “백성들의 공민권 상실”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한다. 이수기, 2014, 「개항기 서양인의 여행기를 통해 본 한국관」, 한 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3쪽(밑줄과 강조는 필자).

이미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이 제공받는 역축에 대해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1870년 이후의 소문에 해당된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들로 인해 “노국에서의 생활은 자유롭다고 전파”했다고 기술한 점이 1869년까지의 소문들과 큰 차이점을 보이는 특징적인 지점이다. 1870년과 1871년의 수이푼 및 아무르주로의 재이주는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이 점은 더욱 더 특이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유진룰과 시게리비치의 글 모두에서 역축의 제공을 비롯하여 러시아 정부에서 1870·1871년에 제공했던 파격적인 식민정책의 혜택이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선전 서사 속의 화소(話素)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신분차별 없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전제주의적인 조선정치체제에서의 삶과 대비되며 체제상의 우월을 드러냈다.

러시아와 대비되는 당시 조선의 압제와 구습은 바로 「연흥릉지방에 있어서의 농업과 식민문제」 및 「개탄론」⁹¹에서와 같이, 신분적 우월성을 통해 권력과 세력을 갖게 된 관리와 양반 및 향리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던 백성들에 대해 학정을 일삼고 재물을 빼앗는 등의 압제를 자행하는 체제 그 자체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프르제발스키가 ‘조선에서 정부기관을 비롯해 모든 조선인들 사이에 퍼져 조선인들의 역량을 모두 구속해버린다’고 묘사했던 당시 조선 왕조의 정치체제인 ‘전제주의’의 실상이었다.

1875년에 세와키 히사토가 작성한 기록인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에는 역축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위의 두 사료와 마찬가지로 1870·1871년부터 유포되기 시작한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선전 서사 속에 농업을 통한 정착지원정책과 임금노동자의 제공으로 대변되는 생계유지지원책이 핵심적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91 유진룰, 광무 2년 10월 15일, 앞의 글, 1~2쪽.

1870·1871년부터 1875년까지 “러시아의 정체(政體)를 전문(傳聞)”하는 소문을 듣고 연해주로 넘어온 조선인이 6,000~7,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소문의 효과가 컸었다.

조선인들이 러시아의 政體를 傳聞하고 5~6년 전(1870년경 역자)부터 블라디스 보스토크나 포셋으로 탈주하여 온 자가 무려 6~7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토지를 주고 무세(無稅)로 경작시키기도 하고, 날뽕팔이나 도로 수선에 쓰기도 하며 1일에 6전 5리~75전까지 지불한다. 조선을 빠져나온 이들은 조선풍의 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자도 있고 러시아인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러시아 복장을 하고 있는 자도 있다. 조선풍의 머리를 하고 있는 자는 아직 러시아의 정체에 信服하지 않고 귀국할 마음이 있는 자이고, 머리를 짧게 깎고 러시아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러시아의 정체에 신복하고 귀국할 생각을 끊은 자라고 한다.⁹²

세와키 히사토가 사용한 “정체(政體)”는 서양의 정치학 개념인 “forms of government”를 일본에서 번역해 만든 용어이다. 이것은 정부의 형식, 즉 국가 권력이 어떤 형태의 통치조직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의 문제 및 인민이 이 국가기관을 통해 어떻게 통괄되는지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다룬다.⁹³ 인용문에서 ‘정체’가 지칭하는 내용은 차르가 통치하는 러시아의 전제정을 가리키는데, 세와키 히사토는 러시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조선과 중국에 대해서도 정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그는 조선과 중국의 정체를 중국에서 비롯된 중

92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 1998, 앞의 글, 239~240쪽(밑줄과 강조는 필자). 구양 근은 일본어 원문의 “露政”을 “러시아의 정치”로 번역하였는데, 필자는 “露政”이 “조선인들이 러시아의 政體를 傳聞”에서의 “러시아의 정체”의 줄임말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번역했다.

93 國分典子, 2001, 「俞致衡과 穗積八束 -한일 초기헌법론의 비교」, 『한국법사학회』 23, 74쪽; 송인재, 2018, 「근대 중국의 정치적 정체성 탐색과 ‘국체’ 개념」, 『中國現代文學』 84, 159쪽, 161~162쪽.

화주의적 유교사상에 입각한 봉건적 체제로 간주하며 “중국정체[支那政]”라고 기술했다. 중국정체는 과거 에도 막부의 정체였으며 메이지 유신에 의해 일본에서는 타파되었음에도 1875년 당시 청과 조선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타파한 뒤 입헌정치론의 한 가지 형태에 속하는 영국의 공의정체론(公議政體論)을 지향하던 메이지 유신 초기에 중국정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⁹⁴ 그리고 중국정체는 프르제발스키가 언급했던 조선의 “전제주의”와 등치될 수 있다.

1870·1871년의 소문이 분명히 수이푼과 아무르주로의 이주시에 주어지는 물질적 이득을 선전함으로써 월경조선인들을 수이푼과 아무르주로 유인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주 시의 물질적 이득이 러시아의 신분제도 폐지 및 근대적 사법제도 등 러시아 정체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소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존재할 뿐 더 이상 소문의 주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 ‘놀라운’ 혜택을 제공하는 식민정책의 주체인 러시아 정부와 그것이 작동되는 러시아의 전제정치체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선전 소문의 작성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도되던 러시아정교 선교 및 학교건립과 함께 러시아화의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들에게 러시아의 우월한 체제를 드러내기 위해 유포했던 정치적 선전소문이 러시아령의 조선인을 넘어서 조선 영내로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던 사실은 조선의 관점에서 볼 때 대중적 차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자유주의적 정치선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유진룰과 시게리비치, 프르제발스키가 공통적으로 조선에 신분차별이 존재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1870년에 이제마 역시 『동무유고』 「진정」에서 이들과 동일하게 1869년까지 함경도의

94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 저, 구양근 역, 1998, 앞의 글, 245쪽, 247쪽, 262쪽. 구양근은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烏刺細底斯杜屈見聞雜誌)」에서 원문의 “支那政”을 “중국정치”(247쪽)로 번역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중국정체”로 바꿔 번역했다.

조선인들이 러시아로 월경하게 된 이유로 선비와 향리 및 관아나 유력한 사대부가문의 노비들의 침탈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선비와 농업정책이 백성에게 끼치는 병폐가 심합니다. … 요즘 선비는 백성을 해칩니다. … 불쌍한 사람들을 침범하고 업신여기니 그 피해가 어떻겠습니까? … 지방관아의 아전들이 간사하고 교활한 것과 (관아나 유력한 선비의) 노비들이 무식하고 사납게 구는 것도 선비 무리들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⁹⁵

이와 같이 조선에서 자행되는 신분차별 및 개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조선인들은 187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간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정치선전에 크게 호응할 수 있었다. 결국 피지배층 조선인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정치체제상의 비교는 러시아를 넘어서 조선에서도 널리 수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소문이 유포된 1870년을 기점으로 하여 조선인들 사이에서 러시아를 정치적 이상향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나타나서⁹⁶ 이후 연해주로의 이주가 조선 내에서 구조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1876년에 북관지역 조선인들의 러시아 이주가 갈수록 심해져 거의 열 집 중에 아홉 집이 비어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월경문제의 해결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어전회의가 열리게 될 정도였다. 그리고 1876·1877년에는 이미 조선 정부 일각에서도 러시아로 월경하는 것이 단순히 흉년을 맞아 먹고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러시아가 “낙원[樂土]”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로 간에

95 이제마 저, 이창일 역주, 1999, 앞의 책, 394~395쪽(번역은 일부 수정). “而其在此土, 土農之病民, 甚矣. 今之士者, 蠹民也. … 侵侮熒獨其害何抵? … 鄉吏之奸猾奴隸之質頑亦莫非斯類中流出者也.”

96 배향섭, 2009, 「19세기 후반 함경도 주민들의 연해주 이주와 仁政 願望」, 『역사와 담론』 53, 437~440쪽. 배향섭은 이 경향성이 나타나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 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치적 선전소문이 유포되는 때가 1870년부터이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仁政 願望”이 나타나는 시기 또한 1870년부터로 간주했다.

권유하며 월경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⁹⁷ 1876년에 고종이 월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환곡철폐를 언급한 뒤 1877년 1월에는 안무사(按撫使)를 함경도에 파견하여 환곡을 비롯한 여러 폐단을 바로잡아 수백여 명의 월경민이 자발적으로 조선으로 돌아오는 성과를 거둔다.⁹⁸

IV. 수이푼과 아무르주 재이주의 차이점

세와키 히사토의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기(烏刺細窩斯杜屈見聞雜誌)」에서 러시아 정체에 대한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 대신 1870년의 재이주 대상의 선정기준인 ‘농업을 통한 정착지원정책과 임금노동직의 제공으로 대변되는 생계유지 지원책’이 기술된 부분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리고 실리케비치의 「연흥릉지방에 있어서의 농업과 식민문제」에서 ‘재이주정책의 특혜로 인해 부유해진다’가 아니라 ‘재이주정책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통해 자유로워진다’고 기술한 부분 역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인과관계로 이어진 내용이 아니며, 당시 재이주정책이 강제성을 띠고 있었음을 상기하면 모순적이기까지 하다. 이 두 구절은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 강제 재이주정책을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소문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조각들로 인식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1870년과 1871년의 재이주정책을 기획하면서 이것이 조선인들의 의지에 반해 강제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재이주 대상 조선인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는 러시아 정부에서 1865년부터 1869년까지 러시아의 조선인들은 법적인 보호를 한다고 선전해왔고, 여러 정책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자유를 부여해온 것

97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7월 13일(신미), 그리고 1875년과 1876년 당시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최성운, 2021b, 앞의 글, 407~409쪽.

98 『승정원일기』 고종 14년 1월 25일(신사).

과 정면으로 모순되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에서는 강압적인 재이주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선전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구체적인 소문의 내용이 이 두 구절 속에 파편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러시아령의 월경조선인들에게 임노동직 제공정책을 통해 러시아가 새로 복속한 조선인들에 대해 생계유지까지 책임져주려는 가부장적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시킨 뒤, 재이주정책 또한 이와 같은 의도에서 나왔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찬란한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견했다.

‘비록 지금은 조선인들이 원하지 않는 강제 재이주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결국 수이푼에 도착하면 재이주자에게 주어지는 “糧食과 役畜을 비롯하여 현금의 보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수요품”의 공급이라는 막대한 특혜를 받아 부를 일굴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선에서 신분차별로 인해 관리나 양반으로부터 핍박받고 수탈당했지만, 그곳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일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자치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인들에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생계수단을 제공하기까지 하는 러시아 정부의 가부장적 보살핌은 러시아 정부의 우월한 정치체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러시아 정부의 가부장적 모습에 대한 강조는 혈연중심의 러시아 사회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은 하나의 가족이며 러시아 황제는 이 가족의 ‘가장’으로 가족들을 책임진다는 가부장적 정치질서 속으로 조선인들을 통합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⁹⁹

비록 재이주정책이 강제적일지라도 그것이 러시아 정부의 진정한 선의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은 무엇보다도 이미 1869~1870년 겨울의 대규모 월경사태 속에서 특정한 계기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대해 충성심을 형성하게 된 조선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러시아 정부에서 6,500여 명의 조선인 전부

99 이상의 내용은 석영중, 2005, 『러시아정교-역사·신학·예술』, 고려대학교출판부, 28~29쪽.

를 구호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조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조선으로 되돌아가
월경조선인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낸 뒤 아무런 생계수
단을 지니지 못한 642가구의 조선인들을 조선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했었다. 이
때 조선인들은 조선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설사
경흥부사의 약속대로 월경죄로 처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해주로 건너와 러
시아의 남자들이 단발을 하는 것처럼 총각머리를 잘라낸 어린 남자애들이 조선
으로 되돌아가면 조선의 전통적 풍습을 어긴 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
며 자신들이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 어린 남자
애들의 단발은 자신들이 조선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이유이자 조선에서의 과거
와 절연(絶緣)하고 러시아에서의 미래를 선택한 자신들의 결단을 보여주는 상징
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살해당하게 만들 것
이냐고 반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
는다면 차라리 러시아 땅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자신
들 앞에 선 푸루젤을 연해주 군무지사에게 자신들을 거두어줄 것을 간청하며 러
시아에 대한 절대적 신복을 선언했었다.¹⁰⁰

이 중 특히 ‘총각머리 단발사건’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보이며, 바긴이 ‘조선인들이 러시아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이
유’ 중 이를 첫 번째로 거론하고 이어서 러시아어를 배우려 한다는 것을 나열할
정도였다.¹⁰¹ 이민족에 대한 러시아화의 대표적인 척도가 이들이 자신의 고유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고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화를 따르는 것이었으므로, 조선
인들의 총각머리 단발사건은 조선인들의 러시아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바긴은 심지어 이들에 대해 “우리에게 완전히 충성
스러운 6,500명에 이르는 조선인”¹⁰²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러시아 정부

100 보리스 박, 2002, 앞의 책, 67~69쪽.

101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21.

102 В. И. Вагин, 1875, 위의 글, С. 6. “до шести съ половиною тысячъ коре-

에서 러시아화를 통해 달성해야만 하는 정치적 목표인 충성심이 이미 이 사건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강제 이주정책이 선한 의지에서 나왔다는 주장은 1869년에 러시아로 월경해 온 6,500여 명의 조선인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 죽어갈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러시아 정부에서 「개탄론」의 “군량을 훔쳐 주린 백성들을 살리며”로 대변되는 인도주의적인 구호를 통해 살려냈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지지되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를 언급하면서 1870년에 수이푼으로의 재이주 대상자로 선전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러시아 정부의 구호를 통해 느꼈던 고마움과 이때 이들이 러시아 정부에 대해 표명했던 신복(信服)을 떠올리게 만들어, 강제 재이주정책 또한 인도주의적 구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정부의 선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정당화에 대해 수궁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조선인들이 연해주로 이주를 시작한 이래로 러시아 정부에 대해 갖고 있었던 믿음 또한 1870년 강제 이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1864년부터 러시아 정부에서 선전해온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보호하려 한다’는 주장과 1864년에 러시아군 초소를 타진헤에 설립하여 마적들로부터 보호하고 1865년 7월에 러시아군을 조선으로 파견하여 러시아 월경 관련 문제로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던 조선인들을 석방시키려 했던 실제 노력들에 대한 구전과 집단기억은 1869년의 대흉년을 맞아 조선인들이 아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향할 나라로 러시아를 선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보호하려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과거의 기억들이 1869~1870년 겨울의 대규모 월경사태 속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건들과 결합했을 때, 러시아 정부에서 주장하는 선의에 대해 한층 더 신뢰감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 「개탄론」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йшевъ, вполнѣ преданныхъ намъ.”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이어 '재이주정책으로 인한 특혜 및 교육정책'을 언급한 뒤 '신분제도의 폐지'와 '근대적 사법제도'라는 체제우월적 선전 내용을 나열한 서사¹⁰³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러시아 정부가 1869년까지 조선인들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해오다가 1870년부터 그들을 강제로 재이주시키게 되었음에도 조선인들이 러시아 정부에서 주장하는 강제 이주정책의 선한 의지를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 이데올로기적인 선전작업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적어도 수이푼 재이주에 대해서는 그것이 강제성을 띠었음에도 별다른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 정부에 대해 요순의 정치를 베푸는 것으로 칭송하는 소문이 조선 내까지 널리 퍼질 수 있었다. 또한 러시아의 조선인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개탄론」이 작성된 1898년까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수이푼이라는 곳은 최초의 연해주 정착자이자 티진헤 마을을 개척한 인물로서 티진헤의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최운보가 이끄는 개척단이 이미 1868년에 개척하러 떠나서 1869년에 도착하여 터전을 닦은 뒤, 1870년 봄에 정부로부터 이미 소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이 소문을 듣고 수이푼에 도착한 뒤 최운보 일행이 실제로 소를 소유한 것을 목격하고 수이푼의 첫 개척단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면 러시아 정부의 주장대로 강제 이주정책이 선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강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감을 완화하고, 특혜가 정말로 주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1871년 4월에 연해주로 이주해 온 1,000여 명의 조선월경민 또한 1869년 못지않은 1870년의 흉작으로 인해 이듬해 봄 춘궁기에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러시아로 넘어오게 되었고¹⁰⁴ 러시아 정부에서 이들을 구호한 점에서 1871년에도

103 유진룰, 광무 2년 10월 15일, 앞의 글, 2쪽.

104 조선조정에서는 1869년과 1870년의 흉년을 함께 묶어 “기사년과 경오년의 거듭된 흉년(己庚荐歉)” 혹은 “기사년과 경오년 두 해의 흉년(己庚兩年之凶荒)” 등으로 불렀을 정도로 1869년의 대흉년 못지않게 1870년의 흉년 역시 심각했다. 결국 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기대했다. 그러나 1871년 4월의 월경조선인들은 1869년의 월경조선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러시아 정부에 대한 수준의 충성심과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이푼으로 재이주될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러시아 정부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는 총각머리 단발사건을 비롯하여 조선과 러시아 정부 간의 협상 후에 발생했던 매우 극적인 계기를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1871년 4월의 월경조선인들에게 체제선전소문이 동일한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었다.

또한 수이푼과 아무르주로의 재이주에 존재하는 대상선정기준과 강제성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1869년의 월경조선인은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재이주 대상자에 해당되어, 러시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순차적 이주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반면에 1871년 1,000여 명의 월경조선인 중 절반은 수이푼 관구에 남아 있지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나머지 절반만 아무르주로의 재이주 대상자로 선정되어 강제적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은 러시아 정부에 대해 신뢰감을 형성할 계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1871년의 월경민들에게 빈부에 따른 차별로 여겨져 반발심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아무르주 재이주 대상자들 중에는 수이푼 관구와 한카 관구에 이미 정착해 있는 가족들과 합류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이주하는 경우까지도 20가구 이상 존재했다. 이것은 500여 명의 재이주 대상자 중 80명에 달하는 수치로 대략 16%나 되는 인원이 강제로 이산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¹⁰⁵ 조선인과 러시아인의 혈족 관념 모두에서 용납되기 힘든 처사였다.

반면에 수이푼으로의 재이주에서는 이와 같은 이산가족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에서 수이푼 재이주 대상으로 선정한 이들은 포시에

듬해인 1871년 4월에 춘궁기를 맞이하자 1,000여 명의 대규모 월경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최성운, 2021a, 앞의 글, 131쪽, 159~160쪽.

105 이것은 당시 아무르주 군무지사인 페다센코가 500여 명의 재이주 대상자 중 80여 가구 320명의 인원만 가족이며 나머지 인원은 독신 남성일 것으로 추정했던 것에 기반하여 계산된 추정치이다. В. И. Вагин, 1875, 앞의 글, С. 14.

트만 인근, 즉 당시에 이미 개척되어 있던 티진헤나 안치헤 등의 조선인 마을에서 농업 관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로 한정되어 있었다. 1869년의 월경사태 이전에 연해주로 넘어와 자리를 잡고 있던 가족들이 존재했던 1869년의 월경민들이라면 이미 자리 잡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들의 도움 속에 농사 관련 일자리를 구하기가 한층 유리했을 것이므로 수이푼 재이주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미 재이주 예정지에서 선배 조선인들이 이웃마을에서 터를 닦고 기다리고 있는 수이푼과는 달리,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살아야만 했던 점도 조선인들의 이주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연해주의 조선인 사회에서 첫 연해주 개척자로 티진헤 마을을 세웠던 전설적 인물이었던 최운보가 1868년의 수이푼 재이주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멀리 떨어진 거기다가 주변에는 러시아인만 존재하는 수이푼으로 가기를 자원하여 정착한 조선인은 150가구 중 10가구 혹은 35가구로 6.7% 혹은 23.3%에 불과했다. 당시 93.3% 혹은 76.7%라는 압도적인 인원이 수이푼에 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운보와 같은 저명한 지도자도 없이 1871년에 아무르주로의 강제 재이주 대상으로 선정된 조선인들이 느꼈을 거부감은 대단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무르주로의 강제 재이주는 강제 이주당하는 조선인만이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집행했던 러시아 당국에게조차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아무르주로의 재이주는 그것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악조건을 제외하고서라도 재이주 대상 선정기준부터 시작하여 제반조건상 조선인들에게 강렬한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수이푼보다도 막대한 특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서 새로 복속한 이들을 가부장적으로 돌봐주는 정책이라고 설득해봐도 존재하는 거부감을 상쇄하고 러시아 정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적 그리고 믿음의 토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차이점들이 수이푼과 아무르주로의 재이주에 대한 반응을 갈라놓았던 것이다.

V. 맺음말

1870·1871년 조선인 재이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것이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진행되어왔다. 이 글은 극동러시아 당국이 1865년부터 1870년대 후반까지 진행해온 조선인 식민정책의 흐름 속에서 1870·1871년 조선인 강제 재이주정책이 지니는 특이성에 대해 그 연속성과 단절성에 주목하여 규명했다.

1870·1871년의 조선인 재이주는 러시아 정부가 연해주와 아무르주의 경제 개발 및 연해주지역과 월경조선인들의 러시아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이들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이주시킨 정책이다. 이것은 1865년부터 러시아 당국에서 설정한 조선인 관리정책의 목표를 계승한 것이었지만, 강제재이주라는 점에서 1868·1869년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러시아 정부는 그 강제성을 희석하고 반발을 누그러뜨리며 오히려 이주를 원하는 마음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한편으로는 가축 제공 등과 같은 막대한 물질적 혜택을 제공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재이주정책이 우월한 러시아의 정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선인을 실질적으로 러시아화하기 위한 정치체제 선전소문을 유포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동화시키는 작업을 함께 수행했다.

1869년과 1871년에 러시아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선인이 월경해 조-러 국경지대에 밀집하게 되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화되지 않은 조선인들이 조선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조선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장래에 잠재적인 위협세력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미래에 연해주로 이주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농민들이 차지할 토지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조선인들을 조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조선과의 통행 및 연락이 쉽지 않은 내륙지역의 러시아인 및 카자크인 마을 사이로 이주시켜 동화시키는 강제 이주정책이 선택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재이주정책에 내재된 강제성이 1648년의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 정착된 강제 이주 금지 원칙과 1864년에 연해주 군무지사에 의해 제정된

조선인들의 자유 향유에 대한 보장 규정 및 1868·1869년에 시행 및 계획했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재이주정책과도 모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동시 베리아 총독은 먼저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국으로부터 조선인들을 러시아화하여 러시아 주민들과 동화시키기 위해 강제 이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황제의 칙령에 위배되는 부분을 해결했다. 이어서 조선인들로부터 반발심을 줄이고 이주를 원하는 마음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하여 가축 등의 막대한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계획한 뒤, 이 재이주계획을 선전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특혜 및 이주비용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강제적 재이주계획 자체를 조선인을 러시아화하는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신들이 아사와 동사 위기에 처한 조선월경민들에게 헌신적 구호와 임노동직 제공으로 생계유지대책을 마련해준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강제 재이주를 새로 복속된 가난한 조선인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보장해주려는 차르의 보호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전하며 조선인들을 가부장적 정치질서 속으로 통합하려 했다. 또한 이와 함께 신분차별 없이 생명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유와 자치를 누리게 해주는 러시아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며 시행된 1870년의 수이푼 재이주는 그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와 재이주 대상 조선인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준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초라한 성과만 거둔 1868·1869년과는 달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조선인들을 내륙지역으로 재이주시켜 해당 지역을 개발하고 러시아화의 객관적 조건들을 형성할 수 있었다. 정책성공의 원인으로는 첫째, 모든 1869년 월경자의 재이주가 계획되어 있어 재이주 대상자 선정기준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1869년의 월경조선인들 또한 이미 러시아 정부의 헌신적 구호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총각머리 단발사건으로 대표되듯이 러시아 정부에 대해 복속의지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 기반 위에서 러시아 정부의 정치선전은 조선인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연해주를 첫 조선인 마을을 개척했던 전설적 인물인 최윤보가 다시 수이푼지역을 개척하여 이

미 조선인 마을을 형성한 점 역시 먼 지역으로의 이주에 따르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재이주정책의 강제성은 문제시되지 않았고, 재이주 대상 조선인들이 러시아의 체제선전소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주했다.

이 소문은 당시 재이주 대상이 아니었던 연해주 내의 조선인들에게조차 수이푼으로 이주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고, 곧 조선으로 전파되어 이듬해 춘궁기에 1,000여 명이 연해주로 월경하는 사태를 야기했다. 이것은 1870년에 조선과 러시아의 조선인에게 최초로 신분제 폐지·법 앞의 평등·개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대중적 정치선전이 행해졌으며, 이때부터 조선인들 사이에서 러시아를 정치적 이상향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데 대해 러시아의 체제선전소문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소문의 여파로 1875년까지 수천 명의 조선인이 연해주로 이주하였고, 그 결과 1876·1877년에는 조선 정부에서도 백성들이 러시아를 낙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러시아로 이주를 감행한다는 점을 큰 문제로 인지하게 될 정도로 조선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동시베리아 정부가 성공적인 1870년 수이푼 재이주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1871년에 월경해 온 1,000여 명의 조선인을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아무르주로 강제 재이주시킨 재이주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500여 명의 인원을 이주 대상으로 선정한 뒤 재이주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재이주정책의 핵심 목표였던 러시아화의 달성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가 수이푼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아무르주로 재이주시키기 위해 수이푼보다 한층 더 막대한 수준의 특혜를 제공했음에도 연해주행정청에서는 아무르주로의 재이주가 경제적으로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앞으로 조선인들이 “러시아 정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될” 위험성조차 존재한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아무르주로의 재이주에 대해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심한 거부감은 그곳이 조선인들이 이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었다는 점과 가난한 자들만 재이주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감정, 그리고 이주과정에서 드

러난 적나라한 강제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기존에 수이푼이나 한카호에 정착한 가족이 있는 인원이 재이주 대상자 중 16%나 되었음에도 이들은 강제로 아무르 주로 보내져 이산가족이 되어야 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결과 러시아 관원이 조선인들을 아무르주로 재이주시킨다면 앞으로 조선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고자 하는 열망을 잠재울 수 있다고 표현했을 정도의 심한 거부감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의 발생도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재이주정책이 러시아화와 경제개발이라는 정책목표와 어긋나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제기되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조선인들의 반발까지 고려하여 재이주정책은 폐지되고 1875년에 조선인을 조-러 국경지대에 정착시키는 새로운 조선인 관리정책이 등장하게 된다. 다른 한편, 수이푼 재이주 시에 선전된 러시아 체제선전소문은 북관지역 조선인들이 러시아를 요순시대와 같이 훌륭한 정치를 펼치는 국가로 이상화하는 데 일조하여 1875년까지 6,000~7,000명이 월경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조선 정부는 북관지역에서 징세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1877년에 환곡을 비롯하여 월경을 야기하던 기존의 수취제도를 개선하고 월경민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참고문헌

사료

『承政院日記』.

『俄國輿地圖』.

유진륜, 「개탄론」, 『독립신문』, 광무 2년 10월 15일.

金世鎔, 1935, 「西伯利亞의 朝鮮人活動」, 김동환, 『自由와 平等』, 三千里社.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김선안 역, 2014, 『러시아문서 번역집 XVIII-러시아국립 극
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선인.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이재훈 역, 2014, 『러시아문서 번역집 XVI-러시아국립 극
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선인.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저, 한희정 역, 2014, 『러시아문서 번역집 XVII-러시아국립 극
동역사문서보관소(РГИА ДВ)』, 선인.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 저, 구양근 역, 1998, 「블라디보스토크 건문잡기(烏刺細窩斯
杜屈見聞雜誌)」, 『한일관계사연구』 9.

承文院 저, 배우성 외 4인 옮김, 2012, 『國譯 同文彙考 犯越史料4』, 동북아역사재단.

이제마 저, 이창일 역주, 1999, 『東武遺稿』, 청계.

프르제발스키, 2006, 「우수리 지방 여행. 1867~1869 4장 4부 <조선인>」, I. A. 곤차로
프 외 2인, 심지은 편역, 『러시아인, 조선을 거닐다』, 한국학술정보[주].

Вагин, В. И., 1875, “Корейцы на Амуре,” *Сборник историко-статистических сведений о Сибк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ей странах*, Вып. 2, Т. 1.,
Спб: Русская скоропечатня.

Насекин, Н. А., 1904, “Корейцы Приамурского края: Крат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Южно-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Журнал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Часть CCCLII No. 3.
Полнер, Т. И.(ред.), 1909, *Приамурье. Факты, цифры, наблюдения*, Мос-

ква: Городская тип.

단행본

- 니콜라이 V. 라자노프스키 지음, 김현택 옮김, 1994, 『러시아의 역사Ⅱ』, 까치.
-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2004, 『러시아에서의 140년간-재러한인 이주사-』, 시대정신.
- 보리스 박, 2002, 『러시아 제국의 한인들(극동기)』, 청주대학교출판부.
- 서대숙 엮음, 이서구 옮김, 1989, 『소비에트 한인 백년사』, 도서출판 태암.
- 석영중, 2005, 『러시아정교-역사·신학·예술』,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철, 1990, 『시베리아 개발사』, 민음사.
- 玄圭煥, 1967, 『韓國流移民史 上』, 語文閣.

Осипов, Ю. Н., 2006, *Крестьяне-старожил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1855-1917 гг.: Монография*, Владивосток: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ство ВГУЭС.

논문

- 國分典子, 2001, 「俞致衡과 穗積八束-한일 초기헌법론의 비교」, 『한국법사학회』 23.
- 남정우, 2004, 「러시아정교회선교의 국가-정치적 성격에 관한 역사적 연구」, 『장신논총』 22.
- _____, 2009, 「러시아 제국 시대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연구」, 『선교와 신학』 23.
- 박상철, 2013, 「러시아 정부와 시베리아 농민이주-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서양사연구』 50.
- 반병률, 2009, 「러시아 연해주 한인마을 연추의 형성과 초기 모습」, 『동북아역사논총』 25.
- _____, 2011, 「러시아원동지역 초기 한인마을 형성과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40.

- 방일권, 2015, 「제정러시아 한인 사회와 정교회 교육」, 『재외한인연구』 36.
- 배항섭, 2009, 「19세기 후반 함경도 주민들의 연해주 이주와 仁政 願望」, 『역사와 담론』 53.
- 송인재, 2018, 「근대 중국의 정치적 정체성 탐색과 ‘국체’ 개념」, 『中國現代文學』 84.
- 썸비르쎄바 따찌아나, 1997, 「19세기 후반 조·러간 국교수립과정과 그 성격-러시아의 조선침략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조, 2016,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지역 식민정책-유즈노우수리 지역 식민이주 정책을 중심으로」, 『사충』 87.
- _____, 2021, 「제정 말 러시아의 소수민족 교육정책과 조선인-이주민의 교육 활동: 프리모리에 지역을 중심으로」, 『승실사학』 46.
- 오두영, 2008, 「알렉산드르 Ⅱ 세의 사법개혁」, 『인문연구』 55.
- 이병조, 2008, 「러시아 프리아무르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865-1916)」,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 「러시아 아무르주의 한인사회와 정교회 선교활동(1872~1916)-블라고슬로벤노예(Благословенное) 마을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0.
- 이상근, 1994, 「韓人 露領移住史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기, 2014, 「개항기 서양인의 여행기를 통해 본 한국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 2020, 「俄國輿地圖의 地圖와 註記 分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채문, 1999,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역사와 이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1999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 최성운, 2021a, 「『東武遺稿』 「陳情」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통한 난해어구의 교감-“洋醜之漁獵頻泊汊港, 峩人之耕牧恒據沿腦”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 34(2).
- _____, 2021b, 「조선말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를 유인하는 소문과 월경에서 드러나는 조선인들의 사회적 연대 연구-1864~1877년까지를 중심으로-」, 『장서각』 45.
- 플로트니코바 마리나, 2006, 「1863~1910년까지 연해주로의 한인 이주와 그들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러시아 국립 역사기록보관소 극동지부 소장 문서를 중심으로」, 한국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ing, Ross, 2001, "Blagoslovennoe: Korean Village on the Amur, 1871-1937,"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4(2).

기타 자료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이 다시 멀리 아무르강까지 재이주하여 건설한 마을 사만리[블라고슬로벤노예]」,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95300002&localCode=cis&menuGbn=special>

극동러시아 당국의 1870·1871년 조선인 강제 재이주정책과 체제선전소문

최성운

1870년 수이푼으로의 재이주와 1871년 아무르주로의 재이주는 선정 대상 전원이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강제적 재이주였고, 이중 전자는 러시아 당국에 의해 집행된 최초의 조선인 강제 재이주정책이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러시아 영내의 조선인들을 조-러 국경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의 러시아 마을 사이로 이주시켜 러시아문화에 동화시키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려 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소문을 생산 및 유포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 러시아화를 달성하려 했는데, 동시에 이를 통해 강제적 재이주를 정당화하여 조선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고 조선인들의 거부감과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전략은 수이푼에서 성공한다. 이곳으로의 이주민은 1869~1870년의 대규모 월경사태를 거치면서 집단적으로 러시아 정부에 정치적 복속을 표명하는 사건을 경험했었고, 아사와 동사의 위기에서 헌신적으로 구호했던 러시아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이 두 경험을 불러일으켜 결합시킴으로써 러시아 정부에 대한 신뢰감

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이 비록 지금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하지만 이것은 이주에 따라 주어지는 막대한 특혜를 선사하며 신민의 생계수단까지 보장해주려는 가부장적 러시아 황제의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선에서와는 달리 신분차별이나 재산의 강탈 없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서사를 납득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수이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약속한 아무르주에서는 실패했다. 조선인들은 러시아 정부에서 자신들을 멀고 외진 곳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고 느끼며 반발했다. 결정적으로 이들에게는 집단적 신복의 경험이 없었고 가족이 분리되어 이주당하는 등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들로부터 신뢰성과 동의를 획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주제어: 강제 이주정책, 수이푼(추푼), 아무르주, 조선인 재이주, 조선인 이주, 러시아화, 강제 이주 정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가부장적 러시아 황제(차르)

ABSTRACT

The Russian Authority's Mass Deportation Policy and the Propaganda of Political System for Koreans in 1870 and 1871

Choi Sungwoon

The resettlement of Koreans to basins of Suifen River in 1870 and that to Amurian Oblast' in 1871 were both mass deportation due to the fact that the selected personnel by the Russian Government were forced to migrate, and the former was the first forced resettlement policy by the Russian authority. The Russian Government intended to create the objective conditions of assimilation to Russian culture by migrating Koreans, in Russian territory near the Korean-Russian border, among Russian villages located inland of Eastern Siberia. And the Russian Government invented and circulated the hearsay of propagating the superiority of Russian form of government to accomplish the practical Russification of the selected Koreans as well as to justify the mass deportation policy to obtain their consent on resettlement and to soothe the animosity and grievance evoked by the forced migration.

The ideological strategy of the Russian Government succeeded in Suifen region. The migrants to Suifen had experienced a dramatic event of pronouncing the political subjugation as a group to the Russian Government during the mass migration in the winter from 1869 to 1870. And they felt appreciation for the the Russian Government who had dedicated to relieve them of hunger and exposure to cold. The Russian Government could gain the credit from them by succeeding in arousing and combining both experiences.

Based on this credit, the Russian Government succeeded in convincing them the following narrative: although the Koreans were obliged to migrate, the policy derived from the good intentions of patriarchal Russian Tsar who was willing to provide the subject with the means of living by granting special and enormous privileges: the Koreans would enjoy freedom without experiencing the social status discrimination and plunder of their property which were ordinary in Korea.

On the contrary, the Russian Government failed in Amurian Oblast'. The Koreans react against the migration, feeling they were driven into far and remote place. The Russian Government were unsuccessful in gaining credit and consent decisively due to the lack of the experience of collective subjugation and the fact that migration caused some family to dissolute by forcing newly arrived members of one family to migrate while leaving other members who migrated years earlier in the border area.

Keywords: Mass Deportation Policy, Suifen, Amurian Oblast', Resettlement of Koreans, Korean Migration, Russification, Ideological Justification of Mass Deportation Policy, Patriarchal Russian Emperor[Tsar]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탈리아의 패전, 냉전, 평화조약과 관념

–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

김송배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초빙교수

- I. 머리말
- II. 제2차 세계대전과 이탈리아의 내적 변동
- III. 유럽의 지역 냉전과 이탈리아의 입지
- IV. 이탈리아평화조약에 따른 전쟁과 식민 문제
- V. 이탈리아의 항시적 전후 관념과 변화
- VI. 맺음말: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



I. 머리말

유럽 국가 간의 화해나 지역 협력의 사례 제시는 한일관계의 현안을 고려할 때, 또 다른 문제의식과 결론을 제공해준다.¹ 어떤 대상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른 시공간에서 선험적 대상을 분석하는 방법은 관점 확정에 따른 ‘함의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Axis powers)의 핵심이며, 파시즘의 상징이었던 이탈리아의 전후 역학을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의 패전 형태, 냉전 초기의 입지, 평화조약의 규범, 전후의 항시적 관념이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전후 역학을 ‘반추(rumination)’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이탈리아의 전후 역학과 한일관계 연구 영역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두 영역을 동시 분석한 선행연구는 1947년 이탈리아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Italy)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의 비교를 시도했다. 두 평화조약의 양적·질적 강도, 배상 문제 등을 거론함으로써 패전국 일본에 대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이탈리아평화조약에 비해 관대했고, 무엇보다 이러한 큰 편차가 생긴 것은 1947년과 1951년이라는 냉전의 심화에 따른 시간적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² 두 평화조약의 영토 조문을 비교할 때,

* 투고: 2021년 12월 16일, 심사 완료: 2022년 2월 11일, 게재 확정: 2022년 2월 16일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1-기획연구-12).

1 유럽 연구의 전문가들이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의식함으로써 다시 유럽에 접근한 연구물로 김남국 외, 2019,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 협력: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수립에 대한 함의』, 이학사.

2 이근관, 200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대이탈리아 강화조약의 비교연구: 이른바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김부자 외,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영토 규정은 더 논쟁적이기도 하다.³

한일관계의 청구권 문제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두 평화조약을 비교한 연구는 당대 식민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탈리아평화조약에는 리비아와 같은 구(舊) 식민지에 관한 조문이 있었으나, 이는 배상의 대상이 아니었고, 1930년대 이탈리아가 침략한 알바니아 및 에티오피아에는 배상이 실시되었다. 이탈리아 평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식민 문제에 대한 규범이 결여되어 있었고, 결국 두 평화조약을 주도한 연합국과 이탈리아 및 일본은 식민주의에 대해 “공범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⁴

기존 연구들은 한일관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고, 연계적으로 전후 일본의 양태는 한국과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일관계를 의식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층위들에 착목한다. 첫째, 이탈리아의 대내외적 정치역학에 더 비중을 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은 전쟁책임이나 전후처리 문제에 자주 언급되지만, 이탈리아는 식민지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상대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범주에서 거론되지 않는 편이다. 한국 학계에는 이탈리아 제국주의는 물론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 진출이나 식민 지배에 관해 거의 소개되지 않은 상황이다.⁵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1945년 이후의 전후(戰後)를 검토하기 위해 이탈리아가 항복한 1943년 전후(前後)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 시점을 둘러싼 이탈리아의 내적 변동은 전후 이탈리아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조명』, 동북아역사재단.

3 강병근, 2018,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에 관한 연구: 대일 평화조약과 대이태리 평화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법학논총』 제63권 4호.

4 오오타 오사무, 2012, 「식민주주의의 ‘공범’: 두 개의 강화조약에서 초기 한일교섭으로」, 『아세아연구』 제55권 4호.

5 장문석, 2012, 「이탈리아의 리비아 정복과 식민지화, 1911-1943」, 『서양사론』 제113호, 66~68쪽.

둘째, 이 글은 이탈리아의 패전, 냉전, 평화조약과 함께 거시적 관점으로 탈냉전기 이탈리아의 식민 문제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대응 등을 연구범위로 삼는다. 기존 연구들은 패전국에 부여된 평화조약의 중요한 규범적 장치에 주목했는데, 이 글에서는 보다 중층적인 영역들을 확인한다. 1940~195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식민 문제는 전쟁 문제에 비해 국제적 쟁점이 아니었고,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주로 탈냉전을 즈음하여 과거 행위를 둘러싼 역사적·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탈리아에 대한 중점적 고찰을 전제로 함으로써 한일관계의 존재적 본질이라는 양상을 분석한다.

II. 제2차 세계대전과 이탈리아의 내적 변동

영토 확장을 지향하는 제국은 식민, 식량, 원료 등을 다른 공간에서 찾는다. 1870년대부터 유럽 제국들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분할(Scramble for Africa) 경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창립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포섭한 베르사유평화체제의 탄생은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변용시켰다. 이 체제에 따라 제국은 무력으로 식민지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제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식민지 보유는 인정되었다. ‘국제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보전’이 작동되었다.⁶

1919년 무솔리니(Benito Mussolini)가 결성한 이탈리아 전투 파쇼(Italian Fasces of Combat)는 1921년 국가파시스트당(National Fascist Party)으로 개조되었다. 파시즘 운동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지만, 이탈리아에서 그 강도(強度)가 높았다는 것은 볼셰비키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례했다. 로마가톨릭주의(Catholicism) 바티칸의 근간에는 종교를 적시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박이

6 김승배, 2019, 「반(反)베르사유: 국제적 민족자결론과 한국적 분화의 연계성」, 『국제정치논총』 제59집 2호, 354~355쪽.

있었다. 1929년 파시스트 정권과 로마 교황청이 맺은 라테라노조약(Lateran Treaty)은 무솔리니의 입지를 강화했다.⁷

전체주의 국가는 정권 여당을 통해 조직화된 사회를 형성한다. 여당은 무제한적 권력을 사용하여, 보안경찰의 지원으로 통치를 실시한다. 이때 법은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구조를 위해 작동된다.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는 국제적 수준에서 권력을 확대시키고, 전체주의적 파시즘은 자국민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⁸ 전체주의 중에서 파시즘은 제국의 외교정책과 식민지 획득 정책을 일치시킨다. 히틀러(Adolf Hitler)는 유럽 내부에 영토 확장을 시도했다면, 무솔리니는 전통적 유럽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제국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와 같은 외부 세계에서 영토를 찾았다.⁹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인구 통계학자들은 아프리카 동북지역의 식민지화가 국가 생존공간의 문제 해결에 직결한다고 보았다.¹⁰ 1928년에 발간된 무솔리니의 자서전에서 이탈리아의 외교정책이란 식민지정책과 일치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식민지 개발은 단지 인구문제의 논리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상태에 대한 해결의 열쇠”였다.¹¹

1894~1896년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탈리아는 1935년 다시 에티오피아를 침공했고 병합에 성공했다. 제2차 에티오피아 전쟁(Second Italo-Ethiopian War)으로 불린 이 전쟁에서 이탈리아는 화학 병기를 사용했고, 포로

7 이 조약으로 가톨릭교회는 이탈리아에서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았고, 바티칸은 시국(City State)으로서 독립했다. 이로 인해 1870년 이탈리아의 로마 점령에 따른 바티칸과의 대립은 종식했다.

8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이종인 옮김, 2014, 『공산주의의 역사』, 을유문화사, 160쪽.

9 마크 마조워 지음, 김준형 옮김, 2009, 『암흑의 대륙: 20세기 유럽 현대사』, 후마니타스, 111~112쪽.

10 Mark Mazower, 2009, *No Enchanted Palace: The End of Empire and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United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109~110.

11 베니토 무솔리니 지음, 김진언 옮김, 2015, 『나의 자서전: 독재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玄人, 282쪽.

수용소, 민간인 강제수용소 건설을 통해 수십만의 에티오피아인을 살해했다. 이탈리아는 노예제도가 있는 에티오피아를 야만적 전제국가로 규정했고, 문명과 정의를 가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해방시켰다고 선전했다. 국제연맹 총회에서 이탈리아 외무장관이었던 치아노(Galeazzo Ciano)는 이탈리아가 “문명화의 신성한 사명”으로 에티오피아를 문명화시키겠다고 말했다.¹² 국제연맹규약(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제22조에는 “문명의 신성한 사명”이라는 명분으로 위임통치의 정당성을 규정했었다. 당대 ‘문명’은 ‘인종’과 결합되면서 사회를 서열화시키는 장치로 작동되었고 제국주의 국가들에 식민지 획득전쟁의 논리를 제공했다. 1926년 시점에서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이었었는데, 1933년 일본과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했고, 1937년 12월 이탈리아가 이탈했다. 반(反)국제연맹 국가들의 등장이었다.

유럽의 시각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1941년에 발발한 태평양전쟁은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복합연쇄전쟁’이 되었다. 다만 1931년 일본의 만주사변이나 1935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시점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기도 하다.¹³ 이탈리아는 이러한 전쟁들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파시스트 정권의 통령을 의미하는 두체(Duce)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강대국화를 지향했으나, 이탈리아는 군사적·경제적으로 이를 현실화시킬 능력이 없었다.¹⁴ 무솔리니 역시 이탈리아의 전쟁 수행능력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있었

12 George W. Baer, 1976, *Test Case: Italy, Ethiopia and the League of Nations*, Hoover Institution Press, pp. 296~297.

13 Gerhard Weinberg, 2014, *World War II: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 와인버그(Gerhard Weinberg) 자체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점을 유럽의 전통적 관점인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보고 있다.

14 무솔리니는 히틀러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탈리아의 군비는 독일의 10분의 1에 불과했고, 재정도 취약했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제휴했으나, 이탈리아 국민들

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전황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독일이 프랑스를 압도하자 1940년 6월 10일 이탈리아는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고, 9월에 독일 및 일본과의 삼국동맹(Tripartite Pact)에 참여했다.

무솔리니의 정치적 위상은 전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1940년 9월 이탈리아 군에 의한 이집트 침공으로부터 1943년 5월 튀니지 전선(Tunisian campaign)까지 이른바 북아프리카 전선(North African campaign)에서 추축국은 패배했고, 유럽 본토까지 철퇴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국내에서 파시즘 체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는데, 무솔리니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국왕 에마누엘레 3세(Vittorio Emanuele III)는 무솔리니 배제와 동시에 연합국과의 강화(講和)를 모색했다. 7월 25일 국왕은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었던 파시즘 대평의회(Grand Council of Fascism)에서 그란디(Dino Grandi)가 제출한 결의안(Fall of the Fascist regime in Italy)을 지지했다. 무솔리니는 해임·체포되었다. 이는 무솔리니가 비(非)파시스트에 의해 배제된 것이 아니라, 무솔리니에 반대한 파시스트당 간부들과 국왕에 의해 배제된 결과였다. 후임으로 수상이 된 바돌리오(Pietro Badoglio)는 1943년 9월 3일에 연합국과 휴전협정(Armistice with Italy)에 서명했다. 협정문에는 이탈리아군의 모든 적대적 활동의 즉시 정치(immediate cessation)와 동시에 이탈리아는 연합국이 사용하는 이탈리아 시설을 독일에 제공하지 않고, 연합국이 이탈리아 영토 내에 있는 공항 및 군항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탈리아군은 이러한 시설을 연합국, 특히 미국과 영국이 승계할 때까지 보호하는 책임이 생겼다.¹⁵

이탈리아의 항복은 바로 연합국과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9월 29일 이탈리아는 연합국과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에 서명했는데, 그날 연합

은 특별히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탈리아 상류계급은 영국, 이탈리아 농민이나 수공업자는 미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존 키진 지음, 류한수 옮김, 2016, 『2차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516~517쪽.

15 Avalon Project: Yale University Library, “Armistice with Italy; September 3, 1943.”

국 원정군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바돌리오에게 “연합국에 실제로 협력하는 입장이 된 이탈리아의 지위는 크게 변화했다”고 서한을 보냈다.¹⁶ 추축국들에서 이탈한 이탈리아는 연합국의 공동참전국(co-belligerence)으로서 10월 13일 독일에 선전포고했고, 1945년 7월 15일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3년 11월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미국, 영국, 소련은 공동성명으로 “연합국의 대(對)이탈리아 정책은 파시즘이나 모든 악한 영향력(evil influence)과 그 구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탈리아 국민에게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정부 및 기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기회를 준다”고 했다. 이어서 선언문은 파시즘에 반대해온 이탈리아 국민이 대표자가 됨으로써 민주성·종교·집회 자유 등을 회복하고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조직된 기관의 폐지를 명시했다.¹⁷ 이탈리아의 전쟁행위를 파시스트에 전가함으로써 이탈리아 국민과 파시스트를 구분했다.

이탈리아 내부의 반(反)파시즘 활동, 즉 저항운동(resistance movement)의 존재는 전후 이탈리아에 중요하다. 이탈리아의 해방을 주창한 저항운동 세력은 파시스트뿐만 아니라 나치즘과 싸웠다. 1943년 9월에는 기독교민주당부터 공산당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반파시즘 조직인 국민해방위원회(National Liberation Committee)가 결성되었다. 1945년 4월 28일 저항운동의 일부이기도 한 파르티잔은 재판 없이 무솔리니를 처형했다. 히틀러의 자살(1945.4.30.)을 계기로 항복하게 된 독일이나, 불리한 전쟁 상황임에도 천황 히로히토(裕仁)를 중심으로 한 국체(國體) 유지에 집착한 결과 1945년 8월 14일에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일본과 달리, 이탈리아는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의 변동이 결정적

16 Avalon Project: Yale University Library, “Letter from Commander in Chief of Allied Forces to Head of Italian Government; September 29, 1943.”

17 Avalon Project: Yale University Library, “The Moscow Conference; October 1943.”

이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스스로 무솔리니를 추방시켰다는 측면에서 자정작용이 없지는 않았다.

Ⅲ. 유럽의 지역 냉전과 이탈리아의 입지

냉전 이데올로기의 기원은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 일어난 1917년 볼셰비키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미·소 강대국 간의 세력권 구도는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가시화되었다.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은 이념적으로 상충했으나, 연합국으로서 협력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1945년 2월에 개최된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군사력을 필요로 했으면서도 유럽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경계했다.

처칠(Winston Churchill)은 추축국이었던 이탈리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급사로 미국 대통령이 된 트루먼(Harry S. Truman)은 이탈리아의 국제연합 가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포츠담회담에서 트루먼은 추축국 중에서 먼저 이탈리아에 대한 전후처리를 협의하도록 진언하기도 했다. 스탈린은 미국의 이탈리아에 대한 태도가 다른 동유럽 추축국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다른 추축국보다 민주적이지 않고, 아직 민주적 선거(democratic elections)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트루먼은 “누구든지 이탈리아에는 자유롭게 갈 수 있다(free access to Italy)”고 했고, 한편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탈리아의 공격을 받았던 영국의 입장에서 처칠은 이탈리아에 대한 배상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스탈린에게 “이탈리아에서는 검열이 없고,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비판했다.¹⁸ 미국 국무장관 번스(James F. Byrnes)

18 Harry S. Truman, 1955, *Memoirs: Year of Decisions* vol. 1., Doubleday, p. 384.

역시 “서유럽 세력권(western European sphere of influence)”에서 이탈리아를 중시했다. 당시 미국은 이탈리아에 2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대한 배상 자체가 문제였다. 그렇지만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탈리아에만 배상 문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¹⁹ 미국과 영국은 이미 소련의 영향하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 자유주의가 걸려된 것으로 인식했다.

일본에 무조건항복을 요구했던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과 별도로 발표된 1945년 8월 2일 포츠담협정(Potsdam Agreement)은 전후 유럽 문제에 특화한 것이다. 전 21조와 두 부속의정서로 구성된 포츠담협정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에 의해 결성되는 외교장관위원회(Council of Foreign Ministers) 설치를 선언했다. 위원회는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에 대한 평화조약 작성을 임무로 맡았다.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은 공동명의로 특별히 이탈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세 정부는 새로 결성되는 외무장관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당면한 주요 과제의 하나로써 이탈리아에 대한 평화조약을 거론했다. 이탈리아는 추축국 중에서 먼저 독일과 결별했는데, 독일의 패배에 크게 기여했고 현재 연합국과 함께 대일전쟁에 동참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나 민주적 정부와 제도 재건을 위해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승인된 민주적인 이탈리아 정부와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세 정부는 이탈리아가 희망하는 국제연합 가맹신청 지지요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²⁰

외교장관위원회는 유럽 전후처리 문제에서 독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

19 Charles L. Mee, 1975, *Meeting at Potsdam*, M. Evans, pp. 103~104.

20 Avalon Project: Yale University Library, “The Berlin (Potsdam) Conference, July 17–August 2, 1945 (a) Protocol of the Proceedings, August 1, 1945.”

다.²¹ 독일에 대해서도 평화조약 체결이 논의되었으나, 독일에서는 연합국들의 직접점령이 실시되고 있었고, 독일을 대표하는 중앙정부가 없는 상태였다. 위원회는 독일 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우선적으로 바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서 이탈리아, 핀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대한 평화조약에 집중하게 되었다. 외교장관위원회는 1945년 9월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탈리아 식민지에는 국제연합에 의한 신탁통치 실시가 표명되었다.²² 12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미국·소련·영국·프랑스의 외교장관이 이탈리아평화조약을 작성하는 것이 명기되었고, 특히 프랑스의 관여가 강조되었다.²³ 유럽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참여는 영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결과이기도 했다.

1946년 4월 파리에서의 외교장관위원회는 이탈리아평화조약 작성에서 배상 문제, 식민지 문제, 그리고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경계선 문제인 트리에스테 지역 문제를 거론했다.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이탈리아의 생존을 위해 한 정적인 배상을 고려했지만, 소련은 1억 달러의 배상을 주장했다. 이탈리아의 식민지에는 미국이 제안한 신탁통치가 채용되었다. 위원회는 트리에스테 문제를 가장 큰 쟁점으로 여겼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고슬라비아는 연합국으로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트리에스테에 관해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주장을 경청했다.²⁴

영국은 미·소 강대국의 대두 속에서 프랑스와 협력함으로써 ‘서방권

21 포츠담협정을 통해 결성된 외교장관위원회에는 중국이 포함되었으나, 중국은 다시 내전상태에 돌입했고, ‘유럽 문제’라는 측면에서 제외되었다.

22 Avalon Project: Yale University Library, “First Meeting of the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London.”

23 Avalon Project: Yale University Library, “Interim Meeting of Foreign Ministers, Moscow.”

24 Avalon Project: Yale University Library, “Second Meeting of the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Paris.”

(Western Bloc)’을 구상했다.²⁵ 지역주의보다 국제주의를 선호했던 헐(Cordell Hull)이나 루스벨트에 비해 유럽의 지역주의를 중시해온 처칠은 1945년 이전부터 ‘철의 장막(iron Curtain)’이라는 용어를 사영하여 동·서 유럽의 세력권을 말한 바 있다. 그는 1946년 3월 서유럽과 동유럽의 진영 간의 긴장관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²⁶ 5월 외무장관위원회에서도 영국은 동유럽이 소련 영향권에 있다는 점에서 철의 장막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래 영국은 이탈리아에 대해 징벌적인 평화조약을 원하기도 했으나, 이탈리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1939년 9월 17일 선전포고 없이 폴란드를 침공한 소련은 이에 앞서 8월 23일에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었는데, 후일 알려진 비밀추가협정서(Secret Additional Protocol) 제2조에 따르면,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 분할에 관해 합의했었다. 소련은 1934년 국제연맹에 가맹했지만, 1939년 11월에 핀란드를 침공했다. 비밀추가협정서에는 핀란드를 포함한 발트 지역 재편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소련은 핀란드에 대한 침공으로 국제연맹에서 제명되었다.²⁷ 그러나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자 소련은 연합국과 연대함으로써 동부전선에서의 연합국 승리에 공헌했지만, 동시에 동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

25 細谷雄一, 2001, 「イギリス外交と戦後ヨーロッパ秩序の形成, 1945-50年: 大國協調體制から北大西洋條約機構へ」, 『北大法學論集』 第51卷5號, 83~84쪽.

26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앞서 1년 전에 처칠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학(Westminster College)에서 “평화의 원동력(Sinews of Peace)”이라는 제목으로 철의 장막 관련 연설을 했다. 그는 “바르샤바, 베를린, 프라하, 빈,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부쿠레슈티 그리고 소피아”는 “소련의 영향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의 강한 통제하에 있다”고 언급했다. 처칠은 이탈리아가 공산당이나 티토(Josip Broz Tito)의 유고슬라비아에 의한 위협 속에 있다고 했다. 불안한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해 처칠은 프랑스의 협력을 주장했다. Winston S. Churchill, 1946, “Sinews of Peace,” https://www.nato.int/docu/speech/1946/s460305a_e.htm.

27 소련과 핀란드는 겨울전쟁(Winter War)의 결과 1940년 3월 모스크바평화조약(Moscow Peace Treaty)을 체결했는데, 이로 인해 소련은 핀란드의 영토를 일부 획득했다.

다. 스탈린에게 유럽 전쟁은 동유럽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²⁸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강했던 스탈린은 서유럽 국가들에 의한 공격을 두려워했다. 특히 독일로부터의 공격은 동유럽을 통해 가능했다는 점에서 동유럽 인접국이 잠재적인 위협 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²⁹ 스탈린에게 이탈리아는 소련과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보다 지정학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

전후 이탈리아 내에는 미국 및 서유럽이 중시하는 자유주의 세력, 공산주의에 친화적인 세력, 그리고 중도에 위치한 세력들이 혼재한 상황이었다. 반파시즘을 일관했던 데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는 1945년 12월 이탈리아 왕국의 마지막 총리이자 이탈리아 공화국의 초대 총리로서 1953년 9월까지 역임했다. 기독교민주당 소속이며 반공주의자였던 그는 1947년 1월에 미국을 방문했다. 이때 트루먼은 미국의 반공주의 노선을 설명했고, 이탈리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이탈리아의 강력한 후원자였다. 데 가스페리는 서유럽에서의 이탈리아의 고립을 막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를 필요로 했다. 후일 이탈리아는 마셜 플랜에 가맹했다.³⁰

1948년 4월 이탈리아의 선거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이탈리아의 정치 과정에 개입했다. 미국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을 활용하며, 이탈리아에 있는 친족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협을 호소하게 했고, 공산당 후보자에 대한 공작을 실시했다. 이는 1947년 CIA 창설 아래 최초의 대규모 비밀공작이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던 교황 비오 12세(Pius XII)는 이탈리아 국민에게 반기독교 정당(Anti-Christian party)을 지지하면 배신자라고 호소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민주당이 승리했고, 이탈리아 유권자는 좌파

28 토니 주트 지음, 조행복 옮김, 2019, 『전후 유럽 1945~2005. 1』, 열린책들, 242~245쪽.

29 데니스 하트 지음, 엄영래 옮김, 2021, 「동유럽 공산주의 역사: 1848년에서 1989년까지」, 데니스 하트 외, 『동유럽 공산주의 역사』, 인문과학양, 26쪽.

30 이선필, 2006, 『유럽통합: 이상과 현실: 데 가스페리의 유럽주의와 외교정책』, 높이깊이, 35~36쪽.

와 멀어졌다.³¹ 물론 이탈리아에는 여전히 좌파 세력이 존재했다.³² 그럼에도 이탈리아는 미국이 정치적·경제적 재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파시스트의 시대가 있었지만, 원래 이탈리아에는 의회주의, 정당 정치의 역사가 있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이탈리아와 같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민주적 국가와의 연계였다.³³ 이탈리아는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고, 서유럽의 일원으로서 1949년에 발족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지탱하게 된 주요 국가가 되었다. 데 가스페리를 중심으로 한 전후 이탈리아 외교는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를 축으로 했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는 대서양주의에 경도했다고 할 수 있다.³⁴ 유럽의 분단으로 형성된 서유럽 세력권은 대서양 방향에 있는 미국의 후원을 필요로 했다.

31 Odd Arne Westad, 2017, *The Cold War: A World History*, Basic Books, pp. 113~114; Ian Kershaw, 2015, *To Hell and Back: Europe, 1914-1949*, Allen Lane, p. 501.

32 파시스트 정권에서 탄압된 이탈리아 공산당은 반파시스트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 지도자 톨리아티(Palmiro Togliatti)는 1944년에 폭력혁명을 거부했고, 바돌리오 정권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른바 ‘살레르노의 전환’은 소련과 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였지만, 소련은 지속적으로 이탈리아 공산당에 자금을 제공했고, 이 데올로기적인 관계성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Silvio Pons, 2001, “Stalin, Togliatti,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Europe,” *Journal of Cold War Studies* 3(2).

33 James Edward Miller, 1986, *The United States and Italy, 1940-1950: The Politics of Diplomacy and Stabiliz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p. 3~7.

34 이선필, 2006, 앞의 책, 179쪽. 데 가스페리는 대서양주의자였지만, 이는 미국의 반공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민주당의 지속적인 정치권력 유지를 위해 공산당의 존재가 오히려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안보적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장문석, 2016, 「극동의 시대, 중도의 정치: 데 가스페리」, 안병역 외, 『유럽의 변혁적 리더들』, 인간사랑, 173~174쪽.

IV. 이탈리아평화조약에 따른 전쟁과 식민 문제

1946년 7월 29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동유럽 추축국과 20개의 연합국은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했다. 평화조약은 이 평화회의를 통해 완성한 것이 아니라, 참가국들 간에서 나온 권고들(recommendations)을 경청하여 평화조약에 반영시키는 것이었다. 번스는 파리평화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소련의 마찰을 암시적으로 말하면서도 “평화와 관용(peace and toleranc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아니라, 유럽의 안정을 위해 “평화의 길(the paths of peace)”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11월 뉴욕에서 외교장관위원회는 유럽의 추축국에 대한 최종 평화조약을 완성했다. 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쟁 중, 추축국의 공격을 받은 국가들은 최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소련의 주장과 추축국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평화조약에 임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충돌했다. 이탈리아에 대한 배상은 복잡했지만, 이탈리아평화조약에 규정된 배상 방식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배상 방식에도 채용되었다. 즉, 이탈리아로부터 배상을 받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평화조약의 완성으로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는 주권국가(sovvereign states)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고, 국제연합 가맹국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³⁶ 평화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한 국가는 다음 단계로서 국제연합에 가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항복 이후 미국과 이탈리아의 관계는 양호했고, 평화조약을 위해 배상 문제를 포함한 청구권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미국은 배상으로 이탈

35 Avalon Project: Yale University Library, “Paris Peace Conference, July 29 to October 15, 1946.”

36 Avalon Project: Yale University Library, “Third Meeting of the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New York.”

리아의 재건이 지체되지 않도록 부담의 경감을 목표로 했다.³⁷ 그러나 소련은 이탈리아에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탈리아에 대한 배상 면제는 실패했다는 것이다.³⁸ 소련의 이탈리아에 대한 1억 달러 배상 요구는 관철되었다. 1947년 2월 10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에 대한 평화조약이 서명되고, 9월에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전쟁상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파리 평화조약들(Paris Peace Treaties)의 탄생은 강대국 간의 타협적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탈리아평화조약은 전문과 본문 11부 전 90조, 아울러 1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었다. 조약 전문(前文)은 이탈리아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파시스트 정권(Fascist Regime)하에서의 이탈리아는 독일 및 일본과 삼국동맹의 당사국이었고, 침략전쟁을 기도(企圖)”함으로써 “연합국과의 전쟁상태(state of war)를 일으켰고,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합국의 승리에는 “이탈리아인들의 민주적 요소(democratic elements)에 따른 도움”으로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졌다고 했다. 독일에 선전포고한 민주적 이탈리아는 연합국의 “공동참전국”이었다는 것이다.³⁹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핀란드에 대한 평화조약의 전문은 거의 동일했지만, 이탈리아평화조약의 전문은 민주성이나 공동참전국이라는 용어로 이탈리아의 복잡한 성격을 내세웠다. 이러한 이탈리아평화조약에 내재된 ‘전쟁과 식민지’ 문제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이 지적할

37 Walter Sterling Surrey, 1951, “Problems of the Italian Peace Treaty: Analysis of Claims Provisions and Description of Enforcement,”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16(3), p. 436.

38 제임스 번즈 지음, 黃鎭南·申基彦 共譯, 1948, 『美소 外交秘史: 포츠담 얄타 모스크바 會談에 關한 率直한 나의 告白』, 乙酉文化社, 40~46쪽.

39 이탈리아평화조약의 정본(authentic)은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이다(제90조). 이하 평화조약 조문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참고했다. U.S. Naval War College, “International Law Studies—Volume 45: International Low Documents,” <https://digital-commons.usnwc.edu/ils/vol45/iss1/30/>; 外務省條約局 譯, 1947, 『イタリア平和條約』, 交友社.

수 있다.

첫째, 전쟁과 배상 문제이다. 이탈리아평화조약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었던 소련에 1억 달러, 그리스에 1억 500만 달러, 유고슬라비아에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알바니아에 500만 달러, 에티오피아에 2,500만 달러를 지불한다(제74조). 이탈리아는 알바니아 및 에티오피아의 “주권 및 독립을 승인하여 존중함”을 준수해야 한다(제27조 및 제33조).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는 국제연맹 가맹국이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점에서 연합국이 아니었다. 이탈리아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교전국은 물론 대전 이전에 무솔리니 정권이 수행한 침략행위에도 무게를 두었다. 1935년 10월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에 침공했고, 1936년 5월에는 전토를 점령했다. 이탈리아평화조약 제35조에 따르면 “1935년 10월 3일 이후부터”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에 대해 실시한 “모든 조치”는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알바니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는 “1939년 4월 7일” 알바니아에 대한 “침략의 결과” 또는 “이날 이전(before that date)”에 알바니아와 체결한 조약 등으로 획득한 알바니아 내의 이익 등에 관한 “모든 청구권(all claims)”을 포기하게 되었다(제29조).⁴⁰

이탈리아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기준점인 1939년 9월 1일이라는 날짜를 중시했다. 그렇지만 알바니아와 에티오피아를 둘러싼 조문 내용의 시사점은 이들에 대한 이탈리아의 침략 날짜를 명시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간주되는 1939년 9월보다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탈리아평화조약은 이탈리아의 전쟁행위가 제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탈리아가 침략한 주권국가들에도 적용시켰다.

둘째, 식민지와 배상 문제이다. 이탈리아평화조약의 효력은 19세기 말부터

40 역사적으로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와 적대관계였지만, 알바니아는 1930년대 이전부터 이탈리아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다. Besnik Pula, 2008, “Becoming Citizens of Empire: Albanian Nationalism and Fascist Empire, 1939–1943,” *Theory and Society* 37(6), pp. 577~579.

20세기 초에 형성된 이탈리아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해체시켰다. 이탈리아평화조약에서 식민 문제는 제2부 “정치조항(Political Clauses)” 4장 “이탈리아의 식민지(Italian Colonies)”에 규정되었다. 이탈리아는 리비아, 에리트레아, 이탈리아령 소말리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제23조). 이탈리아평화조약은 이러한 식민지가 언제부터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1911년부터 리비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1934년 리비아를 완전히 식민지화했다. 에리트레아는 1881년, 소말리아 남부는 1908년에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탈리아평화조약은 전쟁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식민지 보유까지 거슬러 올라가 식민지를 해방시켰다. 그러나 이탈리아평화조약이 리비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제연맹 가맹국이 아닌 비(非)주권국가였기 때문에 배상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더구나 1945년에 채택된 국제연합헌장 제12장 75~85조는 국제신탁통치제도(International Trusteeship System)를 규정했다. 적국조항이기도 한 국제연합헌장 제77조는 신탁통치제가 실시되는 범주 지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다) 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그 제도에 주는 지역이다.⁴¹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소말리아는 연합국의 적국이었던 이탈리아에서 분리했기 때문에 위임통치하에 놓일 가능성은 있었으나, 문제는 소말리아를 식민지로 취급해왔던 패전국 이탈리아가 다시 신탁을 통한 시정권자(施政權者)가 되었다는 점이다.⁴²

41 외교부 국제법률국, 2016,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부 국제법률국, 30쪽.

42 과거 국제연맹 시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후, 1935년 8월 영국과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회의를 가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평화적 제안으로서 이탈리아와 함께 에티오피아의 공동 위임통치 실시를 제안했으나, 무솔리니는 거절했다. 12월 영국과 프랑스는 또다시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일부 병합을 인정하는 호어-라발협정(Hoare-Laval Pact)을 계획했으나, 이는 영국 여론의 비판을 받아 무산되었다. 김용구, 2006, 『세계의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탈리아는 평화조약을 통해 국경 변경, 영토 상실, 배상 지불, 군비 제한 등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 식민지 상실을 비롯하여 이탈리아평화조약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데 가스페리는 이탈리아가 파시즘이라는 “강요된 체제”와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평화조약이 이탈리아의 인구 문제를 압박하며, 국가 운영에 치명적이라고 비판했다.⁴³ 그럼에도 데 가스페리는 앞서 본 것처럼 이탈리아의 정치체제를 공고화했다.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평화조약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있었지만, 공동참전국이 아니었다면 더욱 가혹한 평화조약이 부여될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동참전국으로서의 공헌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은 공산주의자 톨리아티, 파시즘을 비판한 자유주의 지식인 크로체(Benedetto Croce), 전 군인들까지 공유한 인식이기도 했다.⁴⁴

다만 이탈리아는 1947년 평화조약에 규정된 배상 규정만 이행한 것이 아니었다. 에티오피아는 평화조약에 규정된 배상 금액에 불만이 있었고, 독자적인 책정으로 이탈리아에 3억 2,600만 리라의 배상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10여 년에 걸쳐 양국은 협상했고, 결국 1956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에 150억 리라 지급으로 합의했다.⁴⁵ 한편, 1943년부터 연합국 점령하에 있었고

741~742쪽.

43 伊藤カンナ, 2015, 「イタリアの戦後賠償」, 『法政論集』 260號, 218쪽. 전후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정권 이전에 획득한 해외 식민지를 통해 유럽과 지중해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했고, 이에 따른 국제적 역할의 재건을 목표로 삼았다. 여전히 이탈리아는 그러한 지역들이 이탈리아 남부의 과잉노동력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선희, 2006, 「전후 이탈리아 외교정책에서 지중해정책의 의미와 역할(1945-1959)」, 『지중해지역연구』 제8권 1호, 308쪽.

44 Filippo Focardi, 2013, *Il cattivo tedesco e il bravo italiano: la rimozione delle colpe della Seconda Guerra mondiale*, Laterza, pp. 72~74; 飯田芳弘, 2018, 『忘却するヨーロッパ: 内戦と獨裁の過去を前に』, 東京大學出版會, 110쪽에서 재인용.

45 Angrelo Del Boca, 2003, “The Myths, Suppressions, Denials, and defaults of Italian Colonialism,” Patrizia Palumbo, *A Place in the Sun: Africa in Italian Colonial Culture from Post-Unification to the Pres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21; 장문석, 2015, 「식민주의 과거, 예외화하거나 왜소화

1951년 독립한 리비아는 이탈리아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리비아와 전쟁상태가 아니었으며, 리비아가 이탈리아의 일부였다고 이를 거부했다. 또한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구식민지에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1956년 4월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48억 1,250만 리라를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런데 양국 합의문에서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식민지시대의 손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리비아에게 요구했다. 이탈리아가 리비아에 지불한 금액의 명목은 ‘리비아의 경제 부흥을 위한 기여금(contribution to the economic reconstruction of Libya)’이었다.⁴⁶

V. 이탈리아의 항시적 전후 관념과 변화

1948년 1월 1일에 시행된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은 노동을 기반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제1조). 그리고 “해산된 파시스트당의 재건은 어떤 형태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경과 및 최종규정 12조). 제헌의회에 모인 세력들은 기독교민주당을 필두로 사회당, 공산당, 국민민주연합 등 다양했는데, 이들은 이데올로기가 달랐음에도 파시스트와 맞선 국민해방위원회에 참여한 세력이었다. 이탈리아 헌법의 특징은 각 세력들 간을 연계시킨 반파시즘에 있었다.⁴⁷ 이는 이탈리아의 대내외적 정당성이기도 했다.

하기: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식민지들, 『역사비평』 111호, 76쪽.

46 Angrelo Del Boca, 2003, 위의 책, p. 26; 장문석, 2015, 위의 글, 82~83쪽.

47 Giuseppe Martinico, Barbara Guastafarro and Oreste Pollicino, 2019, “The Constitution of Italy: Axiological Continuity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of Governance?,” in Anneli Albi, Samo Bardutzky eds., *National Constitutions in European and Global Governance: Democracy, Rights, the Rule of Law*, The Hague, T.M.C. Asser Press, p. 495.

그러나 1943년 이후, 이탈리아의 역사에서 반파시스트 저항운동과 대(對) 독일 협력이라는 이분법적 구별은 쉽지 않다. 인원수의 면에서 저항운동자들이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넘어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였다. 무솔리니의 시대에 파시즘 체제에 도전한 저항운동 세력은 크지 않았고, 활동적인 반파시스트들은 망명 중이었다. 1943~1945년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저항운동은 고조했지만, 상당수의 이탈리아인은 실각된 무솔리니를 정상으로 한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살로 공화국)에 참여함으로써 독일에 협력했다. 독일군이 이탈리아 북부지역을 점령했을 때, 일부 이탈리아인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독일군에 물자지원을 했다. 바돌리오 정권이 민주성을 강조했지만, 이 반파시스트 정부는 많은 파시스트 출신들로 구성되었다.⁴⁸

이탈리아는 자주적으로 1944년 7월 파시즘제재고등위원회(High Commission for Sanctions against Fascism)를 설치했고, 1945년 5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890건의 파시스트 범죄재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 36명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실제로 2명이 처형되었다. 공직 추방은 1944년 2월부터 1945년 6월까지 행해졌다. 이때 공직 추방된 인원수는 3만 5,000명에 이르렀지만, 대부분 파시즘의 주요 핵심 요원이 아니었고, 2,553명이 파면되었다. 데 가스페리는 공직 추방을 정지했고, 1946년 3월 파시즘제재고등위원회는 폐지되었다. 6월에는 국민투표로 군주제 폐지가 결정되었는데, 이탈리아의 정체가 공화국으로 결정되자 해외에 추방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파시스트들에 대해 사면이 내려졌다.⁴⁹ 데 가스페리는 파시스트에 대한 숙청이 오히려 이탈리아의 분열을 심화시

48 토니 주트 지음, 조형복 옮김, 2019, 앞의 책, 102~111쪽.

49 松本佐保, 2015, 「イタリアの戦後處理：半世紀も封印された戦争犯罪の記憶」, 『外交』 29, 43쪽. 도메니코(Roy Palmer Domenico)는 파시스트를 평가하기 위해 사상으로서의 '파시즘'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했다. 첫째, 당대 이데올로기, 정당,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파시즘과 그 유산이다. 무솔리니나 파시스트 지식인들을 신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둘째, 국가와 사회에 있었던 파시즘의 존재양식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많은 사람이 파시즘으로부터 혜택을 얻었다. 그러나 전후 이탈리아는 이들을 성찰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민주주의는 파

키고, 국가 주요기관에서 파시스트를 제거할 경우, 그 간격에서 좌파 세력이 대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후 이탈리아의 각종 법체계에는 과거 파시스트 법이 잔존하거나, 파시스트 경험자들이 법을 집행하기도 했다.⁵⁰ 이탈리아에는 자국보다 독일에 범죄성과 전쟁책임이 있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 독일이나 파시스트의 억압을 받았다는 이탈리아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victimhood nationalism)이다.⁵¹

이탈리아에 대해 연합국에 의한 군사재판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 문제에 대한 법적 차이에 기인했는데, 특히 미국은 재판에 따라 이탈리아의 국민감정 고양과 재판 실시에 의한 좌파세력의 대두를 경계했다. 이러한 재판의 상실은 이탈리아의 공적 기억과 집단적 정체성에 영향을 끼쳤다. 즉, “집단적 기억상실(collective amnesia)”이 생겼다는 것이다.⁵² 물론 파시스트들에 대한 제재나 재판은 파시즘제고등위원회를 통해 일부 실시되었지만, ‘파시즘’ 사상을 재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저항운동 속에서 이루어진 파시스트들에 대한 잔혹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게 되었다.⁵³

1945년 직후부터 이탈리아 지식인, 특히 반파시스트 역사가들이 “저항의 신화”에 무게를 두고 이를 강조한 것은 오히려 파시스트의 행위에 대한 규명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신화화된 반파시스트를 성찰하는 “반-반파

시즘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Roy Palmer Domenico, 1991, *Italian Fascists on Trial, 1943-1948*,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p. 221.

50 엘버트 S. 린드먼 지음, 장문석 옮김, 2017, 『현대 유럽의 역사』, 삼천리, 769~770쪽.

51 임지현, 2021,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휴머니스트, 301~302쪽.

52 Michele Battini, 2007, *The Missing Italian Nuremberg: Cultural Amnesia and Postwar Politics*, Palgrave Macmillan, p. 15.

53 Roy Palmer Domenico, 1991, 앞의 책, pp. 1~10.

시트의 주장들(Anti-Anti-Fascist claims)”은 논의되지 못했다.⁵⁴ 또한 1948년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반파시즘보다 반공주의가 이탈리아의 중심 이념이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냉전 초기 이탈리아의 선택에는 반공주의가 작용되었다. 그 런데 저항운동의 정당성은 냉전기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역사교과서, 공적 의 례, 정치적 논의들을 통해 1960년대 이후에는 더욱더 강화되었다.⁵⁵

과거 이탈리아의 참혹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 작했다. 1991년에 출간된 이탈리아 역사학자 파보네(Claudio Pavone)의 『내전 (Una guerra civile)』이라는 책은 파시스트와 반파시스트 간의 전쟁, 독일에 대 한 전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좌파 세력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내전은 이데올로기적 충돌이었지만, 대다수의 이탈리아인들은 파 시스트 혹은 반파시스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⁵⁶ 당시 이탈리아 상황을 내전으 로 포착한 그의 관점은 저항운동에 중점을 둔 사회적 규범에 대해 균형적인 관 점을 제공했다. 또한 보카(Angelo Del Boca) 등이 쓴 『무솔리니의 가스(I gas di Mussolini)』는 이탈리아가 전쟁에서 사용한 화학무기의 실상을 밝혔다.⁵⁷ 정치 권에서는 보수적 기독교민주당 체제의 종식 후, 1996년 2월 중도 좌파 세력이 중심이었던 디니(Lamberto Dini) 정권이 1935년 에티오피아 전쟁에서 독가스 를 사용한 것을 처음으로 정부 수준에서 인정했다.

식민 문제는 앞서 본 것처럼 1990년대 과거 이탈리아가 수행한 전쟁의 참혹 행위와 더불어 검증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에서 식민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던

54 R. J. B. Bosworth and Patrizia Dogliani eds., 1999, *Italian Fascism: History, Memory and Representation*, MacMillan, p. 6.

55 Paolo Pezzino, 2005, “The Italian Resistance between History and Memory,” *Journal of Modern Italian Studies* 10(4), pp. 396~397.

56 Claudio Pavone; translated by Peter Levy with the assistance of David Broder;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Stanislao G. Pugliese, 2013, *A Civil War: A History of the Italian Resistance*, Verso.

57 アンジェロ・デロ・ボカ 編著, 高橋武智 日本語版監修, 2000, 『ムッソリーニの毒ガス: 植民地戦争におけるイタリアの化学戦』, 大月書店.

이유는 국내 식민 문제 관련 기록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이탈리아가 지배한 지역의 탈식민주의 비평가들(postcolonial critics)이 이탈리아어로 식민 문제를 언급하지 못했다는 것도 요인의 하나였다.⁵⁸ 이탈리아 식민지를 둘러싸고 종주국과 구식민지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008년 8월 이탈리아 수상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리비아 최고 지도자 카다피(Muammar Gaddafi)와 뱅가지(Benghazi)에서 회담을 가지고 ‘리비아와 이탈리아 간의 우호, 파트너십, 협력에 관한 조약(Treaty on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Libya and Italy; 이하 뱅가지조약)’을 체결했다.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대한 식민 지배를 사과하며 보상했고, 리비아의 기반 시설(infrastructure) 정비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었다. 베를루스코니는 리비아에 대한 과거 식민 문제에 대해 “이탈리아 국민의 이름”과 “정부 수반”으로서 “사과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뱅가지조약을 통해 이탈리아는 리비아에서의 이민을 제한할 수 있고, 리비아에 대한 기반 시설을 통한 사업이나 석유 및 가스 공급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탈리아어와 아랍어를 정문으로 구성된 뱅가지조약 전문은 “이탈리아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리비아에 준 고통”을 명시했다. 뱅가지조약은 주로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연합헌장 내용을 계승한 일반 원칙을 내세웠고, 주권 평등, 무력 사용 및 위협의 금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을 규정했다. 물론 조약 체결 이후, 양국의 행동 의지, 리비아의 권위주의 체제, 이민 문제 등의 실행 과제가 있지만, 식민지 문제에 중지부를 찍었다고 한다.⁵⁹ 뱅가지조약에는 배상(reparations)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식민 문제에 대한 이탈리아의 성찰과 사

58 Patrizia Palumbo, 2003, “Introduction: Italian Colonial Cultures,” in Patrizia Palumbo ed., *A Place in the Sun: Africa in Italian Colonial Culture from Post-Unification to the Pres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1.

59 Natalino Ronzitti, 2009, “The Treaty on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Italy and Libya: New Prospects for Cooperation in the Mediterranean?,” *Bulletin of Italian Politics* 1(1).

과가 기초에 있다는 측면에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를 배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⁶⁰ 상호 국익과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양국의 진전은 종주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넘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되었다.⁶¹ 리비아 식민 문제는 이탈리아 평화조약에서 미흡했지만, 결국 2008년 뱅가지조약은 1947년 평화조약을 보완한 양자조약이었다.

VI. 맺음말: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탈리아와 한일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은 한일관계에 대한 성찰을 위해 이탈리아를 주목했다. 이 글은 중점적으로 이탈리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탈리아의 전후 역학이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제적 조건으로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상황을 보아야 한다. 1947년 이탈리아평화조약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대 강대국이 서명했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소련을 비롯하여 공산진영이 서명하지 않았다. 이를 냉전의 심화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까? 모든 역사적·정치적 현상에는 시간 논리(temporal logic)가 당연히 수반되지만, 추가 설명이 요구된다. 소련이 처음부터 이탈리아평화조약 작성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동부전선 등, 유럽 전쟁에서 소련의 공헌이 컸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은 동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성공했다. 유럽에서 소련의 세력권은 이렇게

60 Christopher Emsden, 2011, "Italy's 'Unusual' Friendship Treaty With Libya," *The Wall Street Journal* (Feb. 25).

61 Mustafa Abdalla A. Kashiem, 2010, "The Treaty of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Libya and Italy: From an Awkward Past to a Promising Equal Partnership," *California Italian Studies* 1(1); 이장희, 2012, 「리비아·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책임 사례의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 외,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 :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부각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련이 동아시아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다.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경흥을 탈취했으며, 12일에는 옹기와 나진에 상륙했다.⁶² 소련군은 한반도 북쪽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편 일본의 항복에는 공산주의 소련의 참전에 대한 일본의 공포심이 작용했으나,⁶³ 1941년부터 일본과 맞선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전후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은 미국이 주도했다. 이탈리아평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차이는 냉전의 시간적 편차와 더불어 미·소 강대국의 유럽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상황 관여도(situation involvement)를 총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탈리아의 전쟁과 식민 문제를 볼 때,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 형태와 리비아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923년 국제연맹에 가맹한 에티오피아는 주권 국가였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에 의해 1936년부터 1941년까지 병합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식민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권국가였던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에 의한 점령(Italian occupation) 지역이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평화조약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리비아 형태는 다르다. 파시스트 정권 이전에 자유주의적 제국이었던 이탈리아는 1911년 리비아에 침공했고, 식민지로서 1943년까지 통치했다. 리비아는 베르사유평화체제 탄생 이전부터 식민지였고, 이 체제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추인했다. 국제연맹이 없던 시기에 리비아는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식민지가 되었다. 이탈리아평화조약은 전쟁으로 생긴 피해를 고려했고, 식민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들은 타당하다. 다만 1919년에 창립된 국제연맹 가맹국 여부, 그리고 주권국가인지가 중요했다.⁶⁴

62 이완범, 2007, 『한국해방 3년사: 1945-1948』, 태학사, 107쪽.

63 하세가와 쓰요시 지음, 한승동 옮김, 2019, 『종전의 설계자들: 1945년 스탈린과 트루먼, 그리고 일본의 항복』, 메디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2조 (a)에는 코리아(朝鮮), 이른바 한반도의 “독립” 조문이 규정되었는데, 이는 리비아 형태에 해당된다. 리비아와 마찬가지로 1919년 이전에 주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통해 언제부터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는지, ‘시점’이 규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되었듯이 일본은 “특별한 합의의 대상(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으로서 한국과 ‘청구권’에 관해 교섭하게 되었다. 한일관계의 갈등 기원은 적어도 1910년 한국병합조약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셋째, 이탈리아평화조약 및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식민 문제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연합국과 패전국 이탈리아 및 일본의 식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비판할 수 있지만, 결국 이는 당시의 국제적 시대정신(Zeitgeist)이며 표준이었다. 1919년 국제연맹 및 1945년 국제연합 창립은 20세기 국제주의의 진화로 볼 수 있지만, 1945년 이후에도 여전히 “제국주의적 국제주의(Imperial Internationalism)”가 온존되었다.⁶⁵ 이탈리아와 일본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두 평화조약에는 국제연합헌장과 관련된 조문들이 규정되었는데, 이는 두 평화조약의 배경적 국제조약이 국제연합헌장이었기 때문이다. 1945년이라는 시점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했다는 측면에서 큰 전환점이었지만, 국제연합의 식민 문제에 대한 인식 결여는 적어도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⁶⁶

패전국의 식민지가 해방된다는 것은 한반도가 증명한다. 사실 국제연합헌장에는 패전국의 식민지와 신탁통치의 관계성이 규정되었다. 1945년 한반도에 서는 이미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실존하고 있었고, 남한에서는 반탁운동이 일어

64 국제연맹규약 제10조는 집단안보체제를 규정했는데, 국제연맹 가맹국에게는 “영토적 보전(territorial integrity)”과 “정치적 독립(political independence)”이 보장된다는 문구가 있다.

65 Mark Mazower, 2009, 앞의 책, pp. 23~24.

66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는 ‘식민지독립부여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을 채택했다. 찬성 89, 반대 0, 기권 9였는데, 기권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도미니카 공화국이었다.

나기도 했다. 패전의 결과 주권이 정지되어 있던 일본은 결국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주권을 회복했지만, 중요한 점은 일본에 앞서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를 통해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승인을 얻었다는 것이다. “배상의 세계사”에서 원래 배상 요구는 전쟁 문제에 수반한 것이었다.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배상은 “희생과 회복”을 내세웠는데, 이는 배상의 세계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⁶⁷ 비록 한국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계적 식민주의 구조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 제기였다.

넷째, 평화조약에서 취약한 부분은 개별적 양자조약으로 보완할 수 있고, 이는 식민 문제에도 해당된다. 이탈리아평화조약 및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전쟁 문제에 집중했고, 식민 문제를 중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평화조약 자체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는 국제조약이며, 식민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1950년대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대해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경제 원조를 실시했으나, 식민 지배와 연계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이탈리아는 정식으로 식민 지배에 관해 사과했다. 이탈리아가 지불한 금액은 리비아의 기반 시설에 투입하는 형태였지만, 이는 배상과 같은 성격으로 평가되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서명국이 아니었던 한국은 한일교섭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청구권’의 성격을 두고 일본과 상충했다.⁶⁸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조약들 중에서 여전히 ‘청구권협정’은 논쟁적이다.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금액에 대해 당시 일본은 배상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건설”을 명목으로 했고, 한국은 이를 “채무지불의 성격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배상과 같은 것”으로 국내에서 설명한

67 오오타 오사무 지음,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옮김, 2003,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 선인, 77~78쪽.

68 남기정, 202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3호.

바 있다.⁶⁹ 14년간에 걸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결과는 이른바 ‘1965년 체제’로 불리는데, 이는 당대 안보와 경제 논리로 성립된 것이었다. 청구권협정에서도 한일 간의 식민 문제는 인식되면서도 타협으로 귀결했다. 한일 간에서는 2008년 이탈리아와 리비아 간에서 실시된 것처럼 물질적 배상과 관념적 화해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섯째, 항식적 관념의 변화이다. 이탈리아는 패전국으로서 평화조약에 서명했지만, 저항운동의 역사적 사실은 전후 이탈리아의 관념에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가미되었다. 과거에 대한 망각 또는 침묵은 전후 이탈리아의 특징이었지만, 이는 전후 이탈리아의 회복에 관건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공고화와 다원적 정치체제의 등장에 따라 과거 전쟁 및 식민 문제를 둘러싼 피해자들의 주장이 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국가 간의 국제적 상호 의존 관계의 심화는 오히려 자국 정부에 대한 호소와 수단을 가능케 했다. 즉, 역사적 정의 체제(historical justice regime)를 정당화시켰다.⁷⁰ 이탈리아는 저항운동의 역사를 전통적 견해로 삼았지만, 이에 반박한 주장들이 탈냉전기에 주로 표출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쟁과 식민 통치의 참혹성에 관한 연구 및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와 탈냉전은 봉인된 역사적 진실과 이에 따른 역사인식의 분출로 이어졌다. 이탈리아에 앞서 일본에서는 1993년 11월 식민지 지배에 대해 총리가 사과했고, 1994년 이후에도 관련 담론이 있었다. 특히 1998년 10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상호 인정의 결과였다. 한일 정치

69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288~289쪽. 1965년 이후부터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역사적·법적 논리, 양국의 주장 경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물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원덕, 2019,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재조명: 한일회담, 문서 공개와 입법처리, 대법원 판결 이후」,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편, 『한일협정과 한일관계: 1965년 체제는 극복 가능한가?』, 동북아역사재단, 388~392쪽.

70 Thomas U. Berger, 2012, *War, Guilt, and World Politics after World War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6, p. 166.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은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대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한국은 일본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⁷¹ 비록 양 정부는 1910년 한국병합조약의 법적 문제에 관해 상충하지만,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실체성에 관해서는 일치했다.⁷² 1965년 한일협정은 식민 문제의 책임 소재를 불문으로 함으로써 국교를 수립했지만, 이탈리아-리비아에 앞서 한일관계에서는 1990년대부터 식민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0년대부터는 한일관계는 급격하게 악화 추세를 보였다. 한일관계에서는 국가수반의 사과 담론이나 관념적 상호 인정이 있어도 식민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금전 배상이 없으면 한일관계의 안정성은 지속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제공하게 된다.

여섯째, 유럽-아프리카라는 대륙 간의 역사와 동아시아 역내 한일관계라는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국이며 패전국으로서의 이탈리아와 일본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아프리카 지역과 한국의 비교에 관해서는 타당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탈리아와 일본은 제국, 패전, 평화조약이라는 유사성으로 비교 가능하지만,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와 한국의 역사를 비교한다면, ‘비교 단위들(units of comparison)’을 찾아야 한다. 피지배자였다는 논리만으로 단위를 설정한다면, 제국사(帝國史)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프리카 지역

71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전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72 이 선언문 작성에 관련한 실무자들에 의하면, 김대중 정권 탄생을 계기로 먼저 일본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방일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에 관한 초보적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며 반성을 나타내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조세영, 2018, 「김대중-오블이 공동선언의 탄생 과정과 그 의의」, 『EAI 이슈브리핑』.

의 국가와 한국의 주체적 반제국사(反帝國史)를 둘러싼 공통성과 상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제주의의 진보적 확산은 망각이나 봉인 혹은 침묵된 과거의 문제를 회생시켰다. 20세기 중반과 후반의 차이는 어떤 포괄적인 영역이 인간의 관념적 변화와 인지적 발전에 따라 인권에 대한 성찰, 여성 문제,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등 영역의 세분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탈리아 중심의 사례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관계 진전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아프리카 측의 목소리는 한정적이며, 세분화된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⁷³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간의 권력관계는 여전하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한일관계에서 한국의 주장은 선명하다. 한일 간에 있는 상대적 힘의 균형은 상충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균형은 상호 이해에 의한 조절이 가능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73 이탈리아 식민주의와 ‘젠더 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관해서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경험 관련 연구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小田原琳, 2016, 「『平和の犯罪』としての戦時・植民地主義ジェンダー暴力: イタリア歴史學における研究動向」, 『ジェンダー史學』第12號.

참고문헌

단행본

- 김남국 외, 2019,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 협력: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수립에 대한 합의』, 이학사.
- 김용구, 2006,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데니스 하트 지음, 엄영래 옮김, 2021, 『동유럽 공산주의 역사: 1848년에서 1989년까지』, 데니스 하트 외, 『동유럽 공산주의 역사』, 인문과교양.
- 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이종인 옮김, 2014, 『공산주의의 역사』, 을유문화사.
- 마크 마조워 지음, 김준형 옮김, 2009, 『암흑의 대륙: 20세기 유럽 현대사』, 후마니타스.
- 베니토 무솔리니 지음, 김진언 옮김, 2015, 『나의 자서전: 독재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玄人.
- 앨버트 S. 린드먼 지음, 장문석 옮김, 2017, 『현대 유럽의 역사』, 삼천리.
- 오오타 오사무 지음, 송병권·박상현·오미정 옮김, 2003,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 선인.
- 외교부 국제법률국 편, 2016,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부 국제법률국.
- 이근관, 200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대이탈리아 강화조약의 비교연구: 이른바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김부자 외,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이선필, 2006, 『유럽통합: 이상과 현실: 데 가스페리의 유럽주의와 외교정책』, 높이깊이.
- 이완범, 2007, 『한국해방 3년사: 1945-1948』, 태학사.
-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9,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재조명: 한일회담, 문서 공개와 입법 처리, 대법원 판결 이후」,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편, 『한일협정과 한일관계: 1965년 체제는 극복 가능한가?』, 동북아역사재단.
- 이장희, 2012, 「리비아·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책임 사례의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 외,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의 재조명』, 동

북아역사재단.

임지현, 2021,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휴머니스트.
장문석, 2016, 「극동의 시대, 중도의 정치: 테 가스페리」, 안병익 외, 『유럽의 변혁적 리더들』, 인간사랑.

제임스 번즈 지음, 黃鎭南·申基彦 共譯, 1948, 『美소 外交秘史: 포츠담 알타 모스크바 會談에 關한 率直한 나의 告白』, 乙酉文化社.

존 키진 지음, 류한수 옮김, 2016, 『2차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토니 주트 지음, 조행복 옮김, 2019, 『전후 유럽 1945~2005. 1』, 열린책들.

하세가와 쓰요시 지음, 한승동 옮김, 2019, 『종전의 설계자들: 1945년 스탈린과 트루먼, 그리고 일본의 항복』, 메디치.

飯田芳弘, 2018, 『忘却するヨーロッパ: 内戦と獨裁の過去を前に』, 東京大學出版會.
ボカ, アンジェロ・デロ 編著, 高橋武智 日本語版 監修, 2000, 『ムッソリーニの毒ガス: 植民地戦争におけるイタリアの化學戦』, 大月書店.

外務省條約局 譯, 1947, 『イタリア平和條約』, 交友社.

Baer, George W., 1976, *Test Case: Italy, Ethiopia and the League of Nations*, Hoover Institution Press.

Battini, Michele, 2007, *The Missing Italian Nuremberg: Cultural Amnesia and Postwar Politics*, Palgrave Macmillan.

Berger, Thomas U., 2012, *War, Guilt, and World Politics after World War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sworth, R. J. B. and Patrizia Dogliani eds., 1999, *Italian Fascism: History, Memory and Representation*, Basingstoke: MacMillan.

Domenico, Roy Palmer, 1991, *Italian Fascists on Trial, 1943-1948*,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Kershaw, Ian, 2015, *To Hell and Back: Europe, 1914-1949*, Allen Lane.

Mazower, Mark, 2009, *No Enchanted Palace: The End of Empire and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United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Mee, Charles L., 1975, *Meeting at Potsdam*, M. Evans.

Miller, James Edward, 1986, *The United States and Italy, 1940-1950: The Politics of Diplomacy and Stabiliz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avone, Claudio; translated by Peter Levy with the assistance of David Broder;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Stanislao G. Pugliese, 2013, *A Civil War: A History of the Italian Resistance*, Verso.

Truman, Harry S., 1955, *Memoirs: Year of Decisions*, vol. 1., Doubleday.

Weinberg, Gerhard, 2014, *World War II: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Westad, Odd Arne, 2017, *The Cold War: A World History*, Basic Books.

논문

강병근, 2018,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에 관한 연구: 대일 평화조약과 대이태리 평화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법학논총』 제63권 4호.

김승배, 2019, 「반(反)베르사유: 국제적 민족자결론과 한국적 분화의 연계성」, 『국제정치논총』 제59집 2호.

남기정, 202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한일냉전의 기원으로서 ‘제4조’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3호.

오오타 오사무, 2012, 「식민지주의의 ‘공범’: 두 개의 강화조약에서 초기 한일교섭으로」, 『아세아연구』 제55권 4호.

이선필, 2006, 「전후 이탈리아 외교정책에서 지중해정책의 의미와 역할(1945-1959)」, 『지중해지역연구』 제8권 1호.

장문석, 2012, 「이탈리아의 리비아 정복과 식민지화, 1911-1943」, 『서양사론』 제113호.

_____, 2015, 「식민주의 과거, 예외화하거나 왜소화하기: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식민지들」, 『역사비평』 111호.

조세영, 2018,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탄생 과정과 그 의의」, 『EAI 이슈브리핑』,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細谷雄一, 2001, 「イギリス外交と戦後ヨーロッパ秩序の形成, 1945-50年: 大國協調體制から北大西洋條約機構へ」, 『北大法學論集』 第51卷5號.

小田原琳, 2016, 「『平和の犯罪』としての戦時・植民地主義ジェンダー暴力: イタリア

- ア歴史學における研究動向」, 『ジェンダー史學』第12號.
- 松本佐保, 2015, 「イタリアの戦後處理: 半世紀も封印された戦争犯罪の記憶」, 『外交』29.
- 伊藤カンナ, 2015, 「イタリアの戦後賠償」, 『法政論集』260號.
- Boca, Angrelo Del, 2003, "The Myths, Suppressions, Denials, and defaults of Italian Colonialism," in Patrizia Palumbo ed., *A Place in the Sun: Africa in Italian Colonial Culture from Post-Unification to the Pres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msden, Christopher, 2011, "Italy's 'Unusual' Friendship Treaty With Libya," *The Wall Street Journal*, Feb. 25.
- Kashiem, Mustafa Abdalla A., 2010, "The Treaty of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Libya and Italy: From an Awkward Past to a Promising Equal Partnership," *California Italian Studies* 1(1).
- Martinico, Giuseppe, Barbara Guastafarro, and Oreste Pollicino, 2019, "The Constitution of Italy: Axiological Continuity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of Governance?" in Anneli Albi, Samo Bardutzky eds., *National Constitutions in European and Global Governance: Democracy, Rights, the Rule of Law*, The Hague, T.M.C. Asser Press.
- Palumbo, Patrizia, 2003, "Introduction: Italian Colonial Cultures," in Patrizia Palumbo ed., *A Place in the Sun: Africa in Italian Colonial Culture from Post-Unification to the Pres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ezzino, Paolo, 2005, "The Italian Resistance between History and Memory," *Journal of Modern Italian Studies* 10(4).
- Pons, Silvio, 2001, "Stalin, Togliatti,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Europe," *Journal of Cold War Studies* 3(2).
- Pula, Besnik, 2008, "Becoming Citizens of Empire: Albanian Nationalism and Fascist Empire, 1939-1943," *Theory and Society* 37(6).
- Ronzitti, Natalino, 2009, "The Treaty on Friendship, Partnership and Cooperation between Italy and Libya: New Prospects for Cooperation in the

Mediterranean?” *Bulletin of Italian Politics* 1(1).

Surrey, Walter Sterling, 1951, “Problems of the Italian Peace Treaty: Analysis of Claims Provisions and Description of Enforcement,”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16(3).

기타 자료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전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Avalon Project: Yale University Library, <https://web.library.yale.edu/digital-collections/avalon-project>

Churchill, Winston S., 1946, “Sinews of Peace.” https://www.nato.int/docu/speech/1946/s460305a_e.htm

U.S. Naval War College, 1947, “Treaty of Peace Between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nd Italy, Paris, 10 February 1947.” <https://digital-commons.usnwc.edu/ils/vol45/iss1/30/>

이탈리아의 패전, 냉전, 평화조약과 관념 -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 -

김송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 한일관계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성찰을 위해 전후 이탈리아를 선례적으로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 역시 한일관계를 의식하지만, 기존연구와 달리 중점적으로 이탈리아의 전후 역학에 큰 비중을 둔다. 제2차 세계대전 추축국의 핵심이며, 파시즘의 상징이었던 이탈리아의 전후란 어떠한 것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이탈리아의 패전 형태, 유럽 냉전 초기의 입지, 이탈리아평화조약에 내재된 전쟁과 식민지 문제, 그리고 전후 이탈리아가 가지게 된 관념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패전국 이탈리아의 특수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이탈리아를 둘러싼 층위들을 반추한 후, 결론을 대신하여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를 추출한다.

주제어: 제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평화조약, 파시스트, 반파시스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ABSTRACT

Italy's Defeat, Cold War, Peace Treaty and Ideas: Implications of ROK-Japan Relations

Kim Soongbae

Although studies on Italy after World War II exist independently, postwar Italy is also an area that is noticed by researchers on ROK-Japan relations. The researchers take notice of Italy after World War II as a precedent in order to contemp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OK and Japan. This study is also conscious of ROK-Japan relations, but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Italy's postwar dynamics. This study examines the postwar dynamics of Italy, which was the core of the Axis powers in World War II and was a symbol of fascism. Concretely, this study checks the form of defeat of Italy in the war, the position of Italy in the early period of European Cold War, the war and colonial problems inherent in the Treaty of Peace with Italy, and ideas that Italy became to have after the war. After ruminating on the layers surrounding Italy as such, this study extracts the implications for ROK-Japan relations instead of conclusions.

Keywords: World War II, Treaty of Peace with Italy, fascist, anti-fascist, San Francisco Peace Treaty

‘대만인 전(前) 일본군’ 전후보상 문제

– 아이덴티티, 특별입법, 네트워크 연대

오승희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대만인 일본군 보상 문제의 역사적 배경
- III. 대만인 전 일본군 국적 문제와 조위금 지급
- IV. 대만인 전 일본군 전후보상의 특징과 한계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이 글은 대만 출신의 전 일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후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식민지 하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인’으로 군대에 징용되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전쟁범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종전 후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은급법(恩給法)이나 원호법(援護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이들은 1977년 일본 정부에 전후보상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1987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1인당 200만 엔의 조위금(弔慰金)이 지급되었다. 대만인 전 일본군에 대한 전후보상이 거절되었다가 다시 논의되고 조위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일본과 대만 관계에 대한 이해, 일본의 전후 보상의 특징, 개인 보상의 가능성 등을 논의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52년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평화조약(이후 일화평화조약), 그리고 1972년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공동성명(이후 중일국교정상화)을 통해 중일 간의 배상 문제를 모두 처리하였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 역시 아직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중일 국교정상화, 1975년 베트남전쟁 종결 등 국제 관계가 변화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과 동남아시아로 진

* 투고: 2022년 1월 12일, 심사 완료: 2022년 2월 11일, 게재 확정: 2022년 2월 16일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1-기획연구 12).

출하면서 과거 식민지 지배와 점령기 이후 남겨진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¹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에 집중 논의된 대만인 전 일본군 보상 사례는 국가 간 배상책임과 구별되는 개인 피해자 구제 문제의 주요한 쟁점과 해결 노력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으로 동원되고 비일본인으로 배제되면서 나타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침해 문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전쟁 책임만큼이나 중요한 전후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대만인 일본군에 대한 기존 연구는 한국에서 일본 전후처리의 아시아 국가들 간 비교연구의 일부로 소개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으나² 관련 후속연구로 심화되지 않았다. 이 글은 일본과 대만 관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에서의 주요 판결 자료와 정부문서,³ 대만에서의 활동 단체의 자료,⁴ 대만인 전 일본군 회고록과 인터뷰⁵ 등을 바탕으로 대만인 전 일본군 전후보상에 대한 본격

- 1 우쓰미 아이코 저, 김경남 역, 2010,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논형.
- 2 이원덕, 2007,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 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일본학연구』 22, 401~403쪽; 김창록, 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법사학연구』 35 등.
- 3 最高裁判所, 1992a, 「台灣人元日本兵戦死傷補償請求事件最高裁判決」,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856/035856_hanrei.pdf(검색일: 2022.1.10.); 最高裁判所, 1992b, 「平成4年4月28日第三小法廷判決」, 『判例時報』 1422; 東京地裁, 1982, 「昭和57年2月26日判決」, 判例時報 1032號(1982年4月21日號); 東京高裁, 1985, 「昭和60年8月26日判決」, 判例時報 1163號(1985年11月1日號); 衆議院, 1978,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に関する質問主意書」,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a.nsf/html/shitsumon/a084015.htm(검색일: 2022.1.10.) 등.
- 4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を考える會 編, 1982, 『問われている戦後に人道的解決を-台灣人元日本兵士特別援護法要綱と解説』, http://jclu.org/wp-content/uploads/2015/06/taiwanjin_tokubetsuengohoo_yoko.pdf(검색일: 2022.1.10.);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を考える會 編, 1993, 『台灣・補償・痛恨: 台灣人元日本兵戦死傷補償問題資料集合冊』, 台灣人元日本兵士の戦後補償問題を考える會.
- 5 河崎眞澄, 2003, 『還ってきた台灣人日本兵』, 文藝春秋; 河野利彦, 2020, 「棄てられた皇軍兵士たち: 台灣人元日本兵の補償問題そして高砂義勇兵」; 權田猛資, 2020, 「台灣人元日本兵の戦後補償問題-積み残された人々の願いに眞の

적인 사례 연구를 시도한다. 이 글에서 전후보상이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개인보상을 의미한다.⁶ 일본의 법적·도덕적·인도적 책임과 사죄의 의미를 담은 개인보상이나 배상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전후보상’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피해자 ‘개인’에 의한 가해 ‘국가’로의 청구라는 개념으로 특정하여 살펴본다. 이미 국가 간 전후 처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전후보상 문제가 다루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 머리말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II장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관계 속에서 대만인 일본군 보상 문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대만인 전 일본군의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과 판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IV장에서는 대만인 전 일본군 전후보상 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고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후 책임과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함의를 논한다.

II. 대만인 일본군 보상 문제의 역사적 배경

1. 일본의 대만 통치

1895년 4월 17일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하며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에 근거하여 대만과 평후제도를 할양받으면서 일본의 대만 지배 50년이 시작되었다.

「解決」を」, <https://www.nippon.com/ja/japan-topics/g00972/>(검색일: 2022.1.10.).

6 鄭樂靜, 2008, 「日本人による中國人戰後補償訴訟支援研究—強制連行・強制勞動問題を中心に—」, 『文明構造論: 京都大學大學院人間・環境學研究科現代文明論講座文明構造論分野論集』, https://repository.kulib.kyoto-u.ac.jp/dspace/bitstream/2433/89722/1/bkr00004_111.pdf(검색일: 2022.1.10.).

제2조 청국은 아래 토지의 주권 및 해당 지방의 성루(城壘)·병기 제조소 및 관청 소유물을 영원히 일본에 할여한다.

1. 아래의 경계 내에 있는 평톈 성(奉天省) 남부의 땅

...

2. 대만 전도(全島) 및 그 부속 도서(島嶼)

3. 평후 열도(澎湖列島), 즉 영국 그리니치(Greenwich) 동경 119도에서 120도와 북위 23도에서 24도 사이에 있는 여러 도서⁷

대만에서는 이에 대항하며 1895년 5월 23일 대만민주국(臺灣民主國)을 수립하고 대만 의용군이 철저한 항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대만 총독부가 같은 해 6월 17일 개칭하고 대만민주국은 10월 21일 진압당했으며, 11월 18일에 총독부는 대만 전(全) 섬을 평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총독에게는 1896년에 시행된 「대만에서 시행해야 하는 법령에 관한 법률(台灣ニ施行スヘキ法令ニ關スル法律)」에 따라 법률, 명령(율령)의 발포권과 함께 행정, 사법 전반에 걸친 권한이 부여된다. 제국의회의 ‘협찬’도 거치지 않는 입법 권한이 총독에게 주어진다.

총독 전제의 일제 강점에 대항하며 임헌당(林獻堂)을 중심으로 대만 의회 설치운동(1921년)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족적·항일적 운동이 전개되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철저히 탄압했다. 대표적으로 1930년 10월 27일 대만 산악지대인 우서지구의 고산족 원주민 시디그(Seediq) 원주민들이 봉기하여 약 134명의 일본인을 살해하자 일본군이 이를 진압하며 약 700여 명의 원주민이 학살당한 우서사건(霧社蜂起事件)이 발생했다. 일본군이 원주민들을 진압할 때 독가스를 사용하거나 인체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⁸

7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청·일 강화 조약(시모노세키 조약)」,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abId=01&levelId=hm_119_0030(검색일: 2022.1.10.).

8 內藤光博, 1998, 「台灣人元日本兵戰死傷補償請求事件にみる日本の戦後補償問題一戦後責任と平和憲法の原理からの考察一」, 『専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군의 동남아지역 침략이 시작되자 대만은 남진기지(南進基地)가 되었다. 식민지 수탈 및 침략전쟁 수행의 목적을 위해 대만인 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가 사용된다. 일본인이나 대만인이나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뜻의 ‘일시동인(一視同仁)’ 슬로건 아래 황민화 정책이 일본의 대만 지배와 함께 추진된다. 황국교육 철저화, 신사참배, 일본어 상용화, 일본 이름으로 개명 등이 시행되었다.⁹

중일전쟁 발발 초기에는 일본의 ‘외지’에 해당하는 조선 및 대만에서는 징병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1938년 2월에 조선인에 대해 육군 특별지원병령이 시행되면서 ‘조선인 일본군’이 등장한다. 1942년에는 대만인에 대한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가 실시되는데, 앞서 1937년에는 대만총독부가 부대 내에서 잡역에 종사할 군부 모집을 시작했다. 특히 중국 전선의 확대에 따라 번역 필요성이 높아 북경어, 광둥어, 복건어 통역가를 모집했다. 전시에는 대만의 군부 및 통역 인원이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일반 사료에 밝혀져 있지 않았다.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가 시행되자 많은 대만인 지원자가 쇄도해 1942년 제1회 응모에는 1,000명 정원에 42만 5,961명(당시 대만 청년의 14%에 상당)의 지원자가 응모했으며 제2회에는 1,000명 정원에 60만 1,147명이 응모했다. 해군 특별지원병제도는 1943년 5월 12일 발표되어 조선과 동시에 실시되었다. 제1회는 3,000명의 훈련생 정원에 대해 31만 6,097명이 응모했다. 이후 징병제가 시행되면서 1944~1945년경 폐지될 당시 해군지원병 약 1만 1,000여 명, 육군지원병은 5,500여 명이 일본군으로 있었다. 태평양전쟁이 격화되고 전쟁국면이 악화되면서 1944년 9월부터 대만인을 대상으로 징병제도가 부과되고 1945년에는 전면 실시되었다.¹⁰

月報』418, 20쪽.

9 內藤光博, 1998, 위의 글, 20쪽.

10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を考える會 編, 1993, 앞의 책; 內藤光博, 1998,

일본의 패전 전까지 일본군으로서 군무에 종사한 대만인은 8만 명이 넘었고, 군속으로 지원 징용된 자를 포함해 총 21만여 명의 대만인이 일본군과 함께 싸웠다. 군수물자 담당, 농업의용단, 노무전사, 해군경비대, 척남전사, 소년지원병, 고사지원대, 통역지원, 비행장건설 및 탄광 등에 동원되었다. 그중 3만 명 이상의 대만인이 전사하거나 전병사했다.¹¹

2. 대만인 B·C급 전범

일본의 대만 식민지에 대한 황민화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 전국(戰局)이 불리해진 일본 정부는 고사의용군(高砂義勇軍)을 남방전선에 투입하고 육해군의 특별지원병 제도, 심지어 징병제를 시행해 대만인 주민을 일본군으로 징용해 갔다. 그 결과 대만인 20만 7,183명이 군인·군속으로 군무를 맡았고, 3만 306명이 전사했으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일본의 패전 후 B·C급 전범 재판에서는 173명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 중 약 26명이 사형되었고, 2만 7,800명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었다.¹²

대만인 전 일본군은 B급 일반적인 전쟁법규를 위반한 자, C급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자에 포함되어 재판을 받았다. 1955년 후생노동성 기록에 따르면 대만 출신 전범은 173명으로 주로 호주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 북보르네오로 파견된 포로수용소 감시원이 많았다. 또한 중국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베이징, 쉬저우, 우한, 광저우, 칭다오, 지난, 대만, 상하이, 난징 등에 군사전범 법정이 설립되었다.

전범의 대다수는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이었다. 대만인의 경우 주로 전쟁 중 간첩행위와 학대 및 치사 혐의, 포로 학대 혐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통역자,

앞의 글, 20쪽.

11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を考える會 編, 1982, 앞의 책.

12 内藤光博, 1998, 앞의 글, 20~21쪽.

포로수용소 감시원 등이 절반을 차지했다. 대만인 전범자들의 경우 중국인 고발자가 많았고, 화교 학대 및 살인, 통역으로 인해 기소되었다. 하이난에서는 엄격한 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52년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서 스가모 구치소로 이송되어 복역하게 된 사람들, 상하이, 대만 등에서 복역한 사람들이 있다.

대만인 전범수치는 기록상 차이가 있는데, 중수민(鍾淑敏)의 연구¹³에서는 후생성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할 때 대만인 전범이 173명으로, 이 중 사형이 2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와다 히데오(和田英穂)의 연구¹⁴에서는 58명의 전범과 사형판결 5명, 무기징역 2명, 유기징역 51명으로 확인된다.

〈표 1〉 대만과 조선 출신자의 전쟁 재판 판결 현황표¹⁵

재판군 출신	영국	미국, 필리핀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합계	(사형)
대만	26(6)	4(1)	7(2)	95(7)	41(5)	173	21
조선	48(4)	3(1)	68(4)	13(6)	16(8)	148	23
합계	74(10)	7(2)	75(6)	108(13)	57(13)	321	44

* 괄호는 사형자 수

조사기관에 따라 전범자의 수가 다르게 집계된 이유 중 하나는 전범 명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만 내에서의 “일본군 작전을 수행하거나 또는 각 지역에 매국 조직을 조직한 자에 대한 재판은 국제법을 적용하고 매국노 처벌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함께 “대만 독립 음모”를 꾀한

13 중수민, 2018, 「타이완인 B·C급 전범 연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타이완 중앙연구원 타이완사연구소편, 『한국과 타이완에서 본 식민주의』, 한울아카데미, 277쪽.

14 和田英穂, 2003, 「戦犯と漢奸のはざまに 中國國民政府による對日戦犯裁判で裁かれた台湾人」, 『アジア研究』 49(4), 81쪽.

15 중수민, 2018, 앞의 글, 277쪽.

것은 포츠담선언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하여 군사법정으로 이송되었다. 전범으로 기소된 대만인은 대부분 포로수용소 감시원, 군무원, 통역자가 대부분이었다.

3. 중국 대표권 문제와 대만 귀속 문제

냉전이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두 정부를 두고 중국 대표 정부 선택 문제가 발생했다. 1951년 일본국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중국대표로서 두 정부 간 선택 문제가 존재했다. 미국과 영국의 견해가 갈리고, 소련이 불참하는 가운데 결국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두 정부 모두 초대받지 못한다. 다만 미국이 지지하는 중화민국과의 국교수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에 맞추어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일화평화조약)이 체결된다.

대만 주민은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인한 일본 독립과 대만과의 일화평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일화평화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대만인 전 일본군인·군속이었던 전사상자의 보상은 대일청구권의 문제로 포함하여 양국 정부 간에 특별협정(取極)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52년 일화평화조약

제2조 일본국은, 1951년 9월 8일에 아메리카합중국의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함) 제2조에 근거하여, 대만과 평후제도 및 난사군도(新南群島)와 시사군도(西沙群島)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인정된다.(밑줄은 필자)

제3조 대만과 평후제도에 있는 일본국과 그 국민의 재산과, 대만 및 평후제도에서 중화민국의 당국 및 그 주민에 대한 일본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함)의

처리,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러한 당국 및 주민의 재산권과, 일본국과 그 국민에 대한 이러한 당국과 주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의 처리는, 일본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와의 사이의 특별협정(取極)의 주제로 한다. 국민과 주민이라는 단어는, 이 조약에서 사용되는 때에는 언제나 법인을 포함한다.(밑줄은 필자)

제10조 이 조약의 적용상, 중화민국의 국민에는, 대만 및 평후제도의 모든 주민 및 이전의 그 주민이었던 자 및 그들의 자손으로, 대만 및 평후제도에서 중화민국이 현재 시행하고, 또한 급후 시행하는 법령에 의해 중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로 본다. 또한 중화민국의 법인에는, 대만 및 평후제도에서 중화민국이 현재 시행하고, 또한 급후 시행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된 모든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밑줄은 필자)

그러나 이를 다룬 특별협정은 체결되지 못하였고, 1972년에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중일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¹⁶ 이로써 일화평화조약은 그 의의를 상실하고 종료되어 공식적인 외교관계에 기반한 일본-대만 간의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게 되었다.

1972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일중공동성명)

2.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인 것을 거듭 표명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선언 제8항에 근거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16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승희, 2017,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51(1), 73~98쪽; 최은봉·오승희, 2019, 『전후 중일관계 70년: 마오쩌둥-요시다 시기부터 시진핑-아베 시기까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참고.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한다.(밑줄은 필자)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대표 정부로 승인하면서 대만 귀속 문제와 대만인 국적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곤란해지게 되었다. ‘하나의 중국’ 문제는 대만인 국적 문제에 대한 예외적인 설명과 고려를 요구한다.

Ⅲ. 대만인 전 일본군의 국적 문제와 조위금 지급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일본인’으로 군대에 징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의 군인·군속 전사상자 및 그 유족에게는 「사면법」 및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원호법」(이하 원호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일본군 및 군속으로서 전사하였으나 전후 일본 국적을 상실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일본인으로 일본군에 입대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으나, 전후 이들은 국적조항에 따라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급법이나 원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52년 법률 제127호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戰傷病者戰沒者遺族等援護法)¹⁷

부칙 2. 「호적법」(1947년 법률 제224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당분간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밑줄은 필자)

17 e-Gov 法令檢索, 2021, 「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二十七號戰傷病者戰沒者遺族等援護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7AC0000000127>(검색일: 2022.1.10.).

또한 <평화조약 발효에 따른 조선인, 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사무 처리에 대한 1952년 4월 19일자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¹⁸

조선 및 대만 관계

(1) 조선 및 대만은 조약 발효일부터 일본국의 영토로부터 분리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조선인 및 대만인은 내지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하여 모두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2) 전 조선인 또는 대만인이었던 사람이라도 조약의 발효 전에 내지인과의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내지의 호적에 입적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내지인으로 조약 발효 후에도 아무런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일본 국적을 보유한다.

(3) 전 내지인이었던 자라도 조약의 발효 전에 조선인 또는 대만인과의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내지의 호적에서 제적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조선인 또는 대만인으로서 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다.

덧붙여 위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가 제외된 호적 또는 제적에 국적상실의 기재를 할 필요는 없다.

(4) 조약 발효 후에는 입양, 혼인, 파양, 이혼 등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즉시 내지인이 내지호적에서 조선이나 대만의 호적으로 들어가거나 조선인 및 대만인이 우측의 신고에 의하여 즉시 동지의 호적에서 내지호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종전의 취급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

(5) 조약 발효 후에 조선인 및 대만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적법의 규정에 따른 귀화 절차에 따를 것을 요한다.

또한 귀화의 경우 조선인 및 대만인((3)에서 진술한 전 내지인 제외)은 국적법

18 國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平和條約の發効に伴う朝鮮人、台灣人等に関する國籍及び戶籍事務の處理について(昭和27年4月19日付の法務府民事局長通達)」, <https://www.digital.archives.go.jp/img/3022412>(검색일: 2022.1.10.).

제5조 제2호의 ‘일본인이었던 자’ 및 제6조 제4호의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밑줄은 필자)

원호법 부칙 2항의 취지는 원호법 제정 당시, 그때까지 일본의 국내법상 조선인 및 대만인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국적 귀속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원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는 데 있었다.¹⁹ 일본의 국내법상 대만인의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1952년 8월 5일의 일화평화조약 발효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것이며, 중일 공동성명에 의해서도 이 해석에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던 중 1974년 말, 인도네시아 모로타이섬에서 고사족 출신 일본군 이광휘(李光輝, 일본 이름 나카무라)가 발견되어 구출되었다. 일본제국의 마지막 잔류 군인이자 대만 원주민이었다. 이에 앞서 보상받은 일본인 귀환자 요코이 쇼이치(横井庄一), 오노다 히로(小野田寛郎) 씨와 달리 일본 정부로부터 미지불 급여 3만 8,000엔과 귀환 수당 3만 엔 등 합계 6만 8,000엔만 지급을 받게 되자 대만 출신 일본군의 차별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²⁰ 메이지 대학의 언어학자 옹록덕(王育德, 왕육덕)²¹ 교수는 ‘보상 문제는 조국이 없는 대만인의 뼈저린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1975년 사무국장을 맡아 <대만인 전 일본 병사의 보상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하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한다.

또한 전쟁에서 중상을 입은 대만인 등성(鄧盛) 씨가 1975년 4월에 일본 후생성에 서한을 보내 전상증명서(戰傷證明書) 발급을 요구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19 弁護士山中理司のブログ, 2021, 「在日韓國人及び台灣住民の軍人軍屬に對する補償問題」, <https://yamanaka-bengoshi.jp/2021/06/22/gunjin-hoshoumondai/>(검색일: 2022.1.10.).

20 内藤光博, 1998, 앞의 글, 21쪽.

21 옹록덕(1924.1.30.~1985.9.9.)은 대만 출신 언어학자로 이름의 한국식 표기는 왕육덕, 중국식 표기는 왕유덕, 옹록덕, 일본식 표기는 오이쿠도쿠이다. 이하에서는 대만의 발음을 최대한 살려 옹록덕으로 표기한다.

보상요구운동을 개시했다. 일본 후생성은 9월 등성씨에게 전상증명서를 발급했지만 보상은 거부했다. <대만 출신 전 일본병사의 군사저금, 유족연금 요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신문투서, 도쿄 변화가에서의 가두 홍보 강연, 일본군 생활 실태, 연대 활동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²² 1977년에는 초당파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만인 전 일본병사의 보상 문제를 생각하는 의원간담회>가 발족했다.²³ 지원단체가 결성되면서 대만인 전 일본군과 그 유족들에 의한 보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1977년 대만인 전 일본군과 유족 등 13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사상자 1명에 대해 500만 엔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²⁴ 국적 호적조항이 일본 헌법 제14조의 ‘법 아래의 평등’이나 국제인권규약 제26조의 ‘내외인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²⁵

1. 일본 정부는 군인이라는 위험한 입장의 특수성 또는 군속이라는 국가와의 고용 계약상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2. 원고는 국가의 행위 내지 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 또는 피해를 입은 자이므로 일본 헌법 29조 3항, 13조에 기초하여 국가보상을 해야 한다.
3. 원호법 및 은급법이 국적 조항에 따라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헌법 14조의 법 아래 평등에 위반되는 것이다.

중의원에서는 1978년 2월 27일 제출, 요코야마 도시야키(横山利秋) 의원이

22 內藤光博, 1998, 앞의 글, 21쪽; 陳鈺琪, 2020, 「王育德與臺灣人原日本兵補償問題思考會」, 國立臺灣師範大學文學院臺灣史研究所; 王育德紀念館, <https://oitmm.tnc.gov.tw>(검색일: 2022.1.10.).

23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を考える會編, 1993, 앞의 글.

24 內藤光博, 1998, 앞의 글, 21쪽.

25 內藤光博, 1998, 위의 글, 21쪽.

〈대만 전 일본인 병사의 보상 문제에 대한 의향서〉²⁶를 제출했다. (1) 대만, 조선, 사할린, 남양군도 등의 주민으로 전시 중 일본의 군인, 군속으로서 공무상 사망한 자의 유족(전상병사 포함) 또는 공무상 부상당한 자에게 국가적으로 조위를 표하는 취지로 유족 및 전상자가 국적이 존재하는 외국정부의 양해하에 일시 금인 급부금을 지급한다. (2) 전시 중의 일본 군인, 군속으로서의 미지급 급여 및 군사 우편 저금을 본인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3) 수급자격 입증에 대해서는 구 군대 내 상사 또는 동료였던 일본인의 증언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외국 정부 또는 일본 내에 있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조사의뢰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 (4) 급부금의 교부절차는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후생대신이 시정촌장을 통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외환 등으로 수급권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는 사항을 주장했다.

1982년 2월 26일 도쿄 지방 법원의 제1심 판결은 원고패소 판결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⁷

1. 군인·군속의 전사상은 일종의 전쟁 손해이며, 어느 범위·정도의 보상을 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일 것
2. 원고의 전사상 시기는 일본 헌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
3. 은급법·원호법은 전상자 및 유족의 생활 원조 측면을 가지지만, 이것은 각각의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 국민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26 衆議院, 1978,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に關する質問主意書」,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a.nsf/html/shitsumon/a084015.htm(검색일: 2022.1.10.).

27 内藤光博, 1998, 위의 글; 東京地裁, 1982, 「昭和57年2月26日判決」, 判例時報1032號(1982年4月21日號).

4. 원고들의 사정을 감안할 때 “동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러한 보상 문제는 그 성질상 국가의 국제적 외교처리 내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은급법 및 원호법상의 원호는 전액 국고 부담으로, 일본 국민의 세부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일본 국적을 가진 것으로 한정하는 것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2심 재판부인 도쿄 고등법원에 상기 청구보상 외에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일본 국회가 원고들에 대한 보상입법을 하지 않는 것의 위법성 확인, 즉 입법 부작위에 근거한 위헌 확인을 함께 요구하며 항소했다.

1985년 8월 도쿄 고등법원은 기본적으로 제1심의 판결 및 설명을 지지하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입법부작위 위헌확송소송에 대해서도 ‘보상입법의 내용이 될 수급의 범위,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이 헌법상 일의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²⁸ 다만, 판결에서는 “시급히 이 불이익을 불식하고 국제 신용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정 관여자에 대한 기대이다”라는 이례적인 부언이 이루어지고, 조속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1985년 8월 26일의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입법구제를 서두르라는 부언을 하였으나 주문에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이 계속 중인 1987년 9월 「대만 주민인 전몰자의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에 관한 법률」,²⁹ 1988년 5월 「특정조위금 등의 지급 실시에 관한 법률」³⁰이 각각 특별입법으로

28 東京高裁, 1985, 「昭和60年8月26日判決」, 判例時報1163號(1985年11月1日號).

29 e-Gov 法令檢索, 1987, 「台灣住民である戰沒者の遺族等に對する弔慰金等に關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_unique_id=362AC1000000105_20150801_0000000000000000(검색일: 2022.1.10.).

30 e-Gov 法令檢索, 1988, 「特定弔慰金等の支給の實施に關する法律(昭和六十三年法律第三十一號)」,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63AC0000000031>(검색일: 2022.1.10.).

성립해 대만인 전 일본군의 유족과 당사자인 전상병자에 대해 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엔의 특정조위금(特定弔慰金)이 지급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만 주민인 전몰자의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률은 “인도적 정신에 근거하여” 대만주민인 전몰자의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2조에서 정부는 대만주민인 일본의 구군인이나 구군속이었던 전몰자 등의 유족 또는 대만주민인 일본의 구군인이나 구군속이었던 전상병자로서 현저히 중증장애 상태에 있는 자나 그 유족에 대한 조위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1988년도부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일본적십자사가 대만에 있는 구호 및 사회봉사를 업무로 하는 기관을 통하여 조위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체결하고 조위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1988년 법률 제31호 특정조위금 등의 지급 실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정은 이를 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실시하며 일본적십자사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청구는 1993년 3월 31일까지 청구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였고, 금액은 전몰자 등 또는 전상병자 1인당 200만 엔으로 하며, 기명국채로 교부한다. 국채는 상환 청구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액면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청구는 1995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국채의 발행일은 1988년 9월 1일로 했다. 그 밖에 대리수령 등 관련 사항들은 관련 부처의 정령과 일본적십자사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의 시행을 약속하기 위해 후속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재판을 통한 입법 부작위 확인과 이후 입법을 통해 전후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만인 일본군 사례가 보여준 전후보상의 성과이다.

최종심인 1992년 4월 28일 최고재판소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비상사태 하에서는 국민이 다 같이 수인(受認)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바로, 위와 같은 전쟁희생 내지 전쟁손해에 대해서는 단지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1심,

2심 판결을 지지했다.³¹ 단,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없어짐에 따라 일본-대만 간의 보상 교섭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호법·은급법의 국적 조항에 의해 대만인 전 병사들이 제외된 것은 ‘법 아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별인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보충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후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국정의 기본에 저촉되는 문제라면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사법 소극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8년의 「특정조위금 등의 지급 실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8월 1일부터 대만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1995년에 종료될 때까지 2만 9,645건의 신청안을 통과시켰으며, 대만인 전 일본군과 그 유족에게 지급된 조위금은 총 592억 9,000만 엔이다.³² 체불 급여와 군사우편 저금에 대해서는 1995년에 120배의 액수를 반환하기로 정해졌다. 이는 대만의 군인 급여의 실질적인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결정했다. 그러나 당사자를 비롯한 지원단체는 전후 50년이 지났고 대만의 경제성장과 당시 자위대 대원 급여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1,000배에서 최대 7,000배 이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았다.³³ 또한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차별과 배제, 일본인에 대한 것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평가, 사망자 유족들의 청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전쟁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등 남겨진 문제들이 존재한다.

31 最高裁判所, 1992a, 앞의 글; 内藤光博, 1998, 앞의 글.

32 당시의 사무를 소관하고 있던 총리부(현 총무성)는 신청 기한인 1993년 3월 말까지 2만 9,913건의 청구가 있어, 합계 592억 9,000만 엔을 지급했다고 한다.

33 内藤光博, 1998, 앞의 글.

IV. 대만인 전 일본군 전후보상의 특징과 한계

1. 구조적 제약과 규범의 강화

대만인 전 일본군 전후보상 문제에는 개인의 보상 가능성을 부정하는 3중 체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 차원에서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중일관계 차원에서의 1952년 일화평화조약과 1972년 중일공동성명, 그리고 일본 국내법제로서의 원호법, 은급법, 호적법이다. 대만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제약이 이 문제의 기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에서는 역시 세 차원에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호소했다. 국제 차원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중일관계 차원에서의 1952년 일화평화조약의 특별협정 조항, 그리고 일본 헌법 14조이다.

〈표 2〉 대만인 전 일본군 보상 대상의 제도적 근거

	국제관계	중일관계	일본 국내
부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2 일화평화조약 1972 중일공동성명	은급법, 원호법, 호적법
인정	국제인권규범	1952 일화평화조약 특별협정 조항	일본 헌법 14조

출처: 필자 작성

대만인은 1952년 8월 5일 일화평화조약의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은급법 9조 1항 3호, 원호법 부칙 2항의 판결 등 일본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군인군속이었던 대만인 전사상자의 보상청구의 구체적 처리가 일화평화조약 3조에서 청구권의 문제로서 양국 정부간의 특별협정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으나 1972년 9월 29일의 중일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에서 정한 청구권의 처리를 특별협정의 주제로 하는 취지의 규정도 중일국교정상화의 결

과 일본과 대만 정부 당국 간에 협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 때문에 공소인 등 전 일본군 소속 및 그 유족은 그 전사상에 따른 손실에 대해 일본의 실정법상 혹은 조약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은급법은 전쟁 전인 1923년 4월 14일 법률 제48호로 제정된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은급수급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전후 GHQ는 1946년의 칙령 68호에 의해 구 일본군의 해체와 군국주의 일소를 위해 구 군인 및 그 유족에게 상병 은급의 일부를 제외하고 군인 은급의 지급을 폐지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고 나서 일본 유족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 군인과 그 유족들이 수급 권리 회복을 주장하자 동법을 개정하여 1952년 8월 1일 군인수급이 부활되었고 거의 매년 수급대상자로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구 군인과 상병전사자 및 그 유족에게 거의 완전한 형태로 지급되게 되었다. 또한 1971년의 법률 제81호에 따라 전법에 대해서도 구금기간 모두 은급 지급 대상기간으로 환산되었다. 그러나 동법 제9조 1항 3호에서는, “국적을 상실한 때”에 은급 수급의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국적의 상실을 은급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1952년 4월 2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일본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만인·조선인 전 군인·군속은 은급법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호법은 1952년 4월 30일 법률 제127호로 제정되어 ‘국가보상의 정신’에 따라 군인·군속 등이 공무 중 부상·질병·사망한 경우, 이들 및 그 유족을 ‘원호’할 목적을 갖고 있다. 이 경우의 원호란 장애연금, 경정의료연금, 유족연금, 조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 이 법률도 수많은 개정 결과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1953년에는 전쟁범죄자가 구금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나 조위금이 지급된다.

이 원호법은 1952년 4월 30일에 공포·시행되었으나, 4월 1일에 소급 적용되었으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4월 28일에 국적을 상실한 대만인·조선인의 전 군인·군속에게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었다. 그러나 동법 부

칙 제2항에서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제 치하의 대만 및 한반도에는 각각 ‘호구규칙’ 및 ‘조선호적령’이라 불리는 일본 본토와는 다른 호적법이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대만인 및 조선인 전 군인·군속은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라고 되어, 원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즉, 원호법 부칙 제2항은 교묘히 ‘국적’을 대신하는 ‘호적’의 유무에 의해 대만인·조선인에 대한 보상을 차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국적을 가진 자에게는 원호법에 따른 원호 및 은급법에 따른 은급이 지급되고, 항소인 등 대만인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양 법의 국적 조항 및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항소인 등 대만인에 대해 아무런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4조에 대한 위반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본국 헌법 제14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 평등하며, 인종, 신념,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 ② 화족 그 외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에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일대(一代)에 한해 그 효력을 갖는다.

최고재판소는 헌법 제14조가 직접적으로는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유추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사상에 의한 손해의 보상, 구제를 자국민에 대해서만 한다는 입법은 동시에 다른 입법 또는 조약으로써 동일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에게 동종의 보상, 구제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불평등한 차별이 아니다. 오히

려 외국인이 속한 각국 정부의 의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민과 균일한 처우를 하는 것이 때로는 각국과의 원활한 국교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대만은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하여 당시의 중화민국 영토로 복귀한 것이므로 일본의 입장에서 대만 정부의 의향을 존중하여 대만인에 대한 처우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따라서 대만인 관계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남겨두고 당분간 일본 국적을 가진 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국적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일화평화조약에서 양국 정부 간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할 것을 정하였으나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에 따라 일화평화조약은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여기서 적극적인 입법 및 규범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원호법 부칙 2항이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게 ‘당분간’ 원호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보상청구권을 일본 내각의 외교교섭에 의한 결정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중일국교회복에 의하여 결정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어떠한 대응, 가령 보상입법의 정립 내지 원호법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적극 해석할 여지가 있다.³⁴ 이에 따라 제2심부터 원고는 ‘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헌확인 소송’으로 접근하고 “중일국교회복 시점에서 원고들의 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할 입법을 정립할 의무가 일본 국회에 발생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재판소는 그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는 전후 보상의 관점에 입각하여 심리를 진행했어야 했다.

은급법과 원호법은 모두 ‘과거의 업무나 역무에 대한 보수의 일부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불되어야 할 성질을 가진 금전적 대가이다. 따라서 국적 내지 호적의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에 의하여 수급대상자에게 차이가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과거의 업무나 손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지급의 유무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네갈인 전 프랑스병에 의한 유엔의 규약 인권 위원회에서의 제기한 사건을 참고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75년

34 內藤光博, 1998, 위의 글.

이후 세네갈인들의 연금을 동결했다. 이들은 이 같은 프랑스 정부의 취급은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26조의 평등조항에 위배된다며 B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그에 대해 규약인권위원회는 연금 지급의 근거를 ‘과거에 이루어진 군무’에 있다고 하여 규약 제26조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³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일본 헌법 제14조와 국제인권 B규약 제26조를 원용하면, 원호법 부칙 제2항은 ‘이유 없는 국적에 의한 차별’로, 법 아래의 평등에 위반되며, 본래 보상수급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³⁶

2. 동화-배제-방치의 폭력

1895년 대만은 일본에 할양되고 대만인들은 ‘일본인’이 되도록 요구되었다. 50년이라는 긴 통치 속에서 그들은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 정신을 받아 계승했다. 1937년 중일전쟁, 1945년 태평양전쟁에도 대만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다.

35 内藤光博, 1998 위의 글; Ibrahima Gueye et al. v. France, Communication No. 196/1985, U.N. Doc. CCPR/C/35/D/196/1985 (1989), https://adsdatabse.ohchr.org/IssueLibrary/HRC_Communication_196_1985_Guye%20et%20al,%20v.%20France.pdf(검색일: 2022.1.10.).

36 内藤光博, 1998, 위의 글.

대만 내에는 일본 본토 출신 ‘내지인’과 중국 대륙에서 온 한족의 ‘본도인(本島人)’, 대만 원주민이 함께 존재하며 서로 다른 귀속의식이 있었다. ‘일시동인(一視同仁)’, ‘내대일여(內臺一如)’, ‘내선일체(內鮮一體)’의 통치방침 아래 같은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오고자 했다. 내지, 외지의 구분없이 ‘황민화(皇民化)’ 교육 및 정책이 추진해나가면서 명실상부한 ‘일본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³⁷

16세에 자원해 육군 군속으로 임팔 전투에 참가하고 국민당 정권의 반란진압을 빌미로 한 대만 전역 민중학대 살해사건 2,8사건의 수난자이기도 한 소금문(蕭錦文, 쇼킨분) 씨는 지원동기로 무엇보다 “자기 나라의 중대사에 있고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다. 자기 나라를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생각이었다”고 말한다.³⁸ 대만인들 역시 ‘일본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일본을 위해 싸웠던 것이다.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에 따르면 그 수는 군인·군속 합쳐 20만 7,183명으로 그중 3만 306명이 전몰했다. 1945년 8월 15일 전화를 이겨낸 대만 사람들도 일본인으로 패전을 맞았다. 일본은 패전의 결과로 대만을 포기했고, 전 대만인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인’으로서의 국적을 잃게 되었다.³⁹

앞서 살펴본 이광휘 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1945년 이후에도 계속 일본 패전상황을 모르고 정글에서 살고 있다가 1974년 인도네시아에서 최후의 일본군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세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데 우선 그의 민족명은 ‘Sunio’, 일본명은 ‘나카무라’, 그리고 대만 정부로부터 ‘이광휘’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 12월 25일 일본주재 인도네시아대사관의 일본군 병사 발견 통보 이후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방위주재관을 보내게 되고 직접 모로타이섬에 가서 일본은 이미 전쟁에서 패한 지 오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37 權田猛資, 2020, 앞의 글, 1쪽.

38 權田猛資, 2020, 위의 글, 1쪽.

39 權田猛資, 2020, 위의 글, 1쪽.

는 주재관의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일본어로 차갑게 “일본이 졌을 리 없다! 나는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⁴⁰ 12월 29일 국제기자회견에서도 일본어로 말해 대만 정부 관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나카무라라는 일본군 병사로서 2계급 특진하며 일본군 생활을 마치고, 1975년 8월, 31년 만에 대만에 돌아가게 된다.

이 밖에도 일본인 아이덴티티와 대만인 아이덴티티가 충돌하는 이야기들은 이들의 회고록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인 전 일본군 샤오 씨 등은 일본을 위해 이 목숨을 바쳤지만, 전쟁터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자에게는 충분한 수당이 있고, 대만으로 돌아온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분하다고 토로한다. 일본에서 택시운전사로 살아가고 있는 대만인 간무송(簡茂松, 간시게마츠)는 태어나 자마자 일본인의 이름을 받아 일본인으로 교육받고 당연하게 군대에 속해서 전쟁에 나가 목숨을 다했고 일본인으로서 전범의 형기까지 다 마쳤다. “조국을 위해, 폐하를 위해”라고 17세부터 26세까지의 청춘을 내걸었으나, ‘너희들은 이미 일본인이 아니니까’라고 보상을 거부당하는 대만인이 되었다고 한탄한다. 그는 ‘나의 ‘조국’이었던 일본이, 나의 자식 4명, 손주 7명이 일본인으로 살고 있고 아마도 뼈를 묻게 될 일본은 그에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고 묻고 있다.⁴¹

대만인 전 일본군의 비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 식민지 이후의 대만은 1949년 이후 새로 도래한 외래정권인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에 의해 통치되었다. 대만에서 전쟁터로 떠났던 약 21만 명 중, 약 6,000명이 고사족(高砂族)이었다. 국민당은 전쟁이 끝나고 대만인 전 일본군이 귀환하자 이들을 강제 징용했다. 국민당군에는 해군이 없고, 군함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진 병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만인 전 일본군을 강제 징용했다. 국민당에 끌려간 대만 병사는 3만 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중국 대륙에 파견되어 공산군과 싸우다가 국민당이 패퇴하자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후 공산군은 포로로 잡힌 대만 병

40 河崎眞澄, 2003, 『還ってきた台灣人日本兵』, 文春新書.

41 浜崎紘一, 2000, 『俺は日本兵, 台灣人簡茂松の「祖國」』, 新潮社.

사를 1950년 한국전쟁에 파견해 유엔군 측과 싸우게 했다. 일본인이어서 동원되었던 식민지 폭력과 일본인이 아니어서 배제되는 차별에 이어 새로운 중화민국의 등장과 중국 본토와의 관계에서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폭력을 경험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후 일본은 1951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대만 및 평후제도에서의 주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당시 대만의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강화회의에 초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대만 간에는 1952년 4월 28일 일화평화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동 조약 제3조에서 일본과 대만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일본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 사이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고 정했다.

즉, 대만인 전 일본군의 미지급 급여나 군사우편저금 등은 일본 정부와 중화민국·국민당 정부 간에 ‘특별협정’을 정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협정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에 논의되지 않고, 1972년에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여 일본과 중화민국은 단교하고, 일화평화조약 그 자체가 실효되었다. 또한 특별협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화민국·국민당 정부에 3회에 걸쳐 추진할 것을 문서로 신청하였으나, 중화민국·국민당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게다가 이후의 〈생각하는 모임〉 활동에 대한 국민당 정권의 방해도 있었다. 만약 보상금이 나간다면 대만독립운동에 유용되고 말 것이라며 압박하여 재일 대만인들도 보상협조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과 대만 두 정부 모두 “인권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전후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문제를 방치했고, 이후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만의 중화민국·국민당 정부도 전후에 일본으로부터 접수된 재산의 정당성이나 취급이 논의될 것을 우려하여 일화평화조약에 기초한 특별협정 추진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과거 원수인 대만인 일본군 문제에는 무관심했다. 대만인 전 일본군의 인권과 존엄성은 두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만인 전 일본군과 그 유족의 ‘일본인’으로서의 보상

이나 채무는 전후 일본-대만 관계사 속에서 방치되었다.

대만인 전 일본군 전후보상을 위한 투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형이 필리핀에서 전병사 후 유족으로 전후보상 문제를 40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임아정(林阿貞) 씨는 당시 대만인 일본군이란 호칭은 없고 모두 ‘천황 폐하의 백성(天皇陛下の赤子)’인 ‘황군의 병사(皇軍の兵士)’였다고 강조한다. 대만인 전 일본군 문제가 ‘해결완료’되었다고 강조하는 일본은 오명을 남겼다고 평가한다.⁴²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대만인의 피와 땀과 눈물을 일본과 대만의 우호와 협력을 위한 교류센터 설립 등을 통해 뜻을 지속해나가고 싶다는 뜻에서 전후보상 문제에서의 ‘해결완료’ 자세에 대한 기억과 책임의 문제가 남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입법을 통한 전후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만인 전 일본군 전후보상 문제는 진행 중이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해도 기각된 사람들, 또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 반발하여 신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한 지급 문제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동화되기를 요구받았던 ‘일본인’이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을 위해서 싸우고 전쟁책임을 지었지만, 전후 배제되고 방치되어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3. 개인-집단 네트워크 연대

대만인 전 일본군의 전후보상 문제는 특히 〈생각하는 모임〉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옛 일본군 관계자들부터 정계와 학계,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인도적이고 정의로운 정신을 호소하는 활동을 전개해 일본 사회 대중을 폭넓게 참여시켰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옹로덕이 있었다. 대만인 전 일본군 원고단, 의원 간담회, 자유인권협회 변호인단을 연계해 대만인 전 일본군 보상 문제 소송을 제기해 소송의 가장 유력한 배경이 되었다. 더욱이 〈생각하는 모임〉이 활발히 운영

42 權田猛資, 2020, 앞의 글, 4쪽.

되기 때문에 법정 소송 외에 정치권과 법조계, 사회여론 간의 가교 역할을 해 국회의원 배출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마련했다.⁴³

〈생각하는 모임〉에는 옹록덕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멤버가 구성되어 대표 간사를 메이지 대학의 미야자키 시게키(宮崎繁樹) 교수가 맡았다. 미야자키 교수는 옹록덕의 동료이자 대만인 유학생의 강제퇴거 문제에 몰두해온 바 있다. 사무국장은 옹록덕이 담당하고, 이 밖에 우노 세이치(宇野精一) 도쿄대 명예 교수 등 다양한 교수들과 관계자들이 연결되었다. 또한 왕명리(王明利) 씨에 따르면 ‘대만인 전 일본 병사의 보상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긴 명칭은 이 문제가 매스컴에서 거론되었을 때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붙인 것이라고 한다.⁴⁴

이에 따라 정부에 진정을 내어도 사태가 움직이지 않자 옹록덕은 부득이 법정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보상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인권협회의 협조로 변호인단이 결성되어 1977년 제소한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승산이 거의 없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한다. 오히려 법정투쟁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여론의 지지로 정부를 움직여 나가려는 전략이었다. 1982년의 1심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당시 원고 중 한 명인 등성 씨가 “피도 눈물도 없는 판결”이라고 한 말이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었다. 1985년 8월 26일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패소했지만, 판결에서 〈부언〉에 “조속히 이 불이익을 불식하는 것이 … 국정 관여자에 대한 기대”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이 항소심 판결에는 옹록덕의 타이베이교등학교 동창생 요시에 기요카게(吉江清景)가 고등법원 판사로 관련되어 있었다.

법정 투쟁과 병행하는 형태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공소심 판결 직전인 1985년 5월에는 정부 내에 ‘대만인 전 일본병사 문제 관계부회 연락회의’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방재판소에서 최고재판소까지 법정 다툼은 모두 패소했지만 〈생각하는 모임〉의 성공으로 일본 사회 여론의 관심을 받고 의원 간담회가

43 王育德紀念館, 2021, 앞의 글.

44 보다 자세한 사항은 陳鈺琪, 2020, 앞의 글 참조.

활성화되었다. 아리마 모토후루(有馬元治) 의원 역시 옹록덕과는 타이베이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다. 일본 상·하원 의원들이 1987년 전원 조위금법안을 통과시켜 자민당에서 공산당까지 초당파 의원입법으로 보상법이 성립되어 1인당 200만 엔이 지급되게 되었다.

소송 제기 시 원고단의 요구는 500만 엔이었으나 정부 결정은 200만엔이었다. 200만 엔은 불만족스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가예산 563억 엔을 사용한 보상을 모색했다. 국가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인이 대만인의 보상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성과였다.⁴⁵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보상금 교부 시 국민당 정권은 신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적십자회를 통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와 초당파적 사회운동의 의의가 컸다. 법정 투쟁에서는 자유인권협회의 협력을 받아, 인권 변호사가 자원봉사로 힘써 주었다. 한편, 퇴역 군인이나 아시아주의적 민족파 단체, 대만 관계자, 학자, 신문보도로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대만인 일본군 보상 운동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운동의 실행부대를 담당한 것이 옹록덕 등 대만독립연맹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사회운동에서는 데모의 진행 방법, 회장 확보, 포스터 만들기 등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에 대만 독립 연맹의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⁴⁶ 다만 대만 독립의 색깔을 강하게 띠게 되면 정치적 입장에서 대만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운동의 확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고 있었다.

대만인 전 일본군의 전후보상 문제는 전후 일본과 대만이 놓여 있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제약이나 상황을 오랜 세월을 걸쳐 극복해오고자 했던 개인과 집단, 일본과 대만의 관계자들, 민간인들의 협력이 있었다. 이들이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운동을 벌여왔기에 전후 방치되었던 문제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

45 王育德紀念館, 2021, 앞의 글.

46 陳鈺琪, 2020, 앞의 글.

V. 맺음말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부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화평화 조약,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과 대만의 관계는 정체성과 구조적 차원에서 한국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전후 “비일본인”으로 배제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조선인의 해방과 광복의 과정에서 일본인으로 동화되기를 거부했던 조선의 상황과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동등한 일본인이었음에도 차별받았다는 논리는 한일 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는 대만인의 다중적 복합 정체성과 함께 청일 전쟁과 중일전쟁, 하나의 중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에서 기인한다. 대만 원주민으로서, 일본인으로서, 비일본인으로서, 대만인으로서, 중국인으로서의 다중 정체성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폭력 속에 놓인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조선인 정체성을 주장하고, 일본인으로 동화되었다가 외국인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의 정체성 귀속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 다중적 아이덴티티 문제가 존재한다. 조선인과 대만인의 전 일본군 동원과 전후 보상의 배제는 중일전쟁과 항일 운동, 한국전쟁의 맥락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구별과 차별의 문제와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과 50여 년의 식민지배 과정의 역사와 전후 다시 새로운 정부에 적응해야 하는 대만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만인 전 일본군 보상문제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개인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배상 청구가 완료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등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와 전후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인 전 일본군의 개인보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은 정부 간 교섭에 의한 보상으로, 개인보상은 일절 인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중일관계의 특수성과 아이덴티티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다소 부족하나마 개인보상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본인만 전후보상 대상으로 삼아 ‘일본인만이 피해자’라는 왜곡된 역사인식에 기반해왔던 일본의 규범적 자각을 이끌어내고, 일본 헌법의 가치와 국제인권규범의 가치를 상기하며 입법을 통한 전후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규범에 기반한 개인 전후보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진행된 운동과 1987년과 1988년의 입법 과정은 대만인 전 일본군 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다층적인 연계 활동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인 전 일본군·유족에 대한 보상이나 재산의 반환에 대해서, “해결 완료”라고 답한다. 그러나 ‘조위금’ 지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대만인 전 일본군 피해자들은 법적·형식적인 ‘해결’이 아니고, 역사를 계속 마주해가는 일본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⁴⁷ 대만인 전 일본군 등 선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속 위령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간이 지나 망각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대만인 전 일본군의 역사를 배우고, 그 후의 전후보상 문제로부터도 눈을 돌리지 않고, 일본인의 “선배”이기도 한 대만인 전 일본군을 위령해 나갈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대만인 전 일본군 보상 사례는 국제 인권 규범과 일본 헌법에 입각하여 인권 보호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해나가고자 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송에서는 패하더라도, 불평등 문제에 대한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며 특별 입법을 이끌어낸 배경과 흐름에 인권과 국제규범에 대한 일본의 자각과 책임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처리 과정에서 단순히 일본을 가해자로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권과 인류보편 가치에 대한 일본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긍정적으로 자극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로 나아가게 만들어내는 전략도 필요하다. 옹졸덕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국내외 네트워크의 영향력도 중요했음

47 權田猛資, 2020, 앞의 글, 4쪽.

을 확인할 수 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식하며 대만과 일본의 연대를 강화해나가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대만인들이 200억 엔 이상의 일본 구호금을 쾌척한 바 있고, 코로나 19로 백신외교를 통한 양국 간 연대 강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양자 간 협력을 점차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해결완료’의 문제들을 망각과 기억의 영역에서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지 일본과 대만의 관계를 계속 주시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자료

- 國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平和條約の發效に伴う朝鮮人, 台灣人等に関する國籍及び戶籍事務の處理について(昭和27年4月19日付の法務府民事局長通達)」, <https://www.digital.archives.go.jp/img/3022412>(검색일: 2022.1.10.).
-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を考える會編, 1982, 『問われている戦後に人道的解決を-台灣人元日本兵士特別援護法要綱と解説』, http://jclu.org/wp-content/uploads/2015/06/taiwanjin_tokubetsuengoho_yoko.pdf(검색일: 2022.1.10.).
- 東京高裁, 1985, 「昭和60年8月26日判決」, 判例時報1163號(1985年11月1日號).
- 東京地裁, 1982, 「昭和57年2月26日判決」, 判例時報1032號(1982年4月21日號).
- e-Gov 法令檢索, 1987, 「台灣住民である戦没者の遺族等に對する弔慰金等に関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_unique_id=362AC1000000105_20150801_0000000000000000(검색일: 2022.1.10.).
- e-Gov 法令檢索, 1988, 「特定弔慰金等の支給の實施に関する法律(昭和六十三年法律第三十一號)」,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63AC0000000031>(검색일: 2022.1.10.).
- e-Gov 法令檢索, 2021, 「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二十七號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7AC00000000127>(검색일: 2022.1.10.).
- 衆議院, 1978,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に関する質問主意書」,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a.nsf/html/shitsumon/a084015.htm(검색일: 2022.1.10.).
- 最高裁判所, 1992a, 「台灣人元日本兵戦死傷補償請求事件最高裁判決」,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856/035856_hanrei.pdf(검색일: 2022.1.10.).
- _____, 1992b, 「平成4年4月28日第三小法廷判決」, 『判例時報』1422.
- 厚生労働省, 2021a, 「戦没者等の遺族に對する特別弔慰金」(第十一回特別弔慰金)

の支給につい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7645_00003.html(검색일: 2022.1.10.).

_____, 2021b, 「戦傷病者及び戦没者遺族への援護」,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okabunya/senbotsusha/seido03/index.html>(검색일: 2022.1.10.).

Ibrahima Gueye et al. v. France, Communication No. 196/1985, U.N. Doc. CCPR/C/35/D/196/1985 (1989). https://adsdatabase.ohchr.org/IssueLibrary/HRC_Communication_196_1985_Guye%20et%20al.%20v.%20France.pdf(검색일: 2022.1.10.).

단행본

서정완, 2020, 『일본식민지 연구의 논점』, 소화.

우쓰미 아이코 저, 김경남 역, 2010,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논형.

중수민, 2018, 「타이완인 B·C급 전범 연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타이완
중양연구원 타이완사연구소 편, 『한국과 타이완에서 본 식민주의』, 한울아카데미.

최유리, 1997, 『日帝末期植民地支配政策研究』, 國學資料院.

최은봉·오승희, 2019, 『전후 중일관계 70년: 마오쩌둥-요시다 시기부터 시진핑-아베
시기까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岡本眞希子, 2008, 『植民地官僚の政治史: 朝鮮・台灣總督府と帝國日本』, 三元社.
光信一宏, 2015, 「朝鮮人・台灣人元日本兵の補償」, 『歴史問題ハンドブック』, 岩波
書店.

今西一・飯塚一幸 編, 2018, 『帝國日本の移動と動員』, 大阪大學出版會.

内海愛子, 2002,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山川出版社.

台灣人元日本兵士の補償問題を考える會編, 1993, 『台灣・補償・痛恨: 台灣人元日
本兵戦死傷補償問題資料集合冊』, 台灣人元日本兵士の戦後補償問題を考
える會.

涂照彦, 1975, 『日本帝國主義下の臺灣』, 東京大學出版會.

浜崎紘一, 2000, 『俺は日本兵, 台灣人簡 茂松の「祖國」』, 新潮社.

山中永之佑, 2021, 『帝國日本の統治法: 内地と植民地朝鮮・台灣の地方制度を焦点とする』, 大阪大學出版會.

松田利彦・陳姪媛 編, 2013, 『地域社會から見る帝國日本と植民地: 朝鮮・臺灣・滿洲』, 思文閣出版.

鄭春河, 1998, 『台灣人元志願兵と大東亞戰爭』, 展轉社.

河崎眞澄, 2003, 『還ってきた台灣人日本兵』, 文藝春秋.

논문

김귀옥, 2010, 「분단과 전쟁의 디아스포라-재일조선인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1.

김창록, 2007,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법사학연구』 35.

신혜봉, 2015, 「재일한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고찰」, 『일본공간』 17.

오승희, 2017,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51(1).

_____. 2021, 「한일국교정상화와 중일국교정상화의 외교전략: 미뤄두기, 쌓아가기, 경제짓기, 다중해석」, 『일본연구논총』 53(6).

이원덕, 2007,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 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일본학연구』 22.

이정향, 2015, 「다문화사회에서의 인종차별-일본의 외국인 차별사건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2.

최경옥, 2014, 「일본 국적법의 체계와 운용」, 『공법학연구』 15(2).

新井雄, 2017, 「日臺關係與台灣人原日本兵補償問題: 以有馬元治的活動爲中心」, 『大仁學報』 51.

陳鈺琪, 2020, 「王育德與臺灣人原日本兵補償問題思考會」, 國立臺灣師範大學文學院臺灣史研究所碩士論文.

內藤光博, 1998, 「台灣人元日本兵戰死傷補償請求事件にみる日本の戦後補償問題一戦後責任と平和憲法の原理からの考察一」, 『専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月報』 418.

鄭樂靜, 2008, 「日本人による中國人戦後補償訴訟支援研究一強制連行・強制勞動

問題を中心に」,『文明構造論: 京都大學大學院人間・環境學研究科現代文明論講座文明構造論分野論集』, https://repository.kulib.kyoto-u.ac.jp/dspace/bitstream/2433/89722/1/bkr00004_111.pdf(검색일: 2022.1.10.).

朱恵足, 2019, 「日本人」として戦った人々: 台湾人元日本兵と鐵血勤皇隊」,『三田文學』 98(139).

河野利彦, 2020, 「棄てられた皇軍兵士たち: 台湾人元日本兵の補償問題そして高砂義勇兵」, Kindle Edition.

和田英穂, 2003, 「戦犯と漢奸のはざままで 中國國民政府による對日戦犯裁判で裁かれた台湾人」,『アジア研究』 49(4).

기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청·일 강화 조약(시모노세키 조약)」,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abId=01&levelId=hm_119_0030(검색일: 2022.1.10.).

岡本法律事務所のブログ, 2021, 「台湾住民元日本兵戦死傷者の損失補償に關する最高裁平成4年判決」, http://blog.livedoor.jp/ok_law/archives/54701445.html(검색일: 2022.1.10.).

權田猛資, 2020, 「台湾人元日本兵の戦後補償問題-積み残された人々の願いに眞の「解決」を」, <https://www.nippon.com/ja/japan-topics/g00972/>(검색일: 2022.1.10.).

弁護士山中理司のブログ, 2021, 「在日韓國人及び台灣住民の軍人軍屬に對する補償問題」, <https://yamanaka-bengoshi.jp/2021/06/22/gunjin-hoshoumondai/>(검색일: 2022.1.10.).

王育德紀念館, <https://oitmm.tnc.gov.tw>(검색일: 2022.1.10.).

‘대만인 전(前) 일본군’ 전후보상 문제

— 아이덴티티, 특별입법, 네트워크 연대 —

오승희

이 글은 대만 출신의 전 일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후보상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식민지하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인’으로 군대에 징용되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전쟁범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종전 후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은급법(恩給法)이나 원호법(援護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77년 일본 정부에 전후보상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1987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1인당 200만 엔의 조위금(弔慰金)이 지급되었다.

대만인 전 일본군에 대한 전후보상은 대만 원주민,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으로서의 다중 아이덴티티를 가진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입법을 통한 개인보상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후 일본과 대만이 놓여 있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제약이나 상황을 극복해오고자 했던 네트워크 연대가 작동했다. 일본 정부는 ‘해결완료’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남겨진 피해자들은 법적·형식적인 ‘해결’이 아니고, 역사를 계속 마주해가는 일본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 간 배상 청구가 완료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등에서 개인 청구권 문제와 전후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인 전 일본군의 개인보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전후보상, 일본-대만 관계, 대만인 전 일본군, 개인보상, 배상

ABSTRACT

Postwar Compensation of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Identity, Special Legislation, and a Solidarity Network

Oh Seung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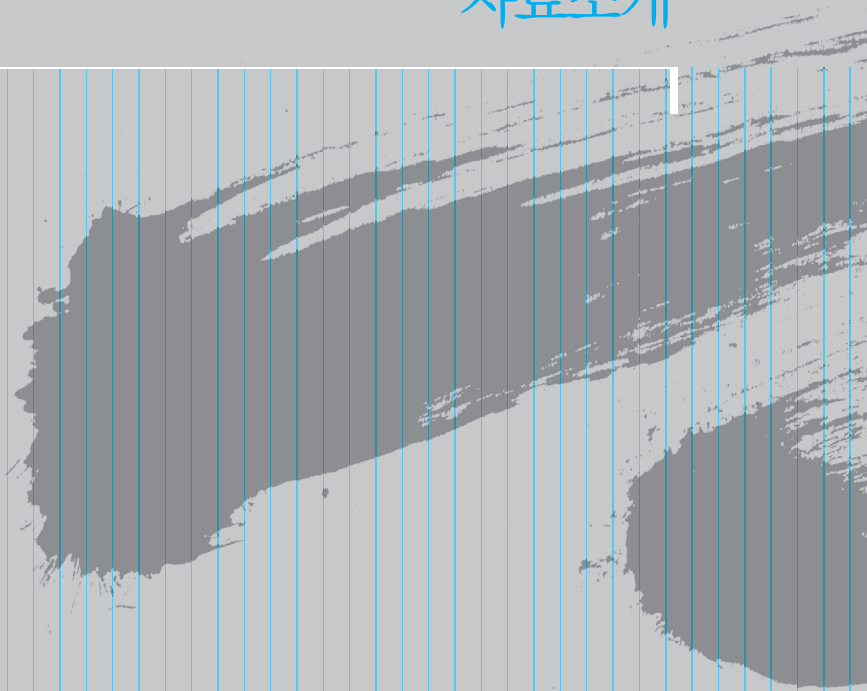
This study's purpos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postwar compensation for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Koreans and Taiwanese living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ere conscripted into Japan's military as "Japanese." During the war of Imperial Japan, many of them were killed or injured or became war criminals. However, after the war, they were not compensated because they were "not Japanese." In 1977, the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for postwar compensation.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e relevant law in 1987, these individuals received two million yen per person as condolence money.

The postwar compensation of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en can be evaluated as individual compensation for victims

having multiple identities, such as Taiwanese aboriginal, Japanese, Chinese (ROC), and Chinese (PRC). The compensa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special legislation, and a solidarity network was effective in the process. Victims have suggested that Japan should face its history and take more moral responsibility than it has in the past. Despite the Japanese government's declaration that compensation claims from the relevant countries have been completed,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issue of individual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this issue is not resolved but rather remains ongoing in Taiwan, China, and Korea.

Keywords: Postwar compensation, Japan-Taiwan relations, Taiwanese Imperial Japan Serviceman, individual compensation, reparation claims.

자료소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현황과 특징

이승일 |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근대 민사판결문의 현황과 보존이력
- II. 근대 민사판결문의 편찬과 특징
- III. 민사분쟁의 유형
- IV. 민사판결문의 가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근대 민사판결문의 현황과 보존이력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민속원)은 2015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 지원을 받아서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연구책임 이승일)가 갑오·대한제국기의 민사판결문들을 입력·번역한 것이다. 판결문들의 수량이 많아서 제1단계로 1895년부터 1908년 2월까지 생산된 5,000여 건의 판결문을 2021년도에 출판하였다. 제2단계로 1908년 3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생산된 3,600여 건의 판결문을 추가로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이 자료들은 갑오·대한제국기의 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제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법원기록보존소가 ‘구한말 민사판결문’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문들은 1895년부터 설치된 각급 재판소의 판결문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식민지기의 판결문도 있기 때문에 ‘구한말’이라는 명칭이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해당 자료에는 한국 재판소에서 생산한 판결문뿐만 아니라 이사청, 통감부 법무원, 통감부 재판소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영사재판 과정에서 생산된 판결문은 일본인 상호 간의 분쟁을 수록한 것도 있으나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분쟁을 처리한 것도 많다. 그래서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팀에서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으로 컬렉션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였다.

이 자료들은 대한제국 재판소 → 통감부 재판소를 거쳐서 1910년 한국병합 직후에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모두 인계받았다. 1910년 당시 조선총독부 재판소는 새롭게 설치된 것이 아니라 종전 통감부 재판소의 조직, 인력, 사무를 그대로 승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재판소는 이 기록물들을 식민통치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1945년 해방 후에 한국의 각 지방법원에서 접수, 관리하였다. 그러다가 1973년 12월에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대법원규칙 제 0546호, 1973.12.12.)을 제정하여 영구보존문서,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보존

하고 있는 문서, 1945년 이전의 문서를 ‘법원보존문서관리소’로 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1974년 1월 1일 당시에는 ‘서울지구 법원보존문서관리소’, ‘대구지구 법원보존문서관리소’, ‘광주지구 법원보존문서관리소’ 등 세 곳이 설치되었다.¹ 그리고 2005년에 법원도서관은 52권 분량의 『구한말 민사판결집』(1895~1908)을 간행하였다. 이 『구한말 민사판결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의 ‘서울 및 대전지구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보존되어 있던 민사판결원본 중 1895년부터 1908년까지 사이에 고등재판소, 평리원, 한성재판소, 경기재판소 등에서 선고된 4,900여 건의 민사판결원본을 영인한 것이다.

이후 2008년도에 성남에 법원기록보존소의 보존서고가 신축되면서, 각 지구단위로 분산·보존되던 해방 이전의 모든 민사판결문들을 법원기록보존소가 집중·관리하게 되었다. 현재, 법원기록보존소에는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이 편책 기준으로 약 406책이 보존되어 있다.² 이 중에서 151책 1만 4,538건은, 법원도서관이 2008년도에 디지털화 사업을 시행하여 2009년부터 홈페이지에 원문을 공개하였다.³ 해당 사업의 대상은 2008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민사판결문이다. 법원도서관에서는 각 판결문들의 기본정보(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의 종류, 원고의 인명·신분·주소, 피고의 인명·신분·주소, 판결의 요지, 판결의 이유, 판결일, 재판소명, 판사명, 참여자명 등)를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55책은 원문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록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법원기록보존소 보존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향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판결문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1 1987년 9월 1일에는 부산고등법원의 설치로 ‘부산지구 법원보존문서관리소’가 설치되었다.

2 이 수치는 법원기록보존소의 자료 제공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에도 7책이 보존되어 있다.

3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khd.scourt.go.kr/main/index.jsp>.

II. 근대 민사판결문의 편책과 특징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은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과 1895년 7월 ‘민형소송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생산될 수 있었다.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결송입안」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이 70여 건에 불과하다.⁵ 이렇듯 조선시대의 민사재판 자료가 극히 소수인 이유는 판결문의 보존의무가 각 재판기관에 부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소송에서 「결송입안」이 작성된 것도 아니었다. 19세기에 송관(訟官)은 원고가 제출한 소지에 처결(處決)한 사항을 기록하고 되돌려주는 사례가 많았다. 그 대신에 각급 재판기관은 업무상 참고를 위해서 ‘민장치부책’의 형태로 간략히 사건기록을 등사해두었다.

그러나 ‘민형소송규정’에서는 반드시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소송인이 판결문의 등본(謄本)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規費)를 납부한 후에 청구하거나 또는 허가를 얻어서 등사(謄寫)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결문 원본을 재판소가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민사판결문들이 각 지방재판소, 개항장재판소, 고등재판소(1899년 평리원) 등에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판결문들은 일부 분실되기도 하였으나, 상당량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시기 한국인들의 분쟁, 소송, 법 생활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문을 역사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편책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당시 재판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컬렉션의 완결성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은 법원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1889년부터 1918년까지 생산된 151책 약 1만 4,500여 건의 판결문(디지털화되어서 공개된 것)만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4 일본 역사재판 기록물도 물론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은 한국재판소가 통감부 재판소로 재판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5 이 자료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심희기 교수 연구팀이 탈초, 번역하였다.

〈표 1〉 법원기록보존소 민사판결문 건수(1889~1918)

연도	1889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건수	3	5	4	237	516	329	207	452
연도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건수	94	175	217	238	196	463	1,104	1,093
연도	1908	1909	1910	1911	1912	1916	1918	합계
건수	1,904	3,197	3,523	383	196	1	1	14,538

〈표 1〉을 보면, 1906년 이전의 판결문의 수량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연구자는 일제 식민통치자가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물론, 해당 시기 재판자료 일부가 폐기되거나 유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식민통치자의 필요에 따라서 폐기되었다는 주장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당시 여러 재판 관련 자료와 법부 공문서를 분석한 결과, 필자는 갑오개혁기에 제정된 각종 소송 법령이 지방에까지 널리 확산·시행되지 못해서 종전의 관행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부분적으로는 기록물의 보존 과정에서의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재판자료는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를 증빙하기 때문에 재판실무상 기록물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기 위해서 판례의 수집과 분석도 해야 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폐기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 만약 의도적으로 폐기하였다면, 전부 폐기하지 왜 일부는 남겨두었는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 법령상 판결문은 반드시 작성해서 해당 재판기관에서 보존해야 하였다. 그래서 전국의 재판기관에서 해당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한성부 지역보다는 지방의 판결문이 더 많이 남아 있어야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법원기록보존소에는 한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판결문들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다. 즉, 한성(부)재판소, 고등재판소, 평리원에서 재판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다음이 인천·경기도>충청도>강원도 지역의 순서로 남아 있다. 한성

에서 먼 지방으로 갈수록 판결문이 적게 남아 있다. 예컨대, 1908년 8월 1일 이전의 지방재판소 판결문을 권역별로 나누어보면, 인천항 재판소 59건, 경기 재판소 204건, 강원도 재판소 15건, 충청남도 재판소 38건, 충청북도 재판소 4건 등 총 318건에 불과하다. 이 점은 판결문의 수량과 법령의 시행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1895년에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황제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재판소 설치가 중단되었고 전임 사법관의 임용과 배치도 중단되었다. 따라서 한성재판소와 고등재판소(평리원)를 제외하면 지방의 재판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군수와 관찰사가 맡고 있었다. 신식 법령을 이해하고 재판실무에 적용해야 할 전임 사법관이 배치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군수와 관찰사는 종래의 방식으로 소송을 처결했기 때문에 신식 판결문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1907년 12월에 재판소구성법이 전부 개정되고, 일본인 판·검사가 대량으로 임용되기 시작한 1908년 이후에는 판결문이 크게 증가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255책의 미공개 판결문에서는 이 같은 양상이 더욱 선명히 나타난다. 255책의 미공개 판결문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산연도는 1908년 이후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1895~1907년까지의 판결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갑오개혁기에서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시기는 법령이 수시로 제·개정되고 폐지되는 과도기였다. 특히 사법개혁에 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법령을 그나마 준수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한 곳은 한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이었고 한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재판을 담당했던 군수와 관찰사가 종전의 관행대로 소지(所志)에 판결을 적고 교부하는 사례가 더 많았던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한제국의 법부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⁶ 그러다가 1908년도에 각급 재판소를 일본인 판·검사들이 장악하면서 판결문이 전국적으로 생산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현

6 도면희, 2014,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이승일, 2021, 『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 경인문화사.

상은 마치 대한제국기 당오전 유통구역(한성, 경기도, 충청도 일부, 황해도 일부 지역)과 상평통보 유통구역(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강원도 일부 지역)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사정과 매우 유사하다.

둘째, 1907년까지 각각의 판결문들은 낱장의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편책되었다는 점이다. 즉, 각 판결문은 재판관을 직접 수행한 기관에서 작성된 후에 낱장 형태로 보관해오다가 후일 어느 시점에 표지, 목차 등이 새롭게 첨부되어 편책되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표지와 목차의 재질 상태가 판결문 원본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각급 재판소에서 낱장 형태로 보관하다가 편책 과정을 거치는 시기는 일제의 사법침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된 이래로 재판조직과 재판사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가 1908년과 1910년이다. 1907년 12월에는 재판소구성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1908년부터 전국 각지에 재판소가 신설되고, 각 재판소에 일본인 판사, 검사, 서기 등이 대다수 임용되면서 판결문을 정리, 편철, 보관하는 기법에 일본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1908년에는 민형소송규칙이 제정되어 재판사무 절차와 방식도 일부 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0년 한국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 재판소로 변경되면서 조선총독부재판소처무규정에 따라서 판결문이 관리되었다. 빠르면 1908~1909년 한국 재판소에 일본인 사법관이 대량으로 배치되면서 종전 재판기관의 판결문들을 이관받아 정리하였거나 1910년 한국병합 이후 어느 시점에 조선총독부가 정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결록 제38권은 편책의 주체와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이 판결록은 1899년에 한성재판소에서 생산된 106건의 판결문을 묶은 것이다. 제38권의 판결문 낱장의 원본에는 ‘한성재판소’라고 판심(版心)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목차에는 ‘조선총독부재판소’라고 판심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판결문 원본은 한성재판소가 작성하였으나 목차와 표지의 작성과 편책은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직접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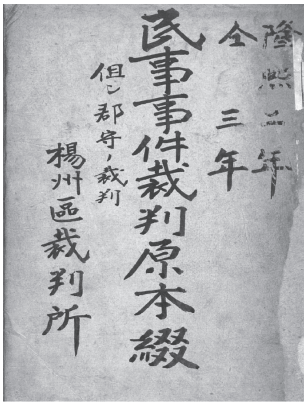


그림 2-1 제92권 표지

頁次	民事裁判原本目錄
一	一、損害賠償請求 評 櫻村景錫
一八	二、秋收租請 金在濟 外務部
二〇	三、損害賠償請求 林京玉 李玄立
二二	四、損害賠償請求 李桂玉 高奉教
二四	五、農牛金請 金建化 方榮鎮
二六	六、土地傳金 金在玉 洪致守
二八	七、安東信成 成燦鏞
三〇	八、損害賠償請求 李重熙 李昌史
三二	九、損害賠償請求 李重熙 李昌史
三四	十、損害賠償請求 李重熙 李昌史

그림 2-2 제92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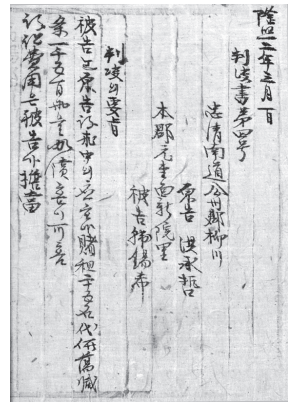


그림 2-3 제92권 판결문

며 1909년 10월 13일에야 법부고시 제26호로 설치되었다. 그런데 앞 표지에 강화구재판소로 표기된 것은 종전까지 강화군수가 재판한 판결문을 강화구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이를 이관받았고 그 이후에 편책,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제2조에 따르면,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설치한 재판소의 개청 전에 민사 형사의 소송은 종래의 재판소 및 군수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서는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소의 개청 전에 종래의 재판소 및 군수가 접수한 소송은 개청과 동시에 관할 재판소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단 평리원에서 접수한 소송은 경성공소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관련 서류도 모두 이관되었을 것이다.

한편, 제92권은 1908~1909년 사이에서 행해진 양주구재판소의 판결문이다. 실제 판결은 고양군수, 양주군수가 행한 것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기술되어 있으며 필기도구는 붓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표지는 일본어로 제목이 표기되었으며 목차를 기술한 필기도구도 붓이 아니라 펜으로 추정된다. 제92권도 판결문을 작성한 시점과 표지 및 목차, 편책한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주구재판소는 1909년 11월 1일에 개청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판결문이 개청 이

후에 수집되었고 추후에 일본인 관료가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판결문의 제목의 문제이다. 일부의 민사판결록에는 목차가 붙어 있다. 제29권에는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면수(丁數), 기록호(記錄號), 원고, 피고, 사건목(事件目), 재판소, 비고 등 7종이다. 이 중에서 면수는 판결문을 양쪽으로 펼친 상태에서 두 쪽을 1면으로 계산하여 표기한 것이다. 기록호(記錄號)는 판결문 원본에 표기되어 있는 사건번호를 가리킨다. 예컨대, “開國 〇〇〇年〇月〇日〇〇號” 또는 “判決書 第〇〇號” 등으로 표기되었다. 1895년 민형소송규정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부여되고 판결문이 작성되면서 기록되었다. 중간에 소송당사자들이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해당 사건은 사건번호는 부여되었으나 판결문은 작성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주의할 것이 사건목(事件目)이다. 사건목은 판결문의 제목이다. 원래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판결문의 제목을 붙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편책할 때 판결문의 표지와 목차를 새롭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결문 목차의 제목에는 일부 사항의 오류 또는 오기가 있다. 예컨대, 1896년 8월 6일의 제276호 판결문이 좋은 사례이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사건목(事件目)에는 “전송(田訟)”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해당 자료를 공개한 법원도서관에서도 이 같은 제목을 그대로 인용하여 “밭 소송(田訟)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 恤만 恤 理由가 無 恤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 恤

理由

被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 恤야 其正直 恤 줄을 認 恤 此에 對 恤야 原告의 陳供은 幾類之屋을 尹淳得에게 放賣 恤 었더니 尹哥가 因毀散賣 恤고 基址지거 被告에게 斥賣 恤 었스니 既不 奠居 恤고 毀家散賣 恤는 境에는 基址는 矣可還推

라호나 已賣之家基을 今不可推尋인데 瞰其毀家호고 欲覓基址호는 거시 理不當然호 然故로 正當이라고 흠이 可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無흠

이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보면 전송과는 관련이 없다. 이 소송은 전송이 아니라 가옥(家屋)과 그 기지(基址)를 둘러싼 분쟁이다. 정확한 제목을 붙인다면 ‘가사송(家舍訟)’ 또는 ‘가사(家舍) 및 그 기지(基址)에 관한 건’으로 붙여야 한다. 법원도서관에서 사건의 제목을 부여하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작성한 목차를 참조하여 그대로 제목을 붙여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모든 판결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사건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한 제목이 붙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조선총독부가 재정리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투여하여 판결문을 조사한 후에 목차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법원에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이 작성한 목차를 참고로 하여 사건명을 작성한 듯하다.

현재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사건제목은 2009년에 법원이 디지털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여한 사건의 제목이다.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사 판결록의 정보는 11항목으로, 사건번호, 문서 유형, 사건명, 원고(성명, 나이, 신분, 주소, 대리인), 피고(성명, 나이, 신분, 주소, 대리인), 판결요지, 이유, 판결일자, 재판소명, 판사명, 참여자명(재판소 직원명) 등이다. 이 항목 중에서 판결문 원본에 없는 사항이 판결문의 제목이다.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에서는 이 같은 사건제목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판결문 제목이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사판결문은 대한제국 재판소에서 생산되었으나 일제에 의한 한국 사법침략의 양상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대한제국기 일부 판결문에는 일본의 사법침략의 흔적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본인 법무보

좌관(15명) 및 법무보좌관보(12명)들은 이토 히로부미의 사법개혁 구상에 따라서 1906년 12월에 임용되었고 1907년 1월부터 직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사법사무의 보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민형사사건의 재판과 판결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판결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야스미 도키타로(安住時太郎)는 한성재판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제66권 제78호 판결서식의 위쪽 부분에 야스미 도키타로라는 일본인 법무보좌관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이는 판결문의 작성에도 일본인 법무보좌관이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1908년부터는 일본인들이 판사, 검사 및 서기로 직접 임용되면서 판결문이 일본어로 작성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본인 판사가 직접 재판에 나서면서 판결문의 작성과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처럼 대한제국기 민사판결문은 사법제도의 근대화 양상뿐만 아니라 일제의 사법 침략의 양상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민사분쟁의 유형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은 출생(親子 확인, 入養)에서 사망(相續, 山訟)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삶의 전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종합적인 자료이다. 특히, 개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전환기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시 민사 분쟁은 부동산 관련(田畠·土地, 家屋·家券, 貫入, 墳墓 등), 금융 및 금전 관련(於音, 換錢, 手票, 典當, 債訟, 口文錢, 賭租 등), 권리 관련(導掌權, 旅客主人權, 漁場主人權, 貢人權 등), 각종 물품 및 물품대금 관련(米價, 牛價, 鹽價, 木材價, 藥價 등), 인사 및 상속 관련(養子 및 罷養, 離婚, 親族相續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사판결문을 분석하면, 당시 한국인의 일상 관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전통적 생활상이 근대적 사법체계하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복원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사판결문에는 근대 시기 한국인의 경

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도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예컨대, 전답 및 가옥의 매매가격, 거래 방식, 소작료, 채권-채무 계약의 특성, 이자율, 전당의 목적물, 전당 기간, 전당 이율, 시장에서의 관행적인 이자율, 당오전·엽전·백동화·일본 화폐 등 다양한 화폐의 가치와 교환 비율, 지방과 서울의 화폐 가치의 차이 등 사회적·경제적 정보를 풍부하게 알려준다.

강릉원주대 연구팀에서는 1895년부터 1905년까지 한성재판소에서 생산된 민사판결문 2,800여 건을 정리, 분석해서 그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⁷ 우선 약 2,793건의 판결문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민사소송사건의 종류와 건수를 정리하

〈표 2〉 한성재판소(1895~1905) 소송사건의 분류

구분	사건 분류	소계(비율)	합계(비율)
不動産 관련	田畝·土地 관계[田畝訟]	238(8%)	510(18%)
	家屋·建物 관계[家舍訟]	248(8%)	
	墳墓·山地 관계[山訟]	20	
	洑 관계	4	
金錢 등 관련	債訟 관계[債訟]	1,096(39%)	2,270(81%)
	物品 및 物品價 關係[物品訟]	516(18%)	
	各種 金錢 關係[錢訟]	262(9%)	
	於音 등 關係[於音訟]	266(9%)	
	損害賠償 및 勒奪金 關係	39	
	典當 關係[典當訟]	12	
	賭租·賭錢 關係	29	
	租稅 會計 關係	35	
	財産權 關係	15	
人事·相續 相關	人事 關係	3	11
	相續 關係	8	
기타		2	2
합계		2,793건	

였다. 이어서 민사분쟁의 유형을 판결문 내용, 즉 청구 취지와 청구목적물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해당 분류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추세만 알 수 있을 뿐이다.

한성부에서는 ‘금전 등 관련’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총 2,270건으로 전체 사건의 81%였다. ‘부동산 관련’ 사건은 총 510건으로 전체 사건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미비하였다. ‘인사·상속 관련’ 사건은 11건, ‘기타’ 사건이 2건이다. 결국 한성재판소 판결문을 통해 본 1895~1905년 민사소송의 핵심은 ‘금전 등 관련’ 사건이었다. 조선 후기 이래 ‘채송(債訟)’, ‘전답송(田畓訟)’, ‘산송(山訟)’이 3대 소송으로 지칭될 정도로 많았다. 그런데 한성재판소가 한성부와의 잦은 합설(合設)과 분리에도 불구하고 한성재판소 판결문만 놓고 볼 때, ‘전답송’, ‘산송’이 미비한 수준인 점은 이례적이다. 이 점은 앞으로 보다 전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사건 분류에 있는 각 항목에 어떠한 사건내용, 즉 ‘사건명’이 포함되는지 살펴보자. ‘부동산 관련’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답(田畓)·토지(土地) 관계[田畓訟]’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전답송이라 표현되는 것으로, 전답의 소유·매매·환퇴(還退)·반환, 전답권(田畓券) 문제, 전답가(田畓價) 문제 등을 다루는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가옥(家屋)·건물(建物) 관계[家舍訟]’는 전통적으로 가사송(家舍訟)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가옥의 소유·매매·환퇴(還退)·반환, 가권(家券)·가계(家契) 문제, 가사가(家舍價) 문제, 기타 전(廩)·점방(店房) 문제 등을 다루는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분묘(墳墓)·산지(山地) 관계[山訟]’는 이는 전통적으로 산송이라 표현되는 것으로, 분묘 및 산지·산판(山坂)·산국(山局)의 소유·매매·환퇴(還退)·반환, 산지권(山地券) 문제, 산지(山地)·분묘가(墳墓價) 문제, 암장(暗葬)·투장(偷葬)·능장(勒葬) 및 굴충(掘塚)·굴이(掘移) 등을 다

7 이하의 서술은 강릉원주대학교 연구팀의 발표문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전병무, 2018, 「한성재판소 민사분쟁의 유형과 성격」, 『근대 민사판결자료를 통해 본 민사 분쟁과 재판실무』, 강릉원주대학교, 한국법사학회공동학술대회.

투는 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간혹 송추(松楸) 문제는 별도의 사건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팀에서는 이를 산송의 범주에 넣었다. ‘보(漕) 관계’는 보 축조, 보 소유권, 보세(漕稅) 등과 관련된 소송이다.

‘금전 등 관련’은 채송 관계[債訟], 물품(物品) 및 물품가(物品價) 관계[物品訟], 각종(各種) 금전(金錢) 관계[錢訟], 어음(於音) 등 관계[於音訟], 손해배상(損害賠償) 및 피탈금(被奪金) 관계, 전당(典當) 관계[典當訟], 미곡(米穀), 추수곡(秋收穀) 관계, 조세(租稅) 회계(會計) 관계, 재산권(財產權) 관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채송 관계’는 전통적으로 채권·채무 관련 소송을 나타내는 채송(債訟) 관련 사건이다. 채용전(債用錢), 채전(債錢), 채금(債金) 등으로 표현되는 각종 빚과 관련된 소송이다. 다만 재판소서기 등이 붙인 ‘사건명’에는 ‘채송 관계’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특징이 있다. 당시 ‘채송’을 바라보는 기준과 방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명’ 작명자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 ‘물품 및 물품가 관계’는 전답과 가사(家舍) 등을 제외한 농산물·해산물·임산물 등 각종 물품의 소유권·매매·반환 및 매매가(賣買價) 관련 사건들이다. ‘각종(各種) 금전(金錢) 관계[錢訟]’는 이른바 전송(錢訟)으로 임치전(任置錢), 부비전(浮費錢), 계전(契錢), 급료(給料) 및 품삯(雇傭錢), 위약금(違約金), 동상전(同商錢) 및 이익금(利益金), 구문전(口文錢) 등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어음(於音) 등 관계[於音訟]’는 어음(於音), 수표(手標), 환전(換錢) 등의 사건이다.

‘손해배상(損害賠償) 및 능탈금(勒奪金) 관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과 능탈금, 즉 상대방의 공갈·강요·횡령·사기 기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건들이다. ‘전당 관계’는 일단 전당물(典當物)의 분실·반환, 전당표(典當票) 문제 등으로 국한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재판소서기 등이 붙인 ‘사건명’에는 전답·가사·어음 등을 전당하고 발생한 채권·채무 사건에 대해 ‘채송’이라고 표기한 것이 상당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은 일단 ‘채송 관계’로 분류하였다.

‘도조(賭租), 도전(賭錢) 관계’는 말 그대로 도조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조세

회계 관계’는 각종 부세(賦稅)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해세(海稅), 포사세(庖肆稅), 둔결전(屯結錢), 녹봉(祿俸), 역답상납조(驛番上納租) 등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재산권 관계’는 조선 후기 이래 중요한 재산권의 일종인 도장권(導掌權), 공인권(貢人權), 경주인권(京主人權) 등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위 한성재판소 판결문에는 견탈도장(見奪導掌)반환, 사음이작(舍音移作), 어과주인권물침(魚果主人權勿侵), 기인계(其人契) 공물가(貢物價) 물침(勿侵), 저리가(邸吏價) 미지급, 공물역가(貢物役價) 지급 등의 사건이 있다.

IV. 민사판결문의 가치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법 의식이 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판례는 ‘살아 있는 법(living law)’이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등, 법제사·법사회사 연구에서 더 할 나위 없이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 더구나 서구적 법 개념과 재판제도가 도입되던 초창기라면 말 그대로 연구의 보고이다. 하지만 적어도 식민지 시기 이전의 판결문에 관한 한 연구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 존재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 등에 근대 시기 한국의 판결문이 보존되어 있으나 주로 형사판결문이어서 당시의 법과 사회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민속원)이 공식 출판됨으로써 한국 법제사 연구의 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1895년 4월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 및 그 부속법령(민형소송규정 등)의 시행을 통해 근대적 재판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근대적 민사소송은 사인(私人)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의 재판 절차를 말하지만, 대한제국의 재판 절차는 사실상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과도적 사법체제였다. 하지만 미흡하게나마 각급 재판소의 설치, 심급제의 도입, 소송 법규의 제정, 재판의 공개, 판결문의 근대적 변화, 전임 사법관의

임용 등 근대적 요소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재판 사례들은, 신·구의 관행들이 병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재판정으로 유입된 다양한 분쟁과 갈등에 대해 재판제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자료이다. 그리고 민사판결문을 살펴보면 서구형 법체제와 재판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재판의 존재 방식, 법 규범의 적용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은 1876년 개항 이래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고, 경제적 침략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가옥 및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들 간에는 권리의 보호 및 침해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였다. 특히, 차금(借金) 및 부동산 관련 분쟁이 많았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행위를 합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각종 재판 과정에서도 치외법권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켜나갔다. 민사판결문에 수록된 교섭사건을 통하여 외국인이 획득한 치외법권이 한국 사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에는 한국의 전통 법관념과 서구의 근대법이 서로 혼재되어 충돌하는 양상과 근대 사법체제의 도입이 한국인의 법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가 자세히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적 법 개념과 제도 등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수용되었고 그 같은 서구적 법 개념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08년 이후 일본인 사법관이 한국 재판소에 대거 임용되면서 이루어진 법제의 변화, 식민지적 근대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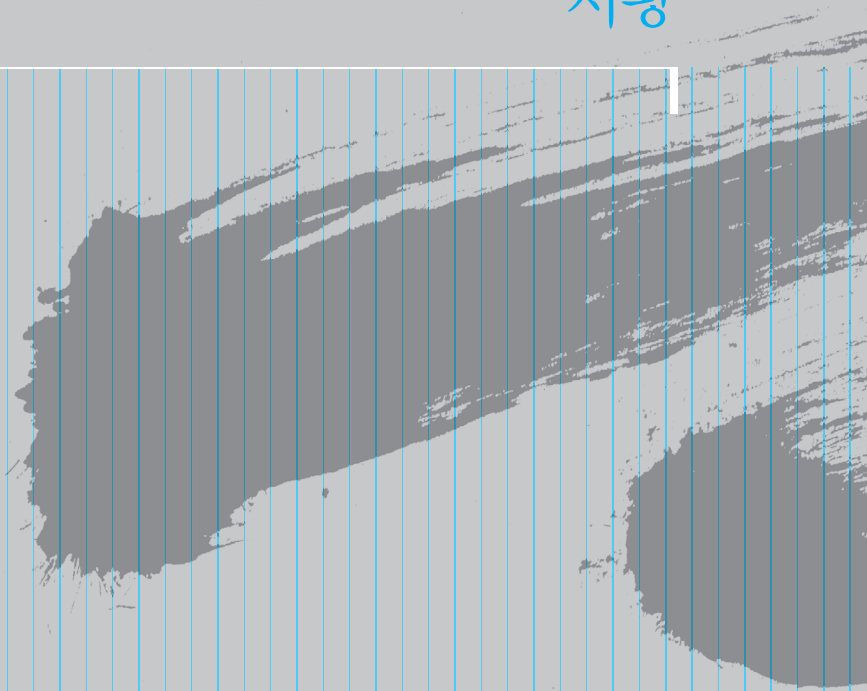
또한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에 관한 연구는 한국 근대 법사 연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민사법사·법조사·법사회사에 관한 연구 공백을 채우고 근대 초기 한국법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자료는 향후의 근대 초 한국에서의 법사회사 연구, 한국법의 근대화와 식민지법제도의 성립 과정, 민사법제와 민사·상사관습 연구, 사법제도사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활용 가치가 높다. 지금까지 서구의 법문화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유

를 종종 전통적인 유교적 법문화의 지속, 식민통치 및 특수한 근대화의 경험 등으로 설명한다. 이 자료들은 한국의 전통적 법문화가 근대적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민사판결문은 한국 근대 지방의 민사 분쟁을 일부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민사 관행·관습·민속·생활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이자율, 전당의 담보 기간, 소작료 산정 방식, 가옥의 매매가, 외국 화폐와의 교환 비율 등 각 지역의 지역사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중앙 차원 혹은 전국 단위의 한국인의 모습이 주로 밝혀졌다면, 지역의 관습과 지역민의 일상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므로 사회사, 경제사 분야의 연구 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한국 민법의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법학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근대의 관습법의 구체적인 실태와 법 생활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판례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 대학의 법사학(法史學) 교육이 대체로 유럽의 법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면 한국 근대 법사 정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구적인 발해사 연구와 인식

– 송기호, 2020,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임상선 |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 I. 책명과 목차
- II. 발해사 성격과 남북국시대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 III. 국내외 발해사 연구에 대하여
- IV. 중국의 동북공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책명과 목차

1. ‘발해 사학사’

2020년 12월 초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송기호 교수님이 보내주신 책 『발해 사학사 연구』(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연구총서 36,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11월 20일 초판 1쇄, 본문 495쪽)를 받았다. 반가운 마음에 책을 들춰보니 <머리말-발해사 연구 3부작을 마무리하며>에서 2021년 2월 정년을 맞아 대학을 떠나기 전에 『발해 정치사 연구』(1995),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2011)에 이어 『발해 사학사 연구』를 간행함으로써 필자가 구상한 발해사 연구 3부작이 완결되었다고 했다(v쪽). 필자가 10년 전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책머리에>서 밝힌 발해사 연구서 3부작 구상을 퇴임 직전에 완성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처음 책을 받아보고 표지의 북청지도와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지도에는 발해사 연구자들이 꿈에라도 가보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발해 남경남해부가 있던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토성리의 청해토성(靑海土城)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다. 또한 본서의 제목에 있는 ‘사학사(史學史)’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역사학의 역사라고 해서 역사서나 역사가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는 용어라고 할 때, 책명이 발해에 대한 역사서나 역사가에 대한 연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머리말과 목차를 보고서야, 발해 연구사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필자가 본서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2. 목차와 논문의 출처

머리말에 이어 3부와 부록에 수록한 전체 12편의 논문 중에는 30여 년 전에 발표한 글도 있어 책 출간에 맞추어 수정이나 윤문, 혹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발표 이후의 자료를 추가하되 각주에 ‘추가’로 표시했다.(v쪽)

본서는 연구사가 주제임에도 저자도 언급하였듯이 최신의 연구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수록된 개별 논문은 발표 당시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여전히 한국의 발해사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본서에 수록된 논문의 의미는 발표 시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 본서 간행의 첫 번째 의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차에 수록된 논문의 출처와 게재 연도(본서 445쪽, 이하 해당 쪽수만 표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머리말 - 발해사 연구 3부작을 마무리하며

제Ⅰ부 남북국시대론

제1장 南北國時論의 기초적 검토(『한국고대사연구회 회보』 24호, 1992)

제2장 남북국의 전쟁, 경쟁과 교류(『신라사학보』 45, 2019)

제Ⅱ부 국내의 발해사 연구

제3장 조선시대 史書에 나타난 발해관(『韓國史研究』 72, 1991)

제4장 柳得恭의 생애와 저술(『한국의 역사가柳得恭』, 『韓國史 市民講座』 12, 1993)

제5장 柳得恭의 『渤海考』와 成海應(『朝鮮의 政治와 社會』, 崔承熙教授停年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집문당, 2002)

제6장 北韓의 渤海史·統一新羅史 研究(『北韓의 古代史研究』, 역사학회 편, 일조각, 1991)

제7장 일본에서 접근한 발해사-酒寄雅志와 石井正敏의 저서를 읽고(『歷史學報』 174, 2002)

제8장 러시아 연해주에 발해사 연구(『알타이학의 어제와 오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제Ⅲ부 중국의 동북공정과 발해사

제9장 중국의 한국고대사 빼앗기 공작(『역사비평』 65, 겨울호, 역사비평사,

2003)

제10장 중국의 동북공정, 그 후」(『韓國史論』 5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1)

제11장 대외관계에서 본 발해 정권의 속성(『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

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15, 2006)

부록 발해사 연구의 길(『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

논총 1, 사계절, 2014)

이제 본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읽으면서 느낀 소회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¹

II. 발해사 성격과 남북국시대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본서의 첫 번째에 있는 제1부 남북국시대론은 이 책의 중심 주제이다. 저자는 자신의 40여 년간 발해사 연구 결과를 ‘고구려를 계승한 외왕내제(外王內帝)의 국가로서, 신라(新羅)와 함께 남북국을 이루었다’로 요약하고, 외왕내제는 『발해 정치사 연구』에서, 고구려 계승성은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에서 다루고, 남북국을 바로 본서에서 다루었다고 밝히고 있다(v쪽).

1. 남북국시대론(南北國時代論)의 기초적 검토

한국사에서 발해사의 성격을 논하고 남북국시대 용어의 타당성을 설명한 글이며, 저자가 본서에서 가장 중시하는 내용이다. 발해사 성격에 대한 저자의 기본

1 본서에 대한 기왕의 서평에서는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수록된 글 이후 발표된 연구 동향을 소개한 바 있다(윤재운, 2021, 「국내외 발해사 연구 동향의 집성-송기호, 『발해 사학사 연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高句麗渤海研究』 70).

적인 인식을 알 수 있고, 아울러 남북국시대론의 의미는 현재 한국학계에서도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북국시대론’이란 발해사를 한국사의 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통일신라시대’ 또는 ‘통일신라 및 발해 시대’ 대신 ‘남북국시대’라는 시대 구분 용어를 사용하자는 논의이다. 일찍이 유득공(柳得恭)이 『발해고(渤海考)』(1784)에서 주장하고 1975년 이우성(李佑成)이 다시 강력히 제기하였으나 1990년 전후까지 역사학계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뿐 아니라 고려에의 계승성, 신라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하면 발해사가 한국사에 속한다는 사실이 규명되고, 그 결과 남북국시대가 설정된다고 보았다(4쪽). 이 가운데 고구려 계승성 규명이 중심이고, 발해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으나, 고려에의 계승성 연구가 매우 미진한 편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현재 발해사 연구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 저자의 발해사 인식

저자의 발해사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다음의 글에서 나타난다.

발해는 종족 구성, 중심지의 위치, 발해 멸망 이후의 상황 등 여러 면에서 오로지 한국사에만 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준다. 그런 면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매우 다른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적극적으로 인식한 시기보다는 오히려 배제한 시기가 더 길었던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4쪽).

발해의 종족, 중심지, 멸망 이후 상황 등의 면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매우 다른 역사적 성격 때문에 과거에 한국사에만 속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 배제한 시기가 길었다고 보고 있다. 종족, 중심지, 멸망 이후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글에서 저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종족 이동이나 영토 변경이 빈번하였던 지역에서는 특정의 역사가 과연 현재의 어느 나라 역사에 속하는가 하는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한다. 발해사도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말갈인과 고구려인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발해 사회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느냐에 따라서도 역사적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 필자는 발해사가 한국사에 속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주 지역의 역사에도 속할 수 있는 양면성과 공유성을 지닌 존재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발해사가 한국사에 속할 수 없고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오직 중국사에만 속한다는 중국의 주장이나,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서 오직 한국사에만 속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모두 발해사의 일면만을 강조한 독단에 불과하다 (5쪽).

위의 글은 대략 ‘발해는 말갈인과 고구려인으로 이루어진 복합사회이고, 발해가 있던 지역은 종족 이동이나 영토 변경이 빈번하였던 지역이어서, 발해의 역사는 중국사 혹은 한국사 어느 한 곳에 귀속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인 듯하다. 또한 논문 뒷 부분의 다음과 같은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발해는 비록 고구려 계승성을 지닌 국가이지만, 영토나 주민 모두 고구려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은 아니다. 그 성격에서도 통일신라와는 달리 한국사이면서 만주사에도 속할 수 있는 양면성을 보인다. 따라서 발해사를 한국사의 중심으로 보려는 시도는 역사적 실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10~11쪽).

고구려, 백제와 신라의 경우는 중심지가 한반도에 있었고 종족도 오늘날 한민족의 일원이어서 한국사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발해는 종족이 고구려

인과 말갈인이고, 중심지가 만주 지역에 있어 만주 지역의 역사도 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된다. 중심지를 수도의 위치로 이해할 때, 발해의 수도가 있던 곳이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사가 분명한 고구려와 발해가 다른 점은 종족에서 말갈(靺鞨)의 존재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발해에 참여한 말갈이 고구려 시기 주민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점차 규명되고 있어, 저자의 염려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 또한 발해사의 귀속에 중요한 요소인 계승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발해사가 중국사보다 한국사에 가까운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멸망 이후 중원(中原) 지역 어느 왕조(王朝)나 민족(民族)도 발해의 주민과 역사를 자신에게 속한다거나 계승했다고 한 적이 없고, 오직 고려나 조선에서 천명되었기 때문이다.

2) 남북국시대 설정의 이유

발해사가 한국사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저자는 남북국시대 용어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한국사에서 ‘삼국시대’라는 용어나 중국사에서 ‘남북조시대’라는 용어가 현실적으로 흔히 통용되고 있는 점에서 신라와 발해가 존재하던 시기를 포괄하여 ‘통일신라시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남북국시대’라는 용어가 문제점을 덜 안고 있다. 둘째, 발해와 신라는 하나의 통일체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므로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북한의 견해는 현재의 시각을 지나치게 과거에 투영한 것이다. 셋째, 발해와 신라, 또는 발해와 고려 사이에 동족 의식의 유무로 남북국시대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삼국시대나 중국의 남북조시대 용어 사례로 미루어 성립되기 어렵다. 그래서 8세기에서 10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사 범주에 신라와 발해를 모두 포괄한다면, 당시에 사용되던 명칭에서 유래한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로 이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5~9쪽).

삼국통일의 평가와 통일신라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발해가 한국사에 속한다는 것과 신라의 삼국통일이 역사적 의의가 있다는 두 가지 평가에서 어느 하나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국시대’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삼국통일’을 인정하며 ‘통일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상호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12쪽).

삼국통일과 관련해서 발해는 삼국통일이 일단락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국가이고, 발해의 건국은 삼국통일이 부분적인 통일에 그쳤던 한계성을 ‘보완’해주는 사건이었다고 한다(11쪽). 현재 학계에서 남북국시대와 관련된 문제 제기나 용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위에서 언급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2. 남북국의 전쟁, 경쟁과 교류

제1장(남북국시대론의 기초적 검토)을 발표하고 30년 후에 발표한 논문이다. 발해와 신라가 대립 일변도였다는 일본학계의 견해와 2016년 국정교과서 파동에서 남북국(南北國)이라는 용어가 좌파적인 사고를 반영한다며 ‘통일신라와 발해’로 시대를 설정하고 표제어에도 ‘남북국시대’가 등장하지 않는 흐름에 대한 반론의 글이다(15~16쪽).

현재 발해와 신라 “두 나라는 200여 년 간 대립적이었다”는 서술이 통설인데, 상식의 시각에서 보면, 서로 국경을 마주하면서 200여 년간 대립만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17쪽)며 전쟁과 경쟁, 교류의 사례를 제시했다.

1) 전쟁과 경쟁의 해석

732년 발해 무왕(武王)의 당나라 등주(登州)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신라의 발해 공격은 실패했고(17~19쪽), 발해 선왕(宣王)의 9세기 전반 남쪽 신라 평정 기사는 발해가 대동강(大同江) 이북을 차지한 사실을 표현한 것이며(19쪽), 926년 거란(契丹)이 발해를 멸망시킬 때의 신라(新羅) 참전도 별 의미 없는 상징적 사건이고(20쪽), 이른바 ‘일본의 신라정토(新羅征討)계획’도 사실이 아니

라고(21쪽) 논증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발해가 평양(平壤) 지역까지 차지하였다는 주장이다. 종래 학계에서는 압록강 이남으로부터 대동강 이북 지역에 비정되는 발해의 부(府)·주(州)·현(縣)이 없고, 발해 유적, 유물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지역을 발해 영역으로 처리하는 것에 주저하는 연구자가 많았다. 그런데 평양의 안학궁지(安鶴宮址)에서 발해 시기로 추정되는 와당(瓦當)이 나왔다는 일본 학자의 주장²과 『신당서(新唐書)』 발해전(渤海傳)에 보이는 발해 특산물의 하나인 ‘낙유지리(樂游之梨)’가 ‘낙랑지리(樂浪之梨)’, 즉 ‘낙랑현의 배’일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발해 세력이 평양까지 내려와 있었을 것이라고 한 본서의 주장은 매우 시사적이다(19쪽). 전근대 세계에서 세력이나 국가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강이나 산과 같은 자연 지형인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과 역사에서 경계를 선으로 표시하는 예를 참고한다면 대동강으로부터 압록강까지를 공지(空地)나 중간지대로 설정하려는 일부 견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본서의 주장과 신라의 한반도 서쪽 지역의 북상 한계가 대동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동강이 발해의 남쪽 한계이며, 양국의 경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발해뿐 아니라 신라까지도 연계된 ‘일본의 신라정토계획’이 발해와 신라가 대립적이었다는 일본 학계의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발해 개입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사료가 없다는 설명(21쪽)도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 평자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본 학계는 신라정토계획이 당시 일본에서 중요한 사건이고 발해와 일본 교류도 이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신라정토계획에 발해의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신라정토계획을 취소할 때 일본 측이 발해와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신라정토계획이 일본 국내적인 요인에 의한 것

2 藤田亮策, 1963, 「新羅九州五京攷」, 『朝鮮學論考』, 藤田先生記念事業會, 364쪽; 早乙女雅博, 2003, 「渤海と高句麗」, 『日本と渤海の古代史』, 山川出版社, 229쪽.

이지 발해의 참여나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³

2) 교류의 흔적

전쟁과 경쟁을 검토하고 이어서 발해와 신라 간의 교류의 흔적을 찾았다. 첫째, 발해의 주요 대외교통로 가운데 신라도(新羅道)는 발해와 신라 양국의 교류를 입증하는 분명한 사례라 한다(24~30쪽). 가탐(賈耽)(730~805)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가 말하는 “渤海國南海·鴨渚·扶餘·柵城四府, 並是高句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至柵城府, 凡三十九驛.”(『三國史記』 권37, 地理 4)의 기록에서 신라 천정군으로부터 발해 책성부(동경)를 거쳐 발해 수도(上京城 또는 상경 천도 이전의 顯州)에 이르는 길이 신라도이고, “井泉郡, 本高句麗泉井郡, 文武王二十一年(681)取之, 景德王改名, 築炭項關門, 今湧州.”(『三國史記』 권35, 地理 2, 朔州)라는 기록을 근거로 경덕왕 16년(757) 12월 전국의 지명을 고칠 때에 정천군으로 바뀌었으므로, 천정군 지명의 시기인 757년 이전에 신라도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간주한다. 764년 당국(唐國) 칙사(勅使) 한조채(韓朝彩)가 발해에서 신라로 간 경우⁴와 신라가 790년과 812년 발해에 사신을 파견⁵했을 때가 현존 기록상에서 신라도와 역로를 이용한 사례로 본다(32쪽). 둘째, 탄항관문(炭項關門)을 신라도 설치 이후 양국의 빈번한 교류의 상징으로 해석한다(28~33쪽). 관문은 발해와 신라의 동쪽 국경선인 니하(泥河), 즉 현재의 금야강 남쪽에 쌓은 장성(長城)에 있었을 것이며, ‘성은 단절을 상징하고, 거기에 둔 관문은 왕래를 상징한다. 교류가 없으면 굳이 관문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발해와의 국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27쪽)라고 설명한다. 셋째, 신라가 발해 대조영(大祚榮)에게 진골(眞骨)에 해당하는 대아찬(大阿賧) 관등을 수여한 것은 신라

3 임상선, 2017, 「8세기 韓日關係史 爭點의 再檢討-渤海·日本간의 國交 개시와 ‘新羅征討計劃’ 문제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41.

4 『續日本紀』 권25, 淳仁天皇 天平寶字 8년(764) 7월 甲寅.

5 『三國史記』 권10, 新羅 元聖王 6년: 新羅 憲德王 4년 秋九月.

도 개설 전에 양국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⁶ 넷째, 발해의 선조성(宣詔省)이 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신라 선교성(宣敎省)의 설치에 영향을 끼친 점, 발해 지배층에 신라계로 보이는 인물(가령, 朴漁, 朴昇⁷)이 있는 점, 울릉도에서 발해 토기가 출토된 사례 등은 양국 간의 관제(官制)와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33~34쪽).

덧붙여 남북국시대란 용어가 교과서에 반영된 것은 저자가 1980년대 북한 바로알기운동이 벌어질 때, 당시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던 변태섭 교수에게 발해사를 한국사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일화를 소개하였다. 남북국시대론은 발해와 신라 모두 한국사의 적자로 삼아야 한다는 당위론이며, ‘이념의 소산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78쪽).

중국과 일부 일본 학계에서 발해사가 한국사의 일원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로 발해와 신라 양국이 시종일관 대립적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앞의 글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전쟁과 경쟁을 검토하고 이어서 기억의 편린들을 이리저리 모아 발해와 신라 간의 교류의 흔적을 찾은 것이다. 저자의 주장은 현재 한국의 발해사학계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논리이다.

Ⅲ. 국내외 발해사 연구에 대하여

제2부는 국내(제3장~제6장)와 국외(제7장~제8장)의 발해사 연구와 동향을 소개한 글이다. 제3장~제5장은 발해에 관한 사료(史料)와 인물(人物)을 검토한 것으로 통상의 사학사적(史學史的) 논문이라 할 수 있고,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북한, 일본, 러시아의 발해사 연구동향을 정리한 글이다.

6 『東文選』 권33, 謝不許北國居上表.

7 『高麗史』 권1, 太祖 8년 十二月戊子; 『高麗史』 권2, 태조 21년.

1. 조선시대 사서(史書)에 나타난 발해관

조선시대 발해사 인식을 자료에 기반하여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취급하지 않던 단계에서 점차 우리 역사로 인식하며 3단계를 거쳐 변화해갔다고 보았다.

1단계는 인접 국가로의 인식이다. 발해사를 우리 역사가 아니라 단지 신라에 이웃하였던 국가, 즉 발해의 역사로 다룬 『동국통감(東國通鑑)』(1485)의 발해사 인식이며, 이러한 인식은 17세기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2단계는 고구려 계승국으로서의 인식이다. 전기는 발해를 고구려 영토를 계승한 국가로 인식한 단계로서 한백겸(韓百謙)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1615)에 보인다. 그러나 『동국통감』의 영향이 남아, 허목(許穆)의 『동사(東事)』(1667)와 같이 발해사가 우리 역사의 일부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 후기는 영토 및 주민의 계승 인식 단계로서 신경준(申景濬)의 『강계고(疆界考)』(56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해가 고구려 영토를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그 건국자도 고구려 유민이었다는 인식이다. 적극적으로 발해사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취급한다. 3단계는 발해를 독립국으로 인식한다. 통일신라와 대등하였던 독립국으로 다루거나 때로는 발해가 신라보다 우위였다고 인식하는 두 갈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삼국이나 통일신라와 대등하게 세가(世家), 세기(世紀) 등으로 다루는 이종휘의 『동사(東史)』(18세기 후반)와 같은 경우와 남북국시대론을 주장하는 유득공의 『발해고』(1784) 인식으로 분류했다.

이 논문이 기존의 발해사 인식 연구와 다른 차이점은 발해의 주요 지리 문제에 대해 고증한 것이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문헌에서 발해 지리 문제의 주요 주제인 건국지(建國地), 5경(京) 15부(府) 위치 및 발해의 서계(西界)와 남계(南界) 비정을 검토, 비교했다. 발해 지리 연구의 기본 문헌인 『신당서』 발해전과 『요사(遼史)』 지리지(地理志)를 각 시기 문헌에서 어떻게 인용, 해석, 비판했는지를 자세히 검토했다. 특히 유득공의 『발해고』(1권본)가 『요사』 지리지의 오류를 처음 깨닫고, 그 이후 『발해고』(4권본), 성해응(成海應)과 정약용(丁若鏞), 한진서(韓鎭書)에 이르러 발해 지리 고증의 백미를 보여주었고, 이렇게

『요사』 지리지의 기록이 착란된 원인을 밝힌 것은 중국과 조선을 통틀어 최초로 서 발해 지리 고증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게 평가했다(67쪽). 다만, 조선시대 발해사 연구가 지리 이외의 발해사 실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한계라 지적했다. 조선시대 발해관 변화의 계기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친 여러 차례의 외란(外亂)과 1712년 백두산 정계비(定界碑) 설치라고 보았다.

2. 유득공에 대하여

제4장(柳得恭의 생애와 저술)과 제5장(柳得恭의 『渤海考』와 成海應)은 남북국시대론을 최초로 제기한 조선시대 유득공에 대한 논술이다. 서술의 편의상 제5장의 『발해고』를 먼저 검토하고, 제4장에서 유득공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발해고』 이본(異本)

제5장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발해고』 필사본을 비교하고, 이어서 유득공과 함께 검서관(檢書官) 생활을 한 성해응의 지리 고증을 검토했다. 저자는 조선고서간행회본(朝鮮古書刊行會本) 『발해고』와 별개의 국립중앙도서관에 『발해고』 1권본과 4권본이 있다는 것을 1999년 12월에 발간된 『발해고』 번역서에서 밝혔다.⁸ 종래 알려진 인쇄본 조선고서간행회본(朝鮮古書刊行會本) 『발해고』가 9고(考)로 이루어진 1권본(卷本)이고, 이와는 달리 4권으로 증보(增補)된 필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했다.

이 장에서는 1권본이 군고(君考), 신고(臣考), 지리고(地理考), 직관고(職官考), 의장고(儀章考), 물산고(物産考), 국어고(國語考), 국서고(國書考), 속국고(屬國考)의 9고(考)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4권본 두 종류를 검토했

8 柳得恭 지음, 송기호 옮김, 2000, 『발해고』(한국고전총서 1), ‘옮긴이의 말’(6~7쪽)과 ‘유득공과 『발해고』’(24~28쪽), 홍익출판사.

다. 세 종류의 『발해고』는 1권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권본, 경희대학교 도서관 소장 4권본 순서로 작성되었고, 작성시기는 1권본이 유득공의 서문에 의해 1784년이고, 4권본은 유득공이 사망한 1807년 이전이 분명하다고 했다(113쪽). 4권본과 1권본의 체제를 검토하고, 5경 15부의 위치 고증을 『요사』 지리지, 『성경통지(盛京通志)』(1684년 완성), 『청일통지(淸一統志)』(1764년 완성본) 및 성해응(成海應)의 지리 고증과 함께 비교했다. 그 결과 『요사』 지리지에서 요(遼) 동경도(東京道) 관내, 특히 요동(遼東) 지방에 발해 행정구역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처럼 서술된 오류를 『성경통지』, 『청일통지』, 『발해고』를 거치면서 점차 시정해나간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121쪽의 표 5-3 지리 고증 비교표 참조). 나아가 유득공의 발해 지리 고증은 “성해응에게 영향을 주었고, 마침내 정약용, 한진서에 이르러 일단락된 것을 볼 때 발해 사학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은 크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지리서를 토대로 하면서 국내에서 발해 지리 고증의 출발점을 마련한 인물이 바로 유득공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발해 지리 고증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122쪽).

『발해고』 이본은 저자의 소개 이후, 저자 번역서의 서평을 작성한 필자를 포함한 일련의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⁹ 연구 결과 종래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오단(誤斷)의 저례(著例)’로 알려진 ‘9고본(1권본)’ 지리고가 ‘5고본(4권본)’에서는 정약용과 한진서 등의 지리비정에 거의 유사하고 나아가 오늘의 통설에도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¹⁰ 4권본은 1권본에 비해 많은 양적 증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권본의 잘못을 여러 군데에서 수정하였는데, 특히 체제적인 측면에서 9고로 나누었던 것을 5고로 대폭 축약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부실하였던

9 林相先, 2000, 「柳得恭의 《渤海考》異本: 유득공 著, 송기호 譯, 2000, 《발해고》, 홍익출판사」, 『歷史學報』 166; 박인호, 2002, 「『발해고』에 나타난 유득공의 역사지리인식」, 『韓國史學史學報』 6; 김중복, 2010, 「수정본 《渤海考》의 내용과 집필 시기」, 『泰東古典研究』 26.

10 林相先, 2000, 위의 글, 239쪽.

「지리고」를 대폭 정비했으며,¹¹ 나아가 유득공의 연구는 정약용, 한치윤 등 후학의 극복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¹²

『발해고』 논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정리할 문제가 있다. 앞의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해고』 이본에 대한 명칭이 연구자에 따라 달라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발해고』 이본을 처음 소개한 저자는 책 본문 서술에 따라 1권본과 4권본이라 하고, 평자는 내부 고찰의 편목에 따라 9고본과 5고본으로 구분하고, 김종복은 초고본과 수정본으로 칭했다. 같은 책이 서로 달리 불리면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공자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기왕에 지적인 바와 같이, ‘일권(一卷)’을 오늘날 ‘한 권의 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사권(四卷)’은 ‘네 권의 책’이 되지만, 실상은 한 책 안의 권1에서 권4까지의 본문 편차(編次)를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4권본(5고본)의 것으로 판명된 성해응의 서문에서 유득공이 발해사(渤海事)를 “그 세계, 전기, 지리 등을 엮어 한 권을 만들었다(編其世系傳記地理等 爲一卷)”라고 했듯이, 성해응도 4권본을 1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발해고』가 군고(君考)·직관고(職官考)·의장고(儀章考)·물산고(物産考)·국어고(國語考)·국서고(國書考)·속국고(屬國考), 혹은 정안국고(定安國考)와 같이 9개 분야로 나누어 고찰(考)한 것이고, 이런 이유에서 유득공도 서문에서 책명에 ‘고(考)’를 붙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알려진 『발해고』는 9고본과 5고본으로 구분하여 칭하면 『발해고』의 이본을 분명히 구분하고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유득공의 역사인식

제4장은 유득공의 생애, 저술 및 문학론, 역사서를 검토하였다. 유득공이 서얼이라는 신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고, 정조(正祖)의 특별한 배려로

11 박인호, 2002, 앞의 글, 58쪽.

12 김종복, 2010, 앞의 글, 57~58쪽.

32세에 검서관으로 출발하여 만년에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까지 이르는 생애 검토는 현재도 발해사만 아니라 기타 분야의 전공자에게도 항상 참조, 인용되고 있다.

마지막 역사인식 항목에서 “유득공은 역사가라기보다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의 역사 인식은 문학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3~104쪽)라고 하며, 유득공의 역사인식 형성의 배경에 다방면에 걸친 문학적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105쪽). 그의 역사 인식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없어 단편적인 자료를 모아 재구성해본다고 하며, 첫째, 유득공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전적으로 의존한 종래 견해를 비판하고, 중국 역대 사서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간주했다(105~106쪽). 둘째, 우리의 풍습에 관심을 기울여 최초의 세시풍속 기록인 『경도잡지(京都雜記)』를 저술하고 온돌, 민며느리제, 단오절 쑥떡에 대해 기술하는 등, 우리 역사에 대한 애착으로 연결되었다(106쪽). 셋째, 한국사체계는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日懷古詩)』를 쓸 때는 주제가 한반도 안에 국한되고, 게다가 한강(漢江) 이남의 역사에 중점을 두었다면, 『발해고』와 『사군지(四郡志)』는 한강 이북의 역사로 중심이 기울면서 북방(北方)의 역사에 중점을 둔 역사서라 설명하고(106쪽), 북방의 역사에 주목하게 된 것은 나약해져버린 조선(朝鮮)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107쪽).

그리고 유득공의 역사인식은 본서에서 참조한 자료 이외에서도 일부 보충할 수 있다. 유득공의 나이 43세 때인 1790년(정조 14) 5월 박제가(朴齊家)·이희경(李喜經)과 함께 건륭제(乾隆帝) 팔순절 축하 사절의 일원으로 연경(燕京)은 물론 열하(熱河)도 다녀오며 기록한 『열하기행시주(熱河紀行詩註)』 「봉성(鳳城)」 항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을 엿볼 수 있다.¹³

첫째, 삼국 중에서 고구려를 우리나라의 근본으로 보았다. 신라는 북쪽으로

13 임상선, 2021, 『조선의 역사 전문 외교관, 유득공』(동북아역사재단 교양총서 21), 동북아역사재단, 200~215쪽.

덕원(德源)을 넘지 못하고 서쪽으로 대동강(大同江)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요동(遼東)을 알지 못한 작은 나라이며, 우리나라의 근본은 바로 고구려라고 했다. 고구려가 옥저, 부여를 병탄하고 말갈(靺鞨) 부락을 신하로 복속하여 압록강을 걸터 앉아 금(金), 요(遼)에 항거하였다고 보았다. 중국의 침입을 말갈의 병사를 이끌고 공격하여 '막강지국(莫強之國)'으로 불렀다고 했다.

둘째,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고, 만주족은 말갈을 이은 것으로 인식했다. 고씨가 망하고 고구려의 구장(舊將)인 대씨가 이어서 흥기하여 강역을 다 회복하였고, 그 땅은 대체로 지금의 길림, 오랴, 영고탑, 팔부 등지라고 했다. 고려 태조(太祖)의 조치를 평하며,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고, 거란의 교류를 거부하고 평양을 수복하여 서경(西京)을 두었다고 했다. 유득공은 삼국 중에서 고구려가 우리 나라의 근본이고, 고구려를 이은 것이 바로 발해라고 판단했다. 고려가 고구려와 발해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받아들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고려(高麗)가 요, 금, 원(元) 중 금나라와 관계가 가장 좋았던 이유는 고려와 금이 친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유득공 당시의 형세가 금나라 때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유득공이 당시 조선(朝鮮)과 청(淸)의 관계를 고려와 금의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방 지역의 민족에 대해서 말하길, 숙신(肅愼)이 음루(挹婁)이며, 음루가 말갈이며, 말갈이 여진(女眞)이며, 여진이 만주(滿洲)라고 했다. 고씨(고구려)가 망하여 대씨(발해)가 흥하였고, 대씨가 망하매 완안씨(금나라)가 흥하였고, 완안씨가 망하매 애신각라씨(청나라)가 흥하였다고 보았다. 유득공은 발해로부터 청의 만주족에 이르는 관계를 숙신 → 음루 → 말갈 → 여진 → 만주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의 흥망은 고씨 고구려 → 대씨 발해 → 완안씨 금나라 → 애신각라씨 청나라로 파악했다. 유득공은 발해는 이전의 고구려를 이었고, 다음에 그 주민이었던 말갈족을 통하여 금나라에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당시의 청나라에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북한, 일본, 러시아의 발해사 연구

제6장(北韓의 渤海史·統一新羅史 研究)에서는 북한, 제7장(일본에서 접근한 발해사-酒寄雅志와 石井正敏의 저서를 읽고)에서는 일본, 그리고 제8장(러시아 연해주의 발해사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발해사 연구 동향을 정리했다.

해방 후 북한의 역사 인식은 신라 중심에서 고구려-발해 중심으로 점차 바뀌었고, 연구도 자연히 북방사에 집중되었다. 삼국 통일 대신에 후삼국 통일을 최초의 통일로 여기게 되었고, 통일신라도 통합신라, 후기신라로 명칭을 변경해가는 것과 달리 발해사 연구가 강조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일본에서 간행된 두 권의 발해사 연구서를 검토하고, 일본의 학계는 발해와 통일신라가 시종 대립적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일본이 동아시아 삼국의 질서를 주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했다. 일본의 신라정토계획에 발해를 끌어들이었다는 주장도 사료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학자들은 말갈(靺鞨) 중심으로 발해사를 이해함으로써 실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저자는 북한, 일본, 러시아의 연구 동향 정리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연구자도 설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논증하는 작업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술회했다(vi쪽). 국내 발해사 연구자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도 발해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연구 동향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서의 내용은 저자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정보였다.

IV. 중국의 동북공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제3부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비판한 논문들이다. 중국이 일찍부터 발해를 ‘속말말갈(粟末靺鞨)이 주체가 되어 세운 당나라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 고구려, 고조선 등도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을 정부의 지원 아래 시행하였다고 분석했다. 조공(朝貢), 책봉(冊封)은 본질상 명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발해가 당나라 지방정권에 불과하였다는 중국 측 논리는 무리임을 언급했다(360~373쪽).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한국에서 고려연구재단을 설립하며 대응했고, 북한은 주체사관을 강화하면서 또다른 한국사 왜곡이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동북공정에 대한 본서의 검토 내용은 현재도 대부분 유효하다. 그중에서 앞으로도 눈여겨보아야 할 점으로는 첫째, 중국에서 역사 문제는 곧 영토 문제이고, 소수민족의 문제라고 한 내용이다(307쪽). 중국이 끊임없이 소수민족 분리운동을 차단해왔고, 조선족을 비롯한 만주 소수민족도 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덧붙인다면, 북한의 항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12년 3월 미(美) 의회조사국(CRS)에서 작성한 보고서 작성 목적은 향후 북한 유사시 그 영토에 대해 중국이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경우를 감안하여, 상원의원들에게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CRS보고서는 중국-한반도의 육상 경계의 역사에 관한 중국학계 측의 입장을 담고 있는 연구 결과물 세 가지(『中國歷史地圖集』, 『中國近代邊界史』의 제1장, 『中國東北邊疆研究』의 「高句麗研究的若干問題」)를 검토한 것이다. 그리하여 CRS는 중국 측이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한강 유역, 혹은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근거로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¹⁴

둘째, 동북공정 대응을 위한 이론(理論) 확산이 필요하다고 한 점이다. 동북공정 대응 논리는 국내용이 아니라 중국이나 제3국의 연구자들까지 설득시킬 수 있는 학문적 엄밀성, 진지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350쪽). 중국의 동북공정은 논리적 타당성은 차지하더라도 통일적다민족국가

14 「S.Prt. 112-44-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Tuesday, December 11, 2012.), <https://www.govinfo.gov/app/details/CPRT-112SPRT77566/CPRT-112SPRT77566/context>(검색일: 2022.2.12.).

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을 바탕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은 이론이 아니라 사료(史料)에 대한 단순한 해석(解釋)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발해사에 대한 기본 자료인 『신당서』나 『구당서』의 발해전이 중국 입장에서 기록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해 입장보다는 당(唐)이나 중원(中原)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학계는 발해 사료를 비판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사료의 자구(字句)를 넘어 발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실을 유추하고, 제3자도 동의할 수 있는 역사이론(歷史理論)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송기호 교수의 『발해 사학사 연구』를 읽고 느낀 점 몇 가지를 기술했다. 국내 발해사 연구의 1세대로서 발해사의 실상을 선구적으로 해명해온 저자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저자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혜량(惠諒)해주시길 바랄 뿐이다.

끝으로 저자는 본서의 머리말에서 정년 이후 『발해사 탐색』이라는 발해 통사를 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viii쪽). 발해사 연구 3부작을 차질 없이 완수한 저자의 의지로 미루어 조만간 출간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자의 기왕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발해 통사가 예정대로 발간되기를 국내외 발해사 연구자와 함께 두 손 모아 기원하는 바이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언,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5호(2022. 3)

초판 1쇄 인쇄 2022년 3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22년 3월 31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